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160-01

ISBN 979-11-5598-060-6 93390

軍事文獻集 26

# 壬辰記錄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 軍事文獻集 刊行目錄

| | | |
|---|---|---|
| 1 | 兵將說·陣法 | (1983년) |
| 2 | 東國兵鑑 | (1984년) |
| 3 | 百戰奇法 | (1985년) |
| 4 | 朝鮮時代軍事關係法 | (1986년) |
| 5 | 武臣須知 | (1986년) |
| 6 | 海東名將傳 | (1987년) |
| 6 | 武經七書 | (1987년) |
| 7 | 東國戰亂史(內亂篇) | (1988년) |
| 8 | 東國戰亂史(外亂篇) | (1988년) |
| 9 | 西征錄 | (1989년) |
| 10 | 民堡議·民堡輯說 | (1989년) |
| 11 | 風泉遺響 | (1990년) |
| 12 | 歷代兵要(Ⅰ) | (1991년) |
| 13 | 歷代兵要(Ⅱ) | (1991년) |
| 14 | 歷代兵要(Ⅲ) | (1992년) |
| 15 | 歷代兵要(Ⅳ) | (1992년) |
| 16 | 歷代兵要(Ⅴ) | (1994년) |
| 17 | 兵學指南演義(Ⅰ) | (1995년) |
| 18 | 兵學指南演義(Ⅱ) | (1996년) |
| 19 | 兵學指南演義(Ⅲ) | (1997년) |
| 20 | 國朝征討錄 | (2009년) |
| 21 | 演機新編 | (2010년) |
| 22 | 神器秘訣 | (2011년) |
| 23 | 紀效新書(上) | (2011년) |
| 24 | 紀效新書(下) | (2013년) |
| 25 | 東國通志・述古常制 | (2016년) |
| 26 | 壬辰記錄 | (2019년) |

■ **표지 설명**

**병조의 관인(兵曹之印)** : 조선시대 병조(兵曹)에서 사용하던 관인. 목제(木製)의 양각(陽刻) 형태로서 실물의 크기는 9×9㎝이나 여기에는 6×6㎝로 축소 수록하였음.

軍事文獻集 26

# 壬辰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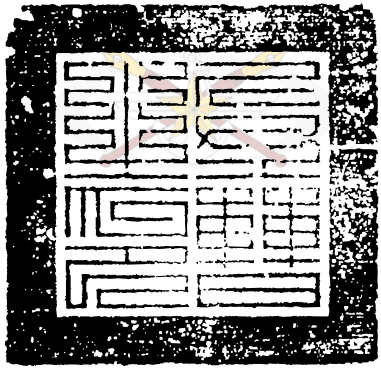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 발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조 성 훈

전근대 동아시아 최대의 국제전쟁으로서 임진전쟁은 조선, 명, 일본 등의 국운이 연관된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전쟁의 이러한 역사적 성격으로 현재도 한·중·일 삼국간에 임진전쟁의 명칭을 비롯해, 현재에도 역사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요 전쟁은 다양한 전쟁기록을 남겼으며, 이들 전쟁기록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전통시대 군사사 연구의 기반이 확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군사사 연구에서 자칫 소홀하게 간과하였던 사료가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임진기록』입니다. 『임진기록』은 원사료가 초서체로 되어 있으며, 내용의 많은 분량이 명나라의 공문 및 조선의 장계 등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전문적인 국역작업이 요원했습니다.

우리 군사편찬연구소는 전통시대 군사문헌에 대한 지속적인 국역작업을 추진하여 군사문헌에 대한 연구자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역한 『임진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일기를 넘어 공문서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임진전쟁의 국제전쟁으로서 면모를 군사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주로 한문으로 적혀진 군사문헌은 한국 전통시대 군사사 연구의 보고로써 보다 정밀한 번역작업이 필요합니다.

금번 국역한 약포 정탁의 『임진기록』은 우리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처음 번역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자칫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난중일기』, 『상촌집(象村集)』, 『용사일기(龍蛇日記)』 등 주요 사료와의 교체 검증을 통해 임진전쟁과 전근대 한국군사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반 사료의 수집과 번역작업을 수행한 번역자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책자를 통해 조선시대 임진전쟁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국방정책수립 관계자 및 군사실무자, 장병, 독자들의 조선시대 군사관계 이해 제고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 목 차

발간사
해제 : 국제전쟁으로서 임진전쟁을 기록한 군사문헌,『임진기록』

1. 사평 김언욱이 보내온 군진의 기별 (司評 金彦勖 所送陣奇)
2. 겸삼도수군통제사 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왜적을 불태워 무찌른 일로 올린 장계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 狀啓草)
3. 만력 22년 3월 10일 통제사 이순신이 3월 13일에 봉계한 초안 (李舜臣 三月十三日 封啓草)
4. 과도관의 제본 20일 (科道官 題本 二十日)
5. 사천사의 제본 - 정월 22일(司天使 題本 正月二十二日)
6. 송응창이 입공에 대해 논의한 제본 정월 24일 (宋應昌 議貢題本 正月二十四日)
7. 과읍관의 제본 - 25일 (科邑官 題本 二十五日)
8. 이제독의 자변 (李提督 自辨)
9. 병부의 복제 - 2월 초3일 (兵部 覆題 二月初三日)
10. 어사 한취선이 올린 표문 (韓御史 票文)
11. 적장 가토 키요마사(가등청정)가 총병에게 보내는 답변서 (賊將淸正 答總兵書)
12.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권율의 장계 (資憲大夫知中樞府事權慄)
13. 하남도 어사 황일룡이 올리는 제본 (河南道御史 黃一龍 一本)
14. 4월 초4일 계하 (四月初四日 啓下)
15. 비변사 계본 (備邊司 啓本)
16. 충용장 김덕령의 장계 (忠勇將金德齡 狀啓)
17. 굶주리는 이들을 가여워하다. 고풍 (憫飢 古風)
18. 팔거기사 (八莒記事)
19. 사직상소 (辭職書)
20.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 1(圃翁家譜略敍 草稿 一)
21.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 2(圃翁家譜略敍 草稿 二)
22. 정유년 봄, 통제사 이순신 옥사기(丁酉春 統制使 李舜臣 獄事起)
23. 만권루선 4(萬卷樓選 四)

# 일러두기

1) 본서는 정탁, 『壬辰記錄』(국사편찬위원회, 1993)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2) 본 번역은 가능한 직역을 위주로 하고 직역으로 문맥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 뜻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역을 했다. 그리고 원문에는 없지만 내용 전개상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 ]를 넣어 보충했다.

예) [주상의] 성스러운 덕은 살리기를 좋아하여

3) 본 번역에서 언급되는 인명, 지명, 서명 등의 고유명사는 모두 우리말 발음으로 표기하고, 조목마다 처음에만 ( ) 안에 원문을 넣었다.

예) 초이틀에 최강(崔岡), 안신갑(安信甲) 등 13인의 별장(別將)에게 등등

4) 일본인 이름의 경우 일본식 독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음을 추정할 길 없는 경우, 부득이 한글 독음으로 읽었다.

예) 조파총(曹把總), 아리만(阿里萬)

5) 각주에 인용한 참고문헌인 경우 원문을 밝혀두었다.

예) 이 말은 임금이 도성 밖으로 출병하는 장수를 떠나보낼 때 수레바퀴를 밀어주며 “성곽의 문지방 안은 과인이 처리할 테니, 그

바깥은 장군이 알아서 처리하라(閫以內者, 寡人制之, 閫以外者, 將軍制之)"(『사기』「풍당열전(馮唐列傳)」)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6) 각주는 번역문에 달고 그 원문을 밝혀두었다.

예)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 계승하려는 마음: 원문은 '간고(幹蠱)'로, 아들이 부친의 뜻을 잘 계승하여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임진기록』해제

# 국제전쟁으로서 임진전쟁을 기록한 군사문헌,『임진기록』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퇴계학문과 남명학문을 배운 올곧은 사대부, 정탁

저자 정탁(鄭琢)은 1526년(중종 21)에 태어나 1605년(선조38)에 사망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신이자 임진전쟁기간 정승으로 전쟁을 지도했던 인물이었다. 청주(淸州) 정씨 집안으로 태어난 정탁은 자가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백곡(栢谷)이다. 예천출신으로 현감 원로(元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생원 교(僑)이고, 아버지는 이충(以忠)이며, 어머니는 한종결(韓從傑)의 딸이다. 어려서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학문을 배웠으며, 조목, 구봉령, 김부륜, 유성룡, 김성일 등과 교유했다. 정탁은 좀 늦은 나이였던 36세에 진주교수로 부임하여 조식의 문하에 들어갔다. 즉, 정탁은 16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관료로서 퇴계와 남명을 모두 스승으로 섬겼던 영남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학문적, 정신적 세례를 받은 학자였다. 정탁의 이러한 사제관계 및 교유관계는 경상우도, 좌도의 여러 사대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였다.

정탁은 1552년(명종 7) 성균생원시를 거쳐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정언, 예조정랑, 헌납 등 관직을 거쳐『명종실록(明宗實錄)』편찬에 참여하였다. 뒤이어 이조좌랑, 도승지, 대사성, 강원도관찰사, 대사헌, 이조참판, 대사헌, 예조판서,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정탁은 1582년 진하사(進賀使), 1589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사행했다. 임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명나라에 사행하여 명나라 정세를 파악하고 인맥을 맺었던 점은 임진전쟁에 파병된 명군과의 관계를 전담하였던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관직생활에 있어 정탁은 약 30여 년에 걸쳐 경연과 서연에

나아갔는데, 이는 정탁의 학문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정탁의 학문은 경학을 비롯하여 천문, 지리, 역수, 병법에 이르기까지 방대하였으며, 팔진(八陳), 육화(六花) 등의 병법에 조예가 깊었다. 분조활동을 하며 문관으로 전쟁을 지휘하였던 정탁의 지휘력이 이러한 병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찾을 수 있다.

## 임진전쟁시기 분조의 운영자, 정탁

임진전쟁은 조선이 경험하지 못한 국제전쟁으로 전쟁초기 조선군은 일본군에 연전연패하여 한양 도성을 쉽게 내어주고 국왕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조선이 비록 전쟁직전 전쟁을 예상하고 경상도를 중심으로 성곽을 수축하고 군사지휘관을 대거 선발하였지만, 조선군의 전쟁대비는 일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조선군은 전쟁이 일어나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열이 흐트러지고 지휘관이 우선적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조선군의 대응보다 더 중요한 전쟁의 요소는 민심의 이반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의병이 창의하였지만, 의병도 민심의 이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의 정발, 동래성의 송상현 등의 선전과 장렬한 전사,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장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신속한 북진을 저지하는 전투가 각지에서 벌어졌다. 의병장들과 초유사 김성일 등 관료들은 무엇보다 민심을 안정시키고 각지의 지역사회에서 일본군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국왕 선조를 비롯한 지배층은 의주까지 피난한 상황에서 전국의 근왕병을 기대하고, 각지에서 의병의 창의가 일어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 국왕 선조는 조정을 나누어 자신이 지휘하는 대조(大朝)와 왕세자가 전선에서 근접한 지역에서 전쟁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던 분조(分朝)로 나누어 대조는 명군의 파병을 요구하는 등 대명외교에 치중한 반면, 분조는 군사지휘, 군사모집, 의병모집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의정부 우찬성이었던 정탁은 1592년 4월 30일 선조를 호종하여 피난길에 올랐지만, 6월 14일 선조가 평양을 떠나 의주로 향하며 왕세자를 중심으로 한 분조를 세웠다. 정탁은 분조에 소속되어 1593년 1월 19일에 정주(定州)에서 대조와 분조가 합해질 때까지 분조에서 왕세자를 호종했다. 또한, 정탁은 임진전쟁 기간 중 기록을 『용사일기(龍蛇日記)』로 남겼는데, 분조에서 관리임면 뿐만 아니라 분조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면모를 보여준다.

선조가 한양을 떠나 의주에 도착한 뒤 한 동안 요동으로 넘어갈 것인가 여부를 두고 조정에서 논쟁이 있었다. 다수의 반대로 의주에 남기로 한 선조는 평양에 분조를 두어 일본군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정탁은 광해군을 호종하여 분조의 각종 대소사를 관장했다. 정탁이 제일 먼저 정리하고자 하였던 점은 관리 임면의 혼선이었다. 즉, 조정이 두 개 존재하여 관리 임면에 혼선이 발생하자 정탁은 전쟁지휘의 직접적인 역할을 분조에서 하므로 분조의 결정을 우선시하고 대조의 임명을 임의로 유보시키고자 했다. 또한 전쟁이 긴급하게 수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전투에 따른 상벌을 분조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다. 전투의 상벌은 조선군의 전투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었다.

분조는 비록 전시상황에서 조선군에 대한 지휘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 국왕이 존재하는 상황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무엇보다 분조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조선군의 편제가 모호하였으며, 분조에 배속된 군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분조는 각지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흩어진 조선군을 수습하여 재정비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분조의 이러한 활동은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불어 조선의 왕실을 대표하여 왕세자의 분조가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왕실이 굳건하게 일본군과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다. 조선군이 전쟁초기 연전연패하였던 것은 조선군의 부실, 지휘체계의 문란 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심이 이반하였기 때

문이기도 했다. 전통시대의 전쟁은 백성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군사들은 전투를 하지만, 백성들은 전쟁을 한다는 말처럼 백성들의 적극적인 전투의지는 군수체계, 군역체계 등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정탁은 적극적으로 분조의 대민접촉을 확대하고, 의병의 상벌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왕실과 분조의 건재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평민과 천민까지 포함하여 전쟁의 주체가 백성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이 의병으로 창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공이 있으면 포상하면서 독려했다.

본『임진기록』에 대한 구성과 내용분석에 앞서 정탁의 임진전쟁 기간 중 활동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임진기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정탁은 임진강 전투에서 조선군이 패배하자 평양성을 버리고 의주로 향하며, 요동으로 넘어갈 뜻을 밝혔다. 정탁은 평양성을 떠나는 선조에게 강력하게 평양성 수호를 건의했다. 그러나 선조는 의주로 향하며 세자로 하여금 영의정 최흥원(崔興源), 형조판서 이헌국(李憲國) 등과 세자의 이사(貳師)였던 정탁 등을 거느리고 분조를 운용하도록 했다.

『임진기록』 번역의 판본

본 군사문헌집 『임진기록』 번역이 저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3년 영인한 판본을 저본으로 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영인본은 보물 제494-6호로 지정된『정탁문적(鄭琢文籍)』의 「약포유고 및 고문서 - 임진기록(藥圃遺稿 및 古文書 - 壬辰記錄)」을 저본으로 했는데,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본으로 소유자는 정완진(鄭完鎭)이다. 세부적인 서지사항은『임진기록』 상권(上卷)과 하권(下卷)은 1책(冊), 행자수부정(行字數不定)으로 27.4cm×28.1cm이다.

『임진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탁이 기록한 임진전쟁의 기록은 크게 『용사일기』와 본 『임진기록』이 있다. 『용사일기』는 세자를 호종한 정탁이 1592년 7월 17일부터 1593년 정월 12일까지 전쟁기간 중 일기를 정리한 것이다. 즉, 정탁이 분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신이 경험한 바와 문견한 바를 정리한 것으로 1760년 정탁의 5대손 황해도관찰사 정옥(鄭玉)이 간행한 『약포집(藥圃集)』의 「피란행록(避亂行錄)」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임진기록』은 정탁이 분조에서 접한 각종 문서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정탁의 『용사일기』는 제목이 일기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기체로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분조의 정탁이 수집한 문서를 옮겨적었다. 이에 비하여 『임진기록』은 제목에서 기록이라 하였듯이 전적으로 정탁이 업무상 접한 각종 문서를 모아 정리한 책이다.

또한 『용사일기』는 명확한 시점이 정해져 있지만 『임진기록』은 각종 문서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임진전쟁 전반을 관통한다. 이러한 점은 『임진기록』에 수록된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임진기록』에 수록된 문서목록이다.

1. 사평 김언욱이 보내온 군진의 기별 (司評 金彦勖 所送陣奇)
2. 겸삼도수군통제사 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왜적을 불태워 무찌른 일로 올린 장계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 狀啓草)
3. 만력 22년 3월 10일 통제사 이순신이 3월 13일에 봉계한 초안 (李舜臣 三月十三日 封啓草)
4. 과도관의 제본 20일 (科道官 題本 二十日)
5. 사천사의 제본 - 정월 22일(司天使 題本 正月二十二日)
6. 송응창이 입공에 대해 논의한 제본 정월 24일 (宋應昌 議貢題本 正月二十四日)
7. 과읍관의 제본 - 25일 (科邑官 題本 二十五日)
8. 이제독의 자변 (李提督 自辨)
9. 병부의 복제 - 2월 초3일 (兵部 覆題 二月初三日)
10. 어사 한취선이 올린 표문 (韓御史 票文)

11. 적장 가토 키요마사(가등청정)가 총병에게 보내는 답변서 (賊將淸正 答總兵書)
12.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권율의 장계 (資憲大夫知中樞府事權慄)
13. 하남도 어사 황일룡이 올리는 제본 (河南道御史 黃一龍 一本)
14. 4월 초4일 계하 (四月初四日 啓下)
15. 비변사 계본 (備邊司 啓本)
16. 충용장 김덕령의 장계 (忠勇將金德齡 狀啓)
17. 굶주리는 이들을 가여워하다. 고풍 (憫飢 古風)
18. 팔거기사 (八莒記事)
19. 사직상소 (辭職書)
20.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 1(圃翁家譜略敍 草稿 一)
21.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 2(圃翁家譜略敍 草稿 二)
22. 정유년 봄, 통제사 이순신 옥사기(丁酉春 統制使 李舜臣 獄事起)
23. 만권루선 4(萬卷樓選 四)

각종 공문을 모은 것이 16편이며, 정탁에 관련하거나 직접 정탁이 작성한 기사가 7편으로 전체 2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16편의 공문은 김덕령의 휘하에 있던 김언욱의 보고서,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장계, 권율의 장계, 충용장 김덕령의 장계 등 일선 군사지휘관의 보고서 등이 있으며, 파병된 명군의 지휘관이 보내온 공문, 또한 일선 군사지휘관에게 하달된 명령서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들 공문들은 모두 임진전쟁 당시의 조선군, 의병, 명군의 입장과 전쟁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먼저 사평 김언욱이 김덕령 진영의 내용을 보고한 문서에 의하면 비록 작자는 알 수 없지만, 경략 송응창의 업적을 알리는 노포문(승전포고문)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 내용은 명군의 회군을 즈음하여 경략 송응창의 공을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본『임진기록』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임진전쟁 기간 중 정탁이 직접 접수하거나 관여한 공문과 경험한 바를 정리한 것으로 상권은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圃翁家譜略敍 草稿)”까지이며, 하

권은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의 8월 27일부터 일자별로 1601년(선조 34)까지 문견한 사건을 일기체로 기록한 글과 “정유년 봄, 통제사 이순신 옥사기(丁酉春 統制使 李舜臣 獄事起)”, “만권루선 4(萬卷樓選四)”까지이다. 이 가운데 상권은 주로 공문을 대부분 기록한 반면, 하권은 일기형식의 글이 대부분이다. 상권에 포함된 공문은 조선군의 주요 지휘관의 장계, 명 조정과 파병된 명군 지휘관 사이에 행이된 문서, 명과 조선 사이에 행이된 문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명과 일본 사이에 행이된 문서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권의 경우에는 일기체이지만, 매일마다 정리한 것은 아니면 주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하책의 뒷부분에는 부록이 있는데, 당시 국왕이 정탁에게 하사한 곡식과 찬에 대한 감사의 차자(箚子), 세시풍습과 날씨에 관련한 기록, 의서(醫書)인『소문(素問)』의 후기(候氣), 여덟 절기의 기후, 천시(天時)에 관해 소소하게 점치는 내용, 운전류(雲箋類)에서 각종 편지에서 쓰는 표현을 모은 내용, 이춘영(李春英)이 보낸 편지 2통, 상주(尙州) 유생 한진(韓璡)의 편지, 도촌 팔영(桃村八詠), 금역당(琴易堂), 차운시(次韻詩), 위장(衛將)·별무사(別武士)·금군(禁軍)·대장 군관(大將軍官)의 명단, 상소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당시 편지체에서 형식과 내용을 간략하게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여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는『임진기록』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당대의 각종 문서 및 편지체의 형식과 내용을 잘 보여준다.

각 권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사평(司評) 김언욱(金彦勖)이 보내온 진영의 기별”은 김덕령의 진영에서 행한 군사활동 및 군량조달의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김덕령 의병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노포문(露布文)”의 경우, 파병된 명군의 최고지휘관이었던 경략 송응창의 공적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일본의 조선침략이 가지는 죄상을 밝히고, 송응창이 명군을 지휘하여 파병 및 작전과정을 평양, 개성, 임진강전투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또한, 일본과의 강화협상으로 일본이 강화를 요구하며 신하를 칭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조선과 명의 승리를 강조

하였다.
2. “겸삼도수군통제사 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兼三道水軍統制使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李舜臣)이 왜적을 불태워 무찌른 일로 올린 장계”은 해전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일, 거제에 은거한 일본군을 이순신이 격파한 일, 조방장 어영담이 진해에서 나온 왜선을 협공하여 모두 부수고 불태운 전황, 당항포의 일본군을 물리친 어영담의 치보, 고성과 진해에서 마음대로 하던 적들이 이제는 제멋대로 드나들지 못할 것이라는 정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순신의 장계는 전공을 상세히 조정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난중일기』를 비롯한 임진전쟁 기록과 교차로 분석하여 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3. “만력(萬曆) 22년 3월 10일 통제사 이순신이 3월 13일에 봉계(封啓)한 초안”은 당시 파병 명군 가운데 고령(高靈)에서 담도사(譚都司)가 보내온 문서를 수령하여 등서하여 올린 내용, 왕세자의 지휘하는 군사를 준비하며 왕세자에게 자문(咨文)을 보낸 뒤 군사를 긴급히 선발하여 조련한 내용, 이정암이 보내온 명군의 철군에 따른 작전상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과도관(科道官)의 제본(題本) 20일”은 광동도의 어사(廣東道御使) 당일붕(唐一鵬)이 올린 황제에게 올린 제본이다. 명대 제본은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서의 한 종류이며, 공적인 일에 관련하여 올리는 경우에 사용되며, 작성자가 관료이어야 했다. 내용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조선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며 무엇보다 명군이 지속적으로 승리하지 못하여 와신상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황제가 장수들을 안무하여 국위를 떨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당일붕의 제본에는 당시 명군의 경략, 제독 등 지휘관의 각종 작전지휘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임진전쟁에 참전한 명군의 사찰을 위해 감군(監軍)이 파견되었으며, 당일붕은 감군업무의 일환으로 제본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5. “사천사(司天使)의 제본(題本), 1593년 1월 22일”은 황제의 칙명을 받들고 위유(慰諭)하러 온 행인사 행인 사헌(司憲)이 황제에게 올린 제본으로 전후 조선에 대한 처리를 황제에게 건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은 지리적으로 명의 변방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전후에 대책을 세워야 하며, 첫째, 지금이라도 군사를 증가시켜 파병하여 일본군을 조속히 물리칠 일, 둘째, 군량조달과 둔전에 대한 논의, 셋째, 파병된 명군의 지휘 및 작전감독을 위해 문관을 파견하여 감독할 일, 넷째, 상규를 깨뜨려 호걸을 대우할 일, 다섯째, 군사들을 위무하고 구제할 일 등이었다.

6. “송응창(宋應昌)이 입공(入貢)에 대해 의논한 제본, 1593년 1월 24일”은 경략이었던 시랑(侍郎) 송응창이 일본군과 강화협상으로 논의 중인 입공문제가 일본의 음흉한 의도로 매우 불민스럽다고 보고하는 내용의 제본이다. 특히 송응창은 보고받은 강화협상 과정을 상세히 나열하며 일본의 의도가 강화보다 입공에 중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강화협상의 결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7. “과읍관의 제본, 25일”은 형과 급사중(刑科給事中) 양동명(楊東明)이 올린 제본으로 경략 송응창과 제독 이여송의 분쟁을 논하여 이부(이부)와 형부(형부)로 하여금 조사하여 논의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따른 형과급사중의 의견을 제시한 제본이다. 양동명은 송응창과 이여송의 사소한 잘못은 전장에서 군권을 가진 장수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도 되지만, 황제에게 전쟁상황 및 작전에 대한 보고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 “이 제독(李提督)의 자변(自辨)”은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자신의 군사활동 및 전공에 대해 황제에게 올린 글이다. 내용은 대체로 자신이 이국(異國)에 군대를 이끌고 정벌을 갔을 때의 위태롭고 고생스러웠던 온갖 정황에 대해 여러 말들이 일정하지 않아 심정을 밝히기가 어려우니, 간절히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속히 죄주시어 내침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달래시고 공론(公論)을 밝히라는 내용이다.

9. “병부(兵部)의 복제(覆題), 1594년 2월 3일”은 앞에서 언급된 송응창과 이여송의 공훈논쟁에 대해 병부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던 황제의 명령에 대한 답변 제본이다. 병부는 조선에서 일본군이 초전에 승리하여 기세를 높여 명군이 참전한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군사지휘관으로 송응창과 이여송이 파병되어 전공을 서로 보

고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감찰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외국에 파병된 군대의 지휘관이므로 법을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조선에서 명군의 군사작전 및 활동에 대한 논박을 보고 명의 체통을 낮게 볼 위험이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제는 병부가 무신인 이여송을 두둔한다고 여겨 속히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10. “어사 한취선이 올린 표문(票文)”은 1594년 정월 30일에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欽差巡撫遼東地方贊理軍務兼管備倭都察院右僉都御史) 한취선이 명군의 철수를 청하는 지휘관의 건의에 대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칙유내용을 하달한 문서이다. 황제는 조선의 상황이 안정되도록 철수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군사지휘관들이 착오가 없도록 지시하였다.

11. “적장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가 총병에게 보내는 답변서”는 강화협상을 진행하며 명군의 총병 유정에게 일본군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자신은 특히 조선의 왕자들을 사로잡았지만, 살려주는 등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같은 일본군 지휘관 및 조선이 자신을 비난하여 일본군은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진정한 화해를 위해 명군이 먼저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문서에는 편지봉투와 동봉된 별지가 있다. 또한, 본 문서의 뒷부분에 “도독[유정] 존부 노선생 대인에게 편지를 바칩니다[奉都督尊父老先生大人狀]”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왜적에게 포로로 잡혀간 명나라 사람 강옥호(康玉湖)가 가등청정을 비호하는 내용을 유정에게 보낸 것이다. 또한, 뒤이어 “조선 총병(總兵) 고 아무개[고언백(高彦伯)]에게”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가등청정이 1594년 3월 3일에 보낸 편지로서 배신(陪臣)과 왕자는 회보(回報)할 가망이 없으니, 오래 기다렸지만 조속히 뒷날의 소식을 기약해야 할 것과 명과 조선의 사람을 기다려 의논할 것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는 가토 키요마사가 명군에 일련의 문서를 보내어 강화협상을 진행하는 고니시에 비해 자신의 역할론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도원수 권율[資憲大夫知中樞府事都元帥

臣權]의 장계"는 같은 제목으로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창원부사(昌原府使) 최근(崔謹)의 치보(馳報)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경상방어사(慶尙防禦使) 김응서(金應瑞)의 치보에 따른 것이며, 세 번째는 소서행장이 보낸 왜인 조파총(曹把總)을 접견하고 도로 밀양으로 보내고 파견된 중국 관리가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보낸 유첩(諭帖)을 등서한 내용이다. 이들 문서의 뒤에 "비망기, 4월 26일"라는 비망기가 실려 있는데, 선조가 노성한 사람이 진휼당상(賑恤堂上)으로 있는 것이 염려되어 연소한 재신(宰臣)으로 바꾸라는 명에 김우옹을 추천하는 것으로 회달(回達)하는 내용이다.

13. "하남도 어사(河南道御使) 황일룡(黃一龍)이 올리는 보고, 2월 12일"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구원으로 파병된 명군이 황제의 군대로서 권위를 높이지 못하고 일본의 매우 교활하고 사특한 봉공(封貢)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분석하고 황제께서 속히 결단하여 변방의 흔단(釁端)을 막고 만세토록 치안을 보전하길 건의하는 문서이다. 주로 경략 송응창과 병부 원외랑(兵部員外郎) 유황상(劉黃裳)이 왜와 통공(通貢)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과 왜와 통공할 경우 있을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고 있다.

14. "4월 초4일 계하(啓下)"는 일본군 진영에 사인(士人) 이겸수(李謙受) 등을 보내서 주고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는 내용이다.

15. "비변사 계본(備邊司啓本)"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건의한 바를 비변사에서 정리하여 국왕 선조에게 올린 계본이다. 비변사의 낭청에서 조정의 역대 제도가 진관(鎭管) 체제에서 제승방략(制勝方略) 체제로 변화한 대체적인 흐름에 대해 서술하고, 제승방략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6. "충용장(忠勇將) 김덕령(金德齡)의 장계"는 자신이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왜적을 막기 위해 진주 동쪽의 대곡리(大谷里)로 진영을 옮겨서 진을 치고 있으나 시간을 지체하며 공을 이룬 것이 없으며, 함께 거느리고 온 군사들을 쇄환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키는 책임을 맡길지 조정에 처치를 의뢰하는 내용이다(1594년 5월 10일).

17. "굶주리는 이들을 가여워하다[憫饑]"는 제목의 고풍시(古風詩) 1

수가 있다.
18. “팔거기사”는 파병된 명군의 장수였던 유정이 자신이 주둔하던 팔거에서 있었던 소회를 5언시로 적은 것이다.
19. “사직서”는 정탁이 1599년 11월 16일에 올린 사직상소이다.
20.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圃翁家譜略敍 草稿)”은 정약의 약력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유년기까지는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었지만, 임진전쟁 기간에는 일기체 형식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특히, 하책은 1592년 9월 3일부터 중국의 장수나 사신들을 만나 연회하거나 전별한 것을 중심으로 일지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또 선조가 인재를 뽑는 10개의 조목을 내리고, 재상들에게 천거하라는 명에 따라 자신이 올린 인물들에 대해 상세한 인물평을 적었다. 그리고 화친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 입계하려고 한 차자의 내용에서, 화친을 하려고 손을 놓는다면 오히려 오랑캐들이 욕심을 내어 장차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중국을 핑계로 삼아 연기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1594년 11월 12일에 선조가 경연에 나가는 내용 및 정탁 자신도 이에 참여하여 진강한 내용 등도 기록하였다. 또 당시 논의된 기인(其人)에 관한 일에 대해서 정탁은 상공(常貢)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조정에서 절약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599년 9월에 부모님의 분묘에 성묘하러 남쪽으로 가면서 예천의 집에 들르고 안동으로 가서 관직을 그만둘 수 있게 해 달라고 상소하였다. 거듭 상소하여 봉상시 도제조 직임만 체차되었다. 1600년 2월에 좌의정에 제수되었으나 사직 상소를 올렸고, 수용되지 않아, 다시 체차를 청하였다. 이에 4월에 체차를 명하는 유지를 받았고, 다시 치사(致仕)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의인왕후의 승하 소식을 듣고 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대죄하지 말라는 유지를 받았고, 발인에 임박하여 희방사까지 가다가 병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상소를 올렸다. 또 술가(術家)의 말에 따라 현궁(玄宮) 자리를 고치다가 장례 기한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 차자를 올려 조종조에서 정한 제도를 우선하고 술가의 말을 참조만 해야 함을 강조

하려고 하였는데, 입계하지는 않았다. 12월에 다시 대상(大喪)이 났는데도 지방에 있었던 죄를 청하였다. 1601년 1월 선조가 지방관을 통해 음식물을 보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을 아뢰었다.

부록(附錄) 내용

부록은 고향에 물러나 있는 정탁에게 곡식과 찬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는 차자(箚子)가 있는데, 이는 올리지 않았다. 다음으로 세시기사(歲時紀事), 매월 초하루에 미리 천시(天時)와 기색(氣色)을 점치다, 여덟 절기의 운기(雲氣)를 미리 점치다, 노을의 채색을 미리 점치다, 사계절의 바람을 점치다[四季占風]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 다음으로 의서(醫書)인 『소문(素問)』의 후기(候氣), 여덟 절기의 기후, 천시(天時)에 관해 소소하게 점치는 내용으로 해점, 달점, 별점과 바람、비、구름、이슬、우레、번개、서리、눈、물、땅、사시(四時)의 갑자(甲子)、입춘(立春)의 일진(日辰)、무지개를 논하는 것과 바람이 없으면 비가 오는 확실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임진기록』의 군사문헌으로서 가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기록』은 정탁이 임진전쟁을 경험하면서 분조의 최고관료이자 파병된 명군의 접대를 담당했던 각종 활동을 문서와 기록 중심으로 정리한 글이다. 기존의 임진전쟁 관련 사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김덕령의 의병부대 활동, 권율의 장계, 이순신의 장계 등 조선군과 의병의 각종 보고서와 명군 내부의 문서 및 명과 일본, 명과 조선 사이에 왕래한 문서를 다수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임진전쟁의 내면적인 군사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귀중한 군사문헌이다. 특히, 명군의 군사지휘에 대한 이순신의 의견, 명군의 경략과 제독 사이에 갈등, 김덕령 의병부대의 구체적인 군사활동 등

은 본『임진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향후『임진기록』과 기존의『난중일기』,『상촌집』, 임진전쟁시기의 실기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면 임진전쟁의 구체적인 전투상황, 조선군과 명군의 관계, 지역별 군사상황, 조선·명·일본의 전쟁지도(戰爭指導)가 보다 명확히 밝혀져 임진전쟁의 국제전쟁으로서 성격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임진기록

1. 사평 김언욱이 보내온 군진의 기별 (司評 金彦勖 所送陣奇)
2. 겸삼도수군통제사 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왜적을 불태워 무찌른 일로 올린 장계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 狀啓草)
3. 만력 22년 3월 10일 통제사 이순신이 3월 13일에 봉계한 초안 (李舜臣 三月十三日 封啓草)
4. 과도관의 제본 20일 (科道官 題本 二十日)
5. 사천사의 제본 - 정월 22일(司天使 題本 正月二十二日)
6. 송응창이 입공에 대해 논의한 제본 정월 24일 (宋應昌 議貢題本 正月二十四日)
7. 과읍관의 제본 - 25일 (科邑官 題本 二十五日)
8. 이제독의 자변 (李提督 自辨)
9. 병부의 복제 - 2월 초3일 (兵部 覆題 二月初三日)
10. 어사 한취선이 올린 표문 (韓御史 票文)
11. 적장 가토 키요마사(가등청정)가 총병에게 보내는 답변서 (賊將淸正 答總兵書)
12.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권율의 장계 (資憲大夫知中樞府事權慄)
13. 하남도 어사 황일룡이 올리는 제본 (河南道御史 黃一龍 一本)
14. 4월 초4일 계하 (四月初四日 啓下)
15. 비변사 계본 (備邊司 啓本)
16. 충용장 김덕령의 장계 (忠勇將金德齡 狀啓)
17. 굶주리는 이들을 가여워하다. 고풍 (憫飢 古風)
18. 팔거기사 (八莒記事)
19. 사직상소 (辭職書)
20.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 1(圃翁家譜略敍 草稿 一)
21. 포옹가보 약서 초고본 2(圃翁家譜略敍 草稿 二)
22. 정유년 봄, 통제사 이순신 옥사기(丁酉春 統制使 李舜臣 獄事起)
23. 만권루선 4(萬卷樓選 四)

## 1. 사평[1] 김언욱[2]이 보내온 군진의 기별 (司評金彦勖所送陣奇)

將軍今月初二日定別將崔岡·安信甲等十三人，各率自募哨探一當百精銳騎兵，或百餘人，或五六十人，秘密約束後，自山陰縣先爲發送．將軍則卽日稱病不出，只與安典籍及彦勖，終日對坐于換○亭房中，苦待日沒．是夜半，將軍○而出，不知去處．從間道，以單騎由小路○○宜寧鼎津．宜寧諸將，但見○○○陣兵儀而過也，不知將軍出沒○一軍在前在後，如鶻之飄忽雲中．一軍○人亦不知將軍已能追到來在軍中也．初三日，早抵咸安十里許南山里，占得高峯上，頃刻爲棘柵結陣．分遣別將設伏險處，或令候望．將軍則挺刃獨去，惟意所向，而遍歷山川形勢．

장군[3]께서 이달[4] 초2일에 별장(別將) 최강(崔岡)[5], 안신갑(安信甲)

---

1) 사평: 원문은 '사평(司評)'이다.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정6품 관직으로, 노예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에 관한 직무를 맡아보았다. 1466년(세조 12) 형조도관(刑曹都官)이 변정원(辨定院)으로 고쳐지면서 좌랑이 사평으로 개칭되었다.

2) 김언욱(金彦勖): 자는 여강(汝江), 호는 서석(瑞石)이며 서석산인(瑞石山人)으로도 불렸다. 임진전쟁이 일어나 임금이 파천(播遷)하자, 초야에서 달려나가 어가를 모셨다. 선조가 그 충절을 가상히 여기어 정6품 장례원사평(掌隷院司評)을 내렸으나, 역시 거절했다. 임진전쟁 후 고향인 임양(林養) 덕구원(德丘園)에 돌아와 학문에 몰두했으며, 만덕(晩德) 김대기(金大器)와 교유하며 지냈다. 조정에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하고, 구산사우(龜山祠宇)와 오산창의사(鰲山倡義祠)에 배향했다. 『한국사료 총서』(제20집) 『여지도서(輿地圖書)』(하) 「보유편(補遺篇)·전라도(全羅道)·담양(潭陽)」, 국사편찬위원회

3) 장군: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을 가리킨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593년 모친 상중에 담양부사 이경린(李景麟), 장성현감 이귀(李貴) 등의 권유를 받고 담양에서 의병 5,000명을 규합했다. 이에 선조 임금은 그에게 형조좌랑의 직함과 함께 충용장(忠勇將)의 군호를 내렸다. 그의 지략과 용맹이 알려져 1594년 전라북도 전주에 내려와 있던 세자 광해군으로부터 익호장군(翼虎將軍)의 호를 받고, 이어 선조로부터 다시 초승장군(超乘將軍)의 군호를 받았다. 1596년 도체찰사 윤근

등 13명을 별장으로 임명하여 각 장수들이 스스로 일당백의 정예 기병들을 모집하여 망을 보고 염탐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수효가) 어떤 이는 백 명을, 어떤 이는 50~60명을 거느렸습니다. (이들과) 비밀리에 약속하여 산음현(山陰縣: 지금의 산청)에서 먼저 파견했습니다. 장군께서는 그날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고 다만 안전적(安典籍)[6]과 제가 함께 종일토록 환아정(換鵝亭)[7] 방에 앉아서 날이 저물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장군께서는 그날 밤 ○로 나가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샛길을 따라 나아가실 때에는 단기필마로 좁고 작은 길을 거쳐 ○○ 의령(宜寧)의 정진(鼎津)으로 갔습니다. 의령의 여러 장수들은 단지 ○○○진 병사의 사열하는 모습만 보고 지나쳤기에, 장군께서 마치 구름 속에 홀연 나타났다 사라지는 송골매처럼 전군(全軍)의 전방 후방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전군의 ○사람도 장군께서 이미 뒤쫓아 와서 군중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초3일 새벽에는 함안(咸安)에서 10리 남짓한 곳에 있는 남산리(南山里)[8]에 도착해 산 정상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가시나무로 울짱을 두르고 진을 쳤습니다. 별장을 나누어 파견해 험

---

수(尹根壽)의 노속을 장살(杖殺) 한 죄로 투옥되었으나 임금의 명으로 석방되었다. 그해 7월 충청도 홍산(鴻山, 지금의 부여)을 중심으로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덕령은 권율의 명을 받아 의병을 모집하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했으나, 운봉(지금의 남원)에 이르렀을 때 이미 반란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충청도 순찰사의 종사관 신경행(辛景行)과 반란군에 가담했던 한현(韓絢)에 의해 반란군의 무리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던 그는 옥중에서 장독(杖毒)으로 인해 사망했다.

4) 이달: 1594년 2월을 말한다.

5) 최강(崔堈): 원문은 '최강(崔岡)'이라 되어 있으나, '강(堈)'의 오기이다.

6) 안전적(安典籍): 당시 성균관 전적을 맡고 있던 안희(安憙: 1551~1613)를 말한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우(彦優). 호는 죽계(竹溪)이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 수학하여 1585년(선조 1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성균관전적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김해에서 의병을 일으켜 곳곳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7) 환아정(換鵝亭): 본문에서는 환○정(換○亭)이라 되어 있으나, 「함안루정록(咸安樓亭錄)」(咸安文化院, 1986)에 근거하여 고쳐 번역한다.

8) 남산리(南山里):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 장지리, 사내리 일부를 가리킨다.

지에 병사들을 매복시킨 다음 가끔씩 정탐하게 했습니다. 장군께서는 곧장 칼을 뽑아들고 혼자 길을 떠나 오로지 나아갈 곳만 생각하면서 산천 형세를 두루 살폈습니다.

五日, 所謂崔岡者, 遇賊數百人於固城, 以其卒四十餘人, 追奔突擊, 則賊乃解潰. 斬得四級, 射殺射中, 幾至九十餘人. 初七日, 將軍爲先鋒, 領精騎百餘, 直入昌原城外五里許, 踰入賊之常時候望之所, 賊徒不知其數. 張白旗而出見者皆曰, 如年前晉州了賊來之勢也. 將軍拒當數百里之間. 伏兵倭四五人, 來逼我軍, 相距一里許, 林間揮劍而已, 俄而不知去處. 將軍欲一試之, 而衆寡殊絶, 難以相敵. 若失於初擧, 則終誤大事, 一軍諸將, 爭相力止之. 未決之, 日且沒矣, 勢不得已, 揮霍長劍, 先令一軍回旋.

초5일에 최강(崔岡)이라는 자가 고성(固城)에서 왜군 수백 명을 만났는데, 병졸 40여 명을 데리고 추격해 맞서 싸우자 왜군들이 와해되어 무너졌습니다. 이때 왜군의 수급 넷을 얻었고, 활을 쏘아 죽이거나 명중시킨 자만해도 거의 90여 명에 달했습니다. 초7일에 장군께서 선봉에 서서 정예 기병 100여 명을 통솔해 창원(昌原) 성밖 5리 쯤 되는 곳으로 곧장 들어갔는데, 왜군들이 상시 망보는 곳을 넘어 들어가 보니 적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백기를 펼치고 (적진을) 살펴본 자들은 모두 1년 전 진주에서 왜군을 물리치던 때의 위세와 같다고들 말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수 백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매복하고 있던 왜병 너 댓 명이 우리 군을 압박해 왔는데, 1리 정도 떨어진 숲에서 칼만 휘두르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장군께서는 왜군과 대적하려 했지만 군사 수의 현격한 차이로 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첫 거사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대사(大事)를 그르칠 터라 전군의 여러 장수들이 힘껏 제지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날마저 어두워지자 부득이 장검을 휘두르며 먼저 전군을 돌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將軍則捍後從容出來, 賊頓無來犯之意. 將軍還陣, 以爲明日賊必出來, 又令○○勇士潛入探知, 則敵陣寂然無○○, 至昌原城外, 則夜間只數處○○六數炬火光而已. 衆賊則悉入于熊川、金海等窟穴云爾. 將軍知賊不復出來, 將欲率大軍擧大事, 遂引軍而出. 大槩賊情則已知矣, 將軍單騎來見宜寧諸將及僧大將惟靜, 爲一夜話, 將軍九日還山陰本陣. 十日曉, 以元帥之命馳往, 令別將崔峒·安信甲·金允明·洪胤張等, 各率其精銳合三百餘卒, 仍其前日伏兵處, 而把截賊路要衝. 崔峒八日遇賊得捷, 射殺三十餘人斬一級, 苦待大軍還集, 多積糧料, 然後大張聲威, 而前進之事, 一軍已爲定策矣.

장군이 후미에서 지휘하며 조용히 빠져나오자 왜군은 감히 공격할 마음을 접었습니다. 장군은 진영으로 돌아와 내일 왜군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 여겨 다시 ○○ 용사들을 잠입시켜 적의 동향을 염탐하게 하였는데, 적진은 ○○도 없이 적막하기만 하였고, 창원성 밖으로 나가보니 밤중에 오직 몇 군데에 ○○ 횃불 여섯 개만이 덩그러니 밝혀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군들은 모두 웅천(熊川)과 김해(金海) 등의 소굴로 들어갔다고 하자 장군은 더 이상 왜군들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 대군을 이끌고 큰일을 도모할 생각에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적진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장군은 단기필마로 의령의 여러 장수와 승장 유정(惟靜)[9]을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9일에 산음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10일 새벽, 도원수의 명을 받고 주둔지로 달려가 별장 최강, 안신갑, 김윤명(金允明)[10], 홍윤

9) 유정(惟靜: 1544~1610). 조선 중기의 고승, 승장(僧將)이 유정(惟政)을 말한다. 속성은 임(任), 속명은 응규(應奎), 자는 이환(離幻), 호는 송운(松雲), 당호는 사명당(泗溟堂), 별호는 종봉(鍾峯),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이다. 임진전쟁 때 의병을 모집하여 순안에 가서 청허(淸虛: 서산대사 휴정)의 휘하에 활약하였고 청허가 늙어서 물러난 뒤 승군(僧軍)을 통솔하고 체찰사 유성룡(柳成龍)을 따라 명나라 장수들과 협력하여 평양을 회복하고 도원수 권율과 함께 경상도 의령에 내려가 전공을 많이 세워 당상(堂上)에 올랐다. 1594년에 명나라 총병(摠兵) 유정(劉綎)과 의논하고 왜장 가토 키요마사를 울산 진중으로 세 번 방문하여 일본군의 동정을 살폈다.

장(洪胤張)[11] 등으로 하여금 각각 정예병 도합 300여 명을 인솔해 전날 매복했던 곳으로 간 다음 왜군의 요로를 끊게 했습니다. 최강이 8일에 왜군과 싸워 이겨서 30여 명을 활로 쏘아 죽이고 한 명의 수급을 벤 일, 대군이 다 모이기를 학수고대하며 군량미와 마초를 많이 비축한 후에 크게 기세를 떨치고 전진한 일 등은 전군에서 이미 책략을 정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彦勖則與崔琦準長在山陰, 或調兵調糧, 或以繼運繼援. 而所悶者, 湖糧不至, 故湖軍未易召聚也. 長城·光州·潭陽後運之糧, 自昨日始見一端來脈, 傾喜之所幸. 本道新都事鄭忠信來在此邑, 見將軍風度及一陣儀容, 不勝嘆服, 謂將有爲, 凡百措辦, 盡心力而爲之. 令右道稍完, 各官所在糧械, 不暇○○○監司而先自調出. 旬日內得本○○○弓矢數百餘部. 且以山陰縣監金○爲差使員, 令專掌此軍中大小事. 金也○可人也, 協力同事, 無有餘力. 以此三千餘卒, 近日得不至乏食之患矣.

저는 최기준(崔琦準)과 함께 오랫동안 산음에 머물면서 때론 병사를 조달하거나 군량을 조달하였고, 때론 [군량과 병력을] 운송하거나 지원하였습니다. 답답한 바는 호남까지 군량이 들어오지 않아 호남의 군사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성, 광주, 담양에서 나중에 지원할 군량의 조달이 어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본도(경상도)의 신임 도사(都事)[12] 정충신(鄭

10) 김윤명(金允明: 1545~1606): 본관은 순천(順天)이며, 현감 김박(金博)의 아들로, 1568년(선조 1) 생원시에 입격하여 안음현감(安陰縣監) 등을 지냈다. 유성룡(柳成龍)·정사성(鄭士誠)과 교유했다. 임진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생인 김윤안(金允安)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1) 홍윤장(洪胤張: 1559~?) 자는 언보(彦甫)이며 선조 17년(1584) 갑신(甲申) 별시 병과(丙科) 117위로 급제했다. 1602년에 무장으로 동래부사에 임명된 바 있다.

12) 도사(都事): 조선시대 감사의 보좌관으로 파견한 지방관을 말한다. 감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임무를 대행하고, 감사와 지역을 나누어 도내를 순시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업무 처리 과정

忠信)[13]이 이 고을에 와 있는데, 장군의 풍모와 진영의 기강을 보고는 감탄해 마지않더니, 장차 공을 세우리라 말하면서 심력을 다해 백방으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또 경상우도(慶尙右道)는 그나마 온전하니, 각 관의 소재지에 있는 군량과 무기를 ○○○ 감사에게 보고없이 먼저 조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열흘 내에 본 ○○○의 활과 화살 수백 여 묶음(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음현감 김○을 차사원(差使員)[14]에 임명해 이 군진의 대소사를 맡아보게 했습니다. 김○도 괜찮은 사람이라 협력하여 함께 일함에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덕분에 3천 여 명의 병졸이 근자에는 군량 부족으로 인한 근심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未知此後繼之者誰耶. 本道巡察今明到此縣云, 巡察亦豈無別樣措置之事耶? 將軍明日還本陣, 則不日調大軍而發. 繼運之事, 專在四邑倅曁僉左右措置如何矣. 更願劃分致力, 毋有後悔, 千萬至仰至仰. 大軍調發後, 則欲結陣於晉州形便之地, 取糧道於求禮或光陽等地. 所以然者, 劉摠兵在南原, 我國諸將在宜寧, 而只晉州一路空虛, 賊鋒當衝之地, 甚爲可慮. 而保障湖南, 莫如遮截晉州.河東連陸之地, 故勢不得已, 爲此計也. 未知僉算以爲如何? 似聞廷論亦如此云, 尤不可不然也.

앞으로 후임자로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본도의 순찰사가 오늘 내일 이곳 현(즉 산음현)으로 온다고 하는데, 순찰사께서 어찌 달리 조처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이튿날 본진에 돌아오셨다가

---

에서 발생하는 과오를 감사 대신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전임되거나 파직이 늘어났다.

13) 정충신(鄭忠信):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이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광주목사(光州牧使) 권율의 휘하에서 종군했다. 이 때 권율이 장계를 행재소에 전달할 사람을 모집했으나 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7세의 어린 그가 가기를 자청하고는 왜군으로 가득한 길을 단신으로 뚫고 행재소에 도착했다.

14) 차사원(差使員): 조선시대 각종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차출, 임명되는 관원이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군을 동원해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군량을 운송하는 일은 오로지 네 고을의 병사들과 좌우군 모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할 분담에 힘을 다해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군을 동원한 후에 진주에서 지형이 유리한 곳에 진을 치고 구례나 광양 등에서 군량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총병(摠兵) 유정(劉綎)[15]은 남원(南原)에 있고 우리의 여러 장수들은 의령에 있어 오직 진주 일로만이 텅 비어 있으니, 적의 칼날에 맞서게 될 땅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주나 하동처럼 육지와 이어져 있는 땅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형편상 부득이하여 이 계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계책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들리는 말에 조정의 정론 역시 이와 같은 듯하니, 더욱 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且剿賊期限, 不可以日月計, 亦不可以湖嶺些少輸入之糧爲恃, 而漠然不爲之別策也? 百策無如屯田. 以此大軍爲屯田, 則兵食相資之利, 當自此始矣. 大陣旣定, 則欲於陣近之地, 或山或野, 大擧屯田○○. 而水田則耕種已晩, 似無乃矣, ○○可種種爲之. 湖南山郡種穀數○種及赤豆、菉豆、木麥等物, 報監司優數題送事, 左右商確處之. 且梁山梁智

15) 유정(劉綎: 1558~1619): 자(字)는 성오(省吾)이며 남창(南昌) 사람이다. 명나라 때 왜와 맞서 싸운 걸출한 장수로서, "만명 제일 맹장(晩明第一猛將)"이라 일컬어졌다. 대장군도독(大將軍都督) 유현(劉顯)의 아들이다. 유정에 임진전쟁 때 활약한 상황은『명사』권247에 실려 있다. 그는 부총병(副總兵)으로서 출정하였는데, 이미 도성에서 도망친 왜군을 좇아 상주 조령에 이르렀다. 이때 왜군은 험지에 의지해 버티고 있었는데, 별장 사대수(査大受)와 조승훈(祖承訓) 등이 샛길로 괴산을 통과해 조령 뒤에서 왜군을 습격하자, 왜군은 놀라 부산포로 달아나 주둔했다. 유정과 조승훈 등이 대구와 충주에 주둔한 채 전라수군을 동원해 해방을 포진시키니, 조선의 정세가 평온해졌다. 얼마 후 이여송(李如松)이 유정에게 명해 합천에 주둔하여 왜군을 치라고 하니, 한 차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왜군은 조선의 왕자를 송환했다. 이에 만력 황제는 철군을 명령하고 유정과 오유충(吳惟忠)이 이끄는 7,600명의 군대만 남겨 두었다. 뒤에 총독 고양겸(顧養謙)이 극력 주장하여 유정과 오유충도 전후로 귀국했다.

容等, 煮鹽已至三四萬石云. 以此貿麥補軍資事, 並可預措如何? 軍中所用食鹽, 則此道都事, 以南海·昆陽等官所在鹽百餘石, 爲先題給, 將亦繼之云, 不必虞也. 近日將軍擧措及一軍模樣, 大槩如此. 餘在高明遙度如何耳.

또한 왜적을 섬멸할 기한을 날이나 달로써 계산할 수도 없고,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식량만을 믿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있으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가지 대책 중 둔전(屯田)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대군을 부려 둔전을 일군다면 병사의 식량을 직접 마련하는 이로움이 분명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대군의 군진이 정리되면 군진 가까운 곳, 산이든 들이든 둔전을 크게 일구어 ○○할 것입니다. 논은 이미 파종 시기가 지나서 어쩔 수 없는 듯하지만, ○○를 파종할 수 있으면 파종하겠습니다. 호남 산골 고을의 씨곡[16] 수○종 및 팥, 녹두, 메밀 등의 곡물들의 수량을 제송(題送)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일은 좌우와 상의하여 처리했습니다. 또 양산의 양지용(梁智容) 등이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300~400섬이나 얻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으로 보리를 바꾸어 군수물자를 보충하는 일 등도 미리 조치해두심이 어떠하십니까? 군중에서 먹을 식염은 본도의 도사(都事)가 남해, 곤양 등의 관청에 있는 소금 백여 섬을 우선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근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자에 장군께서 하신 일과 전군의 상황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고명하고 원대한 지략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所謂崔嵱·安信甲, 乃安典籍所募人, 而一當百之絶士也, 爲此軍左右別將也.

이 서찰에 나오는 최강, 안신갑은 전적 안희가 모집한 사람으로[17]

16) 씨곡: 원문은 '종곡(種穀)'으로, 땅에 심을 씨앗을 말한다.
17) 최강……사람으로: 최강은 안신갑의 외삼촌이고, 안신갑은 안희(즉 안전

일당백의 용사로서 우리 군에서는 좌우 별장을 맡고 있습니다.

(前缺)也. 議者曰: “朝鮮二百年恭順之效, 于斯驗矣!” 我朝救援屬國之恩典, 自開國已來, 又豈多見者哉! 書生于斯役也, 忝參經略幕府, 乃代經略而作露布焉.
文曰: 伏以天討有罪, 聿興吊伐之師. 聖德好生, 不戮歸降之寇, 恩威竝至, 剿撫兼施. 箕國藉是瓦全, 邊陲從玆鞏固, 四夷仰服, 萬姓歡呼. 竊惟關白平秀吉者, 日本逆倭, 東南巨寇, 倚山海爲富. 挾諸島以稱強, 戕賊國主, 漸移源氏之宸祧. 荼毒朝鮮, 放犯天朝之屬國, 掠民財焚居室, 慘酷深於九地.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음]
논자들이 말하기를 “조선이 200년 동안 공손히 순종해 온 보람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이 속국을 구원해 온 (명나라의) 은덕을 입은 것이 개국 이래로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이번 전쟁에서 외람되이 경략(經略)[18]의 막부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경략을 대신하여 이렇게 노포(露布)[19]를 짓습니다.

글은 이렇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코자 마침내 백성을 위로하고 죄인을 징벌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주상의] 성스러운 덕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 투항해 온 적을 죽이지 않고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드러내며 토벌과 위무를 겸하여 베풉니다. 기국(箕國: 조선)은 그 덕에 목숨을 보존했고, 동쪽 끝 땅덩어리는 이로써 공고해질 수

---

적)의 조카이다.
18) 경략(經略): 명나라 경략 송응창(宋應昌)을 말한다. 명·청대 때 변경에 중요한 군사적 임무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경략’을 두어 군대를 통솔하게 했다.
19) 노포(露布): 고대 산문의 문체(文體) 중 하나로, 봉함을 하지 않고 노출된 채로 선포(宣布)하는 포고문을 말한다. 주로 전승(戰勝)을 속보하는 데 사용되었다.

있었으며, 사방 오랑캐는 우러러 귀순했고, 만백성은 환호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관백(關白)[20] 타이라노 히데요시(平秀吉)[21]라는 자는 일본의 반역자이자 동남의 거대한 도적으로 산과 바다를 이용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 섬을 끼고 힘을 과시하며 국왕을 죽이더니, 점차 겐지(源氏)[22]의 조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선에 해독을 퍼뜨리고 천조(天朝)의 속국을 마음대로 침범해,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집을 불태웠으니, 그 참혹함이 구천보다 깊습니다.

擄王子發先塋, 仇冤不共戴天. 陳伸之報初傳, 方切隣封之儆, 朝鮮之告愈急, 更深門戶之虞. 是用殺伐以拯顚連, 誕擧安攘而定亂略, 事非獲已, 謀乃僉同. 臣媿非文武兼才, 叨承經略大任. 臨軒授鉞, 俾救民於水火之中, 分閫握機, 幸折衝於樽俎之外. 受命惶悚, 趨事腸乾. 發通津而出山海, 覽浩瀚之滄波, 歷遼陽而抵鳳城, 躋崔巍之高嶺. 因地而制宜, 設險而守要. 浚墻垣深溝塹, 雲屯霧密, 嚴燧燧謹坼堠, 礬布珠聯. 先爲內固之防, 旋擧東征之役, 乃渡鴨綠, 乃營朝鮮, 神武播揚, 天威丕振. 鷹鸇鵬鶚, 先雲氣而度斗南, 貔虎熊羆, 挾風威而踰嶺表.

또 왕자들을 포로로 잡고 선대의 무덤을 파헤침으로써[23]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진언한 보고가 처음 전해져 이웃 봉국(封國)의 경계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에, 조선의 보고가 더욱 다급해지자 문호(門戶)의 근심도 더욱 깊어갔습니다. 이에 정벌로써 위태로운 나라를 구제하고, 거사를 일으켜 적을 물리치고 난을 평정했으니,

---

20) 관백(关白): 천황을 대신해 정무를 총괄하는 관직으로 문신귀족의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종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으나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무신으로서 처음으로 관백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21) 타이라노 히데요시(平秀吉, 1537~1598):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22) 겐지(源氏): 미나모토[源]라는 성을 가진 씨족을 말한다.
23) 왕자들을……파헤침으로써: 임해(臨海), 순화(順和) 두 왕자가 함경도에서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의 포로가 된 것과 왜군이 한양의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도굴한 것을 말한다. 모두 1592년에 벌어진 일인데, 1593년에는 왕자들이 석방되었고 도굴사건의 전모도 조정에 알려졌다. 당시 경상도 남쪽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듯하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모두 이 도모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문무를 겸비한 인재는 못 되지만 외람되이 경략의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황제께서 친히 임하시어 부월(斧鉞)을 하사하시며 전란으로 고생하는 백성을 구하라 하셨고, 도성 밖의 임무를 나누어 맡기며[24] 병권을 주면서 술자리 밖에서 적의 창끝을 꺾어주길 바랐습니다.[25] 저는 황제의 명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애간장이 다 마르도록 달려 나갔습니다. 통진(通津)을 출발해 산해관(山海關)을 나와 넘실대는 푸른 물결을 바라보았고, 요양(遼陽)을 지나 봉성(鳳城)에 도착해 높디높은 고개에 올랐습니다. 지세에 맞게 마땅한 정비를 갖추고, 험지를 만들어 요새를 지켰습니다. 담을 높게 쌓고 해자를 깊이 파니 군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봉수를 정비하고 망루를 지키니 그 모습이 마치 바둑판을 펼쳐 놓은 듯 구슬을 꿰어놓은 듯했습니다. 먼저 안을 견고하게 방비한 뒤 이내 동쪽 정벌에 올랐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군영을 치니, 신무(神武)함이 떨쳐지고 천자의 위엄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매와 독수리, 붕새와 물수리처럼 구름보다 먼저 두만강을 건너고, 표범과 큰 곰처럼 바람 같은 위세를 떨치며 영표(嶺表: 嶺南)를 넘었습니다.

鐵騎雲馳, 見旌旗之蔽野, 步兵虎奔, 聞刀劍之崢嶸. 揮金戈止白, 威信昭而士心奮, 擊鼉鼓轟雷霆, 賞罰公而號令以明. 列爲八陣, 分布三軍.

---

24) 도성……맡기며: 원문은 '분곤(分閫)'이다. 이 말은 임금이 도성 밖으로 출병하는 장수를 떠나보낼 때 수레바퀴를 밀어주며 "성곽의 문지방 안은 과인이 처리할 테니, 그 바깥은 장군이 알아서 처리하라(閫以內者, 寡人制之, 閫以外者, 將軍制之)"(『사기(史記)』「풍당열전(馮唐列傳)」)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곤외지임(閫外之任)이란 문지방 밖의 임무, 군사를 이끌고 경외로 싸우러 나가는 장군의 직임을 이르던 말이다.

25) 술자리……바랐습니다: 원문의 '절충(折衝)'은 적의 창끝을 꺾는다는 뜻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와 교섭하거나 담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준조(樽俎)'는 술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준조절충'이란 술자리에서 조용한 외교로 유리하게 일을 끝맺음을 뜻한다. 여기서 '술자리 밖에서'라고 표현한 것은 조용한 담판이 아니라 직접 전투를 통해 적을 이기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配天地而合風雲, 翔鳥鮀而變龍虎. 中協握奇而左右爲之羽翼, 中軍總攝而前後爲之奮騰. 摩天嶺之群峯嶙峋, 潑三江之巨浪洶湧. 黑松林之森陰, 當白晝而如晦, 杜丹峯之矗峙, 聚積雪而如銀. 鳥道懸截, 猿猱仰而生悲, 樹木蒙密, 蠛蟻過而猶礙, 蠢彼賊倭, 肆焉負固, 築木石爲樓櫓, 穿土穴爲窟窠. 夜則突衝, 晝則拒戰, 矢鏑雨下, 鳥銃蝟飛. 誓我軍援登, 復懸重賞以勵激, 驅虎賁而咆哮, 馳龍騏○以蹴踏.

철기(鐵騎)가 구름처럼 몰려오자 깃발이 온 들판을 뒤덮고, 보병이 호랑이처럼 치닫자 챙챙 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빛 번쩍이는 창을 휘둘러 태양이 멈춤에 위엄과 신망이 밝아져 사기가 충천했고, 타고(鼉鼓)[26]를 두드려 우레 같은 소리가 남에 상벌(賞罰)이 공정해지고 호령이 분명해졌습니다. 팔진(八陣)[27]을 펼쳐놓고 삼군을 나누어 포진하였으니, 천진(天陣), 지진(地陣)과 배합하고 풍진(風陣), 운진(雲陣)을 혼합했으며, 상조진(翔鳥陣), 사반진(蛇蟠陣)을 양 날개로 삼고 비룡진(飛龍陣), 호익진(虎翼陣)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중영(中營)[28]이 지휘권을 쥐면 좌영과 우영이 날개가 되었고, 중군(中軍)이 총괄하면 전영과 후영이 분격했습니다. 마천령 봉우리는 삐죽삐죽 험준했고, 발저강(潑豬江)[29]은 사납게 일렁거렸습니다. 검은 소나무 숲은 삼엄해 대낮에도 그믐밤 같이 어둡고, 모란봉은 드높아 쌓인 눈이 은 같았습니다. 조도(鳥道)[30]는 아득히 높아 원숭이도 쳐다

26) 타고(鼉鼓): 악어가죽으로 싸 만든 북으로, 소리가 악어의 울음소리와 같다고 한다.

27) 팔진(八陣): 중국 고대의 인물인 풍후(風后)가 지은 『악기경(握奇經)』에서 기인한 진법으로, 제갈량이 이를 바탕으로 전투 대형으로 여덟 가지 진법을 완성하였다. 풍후의 『악기경』에는 천진(天陣), 지진(地陣), 풍진(風陣), 운진(雲陣)의 네 진을 정진(正陣)이라고 하고, 호익진(虎翼陣), 사반진(蛇蟠陣), 비룡진(飛龍陣), 조상진(鳥翔陣)의 네 진을 기진(奇陣)이라 하였다. 이러한 네 정진과 기진을 팔진이라 하였다. 이 팔진을 바탕으로 제갈량은 돌을 가로와 세로로 늘어놓아 팔행(八行)의 방진(方陣)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팔진법으로 이는 황제(黃帝)의 구진도(九陣圖)와 같았다고 한다.

28) 중영(中營): 원문은 '중협(中協)'으로, 전·후·좌·우·중 등 다섯 개 영(營) 중의 중영, 즉 중군(中軍) 진영을 말한다.

29) 발저강(潑豬江): 파저강(婆豬江)을 말한다. 지금의 동가강(佟佳江)이다.

보며 슬퍼하고, 나무들은 빽빽하게 자라 있어 개미도 지나가기 어렵거늘, 저 어리석은 왜적들은 제멋대로 험지에 의지해 나무와 돌을 쌓아 망루를 만들고, 땅을 파 굴을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몰래 기습하고 낮이면 맞서 싸웠으며, 화살을 비 오듯 퍼붓고 조총을 고슴도치처럼 쏘아댔습니다. 아군 앞에서 맹세하고 길에 오른 다음, 높은 포상금을 내걸어 병사들을 고무하니, 날랜 병사[31]들이 말 타고 가며 포효했고, 준마를 몰며 적진을 짓밟았습니다.

神鎗發而火雷○○, 信砲擧而山嶽震搖. 彎滿月之烏號, 揮倚天之長戟, 疊破重關之險, 連拔堅守之城, 粉其骨而塗其胸, 剖其心而碎其首. 壯強就戮, 老弱奔逃, 若土崩而燼滅, 猶瓦解而氷消. 乘破竹之勢, 逐竄蒿之夷, 平壤立平, 開城亟下. 餘孽如蟻蝗之聚, 擬迅掃於智異.釜山, 賊黨若爝火之然, 期撲滅於臨津漢水. 率督大師, 進逼城下, 逐鯨鯢於涸海, 困虎兕於押中, 頃刻偸生, 須臾延命. 因駐我師而設備, 欲致彼賊而就擒. 某等領精兵而直前, 截戰碧蹄之勁賊, 某等率驍騎以力戰, 奮剿龍山之先鋒. 某等潛統步卒, 夜侵果川, 伏奇設險, 以邀其歸路, 某等翼帶苗兵, 晝登北嶽, 遊揚上下, 以躡其後踪.

신총(神鎗)을 발사하자 번개가 ○○하고, 호포(號砲)를 쏘자 산악이 뒤흔들렸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근 오호궁(烏號弓)[32]을 당기고, 하늘을 찌를 듯한 장극(長戟)을 휘두르며, 거듭 중요한 관문을 깨고 연달아 견고한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뼈를 부수고 가슴을 짓밟았으며, 심장

30) 조도(鳥道): 나는 새만이 갈 수 있을 만큼 좁은 산속 길을 말한다.
31) 날랜 병사: 원문은 '호분(虎賁)'이다. 호랑이처럼 날래고 용맹한 병사를 말한다.
32) 오호궁(烏號弓): 『회남자(淮南子)』「원도훈(原道訓)」 고유(高誘)의 주에 따르면 "황제는 형산의 정호에서 솥을 주조하고, 득도하여 신선이 되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신하가 활을 당겨 용을 쏘았지만 황제를 내려오게 할 수 없었다. '오(烏)'는 어(於)이고 '호(號)'는 '호(呼)'이다. 이때에 활을 껴안고 통곡했다고 해서 이 활을 오호궁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黃帝鑄鼎於荊山鼎湖, 得道而仙, 乘龍而上. 其臣援弓射龍, 欲下黃帝不能也. '烏', 於也. '號', 呼也. 於是抱弓而號, 因名其弓爲烏號之弓也)."

을 가르고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건장한 장정들은 도륙되고, 늙고 약한 자들은 달아나니, 땅이 무너진 듯, 불로 모든 것이 타버린 듯, 기와가 깨진 듯, 얼음이 녹아버린 듯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토굴로 달아나는 오랑캐를 쫓아가, 평양을 즉시 평정하고 개성도 순식간에 함락했습니다. 살아남은 잔당들이 개미 떼처럼 모여 있지만 지리산과 부산에서 깨끗이 소탕하고, 적의 무리가 횃불처럼 타오르지만 임진강과 한강에서 쳐부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군을 이끌고 성 아래까지 다가가, 고래를 마른 바다로 쫓아내고 범과 들소를 우리 안에 잡아 가두니, 저들은 잠시 목숨만 부지한 채 겨우 겨우 연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켜 군비를 가다듬고 저들을 불러들여 사로잡고자 했습니다. 아무개 등은 정예병을 이끌고 직진하여 벽제에 있는 강적들을 단박에 죽였고, 아무개 등은 날랜 기병을 인솔하여 역전 끝에 용산의 선봉대를 섬멸했습니다. 아무개 등은 보병을 몰래 통솔해 밤에 과천을 친 다음 험지에 매복해 있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켰고, 아무개 등은 묘병(苗兵)[33]을 양 옆에 끼고 나가 낮에 북악에 올라가 위아래를 두루 살피며 그 뒤를 밟았습니다.

火器有轟雷毒龍, 觸之而阜咸流血, 異術有神將天兵, 遇之而首飛飛魂. 坐困王京, 無異釜魚之欲求活, 徘徊窮穴, 一似穽獸之望全生. 力彈勢孤, 輸誠效悃. 倭將某人等, 跪轅門而求款, 欲詣闕以稱臣. 細詰起兵緣由, 初無入犯天朝之意, 詳責拒敵過罪, 惟以不知天兵爲辭. 幾千里漁鹽繁衍之地, 願返輿圖, 數十種鵬題駃舌之民, 求通化域, 言甚懇切, 情甚悲哀. 臣某念王者以不殺爲威, 四夷以不治爲治, 暫爾頓兵江上, 還當許其自新. 移檄以諭酋長, 無不稽首稱仁, 行文以示諸倭, 無不仰天作頌. 於某月某日離王京, 於某月某日至海上.

---

33) 묘병(苗兵): 중국의 사천(四川)과 운남(雲南) 일대에서 모집한 남군을 일컫는 말로 이 지역에 살던 묘족들 때문에 묘병이라 불려졌다. 김육(金堉)이 지은 「이순신 비명(碑銘)」에 “9월에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이 중국의 묘병(苗兵)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교(曳橋) 북쪽에 진을 치고서, 10월에 수군과 함께 왜적을 협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화기(火器)로는 굉뢰(轟雷)와 독룡(毒龍)이 있어 한번 건드리면 언덕이 무너져 내려 유혈이 낭자하고, 기이한 전술을 지닌 신장(神將)과 천병(天兵)이 있어 이들과 만나면 머리가 날아가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왕경(王京)에 갇혀 있는 저들의 신세는 살기를 바라는 솥 안의 물고기와 다를 바 없고, 궁벽한 동굴에서 방황하는 모습은 함정에서 목숨을 부지하려 하는 짐승과 같더니, 군력이 고갈되고 전세가 고립되자 진심으로 항복의 뜻을 밝혀 왔습니다. 왜장 아무개 등은 군영에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애걸하며, 궁궐을 찾아가 신하라 칭하겠노라 간청했습니다. 군대를 일으킨 이유를 자세히 따져 묻자 천조(天朝)를 범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고, 천병(天兵)에 감히 맞선 허물을 따지자 그저 천병인지 몰랐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물고기와 소금이 넘쳐나는 몇 천 리의 땅[34]을 중국의 판도로 돌려놓겠다고 했고, 수십 가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백성[35]들을 중화와 오고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몹시 간절하고 사정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이에 신은 왕은 살인하지 않음으로 위엄을 삼고, 사방 오랑캐는 다스리지 않음으로 다스림으로 삼는다는 말에 유념하여, 잠시 강가에 군대를 주둔했다가 돌아가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격문(檄文)을 보내 추장을 깨우치자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인자함을 칭송했고, 글을 써서 여러 왜인들에게 내보이자 모두 하늘을 우러르며 칭송했습니다. 아무 달 아무 날에 도성을 떠나 아무 달 아무 날에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狼奔獵逐, 望馬島以忙趨, 電掣星馳, 越漢江以飛渡. 追之境外, 驅之海中, 無事坑卒屠城, 效言七擒七縱, 恢復三千餘里, 收取二十餘城. 寬宥迫脅, 招撫流離, 從山谷而投城市者, 動以億計, 出巢穴以歸故土者, 奚啻萬人. 奉宣恩命, 咸得再生, 掃魑魅於炎荒, 息妖氛於瘴海. 某等載稽日本, 素號強倭, 復考朝鮮, 原多險隘. 唐太宗不能得志於高麗, 每患山川之險阻, 我列聖不能忘情於日本, 亦惟狡猩之難馴, 矧與越異國以提

34) 물고기와……땅: 조선을 가리킨다.
35) 수십……백성: 일본 사람들을 가리킨다.

兵? 幸能因其險以取勝, 旣彰伐暴之大義, 又成懷遠之深仁, 功已過於唐宗, 業有光於列祖.

사냥에 쫓기는 이리처럼 대마도를 바라보며 황급히 달아났고, 번개가 번쩍이고 별똥이 내리치듯 나는 듯 한강을 건넜습니다. 경계 밖까지 왜구를 추격해 바다로 몰아냈지만, 병졸을 생매장하거나 성 안 백성을 도륙하거나 하지 않고 칠종칠금(七縱七擒)[36]을 본받아 삼천 여 리를 수복하고 20여 개의 성을 탈환했습니다. 압박하고 위협하던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방을 떠돌던 자들을 불러 위무하니, 산골짜기에서 성시(城市)로 투항한 자가 억 명을 넘었고, 도적의 소굴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온 자가 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황제의 은혜로운 명령을 널리 펼침에 모두들 다시 소생하였고, 남방의 황야에선 도깨비들이 일소되고 장기(瘴氣) 가득한 바다에선 요사스런 기운이 사그라졌습니다. 우리들이 서적을 통해 일본을 조사해보니 일찍이 강적 왜구라고 불리었고, 다시 조선을 찾아보니 원래 험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당나라 태종도 고구려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늘 산천의 험준함을 우환으로 여겼고, 우리 열성조께서도 일본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해 교활하고 사나워 길들이기 어려움을 걱정했습니다. 하물며 이국을 넘어가 병사를 이끄는 일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다행이 험준한 지세 덕에 승리하여 폭도를 토벌한 대의를 밝힘과 동시에 먼 이방을 품어주는 깊은 은혜를 이루었으니, 그 공이 당 태종을 넘어서고 그 업적이 열성조보다 찬란합니다.

勘定之速, 連三年而克鬼方, 斬逐而還, 陋六月之伐玁狁. 雪屬國之遺恨, 解斯民之倒懸, 朝野歡騰, 感仁義之竝用, 華夷傳頌, 信王覇之兼資. 是皆天威獨繼於宸衷, 廟算效乞於當宁. 臣某等曾無汗血之功, 獲

36) 칠종칠금(七縱七擒): 『삼국연의(三國演義)』 제87~90회에 나오는 이야기로, 제갈량(諸葛亮)이 맹획(孟獲)을 일곱 번 사로잡고 일곱 번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이에 맹획은 마침내 진심으로 승복하면서 더 이상 대항하지 않았으며, 제갈량에게서 촉한(蜀漢)의 관직을 받아 후에 어사중승(御使中丞)에 이르렀다.

奏經略之績. 外服倭夷, 永絶東南大患, 內全弱國, 聊爲東北維垣. 功成而告廟社, 仰答神靈, 開貢以通朝獻, 用昭大典. 新萬年之治化, 樂四海之淸寧. 臣無任踴躍慶抃之至, 謹露布以聞.

신속히 방책을 정하여 삼년 만에 귀방(鬼方)을 물리쳤고,[37] 수급을 베고 추격한 뒤 돌아와 겨우 6개월 만에 험악한 오랑캐를 토벌하였습니다. 이로써 속국의 여한을 씻어내고 백성들의 근심을 풀어주니, 조야가 뛸 듯이 기뻐하며 인과 의를 함께 베푼 것에 감격했고, 화이(華夷)가 함께 칭송을 전하며 왕도와 패도를 겸한 자질에 신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의 위엄이 홀로 중국에 이어진 것이요, 종묘의 대계가 금상(今上)에게서 발현된 것입니다. 신 등은 일찍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린 공로도 없거늘, 경략의 업적을 상주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일본을 굴복시켜 동남쪽의 큰 우환을 영원히 근절시켰고, 안으로는 약소국을 온전하게 잘 지켜내 동북쪽의 울타리가 되게 하였으며, 공을 이룬 뒤 종묘사직에 고함으로써 우러러 신령께 답했고, 통공(通貢)을 열어 조헌(朝獻)[38]을 통하게 함으로써 큰 법도를 밝혔습니다. 만년의 치화(治化)가 새로워짐에 사해의 태평성세가 실로 즐겁습니다. 신은 이토록 크나큰 기쁨을 이길 길 없어 삼가 노포로써 아룁니다.

---

37) 귀방(鬼方)을 물리쳤고: 『주역』「기제(旣濟)」에 "고종이 귀방을 침에 삼년 만에 물리쳤다.(高宗伐鬼方, 三年克之)"는 말이 나온다. '귀방'은 본래 서방의 오랑캐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일본을 대신 받는 말로 사용되었다.

38) 조헌(朝獻): 제후국이나 속국이 대국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 2. 겸삼도수군통제사 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왜적을 불태워 무찌른 일로 올린 장계[1)]
## (三道水軍統制使李舜臣狀啓草)

兼三道水軍統制使, 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臣李舜臣謹達爲焚滅事. 巨濟.熊川之賊, 數多作綜, 鎭海.固城等處, 恣意出入, 焚蕩閭家, 殺掠人物是如爲白去乙, 乘其往來, 相勢剿捕次, 以各處通望峯頭望將定送, 瞭察賊船, 登時馳告亦爲白有如乎. 今三月初三日未時, 卽到付固城境碧方望將諸謹國馳報內: "當日平明, 倭大中船幷三十一隻, 永登浦始出, 二十一隻段固城境唐項浦, 七隻段鎭海境吾里梁. 三隻段猪島爲等如指向." 是如馳報是白乎等用良. 臣卽發傳令于慶尙右水使元均, 全羅右水使李億祺等處, 更嚴申約, 一邊巡邊使李蕡處, 依前約束, 領軍馬進剿下陸之賊, 亦移文後. 同日戌時, 三道諸將無遺率領, 閑山洋中發船, 乘暗潛行, 二更量, 巨濟內面紙島洋中經夜.

겸삼도수군통제사 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 신 이순신은 적군을 섬멸한 일을 삼가 전해드리옵니다. 거제와 웅천의 수많은 적들이 여러 척의 배를 모아 대오를 지어서는[2)] 진해와 고성 등에 제멋대로 출몰하며 민가를 불태우고 사람을 학살하며 물건을 약탈한다고 하기에 그 사이를 오가며 형세를 엿보아 토벌하던 참에, 각 처의 망보는 산봉우리에 망장(望將)을 정하여 보낸 다음 적들의 배를 정확히 살피다가 즉시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달 3월 초3일 미시(未時: 오후 1시~3시)에 고성 땅 벽방산의 망장 제한국(諸漢國)[3)]이 보내온 보고가

---

1) 장계: 조선시대 관찰사·병사·수사 등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이다.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2) 대오를 지어서는: 원문은 '작종(作綜)'인데 여러 척의 배를 모아서 대오를 짓는 일을 말한다.
3) 제한국(諸漢國): 『난중일기』 1594년 2월 29일자 기록에 "벽방산의 망장

당도했는데, “당일 새벽에 왜군의 대선(大船)과 중선(中船) 31척이 나란히 [거제 장목면] 영등포를 출발하였는데, 그 중 21척은 고성 경내 당항포(唐項浦)로, 7척은 진해 경내 오리량(吾里梁)으로, 3척은 저도(猪島)로 향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은 그 즉시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4] 전라우수사(羅右水使) 이억기(李億祺)[5] 등에게 전령하여 다시금 엄하게 단속하게 하는 한편, 순변사(巡邊使)[6] 이빈(李蘋)[7]에게도 지난 번 약조대로 군마(軍馬)를 거느리고 전진하여 뭍

---

(望將) 제한국(諸漢國)의 보고내용에……”라는 기록이 보인다. 제한국은 칠원 사람으로 자는 성극(成克), 호는 거성(巨星)이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제근국(諸謹國)은 제한국의 오기로 보인다.

4) 원균(元均: 1540~1597). 원균은 임진전쟁 때는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정유재란 때는 수군통제사로, 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임진전쟁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경상우수사로 임명되었다. 부임지의 상황은 전선 7~8척에 수군의 기강도 해이해진 상황이어서 주변을 돌며 수군 모집과 정비에 힘썼다.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전라좌수영의 이순신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남해 일대에서 항전했다. 조정의 출전 명령을 받은 이순신의 지원을 받아 옥포 등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옥포해전에 대한 공으로 조정에서 이순신보다 1품계 아래의 관직을 내리면서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이후 이순신이 모함에 몰려 투옥되자 경상우수사 겸 경상도통제사로 임명되었다. 정유재란 때 칠천량에서 삼도수군을 이끌고 싸워 대패했으나, 사후 두 차례 전쟁의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으로 책정되었다.

5) 이억기(李億祺: 1561~1597):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에 올랐다. 함경도에 가서 야인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1591년(선조 24) 순천부사가 되었다. 그 뒤 전라우수사가 되었는데,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전라좌수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원균 등과 합세하여 한산도·안골포·부산포 등지에서 일본수군을 격파하는 활약을 했다. 1596년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죄목으로 잡혀갔을 때 조정에 편지를 보내어 이순신의 무죄를 강력히 변론했다. 1597년 일본군의 재침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은 백의종군하고 있었으므로, 통제사 원균과 합세하여 칠천량에서 일본수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일본군에게 패하고 원균과 함께 전사했다. 시호는 의민이다.

6) 순변사(巡邊使): 조선시대 변방의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순찰하기 위하여 왕명을 띠고 파견되던 특사. 군국에 관계되는 중요한 직임인 만큼 파견되는 특사는 주로 중신으로서, 조정의 중의(衆議)를 거친 뒤에 보내졌다.

7) 이빈(李蘋: 1537~1603):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충주에서 신립(申砬)의 휘하에 들어가 싸웠으나 패했다. 그 뒤 김명원(金命元)의 휘하에 들어가 임진강을 방어하다가 다시 패하고, 평안도병

에 오른 적을 토벌하라고 후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같은 날 술시(戌時: 오후 7시~9시)에 삼도의 여러 장수들을 남김없이 통솔하여 한산도 바다에서 배를 출발한 다음, 어둠을 틈 타 몰래 행군하였으며, 이경(二更: 저녁 9시~11시) 즈음에는 거제도 안쪽 지도(紙島) 바다 가운데서 밤을 보냈습니다.

初四日曉頭, 留戰船二十隻於見乃梁, 以備不虞, 又抄三邑輕銳船三十隻, 舟師助防將魚泳潭定將, 同唐項浦·吾里梁賊船駐泊處, 潛師馳送爲白遣. 臣與李億祺.元均等段, 統率大軍, 永登·場門賊陣前洋是白在甑島洋中, 鶴翼列陣, 橫截一海, 前示兵威, 後遏賊路次. 倭船十隻出自鎭海.船滄, 緣岸行舟爲白去乙, 助防將魚泳潭所率諸將等, 一時突進, 左右挾攻, 賊倭竝只棄船登陸. 船隻無遺撞破焚滅. 鹿島萬戶宋汝悰段, 倭船被擄人固城正兵沈居元, 鎭海官婢孔今, 咸安良女南月等奪還. 又被擄二名段, 賊倭斬頭棄去爲白有齊.

초4일 첫새벽에는 전선 20여 척을 견내량(見乃梁)[8]에 남겨두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였고, 세 개 읍의 가볍고 빠른 배 30척을 동원한 뒤 수군 조방장(助防將) 어영담(魚泳潭)[9]을 인솔 장수로 삼아 당항포

---

마절도사로 평양을 방어했으나 성이 함락되자 이원익(李元翼)을 따라 순안(順安)에서 싸웠다. 1593년(선조 26) 1월에 명장 이여송(李如松)이 평양을 탈환하자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 군대에 종사했으며, 이일(李鎰)을 대신하여 순변사(巡邊使)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2월 권율(權慄)이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왜군을 크게 격파하고 파주산성(坡州山城)으로 옮기자 권율과 함께 파주산성을 수비했다. 같은 해 왜군이 진주와 구례지방을 침략할 때 남원을 지켰다. 그러나 당시 진주성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대죄종군(戴罪從軍)하다가 1594년 경상도 순변사에 복직되었다. 이듬해 상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물러났다가 임진전쟁이 평정된 뒤 포도대장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8) 견내량(見乃梁): 견내량은 거제도와 통영 반도가 만들어낸 긴 수로로서 길이는 약 3km, 폭은 약 300 내지 400m의 좁은 해협이다.

9) 어영담(魚泳潭: 1532~1594): 진해(鎭海) 여러 진(鎭)의 막하(幕下)가 되어, 바닷길의 험준함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여 선박의 출입을 자유롭게 했다. 1592년(선조 25) 5월 광양현감으로서 이순신의 수로를 인도했다.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함께 거제 앞바다에서 원균과 합세하여, 옥포 앞바

와 오리량 등 적선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군사를 몰래 급파했습니다. 신은 이억기·원균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영등포와 장문포에 있는 적진의 앞 바다인 증도 바다 가운데서 학익진을 펼치어 바다를 가로 막음으로써 앞으로는 군사의 위세를 보이고 뒤로는 적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왜선 10척이 진해와 선창[10]으로부터 나와 해안을 따라 저어가거늘, 조방장 어영담 인솔 하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일시에 돌진하여 좌우로 협공하니, 왜적들이 모두 배를 버리고 뭍에 올랐습니다. 이에 배들을 남김없이 부수어 불살랐습니다. 녹도만호(鹿島萬戶) 송여종(宋汝悰)[11]은 왜선에 사로잡혀 있던 고성의 정병(正兵) 심거원(沈居元)과 진해의 관비 공금(孔今), 그리고 함안 양가집 규수 남월(南月) 등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이들 외에 사로잡혔던 2명은 왜적들이 머리를 베어서는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唐項浦入泊倭船二十一隻, 望見煙焰, 莫不摧心. 自知勢窮, 下陸結陣是如爲白去乙, 巡邊使李贇處, 更良催促移文爲白遣, 又令魚泳潭, 領其所率諸將, 直向同處次. 適音汐水已退, 日且奄暮, 同唐項浦江口把截經夜. 翌日是在初五日曉頭, 臣及李億祺段結陣大洋, 以應外變, 魚泳潭段領諸將直入同浦爲白有如乎, 同日未時到付魚泳潭馳報內, "賊倭盡爲逃遁, 倭船二十一隻良中, 蓋瓦及王竹滿載爲有去乙, 竝只撞破焚滅"爲乎所. 馳報及全羅右水使李億祺段置. 其諸將所報據, 亦爲一樣馳

---

다에서 왜선 30여 척을 불사르고 적진포(赤珍浦)에서 왜선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듬해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에 의하여 조방장(助防將)에 임명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노량해전과 어선포해전(於善浦海戰)에서 큰 공을 세워, 그 전공으로 통정대부로 당상관이 되었다. 그러나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책록(策錄)되지 않아 백성들이 애석해했다.

10) 선창: 경상남도 사천 선진(船津)의 다른 이름이다.

11) 송여종(宋汝悰: 1553~1609):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낙안군수(樂安郡守) 신호(申浩)의 막료로서 종군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을 따라 한산도 싸움에서 무공을 세웠다. 또 왕에게 올리는 이순신의 보고문을 가지고 밤새 적진 사이를 돌파하여 행재소(行在所)에 이른 공으로 술잔을 하사받고 녹도만호(鹿島萬戶)에 임명되었다. 159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7년 원균의 휘하에 있다가 한산도에서 패했지만,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기용되자 그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報是白置有亦. 假島殘孽, 莫敢抗戰, 棄船宵遁爲白有臥乎所.

당항포로 들어가 정박해 있던 왜선 21척은 타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고는 모두 기세가 꺾였습니다. 스스로 궁지에 몰렸음을 알고 뭍에 올라 진을 치거늘, 순변사 이빈(李蘋)에게 다시금 독촉 이문(移文)을 보냈고, 또 어영담에게 명령하여 휘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곧장 그곳으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저녁 조수가 이미 빠지고 날조차 어두워진 터라 당항포 포구를 가로질러 막고서 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인 초5일 새벽에 신과 이억기는 큰 바다에 진을 치고 밖에서 생겨날 변고에 대비했고, 어영담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포구 안으로 곧장 들어갔는데, 그날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즈음에 당도한 어영담 등의 급보에 "왜적들은 모두 도망쳤고, 왜선 21척에는 기와와 왕죽이 가득 실려 있기에 모조리 깨뜨리고 불태웠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바, 전라우수사 이억기에게도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장수들의 보고해온 내용도 똑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왜의 잔당들은 감히 항전하지 못하고 배를 버린 채 밤중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當此之時, 水陸相應, 一時合攻, 則庶可殲滅. 而水陸駐兵, 相距隔遠, 未易馳通, 使籠中之賊, 未得全捕, 極爲痛憤爲白在果, 固城·鎭海·橫川之賊. 自是以後, 度有顧忌之慮, 未能恣意出入是白齊. 同舟師一軍, 全數合勢, 充滿大洋, 炮聲震天, 東西變陣, 佯示掩擊之狀, 則永登·場門·薺浦·熊川·安骨浦·加德·天城等地雄據之賊, 恐其直擣, 伏兵假募乙盡數自焚, 畏脅窟穴, 頓絶形顔有白如乎. 初六日, 固城境阿自音浦發船, 從風懸帆, 首尾相接, 巨濟邑前胸島前洋直向次, 南海縣令奇孝謹馳報內: "當日午時量, 倭小船一隻固城邊下陸, 招呼我船爲去乙, 觀其形狀, 則或着紅衣, 或着靑衣, 唐人二名, 倭人八名是乎所."

이러한 때에 수군과 육군이 호응하여 일시에 협공했더라면 적을 거의 섬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군과 육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히 소통할 수 없는 탓에 새장 안의

적군을 모조리 잡아들이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분통하지만, 고성·진해·횡천(橫川)[12]에 있던 적들이 이제부터는 뒤를 살피며 삼가는 마음이 생겼을 터, 제멋대로 드나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날 수군 전원이 합세하여 대양을 가득 메우고 포성을 울려 하늘을 뒤흔들며, 동서로 진을 바꾸면서 짐짓 공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영등포(永登浦)·장문포(場門浦)·제포·웅천(熊川)·안골포(安骨浦)·가덕(加德)·천성(天城) 등지에 웅거하던 적들이 바로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엎드려 지내던 막집을 모조리 제 손으로 태웠고, 위협이 무서워서 굴속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자취도 그림자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초6일에 고성 땅 아자음포(阿自音浦)에서 출항하여 순풍에 돛을 달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거제읍 앞 흉도 앞 바다로 향하려는 차에 남해현령 기효근(奇孝謹)[13]이 급보를 보내왔는데, "당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경에 왜의 소선 1척이 고성 변계에서 뭍에 올랐는데, 우리 배로 오도록 불러놓고 보니 그 행색이 혹은 붉은 옷을 입고 혹은 푸른 옷을 입었으며, 명나라 사람이 둘, 왜인이 여덟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馳報及唐人所持牌文竝以輸送爲白有去乙, 臣看審, 則天朝都司府譚爲宣諭事. 照得: "本府齎捧皇帝聖旨, 前來宣諭: '日本諸將莫不傾心歸化, 忠順效誠, 昨已具表奏請, 聽候明旨冊封. 卽具大事委來, 日本各將俱欲捲甲息兵, 盡歸本國. 爾朝鮮亦免兵戈之擾, 獲昇平之樂. 豈非兩國之利益乎. 近據哨報云. 爾朝鮮兵船, 近駐日本之營, 且將伊採柴之人殺死, 舡隻燒毁. 日本諸將俱要出兵, 與爾相殺. 本府與行長將軍, 再三禁止, 故不發兵. 擬合遣牌禁諭, 爲此牌仰朝鮮各官知悉. 爾各兵船

12) 횡천(橫川): 경상남도 하동군에 있는 지명이다.
13) 기효근(奇孝謹: 1542~1597): 임진전쟁 때 경상우도수군절도사 원균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해전에 참가했다. 그때마다 선봉이 되어 큰 공을 세웠으므로 통정대부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병으로 현령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적병을 만나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추록되고 개백군(皆伯君)에 추봉되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速回本處地方, 毋得近住日本營寨, 攪擾生事, 以起釁端. 若爾等回來斫伐竹木, 幷無他意, 斫完速回. 若執迷不省, 駐箚于此, 仍復追殺零倭. 奪取船隻, 本府卽具呈經略宋總督軍門, 顧提督李摠兵劉及移文于爾國王. 嚴行査究. 各官軍召禍起釁之罪, 莫可逭矣. 爾朝鮮各官, 俱通文達理, 暗曉時務者故, 本府諭諭曉諭, 牌到卽具文回報. 須至牌者.' 右牌仰朝鮮各陪臣, 準此是如施行牌文."是白去乙.

보고와 아울러 명나라 군사가 가지고 온 패문(牌文)을 보내왔기에 신이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명나라 도사부(都司府)[14]의 담 아무개가 보낸 선유문(宣諭文)[15]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 도사부에서 황제의 성지를 받들고 와 선유한다. '일본의 장수들은 모두가 온 마음을 다 해 귀화하려 하고 있다. 충순함으로써 진심을 바쳐오면서 어제 이미 표문을 갖추어 주청했고, 지금은 성지의 책봉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대사를 황제의 뜻에 맡겼기에 일본의 여러 장수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병사들을 쉬게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제 너희 조선도 전쟁의 소란을 면하고 태평성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두 나라 모두에 이익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근자에 초소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거하면, 너희 조선의 병선이 일본 군영 가까이에 주둔하고서 이채시지(伊採柴之)라는 사람을 죽이고 배도 불태웠다고 한다. 이에 일본의 여러 장수들도 모두 출병하여 너희와 더불어 서로 죽이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부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16] 장군이 재삼 금

14) 도사부(都司府): 명나라의 지방 군사영도 기관을 말한다. 중앙에는 도독부(都督府)가 있다.

15) 담 아무개……선유문(宣諭文): 여기서 담 아무개는 명나라 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담종인(譚宗仁)을 가리킨다. 1594~1596년 사이는 전쟁 소강기로 강화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담종인은 「금토패문(禁討牌文)」을 보내와 왜군을 공격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이로 인해 이순신 장군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여 고뇌하였다고 한다. 아래 회답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지한 끝에 군사를 내보내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마땅히 패문을 보내어 금지를 고하고자 하니, 이 패문을 조선의 각 관리들은 우러러 받들도록 하라. 너희 각 병선들은 속히 본래의 고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일본 진영 근처에 진을 치고 어지러이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사단을 만들지 말도록 하라. 만약 너희들이 오고가며 대나무와 나무나 벨 뿐 별다른 뜻이 없다면 다 베고 난 후에 속히 돌아가도록 하라. 만약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 주둔하면서 여전히 몇 명 남지 않은 왜인을 추살하고 배를 탈취한다면, 본부에서는 경략 송 총독 군문에 정문을 보내어 이 제독과 유 총병으로 하여금 너희 국왕에게 이문을 보내어 엄중히 조사토록 할 것이다. 그리되면 각 관군들은 화를 자초하고 불화를 일으킨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조선의 각 관원들은 모두 문리(文理)에 통달하고 시무에 밝은 자들이기에 본부에서 엄중히 고유하는 바이다. 패문이 도착하는 즉시 공문을 갖추어 회보하라. 수지(須至).[17] 패문을 작성한 자로부터.' 이상의 패문을 조선의 각 배신(陪臣)들은 우러러 받들도록 하고, 이에 준거하여 시행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唐兵二人招致, 問其所由, 則前年十一月分, 都司府譚老爺等到熊川, 至今仍留, 以待天朝許和之命爲如乎, 近日倭人等, 恐劫舟師之威, 喪心落膽, 都司老爺前百般哀乞, 牌文成送是如爲白臥乎所. 黠詐倭奴, 百生奸計, 與同處天兵, 自作牌文, 乞寄唐人判然爲白沙餘良, 實可禁斬倭奴, 則經略、提督、摠兵府, 尙無分付之令爲白乎所, 萬無爲白在

16)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558~1600): 전국시대 무장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다. 사카이 상인 출신의 장수로 히데요시의 최측근이었다. 임진전쟁 당시에는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와 함께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기리시탄 다이묘'(크리스찬 다이묘)였으며, 당시 대조선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쓰시마 도주(島主) 소씨(宗氏)와는 사돈지간이었다. 이후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서군(西軍,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 측)의 무장으로 출전해서 분전했지만, 동군(東軍, 도쿠가와 이에야스 측)에 패해 포박되었다. 자살을 금지하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할복을 거부해서 참수 당했다.

17) 수지(須至): 공문의 마지막에 붙는 상투어. 반드시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뜻이다.

果. 同牌文乙, 唐兵二人業已齎來, 南海縣令奇孝謹成公事, 一時輸送爲白有去等, 拒而不受亦似未穩叱分不喻, 初六舟師未及畢至, 兵勢似爲孤弱乙仍于, 牌文回答成給, 佯不停止之意爲白遣. 令三月初七日還到閑山陣中, 更探賊情, 乘機進討計料爲白齊. 同本牌文段, 大朝以監封上送.

명나라 병사 두 명을 불러들여 그[러한 선유문을 가지고 오게 된] 경위를 물으니, 작년 11월에 도사부의 담 나리 등이 웅천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머물고 있으면서 명나라 조정의 화친 허락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자에 왜인들이 수군의 위세를 겁내어 상심하고 낙담한 끝에 도사 나리 앞에서 갖가지로 애걸하므로 이 패문을 작성하여 보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교활한 왜놈들이 온갖 간교한 계책을 내어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직접 이 패문을 만들고, 이를 명나라 사람 편에 부치게 해달라고 애걸한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로 왜인을 참하는 것을 금하라는 명령은 경략·제독·총병부 등에서 아직 분부 내려온 바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패문을 명나라 병사 두 명이 이미 가지고 왔고, 남해 현령 기효근도 공문을 완성해 일시에 보냈으므로 거절하고 받지 않는다는 것도 온당하지 않을 뿐더러, 아직 우리 수군이 다 모이지 않아서 전세가 약한 듯 하므로 패문의 회답을 써주어서 짐짓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3월 초7일에 다시 한산도 진중으로 돌아가 적의 정세를 다시 정탐하다가 기회를 엿보아 진격, 토벌할 요량입니다. 위의 패문을 대조(大朝)[18]께 감봉(監封)[19]하여 올립니다.

其回答曰: "朝鮮陪臣等, 謹答呈于天朝宣諭都司大人前. 倭人自開釁端, 連兵渡海, 殺我無辜生靈, 又犯京都, 行凶作惡, 無所紀極. 一國臣

18) 대조(大朝): 왕세자가 섭정할 때 임금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조를 가리키는 듯하다.
19) 감봉(監封): 문서 등의 내용을 감독하고 검사하여 봉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民, 痛入骨髓, 誓不與此賊共戴一天. 各道舟艦, 無數整理, 處處屯駐, 東西策應, 謀與陸地神將等, 水陸合攻, 使殘兇餘孽, 隻櫓不返, 擬雪國家之讐怨. 本月初三日領先鋒舡二百餘隻, 將欲直入巨濟, 蕩滅巢穴, 次次殲剿, 俾無遺種, 而倭舡三十餘隻, 聞入固城鎭海之境, 焚蕩閭家, 殺戮遺民, 又多擄去, 輸瓦斫竹, 滿載其舡. 原其情狀, 尤極痛憤. 撞破其舡隻, 追逐其兇徒, 馳報于舟師都帥府, 領大軍合勢直擣之際, 都司大人宣諭牌文, 不意到陣. 奉讀再三諄諄懇懇, 極矣盡矣. 但牌文曰: '日本諸將, 莫不傾心歸化, 俱欲捲甲息兵, 盡歸本國, 爾各兵舡速回本處地方, 毋得近駐日本營寨, 以起釁端云, 倭人屯據巨濟、熊川、金海、東萊等地, 是皆我土. 而謂我近日本之營寨云者, 何也? 謂我速回本處云, 本處地方, 亦未知在何所耶? 慝起釁端者, 非我也, 倭也. 日本之人變詐萬端, 自古未聞守信之義也. 兇彼之徒, 尙不稔惡, 退去沿海, 經年不退, 豕突諸處, 劫掠人物, 有倍前日. 捲甲渡海之言, 果安在哉? 今之講和, 實涉詐僞. 然大人之敎, 不敢違越, 姑寬其限, 馳啓國王, 伏惟大人, 通曉此意, 俾知逆順之道, 千萬幸甚." 臣及元均.李億祺同狀着名成送爲白有在果.

신이 보낸 회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국의 배신이 삼가 명나라 선유도사 대인 앞에 답서를 올립니다. 왜인들이 스스로 트집을 잡아 군사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의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으며, 또 서울을 침범하여 자행한 흉악한 짓이 끝도 없습니다. 이에 한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통분이 골수에 사무쳐 이 적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겠노라 맹서했습니다. 그리하여 각 도의 전함들을 수도 없이 정비하여 곳곳에 주둔시키면서 동서에서 책략으로 호응하고 육지의 신장(神將)들과 함께 수륙으로 합공함으로써 남아 있는 잔당들의 배 단 한 척도 못 돌아가게 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습니다. 이달 3일에 선봉선 200여 척을 거느리고 곧장 거제에 들어가 적의 소굴을 소탕하고, 차례로 무찔러 씨조차 남기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선 30여 척이 고성 및 진해 등지로 들어와서 여염집을 불사르고 남아 있는 백성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

을 포로로 잡아가고 기와를 실어 나르고 대나무까지 베어다 배 한 가득 실었습니다. 그 정상을 따져보자면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이에 그 배들을 쳐부수고 흉악한 무리들을 추격한 다음 수군 도수부에 급히 보고하여 대군과 합세해 이끌고 가 곧장 적을 섬멸하려던 차에, 뜻하지 않게 도사 대인의 선유 패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받들어 읽어보니 재삼 간곡하신 깨우침의 말씀이 참으로 극진하였습니다. 다만 패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장수들은 모두가 온 마음을 다 해 귀화하려 하고 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병사들을 쉬게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다. 너희도 각기 여러 병선들을 이끌고 속히 제 고장으로 돌아가고 일본 군사들의 진영 가까이 머무르면서 불화를 야기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인들이 진을 친 채 점거하고 있는 거제·웅천·김해·동래 등은 모두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본 진영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속히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 하였는데, 제 고장이란 대체 어디를 말합니까? 불화와 혼란을 일으킨 자도 우리가 아니라 왜입니다. 왜인은 권모술수와 거짓에 능하여, 예로부터 신용을 지키는 의로움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 흉악한 무리들이 아직도 악행을 멈추지 않은 채 연안으로 물러나 한 해가 다가도록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이곳저곳을 날뛰며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전보나 배나 더하니, 무기를 집어넣고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저들이 강화하겠다는 말은 실로 거짓입니다. 그러나 대인의 뜻을 감히 어길 수 없으니, 우선 시일을 넉넉히 주시면 곧 우리 임금께 급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대인께서 이 뜻을 살펴주시어 따르고 거스르는 도리를 알게 하여 주신다면 천 번 만 번 다행한 일이겠나이다." 위의 답문에는 신과 원균 및 이억기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同譚都司稱號之人, 某月某日間, 熊川下來與否, 都元帥權慄處探問回答亦移牒爲白有齊. 上項唐兵一時出來爲白有在, 我國被擄人尙州接私

奴希順, 亦能解倭語, 兼通事出來爲白有去乙. 唐兵茂火同希順不可還率去事, 據理開諭爲白乎矣, 持搖未決. 又爲開說曰, 乞降來此, 則我國人乙, 豈可還率去耶云, 則唐兵辭塞不答, 因以棄歸爲白良去乙. 賊中形勢及唐兵出來犯因乙, 竝以推問招內: "尙州西門外居人, 以前年四月分, 京城下來賊倭處被擄到釜山之後, 倭奴等晉州陷城, 還到釜山. 同年七月分, 唐兵十五名, 一時移到熊川, 同處賊將默甘屯陣中, 至今留在."爲有在果.

담 도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느 달 어느 날 쯤 웅천에서 내려왔는지 여부를 도원수 권율에게 탐문하여 회답해 달라고 기별하였습니다. 위에 나오는 명나라 군사와 같이 온 자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상주의 사갓집 종 희순(希順)이라는 자인데, 그는 왜나라 말을 할 줄 알아 통역을 겸하여 왔습니다. 명나라 군사에게 희순을 다시 데려갈 수 없는 일에 관해 이치에 근거해가며 타일렀더니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시 타이르기를, 빌고 항복하고자 이곳에 온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갈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명나라 군사는 말문이 막혀 대답도 못하고서 그대로 남겨두고 돌아갔습니다. 희순에게 적중의 형세와 명나라 군사가 나오게 된 원인을 아울러 심문하니 이렇게 공술했습니다. "상주 서문 밖에 사는 사람으로서, 작년 4월 서울에서 내려온 왜적에게 사로잡혀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 후 왜놈들은 진주성을 함락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해 7월에 명나라 군사 15명이 일시에 웅천으로 옮겨와서 적장 즉묵감(卽默甘)의 둔진(屯陣)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又"於唐兵三十餘名, 去十一月分追到爲有齊. 節唐兵持牌文出來事段, 我國舟師蔽海齊進, 賊將卽默甘, 恐其直擣, 懇乞于唐將前, 成文出送時, 倭將亦矣身茂火, '汝往朝鮮陣中說導曰, 日本之人, 不欲與戰, 而朝鮮何以出戰乎云云事.' 言送爲去乙, 出來爲有齊. 熊川之賊三陣, 以每陣或千餘名, 或八九百名, 而病斃者數多, 逃還本土者亦多. 舡隻段, 三陣幷所見三百餘隻, 將帥段, 一陣則卽默甘屯, 一陣則沙古汝文屯,

一陣則阿里萬屯是齊. 前年十一月分, 年老唐將一員, 到熊川仍留, 率倭三名, 持書契發向中原乙仍于, 同倭人還回卽時, 盡還本土云云爲齊. 賊倭日役段, 或鐵丸打造, 或築城造家. 軍糧段, 今月初生中舡六隻良中, 滿載出來. 新倭或二十名, 或三十名載來. 他餘事段, 迷劣人以明知不得."爲臥乎所. 招辭是置有亦. 上項奴希順亦, 爲賊被擄, 久留賊中, 巧黠情謀乙, 無不詳知爲白乎矣, 反覆窮問, 諱不直告, 思還賊中, 露於言色. 嚴刑機物, 備設其前, 則大略納招內, 亦多修飾之狀爲白臥乎所. 必于下賊之徒是白良置, 旣還我土, 少無仍留之計, 其叛國之罪. 不可頃刻待時是白乎矣. 慮有更問之端, 興陽縣移囚, 以待朝廷命令爲白臥乎所. 大朝以一樣馳啓爲白臥乎事.
萬曆二十二年三月初十日統制使

또 "명나라 군사 30여 명이 지난 11월에 뒤따라 왔습니다. 이번에 또 명나라 군사가 패문을 가지고 온 일은 우리나라 수군이 바다를 덮어 일제히 진군하자 적장 즉묵감이 곧장 공격당할까봐 겁이 나 명나라 장수 앞에서 애걸하였던 것입니다. 이 글을 지어 발송하려고 할 때 왜장이 소인에게 '너는 조선 진중으로 가서 말하되, 일본인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조선은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 하느냐고 하라.' 고 시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웅천의 왜적은 세 진영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진마다 1천 명 혹은 8~9백 명 씩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한 자가 많고 본국으로 도망친 자 또한 많습니다. 배들은 세 진영을 합쳐 3백여 척이나 되며, 장수의 경우 한 진영은 즉묵감이, 한 진영은 사고여문(沙古汝文)이, 또 한 진영은 아리만(阿里萬)이 맡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늙은 명나라 장수(심유경) 한 명이 진중에 이르러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왜인 3명을 데리고 문서를 가지고 중국을 향하여 떠나갔는데, 그 왜인이 돌아오는 즉시 모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왜적들이 날마다 하는 일은 철환을 두들겨 만들거나, 성을 쌓고 집을 짓거나 하는 것입니다. 군량은 이달 초에 중선 6척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새로운 왜인 20명 혹은 30명씩을 싣고 왔으며, 그 밖의 나머지 일들은 미천한 저로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술은 이와 같았습니다. 위에 적은 종 희순은 적에게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적진 중에 머물렀기 때문에 왜적들의 모든 간사한 꾀와 실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반복 심문에 이실직고하지 않았으며, 적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뜻이 얼굴과 말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엄하게 형틀을 그 앞에 늘어놓자 대략 공술하였습니다만, 꾸며내는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천한 무리라지만 이미 제 땅으로 돌아와 놓고도 조금도 머물 생각을 않으니, 나라를 배반한 죄를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물을 것이 있을 듯하여 흥양현(興陽縣)[20]에 옮겨 가두고 조정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대조께도 마찬가지 내용으로써 보고 올립니다.

만력 22년(1594) 3월 10일
통제사

20) 흥양현(興陽縣); 전라남도 고흥의 옛 지명이다.

## 3. 만력(萬曆) 22년 3월 10일 통제사 이순신이 3월 13일에 봉계(封啓)[1]한 초안
## (李舜臣三月十三日 封啓草)

司行人等題本告稟于督府, 則「司行人」·「科道官」·「李提督自辨」·「議貢題本」及「兵府覆題」, 竝爲出示 乙仍于, 謄書上送爲白在果「宋經略自辨題本」, 令譯官探問于相公輩, 則此本今次不來. 在前「自辨」, 非止一再, 疑或指此是如爲白齊, 只摘取其所請題本出示爲白去等, 緊關題本有無, 得知無路. 徐當聞見, 果有係于我國之事, 則謄書上送計料爲白乎等. 到高靈譚都司文書來到是如爲白去乙, 亦爲告請謄書上送爲白齊. 督府又言, 抄發軍兵, 欲爲肄習爲白去乙, 移文知會于全羅巡察使李廷馣爲白有如乎.

행인사 행인(司行人)[2] 등의 제본이 독부(督府)에 올라왔는데, 「행인사 행인」·「과도관」·「이 제독 자변」·「의공제본」 및 「병부복제」가 나란히 있기에 이것을 다 베껴 바칩니다. 「송경략 자변제본」의 경우 역관을 시켜 상공들에게 탐문해 보게 했으나 이번에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보낸 「자변」이 한두 편이 아닌데, 혹시 이것인가 생각되어 청하신 제본을 절취해서 보여드리오나, 중요한 제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천천히 듣고 보고 탐색하다가 만일 우리나

1) 봉계(封啓): 문서를 밀봉하여 임금에게 올린 것을 말한다.
2) 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 : 행인사는 1380년 명나라 홍무제 때 예부에 설치된 관청으로, 처음 설치할 때 행인(行人) 1명, 좌、우행인(左右行人)을 각 1명씩 두었다. 행인은 정9품이었고 좌、우행인은 종9품이었다. 이후 행인을 고쳐 사정(司正)으로 삼았고 좌、우행인은 좌、우사부(左.右司副)로 삼으면서 행인사의 행인 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345명을 뽑았다. 명나라 말기까지 그 품계는 9품~7품 정도였으며, 주로 사신으로 파견되어 황제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즉시 베껴 적어 올리겠습니다. 고령에 와 있는 도사 담종인(譚宗仁)[3]의 문서도 여기 도착하면 청하여 베껴 적은 다음 올려 보내겠습니다. 독부께서 군사훈련을 위한 병졸을 파견하라 하셨기에 이문(移文)을 보내 전라순찰사 이정암(李廷馣)[4]에게 통지했습니다.

李廷馣移文內節該: "嶺南留駐天將相繼撤還, 督府移鎭南原, 海寇充斥, 聲勢益熾. 本道操弓之士, 盡數抄發, 前赴嶺南, 餘存老弱, 不過服田農夫. 今雖團聚, 坐作進退之節, 肄習末由. 非但此也, 當此農月, 播種失時, 無望西成. 肄習一事, 必欲擧行, 則嶺南征士, 勢將調還, 彼此緩急, 亦有先後. 將此事宜, 呈稟督府."亦爲白去乙. 令譯官卽日呈稟, 則曰: "此言是矣. 但王世子必有帶率之軍, 移咨于王世子, 使之抄送操

3) 담종인(譚宗仁): 『선조실록』에 따르면, 담종인은 임진전쟁 당시 조선에서 일본군과의 강화교섭에 참여했던 명나라 장수로, 정확한 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촌인 담풍시(譚馮時)와 함께 강화협상에 종사한 인물이다. 임진전쟁 중 벽제관 전투의 패전 이후 명은 군량 문제 때문에 점차 일본과 강화를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명의 심유경(沈惟敬)은 웅천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접촉해 일본의 입장을 조율하며 강화교섭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593년(선조 26) 담종인은 명의 지휘(指揮)로 심유경 대신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에 그대로 남아 고니시 유키나가 측의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1595년(선조 28) 빠져나왔으며, 이후에도 일본과의 교섭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한다.

4) 이정암(李廷馣: 1541~1600).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날 때 이조참의로 있었는데, 선조가 평안도로 피난하자 뒤늦게 호종했으나 이미 체직되어 소임이 없었다. 아우인 개성유수 이정형(李廷馨)과 함께 개성을 수비하려 했으나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져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 황해도로 들어가 초토사(招討使)가 되어 의병을 모집해 연안성(延安城)을 지킬 것을 결심하고 준비 작업을 서두르던 중 도내에 주둔한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가 5,000~6,000명의 장졸을 이끌고 침입하자, 주야 4일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해 그 공으로 황해도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었다. 1596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죄수를 임의로 처벌했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다가 다시 지중추부사가 되고, 황해도관찰사 겸 도순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해서 초토사(海西招討使)로 해주의 수양산성(首陽山城)을 지키기도 했다. 정유재란 이후 은퇴해 시문을 지으며 세월을 보내다 년 뒤에 죽었다.

鍊.”亦爲白遣. 直爲移咨于東宮乙仍于, 謄書上送爲白去乎, 詮次以善啓.

이정암이 보내온 문서를 요약하면, “영남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들이 잇달아 철군하고, 독부가 남원으로 진지를 옮기는 바람에 해적들이 들끓고 위세가 대단하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여러 차례 궁수들을 선발해 영남으로 보냈기에 노약자들만 남았으며 모두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좌작진퇴지절(坐作進退之節)[5]을 익히고자 하나 훈련시킬 방법이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농사철에 파종시기를 놓쳐 가을걷이를 바랄 수도 없다. 군사훈련을 반드시 하고자 한다면 영남으로 징벌 보낸 병사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피차간에 완급도 있고 선후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독부에 품고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역관에게 그 즉시 정문을 올리게 했더니, “그 말이 옳다. 그러나 왕세자가 인솔하고 있는 군사가 필시 있을 터이니 왕세자에게 자문을 행이하여 훈련된 병사들을 보내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궁에게 이자하여 베껴 올려드리오며, 선계(善啓)[6]를 올립니다.

5) 좌작진퇴지절(坐作進退之節): 훈련할 때에 앉고 서고 나아가고 물러서는 동작을 이르는 말이다.
6) 선계(善啓): 임금에게 서면으로 아뢰는 일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선신(善申)이라고도 한다.

## 4. 과도관(科道官)[1]의 제본(題本)[2] 20일
## (科道官題本 二十日)

廣東道御史唐一鵬一本.
倭患孔亟議處, 當平壤邊上, 幷按僨將, 以振國威事.
臣聞天下有事, 注意將臣, 是將之所係非眇小, 責與經略相爲表裏者也. 故朝廷于將之有功也, 則議賞勿滯, 以作其任事之氣, 其喪師也, 則議罰勿緩, 以創其誤國之萌, 誠重之也. 今玆大將李如松, 非奏凱歌, 而桓桓懋上賞者乎? 非再管東征, 揚揚敍勳者乎? 又非旋見覆車, 栖栖與經略宋應男垂首喪師而返者乎? 昨者科臣連章累牘, 論列經略之狀, 而不及如松, 豈薄罪之而姑寬之耶? 臣固知科臣徵往歲滇省故事, 先欲量爲議處經略, 而徐及如松之不宥于法者耳.

광동도 어사(廣東道御史) 당일붕(唐一鵬)[3]이 올리는 제본.

---

1) 과도관(科道官): 명나라 시대 육과(六科) 급사중(給事中)과 중앙정부의 감찰기관인 도찰원(都察院)에서 실제로 감찰을 수행한 관리인 감찰어사(監察御史)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로, 도찰원에는 총 110명의 감찰어사가 존재했다.
2) 제본(題本): 조선시대 중국에서 황제에게 보고되는 공적 업무용 문서를 말한다. 제본은 황제에게 보고되었던 상행문서로, 명대에는 공적 업무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청대에 모든 업무용도로 확대되었다. 조선사행이 외교문서를 전달하면 예부와 내각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황제에게 보고용으로 작성하였던 문서이다. 모든 행정체계가 문서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명.청시대 대중국 외교는 제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 조선의 외교목적 달성여부가 결정되었다.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35, 2005년,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26, 2006년,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136, 2007년
3) 당일붕(唐一鵬): 귀주(貴州) 옥병(玉屛) 사람으로 만력(萬曆) 11년(1583) 동진사(同進士) 출신이다. 행인(行人: 司憲)과 감찰어사를 거쳐 태복시경(太僕寺卿)까지 올랐다.

왜환(倭患)이 평양 일대에 당도한 긴급 사안에 대한 논의와 패장(敗將)을 안찰하여 국위를 떨칠 것을 건의하는 건

신은 천하에 일이 생기면 장수에게 주목한다[4]고 들었는데, 이는 장수와 관련된 일이 가볍지 않으며 그 직책이 경략사와 표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서는 공을 세운 장수에게 지체 없이 상을 논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사를 잃어버린 장수에게 시일을 끌지 않고 벌을 논함으로써 나라를 망치는 싹을 잘라내는 일을 무겁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대장 이여송(李如松)[5]이야 말로 개선가를 울리며 위풍당당하게[6] 큰 상을 요구했던 자가 아닙니까? 두 번이나 동쪽으로 원정하여 의기양양하게 서훈(敍勳)[7]을 주청했던 자가 아닙니까? 또 이내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경략사 송응창(宋應昌)[8]과 함께 고개 숙인 채 병사를 잃고서 돌아온 자가 아

---

4) 천하에……주목한다: 『한서(漢書)』「육가전(陸賈傳)」에 나오는 다음 문장을 인용했다. “천하가 편안하면 재상에게 주목하고, 천하가 위태로우면 장수에게 주목한다(天下安, 注意相, 天下危, 注意將).”

5) 이여송(李如松: 1549~1598): 자는 자무(子茂), 시호는 충열(忠烈)이다. 요녕성 철령(鐵嶺) 사람으로 요동총병관 이성량(李成梁)의 아들이다. 만력 2년(1574) 철령위도지휘동지(鉄嶺衛都指揮同知)를 세습하고, 만력 20년(1592) ‘보바이(哱拜)난’의 진압으로 전공을 인정받았다. 그 후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방해어왜총병관(防海禦倭総兵官)으로 원군을 이끌고 참전했다. 만력 21년(1593) 1월, 평양성에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대를 급습해서 평양을 회복했다. 이여송은 후퇴하는 고니시 군을 추격했지만, 서울로 진격하는 도중에 벽제관 전투에서 패해 평양으로 후퇴했다. 그 후 전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화의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9월 송응창과 함께 돌아갔다. 『명사기사본말(明史記事本末』권62 「원조선(援朝鮮)」과 『명사(明史)』권238 「열전(列傳)」(126)에 나온다.

6) 위풍당당하게: 『시경(詩經)』「노송(魯頌).반수(泮水)」에 “용감하게 정벌에 나서 동남쪽 오랑캐들 다스리고(桓桓于征, 狄彼東南)”라는 구절이 있다. ‘환환’은 ‘위풍당당함’을 의미한다.

7) 서훈(敍勳): 등급이나 공훈에 의거해 승진 혹은 기타 장려금을 줄 것을 주청하는 일을 말한다.

8) 송응창(宋應昌: 1536~1606): 원문에는 ‘송응남(宋應男)’으로 되어 있으나 송응창의 오기로 보인다. 자는 사문(思文), 호는 동강(桐崗)이며 항주 인화

닙니까? 일전에 과신(科臣)[9]들이 편마다 장마다 가득하게 경략사를 탄핵하는[10] 장계를 올리면서 이여송에게는 미치지 않았는데, 이 어찌 죄를 가벼이 여겨 관용을 베푸는 것이었겠습니까? 신은 과신들이 지난날 운남성(雲南省)의 옛 일을 거울삼아 먼저 경략사의 과실을 처분 의결한 연후에 법으로 용서받지 못할 이여송의 죄를 천천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以爲調度在經略也, 緩急在將臣也. 而東事之急, 又在眉睫也, 不速議處經略, 則何以振督臣使不振前事之壞? 不速議處如松, 則何以諭經略使不抱不平之憾? 請爲皇上畢陳之. 夫如松與經略, 初授命而東也, 經略自知韜略未嫺, 慳輭難振, 第天幸有李將軍, 所恃以無失墜也. 卽如松亦自謂無人于一世, 而何經略之與有也? 不謂其曩日功成, 蓋得于觀望, 而成于竊寇之自相矛盾, 又非尺寸之能, 臨敵制勝之勇也. 乃一渡鴨綠, 聞倭倡獗, 寧但無勃勃呑倭之志? 固已膽寒而氣挫矣. 逗遛道路, 擧定難前, 顧望烽熄, 束手無策. 及偵探小西飛輩, 徙平壤之王京也, 乃相率爲擧燼之謀.

신이 생각건대 군대를 배치하고 파견하는 일은 경략사의 몫이고, 완

---

현(仁和縣) 출신이다. 임진전쟁 당시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郞)으로 만력(萬歷) 20년(1592년) 8월, 경략비왜군무(經略備倭軍務)에 임명되어 제독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4만 8000 병력의 2차 원군 총사령관으로 참전하였고, 보급 등의 군무를 총괄했다. 이여송이 벽제관에서 대패한 이후 일본군과의 강화를 모색해가던 과정에서 교전을 자제시킨 한편, 조선 조정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다 만력 21년(1593) 11월 소환되었다. 이듬해, 평양 수복전의 공적이 참작되어 도찰원우도어사(都察院右都御史)로 승진되기도 했지만, 고향 항주로 낙향해 서호(西湖) 근방의 고산(孤山)에 은거하면서 중앙 정계엔 복귀하지 않은 채 만력(萬歷) 34년(1606년) 2월, 향년 70세로 병사했다. 저서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 『도기도설(道器圖說)』 등이 있는데, 『경략복국요편』은 임란관계사(壬亂關係史)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9) 과신(科臣): 명청 시대 때 육과(六科)의 급사중(給事中)과 도찰원(都察院), 그리고 각 도의 감찰어사를 말한다.

10) 탄핵하는: 원문은 '논열(論列)'로, 언관이 상소를 올려 죄목을 하나하나 들추어 말하는 것을 이르던 말이다.

급을 처리하는 일은 장수의 몫입니다. 동쪽 사태의 위급함이 목전에 놓여 있는데, 속히 경략사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독신(督臣: 總督)을 진작시켜 앞선 패배를 들춰내지 않게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속히 이여송에 대한 처분을 의논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경략사를 일깨워 불만으로 인한 서운함을 품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황상을 위하여 모두 진언해보겠습니다. 이여송과 경략사가 애초에 황제의 명을 받들고 동쪽으로 출정했을 때, 경략사는 병법에 익숙하지 않고 유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나, 천행으로 이 장군이 있으니 그 덕분에 실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여송은 평생 안하무인인 자라 경략사가 그에게 있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지난날 뜻하지 않게 공을 세웠지만 이는 관망하다가 얻은 것이요, 적들끼리의 모순을 틈타 이룬 것일 뿐, 털끝만큼의 재능이나 적을 맞아 승리를 쟁취하려는 용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왜구가 창궐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어찌 왜구를 집어 삼키려는 굳센 의지만 없어졌겠습니까? 벌써 간담이 서늘해지고 기가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길에서 머뭇거리며 좀체 군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봉수가 꺼지기만을 관망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었습니다. 고니시 히다노카미(小西飛彈守) 등이 평양을 떠나 도성으로 옮겨 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제야 그들을 섬멸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說者謂祖龍所收, 大都朝鮮老稚與婦女之遭刖于倭者也, 顧不勝其張大之意, 而敍功之疏上矣. 經略曰: “馘級萬金.” 彼亦曰: “馘級萬金.” 經略曰: “卽見掃平.” 彼亦曰: “卽見掃平.” 獨不思朝廷有核實之典乎? 是其敢于貪功者, 當併議也. 迨碧蹄一敗, 士馬喪罷, 正倭奴得志之秋, 將帥嘗膽之會. 爲某者正宜以實奏聞, 失之東隅, 收之桑榆, 寧其不可. 夫何經略曰: “彼比互傷.” 彼亦曰: “彼此互傷.” 經略曰: “損傷相當.” 彼亦曰: “損傷相當.” 獨不思各鎭有兵馬之額乎? 是其敢于掩敗者, 當併議也.

논자들은 말하길, 조룡(祖龍)[11]이 거두어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왜구에 의해 다리가 잘린 조선의 노인과 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이니, 그 과시하려는 의도를 차마 봐주지 못하겠거늘 그런데도 서훈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고들 하였습니다. 경략사가 "베어낸 귀와 수급만 해도 만금의 값어치는 된다."고 말하자 그 역시 "베어낸 귀와 수급만 해도 만금의 값어치는 된다."고 말하고, 경략사가 "보이는 즉시 소탕했다."고 말하자 그 역시 "보이는 즉시 소탕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조정에 사실을 검증하는 법전이 있다는 것을 어찌 생각지 못한단 말입니까? 저들은 감히 공을 탐하는 자들이니 반드시 그 죄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합니다. 벽제에서의 한 차례 패배로[12] 군사는 죽고 말은 지쳤으니, 지금이야 말로 왜구가 뜻을 얻을 시기요 우리 장수들이 와신상담해야 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들이 사실대로 황상께 아뢴다면 동우(東隅)에서 잃었어도 상유(桑楡)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13]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경략사가 "서로 다쳤다."고 말

---

11) 조룡(祖龍): 일반적으로 진시황(秦始皇)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고증해보건대 이여송이나 송응창이 조룡으로 불린 경우는 없는 바, '중국' 즉 명나라를 대신 받는 말로 사용된 듯하다.

12) 벽제에서의……패배로: 1593년 1월 7일에 이여송은 본진 5만여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리고 조승훈의 군대 및 조선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공격, 마침내 함락시켰다. 명군은 불랑기포(佛狼機砲), 멸로포(滅虜砲), 호준포(虎砲) 등 화포를 발사하여 기선을 제압했다. 승기를 잡은 이여송은 그 여세를 몰아 개성을 거쳐 벽제까지 남하했다. 그러나 1월 27일 경기도 고양의 여석령(礪石嶺)에 매복해 있던 왜군의 기습을 받아 벽제관(碧蹄館)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이에 명군은 개성으로 물러났다가 멀찌감치 평양으로 후퇴했다.

13) 동우(東隅)에서……것이: 『후한서(後漢書)』「풍이전(馮異傳)」에 따르면, 동한의 광무제가 대장 풍이를 시켜 서쪽 정벌에 나서게 해서 적미군을 평정케 했으나, 풍이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이에 풍이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다시 군대를 모집한 후 적미군에 침투해 안팎에서 공격한 끝에 적미군을 대파했다. 전쟁이 끝난 뒤 유수는 「풍이의 위로하는 조서(勞馮異詔)」를 내려 풍이를 위로했다. "모름지기 처음에는 회계에서 날개 꺾였으나 종국에는 민지에서 날개를 떨치며 날아올랐으니, 동우에서 잃고 상유에서 거두어들였다고 할 만하다.(始雖垂翅回溪, 終能奮翼澠池. 可謂失之東隅, 收之桑楡)." 여기서 동우는 해가 뜨는 곳 즉 동쪽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아침, 시작하는 곳의 의미가 나왔다. 상유는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말하는데,

하자 그 역시 “서로 다쳤다.”고 말하고, 경략사가 “손상 입은 정도가 비슷하다.”고 말하자 그 역시 “손상 입은 정도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진(鎭)마다 정해진 병마의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단 말입니까? 저들은 감히 패배를 엄폐하려는 자들이니, 반드시 그 죄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합니다.

我祖宗朝, 謂倭奴叵測. 嚴禁封貢. 意甚善而慮誠遠, 二百年來, 誰敢干之. 何經略者, 利倭之稍退, 而以封貢媚之也? 如松又自幸擔荷稍寬故, 陰成經略之議, 以陽收封侯之利也. 及趙燿之疏聞, 則借口治倭之巧說, 倖當事之僉可, 則極目眼倭之表文, 夫何奏渡海者甫下于部, 報入境者忽震于隣, 促請封者相望于途, 殺擄者旋達于國, 乃又誑言. 曰本國飢民, 曰未盡殘倭, 曰兵難遙度, 容或有之, 獨不思聖明有肺肝之見乎? 是其敢于釁府者, 當併議也.

우리 조종조께서는 왜구의 속내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책봉(冊封)과 통공(通貢)을 엄금했습니다. 뜻이 심히 훌륭하고 생각이 진심으로 원대하여 200년 이래로 그 누구도 감히 이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경략사가 무엇이건대 왜구가 조금 물러갔다고 좋아하면서 책봉과 통공으로써 아첨한단 말입니까? 이여송 또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게 된 것을 다행이라 여기어, 암암리에 경략사의 계획을 성사시켜주면서 노골적으로 후(侯)에 봉해주는 것에 대한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조요(趙燿)의 상소가 올라오자[14] 왜구를 다스린다는 교묘한 말을 빌려 집정자들이 허락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왜구

---

해가 질 때 뽕나무와 느릅나무의 끝을 비추는 데서 해가 지는 곳, 즉 서쪽, 일몰을 의미하고, 일이 끝나는 곳, 노년의 뜻이 나왔다. 이로부터 일을 시작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14) 조요(趙燿)의……올라오자: 『명실록』 만력 20년 조(條)에 보면, “병과급사중(兵科給事中) 장보지(張輔之)와 요동도어사(遼東都御使) 조요(趙燿) 등은 한결같이 강화(講和)와 조공(朝貢)의 조건을 가볍게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조요는 강화를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를 관찰하고서 올린 표문에, 바다 건너 상주하러 온 자가 이제 막 관부에 내렸다 하고, 입경(入境)을 보고한 자가 이웃 때문에 놀랐다 하고, 책봉 요청을 재촉하는 자가 길에서 줄을 이었다 하고, 죽이고 노략질하는 자들이 이내 나라에 이르렀다고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인 셈입니다. 또 본국의 백성이 굶주려 있다 하고, 왜구를 아직 다 소탕하지 못했다 하고, 전쟁 상황을 멀리서 헤이리가 어렵다고 한 말인즉 그럴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성명하신 황상에게 폐부를 들여다보는 식견이 있다는 것을 어찌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저들은 감히 관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이니 마땅히 죄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夫以關白之狼心, 更翼之平行長.小西飛之驍騎, 呑噬海外. 其心未支, 侵陷朝鮮, 不奪不厭. 而又開之以予封予貢之端, 翼之以來享來王之義, 他時即欲禁之, 和已不在我, 而倭奴有所藉口矣. 嗟嗟慘禍, 誰實階之? 如委柄權, 經略在握, 而彼得與然彼奸欺, 實經略所憑藉. 矧先後貪功掩敗之報, 何不聽之經略, 而頓頑然竝奏乎? 卽今還朝一疏, 千言萬言, 喙口誇詞, 略不顧忌語云“主憂臣辱. 主辱臣死.” 如松且無人臣禮. 而何說之辭也! 臣以爲經略之罪, 偏聽如松, 而自恨主張之汶汶. 如松之罪, 習慣欺罔, 而不畏公論之曉曉. 故今之議經略者, 議其不明也, 使天下之迂儒之不足以濟. 而前日戎服登舟者, 詆見其舛焉, 且併復被摘之御史以風讜者, 則代庭者切覆諫之懼. 今日之議如松者, 議其不忠也, 使天下知小人不可帥師. 而前日凱歌還朝者, 有非其眞焉, 且幷坐壞臣之惟敬以遏新萌. 則問謀者, 無撤敵之奸. 如是鯨鯢可呑, 戶扃可固, 隣難可消, 國威可起. 宗社無彊之福, 皇上一獨斷之耳.

탐욕스러운 관백(關白)[15]이 고니시 유키나가와 고니시 히다노카미의 날랜 기병을 얻어 양 날개를 달더니 해외를 씹어 삼키려 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바꾸지 않고 조선을 침략하면서, 모조리 빼앗지 않고

15) 관백(關白):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를 가리킨다. 관백은 그의 관직명이다.

서는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책봉과 통공의 단초를 열어 이익을 누리고 왕 노릇 하고자 하는 뜻을 도와준다면 훗날 금하고자 하여도 권한은 이미 우리 손에 있지 않을 것이요, 왜구에게는 댈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참담한 화를 누가 불러왔단 말입니까! 만약에 권병(權柄)이 경략사 손에 쥐어있다면 저들은 간교한 거짓을 꾸미면서 모두 경략사 핑계를 댈 것입니다. 하물며 앞뒤로 공을 탐하고 패배를 엄폐하는 보고를 올리면서 어찌 경략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작정 상주문을 연이어 올린단 말입니까? 지금 조정에 돌아와 올린 소장이 수천수만 마디인데, 과시하듯 떠벌리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가 욕을 당해야 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어야 한다."[16]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여송이 이처럼 신하로서의 예의라곤 없으니 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기에 경략사의 죄는 이여송의 말만 따르며 본인의 주장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한탄한 것이고, 이여송의 죄는 기만에 익숙해져서 공론의 밝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경략사에 대해 논하는 자라면 그의 밝지 못함을 논함으로써 천하로 하여금 어리석은 유자(儒者)는 일을 해내기에 부족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17] 지난 날 갑옷 입고 배에 올랐던 사람이라면 그의 실수를 꾸짖어주어야 하고, 올바른 풍간(諷諫)을 했다가 지적당한 어사라면 조정을 대신해 풍간의 두려움을 절실히 세워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여송에 대해 의논하는 자라면 그의 불충을 의논함으로써 천하로 하여금 소인에게 군사 통솔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날 개선가를 부르며 조정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심유경(沈惟敬)[18]과 더불어 나라를 떨어트린 신하의 죄를 물어 새로운 싹이 트

---

16) 임금이……죽어야 한다: 『국어(國語)』「월어하(越語下)」에 나온다. 원래는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는 수고스러워야 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君憂臣勞 , 君辱臣死)"이다.

17) 천하로……합니다: 원문에는 '천하지(天下之)'라고 되어 있는데, '之' 자는 '知' 자의 오기로 보인다. 그래야 다음에 나오는 '使天下知小人不可帥師'와 대우(對偶)가 맞는다. 따라서 고쳐 번역한다.

18) 심유경(沈惟敬:? ~1599): 본래 일본에서 출생하여 상업에 종사하였다.

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책을 묻는 자들이 적을 놓아 주려는 간사함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고래도 삼킬 수 있고, 빗장을 굳게 채울 수 있으며, 이웃 나라의 난을 꺼트릴 수 있고, 국위(國威)도 떨칠 수 있습니다. 종묘사직의 무궁한 복이 황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然臣猶有不容嘿者. 仰爵之鉅典, 以因文張學顔成之, 胡御史曾發其隱, 宣鎭之盤據, 以契兄申宋九庇之, 齊序班向暴其奸. 參議傳霖, 副史劉葵蒙辜負, 幸幾不免于一網. 其傾陷文臣類如此. 摠兵楊紹勳, 參將劉綎被嗾得誣, 知已難于再奮, 其傾陷重臣類如此. 兩遣有大虜大倭之淫惡, 德以宣謠, 而益着一軍有如狼如虎之號, 聲緣嗜殺而愈增. 跡其半生, 率皆狂悖. 人多疑其懷異志, 仍使帥師, 必致顚越, 固知其負國恩矣. 皇上以臣言不謬, 大奮朝綱, 一併罷斥. 儻責訊有警, 宜首經略正之典刑. 庶呑舟不漏網外, 而奸回靡不革心矣. 職非不知彼深根固蔕, 震慴一時, 又非不念彼沐雨櫛風, 暴露涉歲. 而爲此盡言, 以昭其辜也, 誠不敢惕忖以負台署之筵, 亦不敢庇惡以長門庭之寇. 芹曝之衷, 今是已.

그러나 신이 아직도 침묵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위를 높여주는 조정의 대법(大法)에 대해서 장학안(張學顔)[19]이 쓴 글로 인해 성사되었으나 호(胡) 어사가 일찍이 그 내막을 밝힌 바 있고, 선진(宣鎭)을 차지하고 앉은 것에 대해서 의형 신송구(申宋九)가 비호

---

임진왜란 당시 일본어에 능통했던 그는 병부상서 석성(石星)의 눈에 들어 담판 사절로 뽑혔는데, 봉공(封貢)과 강화를 주장함과 동시에 석성을 종용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왕(王)에 가봉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 히데요시는 7조항의 강화 조건을 내세웠는데, 석성과 심유경은 논쟁이 될 만한 조항을 마음대로 바꾸어놓았다. 명나라 조정과 히데요시는 각각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였는데, 후에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1598년에 마침내 정유재란을 일으켰다. 신종은 대노하여 심유경과 석성을 사형에 처했다.

19) 장학안(張學顔: ?~1598): 자(字)는 자우(子愚)이고 호는 심재(心齋)이다. 융경(隆慶) 5년(1571)에 우첨도어사(右僉都御史) 순무요동(巡撫遼東)이 되었고, 만력(萬曆) 연간에 호부상서가 되어 장거정(張居正)의 신임을 받았다.

해 주었으나 제서반(齊序班)[20]이 그 간악함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21] 참의(參議) 부림(傅霖)[22]과 부사(副史) 유규(劉葵)는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마터면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할 뻔했으니, 그가 문신을 모함함이 대략 이와 같았습니다. 또 총병 양소훈(楊紹勳),[23] 참장 유정(劉綎)[24]은 사주당해 무고를 얻어 스스로 재기하기 어려움을 알았으니, 그가 중신을 모함함이 대략 이와 같았습니다.[25] 두 번이나

---

20) 제서반(齊序班): 서반(序班)은 명청시대에 두었던 관직명으로 홍려시(鴻臚寺)에 소속되어 있다. 『명사(明史)』「직관지3(職官志三)에 보면 "서반은 문무반열의 시위(侍班).문무반열의 정리(齊班) 및 의전 바로잡기(糾仪)와 사회 등을 관장한다.(序班典侍班.齐班.糾仪及传赞)"고 한다.

21) 선진(宣鎭)을……주었으나: 선진은 장성 부근, 몽고와의 접경지에 위치해 있어서, 명나라 조정이 설치한 구변(九邊) 중 가장 중요한 곳"이다. 만력 11년(1583)에 이여송은 산서 총병관(山西總兵官)으로 나갔는데, 급사중 황도첨(黃道瞻) 등은 이여송 부자가 나란히 중진(重鎭)을 차지해서는 안된다고 간언했으나 대학사 신시행(申时行)의 간청으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신송구(申宋九)라고 언급한 자가 바로 신시행이다. 후에 급사중 소서(邵庶)가 이여송과 그의 아우 이여백(李如柏)의 불법 행위를 탄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여송은 만력 15년(1587)에 다시 총병이 되어 선진부를 관할했다.

22) 부림(傅霖): 자(字)는 응기(應期)이고 조의대부(朝議大夫).수주지주(壽州知州)、하남첨사(河南僉事)、산동요해 참의(山東遼海參議) 등을 역임했다.

23) 양소훈(楊紹勳): 요동 지방의 양씨 집안 장수를 대표하는 인물로, 일찍이 보정(保定).거용평창(居庸昌平) 및 요동 세 개 진(鎭)의 총병관을 역임한 바 있다.

24) 유정(劉綎: 1558~1619): 자(字)는 성오(省吾)이며 남창(南昌) 사람이다. 명나라 때 왜군과 맞서 싸운 걸출한 장수로서, "만명 제일 맹장(晚明第一猛將)"이라 일컬어졌다. 대장군도독(大將軍都督) 유현(劉顯)의 아들이다. 임진전쟁 때 유정의 활약상은 『명사(明史)』 권247에 실려 있다.

25) 작위를……같았습니다: 『명 신종실록(明神宗實錄)』 만력 22년 정월 병신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광동도어사 당일붕(唐一鵬)이 총병 이여송(李如松)을 공을 탐하고, 실패를 엄폐하고, 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세 가지 죄목으로 탄핵했다. 백작의 작위를 함부로 남용한 것은 장학안(張學顔)에 의해 성사되었고, 선진을 차지하고 앉은 것은 신송구(申宋九)에 의해 비호 받았으며, 문신 부림(傅霖).유규(劉葵), 무신 양소훈(楊紹勛).유정(劉鋌)을 모함한 죄 및 음란과 살상을 일삼은 죄상들도 함께 탄핵하면서 경략 송응창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과신하였다고 탓했다. 황상은 이부와 병부에 명을 내려 공정히 사실대로 조사하도록 했다.(廣東道御史唐一鵬劾總兵李如松貪功掩敗衅禍三罪. 冒濫伯爵成于張學顔, 盤踞宣鎭庇

저 왜놈들을 보내준 사악함은 덕으로써 칭송되고, 게다가 전군에서 승냥이 같고 호랑이 같다는 호칭까지 얻어, 그의 명성은 살생을 좋아함으로 인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의 반평생 행적을 따라가 보건대 모두가 미치광이 같은 패륜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딴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라 의심하면서도 그에게 군대를 인솔하게 하였는데, 기어이 참월(僭越)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그가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상께서 신의 말이 그릇되다 여기지 않으신다면, 나라의 기강을 크게 떨쳐 한꺼번에 물리치십시오. 만약 심문하여 경계할 만한 것이 있다면 먼저 경략사를 형벌로써 바로잡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배를 집어삼킬 만큼 큰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되어 간사한 자들도 모두 마음을 고쳐먹을 것입니다. 직책상 저들의 뿌리가 깊고 꼭지가 단단하여 한 시대를 벌벌 떨게 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으며, 저들이 비바람 맞아가며 몇 해 동안 노숙한 공로 또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곡진히 말을 한 것은 그 허물을 밝히기 위함일 뿐, 추호도 제멋대로 헤아려 감히 대서(台署)의 자리를 저버리려는 것도, 또한 악인을 비호하여 감히 집안의 도적을 기르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 구구한 충정, 이제 그치겠나이다.

而奉聖旨: “目今四方多事, 朝廷之上, 必須功罪明白, 方能使人這本着. 吏兵二部會同査議, 宋應昌.李如松是功是罪, 從公據實來說本內爲者, 是如何說着四將話來.”

이에 성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날 사방에 일이 많은 터라 조정에서 반드시 공과 죄를 분명히 해야 바야흐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제본을 믿게 할 수 있다. 이부와 병부는 회동하여 조사하되, 송응창과 이여송의 공과 죄를 공정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제본 안에 언급된 자들이 네 명의 장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밝히라.”하였습니다.

---

于申宋九, 傾陷文臣傅霖.劉葵, 武臣楊紹勛.劉鋌, 及宣淫嗜殺狀. 因言經略宋應昌過信不明. 上命吏兵二部從公據實查奏.)”

## 5. 사천사(司天使)[1]의 제본 정월 22일
## (司天使題本 正月二十二日)

行人司憲一本.
東國之慮, 宜周善後之議, 宜乞懇祈聖明獨斷, 以圖萬全事. 臣前奉命宣諭朝鮮, 直抵王京. 去來八千路遙, 風雪不避, 日夜兼程, 臣職司奔走, 豈敢憚勞? 以我皇上東顧之慮, 是啓處不遑. 又奉旨諄諭國王一切防倭事理. 迺其子李某猶稱疾, 其陪臣尹根壽等, 猶泄泄然也. 臣責以失守宗祧, 貽憂聖皇, 君乏句踐之憤恥, 子乏衛文之幹蠱, 臣乏種蠡之憂國. 天朝字小, 固難以再徼留兵, 諸將又不能爲爾國謀矣. 其君臣始惕惕然懼矍然省也, 于閏十一月十九日, 始遣王子陪臣南行, 鍊兵峙餉計海防矣. 顧其麗卒脆弱, 猝難禦倭爲昭. 臣旣以奉使爲常職, 亦以咨訪爲大務, 見之旣眞則議之宜詳.

행인(行人)[2] 사헌(司憲)이 올리는 제본(題本).

동쪽 나라의 우환에 대해서는 의당 뒷수습 논의를 주도면밀히 하고, 성명하신 황제의 독단을 간곡히 바람으로써 만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도를 도모해야 합니다. 신은 일전에 황상의 명을 조선에 받들어 선유하기 위해 곧장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가는 데만 8천 리나 되는 먼 길이지만 눈바람도 피하지 않고 밤낮으로 달렸나니, 신이 맡은 바 임무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는 일에 어찌 감히 노고를 꺼리겠습니까? 우리 황상께서 동쪽을 돌아보며 근심하고 계시기에 편히 쉴 겨

1) 사천사(司天使): 임진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에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온 사신 사헌(司憲)을 말한다.
2) 행인(行人): 사자(使者)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황제의 뜻을 받들어 조선 국왕에게 왜적을 방비하기 위한 모든 사리에 대해 간곡하게 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이 아무개는 여전히 병을 핑계 댔고, 배신(陪臣) 윤근수(尹根壽)[3] 등은 여전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신이 꾸짖으며 말하길, 종묘를 지키지 못해 천자에게 걱정을 끼치고도 임금에게는 구천(句踐)과 같이 분노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아들에게는 위(衛)나라 문공(文公)과 같이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 계승하려는 마음[4]이 없으며, 신하에게는 월(越)나라 대부 문종(文種)과 범려(范蠡)[5]와 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조에서 소국을 어여삐 여기지만 더 이상은 군대를 머물게 하기는 어렵고, 장수들 또한 너희 나라를 위해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조선의 군신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더니, 윤11월 19일에 비로소 왕자와 배신을 남쪽으로 보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모으고 바다를 방비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군사들은 나약하여 창졸지간에 왜구를 막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신은 기왕에 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나가는 일을 일상직으로 삼고 있고, 또한 자문하고 방문하는 일을 큰 직무로 삼고 있으니, 가 보아서 사실임이 밝혀졌다면 상세하게 의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

3) 윤근수(尹根壽: 1537~1616):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재기용되어 왕을 호종했으며, 문안사.원접사.주청사 등에 임명되어 여러 차례 명나라를 왕래하며 명과의 외교를 맡았다. 1595년 좌찬성에 오르고, 1597년에는 왕비를 수안으로 시종한 뒤 판의금부사를 겸했다. (다음백과)

4) 부모의……마음: 원문은 '간고(幹蠱)'로, 아들이 부친의 뜻을 잘 계승하여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 아들이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허물이 없어진다(幹父之蠱, 有子, 考无咎)." 위나라 문공(文公)은 제(齊) 환공(桓公)의 지원을 받아 조가(朝歌)에서 초구(楚丘)로 천도하고, 위 의공(懿公) 대에 거의 망한 위나라를 재건했다.

5) 문종(文種)과 범려(范蠡): 문종과 범려는 월(越)나라 왕 구천(句踐)을 도와 패자(覇者)가 되게 한 충신들이다. 구천이 오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패하여 회계(會稽)에서 포위당한 채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이 '강화(講和)해 주면 월나라는 재산을 모두 바치고 신하가 되겠다.'는 조건을 오나라에 제시하여 멸망의 위기를 넘겼다. 『사기(史記)』 권41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에 나온다.

臣以爲天下事, 于所不可已者已之, 見以爲退縮, 于所可已者而不已, 見以爲多事. 于所難爲者不爲, 則衆以爲是, 于所難爲者必欲爲之, 則衆以爲非. 臣雖愚魯, 蓋亦喩此. 然于可已之中, 有萬萬不可已者, 于難爲之中, 有萬萬不得不爲者, 合議守東國之事是已. 臣請先以通國之議論未眞, 倭奴之情形有據, 爲我皇上陳之. 論者曰: "倭非畏威咸遁歸." 不知平壤之戰, 行長深懲其喪師之恥, 淸正咸鏡之分入, 方以執王子縛陪臣爲奇貨. 兩將相軌, 勢不相睦, 在淸正則急歸以誇功, 在行長則忙還以掩敗, 佯爲乞款, 實懼進躡. 且倭奴數萬, 皆生惡瘡, 瘡甚劇, 聞其離王京二十里, 皆棄甲抛戈. 當是時, 若以一旅襲之不孑遺, 則亦殺傷太半. 無奈我軍亦染瘟疫, 力不能前, 賊遂得以宵還矣. 然則所謂未嘗遁歸者, 臣不謂然也.

신이 생각하기에 천하의 일이란 그만두어서는 안 될 때에 그만 두면 물러나 움츠렸다 여기고, 그만두어야 할 때에 그만 두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이라 여깁니다.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옳다고 여기고, 어려운 일을 기필코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릇되다 여깁니다. 신이 비록 우둔하기는 하지만, 이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어야 하는 것 중에 절대 그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어려운 일 중에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으니, 합의하여 동쪽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청컨대 먼저 나라 전체의 의논이 진실이 아니고, 왜노(倭奴)의 정황에 근거가 있음에 대해 황상께 진언하겠습니다. 논자들은 "왜구들이 위엄이 두려워 달아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양 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군사를 잃은 치욕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6]는 함경도로 나뉘어 들어가 바야흐로 왕자를 잡고 배신들

6)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 1562~1611): 오와리국 사람으로 히데요시와는 동향(일설에는 먼 친척간이라고도 한다) 출신이다. 그 인연으로 어려서부터 히데요시 집안에서 자랐다. 용맹한 무장으로 일컬어지는 반면에 매우 치밀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1588년 히고한국(肥後半国)의 영주가 되어 조선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조선에서는 악명이 높아 "악귀 키요마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눈물을 그칠 정도였다고 한다. 울산전투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을 포박해 기화(奇貨)로 삼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두 장군이 나란히 가고 있는 한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가토 키요마사는 급히 돌아가 자신의 공을 자랑해야 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급히 돌아가 전쟁의 패배를 가려야 합니다. 저들이 화친을 요구하는 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군해서 자신들을 짓밟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놈 수만 명이 모두 악창이 났는데, 상처가 너무 심해지자 한양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모두 갑옷도 버리고 창도 내던진 채 달아났다고 하니, 이때 병사 5백 명[7]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습격한다면 절반 이상을 살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 우리 군사 또한 역병에 걸려 힘써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왜놈들이 밤을 틈타 돌아가고 말았을 뿐입니다. 그런즉 이른바 달아나 돌아간 자가 없다는 말에 신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論者曰: “倭志已厭, 倭必不來.” 夫枉化身巴關白古飭兵積餉五六年矣. 兇鋒所指如摧枯拉朽, 朝鮮三百六十州, 崇朝據有, 一朝爲我所奪, 豈不抱恨! 況始欲約分四道, 宜劑鴻溝, 其封豕長蛇之念, 養虎穴狼之心, 蓋日夜切思矣. 且計所擄子女, 不償死亡三萬之士卒, 料所掠之財物. 不償抛棄精好之器械. 所小得者, 旣不足以償其所失, 所大欲者豈不冀其得哉? 然則所謂倭必不來者, 臣不敢保也. 論者曰: “貢不可許, 封亦不可許.” 夫以封爲不可者, 必曰: 關白連六十餘島之衆, 所向無敵, 稱雄鱗介之卿, 至貴倨矣, 何可一楮之命爲重輕? 況封則關白固以爲榮, 不貢則無以爲利, 初來之願不遂則甲兵之構無已. 其言封之可罷者是也. 夫以封爲可, 必曰: 關白古廝輿掘起, 方服海外, 心恐內變, 又慮外侵, 朝夕不安, 遂遣將乞款, 幸得皇上榮封, 可以號召其六十六州之人, 且

---

했으며, 강화문제에서 히데요시가 주장하는 강화조건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대립하던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 고니시 유키나가 등과 사이가 멀어져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는 도쿠가와 측의 동군(東軍)에 들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로 인해 히고이치국(肥後一國)의 다이묘로 성장해 간다. 쿠마모토에 거점을 두고 7년에 걸쳐 일본 3대 성의 하나인 쿠마모토성(熊本城)을 축성했다.

7) 병사 5백 명: 원문은 ‘일려(一旅)’로, 옛날에 병사 5백 명을 가리킨다.

掩其三戰三北之恥. 倭兵暫退, 我兵暫休, 其言封之許者亦是也.

논자들은 또 "왜구들이 이미 질려서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특한 화신 관백(關白: 豐臣秀吉)이 군대를 정비하고 군량을 비축해 온 지 5~6년이나 되었습니다. 흉악한 칼날을 휘두르는 곳마다 마치 마른 나무가 꺾이듯, 흙 담장이 무너지듯, 조선 360개 주(州)가 한나절 만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빼앗겼으니 어찌 원한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처음에는 네 개의 도(道)를 나누어 가지고 큰 강을 사이에 두고서 경계를 지으려 했던 터라, 아마 큰 돼지와 긴 뱀 같은 욕심과 호시탐탐 엿보고자 하는 마음에 밤낮으로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자식들의 수를 계산해 보건대 3만 사졸의 죽음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빼앗긴 재물을 헤아려 보건대 그들이 내다버린 좋은 무기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득으로는 손실을 보상하기에 부족할 터, 큰 것을 욕심내는 자들이 어찌 더 얻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왜구들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신은 감히 담보할 수 없습니다. 논자들은 말합니다. "조공을 윤허해서도 안 되고, 책봉을 윤허해서도 안 된다." 책봉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관백이 60여 개 섬에 사는 사람들을 통일하고 나니 가는 곳마다 적수가 없어져, 변방 오랑캐[8] 공경들 사이에서 영웅이라 불리면서 지극히 존귀한 곳에 거하게 되었으니, [봉국에 명한다는] 조서 한 장 따위를 대수롭게 여기겠는가? 게다가 책봉이라면 관백에게 진실로 영광이겠으나 통공(通貢)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로울 것이 없다. 따라서 처음 이곳에 왔던 바람을 이루지 못한다면 전쟁 구상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책봉을 파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책봉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관백이 시여(廝輿)[9]에서 일어나 바야흐로 해외

8) 변방 오랑캐: 원문은 '인개(鱗介)'이다. 옛날 사람들은 변방의 오랑캐를 자라와 물고기와 별반 차이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 이렇게 불렀다.
9) 시여(廝輿): 나무하고 짐을 싣는 말단 군사를 말한다.

를 정복할 때, 속으로 내란도 걱정되고 외침도 걱정되어 조석으로 불안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군을 보내 화친을 청해 왔으니, 영광스럽게 황상의 책봉을 받게 된다면 66개 주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삼전삼패의 치욕을 덮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왜병이 잠시 물러나 우리 군이 잠시 쉴 수 있게 될 것이다.”책봉을 허락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 역시 옳습니다.

曩臣在平壤, 曾以紙筆, 詢倭將小西飛彈守藤原如安者. 渠云:“關白古曷嘗不以封爲乎?”實晝錦榮者也. 至于通貢之說, 實繼先日本而後進者也, 此其情可逆覩已. 臣以爲許之封耶, 安能保其不復犯? 絶其封耶, 則兵故可以不請. 論者曰:“留兵可撤, 遼左可禦.”顧 今遼左乾坤, 何等時耶? 十室九空, 士馬疲耗. 及今休養其氣力以禦虜, 尙且不足, 而復以之禦倭乎? 臣聞遼卒冒戰東北之豺狼, 怯聞南來之水妖, 而邊臣其且縮頸於入關之胡虜, 却攘臂于犯江之倭奴. 此可鼓空談耳, 夫何濟焉? 臣聞九連城居民皆云“倭來, 我等悉入虜地以避患, 此非樂土也.” 人情洶洶如此, 可驅之使戰乎? 倘倭復據朝鮮, 則一力以禦虜, 又一力以禦倭, 勢必不左矣. 所謂遼左可禦者, 所未解也.

신이 지난번 평양에 있을 적에 일찍이 편지를 보내 왜장 고니시 히다노카미(小西飛彈守) 후지와라 죠안(藤原如安)[10]이라는 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관백이라고 어찌 책봉 생각을 않으셨겠습니까? 실로 대낮에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는 영광일 것입니다.”그러나 통공의 주장인즉 일본이 먼저 물건을 들이고 난 뒤에 보낸다는 뜻이니, 그 정황이 어떨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만약 책봉을 허락한다면 저들이 다시 침범하지 않는다

10) 고니시 히다노카미……조안: 원문에는 후지와라 죠안(藤原如安)이라 되어 있으나 고니시 히다노카미의 원래 이름은 나이토 죠안(內藤如安)이다.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의 장수로 천주교 집안인 내등 가문에서 태어나 세례명인 조안으로 활동하다가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발탁되어 고니시 히다노카미라는 이름으로 임진전쟁에 참가했다. 명.일 회담이 북경에서 열릴 때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고 어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책봉을 끊는다면 아마도 전쟁 때문에라도 [더 이상]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논자들은 말합니다. “남겨 둔 병사들을 철수해도 된다. 요동은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요동 천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어 있고, 사람도 말도 피폐한 채 고갈되었습니다. 이참에 쉬면서 기력을 축적한 다음 적을 막는다 해도 부족할 판이거늘 다시 왜구를 방어하란 말입니까? 신이 듣건대 요동의 병졸들은 동북의 승냥이·이리와도 싸웠거늘 남쪽에서 물의 요괴들이 올라왔단 말을 듣고 겁을 먹었다 하고, 변방의 신하들은 관문을 열고 들어온 오랑캐들 소식에 목을 움츠리더니, 강산을 범한 왜노들에게는 두 팔을 휘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헛된 의론이나 부추길 뿐,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구련성(九連城) 백성들이 모두 말하길, “왜가 온다. 우리 모두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환란을 피하자. 이곳은 낙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심이 흉흉하기가 이와 같은데, 이들을 내보내 싸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왜가 다시 조선을 정복한다면, 한편의 전력으로는 오랑캐를 막아내고, 또 한편의 전력으로는 왜를 막아내야 하니, 형세상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요동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을 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論者曰: “倭去未爲眞去, 倭來則爲眞來.” 不知釜山舊有倭戶, 麗人且與爲婚, 啓倭誨盜, 已非一朝. 且釜山之去對馬島, 一葦可航, 晝夜卽至, 來而去, 去而復來, 茫無定踪, 變詐靡常. 臣在朝鮮, 其陪臣數口而二三異報, 一人而六七異. 臣幷苦其無所依據矣. 在撥兵, 何以取信于留守之將士, 將士又何以取信于住折遼陽之經略? 夫亦難以責其不報矣. 蓋知而不言, 每懷畏忌之心, 言而不盡, 則論悞事之罪. 臣旣不甘于罪矣, 夫亦何所畏焉? 經略獨曰朝鮮可守, 臣亦以爲可守. 臣恨經略言之遲, 臣又自恨其知之晚. 此臣所謂不可已而必爲之者也.

논자들은 말합니다. “왜가 갔다고 해도 정말로 간 것은 아니지만, 왜가 왔다고 하면 정말로 온 것이다.” 저들은 부산에 옛날부터 왜호(倭

戶)가 있었으며, 조선인들이 그들과 통혼하면서 왜구의 도적질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님을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부산과 대마도는 일엽편주로 항해할 수 있어서 하루 밤낮이면 도착할 수 있을 뿐더러, 왔다 가고 갔다가 다시 오는데 일정한 항로라고는 없으며, 변화무쌍하고 요상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신이 조선에 있을 때 보니 배신들 몇 사람이 입으로 서로 다른 보고를 올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섯 일곱 가지로 달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은 그들의 말에 근거 없었기 때문에 크게 골치가 아팠습니다. 파병하는 일에 있어서도, 남아 지키는 장수와 병졸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으며, 장수와 병졸들은 또 어찌 요양(遼陽)[11]에 주둔하는 경략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고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기도 어렵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늘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을 품게 되고, 말하되 끝까지 다하지 못한다면 일을 그르친 죄를 받게 됩니다. 신은 기왕에 죄를 짓고자 하지 않으니, 어찌 두려워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경략사만은 조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 또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경략사가 너무 늦게 말한 것이 한스러우며 또한 이를 늦게 안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말한 그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我成祖建鼎燕都, 以薊.遼.宣.大爲後屛, 以山.陝.四川.寧固爲右屛, 限西北戎虜也, 以朝鮮南北二千里爲左屛, 限南倭也. 向者救援屬國, 固我藩籬, 朝鮮不守. 脣亡齒寒. 王京八道之恢復也, 已得而復失數戰九仞之功, 若成畫餠而無用, 非計之得者也. 臣査該國八道, 惟慶尙一道, 幅員最廣, 分爲左右. 以洛東爲界, 而正北則江原道, 西北則忠淸道, 正西則全羅. 若慶尙不保, 則江原.忠淸.全羅, 莫非被兵之地. 雖有鳥嶺.竹嶺.秋風等嶺之險, 而他路旁出, 難可盡備. 陸路則自尙州出于忠淸道, 由咸陽出于全羅道. 自晉州出于光陽.樂安.南原之境. 水路則自巨濟出于順天, 特瞬息間耳.

---

11) 요양(遼陽):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의 도시로 심양(瀋陽)의 남쪽에 있다.

우리 성조께서 연경에 도읍을 세우신 후 계(薊).요(遼).선(宣).대(大)[12]를 후방 울타리로 삼으시고, 산서(山西)·섬서(陝西)·사천(四川)·영고(寧固)를 오른쪽 울타리로 삼아 서북쪽 융족 오랑캐를 막았으며, 남북으로 2천 리 되는 조선 땅을 왼쪽 울타리로 삼아 남쪽 왜를 막았습니다. 일전에 속국을 구원한 것은 본디 우리의 울타리인지라 조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내 순망치한(脣亡齒寒)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성 팔도가 회복되었지만, 이미 얻고 난 뒤에 수차례 전쟁으로 이룩한 공을 다시 허물어버린다면, 마치 그림의 떡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지므로 이는 훌륭한 계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조선 팔도를 조사해보니, 오직 경상도 땅만이 가장 넓어서 좌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경계로 정확히 북쪽이 강원도이고 서북쪽이 충청도이며 정확히 서쪽이 전라도입니다. 만약 경상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모두 전란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비록 조령[새재]·죽령·추풍령 등 험난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길이 옆으로나 있어서 다 방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육로로는 상주를 통해 충청도로 갈 수 있고, 함양으로 해서 전라도에 갈 수 있으며, 진주로 해서 광양·낙안·남원 경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수로로는 거제에서 순천으로 나갈 수 있어 순식간이면 당도할 수 있습니다.

近聞賊兵所在左道, 則蔚山之西生浦也, 東萊也, 釜山也, 梁山之上下, 龍堂也, 金海也, 熊川也, 昌原也. 海中則加德天城也, 巨濟也, 濟之永登浦.場門浦也. 幸賴我兵壓臨于大丘.慶州.三嘉等處, 故蔚山之賊, 不得踰慶州, 而東萊之賊, 不得踰大丘而北. 然巨濟之賊勢, 犯全羅甚易, 則把截于閑山島, 可以備其西犯之路矣. 夫慶尙一道, 實爲麗國南邊門戶, 而失全羅則無朝鮮. 夫王京之漢江, 開城之臨津, 平壤之大同江, 俱可通遼東海, 蓋全.慶等處至鴨綠江, 則右逼近遼左矣. 此皆臣足跡所敢

12) 계(薊)……대(大): 각각 계주(薊州: 지금의 天津 薊縣), 요동(遼東: 지금의 遼寧省 일대), 선부(宣府: 지금의 河北 宣化), 대동(大同: 지금의 山西 大同)을 가리킨다. 이 네 곳은 명나라 때 병사를 주둔하던 변계로서 나라 방위의 거점지였다.

聞見最眞者. 倭若併其力以犯鴨綠江, 則我兵聯布江上, 延至數百里禦之爲難矣. 賊若分其衆, 以犯山東則運道絶, 犯遼海則沿海設防, 更屬多事. 南北相援, 彼此接濟, 非百萬人不可. 故守全.慶則朝鮮無事, 朝鮮無事則山東.遼左可晏然無大虞. 此今日所以宜亟講者.

근래에 들으니 좌도(左道)에 있는 적병의 소재지는 바로 울산의 서생포, 동래, 부산이라고 합니다. 양산 위아래로는 용당, 김해, 웅천, 창원이라고 합니다. 바닷가로는 가덕도 천성과 거제도, 거제도의 영등포와 장문포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병사들이 대구·경주·삼가(三嘉: 지금의 합천) 등을 진압하고 있어서 울산에 있는 적들은 경주를 넘지 못하고 있고, 동래에 있는 적은 대구를 넘어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에 있는 적들의 기세가 전라도를 침범하기 쉬우니, 만약 한산도를 막는다면 서쪽을 침범하는 길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도는 조선의 남쪽 변방의 문호이며, 전라도를 잃으면 조선은 없습니다. 도성에 있는 한강, 개성의 임진강, 평양의 대동강은 모두 요동 바다로 통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부터 압록강에 이르기는 육지인즉 오른쪽으로 요동에 가깝습니다. 이는 모두 신이 직접 다니며 가장 진실하게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왜가 만약 온 힘을 합쳐 압록강을 침범한다면, 우리 병사가 강가에 연합하여 포진하고, 수백 리에 뻗어 방어한다 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적이 만약 무리를 나누어 산동(山東)을 침범한다면 운행 도로가 끊길 것이요, 요해(遼海)를 침범한다면 연해 지역마다 방비를 설치해야 해서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요, 또한 남북이 서로 구원하고 피차 구제한다 하여도 백만 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켜야만 조선이 무사할 수 있고, 조선이 무사해야만 산동과 요동이 평안해져서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마땅히 급히 강구해야 할 바입니다.

顧臣聞古人尙詢芻蕘, 臣雖小臣, 言不敢罔因敢罔議東事, 併其所善東事者, 開列五款. 伏乞聖裁.

一曰. 速發兵以防春汛. 當今司馬言請兵之難, 臣亦知其難. 第火之始燃, 猶可撲滅, 江河四潰, 不可挽塞, 是其勢之所當審也. 昔六國地方, 各不過地方六百里耳. 尤稱兵以相雄, 尤稱雄兵數十萬. 矧堂堂天朝, 以九州之廣四海之衆乎? 而迺曰無兵之患, 此臣之所不解也. 臣聞倭奴之長, 利乎險峻, 而不利于平原. 利于步而不利於馬. 我軍北兵則利于馬, 不利于步, 南兵則利于步, 不利于馬. 倭奴之長技有三, 中國之長技有五. 我兵以銃火箭, 擊其鑞鈀截其近, 砲兵居前沖其鋒, 馬兵居後以砍其賊. 伏設兩翼, 以分賊勢, 又以新造大砲. 其寨如此, 一千可當三千人之用矣. 今當發兵三萬兩, 南北兼資, 兩軍來應. 有警則救目前, 尤警則練麗兵, 使其傳習火砲火箭諸武藝. 如此則一年改觀, 二年可用, 三年當稱精銳. 我兵亦漸次撤回矣. 倘謀不早斷, 兵不早發, 在經略旣難以展布, 卽摠督又何以措手?

신이 듣건대 고인들은 꼴 베는 이나 나무꾼에게도 자문을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하찮은 신하이나 감히 근거도 없이 동쪽 나라의 일을 망령되이 의논할 수 없어서 제가 잘 아는 동쪽 나라의 일을 다섯 항목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결재를 바라나이다.

첫째, 속히 군사를 파견하시어 봄물이 불어나는 것을 막으십시오. 지금 사마(司馬)[13]가 병사를 청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였고, 신 또한 그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막 났을 적에는 꺼트릴 수 있지만 강물이 사방으로 터진 뒤에는 틀어막지 못한다 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형세란 마땅히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전국시대] 육국(六國)의 땅은 각각 600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사를 일으켜 서로 패자가 되고자 하였고, 수십 만 군사로

13) 사마(司馬): 사마는 원래 고대에 있었던 관직명으로, 명나라 때 사용하던 정식 명칭은 아니다. 명나라 사람들은 고대 용어로 관직명을 칭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일반적으로 대사마(大司馬)는 병부상서를, 소사마(少司馬)는 병부시랑을 가리켰다. 따라서 여기의 사마 역시 병부에서 파견나온 관리를 지칭한다.

패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물며 드넓은 구주(九州)와 숱한 사해의 백성을 거느린 위풍당당한 천조(天朝)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란으로 인한 근심이 없다고 말하다니, 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왜노들의 장점인즉 험준한 곳에서 유리한 것이라 하나 평원에서는 불리합니다. 보병 전투에서 유리한 것이라 하나 기마전에는 불리합니다. 우리의 북쪽 병사들인즉 기마전에는 유리하지만 보병 전투에는 불리하고, 남쪽 병사들인즉 보병 전투에는 유리하고 기마전에는 불리합니다. 왜노들의 빼어난 기술이 세 가지라면 중국의 빼어난 기술은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총과 불화살로 저들의 당파(鑵鈀)[14]를 쳐서 근거리의 적들을 끊고, 포병이 앞에서 저들의 칼날을 막아내며, 기마병이 뒤에 있다가 적들을 베어 버립니다. 또 양쪽 날개를 매복시켜 놓음으로써 적군 세력을 나누고, 새로이 제조한 대포까지 사용합니다. 이처럼 진을 친다면 천 명이 삼천 명의 쓰임을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3만의 병사를 파견하여 남북에서 서로 돕고 양 군이 와서 호응해야 할 때입니다. 경계할 상황이면 목전의 위기를 구제하고, 경계가 근심되는 상황이면 조선의 병사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화포와 불화살 등 여러 무예를 익히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1년이면 모습이 바뀔 것이요, 2년이면 가히 쓸 수 있을 것이요, 3년이면 정예병이라 칭할 만하여 우리 병사들도 점차 철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의를 일찌감치 결단하지 못하고 병사들을 일찌감치 파견하지 않아서 경략사가 어떠한 책략도 펼치기 어려워진다면, 총독인들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二曰. 暫給餉以議屯田. 當今司農言請餉之難, 臣亦知其難. 千里饋糧, 士有飢色, 矧轉輸異域, 此亦不可鼓舌而談者. 先臣胡宗憲, 頓七省之

14) 당파(鑵鈀): 명대에 처음 제작된 병기로 칼날이 여러 개 달려 있으며, 형태는 차(叉)와 약간 비슷하다. 당파는 쑤셔 넣을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화기의 임시 발사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기에 보병과 기병들이 많이 사용했다. 박소정 편역, 『문답으로 엮은 중국 교양사』, 상해고적출판사, 이산 출판, 2005년.

甲于浙中以禦倭. 其兵餉所費, 奚啻千萬? 邇者卽告匱, 東征之費, 纔十分之一二耳. 今暫給粟米十餘萬, 由金州輸義州. 又委麗人, 由義州輸之慶尙. 倘倭犯則兵食旣足, 可救燃眉之急, 倭退則久戍而議更番, 卽更番而議屯田. 麗當兵火亂亡之餘, 儘有可耕之地, 而無可耕之人. 我軍以二萬兵, 分屯要害, 耕戰交脩, 自可以計破海上之倭奴, 又不專以兵力創也. 又鴨綠江空地頗多, 率三千人耕之, 自可以足數萬人之用. 遼陽.山東皆有礦, 開之不難, 而朝鮮亦多礦山. 誠得一廉吏一將官委之. 事無不可爲者. 夫屯田則中國之餉不費. 開礦則內帑之發可省. 此今日策之最急者.

둘째, 군량을 잠시 공급하시고 둔전에 대해 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농(司農)[15]들은 군량 마련의 어려움을 주청하고 있사오며, 신 또한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천 리로 양식을 나르다 보면 병사들에게 주린 기색이 역력해 지는데, 하물며 이역(異域)으로 군량을 실어 보내야 하는 형편이니, [그 어려움은] 입을 놀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신하 호종헌(胡宗憲)[16]은 절중(浙中: 浙江省)에 7개 성(省)의 병력을 주둔시켜 왜를 막았는데, 군량으로 지출된 비용이 어찌 천만 정도에 그쳤겠습니까? 근자에 군량이 부족하다 알려오지만, 동쪽 출정에 드는 비용은 겨우 10분의 1,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10만 여 섬의 쌀을 공급하시어 금주(金州)[17]에서 [조선의] 의주(義州)로 운송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조선인에게 맡기어 의주에서 경상도로 운송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왜가 다시 침범한다 해도 병력과 식량이 넉넉해 다급한 상황은 구제할 수 있을 것이요, 왜가 후퇴한다면 오래 수자리를 서게 하면서 번갈아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됩니

15) 사농(司農): 명나라 때 호부(户部)를 지칭하던 용어이다. 호부상서를 대사농(大司農)이라고 불렀다.
16) 호종헌(胡宗憲: 1512~1565): 자(字)는 여정(汝貞)이고 호는 매림(梅林)이다. 집안 대대로 금의위(錦衣衛)를 지냈으며, 동남 지역에 왜적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절강순무(浙江巡撫), 동남칠선 군사총독(東南七省軍事總督)으로서 왜를 물리친 공을 세웠다.
17) 금주(金州): 요동반도 남부에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다.

다. 번갈아 교체하게 되면 둔전을 논의하면 됩니다. 조선은 전란으로 모든 것을 잃은 뒤인지라, 설사 경작할 땅이 있다 해도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군사 2만이 요충지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경작과 전쟁을 번갈아가며 잘 수행한다면, 계책을 세워 바닷가 왜노들을 무찌를 수 있어서 오직 병력으로만 살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압록강 주변에는 노는 땅이 제법 많으니, 3천 명을 이끌고 가 그곳을 경작한다면 수만 명의 비용을 대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요양(遼陽)과 산동(山東)에도 광산이 있어 개발하기 어렵지 않으나 조선에도 또한 광산이 많습니다. 청렴한 관리 한 명과 장관 한 명을 선발해 이 일을 맡긴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둔전이 있으면 중국의 군량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광산을 개발하면 내탕(內帑)의 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다급히 시행해야 하는 계책입니다.

三曰. 遣文臣以置監制. 向者平壤戰功, 先後有議. 邇來留守將士, 觀望不一, 則以監督之未躬也. 夫運籌帷幄, 固可決勝于千里之外. 然而披堅甲與諸將, 立于矢石之所, 則功次未有不明, 而人人咸盡其死力矣. 向者經略劃策定議三令五申于朝鮮, 而朝鮮寂然不應者, 則以遙制之不便也. 彼其國君之死生, 社稷之存亡, 皆係于我. 迺者繾綣內工, 把持主權之陪臣, 我國不得已而處置之, 使其國復陷敗軌, 以貽累我也, 此胡可長計乎? 臣以爲誠得風力而簡用之, 賜以特勅, 假以事權, 使之出鎭全羅慶尙間, 我將士之賢否勇怯, 可目擊而激揚擧劾, 其陪臣之勤苦或怠忽差事, 皆得以褒貶斥陟. 如此則心未有不振刷, 用兵未有不克捷, 彼積衰之邦, 未有不赫然中興者. 藩籬旣固, 則內地自安矣.

셋째, 문신을 파견하여 감독하는 제도를 두셔야 합니다. 일전에 평양에서 세운 전공에 대해 전후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근자에 조선에 남아 지키는 장수와 병졸들 중에 관망만 하는 자가 한 둘이 아닌데, 이는 모두 직접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휘장 안에서 계책을 짜내도 천 리 밖에서 승리를 결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옷 입은

병사들과 여러 장수들은 화살과 돌이 날아드는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공적의 크고 작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며, 사람마다 사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경략사가 책략을 계획하고 의논을 확정하여 조선에 세 번이나 군령을 내리고 다섯 번이나 펼쳤으나 조선에서 이에 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멀리서 통제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임금의 생사와 사직의 존망이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전에 내공(內工)에 연연해하고 주권을 좌지우지하던 배신들을 우리나라에서 부득이하여 처치했다가, 조선으로 하여금 다시금 패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나라에까지 누를 끼치게 한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장구한 계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기에 만약 기개 있고 박력 있는 자를 얻어 간택해 임용하시고, 특칙(特勅)을 내리시어 권력을 위임한 다음,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로 나아가 진수하게 하신다면, 우리 병사들의 어짊과 그렇지 못함, 용감함과 비겁함을 눈으로 목격하고 격려하거나 탄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배신들이 수고로운지, 파견되어 수행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는지를 모두 알아서 포상하거나 내치거나, 승진시키거나 강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모두의 마음이 진작될 것이요, 전쟁을 치름에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을 것이요, 쇠락함이 누적되어 있는 저 나라이지만 찬란히 중흥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울타리가 공고해지면 내지는 절로 평안해집니다.

四曰, 破恒格以待豪傑. 當今拊髀而思頗、牧, 寤寐而憶韓、白, 國家養士二百年來, 豈乏若人? 但有之而不識. 識之而不盡其用矣. 抑且位不尊, 不久任則有速化之嫌, 專不試則庸庸起忌者, 無可以收得士之效. 今此斬樓蘭服鄯善諸臣, 胡論其位耶? 試耶? 惟拘于位拘于試, 遂使雄才返迹, 用武無地耳. 櫪下之伏, 羞卞和之獻, 操齊門之瑟者, 抑鬱沈淪, 竟阻厥施者豈少乎? 臣以爲誠得大豪傑而優用之, 且又寬以文法, 假以歲月. 不搖于盈庭之議, 不惑于三至之口, 使得以縱橫展布, 則何事不濟? 何功不建?

넷째, 상규(常規)를 깨뜨리심으로써 호걸들을 대우하십시오. 지금 넓적다리를 때리며 염파(廉頗)와 이목(李牧)[18]을 생각하고, 오매불망 한신(韓信)과 백기(白起)[19]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만, 나라에서 병사를 길러온 지 200년 이래로 어찌 이들과 같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았어도 다 등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지위가 높지 않은 자라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할 경우 빨리 출세했다는 혐의를 사고, 또 전문적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범용한 인물일 뿐이라며 거리낌을 사게 되어 결국은 병사를 얻은 효과를 거둘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누란(樓蘭)을 베고 선선(鄯善)을 복속시킨[20] 여러 신하들을 놓고 어찌 지위를 논하겠습니까? 어찌 시험을 논하겠습니까? 바로 지위와 시험에 얽매이기 때문에 영웅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아 무예를 펼칠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엎드려 [자신이 품고 있는] 화씨벽(和氏璧)[21]을 부끄러워한 사람이나 제(齊)나라 문에서 슬(瑟)을 탔던 사람처럼[22] 억

---

18) 염파(廉頗)와 이목(李牧): 전국시대 조나라의 장군이다. 후세에 명장의 상징으로 병칭되었다.

19) 한신(韓信)과 백기(白起): 한신은 유방(劉邦)을 도와 한나라를 개국한 공신이고, 백기는 전국시대 사장(四將) 중 하나이다. 이 둘은 빼어난 용병술로 병칭된다.

20) 누란(樓蘭)을……복속시킨: 누란과 선선은 사실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 지금의 신쟝 위구르 자치구 트루판 부근에 해당한다. 『한서(漢書)』「서역전(西域傳)」에 "선선국은 본래 명칭이 누란이다. 도성은 우니성에 있다. 양관으로부터 1,600리, 장안으로부터 6,100리 떨어져 있다(鄯善國, 本名樓蘭. 王治扜泥城. 去陽關千六百里, 去長安六千一百里)."라는 기록이 보인다.

21) 화씨벽(和氏璧): 『한비자』에 따르면 초나라 사람 변화(卞和)가 산속에서 캐낸 원석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변화가 초 여왕에게 원석을 바쳤으나, 옥세공인이 가짜 돌이라고 판정을 내리자 분노한 여왕은 변화의 다리를 잘라 버렸다. 여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자 변화는 다시 돌을 바쳤는데, 이번에도 가짜라는 판정을 받고 나머지 한 다리도 잘렸다. 문왕이 즉위하자 다시 옥을 바치려 했는데, 다리가 없어 갈 수가 없자 변화는 원석을 안고 엉엉 울었다. 문왕이 이야기를 듣고 원석을 가져다 갈아 보니 과연 눈부신 옥이 나왔고, 문왕은 변화에게 봉록을 내려 여생을 편히 살게 했다.

22) 제(齊)나라……사람처럼: 제나라의 임금은 우(竽) 연주 듣기를 좋아했다.

울하게 가라앉아버린 채 마침내 재주 펼칠 길이 막혀버린 사람이 어찌 적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호걸을 얻어 우대하시고, 법을 관대히 하여 많은 시일을 그에게 주시며, 조정에 그득한 의논에 동요되지 마시고 거듭되는 비방에 현혹되지 않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종횡으로 뜻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어떤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공인들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五曰, 急存恤以激士氣. 兵法視卒如嬰兒, 故可與之赴深壑. 凡玆東征將士, 捐親戚棄土壤, 間關水陸, 戴襲霜露, 出萬死于一生者, 由上有以感之也. 今皆備嘗難苦, 瘡痍八關, 迄無存恤, 志意消沮. 勞而無功, 何以勤后? 宋祖解裘帽賜全斌而將不知寒, 晉文公以大寒親自拊循營壘, 而三軍之士皆知挾纊. 未有上下不知勤而士樂爲死者. 故必遡成功于旣往, 然後責明效于將來. 夫周爰咨度, 其知醜夷之情形, 臣之能也. 審時度勢, 計不失一, 明見萬里之外, 聖明之斷也. 如果臣言不謬, 勅令該部議覆, 早賜施行. 則外侮息而內患弭矣.

奉聖旨, 兵部便看了來說.

다섯째, 급히 위무하고 구제하심으로써 사기를 북돋우셔야 합니다. 병법에서는 사졸들을 갓난아이처럼 여기기 때문에 깊은 구렁텅이 속에 함께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쪽 출정에 참여한 장수와 사졸들이 친척도 고향도 버린 채, 험한 산과 강을 건너 서리와 이슬을 맞아가며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주상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갖은 고난을 다 겪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위무하고 구제해 주시는 바가 없어서 모두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고생을 했음에도 공을 치하하지 않는다

---

어떤 사람이 제나라에서 벼슬하기를 원했는데, 우를 불 줄 모르고 오직 슬만 탈 줄 알아 제나라 문 앞에서 3년이나 슬을 타면서 임금이 한 번 돌아봐주기를 바랬다고 한다. 시대 혹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불우한 생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면 어떻게 훗일을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송나라 태조가 가죽 모자를 벗어 전빈(全斌)에게 하사하자 장수들이 추위를 잊었으며, 진나라 문공이 큰 추위에도 직접 군영과 보루를 찾아가 보듬자 삼군의 병사들이 모두 감동을 받아 따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위와 아래에서 위로하고 독려할 줄을 모르는데, 기꺼이 죽고자 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 세운 공을 거슬러 올라가 포상해 준 연후라야 훗날 분명한 효험을 다그칠 수 있습니다. "두루 묻고 헤아려보아"[23] 추악한 오랑캐의 정황을 밝히 아는 것, 이것은 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살피고 형세를 가늠하여 계책을 세움에 단 하나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만 리 밖을 밝히 내다보는 것, 이것은 성명하신 황상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신의 말이 틀리지 않다면, 해당 부서에 칙령을 내려 의론하여 제복(題覆)[24]하도록 하시고 속히 시행하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밖에서 받은 모욕은 사라질 것이고, 나라 안의 우환도 잦아들 것입니다.

성지(聖旨)를 받들었다. "병부에서 다 본 다음 와서 말하도록 하라."

---

23) 두루……헤아려보아: 『시경(詩經)』「녹명지십(鹿鳴之什)」에 나오는 구절이다.

24) 제복(題覆): 명나라 때 육부(六部)의 상서가 황제에게 올리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일반적으로 상서가 황제의 질문에 대답하는 글을 가리킨다.

## 6. 송응창(宋應昌)이 입공(入貢)에 대해 논의한 제본 정월 24일 (宋應昌議貢題本 正月二十四日)

經略侍郎宋應昌一本.
爲參報倭疑情形, 仰慰聖懷事.

按啓本年六月二十日, 倭酋行長遣小西飛彈守同遊擊沈惟敬前來乞款, 隨有晉州全羅之犯, 臣當査犯槍情由. 雖係淸正部倭, 淸正部倭, 實行長所使, 一面乞款, 一面犯槍, 以其反覆難定故. 小西飛至王京欲見臣, 臣不與見. 繼至平壤欲見臣, 臣不與見. 及所至寬奠, 臣在遼陽, 小西飛急欲見臣, 臣亦不與見. 夫彼屢次求見, 而臣屢次不容者, 固欲試其心. 亦以朝鮮地方無撫按司道等衙門爲證, 而恐有別說也.

경략사(經略使)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郎) 송응창(宋應昌)이 올리는 제본.
왜국의 의심스런 정황을 참주하여 황상의 성심을 위로하는 건.

계본(啓本)[1]에 따르면 본년 6월 20일에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고니시 히다노카미(小西飛彈守)를 보내 유격(遊擊) 심유경(沈惟敬)과 함께 와서 화친을 청했다고 했는데, 곧 이어 진주(晉州)와 전라도를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기에 신은 총을 들고 침범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의 부장들이지만, 가토 키요마사의 부장들은 실제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림을 받고 있

1) 계본(啓本): 조선시대 임금에게 제출하던 문서양식의 하나이다. 1412년(태종 12) 장신을 개칭한 것이다. 왕에게 올리는 문서로는 상소.차자.초기.계본.계목.장계.서계 등 다양한 양식이 있었다. 외방의 계본은 그 지방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이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데 쓰는 문서로서 이두를 섞어 썼다.

으며, 한편으로는 화친을 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침범을 일삼는 등, 종잡을 수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까닭에, 고니시 히다노카미가 도성을 찾아와 신을 만나고자 했으나 신은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평양을 찾아와 신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신은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전(寬奠)[2]에 이르렀을 때 신은 요양(遼陽)에 있었는데, 고니시 히다노카미가 다급하게 저를 만나고자 했지만 신은 또한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여러 차례 만나기를 청해옴에도 신이 여러 차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조선 땅에 증인이 되어줄 만한 무안(撫按)[3]이나 사도(司道) 등의 관아가 없어 딴 말이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及臣于閏十一月二十四日至廣寧, 西飛尙在寬奠, 具稟求見甚切, 且言行長必欲沈遊擊親往, 方爲準信. 小西飛必得親見經略, 纔有准定, 乃可書寫曉諭行長速速具表退歸等語, 臣見其情詞懇切, 始姑許之. 比及十二月十九日見臣, 及其謹恪且齎送豐臣秀家·行長·三成·吉繼·長盛五將稟書各各恭謹. 又豐臣秀家送長柄大刀四把, 三成大刀一 把, 吉繼大刀一 把, 長盛大刀一 把, 中刀一 把, 行長大刀 一 把, 中刀一 把, 鳥銃二門, 鐵盔二頂, 鐵下領一 個, 紅皮甲一領, 黑鐵盔一頂, 鐵下領一個, 黑漆皮甲一領, 各齎送臣. 臣固卻之, 西飛哀懇再三, 必欲臣受收. 且云收則准封, 准封卽可回報行長, 不收則不准, 難以回報. 臣不得已, 當將刀銃等物, 咨會遼東巡撫韓取善, 卽發分巡東寧道參議馮時泰, 遼東糧儲郎中劉三才會同, 逐一査驗收候進上外. 臣見其款誠, 當將小西飛量加宴賞, 秀家等五將亦量發叚疋分給, 以慰其遠來向化之誠. 小西飛旣見臣后, 卽差從倭二名於本月二十一日, 飛報行長取看去訖.

신이 윤 11월 24일 광녕(廣寧)[4]에 이르렀을 때 고니시 히다노카미는

---

2) 관전(寬奠): 만주에 있는 지명.
3) 무안(撫按): 중국 각 성에 있는 관직으로서, 민심 수습을 담당하였다.
4) 광녕(廣寧): 명나라 시기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 속하였던 군

여전히 관전에 머무르면서 상주문을 갖추어 와 매우 간절히 접견을 청하였는데, 고니시 유키나가는 유격 심유경이 직접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야만 믿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 고니시 히다노카미도 경략사인 나를 직접 만나야만 준거가 생기니, 그러면 편지를 써서 유키나가를 일깨워서 속히 표문을 올리고 물러나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 등을 했습니다. 신은 그 언사가 간절한 것을 보고 비로소 짐짓 허락했습니다. 12월 19일에 신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토요토미 히데이에(豊臣秀家)[5]·고니시 유키나가、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6]、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繼)[7]·마시타 나가모리(增田長盛)[8] 다섯

---

사적 요충지이다. 광녕의 지명은 금나라 때 처음 등장했지만 지역이 중요하게 작용한 시기는 명나라 때이다. 명나라는 요동 지역의 관리를 위해 요동도지휘사사를 설치하였는데, 이 소속의 광녕은 바다와 육로가 모두 가까워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동북 지역의 백성들이 경제.문화적인 교류 활동을 하는 데 매우 번성한 곳이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광녕은 조선의 사신들이 명나라를 다녀오는 길에 경유하는 지역이었으며,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조선의 사신들은 이곳에서 명나라와 주변국의 정세를 살펴 귀국한 뒤에 보고하는 일이 많았고, 『선조실록』에 따르면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임진전쟁 시기에는 광녕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많은 수의 군사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5) 토요토미 히데이에(豊臣秀家: 1572~1655):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를 가리키는 듯하다. 토요토미의 총애를 받아 유시(猶子)의 연을 맺고, 1586년에는 히데요시의 양녀 고우히메(豪姬, 마에다 도시이에의 딸)를 정실로 맡았다. 1592년 임진전쟁 때에는 총대장으로 참전하여 벽제관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이후 정유재란 때에는 감독자로서 참전했다.

6)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 1560~1600):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로서 행정실무 관료로 일하였다. 임진전쟁 때 그는 조선에 출병하여 평양성의 행정 총책임자로 일했다. 군사 방면에 있어 그의 미흡한 실력은 행주산성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군에 비해 10배나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당한 끝에 미츠나리는 군사의 절반을 잃고 후퇴했다. 이후 명과의 강화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후쿠시마 마사노리와 가토 키요마사 등 무단파의 반발로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히데요시가 죽은 후 끝까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저항하여 히데요시의 마지막 충신으로 불린다.

7) 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繼: 1551~1600): 오타니 요시다카(大谷吉隆)라고도 불린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으로 원래 쓰루가(敦賀) 성주였다.

장수가 보내온 서신을 가져와 바쳤는데, 그 태도가 몹시 공손하였습니다. 풍신수가는 또 긴 자루 대도(大刀) 넷, 삼성은 대도 하나, 길계는 대도 하나, 장성은 대도 하나 및 중도(中刀) 하나, 행장은 대도 하나, 중도 하나, 조총 둘, 투구 둘, 철하령(鐵下領) 하나, 홍피갑(紅皮甲) 하나, 흑철회(黑鐵盔) 하나, 흑칠피갑(黑漆皮甲: 검은 칠을 한 가죽 갑옷) 하나를 각각 신에게 보내왔습니다. 신이 한사코 이를 물리쳤지만 고니시 히다노카미는 재삼 간청하며 기어이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받으면 책봉을 비준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유키나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는 것이니, 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부득이하여 칼과 조총 등의 물건에 대해 요동 순무(巡撫) 한취선(韓取善)[9]에게 자문을 구했고, 곧장 동녕(東寧) 분순도(分巡道)[10] 참의(參議)[11] 풍시태(馮時泰)[12]에게 보내 요동 양저낭중(糧儲郎中)[13] 유삼재(劉三才)와 회동하여 하나하나 점검하게 한 다음 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저들의 정성을 보니, 고니시 히다노카미에게는 공로를 헤아려 상을 내리고, 토요토미

---

형부소보(刑部少輔)를 지내 오타니 형부로 불렸다. 후에 문둥병에 걸려 실명하였다고 한다.

8) 마시타 나가모리(增田長盛, 1545~1615): 일본 에도 시대 초기의 무장이다. 임진전쟁 때 이시다 미츠나리, 오타니 요시츠쿠와 함께 조선으로 건너와 한양에 주둔하며 부교로서 점령지 통치와 병참에 임했고, 벽제관 전투와 행주산성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9) 한취선(韓取善): 산동(山東) 제남부(濟南府) 치천(淄天) 사람으로 만력(萬曆) 5년(1577)에 진사가 되어 공부주사를 받았으며, 후에 요동순무가 되었으나, 조선의 "관백의 난"때 소를 올려 일본의 책봉과 통공(奉貢)을 반대하다가 삭탈관직 당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1618년에 죽었다.

10) 분순도(分巡道): 명대 때는 안찰사(按察司) 아래서 안찰분사를 두었으며, 그 장관은 관할 주(州), 부(府), 현(縣)의 정치나 사법 등을 순찰했다.

11) 참의(參議): 명대 통정사(通政使)의 보좌관으로, 정해진 인원을 없으며 각 도에 파견되어 그 곳의 둔전, 역전, 수리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12) 풍시태(馮時泰): 자(字)는 우정(虞廷)이고 산해위(山海衛) 출신이다. 만력년간에 진사가 되어 요동 광녕참의(遼東廣寧參議)를 지냈다.

13) 양저 낭중(糧儲郎中): 명나라 때는 각 성(省)의 군량 관리를 전담하는 관직을 두었다. 이 직함은 요동 총리양저(總理糧儲)를 맡아 관리하던 호부낭중을 가리킨다.

히데이에 등 다섯 명의 장군에게도 비단을 나누어줌으로써 변방에서 귀화하러 온 정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고니시 히다노카미는 신을 만난 직후 이번 달 21일에 종왜(從倭) 두 명을 파견하여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보고서를 바쳤습니다.

隨據小西飛稟稱: "我日本原是天朝屬國, 嘉靖年間, 因朱倭、徐倭二人爭失悞事以后, 日本將官各占土地, 爲分六十六州, 今關白已倂爲一統. 但未得天朝封號, 恐怕人心還有反覆, 必得天朝封一玉號, 庶可服得人心. 且依期進中國, 貨物又得相通, 所以眞心實意要封. 且各將兵. 俱因用兵日久, 俱有休息之念、若得封貢, 可以休兵罷戰. 所以自上及下, 人人俱要求封, 再無他意. 伏望將下情轉奏聖天子, 卽可書稟行長, 行長稟關白. 卽收兵渡海回家." 關白具表文稱臣, 永不別生橫禍, 世世稱臣, 請封大航三年一首. 行長小航許年年通貢, 倭將亦乞請賞官爵.

곧 이어 당도한 고니시 히다노카미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합니다.

"우리 일본은 본래 천조의 속국인데, 가정 연간(嘉靖年間: 1522~1566)[14]에 주왜(朱倭)、서왜(徐倭)[15] 두 사람이 다투다가 일을 그르친 이후에 일본의 장수들이 각각 토지를 점유하는 바람에 66개 주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관백(關白: 豐臣秀吉)이 이미 하나로 통일하긴 하였으나, 아직 천조의 봉호를 받지 못해 인심이 또 뒤바뀔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반드시 천조로부터 옥호(玉號)를 봉해 받아야만 인심을

14) 가정(嘉靖, 1522~1566): 명나라 제12대 황제 세종(世宗) 주후총(朱厚熜)의 연호이다.

15) 주왜(朱倭).서왜(徐倭): 여기서 지칭하는 주왜는 시대로 보았을 때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으로 추정된다. 일본 센고쿠 시대의 무장이자 가이 국의 슈고 다이묘(守護大名)로, 가이 겐지(甲斐源氏)의 적자 혈통에 해당하는 가이 다케다 집안의 제19대 당주이다. 그는 풍림화산(風林火山)의 군기를 사용하여 '가이의 범'이라 불렸고, 용을 상징하는 주인(朱印)을 사용하여 '가이의 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에치고(越後)의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과 다섯 차례에 달하는 이른바 '가와나카지마(川中島)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서왜는 우에스기 겐신인 듯하지만 왜 '서왜'라고 칭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복종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기일에 맞춰 중국에 물건을 들여야 화물이 상호 유통될 수 있기에 진심으로 봉호(封號) 받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장군과 병사들은 전쟁을 치른 지 오래되어 모두 쉬고 싶어 합니다. 만약 책봉과 통공을 허락받으면 전쟁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 모두가 모두 책봉과 통공을 원하는 것일 뿐, 더 이상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와 같은 사정을 황상께 대신 아뢰어 주시면 곧장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편지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관백에게 아뢰어 바로 군대를 거두고 바다 건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관백은 표문을 갖추어 신하라 칭하면서, 영원히 사단을 일으키지 않고 대대로 신하라 칭할 것이니, 큰 배는 삼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도록 봉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작은 배로 매년 통공할 것을 청했으며, 왜장들도 상으로 관작을 청해 왔습니다.

又據留守副摠兵劉綎稟報, 遊擊沈惟敬已以十二月二十四日進入倭營, 且言倭衆自請封貢之外, 竝無他說, 各緣由到. 臣看得倭奴乞款雖已久, 而彼此隔絶, 向無的據. 今據各首送刀致書, 來意既誠, 書詞俱順, 而小西飛之稟, 尤極詳明, 似無他意可知. 此臣所以不容宴賞以待之, 亦以昭我天朝大義, 而且以彼恭順向化之意也. 況前行長具稟, 必欲沈惟敬親往面會, 卽具表退歸. 今小西飛既得見臣, 馳報行長, 而惟敬又以親入倭營. 近日以來, 倭奴乞款情形如此.

또한 유수(留守) 부총병(副摠兵) 유정(劉綎)이 품고한 바에 따르면, 유격 심유경이 이미 12월 24일에 왜군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왜구들이 책봉과 통공을 자청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는 등, 각각의 이유들이 들어왔습니다. 신이 보건대 왜구들이 화친을 청해온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피차 멀리 떨어져 있었고 지금까지 확실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우두머리들이 보내온 칼과 서신에 근거해 볼 때 그 뜻이 정성스럽고 서신도 모두 공손하며, 고니시 히다노카미의 품고는 특히나 상세하고 명확해 다른 뜻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주연을 베풀거나 상을 하사하여 그들을 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천조의 대의를 밝히기 위함이기도 하고, 저들이 공손히 귀화하고자 하는 뜻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전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품고하기를, 반드시 심유경이 직접 가서 면담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면 표문을 갖추어 그 즉시 물러나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니시 히다노카미는 신을 만난 뒤 신속히 유키나가에게 보고했고, 심유경 또한 직접 왜구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래 들어 왜구가 화친을 바라는 정황이 이와 같습니다.

以臣愚見, 封貢之事, 在今日誠當許之, 撤兵之議, 姑且緩焉. 待其封事議定, 殘倭盡歸, 朝鮮修鍊. 又有次第然後, 徐徐議撤, 方爲善后長劃也. 夫皇上不靳二百金錢以救屬國, 乃今秪爲一萬六千, 留守糧餉議撤, 則朝鮮必難保全, 是卽棄之也. 昔故以援, 今故以棄, 棄則我國與日本爲隣, 所費寧有紀極耶? 夫臣之疏前, 屢有所陳, 爲皇上少紓東顧之懷. 臣之疏后, 復有所獻, 望皇上早定東方之計. 伏惟睿鑑臣愚幸甚. 奉聖旨兵部前道.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 볼 때, 책봉과 통공의 일은 지금 허락해야 마땅하지만 철병에 관한 논의는 잠시 늦추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책봉과 통공에 대한 논의가 결정되면 남은 왜구들은 모두 돌아가고, 조선도 나라를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에 순서가 잡힌 뒤에 천천히 철병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뒷수습을 잘 할 수 있는 장구책일 것입니다. 황상께서 200만 냥을 아끼지 않으시고 속국을 구했는데, 지금에 와서 1만 6천 냥 때문에 군량미를 지키면서 철병을 논의한다면, 조선은 틀림없이 보전하기 어려울 터, 이는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옛날에 변고가 있을 때는 도와주었다가 지금 변고가 생겼다고 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웃이 될 터인데, 그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끝이 있겠습니까? 신이 상소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진언 드린 바 있는데, 이는 황상의 동쪽을 염려하는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이 상소한 이후로도 다시

아뢸 터인데, 이는 황상께서는 빨리 동쪽 나라에 대한 계책을 조속히 결정하시기를 바라서일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의 어리석음을 헤량해 주신다면 큰 행운이겠나이다. 성지를 받들어 병부에서 나서 처리하도록 하라.

## 7. 과읍관(科邑官)[1]의 제본 이십오일
## (科邑官題本 二十五日)

刑科給事中楊東明一本.
秉虛心持大體, 以明功罪, 以勵人心事.

臣惟國家役使臣民, 與臣民樂爲國家役使者, 有大機焉, 曰賞罰而已矣. 故士有捐身家冒矢石, 棄性命於須臾者, 非其愛生之心與人殊也, 前以利賞, 後以懼罰, 其勢不得自愛耳. 故王者不出皇扃而能得士人死力, 樹功邊徼者, 執此機也. 如功罪不明, 賞罰不當, 無論當事者灰心解體, 而後來者且視爲殷箕, 卒有大難, 誰肯竭心力自杆文綱哉! 頃者倭奴犯邊, 蹂躪朝鮮, 虜其臣民, 奪其郡邑, 大張聲勢, 意圖內侵, 誠天誅所不赦者. 皇上弘恤小之仁, 奮發暴之勇, 以經略付宋應昌, 征剿付李如松. 二臣奉命而往, 遵旨而還, 論二臣者, 紛紛靡定. 頃奉明旨: "目今四方多事, 朝廷之上, 必須功罪明白, 方能使人. 這着吏.兵二部會同, 查議宋應昌.李如松是罪, 從公據實來說. 欽此." 是諸臣之泰論, 與明旨之會議, 非有誠心, 無非核功罪之實, 待賞罰之機而已.

형과 급사중(刑科給事中) 양동명(楊東明)[2]이 올리는 제본.

마음을 비우고 큰 요체를 견지해 공과 죄를 밝힘으로써 민심을 고무하라는 건.

---

1) 원문에 과읍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형과급사중의 오기이다.
2) 양동명(楊東明: 1548~1642): 명나라 하남(河南) 우성(虞城) 사람. 자는 기수(起修)고, 호는 진암(晉庵)이다. 만력(萬曆) 8년(1580) 진사(進士)가 되고, 급사중(給事中)에 올랐다. 천계(天啓) 초 형부 우시랑(刑部右侍郎)까지 올랐다. 북방 양명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신이 생각건대 나라가 신하와 백성을 부릴 수 있고, 신하와 백성이 기꺼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상벌이라는 나라의 큰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비가 신분도 지위도 버린 채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순식간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이 남들과 달리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상이 탐나고 그 다음으로는 벌이 두려워서 형세상 스스로 목숨을 아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왕은 궁문[3]을 나서지 않고도 목숨을 내놓는 선비를 얻을 수 있고, 변방에서 공을 세우는 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과 죄가 분명하지 않고 상과 벌이 타당하지 않다면, 집권자들이 낙심하고 흩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한 [주나라에 간언하다 쫓겨난] 은(殷)나라 기자(箕子)처럼 되어 결국에는 큰 변고가 생길 터이니, 누가 기꺼이 심력을 다해 문강(文綱)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근자에 왜구가 변방을 침범해 조선을 유린하고, 그 나라 신하와 백성을 사로잡고 고을을 침탈하더니, 위세를 크게 떨치면서 국내로 침범하려 하고 있으니, 용서치 말고 하늘이 주벌해야 마땅합니다. 황상께서는 소국을 긍휼히 여기는 인자함을 넓히고, 포악한 자를 천하에 드러내는 용맹함을 떨치기 위해 경략의 책임을 송응창(宋應昌)에게 맡기고, 정벌의 책임을 이여송(李如松)에게 맡기셨습니다. 두 신하는 황명을 받들고 가서 유지에 따라 정벌하고 돌아왔는데, 이 두 신하에 대한 [상벌] 논의가 정론 없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근자에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오늘날 사방이 다사다난하니 조정에서의 공과 죄가 분명해야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 지금 이부(吏部)와 병부(兵部)가 회동하여 송응창과 이여송이 죄를 지었는지 여부를 조사·논의하되, 공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해 논의하도록 하라. 흠차(欽此)[4].” 이는 여러 신하들의 논의도 황상의 뜻에 의해 열린 회의도 모두 성심을 다해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저 공과 죄의 실질을 조사해 상과 벌이 판결나기만을 기다렸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

3) 궁문: 원문은 ‘황경(皇扃)’이다.
4) 흠차(欽此): 여기까지가 황제가 직접 내린 조서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臣切思此事, 係朝廷勸懲之典, 係九邊將士觀望之心. 又當時事多艱, 策勵人心之際, 不爲二臣計, 當爲國家計也. 臣安可循衆論之, 同昧獨見之異, 不揚眉一吐其愚乎! 謹按東征之事, 有失利之罪, 亦有克敵之功. 夫失利之罪小, 克敵之功大, 朝廷用人, 當存其大略其小, 錄其功赦其罪, 是所謂持大體也. 拾髮而櫛, 數米而炊, 是有司細事, 豪傑笑之.

신이 곰곰이 이 일을 생각건대, 이는 조정의 권징(勸懲)의 법전과 관계된 바요, 구변(九邊)[5]의 장군과 병사들의 관망하는 마음과 관계된 바입니다. 또 지금 상황이 크게 어려워 민심을 격려해야 할 때인 만큼 두 신하를 위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어떻게 중론이나 따르면서 저만의 생각을 숨긴 채 눈썹을 치켜뜨고 이 어리석음을 한바탕 토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동쪽 출정을 살펴보건대, 실리(失利)의 죄도 있고 적을 격파한 공도 있습니다. 실리의 죄는 작으나 승전의 공은 큽니다. 조정에서 사람을 쓸 때는 큰 것을 남기고 작은 것을 없애며, 공을 기록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일러 큰 요체를 견지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골라가며 빗질하고 쌀을 세어가며 밥 짓는 것은[6] 관리들이나 하는 자질구레한 일이라 호걸들이 비웃는 바입니다.

當朝鮮之畏倭遠遁也, 所以失者, 全羅、慶尙二道耳. 今一朝擧故土而

---

5) 구변(九邊): 구진(九鎭)이라고도 한다. 중국 명나라 홍치 연간(弘治年間: 1488~1505)에 북방 변경에 만리장성을 따라 연이어 세운 9개의 군사 요지를 말한다.

6) 머리카락을……것은: 『장자(莊子)』「경상초(庚桑楚)」에 나오는 말이다. 『장자』에는 '습(拾)'이 '간(簡)'으로 되어 있다. 노자의 제자인 경상초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요·순임금을 어찌 족히 칭찬할 만하다고 하겠는가? 분별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해봐야 분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그 안에 쑥대만 무성해질 터, 머리카락을 구분해가며 빗질하고 쌀알을 세어가며 밥 짓는 식이니라. 작당하는 것으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 같더냐?(且夫二子者, 又何足以稱揚哉? 是其於辯也, 將妄鑿垣牆, 而殖蓬蒿也. 簡髮而櫛, 數米而炊, 竊竊乎又何足以濟世哉?)"

盡復之, 將謂朝鮮自復, 則望風而逃者, 必不能完璧, 而有將謂倭自退, 則力戰而得者, 必不能棄利而歸. 非麗人心自取, 非倭之自退, 則是功也, 豈無所屬哉? 且二臣之功可無論, 而從征血戰之軍士, 可不酬其勞乎? 陣前無敵之迷魂, 可不恤其后乎? 不酬其勞, 不恤其后, 是朝廷自今以後, 不欲復使一人. 如酬其勞, 如恤其后, 則可念追逐之功而忘發從力乎? 臣反覆思之, 欲不錄敍二臣, 不可已. 然臣有責二臣者, 二臣亦不得辭焉.

조선이 왜구가 두려워 멀리 달아났을 때 잃었던 것은 전라도와 경상도 둘뿐이었습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옛 땅을 모두 되찾았는데, 조선이 스스로 수복했다고 말하자니 소문만 듣고 달아났던 자들이 원래대로 온전히 회복할 방도는 분명 없었을 것이고, 왜구가 스스로 물러났다고 말하자니 힘껏 싸워서 얻어 놓고 이로움을 버리고 돌아갔을 리 없을 것입니다. 조선이 스스로 수복한 것도 아니요 왜구가 스스로 퇴각한 것도 아니라면 이 공을 대체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또 두 신하의 공은 차지한다 하더라도 출정에 올라 혈전을 치룬 군사들의 노고에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지 앞에서 갈 곳을 잃고 떠도는[7] 혼령들의 후손을 돌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노고에 보답하지도 않고 그 후손을 돌보지도 않는다면, 이는 조정이 앞으로 한 사람도 부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노고에 보답하고 후손을 돌보고자 한다면, 어찌 추격의 공적만 기억하고 그 노고를 드러내는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이리 저리 생각해봄에 두 신하를 서훈하지 않고자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신하를 질책하는 마음도 없지 않으니, 두 신하 역시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當應昌旣取王京也, 宜的據情形, 明報天子. 如倭可剪, 則當爲乘勝長驅, 以成破竹之勢. 倘勢不能爲, 則當爲臣力已竭, 宜別選代庖之將. 奈

7) 갈 곳을……떠도는: 원문에는 '무적(無敵)'이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상 '무적(無適)'이 되어야 맞을 것 같다.

何計不能出此! 倭未歸也, 而詭云盡去, 川兵未見殺也, 而詭云亂民. 且謂倭來無常, 難爲確報, 而尙其可偃然居經略乎? 今都人士, 總不知倭之兵馬若干數目, 倭之糧餉若何轉輸, 倭之盤據意欲者何爲, 倭之乞款有何指據. 憑沈惟敬之遙語, 執平行長之遊言 廟堂不得眞情, 軍士無有藉手. 覬全勝之賞, 忽後事之圖, 應昌不得辭其責矣.

송응창은 한양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확실한 정황을 천자에게 보고했어야 합니다. 만약 왜구를 제거할 수 있었다면 마땅히 승리의 여세를 몰아 파죽지세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상황상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마땅히 신하로서 있는 힘을 다해 대신 일할 장군을 따로 선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했단 말입니까! 왜구가 다 돌아가지 않았는데 모두 떠났다고 기만하였고, 사천(四川)[8]에서 징집해 온 병사들이 살해당하지 않았는데 난민이 일어났다고 기만했습니다. 또 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침범하는 터라 확실히 보고하기 어렵다고 했으니, 그러고도 편히 경략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말입니까? 지금 도성에 있는 인사들은 왜구의 병마가 얼마나 되는지, 왜구의 군량이 얼마나 수송되는지, 남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왜구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왜구가 화친을 요구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끌어들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멀리 있는 심유경의 말에만 의지하고, 들려오는 고니시 유키나가[9]의 말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진상을 알지 못하고 군사들은 도움 받을 곳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승 시 받을 상만을 기웃거리며 후사 도모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으니, 송응창은 그 책임에 대해 변명할 길 없을 것

8) 사천(四川): 임진전쟁 당시 사천에서 징집해온 병사들을 통솔하던 사람은 유정(劉綎)이었다.
9) 고니시 유키나가: 원문에는 '평행장(平行長)'이라고 되어 있다. 일본의 역대 쇼군들은 대외 문서에서 스스로를 겐지로서의 겐(源)이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쇼군과 그의 무리에게는 겐의 성을 쓰고, 스스로 겐지를 칭하지 않는 일본인에게는 그 성을 헤이(平)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평수길(平秀吉).평행장(平行長) 등의 이름이 보이는 것이다.

입니다.

如松之從事西寧也, 臣聞其沖鋒陷陣, 收退虜之功, 乘勝先登, 連焚策之績, 綽有戰將之風也. 第賊所括民間財物甚厚, 如松悉取爲己, 有輦載而歸寧處, 人皆得而言之. 古大將偶當公事迴還, 匱中惟圖書, 衣食豈若是乎! 平壤之戰, 力拔堅城, 碧蹄之兵, 得失相半, 臣亦爲如松壯也. 第縱恣我軍, 掠取朝鮮財物, 朝鮮被慘, 不異倭人. 古大將秋毫無犯, 卽取一笠, 必斬以徇者, 豈若是乎! 故爲如松爲戰將則可, 謂其爲麗將則不可. 謂戰勝之功則可, 謂節制之兵則不可. 如松.應昌, 難置一喙矣. 臣誠愚謬, 謂應昌之功宜錄也. 因其塘報糊塗, 或伏隱禍, 姑以薄報其功. 如松之賞當明也. 因其兵無紀律, 貽怨麗人, 姑以量行其賞. 其他諸將領諸戰士諸陣亡之卒, 宜速加精核, 厚行賞賚. 生者酬其身, 死者錄其後裔, 庶慰前人之忠義, 又結後日之人心.

이여송이 서녕(西寧)[10]을 정벌할 때, 신이 들으니 돌격하여 적진을 함락함으로써 오랑캐를 물리치고 사로잡은 공을 세우고, 승기를 몰아 선봉에 나섬으로써[11] 연이어 전공을 세우는 등 장군으로서의 풍모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다만 도적들이 긁어모은 숱한 민간의 재물을 이여송이 모두 독차지해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모두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대장들이 공사를 처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함 속에 오직 책뿐이었다고 하였으니, 어찌 이처럼 호의호식하였겠습니까! 평양 전투에서 보여준 힘은 견고한 성도 함락할 정도였고, 벽제에서의 전투는 득실이 반반이었으니, 신 또한

10) 서녕(西寧): 서녕은 칭하이 성(靑海省)의 성도이다. 1595년에 영소복(永邵卜: 順義王)이 서녕에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나, 이는 이여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여송이 진압한 것은 영하(寧夏)에서 일어난 발배(哱拜)의 난이다. 따라서 서녕은 영하의 착오로 보인다.

11) 선봉에 나섬으로써: 원문은 '선등(先登)'이다. 『좌전(左傳)』「은공(隱公) 11년」에 다음이 있다. "영고숙(潁考叔)이 정백(鄭伯)의 모호 기를 손에 쥐고 정나라 군대 중의 누구보다도 먼저 성에 올랐는데(潁考叔取鄭伯之旗蝥弧以先登), …" 이 말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봉에 오르거나, 출중한 재주 및 선봉에 나서는 것을 지칭한다.

이여송을 장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사를 제멋대로 부리고 조선의 재물을 약탈해 조선을 처참한 상황에 몰아넣었으니, 이는 왜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옛날의 대장들은 추호도 남의 것을 범하지 않았으며, 삿갓 하나라도 취했다면 죽음으로써 갚았다고 하였으니, 어찌 이여송과 같았겠습니까! 따라서 이여송의 사람됨을 일컬어 전쟁터의 장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훌륭한 장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승의 공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군사를 절도 있게 다스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여송과 송응창은 한 마디 변명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어리석고 그릇되지만 송응창의 공은 서록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보(塘報)[12]의 내용이 모호하여 보이지 않는 화를 남겼으니, 그 공에 대한 보상을 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여송의 상도 밝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대의 기율을 잃어 조선 사람들에게 원성을 쌓았으니, 이를 참작하여 상을 주어야 합니다. 기타 장수들과 군사들, 진지에서 사망한 병졸에 대해서도 속히 정확한 조사를 시행하시어 후한 상을 내려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에게는 직접 보상을 해주고 죽은 자에게는 그 후손을 등용한다면, 전인(前人)들의 충의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후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然今之罪二臣者, 寧謂倭奴結聚, 春汛可虞, 許封貢, 成僥倖之功, 啓釁端, 蓄無窮之禍. 諸臣遠慮, 悉屬忠猷. 臣則爲此當視簡書責望之勤惓, 自可爲二臣功罪之斷案, 非難決之疑也. 如此欲縱橫釜山, 俾無噍類, 驅逐一朝, 杜患百年, 國家且將自屈其身, 韓.白亦難遽效其能. 臣恐斬二臣之首, 無以服二臣之心. 雖然猶有說焉. 昔趙子弟無尺寸之功, 而韓商轍指四千戶之賞. 誠爲不愛爵土, 則人不愛死生. 勵世磨鈍, 全在于此. 昔東南倭患之烈, 至今寒人心膽. 故宗憲一擧而平之, 而卒從吏

12) 당보(塘報): 원래는 당보수(塘報手)가 높은 곳에 올라 적의 동태를 살펴 아군에게 기(旗)로써 알리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병부(兵部)에서 발행하는 당보는 각 부에 전투의 진행상황이나 군수물자 운반 등의 상황을 알리거나 조정에 승전보를 알리는데 사용되었다.

議, 身死牢獄, 無不冤者. 頃者劉哱之變, 朝廷亦常示帶礪之封, 懸萬金之賞矣, 總督葉夢熊壯懷激烈, 身請平賊. 賊平之後, 卽一尙書銜吝于胸肯予, 委如艱關, 剪賊羽翼, 卒成內變. 克滅元兇, 固國之功, 婦人孺子所知, 而僅僅甘以佶倨, 便國家之待功臣, 匪獨寡恩, 蓋亦不信之甚矣. 臣懼豪傑之不爲用也. 今宜急敍東事諸臣之功, 竝錄宗憲之後, 于夢熊國柱, 易其封而優之. 更于巖穴懷奇之士, 破格擢用, 毋若書生膠常襲故, 拘攣于毫髮間, 則海內英雄, 有出而爲陛下了倭事者矣. 奉聖旨:“吏.兵二部, 一併看了來說.”

그런데 지금 두 신하에 대해 죄를 묻는 자들은 대부분[13] 왜구가 집결해 있고 봄물이 불어나는 우려되는 상황에서 책봉과 통공을 허락해 요행이 일이 성사되기를 바랐다가는 분란의 발단을 열어 끝없는 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신하들의 심원한 생각은 모두 충성스런 계책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이는 공문을 보내 책망하고자 하는 간곡한 뜻으로 보아야 마땅할 듯합니다. 두 신하의 공과 죄는 절로 판결날 수 있으니, 결코 결단하지 못할 의안(疑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어이 부산을 휩쓸어 살아남은 자 하나 없게 하고, 하루아침에 모조리 몰아내 백년의 화를 두절시키고자 한다면, 국가는 장차 자신을 굽히게 되어 [한나라의] 한신(韓信)과 [전국시대 秦나라의 장군] 백기(白起)라도 효능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두 신하의 머리를 벤다 하여도 두 신하의 마음을 복종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할 말은 있습니다. 옛날 조나라 자제에게 털끝만큼의 공도 없었지만, 한 고조는 그들에게 4천 호(戶)의 상을 내렸습니다. 진실로 작위와 영토를 아끼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목숨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무딘 병기를 날카롭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

13) 대부분: 『어선명신주의(御選明臣奏議)』 권33에 「공과 죄를 밝히어 인심을 고무할 것을 청하는 소(請明功罪以勵人心疏), 만력 30년, 양동명(楊東明)」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녕(寧)' 자가 '다(多)'로 되어 있다. 문맥상 '다'가 타당할 듯 해 고쳐 해석하였다.

습니다. 옛날부터 동남의 왜환이 극심하더니 지금까지도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종헌(胡宗憲)[14]이 일거에 평정했지만 끝내 탄핵[15]에 의해 감옥에서 죽었으니 억울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근자에 유동양(劉東暘)과 발배(哱拜)의 난이 일어났을 때[16] 조정에서 늘 그러듯이 "황하가 허리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평평해질 때까지"라고 맹세하게 하여 작위에 봉하고[17] 만금의 상금을 내걸자 총독 섭몽웅(葉夢熊)이 원대한 뜻을 품고 격앙되어 몸소 적을 평정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적이 평정된 뒤에 오로지 바라던 상서 자리 하나 아까워 끝내 내어주지 못하고 날개를

---

14) 호종헌(胡宗憲: 1512~1565): 자는 여정(汝貞), 호는 매림(梅林)이다. 안휘성 적계현(績溪縣) 사람이다. 가정 17년(1538)년 과거에 합격해서 가정 33년(1554) 절강순안감찰어사(浙江巡按監察御史)가 되었다. 조문화의 천거로 절직총독( 浙直總督)이 되어 주환(朱紈), 척계광(戚繼光), 유대유(兪大猷) 등과 함께 중국 연안부에서 약탈과 밀무역을 행하던 왜구 토벌에 힘썼다. 가정 35년(1556) 왜구의 두목인 서해를 제압하고, 이듬해에는 동향 출신인 왕직을 회유해서 체포했다. 호종헌은 왕직의 목숨을 살려주고 해금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탄원했지만, 결국 왕직을 처형했다. 왕직 체포의 공적으로 인해 항왜(降倭) 명장으로 이름을 높였지만, 후에 복건에서 왜구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결탁을 의심받고, 게다가 엄숭(嚴嵩)의 도당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자살했다.

15) 탄핵: 가정(嘉靖) 41년(1562)에 엄숭(嚴嵩)이 파직되고, 그의 아들 엄세번(嚴世蕃)도 체포되었다.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趙文華)에 의해 천거되었던 호종헌은 대신들의 눈에 엄당(嚴黨)으로 지목되었고, 조문화가 죽고 엄숭 부자가 실각하자 자연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해 연말에 남경급사중(南京給事中)으로 있던 육봉의(陸鳳儀)는 군량 탐오, 과도한 세금 징수 등 10가지 죄목으로 호종헌을 탄핵했는데, 비록 왜구를 평정한 공으로 처형은 면했으나 끝내 실의한 채 낙향해야 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성지를 사칭한 듯한 편지가 발각되는 바람에 다시 소환되어 투옥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용납 받지 못하자 옥에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

16) 유동양(劉東暘)……때: 만력(萬曆) 20년(1592) 2월에 유동양과 보바이가 영하(寧夏)에서 난을 일으켰다가 그해 9월에 이여송(李如松)·이여매(李如梅) 등에 의하여 평정된 사건을 말한다.

17) 황하가……봉하고: 원문은 '대려지봉(帶礪之封)'이다. 이 말은 『사기(史記)』「고조공신후자년표(高祖功臣侯者年表)」에 나오다. "작위에 책봉될 때면 '황하가 허리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평평해지도록 나라가 영원히 평안하여 먼 후손에게 미치기를.'이라고 맹세한다.(封爵之誓曰, '使河如帶, 泰山若厲, 國以永寧, 爰及苗裔.')"

잘라내고 해치더니, 결국 내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18] 원흉을 제거하고 없애는 일이 나라에 있어 큰 공임을 아녀자들도 아는 바이거늘, 그저 빈궁한 처지에 만족해야 했으니, 나라에서 공신으로 대우하는 것이 야박할 뿐만 아니라 신의를 저버림 또한 심했습니다. 신은 호걸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려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속히 동쪽 일에 참여한 신하들의 공을 서훈하시고, 더불어 호종헌을 등용한 뒤에 나라를 지켜낸 섭몽웅의 봉작을 바꾸어 기록함으로써 우대하셔야 합니다. 특히 깊은 산 속에 사는 뛰어난 선비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하시어, 서생처럼 옛것이나 답습하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라 안의 영웅들 가운데 폐하를 위해 왜구의 일을 해결하려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성지를 받들었다. “병부와 이부에서 함께 살핀 뒤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

18) 총독……말았습니다: 영하지역(寧夏之役)은 임진전쟁·양응룡(楊應龍)의 난과 함께 만력삼대정(萬曆三大征)이라 불린다. 발배(哱拜, 보바이)와 발승은(哱承恩) 부자는 유동양(劉東暘)·허조(許朝)·토문수(土文秀) 등의 세력과 결탁하여 영하 일대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반란군은 나라에서 군사들을 돌보지 않고, 외적을 제어하는 방책이 잘못되어 군량이 부족해졌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군사를 일으켰다. 당시 반란군은 옥천영(玉泉營)·중위(中衛)·광무(廣武)·하(河) 등의 영하위에 소속된 여러 부를 함락하면서 위세를 떨쳤다. 만력제는 위학증(魏學曾)에게 상방검(尙方劍)을 하사하고 반란군을 토벌하도록 지시했다. 위학증은 반란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적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반란군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반란군을 포섭하려는 회유책은 조정 신료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또한 여러 전투를 통해 관군의 피해가 컸는데도 이를 조정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다. 결국 만력제는 위학증을 체포해서 북경으로 압송하도록 지시했다. 조정에서는 다시 섭몽웅(葉夢熊)과 이여송(李如松)을 파견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이여송은 수공(水攻)을 통해 반란군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이여송 등의 활약으로 위학증이 북경으로 압송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배의 반란은 평정되었다. 이여송은 곧바로 조선으로 파견되어 일본군과의 전투에 임했다. 반면에 섭몽웅은 논공행상 때 문신들과의 불화로 그 말로가 좋지 않았다.

## 8. 이제독(李提督) 자변
## (李提督自辨)

提督李如松一本.

勤兵異國, 危苦萬狀, 群言未定, 心迹難明, 懇乞聖明, 速賜罷斥, 以諭人言, 以昭公論事.

제독 이여송이 올린 본.

타국에서 병사를 부리느라 온갖 위험과 고생을 겪고 있으나, 뭇 언론에 아직 정론이 나지 않아 속사정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성명하신 판단으로 속히 파직을 명해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말을 일깨워 주시고 공론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건.

臣先因寧夏兵變, 奉勅遣臣征剿, 仰伏皇上威靈及當事諸臣, 同心戮力, 削平僭亂, 克復鎭城. 臣甫撤兵還朝, 于時朝鮮告急, 慮勤霄旰, 旋復有禦倭之命. 比臣自顧西征, 偶爾畢役, 狡倭難禦, 百倍哱酋, 兼之濕病未瘳, 不能再堪驅策, 故屢疏懇辭, 未蒙俞允. 但臣受恩深重, 不敢推避, 又本兵亟於東征, 促臣速行, 只得抱病誓師, 渡江進發.

신은 영하(寧夏)에서 병변이 일어났을 때 칙서를 받들고 토벌에 나서 황상의 신령하신 위엄 및 집정 대신들을 우러르며 한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참람한 전란을 평정하고 변방의 성을 되찾았습니다. 신이 막 군사를 철수하여 조정으로 돌아왔을 때 조선의 다급한 상황이 전해졌는데, 황상께서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다가 이내 왜구를 제어하라

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서쪽 정벌의 일이 마침 끝났고, 교활한 왜구는 제어하기가 추장 발배(哱拜)보다 백배나 더 어려우며, 게다가 습증(濕症)이 아직 완쾌되지 않아 다시 말을 타고 달릴 수 없었기에 거듭 소장을 올려 간곡히 사양하였던 것인데, 끝내 윤허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깊고 무거운 은혜를 입은 터라 감히 회피할 수 없었으며, 병사들이 급히 동쪽으로 출정하며 신에게 속히 떠나라 재촉하였기에, 병든 몸으로 군사들 앞에서 맹세한 뒤 강을 건너 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遵奉經略指授, 同贊劃劉黃裳, 督領將士, 復克平壤, 襲取開城. 于時各賊望風四散, 奔集王京. 臣又預令副將李寧、祖承訓、張應神、高升等, 領前鋒三千人, 分道追趕, 直至王京城下, 遇賊五六萬齊出, 趣至碧蹄館, 爲賊所困. 比臣隨兵止五百人, 踏勘道路, 倏聞前兵被困. 臣卽星馳至彼, 一面調兵接應. 然而兩軍展戰, 必待應兵, 緩不相及. 臣遂躍馬, 突入重圍, 軍士厲氣從臣, 以一當百, 挺身血戰, 奮呼沖殺. 自○○而賊遂披靡, 遁歸王京, 臣于碧蹄安營. 是倭奴之膽, 旣喪于平壤, 再喪于開城, 而又大挫于碧蹄之一戰. 蓋平壤之師, 主客相當, 開城之追, 勢如破竹. 獨碧蹄猝遇, 衆寡不敵, 軍無生路, 岌乎殆哉. 賊見我以寡勝彼, 遂悔罪乞款. 我得長驅東向, 克復王京, 驅之釜山, 皆碧蹄一戰力也.

경략사의 지시를 받들어 따르고 찬획사(贊劃使)[1] 유황상(劉黃裳)[2]과

---

1) 찬획사(贊劃使): 명나라에서 파견된 유황상(劉黃裳)은 경략 찬획 계요 보정 산동 등처 방해 어왜 사무(經略贊畫薊遼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事務)라는 직책함이었는데, 임진전쟁 당시 그를 가리켜 유찬획(劉贊劃)이라 하였다. 찬획사는 지방군의 조련과 군정(軍政)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견된 관원으로, 이후 조선에서도 찬획사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찬획사라는 명칭은 임진전쟁 당시 명나라에서 파견된 관원의 직함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전쟁 중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내륙에 파견되었던 찬획사는 이후 광해군 대에는 서북 변방의 군사 업무를 위해 파견되었다. 인조 대에도 찬획사가 설치되었는데, 이때는 도체찰사부 이외에도 어영청의 관할 아래에 두어 어영찬획사(御營贊劃使)로 불렸다. 정묘호란 때에는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이끄는 분조(分朝)에 체찰사(體察使)

함께 장수와 병사들을 감독하고 인솔하여 평양을 수복하고 개성을 습격해 점거했습니다. 이에 각 곳의 적들은 위풍을 바라보며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도성으로 달아나 모였습니다. 신이 다시 부장(副將)인 이영(李寧)[3]과 조승훈(祖承訓)[4]·장응신(張應神)·고승(高升) 등으로 하여금 선봉대 3천 명을 이끌고 길을 나누어 뒤따라가게 하였으나, 도성 아래에 다다랐을 때 적군 5~6만 명이 일제히 출격하는 바람에 벽제관에 이르러 적에 의해 곤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신을 따르던 병사들은 고작 5백 명이었는데, 도로에 나가 현지를 살피던 중 갑자기 앞서 나간 부대가 곤경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은 그 즉시 그쪽으로 달려가 병사를 동원해 상황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군이 교전하려면 반드시 응전해야 할 병사가 필요하고, 늦장을 부리면 때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신이 직접 말을 몰아 겹겹의 포위를 뚫고 들어가니, 군사들도 용맹하게 신을 따르면서 일당백의 위용을 보이며 앞장 서 혈전을 치르고 죽이자고 외쳤습니다. ○○에 이르러 적들이 마침내 흩어지더니 도성으로 달아났고, 신은

---

예하로 찬획사를 두기도 하였다. 정묘호란 직후인 1628년(인조 6)에는 윤휘(尹暉)와 이경직(李景稷)을 찬획사로 차출하였고, 이경직을 파주· 교하 등 산성의 순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한 바 있다.임진전쟁 때 처음 등장하였고, 광해군 대와 인조 대, 숙종 대에 일시적으로 파견하였다. 숙종 대 이후에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유황상(劉黃裳): 자(字)는 현자(玄子)이며 광주(光州: 지금의 河南 潢川) 사람이다. 만력 14년(1586)에 진사과에 급제했고,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郞)을 지냈다.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계요경략(薊遼經略) 송응창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원황(袁黃) 및 유황상을 찬획군무(贊畫軍務)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게 하도록 청하여 조선에 파견되었다.

3) 이영(李寧: ?~1598?): 원래 큰 도적이었다가 이성량(李成梁)의 부하가 되었다. 힘이 장수였고 무예 또한 출중하였다고 하는데, 임진전쟁에 참가했다가 사천(泗川)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4) 조승훈(祖承訓): 자(字)는 위적(偉績)이고 호는 쌍천(雙泉)이며 요녕(遼寧) 흥성(興城) 사람이다. 만력 10년(1582)에 요동부총병(遼東副總兵)이 되었다. 1592년 7월에 만력 황제는 조승훈에게 5천 병력을 거느리고 평양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대패하여 돌아왔다. 1593년에 2차 접전에서는 출중한 성적을 거두었고, 1597년 12월부터 1598년 1월 사이에 울산 전투에 참가하였다.

벽제에 군영을 쳤습니다. 이때에 왜노들의 기세가 평양에서 한 번 오그라들고 개성에서 거듭 오그라들더니 다시금 벽제 전투에서 크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평양에 있을 적에 양쪽의 병사들은 서로 막상막하였고, 개성에서 저들을 추격할 때의 기세는 실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러나 벽제에서 창졸지간에 적과 마주했을 때에는 수가 너무 적어 적을 상대하기 어려웠으며, 군사들에게 살아날 길이라곤 없었으니 실로 지극히 위험하였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적은 수로 저들을 이기는 것을 보고는 잘못을 후회하며 화친을 구걸해 왔습니다. 제가 말을 몰아 멀리 동쪽을 향하면서 도성을 수복하고 부산까지 내달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벽제에서의 전쟁 덕분이었습니다.

奈何人言紛錯, 臣不遑一說, 論者獨稱. 碧蹄喪師, 冤陷特甚, 君門萬里, 控訴無門, 臣不得不剖心見志. 夫兵家不能期乎不敗. 假令轉敗爲功. 亦以勝爲論. 比臣往復重圍, 力援孤軍, 臣亦不知復有今日. 謂臣可以一身護衛, 三軍不死傷哉? 無是理也. 明例所謂“惟以血戰爲功, 不以損軍爲罪”, 卽此所以坐臣罪乎. 所以心迹難明者一也.

그럼에도 사람들의 말들이 분분하여 신이 미처 한 마디 말할 겨를도 없었건만 논자들만 홀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벽제에서 군사를 잃은 것에 대한 억울한 모함이 유독 심하지만, 군문이 1만 리나 떨어져 있어 하소연할 길이 없기에 신 마음을 꺼내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병가(兵家)에서 불패를 기약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설령 패전을 거듭하다 공을 세운 경우라면 이 역시 승리로 논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겹겹의 포위망 사이를 오가며 고립된 군사들을 힘껏 원조할 적에,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 신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 한 몸으로써 호위했다고 하여 삼군에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 없음이 분명합니다. 명나라 조례[5]에

5) 명나라 조례: 가정(嘉靖) 32년(1553)에 왕서(王忤)가 올린 「해방팔사(海防八事)」를 말한다. 그 중 두 번째 조항이 바로 “각 변방의 전례에 비추어 용맹하게 혈전을 치룬 경우 이를 공으로 삼되 군사에 손상을 입힌 것을

서 이른바 “오직 혈전을 치룬 것을 공으로 삼되 군에 손상을 입힌 것을 죄로 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에게 죄를 묻는 까닭입니까? 이것이 바로 밝히기 어려운 속사정 중 첫 번째입니다.

不寧惟是. 又稱倭奴不多殺朝鮮人以充數者. 夫臣自出師之日, 卽嚴令三軍, 諭以皇上救援屬國之意. 毋得秋毫掠侵小邦, 有犯者, 卽斬首以徇. 三軍奉法惟謹, 故每破城, 朝鮮男婦焚香祝頌, 儒生獻詩賦相迎. 其感戴也如此. 若果妄殺一人, 是以暴易暴. 朝鮮之仇讐也, 何以得此于人心? 所謂心迹難明者二也.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왜노들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 조선인을 많이 죽인 것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신이 출사한 그 날로부터 삼군(三軍)에 엄한 명령을 내려 황상께서 속국을 구제하시고자 하는 뜻을 일깨워 작은 나라의 것을 추호도 약탈하거나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범하는 자가 있으면 곧 참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군에서는 이 법을 조심스레 받들었기에, 매번 성을 격파할 때마다 조선의 남녀들은 향을 사르며 축송하고 유생들은 시부(詩賦)를 바치며 맞이하는 등, 감격해 우리를 떠받듦이 이와 같았습니다. 만약 함부로 한 사람이라고 죽였다면, 이는 포악함으로써 포악함을 대체하는 것이라 조선인들이 원수처럼 여겼을 터이니, 무슨 수로 이와 같이 인심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밝히기 어려운 속사정 중 두 번째입니다.

稱臣苟且完事者. 夫王京之倭, 追而至釜山矣, 朝鮮地方盡數恢復矣. 雖其逡巡跧伏, 忽犯全羅, 而臣預有精兵埋伏, 猝遇于宿星嶺, 斬首三十五顆, 而奔溺死傷, 不能計數. 由此倭亦恐懼, 悉歸海島, 將朝鮮王子陪臣, 送還歸國, 求款益切. 謂之苟且完事可乎? 所謂心迹難明者三也. 每陣亡軍士, 必親爲殮察, 以慰忠魂, 一面呈報經略幷察院等衙門, 歷

---

죄로 삼지 않는다(照各邊例, 惟以奮勇血戰爲功, 不以損傷軍爲罪)”이다. 여기 적힌 조항은 임진전쟁 당시 상벌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歷可査. 乃謂蒙蔽不報可乎? 所謂心迹難明者四也. 劉綎將種也, 臣相善, 且其志在策勳功, 顧彼中以自表見, 該經略議留臣既奉聖志回京, 何敢自處便安, 而以後艱貽他人乎? 所謂心迹難明者五也, 斯五者.

신이 일을 대충 마무리했다고들 왈가왈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성의 왜구들은 도망쳐 부산에 이르렀고 조선의 땅은 거의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얼쩡거리며 엎드려 지내는 왜구들이 전라도 지역을 급습하곤 하지만, 신이 미리 정예병을 매복시켜 놓아서 [남원의] 수성령(宿星嶺)에서 갑자기 적을 만났을 때도 35개의 수급을 베었으며, 도망치다 익사하여 죽거나 다친 자는 부지기수입니다. 이 일로 왜구들 또한 두려움을 느껴 모두 바닷가 섬으로 돌아갔으며, 조선의 왕자와 배신들을 본국으로 송환한 다음 더욱 절실히 화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충 일을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밝히기 어려운 속사정 중 세 번째입니다.
군진에서 군사가 사망할 때마다 친히 염(殮)하고 살핌으로써 충혼을 달래주는 한편, 경략 및 도찰원(都察院)[6] 등 아문에 보고하여 일일이 찾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밝히기 어려운 속사정 중 네 번째입니다. 유정(劉綎)은 장수 집안 자식으로 신과 친한 사이입니다. 게다가 공훈을 세워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뜻이 있으며, 그곳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경략사가 논의하여 그를 남겨두기로 하였기에 신이 성지를 받들고 도성으로 돌아왔던 것이지, 어찌 스스로 편안히 지내면서 남에게 어려운 일을 남겨두고자 하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밝히기 어려운 속사정 중 다섯 번째입니다.

---

6) 도찰원(都察院):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인 중국에서는 관리의 부정을 규탄하는 어사대(御史臺)라는 감찰기관이 현저하게 발달하였다. 명의 태조(太祖)는 1376년(홍무 14)에 어사대를 도찰원(都察院)으로 고쳐서 좌·우도어사(左右都御史)·부도어사(副都御史) 밑에 다수의 감찰어사(監察御史)를 두어 기강의 숙정, 부정의 탄핵, 중대한 형안(刑案)의 심의 등을 맡아보게 하였다. 특히 순안(巡按) 감찰어사를 110명으로 증원하여 지방관의 부정부패를 탄핵하게 하였다.

有一于此，是臣誠貪功者也，誠掩敗也．願付臣市曹，速斬臣頭，以爲邊臣欺蔽者之戒．顧萬目昭昭，天理難昧．臣能塗我中國之耳目，能掩朝鮮人之耳目乎？今臣得早明心迹而死，臣生無以取信于人，死而功罪自見矣．夫朝鮮地方，必不能徒手而復．數十萬倭奴，必不應無故而歸．今不覈平倭之實蹟，但據覆軍之風聞，而以臣爲僨將，以臣爲不忠．語曰："衆口鑠金，積毁消骨．"臣固知百口難喙，嗟人臣頭可斷也．乃僨臣不忠之議，臣固有寧死不服者．蓋人臣不忠，止爲身謀，不爲國謀．臣前東行時，朝臣所共見也．艱苦歸來，鬚髮半白，亦朝臣所共見也．奈何無一人矜臣，止有言臣者何也？彼來見臣在兵中，間關狼狽，萬死一生之狀也．縱臣罪當誅，無功可錄，東征將士，抛父母棄妻子，遠涉異國，羈栖萬里，居以片廛，腹不宿飽．坐甲裏瘡，經年暴露，病心酸鼻，以爲歸天無日．今幸從臣，復拜闕庭，臣不爲之少陳勞勩，恐無以慰將士之心．故具疏報命，奈何人又以誇詡罪臣也？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이 있다면 신은 참으로 공을 탐하는 자이며, 참으로 패배를 은폐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니 신을 형장으로 보내어 속히 신의 머리를 벰으로써 기만하고 은폐하려는 변방 신하들의 징계로 삼으소서. 그러나 만 개의 눈이 환히 바라보고 있고, 천리(天理)란 가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신이 능히 우리 중국인의 이목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이목까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찌감치 속사정을 밝히고서 죽을 수 있다면, 비록 살아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였다 해도 죽어서 그 공과 죄는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조선 땅을 맨 손으로 회복했을 리도 만무하고, 수십 만 왜노들이 까닭 없이 돌아갔을 리도 없습니다. 왜노를 평정한 실적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전군이 패배했다는 풍문에만 근거하여 신을 패장이라 여기고 불충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뭇 입이 금도 녹일 수 있고, 쌓이고 쌓인 비방이 뼈도 없앨 수 있다."[7]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입이 백 개라도 변명하기 어렵다는 것과 신하의 목은 벨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신(敗臣)과 불충(不忠)이라는 논의만

7) 뭇……있다: 『사기(史記)』「장의열전(張儀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은 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하가 불충하다 함은 오직 제 한 몸을 위해 도모할 줄만 알고 나라를 위해 도모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이 동쪽으로 가던 때의 상황을 조신들이 모두 보았고, 갖은 고생 끝에 돌아왔을 때 머리와 수염이 반백이 되어 버린 것 또한 조신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도 없고 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만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저들이 병영 중으로 신을 찾아왔을 때, 고난 중에 초췌하게 지내며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설령 신에게 주벌(誅罰)해 마땅한 죄가 있고 기록할 만한 공이 없다 하더라도, 동쪽으로 출정한 장수와 병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도 처자식도 버린 채 멀리 이국땅으로 건너와 만 리 멀리서 떠돌며 좁은 방에서 거하고 배는 늘 주려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 살아야 해서 안에는 부스럼이 가득하고, 한 해가 넘도록 이슬 맞아가며 노숙을 합니다. 가슴 아파하고 코 시큰해하며 돌아갈 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행히 종신(從臣)이 되어 다시금 조정에 임명되었으니, 신이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고를 바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장수와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할 길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장을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과시하는 것이라며 신을 탓하는 것입니까?

反覆思之, 人言雖踵至, 非有憾于臣也. 蓋緣臣父已叨封爵, 臣以勳胄徼福已極, 近又以往西役竣, 加官賜廊, 是皇上之恩已深, 則臣罪日重, 臣罪日重, 則天下之指摘臣者無時已也. 處負乘之羞, 在危疑之地, 招尤取忌, 理所必然. 而況四方遊食之徒, 集于軍中, 求望不遂, 廣布譁言者, 有之. 或將佐爲臣處置, 兢起浮議者, 有之. 甚則忌功嫉能, 捏詞投揭, 必欲致臣于死地者, 有之. 以故飛語相傳, 風聞陰中, 愛憎相集, 疑信相參, 以訛傳達天聽. 如臣九牛一毛, 臣安足惜! 後來甚事者, 獨不危乎? 此臣之所以病心流涕, 而不容不哀鳴于君父之前也. 伏乞皇上, 鑑臣愚衷, 矜臣危苦, 將臣太子少保、左部督廕職盡行削奪, 更祈俯納言官所奏, 亟賜勘處, 定臣罪狀, 庶人言可諭, 公論自昭. 罪雖萬死, 亦得

以瞑目矣. 臣不勝激切惶懼待罪之至.
奉聖旨: “兵部道.”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사람들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신에게 서운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은 아비가 이미 외람되이 봉작(封爵)을 받았으니 훈신의 자식으로서 받은 복이 이미 지극하며, 근자에는 또 서쪽 정벌에서 공을 세워 승진하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황상께서 내리신 은혜가 이미 깊으니 신의 죄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으며, 신의 죄가 무거워질수록 천하에서 신을 지적하는 소리는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등에 짐을 지고 수레에 오른 부끄러운 상황[8]에 처해 위태롭고 의심만 사는 지경에 놓여 있으니, 허물을 자초하고 시기를 얻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방을 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무리들이 군중에 모여 있으니,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널리 거짓을 퍼뜨리는 자도 있을 것이요, 고급 무관들 중에 신을 처치하기 위해 다투어가며 부화한 이론을 일으키는 자도 있을 것이요, 심지어는 공을 시기하고 능력을 질투하여 문사를 날조하여 투서까지 하면서 기필코 신을 사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유언비어가 전해지고 풍문이 암암리에 중상모략하며, 애증이 모이고 의심과 믿음이 한데 섞임으로써 와전된 소문이 황상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신처럼 하찮은 존재가 어찌 아끼고 안타까워하기에 족하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도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군부 앞에 슬피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황상께서 신의 우충(愚衷)을 밝히 살피시고, 신의 위태로움과 고달픔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장차 신의 태자소보(太子少保)·좌부독(左部督)의 음직(陰職)을 모두 삭탈해 주십시오. 또한 납언관(納言官)[9]의 상주를 굽어 살피시어 서둘러 감찰을 진행하심으

8) 등에……상황: 『주역』「해괘(解卦)」에 “짐을 등에 지고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인다(負且乘, 致寇至)”는 말이 나온다. 이는 능력이 부족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재앙을 자초하는 것을 뜻한다.

로써 신의 죄상을 확정지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언론도 일깨울 수 있을 것이고 공론 또한 절로 밝아질 것입니다. 신의 죄는 비록 만 번 죽어 마땅하나,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격절과 황공함을 이기지 못한 채 대죄하고 있겠나이다.

성지를 받들다. “병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9) 납언관(納言官): 윗사람의 말을 아랫사람에게 전하고, 아랫사람의 말을 윗사람에게 아뢰는 전령(傳令)과 의견 수집을 담당하는 관리를 말한다. 『사기』「오제본기(五帝本紀)」에 “내 그대를 납언(納言)에 임명하니, 밤낮으로 나의 명령을 전하고 백성의 의견을 수집하며, 오로지 신의를 얻도록 해주시오(舜曰命汝爲納言, 夙夜出入朕命, 惟信)”는 말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볼 때 납언관은 지금의 간관(諫官)을 지칭한다.

## 9. 병부의 복제(覆題) 이월 초삼일
## (兵部覆題 二月初三日)

兵部一本, 倭寇負固未寧, 武臣敍功, 太妄散循. 職掌參駁, 以愼大典, 以重國體事, 職方司案置抄出兵科都給事吳文梓題前事, 又該李如松爲勤兵異國, 危苦萬狀, 心迹難明等事.
奉聖旨:“兵部知道, 欽此.”爲啓:

병부 일본(一本), 왜구가 험지를 의지하여 버티고 있어 아직 편안하지 않은 상태라 무신의 공훈을 평의하는 일이 지나치게 망령되고 어지러우며, 탄핵과 반박을 주관함으로써 나라의 큰 법도를 신중히 하고 국체를 무겁게해야 한다. 이에 병부 직방사(職方司)[1]에서 병과(兵科) 도급사중(都給事中) 오문재(吳文梓)가 지난 번 일에 대해 상주한 건, 그리고 저 이여송이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겪었던 숱한 위험과 고생을 겪었으나 심중을 밝히기 어렵다고 아뢰어 온 건을 베껴 올렸다.
이에 “병부에서 이 일을 알아서 처리하라. 흠차(欽此).”라는 내용의 성지를 받들고 [다음] 장계를 올렸다.

賞罰者, 國之大典, 必行之當而後服乎人, 亦必覆之明而後得其當耳. 取有平壤等處斬獲收復次, 先該經略題敍已行, 按臣查○可勘事完議覆, 必求其當, 以申鉅典而厭士心, 則今日提督李如松之疏, 可無事也. 況其敍及重臣則涉于僭, 敍及冗役則涉于濫. 科臣職司封駁, 參論允宜. 臣等不敢以勤功之, 故爲如松如庇也. 第如松武夫, 徒知事體, 則始末

1) 직방사(職方司): 각 성(省)의 여도(輿圖)나 무관을 서훈하는 일, 혹은 탄핵하는 일, 군대를 검열하는 일 등을 맡아 보던 관서이다. 명나라 홍무(洪武) 29년(1396)에 직방붙이(職方部置)로 이름을 고치고, 낭중(郎中)과 원외랑(員外郎) 각 1인과 주사(主事) 2인을 두었다.

宜詳, 從役多則敍錄難減. 或又當與群倭力戰之時, 正屬軍士觀望之際, 亦曾以功成之後, 必行題敍, 誓師而歸, 今亦有難乎食言者哉.

상벌이란 나라의 큰 법도인지라 정당하게 행해진 연후라야 사람을 설복시킬 수 있으며, 또한 분명하게 살핀 연후라야 온당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양 등지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城)을 수복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먼저 해당 경략사에 대한 서훈[2]을 주청했는데, 안신(按臣)[3]들이 감사를 마친 후 의논하여 답변한 내용에서 '온당함을 구하고 크나큰 법도를 펼침으로써 사대부들의 마음을 흡족케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독 이여송의 상소 또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서훈이 중신(重臣)에 이른다면 이는 참월(僭越)이 될 것이요, 서훈이 잡역으로 떨어진다면 외람된 처사가 될 것입니다. 과신(科臣)[4]들의 직무란 잘못된 조서를 반박하고[5] 논의를 참고하여 합당함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신 등은 감히 전쟁에서의 노고를 공로라 여겨 이여송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여송은 무부(武夫)인지라, 그저 일 자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시말을 상세히 밝혀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종역(從役)한 바가 많다면 서록을 감등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여러 왜구들과 맞서 힘써 싸울 때는 마침 군사들이 관망하던 시기였는데, 공을 세우면 반드시 주청하여 서훈하겠다고 군사들 앞에서 맹세하고 돌아왔기에 지금에 와서 식언하기도 어렵습니다.

顧其所深辨, 似有不專爲兵科之所參者. 平壤之戰勝攻取, 碧蹄之萬死一生, 兼之寧夏張亮堡之破虜, 大城之先入. 求之近日攻收之將, 恐不

---

2) 서훈: 원문의 '제서(題敍)'는 등급이나 공훈에 의거해 승진 혹은 기타 장려금을 줄 것을 주청하는 일을 말한다.
3) 안신(按臣): 관찰사 혹은 안찰사를 말한다.
4) 과신(科臣): 명청 시대 때 육과(六科)의 급사중(給事中)과 도찰원(都察院), 그리고 각 도의 감찰어사를 말한다.
5) 조서를 반박하고: 원문의 '봉박(封駁)'은 황제의 잘못된 조령을 봉한 채 돌려보내는 일, 혹은 신하의 잘못된 주장(奏章)을 반박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

多得. 臣等又不敢以冒嫌之故, 爲如松引避也. 旣經題奏前來, 相應酌議合侯, 俟下移咨都察院, 轉行遼東巡安御史, 參酌科臣聽奏. 査將日前屢奉欽依所行侍郎宋應昌敍報, 三戰有功, 陣亡人員, 幷令督撫李如松所奏, 摘出血戰發軍, 刪削冗濫, 一幷據實精核, 歸于至當, 毋使無功者得冒有功之賞, 功微者猥得同功之列. 其待事完, 一併○(俱)具奏, 以憑覆議定奪施行. 及啓李如松人曾之夫負性剛躁, 屢經論列, 豈謂無因? 但其苦歷東西征戰之難, 復値多事用人之際, 臣等備員摳末, 當爲皇上保持血戰之臣, 以作中外之氣. 至如松家門盈盛, 分當自挹損, 以仰承優厚之恩, 俯慰輿情之望, 而後無負也. 所有疏太子少保左都督職陰應否允從, 出自朝廷, 臣等未敢擅便.

또한 깊이 따져봐야 할 점은 병부에서 참주(參奏)한 내용이 전적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양에서의 승전과 공격 성공, 벽제에서의 구사일생은 영하(寧夏) 장량보(張亮堡)에서 오랑캐를 격파하고 먼저 성벽으로 올라갔던 때의 공을 겸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공을 세운 자는 아마도 근자에 공격하여 [성을] 수복한 장군들 중에서 찾아보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 등은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여송의 이러한 일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왕에 제본이 올라왔기에 참작하여 상의한 다음, 도찰원으로 이자(移咨)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요동 순안어사(遼東巡安御史)에게 보내어 과신들이 아뢴 상주문을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전에 누차 성지를 받들어 시행한 시랑 송응창의 서훈 중에서, 세 번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전쟁에서 몇 명의 인원이 사망했다고 기록한 부분도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독 이여송이 작성한 상주문에서도 군사를 내보내 치른 혈전만 발췌하고 쓸데없는 부분은 삭제하였는데,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함을 기함으로써 [내용이] 지극히 온당해지도록 함과 동시에, 공 없는 자가 함부로 공 세운 자가 받는 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이 미미한 자가 외람되이 동급의 공을 세운 자의 서열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 모든 것을 갖추어 상주하고, 복의(覆議)에 의거하여 [서훈을] 확정짓거나 삭탈하거나 하겠습니다. 이여송은 일찍이 그 성격이 사납

고 조급하여 수차례 탄핵하는 장계(狀啓)가 올라왔으니, 어찌 원인이 없겠습니까? 다만 동과 서에서 그 어려운 전쟁을 고달프게 겪어야 했고, 더욱이 다사다난하여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때까지 만났습니다. 이에 신 등은 인원을 끌어 모아 끝까지 진상을 밝힘으로써, 황상을 위해 혈전을 치른 신하를 보호하고 중외의 기운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여송은 그 가문이 성대하니, 그 위세를 덜어냄으로써 우러러 후덕한 은혜를 받들고, 굽어 타지에서의 고생하는 자들의 바람을 위로하면서 뒤에 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소에 있는 태자태보(太子少保) 좌도독(左都督) 직을 음사(陰仕)로 하사하는 일을 마땅히 따라야 할지에 관해서는 조정에서 결정할 문제인지라 신 등이 감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奉聖旨: "東征功次, 尙未勘到, 李如松則宜靜聽朝廷處分, 不必多辨, 亦不必瀆辭. 爾部裡旣欲保持戰將, 又稱盈盛當損, 詞涉兩可, 亦難允從. 還行催彼處, 作速勘來定議具奏."

성지를 받들었다. "동쪽 출정에서의 공을 논하는 일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이여송은 조용히 조정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므로, 이런 저런 말을 할 필요도, 또 문사(文辭)를 더럽힐 필요도 없다. 너희 병부에서는 기왕 전장의 장수를 지키고자 하면서 또 가문이 성대하니 덜어내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서로 모순되는 언사인지라 따르기 어렵다. 돌아가 그곳을 재촉하여 속히 감사를 진행하게 하고, 의론을 확정지어 갖추어 상주하도록 하라."

## 10. 어사 한취선(韓御史)이 올린 표문(票文)[1]
## (韓御史票文)

欽差巡撫遼東地方贊理軍務兼管備倭都察院右僉都御史韓某爲欽奉勅諭事.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欽差巡撫遼東地方贊理軍務) 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管備倭都察院右僉都御史) 한(韓) 아무개가 삼가 칙유(勅諭)를 받드는 건.

本年正月二十九日, 准欽差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 及防海禦倭事務兵部左侍郎兼都察院右僉都御史顧咨啓, 得本部院欽奉皇帝勅諭: "兵部左侍郎兼都察院右僉都御史顧近該兵部題, 請撤回經略諸臣, 令其與督撫交代, 以便專責.

올해 정월 29일에 흠차 총독계요(欽差總督薊遼)·보정(保定)[2] 등 처의 군무 겸리양향 및 방해어왜사무 병부좌시랑(防海禦倭事務兵部左侍郎) 겸 도찰원 우첨도어사가 보고를 올려 본부원(本部院)으로 온 황제의 칙유를 삼가 받았다.

---

1) 표문(票文): 중국의 행정공문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에 출입하는 중국인의 신분 및 출입 목적을 확인하고 조선사행의 사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문서로, 증명서 성격의 공문을 말한다.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44, 2000년.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134, 2006년.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26, 2006년.

2) 흠차 총독계요(欽差總督薊遼)·보정(保定): 흠차는 황제의 명령으로 보낸 파견인을 이르던 말이고, 총독은 관직명이다. 계요와 보정은 각각 중국의 지명이다.

“병부좌시랑(兵部左侍郞)　　겸도찰원우첨도어사(都察院右僉都御史)는 근자에 해당 병부에 제본을 보내 경략사 등 여러 신하들을 철수시키고, 독무(督撫)[3]와 교대하게 함으로써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 편하게 해달라는 청을 올렸다.

朝廷以爾累薦邊才, 習知遼事, 若只以文書交代, 恐倭情叵測, 遙制爲難, 今特命含生. 馳到彼料理防海禦倭事宜, 嚴督各該撫鎭等官. 將遼東·山海·寶坻·天津一帶沿海等處地方水陸官兵務, 以聽爾指授方略, 隨機戰守. 其留守朝鮮將領劉綎等兵馬, 亦聽節制, 酌量進止. 若倭勢緊急, 卽啓題, 准事例傳調薊保、宣大、山西各鎭兵馬隨去策應. 如無狙逞情形, 亦要體方眞確, 從宜區處奏聞. 其大小將領官, 放有觀望不前及輕率僨事者, 各啓重難, 軍法處治. 其勅內該載未盡事宜, 俱聽爾從長酌處, 不從中制. 夫內薊鎭防虜事務, 除常行文移及緊急聲息暫令巡撫衙門代理外, 其餘一應印務, 還屬爾掌管.

조정에서 그대들을 변방의 인재로서 요동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거듭 천거하였으나, 문서만으로는 왜노의 정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멀리서 통제하기가 어려울까 염려되어 지금 그대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린다.

속히 그곳으로 달려가 해방과 왜노 제어의 일을 처리하고, 각 해당 진무 등 관리들을 엄히 감독하도록 하라. 요동·산해(山海)·보지(寶坻)·천진(天津) 연해 지역의 수륙 관병의 업무의 경우, 그대들의 지휘와 방책을 따르게 하면서 시기에 맞게 전투하거나 수비하게 하라.

조선을 유수(留守)하는 장령 유정(劉綎) 등의 병마 역시 그대의 지휘에 따라 양을 짐작하여 들여보내거나 그치거나 결정하라. 만약 왜노의 형세가 긴박해 보이거든 바로 제본을 올리도록 하고, 전례에 의거하여 계보(薊保)·선대(宣大)·산서(山西) 각 진의 병마를 조달해 대응

3) 독무(督撫): 총독(總督)과 순무사(巡撫使)의 합칭(合稱). 본래 중국 명(明)나라의 도찰원(都察院)에서 지방에 파견하던 관원들로 전(轉)하여 지방관을 통칭하기도 한다.

하도록 하라.

교활하게 날뛰는 정황이 없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요지를 지켜 시의적절하게 처리한 다음 보고하도록 하라. 대소 장령관들 중에 방만히 관망하며 나아가지 않거나 경솔히 굴다가 일을 그르친 자가 있거든, 각각 그 무겁고 어려운 정황에 대해 장계를 올리라.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칙유 내에 다 기재하지 못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낸 훌륭한 계책에 따라 짐작해 처리하도록 하며, 중앙의 규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칙유 안에 있는 계진(薊鎭)의 오랑캐 방비 사무의 경우,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공문 및 긴급 기별을 순무아문에게 대리하게 하는 것 이외에, 기타 모든 문서 간행 관련 업무는 모두 너희들이 다시 맡아 관장하도록 하라.

爾受玆簡命, 宜竭忠運籌, 殫力任事, 務使保全屬國, 肅淸海氛. 斯副專倚事完, 故命回鎭, 朝廷將圖爾之功. 如或支吾怠忽, 責有所歸, 爾其欽承之, 故諭欽此.
除本部院欽遵外, 擬合通行爲此合咨前去煩啓, 咨備勅諭事, 理會行鎭守衙門及各兵備道將領等官, 一體欽遵施行."等因.
准此擬合就行, 爲此案仰本官. 照依咨案及欽奉勅諭事, 理卽便一體欽遵施行, 仍將遵行過緣由呈報, 査考毋得違錯未便, 抄案依准呈來, 右仰備倭副揔兵. 劉綎抄案.

너희들은 이 서간을 통해 명을 받았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해 계책을 운영하고, 힘껏 일에 임함으로써 속국을 온전히 보전해주고 바닷가 분위기를 엄숙히 씻어내도록 하라. 전적으로 맡겨진 이 일을 완수하는 날, 다시 진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뒤, 조정에서 너희들의 공로를 장차 치하할 것이다. 만약 대충 일을 처리하여 소홀한 바가 있으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니, 너희들은 삼가 받들라. 이에 고유하노라. 흠차(欽此).

본 도찰원에서는 이를 삼가 따르는 것 이외에 이 일로 전에 보낸

번다한 장계들을 여기 합쳐서 칙유를 갖추어 놓은 다음 진수하고 있는 아문 및 각 병비도 장령 등 관리들에게 이를 보내 이해시킴으로써 삼가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이에 의거해 시행해야 마땅하므로 이 문서를 본 관(官)에 올려야 한다. 자문의 안건 및 삼가 받든 칙유에 의거하여 일체의 뜻을 받들어 시행함과 동시에, 받들어 시행하게 된 과정과 경위에 대해 보고해야 마땅하므로, 내용을 조사해 보아서 착오나 온당치 않은 바가 없으면 문서를 작성해 의준하여 올리도록 하라. 이상의 내용을 비왜부총병(備倭副摠兵)은 받들라. 유정이 안건을 작성하다.

萬曆二十二年正月三十日.

右僉都御史韓 押.

만력 22년(1594) 정월 30일

우첨도어사 한 아무개가 수압(手押)하다

欽奉勅諭事.

삼가 황제의 명령을 받드는 건.

## 11. 적장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가 총병에게 보내는 답변서 (賊將淸正答總兵書)

今三月初五日出來蕩希春、李謙受等,　賊將淸正處持來劉摠爺了答書. 皮封書:“大明都督府. 淸正.”書送來. 披見:

오는 3월 초닷새에 장희춘(蔣希春)[1], 이겸수(李謙受)[2] 등이 적장 가토 키요마사가 있는 곳으로부터 총독 유정(劉綎)에게 보내는 답신을 가져 왔다. 겉봉에 “대명(大明) 도독부(都督府). 키요마사.”라고 적혀 있었는데, 열어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

1) 장희춘(蔣希春: 1556~1618): 원문은 ‘탕희춘(蕩希春)’이라 되어 있으나, 정황상 장희춘이 분명하므로 고쳐 번역한다. 임진전쟁 당시 이경연(李景淵) 등과 의병을 일으켜 박봉수(朴鳳壽)를 대장으로 삼고, 스스로 우익장(右翼將)이 되어 함월산성(含月山城)과 경주 금오산(金鰲山)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1594년 전공으로 인하여 장흥고직장(長興庫直長)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용양위 부사정(龍驤衛副司正)을 거쳐 부사과에 올랐다. 1597년 동래, 울산, 장기현감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훈련원 판관, 이어서 장례원 사평을 지냈다.

2) 이겸수(李謙受): 조선 중기 경상남도 양산 출신의 의병장. 임진전쟁 당시에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 전공이 있었다. 1594년(선조 27)에 가토 키요마사가 울산 서생포에 주둔하고 명나라 장수 유정(劉綎)에게 화의를 청하였다. 그 해 3월 5일 조정에서 그 진위를 탐정하고자 장희춘((蔣希春)과 함께 일본의 적진으로 파병했다. 그리고 그 해 5월부터 사명대사와 함께 11차례에 걸쳐 왜의 적진에 파견되어 양국 간 강화회담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수뇌부의 한반도 삼도 분할 구상을 간파하고, 왜군 내부의 이간책을 시도해 협상을 조선에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명나라 장수 유정이 이겸수를 ‘충성된 붉은 피는 양국을 위해 섬기는 바로구나.’라고 일컬었다고 전한다.『선조실록(宣祖實錄)』,「디지털 양산문화대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인용, http://yang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yangsan&dataType=01&contents_id=GC01401492

貴府英雄俊士之人. 夫俊士者, 作事有始有卒者, 顯丈夫之志也. 然則關白當受六十六介國之造化, 一呼百諾, 此乃天之所生, 地之所養也. 揖勇壽命長短, 汝不可料想, 海水不可斗量. 貴處性命, 再無千歲. 大閤日本六十六介國將付關白兒子, 表名大閤, 欲求高名文信, 遣使領衆軍兵渡海, 侵大明國地方, 揚名於後世, 以顯男兒之志也, 卒士先侵朝鮮處所.

귀부(貴府: 劉綎)께서는 영웅이자 준사(俊士)[3]입니다. 무릇 준사란 일을 함에 있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서 대장부로서의 뜻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런즉 관백(關白: 豊臣秀吉)은 66개의 주(州)를 거두어들인 조화로 한 번 소리침에 백 명이 호응했으니,[4] 실로 하늘이 내고 땅이 기른 분이십니다. 바닷물을 말로 잴 수 없듯이,[5] 그 용맹함과 수명의 장단은 당신이 헤아릴 길 없을 것이니, 이렇게 귀한 목숨을 타고 나신 분은 천 년 동안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대합(大閤: 豊臣秀吉)께서는 일본 66개의 주를 장차 아들에게 넘기시려고 대합이라 표명하심으로써 높은 명예와 아름다운 신의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사신을 보내고 많은 군사들을 인솔하여 바다를 건너가 대명국을 침략함으로써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 남아 대장부의 뜻을 드러내고자 사졸을 거느리고 먼저 조선을 침범했습니다.

---

3) 준사(俊士): 재주가 출중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순자(荀子)』「대략(大略)」에 나온다. "천하와 한 나라에는 재주가 출중한 사람이 있고 시대마다 현자가 있습니다(天下國有俊士, 世有賢人)."

4) 한번……호응했으니: 원문은 '일호백약(一呼百諾)'이다. 이 말은 한(漢)나라 한영(韓嬰)의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나온다. "사람들의 면전에서 그 뜻에 투합하고, 한 번 부름에 두 번이나 응낙하는 자는 노예이다(當前快意, 一呼再諾者, 人隷也)."

5) 바닷물은……없듯이: 원문은 '해수불가두량(海水不可斗量)'이다. 이 말은 『회남자(淮南子)』「태족훈(泰族訓)」에 나온다. "태산은 장이나 척으로 잴 수 없고, 바닷물은 말이나 섬으로 헤아릴 수 없다(太山不可丈尺也, 江海不可斗斛也)." 즉 좁은 식견으로 그릇이 큰 사람을 헤아릴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淸正忠良之漢. 古人云忠臣不怕死. 怕死不佐忠臣. 將關白親兵良將, 同生同死, 何有疑心之乎? 閑人毁謗, 我就是不怕他. 先手驅擄王子, 戰場之時, 問律依法, 性命惟存. 淸正將他同心共背, 嬉戰安樂, 我又將朝奏大閤殿下, 卽時不須渡日本國, 送還歸故鄉. 此奈恩深似海? 將大明.朝鮮, 反面無情說起淸正無恩義, 汝自胸內三思如何? 又將問陪臣, 天子意思如何? 又大明.朝鮮名正言順, 豈可偷人之政? 我高名日本國衆通知, 汝將可笑者, 必有後患.

나 가토 키요마사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길,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면 충신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관백의 친병과 훌륭한 장수를 데리고 와서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으니, 어찌 망설임 따위가 있겠습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지만 나는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조선 왕자를 포로로 사로잡았을 때도 군법에 의거해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나는 또 그를 한 마음으로 모시면서 전쟁 중이지만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대합 전하를 향하여 즉시 일본국으로 건네 보낼 것 없이 고향으로 송환할 것을 주청했으니, 이것이 어찌 하해와 같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대명국과 조선은 도리어 나더러 은혜도 의리도 없다고 무정하게 말하였으니, 그대들이 재삼 돌이켜볼 때 마음이 과연 어떻습니까? 또 배신들에게 묻노니, 천자의 뜻은 어떻습니까? 또 명실상부하게 이치로 논해 볼 때 대명국과 조선이 어찌 다른 사람의 정사를 훔칠 수 있습니까? 내가 고명한 일본국 사람에게 이를 통지하면, 그대들 가소로운 장수들에게 분명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舊年二月間, 馮沖英在咸鏡道, 送音約定, 面會之時, 緊急怠慢, 卽時分開. 如今經延日久, 未得再會, 空懷想. 日本國出有良將強兵, 有前進之意, 無退後之心也. 若大明.朝鮮作關事, 關白得勝, 有面皮兩邊和諧, 卽時退兵, 萬民喜悅, 各安生理, 豈不爲美乎? 若有虛謗之人說是非, 我中心內, 卽時寫書奉關白付前, 其罪不輕乎! 今特書來意思, 不明事

務多, 我胸中不得意也. 此處或有故, 不遣人送帖, 特聊草數字付前, 修文依理決斷推詳, 幷無私弊, 我是忠言逆耳. 人無遠慮, 必有近憂, 不爲一時之計故. 朝鮮陣頭之士卒千人. 英雄人傑. 何降大明? 古人云: "涓涓不塞, 作以何案?" 此謂.

작년 2월 사이에 풍충영(馮沖英)이 함경도에서 소식을 보내 나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는데, 직접 만났을 때는 서두르며 푸대접을 하기에 그 즉시 헤어졌습니다. 지금 차일피일 오랜 시일이 흘렀는데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부질없이 그리움만 품고 있습니다. 일본국에서는 훌륭한 장수와 강인한 병사를 내보냈으니, 전진할 마음만 있을 뿐 물러날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 대명국과 조선에 지장이 생겨 관백이 승리한다면 양쪽과 화해할 입장이 생기게 될 터, 그 즉시 군대를 물릴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기뻐하며 각자 편안하게 생활하게 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의 생각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방하고 시비를 논한다면, 나는 즉시 글을 써서 관백에게 아뢸 것이니, 그 죄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사무가 많아 마음에 부득이한 바가 있어서입니다. 이곳에 일이 있어 사람을 보내 편지를 보내지 못하고 그저 대충 몇 자 긁적여 부치니, 이치에 따라 판단하여 상세히 처리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것은 전혀 사심 없는 나의 충언[6]일 따름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근심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우환이 생기는 법, 일시적인 계책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조선을 진두지휘하는 많은 사졸들은 모두 영웅 인걸이니, 어찌 대명에 항복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졸졸 흐를 때 막지 않으면[7]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

6) 충언: 원문은 '충언역이(忠言逆耳)'이다. 이 말은 『사기』「유후세가(留侯世家)」에 나온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하기에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다(忠言逆耳利於行, 良藥苦口利於病)."

7) 졸졸……않으면: 『시경』에 보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며, 그치지 않고 막히지 않네(涓涓源水, 不雝不塞)."라는 구절이 있다.

有和樂之政, 王守死於善道. 設若大明有智慧之人, 合文理通大道, 無礙日本國名聲顯達, 卽時和諧, 一時退朝, 決無差言.
三月初三日, 淸正.

조화로운 정치가 있으면 왕이 죽음으로써 훌륭한 도를 지킨다[8]고 했습니다. 만약 대명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 문리에 부합하고 대도에 통달해 일본국의 명성과 현달에 방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면, 즉시 화해하고 일시에 조선에서 물러날 것이니, 결단코 나의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월 초3일 키요마사

大明都督府, 同封別紙書, "答都督府": "草字付知. 汝乃係時忠良將相, 眞言直話, 作事無虧. 書云, 人平不語, 水平不流. 我是忠直之人. 今時看文書, 忠言入耳, 竝無邪術耶. 寫音信報知, 以爲會面之禮, 筆不盡言, 道照是幸.
三月初三日 淸正.

대명 도독부에 별지를 동봉해왔는데, 도독부에 답변한다고 적혀 있었다.

"대충 몇 자 긁적여 보냅니다. 당신은 한 시대의 훌륭한 장수라, 참된 말을 직설적으로 하며 일을 함에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책에 '사람은 공평하게 하면 말이 없고, 물은 수평을 이루면 흐르지 않는다.'[9]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충언을 드릴 뿐 결코 사술(邪術)이라곤 없습니다. 편지를 적어 보고함으로써 만남의 예를 대신합니다. 글로는 말을 다할 수 없으니,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

8) 죽음으로써……지키는: 『논어(論語)』「태백(泰伯)」에 나오는 말이다. "독실하게 믿어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음으로써 훌륭한 도를 지킨다(篤信好學守死善道)."
9) 사람은……않는다: 이 말은 송나라 승려 보제(普濟)의 『오등회원(五燈會元)』 권18에 나온다.

3월 초3일 키요마사

皮封外面書: “進上恭奉, 緊急草子莫笑. 興化府備牌, 大明都督府, 唐人康玉湖被虜通書唐人.”

겉봉에는 “공손히 받들어 올리며 급히 몇 자 적으니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흥화부(興化府) 비패(備牌), 대명도독부 중국인 포로인 강옥호(康玉湖)[10]가 중국인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奉都督尊父老先生大人狀(不肖父康尚書, 不肖子康玉湖)披見金書, 可以見厚意之情也. 且關白強將, 有淸正忠臣之漢. 忠臣之漢千人, 虛謗關白再三, 不信他言. 何有疑懼之心乎? 若不信者, 貴處遣遣使的實來. 此處好人, 同關白面前談議, 可以見無差疑也. 靑天爺說, 不肖忘危山骨肉, 風從何來而從何起? 父兮生我, 母兮鞠我育我, 顧我復我, 出入復我. 欲報之德, 昊天罔極. 羊有跪乳子之恩, 豹有反哺之心. 豈可人而不如鳥乎? 靑天看字, 多學勞煩, 回音一紙, 似大旱之望雲也.
老先生大人閤下
不肖被離康尚書子康玉湖頓首拜
三月初三日, 栗行

“도독 존부 노선생 대인의 글을(불초의 부친 강상서(康尚書)[11], 불초자 강옥호) 받들어 읽어보고 두터운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백은 강한 장수이고 키요마사와 같은 충직한 신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직한 신하 천 명은 [사람들이] 거듭 허언으로 관백을 비방

10) 강옥호(康玉湖): 임진전쟁 당시 왜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왜군의 내부 정황을 명군에게 알린 명의 흥화부(興化府) 출신의 군졸이다. 정탁(鄭琢)의 『용사잡록(龍蛇雜錄)』에 포로가 된 이유를 하소연한 강옥호의 서찰이 들어 있다.
11) 강 상서(康尚書): 강대화(康大和: 1507~1577)를 가리킨다. 자는 원중(原中)이며 중국 복건성 보전현(莆田县) 출신이다. 남경(南京) 공부상서(工部尚書)를 지냈기에 강 상서라고 불렸다.

한다 해도 다른 말은 믿으려하지 않으니, 어찌 의구심 따위가 있겠습니까? 만약 못 믿으시겠다면 귀처에서 사람을 보내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관백 면전에서 담론을 나누어보시면 의심할 바 없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청천(靑天) 나리께서는 불초더러 태산과도 같은 골육의 정을 잊었느냐? 바람은 어디에서 오고 또 어디에서 이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날 나으시고, 어머님 날 보듬어 기르셨네. 날 돌보아주시고 나를 채워주셨으며,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를 품어 안아주셨네. 그 덕 갚고자 하나, 하늘처럼 넓어 끝이 없구나.'[12] 양에게는 꿇어 앉아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은혜가 있고, 표범에게는 반포(反哺)의 마음이 있다 하는데, 어찌 가히 사람이 새만 못할 수 있겠습니까? 청천 나리께서 글자를 읽으시느라 수고로우시겠지만 답신 한 통 보내주신다면 큰 가뭄 끝 단비[13]와 같을 것입니다.

노선생 대인 합하(閤下)

강상서(康尙書)의 불초자 포로 강옥호(康玉湖) 머리 조아려 인사 올립니다.

3월 3일 율행[14]

皮封外面書: "朝鮮總兵高, 淸正."

"屢常行書, 可以見有誠心之意也. 然則陪臣王子望斷回報, 待久早速期後信. 又將大明豪傑之人, 朝鮮俊士之人, 來議面會, 不亦君子乎? 每每差人來持帖, 披見文書, 理度不明, 事務多端, 此處將文書回答者也."

三月初三日 淸正.

---

12) 아버님……없구나: 『시경』「소민지십(小旻之什)」에 나오는 구절이다.

13) 단비: 원문은 '망운(望雲)'이다. 구름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자식이 타향에서 고향의 어버이를 생각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자유를 갈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14) 3월 3일 율행: 이 구절이 위에 속하는지, 아래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체적인 형식으로 보아 위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율행의 누구인지도 고증할 길 없다.

겉봉에는 “조선 고 총독(高總兵), 키요마사”라고 적혀 있었다.
“자주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 성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신(陪臣)과 왕자들의 회신이 끊겨 오래 기다리고 있으니, 조속히 서신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또한 장차 대명의 호걸과 조선의 뛰어난 선비들이 와서 얼굴을 마주보며 논의할 수 있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습니까? 매번 사람을 보내 문서를 가져오기에 열고 보니 문서의 내용이 조리가 없고 사무가 복잡하기에 이곳에서 장차 편지로 회신하는 바입니다.”
3월 초3일 키요마사.

## 12. 자헌대부(資憲大夫)[1] 지중추부사 권율의 장계 (資憲大夫知中樞府事權慄)

當日到付昌原府使崔謹馳報內, 賊中被擄逃還府貢生甘德祐, 當爲賊勢推問招內. 府使眼前隨行貢生, 以去月二十九日藜明量, 兇賊十餘名, 不意突入山幕, 四抱未及脫身, 矣身及他女二名, 一時被擄. 行到右兵營川邊, 各處分散之賊, 稍稍聚集, 其數六十餘名. 我國被賫男女三十餘名, 以卽到金海德櫓窟穴, 則他男女不知去向留宿.

당일 창원부사(昌原府使) 최근(崔謹)의 치보(馳報)가 당도하였는데, 그 내용에 적중에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돌아온 창원부 공생(貢生)[2] 감덕우(甘德祐)가 적의 세력에 대해 공술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사가 눈앞에서 직접 공생을 따라갔었는데, 그는 전 달 29일 새벽 무렵에 10여 명의 흉악한 적이 갑자기 산막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사방으로 포위되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신 및 다른 여자 두 명과 일시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병영이 있는 시냇가에 이르자 각처에 흩어져 있던 적들이 차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6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로잡힌 우리나라 남녀 30여 명은 김해의 덕로(德櫓)굴로 압송되었고, 다른 남녀는 어디서 묵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翌日倭賊七名, 率矣身及女七名, 到熊川熊浦. 女人乙良, 他倭處捧銀賣之, 矣身乙良, 欲賣未果之際, 加德島倭將稱號者, 乘大船適到同處賣之. 削髮被衣, 深入舟內, 同倭將與熊浦酋長會面後. 翌日是在初二

1) 자헌대부(資憲大夫): 조선시대 문신 정2품 하계의 품계명을 말한다.
2) 공생(貢生): 초시(初試)에 합격한 생원(生員) 가운데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서 다음 단계의 과거 응시자로 추천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日, 還爲乘舟, 諸陣橫行爲如可, 到巨濟島, 則同處設二陣, 不知其數留屯爲有等. 我國男女亦不知其幾是齊. 留其陣二日, 還到加德. 行至中洋, 望見西海十五里之許, 舟師多數列泊, 地名不知. 煙氣漲天爲去乙, 舟中之賊, 擧皆西望, 咸有褫魄之形. 令其下卒促櫓以去, 招矣身傳譯曰: "西海浮泊, 何國之舡, 而乘某人耶?" 答曰: "我國生大將軍三人焉. 二將陸兵, 一將舟師, 必是其舡."云云. 則又曰: "將軍之才如何?" 答曰: "將軍騎馬乘空踏虛飄忽若飛禽云. 此吾熟聞未見. 但前日在宜寧習陣時, 初爲朝鮮一陣, 而戰酣變爲朝倭之陣, 移時迭戰爲如可, 戰克乃復如初. 所見怳惚, 諸軍士莫知其謀略是如."云云. 則答曰: "汝言若是, 則甚可畏也." 言之再三, 到加德下陸後, 卽遣小舡二隻, 侯望以來亦爲遣. 向夕尺量土城之外, 分授其卒, 加作柵木. 泊舡之外, 亦設水場, 以爲堅固之計. 倭人常曰: "中原與汝國講和, 則當入歸, 若不講和, 遞番恒居于此." 云云. 遞番之倭, 此月內出來事是乎矣, 迄無聲息, 思鄉念土, 愈久愈難堪是如, 皆爲哭泣爲齊. 連續出來之舡, 皆載軍糧衣服是旀.

이튿날 왜적 일곱 명이 그 자와 여자 일곱 명을 데리고 웅천의 웅포(熊浦)[3]로 갔습니다. 여자는 다른 곳에 있던 왜적이 은을 가지고 와서 사갔고 그 자가 아직 팔리지 않고 있을 때, 가덕도에서 왜장이라 칭해지는 자가 큰 배를 타고 오더니 같은 곳에서 그를 샀습니다. 삭발을 하고 옷을 입고 배 안 깊숙이 들어간 뒤 왜장과 함께 웅포(熊浦)추장과 회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초이틀에 다시 돌아와 배에 올라 여러 진영 사이를 횡행하다가 거제도로 가서 같은 곳에 두 곳의 진을 쳤는데, 머물러 주둔하는 병사의 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역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 진에 이틀

3) 웅천의 웅포(熊浦): 웅천은 지금의 경상남도 진해이다. 지금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웅천왜성(熊川倭城)이 있는데, 임진전쟁 당시 왜군들이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남해안에 축조한 18개의 성 가운데 하나이며,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진을 치고 왜군의 제2기지로 활용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웅포는 이순신이 왜와 전란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간 머물다가 다시 가덕도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쯤 항해했을 때 서해 15리 남짓을 바라다보니 배들이 여럿 정박해 있었는데, 지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거늘, 배 안의 적들이 눈을 들어 서쪽을 바라보더니 모두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졸들에게 명해 노를 저어 떠날 것을 재촉하더니, 그 자를 불러 통역하여 말했습니다. “서해에 정박해 있는 것은 어느 나라 배이며, 어떤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가?” 그 자가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장군 셋이 계신다. 두 장군은 육군이고 한 장수는 해군이다. 필시 그 분의 배일 것이다.” (운운) 그러자 말했다. “장군의 재간은 어떠한가?” 그가 답했다. “장군께서는 말을 타고 허공을 다니시며, 날짐승처럼 훨훨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지만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의령에서 진 치는 법을 연습할 적에 처음에는 조선 쪽 진만 쳤는데, 전쟁이 한창일 때는 조선과 왜의 진으로 바꾸었다가, 어느 정도 교전하다가 전쟁이 끝날 때면 다시 처음처럼 되돌리셨습니다. 눈앞에 본 것이 황홀하여 군사들은 어떠한 도모와 지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운운) 그러자 대답했다. “너의 말이 정말이라면 심히 두렵구나.” 거듭 말했더니 가덕도에 이르러 뭍에 오른 다음 배 두 척을 보내 망을 보게 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 파견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토성을 측량하는 것 이외에 사졸들을 나누어 주면서 목책을 더 쌓게 하였습니다. 배를 정박시키는 것 이외에 또한 수장(水場)을 만들어 견고한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왜인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중원과 너희 나라가 강화를 하면 돌아갈 것이나 만약 강화하지 않는다면 번갈아 교대하며 이곳에 항상 머물 것이다.” (운운) 번갈아 교대하는 왜인들은 이 달 들어 나와서 일을 하되 기운이라고는 없었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 갈수록 견디기 어려워하면서 모두가 울며 보냈습니다. 연이어 들어오는 배에는 군량과 의복이 실려 있었습니다.

我國之人，別造其家．漁鹽興販者，不知其數．矣身乙，倭人四名，朝人二名，逢授供饋守直，使不得出門爲如乎．十一日夜間良中，回告幕中

有火爲去乙, 潛揷蓋草, 使之出火, 蒼黃救滅之間, 艱難逃還爲乎昧. 招辭是乎所, 牒呈是白置有亦. 上項甘德祐之招辭, 取信不得事是白在果, 似聞倭賊等, 得聞金德齡之神奇, 皆懷疑懼之念, 或作退據島中之計云云. 若乘此機, 合勢進兵, 則庶有蕩滅之望, 而德齡所等器械, 尙未完備叱分不喩, 事貴萬全, 輕動不得爲白臥乎事是良爾. 詮次以善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들의 집을 찾아가 물고기와 소금을 파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사람을 왜인 네 명과 조선인 두 명이 번갈아 지키며 먹을 것을 가져다주면서 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11일 밤중에 군막으로 돌아가 불이 났다고 보고하는 중에 몰래 풀숲으로 숨어들었는데, 불을 켜게 하여 창망히 화재를 진압하는 와중에 가까스로 도망쳐 돌아왔다고 합니다. 공술한 내용은 이상이온 바, 첩정(牒呈)[4]은 이와 같습니다. 위 항목의 감덕우가 공술한 내용은 믿을 만하지 못하거니와, 듣자니 왜적들이 김덕령(金德齡)의 신기함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혹자는 섬으로 물러가 살 궁리를 한다고들 합니다. 만약 이 기회를 틈 타 합세하여 진군한다면 적을 소탕할 희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덕령이 있는 곳의 무기가 아직 완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이란 만사에 완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萬曆二十二年三月十九日.
資憲大夫知中樞府事都元帥臣權

만력 22년(1594) 3월 19일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도원수 신 권 아무개

當日到付本月二十一日成貼慶尙防禦使金應瑞馳報內. 今月十九日辰時量, 慶州府境內十里外, 倭賊千餘名, 衝突焚蕩爲去乙, 防禦使亦自朝

4) 첩정(牒呈): 조선시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에 올리던 문서를 말한다.

驛, 踰越天龍, 去後岾馳來接戰次. 左兵使高彦伯, 忠淸防禦使李思命, 助防將洪季男, 慶州府尹朴毅長等竝到, 約束殊死力戰爲如可. 防禦使李思命則右臂中丸, 判官朴應箕逢劍致死. 助防將權應銖所騎馬, 逢丸倒斃, 防禦使中丸衣服穿破, 不犯肌骨. 軍卒多數中傷, 終日血戰.

당일에 이달 21일자 관인이 찍힌[5] 경상 방어사 김응서(金應瑞)[6]가 보내온 보고서가 당도하였는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달 19일 진시(辰時: 아침 7시에서 9시) 무렵에 경주부(慶州府) 경내 10리 밖에서 왜적 1천여 명이 갑자기 쳐들어와 분탕질을 하거늘, 방어사 역시 조역(朝驛)에서 출발해 천룡산을 넘어 후첩(後岾)으로 달려가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좌병사(左兵使) 고언백(高彦伯)[7], 충청 방어사(忠淸防禦使) 이사명(李思命),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8], 경주부윤(慶州府尹) 박의장(朴毅長)[9] 등이 나란히 도착

5) 관인이 찍힌: 원문의 '성첩(成貼)'은 예전에 문서에 관인(官印)을 찍던 일을 가리킨다.

6) 김응서(金應瑞): 자는 성보(聖甫)이고 용강에서 살았으며, 임진전쟁 이후 김경서(金景瑞)로 개명했다. 1592년 8월 조방장(助防將)으로 평양 공략에 나섰으며, 싸움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워 평안도방어사에 승진되었다. 1593년 1월 명나라 이여송(李如松)의 원군과 함께 평양성 탈환에 공을 세운 뒤, 전라도병마절도사가 되어 도원수 권율(權慄)의 지시로 남원 등지에서 날뛰는 토적을 소탕하였다. 1597년 도원수 권율로부터 의령의 남산성(南山城)을 수비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불복해 강등되었다. 그 뒤 1603년 충청도병마절도사로 군졸을 학대하고 녹훈(祿勳)에 부정이 있어 파직되었다가, 1604년 전공을 인정받아 포도대장 겸 도정(捕盜大將兼都正)이 되었다. 시호는 양의(襄毅)이다.

7) 고언백(高彦伯):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영원군수(寧遠郡守)로서 대동강 등지에서 적을 맞아 싸우다가 패배하고, 계속 분전하여 그 해 9월 왜병을 산간으로 유인, 지형을 이용하여 62명의 목을 베었다. 그 이듬해 양주에서 왜병 42명을 참살, 그 공으로 왕은 특별히 당상관으로 올리고 양주목사로 삼아 능침(陵寢)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 내원한 명나라 군사를 도와 서울 탈환에 공을 세우고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경기도방어사가 되어 전공을 크게 세웠고, 난이 수습된 뒤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책록되고 제흥군(濟興君)에 봉해졌다. 1608년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 임해군(臨海君)을 제거할 때, 임해군의 심복이라 하여 살해되었다.

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을 약속하였는데, 방어사 이사명은 오른팔에 탄환을 맞았고, 판관(判官) 박응기(朴應箕)는 검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방장 권응수(權應銖)[10]가 타던 말이 탄환에 맞아 고꾸라졌고, 방어사는 탄환에 맞아 옷에 구멍이 났으나 살갗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군졸 다수가 다치면서 종일토록 혈전을 치렀습니다.

前日投降倭要叱其等四名, 多放鳥銃, 盡心突戰, 倭賊多被中傷, 不勝退北伊自未里. 結陣經夜次, 潛使要叱其, 乘昏夜驚計料爲如可, 倭賊明火不寐, 竟莫之遂. 更與要叱其謀之, 潛入賊陣, 同類誘引亦云云. 則同日夜三更, 善放鳥銃者五百至, 誘引出來爲有去乙, 欲試萬一之幸, 同要叱其及前來倭三名合九名, 以爲先鋒, 凌晨迫進賊旁. 則賊徒結卜行軍爲去乙, 防禦使及權應銖·權滉等合勢領軍馳突, 要叱其等鳥銃一時俱發, 賊徒驚惶顚走次. 高彦伯·洪季男·朴毅長·金太虛·鄭大任等, 亦爲來戰墨墻峙至追擊. 賊徒勢窮, 被擄人三百三十餘名, 牛馬二十餘首乙降放送.

전날 투항한 왜인 요질기(要叱其) 등 네 명[11]은 조총을 쏘면서 마음

---

8) 홍계남(洪季男): 임진전쟁 당시 의병을 지휘하여 여러 곳에서 승리했다. 그 공으로 경기도 조방장(助防將)이 되고, 수원판관(水原判官)을 거쳐, 이듬해 충청도 조방장으로 영천군수(永川郡守)를 겸임, 진주(晉州)·구례(求禮)·경주(慶州) 등지의 싸움에 참전했다. 1595년 경상도 조방장으로 전임했고, 이듬해 의병을 이끌고 '이몽학의 난'을 토평(討平)하는 데 공을 세웠다.

9) 박의장(朴毅長): 자는 사강(士剛)이다. 임진전쟁 때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박진(朴晋)과 함께 경주(慶州) 탈환 싸움에서 화차(火車)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 적을 대파했다. 그 공으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승진, 재임 중에 61세로 죽었다.

10) 권응수(權應銖): 자는 중평, 호는 백운재이다. 임진전쟁 당시 의병을 일으켰고, 경상좌도병마절도사 박진(朴晉)의 밑에서 활동했다. 7월 각 고을의 의병장을 규합하여 의병대장이 되어 영천성을 탈환한 공으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우후가 되었다. 8월 20일 제2차 경주탈환전에 선봉으로 참가했으나 패했다. 1593년 2월 순찰사 한효순(韓孝純)과 함께 문경 당교에서 적을 대파하여, 경상도병마절도사 겸 방어사가 되었다. 시호는 충의이다.

11) 요질기(要叱其) 등 네 명: 『선조실록(宣祖實錄)』에 보면 임진전쟁 당시

을 다해 전투에 임했는데, 왜적은 부상당한 자가 많아지자 어쩔 수 없이 패퇴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진영을 짜던 차에, 요질기로 하여금 몰래 밤을 틈 타 적을 놀라게 하는 계책을 세우게 하였으나, 왜적이 불을 밝혀 놓은 채 잠들지 않고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질기와 다시금 모의하여 적진에 잠입한 다음 적들을 유인해 내자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밤 삼경에 조총 잘 쏘는 자 5백 명을 적진으로 보내 유인해냈거늘, 만분의 일의 요행이라도 시험해 보고자 요질기 및 앞서 온 왜인 세 명, 도합 아홉 명이 선봉대가 되어 새벽녘에 적진 옆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에 적의 무리가 행군하자, 방어사 및 권응수·권황(權滉)[12] 등이 합세하여 군대를 인솔하여 돌격하고, 요질기 등이 조총을 일시에 발사하자, 적의 무리가 놀라 당황하여 허겁지겁 도망하던 차에, 고언백·홍수남·박의장·김태허(金太虛)[13]·정대임(鄭大任)[14] 등까지 싸우러 와서 담티재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이에 적의 기세가 궁지에 몰리자, 붙잡혀 있던 포로 330여 명과 소와 말 20여 마리를

---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중 요질기, 사야가(沙也加), 평구로(平仇老), 산여문(山如文), 사고여무(沙古如武) 등 항왜(降倭) 일본인의 이름이 보인다.

12) 권황(權滉: 1648~?): 현종(顯宗) 11년(1670) 경술(庚戌)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 『경술추문무과별시방목(庚戌秋文武科別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2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인용.

13) 김태허(金太虛): 자는 여보(汝寶), 호는 박연정(博淵亭)이다. 임진전쟁 때 밀양성이 함락된 뒤 밀양부사로 임명되어 분전하였다. 이어 울산군수로 전임되고, 울산성 전투에서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을 도와 큰 전공을 세워 당상관에 올랐다. 1599년 성주목사를 거쳐,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1605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이어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오위도총부도총관·호위대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뒤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시호는 양무(襄武)이다.

14) 정대임(鄭大任): 자는 중경(重卿), 호는 창대(昌臺)이며 영천 출신이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당지산(唐旨山)에서 복병으로 적을 크게 무찌르고 이어 7월에 영천지역 의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영천성을 수복하기 위한 전투에 참가하여 경상도 의병장들과 협력하고 중총(中摠)의 직책을 맡아 왜군을 크게 격파시켜 전공을 쌓았다. 그 뒤 영천에서 신령으로 이동하는 적군을 권응수와 함께 요격, 박연(朴淵)에서 대승하고 영천수복에 공을 세웠다. 용궁, 비안의 전투에서도 다수의 적을 참획(斬獲)하고 병사 박진(朴晉)과 함께 경주탈환전에 용명을 떨쳤다.

풀어주었습니다.

因日昏未得盡捕. 投降倭要叱其等力戰之功, 極爲可嘉. 接戰節次, 大槪馳報爲臥乎所, 牒呈是白有亦. 向前金應瑞等亦倭賊衝突之時, 乘機剿滅, 極爲喜幸. 斬獲多少軍功, 追于磨鍊. 大朝以啓聞計料爲臥乎事是良尒, 詮次善達.
萬曆二十二年三月二十四日.
資憲大夫知中樞府事都元帥臣權

그러나 날이 어두워져 다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투항한 왜인 요질기 등이 힘을 다해 싸운 공로는 지극히 가상합니다. 접전하던 경과의 대략을 달려가 보고했으며, [그때 보낸] 첩정 또한 있습니다. 일전에 김응서 등이 왜적과 맞붙었을 적에 기회를 틈타 적을 섬멸하였으니, 지극한 기쁨이요 행운입니다. 수급을 베고 포로를 사로잡은 많고 적은 군공을 뒤에 기려주시고, 대조(大朝)에 장계로써 아뢰어 주십사 하기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 전달합니다.
만력 22년 3월 24일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도원수 신 권

行長所送倭人曺把總, 似若還送衣. 以唐服率向于南原, 總兵只率中軍, 與相公一二人馳來于安陰, 接見倭人後, 倭人則還送于密陽. 差唐官齎諭帖送于臣, 而臣病勢方苦, 不能出接, 極爲未安. 同諭帖謄書上送爲白臥乎事是良尒. 詮次以善達.
三月二十九日

고니시 유키나가가 보낸 왜인 조파총(曺把總)을 송환한 듯합니다. 그는 중국옷을 입고 남원으로 향했고, 총병은 중군(中軍)만을 인솔하여 상공 한두 명과 함께 안음(安陰: 지금의 함양)으로 달려와 왜인을 접견한 후 왜인들을 밀양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또 명나라 관리 편에 유

첩(諭帖)을 신에게 보내왔는데, 신은 병세가 심하고 몸이 고되어 나가 접견하지 못하였기에 몹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유첩을 등사하여 편지에 함께 보내기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 전달합니다.
3월 29일

日者, 風聞朝鮮諸將有欲集合水陸軍兵, 以爲攻襲倭奴之擧. 自常情論之, 完完一國, 疆土被其竊據, 人民遭其荼毒, 流離瑣尾, 情苦可矜, 該國君臣, 孰不欲食其肉而寢其皮? 本府有閫外之寄, 亦豈不欲滅此賊而後朝食? 但審時度勢, 大有不可. 夫該國平時, 武備欠修, 城郭不完, 以致倭奴得以長驅入犯. 及今喪敗之後, 民物凋耗, 田地荒蕪, 譬如人之一身, 手足痿痺, 血氣衰微, 而欲勉強從事, 未有不顚仆者矣. 爲今之計, 正宜撫育元元, 養威蓄銳, 徐圖報復, 方見經國遠猷.

일전에 조선의 여러 장수들이 수륙 군병을 집합시켜 왜노를 공습하는 거사로 삼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지상정으로 논해 볼 때, 멀쩡했던 한 나라가 강토를 빼앗겨 점거당하고, 백성들은 해독을 입은 채 사방으로 유리되어 초라하게 떠돌고 있어서[15] 그 고달픈 사정이 가히 긍휼히 여길 만하니, 그 나라 군신들 중에 그 누구인들 저들의 살점을 씹어 먹고 가죽을 벗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부[16]에서는 곤외(閫外)[17]의 부탁을 받았으니, 어찌 이 적들을 섬멸한 후 조식을 먹고[18]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세를 살펴 헤아려보건대 절대 안

15) 초라하게……있어서: 『시경』「모구장(旄丘章)」에 "자잘하고 자잘한 이 떠도는 사람이로다(瑣兮尾兮, 遊離之子)."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쇄미(瑣尾)'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16) 본부(本府): 명군 도독부(都督府)를 가리킨다.
17) 곤외(閫外): 곤외라는 말은 임금이 도성 밖으로 출병하는 장수를 떠나보낼 때 수레바퀴를 밀어주며 "성곽의 문지방 안은 과인이 처리할 테니, 그 바깥은 장군이 알아서 처리하라(閫以內者, 寡人制之, 閫以外者, 將軍制之)"(『사기』「풍당열전(馮唐列傳)」)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곤외지임(閫外之任)이란 문지방 밖의 임무, 군사를 이끌고 경외로 싸우러 나가는 장군의 직임을 이르던 말이다.
18) 적들을……먹고: 『좌전(左傳)』「성공(成公) 2년」에 "나는 이들을 섬멸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나라가 태평했을 적에도 무비(武備)가 정비되지 않았고, 성곽도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왜노들이 먼 길을 달려와 침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패망한 뒤라, 백성도 물자도 모두 소진되었으며 전답도 황폐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손도 발도 마비되고 혈기도 쇠미한 상태에서 억지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한다면] 고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계책을 내보건대 무엇보다 백성을 위무하고 기르는 것이 중요하니, 위세를 기르고 무기를 비축하여 서서히 보복할 방도를 꾀한다면, 나라를 경영할 원대한 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若徒目前悻悻, 爲小不忍之計, 則本府又有說焉. 越王句踐受恥會稽, 其心未嘗一日而忘吳也. 必待生聚敎育於十年之後, 乘時奮擊, 一戰滅吳. 該國君臣, 正當取法于此. 今也諸將行事, 利害有三. 苟能一鼓而下諸巢, 使其片帆不返, 片甲不留, 褫髣奴之魄, 寒海寇之心, 方爲全策. 若但小有俘馘, 互有勝負, 俱足以挑禍啓釁, 反滋跳梁. 若或事機不保, 致勝不能, 則其流毒, 有不可勝言者矣. 況倭奴業已稱臣乞款, 遣將叩閽, 廟堂堂上, 方且斟酌調停, 總督軍門, 屢次明文禁諭, 本府獨肩玆任, 關係匪輕.

만약 한갓 당장의 노여움으로 참을성 없는 계책을 낸다면, 본부에서 또한 해줄 말이 있습니다. 월왕(越王) 구천(句踐)은 회계에서 굴욕을 당한 뒤로 마음으로 단 하루도 오(吳) 나라를 잊은 적 없었습니다.[19]

---

후에 조식을 먹겠다(余姑翦滅此而朝食)."라는 말이 나온다.

19) 월왕(越王)……없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월왕 구천은 오왕(吳王) 합려(闔閭).부차(夫差)와 약 20년에 걸쳐 국가존망을 건 전투를 벌였다. 처음에는 월왕이 합려를 죽이고 승리했다. 합려는 죽기 전 아들 부차에게 자신의 복수를 당부했고, 몇 년 후 부차는 대군을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해 구천을 회계산에 포위시켜 그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 후 구천은 십여 년간 회계산에서의 굴욕을 견딘 끝에 오나라를 공격해,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여기서 나온 고사가 바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이다.

하지만 십년 동안 백성들을 모으고 교육시킨 다음에, 기회를 틈 타 분격한 끝에 한 차례 전쟁으로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저 나라의 군신들은 여기서 방법을 취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여러 장수들이 하는 일에 이해(利害)가 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만약 한 번 북을 울려 저들의 소굴을 함락하고, 저들로 하여금 단 한 척의 배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의 갑옷도 남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곤노(髡奴)[20]들의 혼백을 달아나게 하고, 바닷가 왜구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 수 있다면 바야흐로 완벽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포로의 왼쪽 귀를 자르거나, 서로 승부를 겨루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모두 화를 일으키고 분란을 야기하기에 족할 것이어서 도리어 거리낌 없이 날뛰는 상황만 조장하게 될 뿐입니다. 또 만약에 고비를 넘기지 못해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퍼뜨려질 해독(害毒)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왜노들이 이미 신하라 칭하며 화친을 구걸하면서 장수를 보내 대궐 문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며, 조정에서는 바야흐로 분쟁을 조절할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총독 군문이 누차 공문을 내려 금유(禁諭)를 펼치셨으니, 본부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어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萬一有失, 則該國召釁有由, 自甘取辱, 而本府亦干悖旨之咎矣. 爲此特諭都元帥權慄, 卽速播告沿海諸將, 各宜安靜固守, 以俟徐圖, 不得輕擧妄動, 招冤速禍. 如諸將不以本府之言爲然, 必欲逞私智以圖僥倖, 本府亦將挈標下而西渡鴨綠矣. 夫本府此意, 原非巽懦無爲, 蓋緣時勢旣屬難爲, 事體又多中制, 謀始慮終, 審己量力, 故特諄諄戒諭. 蓋欲汝輩愼重保全, 養成全鋒也, 思之愼之, 毋貽後悔.
三月二十四日.

만일 한 가지라도 실패한다면, 이는 저 나라가 분란을 자초하여 기꺼

20) 곤노(髡奴): 삭발한 노예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왜구를 폄하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이 욕 당함을 입은 것이지만 본부도 성지(聖旨)를 어긴 허물을 지게 됩니다. 이에 도원수 권율에게 특유를 내리노니, 즉시 연해 지역 여러 장수들에게 고하여 각자 조용히 맡은 곳을 견고히 지키면서 서서히 방법을 도모하고, 경거망동하여 원통함과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전하십시오. 만약 여러 장수들이 본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기필코 사사로운 지혜를 부려 요행을 바라고자 한다면, 본부 역시 수하의 군대를 거느리고 서쪽 압록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본부의 이런 뜻은 결코 무기력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지금 시세가 이미 어찌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 자체가 중재에 관련된 바가 많은 까닭에, 도모를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하고 끝까지 사려를 다하며, 가신의 역량을 잘 살피고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계유(戒喩)한 것입니다. 그대들이 신중히 나라를 보존하고 완전한 전력을 잘 키워내기를 원해서이니, 신중히 생각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하십시오.
3월 24일

四月二十六日 在洪州時備忘記.
“二相以崇班老成之人, 差賑恤堂上之任, 逐日往監, 必多勞苦之事. 余甚憂慮, 此意言于大臣, 以年少宰臣改差可矣.” 回達左贊成鄭某, “至差賑恤堂上之任者, 爲其誠懇盡心賑濟之事故也, 今承必多勞苦未安之令, 其念老臣, 計品式之意, 至矣盡矣. 臣不勝感激, 戶曹判書韓準, 方幹國計重事, 朝夕不暇. 大司成金宇顒, 做察騎曹之事, 而亦可兼治他事, 依下令, 以金宇顒委近間賑恤之任何如?”
二月十二日通報

4월 26일 홍주(洪州)[21]에 있을 당시 비망기(備忘記)[22]에
“두 재상은 지위도 높고 노련한 사람으로서, 진휼(賑恤) 당상(堂上)의 책임을 맡아 파견되어 매일같이 감독하고 다니느라 필시 노고가 많

21) 홍주(洪州): 충청남도 홍성의 옛 지명이다.
22) 비망기(備忘記): 정령(政令)의 일부나 돈유(敦諭), 별유(別諭)와 같은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유형의 하나이다.

았을 것입니다. 내가 심히 우려되어 이러한 사실을 대신에게 말하여 젊은 신하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회달(回達)[23]하기를,
“좌찬성 정 아무개에게는 진휼 당상의 책임을 맡아 파견된 자인데, 성실히 마음을 다하여 진휼의 일을 맡아보고 있으며, 지금 필시 수고롭고 불편한 명령을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늙은 신하를 염려하고 법식을 헤아리는 뜻은 지극함을 다하였다고 이를 만하기에 신은 감격을 이길 길 없습니다. 호조판서 한준(韓準)[24]은 바야흐로 나라의 대계에 관련된 중대 사무를 도맡느라 아침저녁으로 겨를조차 없습니다. 대사성 김우옹(金宇顒)[25]은 기조(騎曹)[26]를 관찰하고 있는데, 다른 일도 겸하여 맡을 수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김우옹에게 근간 진휼의 책임을 맡기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2월 12일에 통보하다.

---

23) 회달(回達): 예전에 정사(政事)를 대리하는 왕세자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는 일을 이르던 말.
24) 한준(韓準): 자는 공칙(公則) 호는 남강(南崗)이다. 임진전쟁 때 호조판서로 순화군(順和君)을 호종, 강원도로 피난하였고, 이듬해 한성부판윤에 전임되었으며, 진하 겸 주문사(進賀兼奏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와 이조판서가 되고, 1595년 사은 겸주청사(謝恩兼奏請使)로 또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시호는 정익(靖翼)이다.
25) 김우옹(金宇顒): 자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東岡)、직봉포의(直峰布衣)이다. 임진전쟁 때 의주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승문원제조로 기용되고, 이어서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찬획(贊劃) 원황(袁黃)의 접반사(接伴使)가 되고, 이어서 동지중추부사로 명나라의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을 위한 문위사(問慰使)가 되었으며, 왕의 편지를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에게 전하였다. 그 해 상호군을 거쳐 동지의금부사가 되어 왕을 호종하고 서울로 환도했다.
26) 기조(騎曹): 조선 시대 육조(六曹)의 하나로, 군사와 우역(郵驛)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를 이르던 말이다.

## 13. 하남도 어사(河南道御史) 황일룡(黃一龍)이 올리는 제본 (河南道御史黃一龍一本)

河南道御史黃一龍一本.
倭奴狡詐異常, 不宜封貢, 懇乞聖明亟斷, 以杜邊釁, 以保萬世治安事.
頃該經略侍郎宋應昌恭報倭款情形疏稱: "小西飛齎送刀銃盔甲等物, 必欲應昌收受. 則云收則准封, 卽可回報, 不收則不准. 難以回報. 應昌遂逐一受之." 又該兵部員外劉黃裳疏稱: "乞款宜從, 定其地于對馬島, 與倭通貢." 臣不勝駭愕, 不勝憤恨. 竊以封貢之說. 昨歲內外諸臣, 交章極言其不可許. 卽皇上亦謂何必通貢爲信, 又謂通貢事, 斷不得輕許, 綸音赫赫, 炳如日星. 而該部題覆亦只許虛封, 姑俟表文至日, 具奏會議, 請旨定奪. 今表文行催數月矣, 使倭果畏威輸服, 何不登時控表? 而乃以刀銃盔甲等物, 持兩端以嘗試應昌, 應昌何不責其表文不至, 而輒受其物, 許其封?

왜구가 유난히 교활하고 간사하여 책봉(冊封)과 통공(通貢)[1]을 허락해서는 안 되니, 성명하신 독단으로 변방의 분란을 막고, 만세의 치안을 보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근래에 해당 경략사(經略使)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郎) 송응창(宋應昌)이 화친을 원하는 왜구의 상황에 대해 삼가 보고하면서 올린 소장에서 말하길, "고니시 히다노카미가 칼、조총、투구、피갑(皮甲)[2] 등

1) 책봉(冊封)과 통공(通貢): 원문은 '봉공(封貢)'이다. 이는 명나라 조정이 변방의 나라 혹은 소수민족과 연계를 맺어오던 일종의 형식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담겨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변방의 나라 혹은 소수민족이 중원의 왕조, 즉 명나라에 속해있음을 상징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일종의 관방 무역을 뜻한다.
2) 피갑(皮甲): 조선시대 가죽으로 만든 갑의(甲衣)의 하나로 미늘은 돼지가죽으로 하여 검게 그을린 사슴 가죽으로 엮어 만든다.

의 기물을 보내면서 송응창이 반드시 받아주길 요구하였는데, 받으면 책봉과 통공을 비준하는 셈이어서 그 즉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보고하겠지만, 받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송응창은 일일이 [검수한 뒤에] 받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해당 병부 원외랑 유황상(劉黃裳)의 소장에 말하길, "왜구가 화친을 청해 오면 따라야 마땅하며, 장소는 대마도(對馬島)로 정하시어 왜구와 통공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외람되이 생각하건대 책봉과 통공에 대해서는 작년에 내외 신하들이 서로 황상께 상주하여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극구 말했습니다. 황상께서도 책봉과 통공을 신표(信標)로 삼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으며, 통공의 일은 결단코 가벼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윤음이 해와 달처럼 환히 빛나고 있을뿐더러, 병부의 제복(題覆)에서도 그저 허봉(虛封)[3]만 허락하고 잠시 표문(表文)이 당도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갖추어 상주하고 회의한 다음 확정지을 것인지, 삭탈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어지(御旨)를 청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표문을 재촉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구가 정말 우리의 위세를 두려워하고 패배를 인정했다면, 어째서 당장 표를 올려 고하지 않겠습니까? 또 칼、조총、투구、피갑 등을 바침으로써 양단을 쥐고서 송응창을 시험하고 있는데, 송응창은 어찌하여 표문을 보내지 않는 것을 질책하지도 않은 채 그 물건들을 받으면서 책봉을 허락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黃裳又從而附和之後, 爲通貢之請, 敢于蔑明旨犯衆論而不恤. 嗟嗟! 此曹止亦了事, 以希圖爵賞, 偷安朝夕, 爲己功名, 而不顧國家之大計, 所謂不忠之臣, 不法之謀, 何所逃罪于天地間哉? 臣惟忠臣謀國, 當爲之圖萬全, 而不可僥一將之倖, 當爲之計長遠, 而不可偷一時之安. 夫謂封貢之不可許者, 非謂在內地不可, 而在海島則可也, 又非謂表文不至則不可, 而表文至則可也, 總之倭不可通耳. 蓋倭奴詭譎無常, 而奸

3) 허봉(虛封): 명목상으로만 작위 혹은 봉읍을 하사할 뿐, 실제로는 하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民亡賴易動, 通倭則中國之虛實, 山川之險易, 與中土之長技, 寧保無暗輸之倭, 又寧保無梟雄之徒爲之用? 倭旣覘我虛實, 稔我險易, 得我長技, 又收我梟雄爲用, 其禍可勝言哉!

유황상 또한 송응창을 따라 부화뇌동한 뒤에 책봉과 통공의 청을 올리면서, 차마 아무것도 아랑곳 않고서 밝고 밝은 성지를 무시하고 중론을 범했습니다. 아! 이들은 그저 일을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관직과 상을 바라고, 아침저녁으로 안일을 탐하며 자신의 공명만을 꾀하면서 국가대계를 돌보지 않았으니, 불충한 신하요 불법을 도모함이라, 어찌 그 죄로부터 천지간 어디엔들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생각건대 충신이 국가를 위해 도모함에 마땅히 만전을 기해야지 만에 하나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고, 국가를 위해 장계를 세워야 마땅하지 일시의 편안함을 꾀해서는 안 됩니다. 책봉과 통공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지에서는 불가하고 바닷가 섬에서는 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표문이 안 오면 불가하고 표문이 오면 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왜구와 통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노들은 이랬다저랬다 거짓말에 익숙하고, 간사한 백성들은 무뢰하고 동요되기 쉬운지라, 일단 왜구와 통공하게 되면 중국의 허와 실, 산천의 험준함과 평탄함, 중국의 뛰어난 기술 등이 왜구에게 암암리에 흘러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어찌 보장할 수 있으며, 또 그들에게 등용되는 준걸들이 없으리라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구들이 우리의 허실을 염탐하고, 산천의 험준함과 평탄함을 익히고, 우리 장기를 배우고, 또 우리의 준걸들을 거두어들여 등용한다면 그 화를 어찌 이루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關白善用此策, 以與朝鮮貿易于釜山, 卒之朝鮮爲其魚肉. 殷鑑不遠, 而我顧可復誤耶? 況所定對馬島者, 黃裳疏中定之耳, 倭肯遵我約束, 不越此島否? 卽越此島而全羅而王京, 誰能禁之? 又誰爲皇上之言? 夫以去年全師度幕, 羽檄交馳, 塘報旁午, 而倭之整居猶故, 倭之情形, 至今竟莫知的確. 矧罷兵弛禁, 任其互市, 於彼於此, 何由得知? 交通勿

引, 何所不至? 不二三年, 遼陽一帶, 皆倭窠臼, 閩、浙皆倭嚮導, 爲患叵測. 是我本欲以羈縻乎彼, 彼反得此毒螫乎我矣. 近聞江南有大俠, 瞋目語難, 謀爲不軌, 潛結關白, 寔繁有徒, 業已覺發成擒.

관백(關白)은 이런 계책에 능해서, 이런 방식으로 부산에서 조선과 무역한 결과 결국 조선이 그들에게 도륙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殷)나라의 거울이 멀리 있지 않은데[4], 우리가 조선과 같은 착오를 번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장소로 정한 대마도는 유황상의 상주문에서 정한 것일 따름인데, 왜구가 우리와의 약속을 기꺼이 준수하며 이 섬을 넘지 않겠습니까? 대마도를 넘어 전라도, 한양까지 들어오면 누가 이들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황상을 대신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전군이 막사를 옮겨 우격(羽檄)[5]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당보(塘報)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때, 왜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비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왜구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군사를 철수하고 금지조항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물물교역을 하게 내버려 둔다면, 저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제지하지 않은 채 통상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어디인들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2~3년도 되지 않아 요양(遼陽) 일대는 온통 왜구의 소굴이 되고, 민(閩) 땅과 절(浙) 땅[6]은 모두 왜구의 길잡이가 될 터, 그 화는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 우리가 저들을 잡아두고자 하다가 저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침을 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근자에 강남의 한 협객이 몹시 분노에 차 눈을 부라리고 반란을 도모하여 몰래 관백과 결탁했는데, 따

4) 은나라의……않은데: 『시경(詩經)』「대아(大雅)、탕지십(蕩之什、탕(蕩)」에 "문왕께서 말씀하시길 아아! 너희 은나라여! 사람들이 또한 이르는 말이, 넘어져 뽑혀 뿌리가 드러나네. 가지와 잎새에 해로움이 없다 하여도, 실은 뿌리가 먼저 끊어졌네. 은나라 거울이 먼 곳에 있지 않네, 하나라 걸왕의 시대에 있다네(文王曰咨, 咨女殷商. 人亦有言, 顚沛之揭. 枝葉未有害, 本實先撥. 殷鑒不遠, 在夏后之世)."라는 구절이 있다.

5) 우격(羽檄): 옛날에 새의 깃털을 꽂아 위급상황을 나타내던 격문(檄文), 즉 긴급공문서를 말한다.

6) 민(閩) 땅과 절(浙) 땅: 각각 지금의 복건성과 절강성을 가리킨다.

르는 무리가 실로 많았으나 지금은 일이 발각되어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海內人民, 思亂如此, 尙可開通倭之門, 以失民心哉? 陛下獨不懼嚮者款虜之事乎? 當款虜時, 市賞非不有定數, 而無奈日增月長, 至于今倍蓰千百矣. 亦非不欲藉此以修武備, 而無奈養安玩揭, 至于今日, 益廢弛矣. 當事者豈不以身擔當, 保數十年無事? 未幾而虜首渝盟, 臨洮失守. 沿邊無處不乏兵, 無處不缺餉. 皇上何曾追究夫誤國之罪, 而置之不原之典? 此二臣之所以敢輕言款, 而臣不勝杞憂. 竊恐將來款倭之初, 亦猶是也, 耗中國帑藏之蓄, 懈濱海戰守之防, 養島夷于日盛, 貽天下以隱憂, 則斯言爲之策矣. 夫議者疑也, 事有是非可否. 介在疑似者, 則議之謂, 議之謂, 則是非可否決矣.

해내의 백성들이 난을 꾀함이 이와 같은데, 도리어 왜구와 통상의 문호를 열어 민심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일전에 오랑캐와 화친했던 일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오랑캐와 화친을 할 때, 그 대가로 허용한 교역에 정해진 수량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어찌하다보니 나날이 또 다달이 늘어나 지금에 와서는 수천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기회를 틈 타 군비를 다듬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어쩔 수 없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탐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 더욱 황폐해지고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집정자들이라고 어찌 수십 년 동안은 아무 일 없으리라고 몸으로 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의 우두머리가 맹약을 저버리는 바람에 임조현(臨洮縣)[7]을 지켜내지 못하더니, 변경 일대에는 군사가 부족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군량미가 모자라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상께서 나라를 망친 죄를 추궁하고 용서치 못할 법으로 다스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두 신하가 감히 가벼이 화친을 언급하는 까닭이기에, 신은 기우(杞憂)의 마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신이 우려하건대 장래에 왜와 화친을 하면 초기에는

7) 임조현(臨洮縣):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민현(岷縣)이다.

또 이와 같을 것이나, 중국의 국고를 축내고 연해의 방비를 해이하게 한 다음, 섬나라 오랑캐의 수를 날로 불려 천하에 보이지 않는 근심을 끼칠 것이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릇 의(議)란 의심을 품는다[疑]는 뜻입니다. 일에는 시비(是非)와 가부(可否)가 있으니, 중간에 끼어 있어 애매할 경우 의논해야 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시비가부가 결정됩니다.

今倭奴封貢, 明明非是, 明明不可, 又何疑而何議焉? 是以滿朝臣工. 皆知其不可, 而應昌黃裳堅持以爲可者, 彼其意以爲. 東征之事, 本無他謬巧以制倭之死命, 徒以沈惟敬柯斧之謀耳, 今旣格輿論, 不可收拾, 莫若委進曲負, 庶幾二三年之事, 可暫免目前之禍謗, 而暫叨目前之寵澤故, 謂此曹止辦了事, 以希圖爵賞, 偷安旦夕, 爲己功名, 而不顧國家之大計者也. 伏望皇上, 仰遵祖訓, 俯察群情, 震赫斯怒, 亟絶封貢之請. 以防守遼左, 責之總督, 以往繕兵甲, 責之本兵. 毋觀望表文而緩內備, 毋徒幣所恃而勤遠略, 庶邊釁不開, 封疆永固, 而萬世之治安, 可常保矣.

하지만 왜구를 책봉하고 저들과 통공하는 일은 확실히 옳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 분명한데,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의논한단 말입니까? 이런 까닭에 온 조정의 백관들은 모두 그것이 불가함을 알고 있는데, 송응창과 유황상 두 사람만이 책봉과 통공이 가하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속으로, 동쪽으로 출정함에 본디 왜구를 제압할 거짓 술수나 교묘한 계책이라곤 없이 그저 심유경(沈惟敬)의 무식한 도모를 따랐을 뿐이니 지금 여론을 수습할 길도 없는 마당에 차라리 다 맡기고 받아들여 뜻을 굽히면 2~3년간 끌어온 전쟁에서 잠시 눈앞의 화를 면할 수 있고, 잠시 눈앞의 총애를 입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일을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관직과 상을 바라고, 아침저녁으로 안일함을 탐하며 자신의 공명만을 꾀하면서 국가 대계를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 위로는 조훈(祖訓)을 받들고 아래로는 민정을 살피시어, 이 분

노를 천하에 드러냄으로써 속히 책봉과 통공의 주청을 내치십시오. 요동[8]을 방어하는 일은 총독에게 맡기시고, 무기를 다스리는 일은 병부 상서에게 맡기십시오. 표문만 기다리며 내부 방비를 늦추지 마시고, 또 한갓 돈만 믿고 먼 곳 정벌에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봉국과 강토는 영원히 공고해질 것이며, 만세의 치안은 언제든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至於東征功罪, 言者騰沸, 部議含糊, 以爲此非難明也. 朝廷以征倭遣應昌, 必倭盡航海以去而后爲功. 今倭實未曾去, 何功之有? 如謂平壤之捷. 則碧蹄不失利乎? 相提而論, 功罪僅相準. 顧其不止, 而且欺君辱國. 臣併爲皇上數之. 蓋人臣事君, 義不可欺. 臣嘗閱應昌疏揭俱稱, 倭衆遁歸, 今倭屯聚全羅慶尙連十二營, 果遁歸否? 應昌曾已聞否? 昨接督臣顧塘報, 自舊年築城蓋房, 運糧練兵, 此何等事, 而應昌不以聞?

동쪽 출정의 공과 죄에 대해서 언론이 비등한 반면 중앙정부의 결정은 모호한데, 이는 결코 밝히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정의 입장인즉 왜구 정벌을 위해 송응창을 보냈으니, 반드시 왜구가 모두 배를 타고 떠난 뒤라야 공을 세웠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구는 실제로 떠나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공이 있습니까? 만약 평양 전투를 언급한다면, 벽제 전투에서는 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나란히 놓고 공과 죄를 논해 보면 서로 상쇄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논공을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황상을 기만하고 나라를 욕보였습니다. 신이 한꺼번에 황상을 위해 그 죄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의리상 기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송응창의 상소문을 읽어 보니 왜구의 무리들이 달아나 돌아갔다고 했는데, 지금 왜구들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연이어 열두 개의 진영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달아나 돌아간 것입니까? 송응창은 이 말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어제 독신(督臣: 總督)을 접견하고 당보(塘報)를 살펴보니, 지난해부터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군량미를

8) 요동: 원문은 '요좌(遼左)'로, 요동의 별칭이다.

운반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 송응창이 아뢰지 않았단 말입니까?

甚至封貢之說, 川兵之殺, 已經撫臣趙燿, 按臣周維翰先後摘發, 而應昌猶竄跡匿端, 多方掩飾, 百計蒙蔽, 使皇上聽虛而責响, 視空而索影, 爲人臣子, 可欺罔若是耶? 臣謂應昌先利之罪小, 而欺君之罪大也. 我聖明威稜旁鬯, 武節飇逝, 可謂盛矣. 倭徒狂逞, 豈至飮馬長城, 逆我師之顧行? 乃以屬國告急, 興師遠援, 卽不得志, 猶未甚辱, 而奈何宿兵于無用之地, 捐金行師, 至餌之以和親損國威, 重貽笑外夷? 豈所以慰九廟在天之靈, 而答天下臣民之望乎? 臣謂應昌失利之罪大也. 執二臣而討之, 應昌安所置喙矣? 設倭匪茹, 春汛復罕侵軼, 應昌又何以自續哉? 夫有功不賞, 則人何所勸, 有罪不罰, 則人何所懲? 如應昌欺國辱國之罪, 中外共憤, 今得弛于負垣, 亦云倖矣.

심지어 책봉과 통공의 일과 천병(川兵)을 죽인 일을 무신(撫臣)[9] 조요(趙燿)[10]와 안신(按臣) 주유한(周維翰)[11]이 선후로 적발해 냈는데, 송응창은 도리어 그 흔적을 없애고 갖은 방법으로 진상을 감추고 백방으로 진실을 덮어 숨김으로써 황상으로 하여금 허상을 듣고 메아리를 꾸짖게 하고, 허공을 바라보며 그림자를 찾게 하였으니, 신하된 자로서 이렇게 황상을 기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은 송응창의 실리(失利)[12]의 죄는 작지만, 임금을 기만한 죄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상의 드넓은 위세와 용감무쌍한 기개는 가히 성하다 이를 만합니다. 왜구가 아무리 방자하기로 어찌 장성 아래로 와 말에게 물을

9) 무신(撫臣): 순무(巡撫)의 임무를 맡은 신하를 말한다. 조요의 관직이 우첨도어사 순무보정(右僉都御史巡撫保定)이므로 무신이라 하였다.
10) 조요(趙燿): 조요는 임진전쟁 당시 요동 도어사(遼東都御史)로 있으면서 화친과 조공 모두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1) 주유한(周維翰): 주유한은 임진전쟁 당시 요동 순안어사(遼東巡按御史)로 있었다.
12) 패한 죄: 원문은 '선리(先利)'로 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으로 보아 '실리(失利)'가 옳은 듯하여 고쳐 번역한다.

먹이고, 우리 군사의 행군을 거스르는 짓까지 하겠습니까? 속국이 위급함을 고해옴에 군사를 일으켜 원정을 갔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심한 욕이 아니라 해도 어찌하여 쓸모없는 땅에 군대를 주둔시켜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진군을 하며, 화친을 미끼로 국위를 손상시킴으로써 오랑캐에게 거듭 비웃음을 산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찌 하늘에 계신 조상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천하 백성들의 바람에 보답하는 길이겠습니까? 신은 송응창의 실리의 죄가 몹시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신하를 잡아 꾸짖는다면 송응창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왜구가 자신의 역량도 헤아리지 못하고[13], 봄물 질 때 다시 깊숙이 침범해 들어온다면, 송응창은 또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릇 공이 있는데도 상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무엇으로 권면할 것이며, 죄가 있는데도 벌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나라를 기만하고 능욕한 송응창의 죄에 대해 안팎에서 공분하고 있으니, 지금 담장에 기대어 시일을 벌고 있는 것 자체가 요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乃欲錄其功, 則從今以后, 欺君者皆得蒙賞, 辱國者皆得逭罪, 臣大恐無以作伐者任事之氣而收桑榆之功也. 伏乞皇上奮乾剛, 亟將宋應昌議處, 以爲人臣不忠之罪. 然後核諸將士功級陣亡之賞恤, 以示激勸. 所以快公論而飭人方者, 匪淺鮮, 臣一念犬馬丹誠, 不容緘默. 伏惟聖明裁斷施行. 臣曷勝悚慄待命之至.
奉聖旨: “兵部知道.”

만약 송응창의 공을 서록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후로 임금을 기만한 자 모두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나라를 능욕한 자 모두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 신 징벌나간 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길 없

13) 자신의……못하고: 『시경(詩經)』「소아(小雅)·유월(六月)」에 “오랑캐 험윤(玁狁)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초(焦)와 호(穫)에서 정연히 거주하면서(玁狁匪茹, 整居焦穫).”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정현(鄭玄)의 주석에 따르면, ‘비(匪)’는 ‘비(非)’이고, ‘여(茹)’는 ‘탁(度)’의 뜻이다. 여기서 ‘비여’는 자신의 역량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고, 상유(桑楡)의 공을 거두어들일 길[14] 없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의 강건한 권위를 떨치시어 속히 송응창에 대한 처결을 의논함으로써 신하로서의 불충한 죄를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한 연후에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의 공적과 전사자를 조사하여 포상하고 위로함으로써 고무토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공론을 만족시키고 오랑캐를 경계시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견마(犬馬)의 충심[15]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하신 독단을 펼쳐 주소서. 신은 황송이 명을 기다리는 지극한 마음을 이길 길이 없겠나이다.

이에 성지를 받들었다. "병부에서 이 일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

14) 상유(桑楡)의……길: 『후한서(後漢書)』「풍이전(馮異傳)」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동한(東漢) 유수(劉秀)가 광무제에 오른 뒤 대장 풍이를 시켜 서쪽 정벌에 나서게 해서 적미군(赤眉軍)을 평정케 했으나, 도리어 풍이군이 대패했다. 이에 풍이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다시 군대를 모집하여 적미군에 몰래 들어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공격하며 적미군을 대파시켰다. 전쟁이 끝난 뒤 유수는 「노풍이조(勞馮異詔)」라는 조서를 내려 풍이를 이렇게 위로했다. "모름지기 처음에는 회계(回溪)에서 날개가 꺾였는데, 결국에는 민지(澠池)에서 날개를 떨쳐 일어났네. 이것을 일러 동우(東隅)에서 잃고 상유(桑楡)에서 거두어들였네(始雖垂翅回溪, 終能奮翼澠池. 可謂失之東隅, 收之桑楡)." 여기서 동우는 해가 뜨는 곳, 즉 동쪽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아침과 시작하는 곳의 의미가 나왔다. 상유는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말하는데, 해가 질 때 뽕나무와 느릅나무의 끝을 비추는 데서 해가 지는 곳, 즉 서쪽과 일몰을 의미하고, 일이 끝나는 곳, 노년의 뜻이 나왔다. 여기서는 시작할 때는 잃었으나 끝날 때는 얻는다는 의미로, 실패했으나 반드시 성공할 때가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15) 견마(犬馬)의 충심: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다.

## 14. 4월 초나흘 계하(啓下)[1]
## (四月初四日啓下)

本月初九日, 使前日自賊中出來鄭寶年, 倭副將喜八處書簡書給, 先入送去, 其簡辭云: "朝鮮士人李謙受白. 朝鮮使大禪師北海松雲, 來自督府營下, 欲入貴陣, 與大上官宣諭和諧事. 須出送下人若干, 使無中路之患, 幸甚." 十二日與出身李謙受及都元帥軍官守門將申義仁, 出身梁蒙海, 通事出身金彦福, 出身林彦豪, 僧俗幷二十餘名, 出自左兵使陣, 以李謙受爲前導而行. 夕宿于蔚山郡箭灘川邊, 明十三日朝發. 至于郡南面所等川邊秣馬時, 我國被擄人朴湜同等七名來到于川邊, 見我等進告曰: "以賣食連命事. 欲刈取蓋草而來耳." 問曰: "昨今鄭寶年持書入送, 而未知到否?" 答曰: "昨日到陣耳." 又云: "副倭率人馬迎來事已定, 而近日雨水故, 今未來此耳." 使其人等二名, 先入送先聲, 而行到于公須串前野, 則樵倭類數千餘徒, 彌漫道路.

이 달 초아흐레에 일전에 적중으로부터 나온 정보년(鄭寶年) 편에 왜의 부장 희팔(喜八)[2]에게 서간을 써서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 서간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조선의 사인 이겸수(李謙受)[3]가 아룁니다. 조선에서는 독부(督府:

---

1)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를 받는 것. 계품(啓稟)한 문서에 재가의 표시로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내려 보내는 일에서 연유한 말이다.

2) 희팔(喜八): 1597년에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의 부장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사자 미노베 긴타유(美濃部金太夫)를 말한다. 김대부(金大夫)와 동일인이다.

3) 이겸수(李謙受): 1594년에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를 대장으로 하는 왜적이 울산 서생포에 주둔하고 명나라 장수 유정(劉綎)에게 화의를 청하자 그 해 3월 5일 조정에서 그 진위를 탐정하고자 장희춘(莊希春)과 이겸수 등을 일본의 적진으로 파병하였다. 그리고 그 해 5월부터 사명대사와 함께 11차례에 걸쳐 왜의 적진에 파견되어 양국간 강화회담의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수뇌부의 한반도 삼도 분할 구상을 간파하고, 왜군 내부의 이간책을 시도해 협상을 조선에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劉綎)의 진영으로부터 온 대선사 북해송운(北海松雲)[4]을 귀 진영에 들여보내 대상관(大上官: 加藤淸正)께 화해에 관해 선유하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몇 명을 내보내주시어 중도에 우환이 없도록 해주신다면 크나 큰 행운이겠나이다."

12일에 출신(出身)[5] 이겸수 및 도원수 군관 수문장 신의인(申義仁), 출신 양몽해(梁蒙海), 통사(通事)[6] 출신 김언복(金彦福),[7] 출신 임언호(林彦豪)[8] 등 승려와 속세인 도합 20여 명이 좌병사 진영에서 나와 이겸수가 앞장 서 인도하였습니다. 저녁에 울산군 전탄천 가에서 묵고, 다음 날인 13일 아침에 출발하였습니다. 군의 남면(南面)에 있는 시냇가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 포로인 박줏동(朴涎同) 등 일곱 명이 시냇가로 오더니 우리들을 보고는 앞으로 나와 고했습니다. "저희는 먹을 것을 팔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초를 베어가려고 왔을 뿐입니다." 저희가 "어제 정보년이 편지

---

큰 공을 세웠다. 명나라 장수 유정이 이겸수를 '충성된 붉은 피는 양국을 위해 섬기는 바로구나.'라고 일컬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공으로 정주판관(定州判官)을 제수하여 부임하였다.

4) 북해송운(北海松雲): 승려 유정(惟政, 1544~1610)을 가리킨다.

5) 출신(出身): 조선시대 문과(文科: 大科)、무과(武科)、잡과(雜科) 등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6) 통사(通事):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 소속된 역관이나 이속(吏屬) 중 중국과 일본에로의 사행(使行)에 차임(差任)되어 통역에 종사하며, 국용(國用)에 소요되는 서적·약재 등의 무역에 종사하던 이를 통사(通事)라 했다. 통사는 사행 중 제반 업무의 실질적 총책임자로서 방물.세폐 등 각종 물화의 운송·관리하며 세부 업무 종사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사행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김경록, 「조선초기 통사의 활동과 위상변화」, 『한국학보』제101집, 2000년, 朴成柱, 「麗末鮮初 通事의 職能과 그 性格」, 『慶州史學』제24·25합집, 경주사학회, 2006년.

7) 김언복(金彦福): 자는 복우(福宇)이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집안 가동들 수십 명을 이끌고, 고경명(高敬命) 의병진에 참여하여 참모로써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를 경상방어사 군관 주부로 제수하였다. 금산(錦山) 이치전투(梨峙戰鬪)에서 분투하였으나 고경명과 함께 순절하였다. 조정에서 그의 충혼을 기리어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녹훈(錄勳)하였다.

8) 임언호(林彦豪: 1553~?): 선조 32년(1599) 기해(己亥) 정시(庭試) 병과(丙科) 11위로 급제하였다. 자는 진부(振夫)이며, 성주 사람이다.

를 들고 들어갔을 터인데, 도착했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어제 진영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군 부장이 사람과 말을 이끌고 마중오기로 결정했었으나 근래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들 중 두 명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 소식을 넣게 하였는데, 공수곶 앞의 벌판에 이르렀을 때 꼴을 베러 나온 듯한 왜적 수천여 명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見我等之行, 處處屯集, 或抽刀揮鍔, 或放鳥銃, 以示其威. 至于賊陣十里許, 則副將喜八郎稱號, 倭具鞍馬四匹及銃筒軍四十餘名親率迎來. 使我等更騎其馬, 前導引歸. 過西生奮城, 至于賊城外, 則群賊聞朝使入來之奇, 爭先出城, 挾道觀望者, 幾至五千餘數也. 引入于副將喜八之居, 群倭皆以慰行. 時又有大明人康玉糊來見我等, 書示曰: "日本之人, 常爲習惡, 愼勿輕語"云. 喜八問曰: "君等從何處來.? 又何如僧也?" 答曰: "自督府營下, 兼承朝鮮都元帥命令而來矣." 佯爲語曰: "年纔十六七仕於朝, 自十八歲, 避隱于金剛山, 晦跡養神. 中年入大明, 與督府有素. 今遭汝兵, 而督府領兵出來, 召我出駐于督府營下. 營下他無可信之人, 故令送于汝陣, 與汝將論成和諧之意耳."

그들은 우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곳곳에 무리를 짓더니, 혹 칼을 빼내 휘두르기도 하고 혹 조총을 쏘기도 하면서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적진으로부터 10리 남짓 되는 곳에 도착하자 희팔랑(喜八郎)이라고 불리는 부장이 안장 얹은 말 네 필과 총통군(銃筒軍)[9] 40여 명을 거느리고 친히 나와 맞이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을 번갈아가며 말에 타게 하고, 앞장서 인도해 갔습니다. 서생포(西生浦)[10] 분성산(奮城山)을 지나 적들의 성벽 밖에 이르자 왜적의 무리가 조선 사신이 들어왔다는 기별을 듣고는 앞 다투어 성을 나왔는데, 양 옆에서 구경하

9) 총통군(銃筒軍): 조선시대에 화약 무기를 다루던 군대를 이르던 말이다.
10) 서생포(西生浦): 울산 울주군에 있다. 이곳에 남아 있는 왜성은 현재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는 자가 거의 5천 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를 희팔의 거처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왜인들은 모두 오느라 수고했다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대명(大明) 사람 강옥호(康玉湖)[11]가 우리를 보러 왔다가 글을 써서 보여주기를, "일본인들은 늘 악습을 일삼고 있으니,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희팔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떠한 승려인가?" 이에 "독부의 진영으로부터 왔으며, 모두 조선 도원수의 명령을 받들어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고는 거짓으로 이렇게 고했습니다. "나이 겨우 열 예닐곱에 조정에 출사하였다가 열여덟에 금강산에 은거하여 종적을 감추고 정신을 길렀습니다. 중년에 대명에 들어가 독부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지금 그대의 병사들과 맞붙게 되어 독부께서 병사를 이끌고 나오심에 나를 소환하여 독부의 진영에 주둔하게 하셨습니다. 영하에 믿을 만 한 사람이 달리 없어 그대들 진영으로 보내면서 그대들의 장수와 화해의 뜻에 관해 논의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倭有喜色曰: "我國議大事, 則以高僧召議矣. 貴國亦以貴僧送來者, 以重此事也." 悅之深信之篤. 喜八蓋淸正寵將同謀者也. 同倭聞言入于淸正處, 久而出來問曰: "君等自督府營下而來, 則持督府書來耶? 王子君書亦持來耶?" 答曰: "督府書則來矣, 王子君則入平安道, 謁天將而後, 仍承天子命, 召入大明未還, 故今未送書耳." 問曰: "督府心中事細知而來耶? 果何事耶?" 答曰: "督府中心, 我等何足以知之? 但督府自前送書, 而見答書, 則名無著署, 又無印迹. 必是中間所弄耳. 玆送我等, 欲驗虛實, 故我等至此耳."

왜인이 희색을 띠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사를 의논할 때면 고승들을 회의에 소환합니다. 귀국에서 승려를 보내온 것은 이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크게 기뻐하며 단단히 믿는 기색이었습니다. 희팔은 가토 키요마사가 총애하며 더불어 모의하는 자

11) 원문에는 '康玉糊'라고 되어 있으나 앞에는 '康玉湖'로 나와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康玉湖'로 나와 있어 글자를 고쳤다.

인 듯 했습니다. 왜인이 키요마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는 한참 뒤에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독부의 진영에서 왔다면 독부의 서신을 가지고 왔습니까? 왕자군의 서신 역시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독부의 서신인즉 가지고 왔으나, 왕자군께서는 평안도로 들어가 천장(天將)을 알현한 후에 천자의 명을 받들어 대명에 들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물었습니다. “독부의 속내를 자세히 알고서 온 것입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독부의 마음속을 우리들이 어찌 족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독부께서 지난번에 편지를 보냈는데, 답신을 보았더니 서명도 없고 도장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필시 중간에 무슨 농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들을 보낸 것은 허실을 시험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問曰: “日本出來小西飛, 今在何處?” 答曰: “不知小西飛爲人也.” 倭以書示曰: “小西飛與沈遊擊同入大明者也.” 問曰: “沈遊擊講和條事知耶否?” 我等故以不知答也, 問曰: “君等自督府而來, 則何不知沈事云耶?” 因以書示與天子結婚割朝鮮四道兩條曰: “此沈遊擊.行長講和事也. 何以云不知耶?” 答曰: “此沈、行講和事, 則萬無成事之理. 上官之所欲, 亦在此耶?” 倭答曰: “上官之所爲與此異也.” 如此而問, 如此而答者, 數三遍. 原其情, 則皆不肯行長之意也. 是日初昏, 引我等入于淸正在處.

저들이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고니시 히다노카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고니시 히다노카미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왜인이 글씨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고니시 히다노카미는 심 유격(沈遊擊: 沈惟敬)과 함께 대명에 들어간 자입니다.” 저들이 물었습니다. “심 유격의 강화 조건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독부에서 왔으면서 어찌 심 유격의 일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천자와의 결혼 및 조선 4도를 할양한다[12]는 두 조목을 써서 내보이며 "이것이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강화한 내용입니다. 어찌 모른다고 하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강화한 내용이라면 성사될 리가 만무합니다. 상관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까?" 왜인이 답했습니다. "상관께서 하시는 바는 이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묻고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이 여러 차례인데, 정황을 따져보건대 모두 고니시 유키나가의 뜻에 수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날 초저녁에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토 키요마사가 머무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我等先入坐定而後, 淸正推門出來見我. 先慰遠行而後問曰: "沈遊擊事云何不成耶?" 我等觀其賊喜彼不成之心, 欲摘其情, 答曰: "沈事萬萬不成也." 淸正曰: "事貴機密, 以言通之, 則恐播人." 曰: "我入房書示, 貴亦以書答示可也." 卽起入房書示, 則皆以行長.沈遊擊講和成不成如何等事爲問. 我等以不成爲答, 以干其情, 則蓋以不成爲喜也. 又自日本來倭僧二名, 著白絹長衫, 又着金襴袈裟, 儼然出坐于廳中, 一僧名本妙寺主持, 一眞, 粗知書畫, 故問答事, 專委此等僧書之. 酒一行, 因夜深許退而宿. 明十四日朝飯後, 群倭副將等皆來見之.

우리들이 먼저 들어가 좌정한 후에 가토 키요마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를 만났습니다. 먼저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한 뒤에 질문을 했습니다. "심 유격의 일이 어찌하여 성사될 수 없다고 한 것인가?" 우리들이 보기에 적들은 성사되지 않는다는 말을 내심 기뻐하는 것 같았기에 그 속내를 들춰보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심 유격의 일은 절대로 성사될 수 없습니다." 가토 키요마사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기밀에 부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 새나가면 남에게

12) 천자와의……할양한다: 명나라 강화사에게 제시했던 일본 측의 조건 중에 "평화조약을 보증하기 위해 명나라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는다."와 "조선 8도 가운데 4도를 일본에 할양한다."가 들어 있다. 여기서 4도란 충청·전라·경상·경기도를 가리킨다.

퍼질까 두렵다.” 이내 “내 방에 들어가 글로 써서 보일 터이니, 그대도 글로 써서 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글을 써서 보여주었는데, 모두가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 유격의 강화가 성사되겠는지, 어찌 될 것 같은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 답하면서 그 속내를 떠보았더니, 성사되지 않음을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온 왜승 두 명이 나왔는데, 흰 비단 장삼을 입고 금란 가사를 두른 채 의젓하게 나와 관청에 앉았습니다. 한 명은 본묘사(本妙寺)[13] 주지인 일진(一眞)이라고 하는데, 서화(書畫)를 대략 알아서 문답에 관한 일은 일괄 이 왜승들에게 맡겨 쓰게 하였습니다. 술이 한 순배 돌고 난 후 밤이 깊어지자 물러나 쉴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4일에 아침을 먹은 후 왜의 부장들이 모두 와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既而副將喜八, 自淸正處而來, 示沈遊擊講和條辭曰: “此成不成事, 細細答示可也.” 其條曰:
一, 與天子結緡事. 一, 割朝鮮屬日本事. 一, 如前交隣. 一, 王子一人入送日本永住事. 一, 朝鮮大官大臣入質日本事, 五件事也. 我等相議書答, 以此言答曰: “一, 與天子結婚事. 則昔漢帝以一室女與單于和親, 至于今千載, 以漢帝爲口實. 當此時, 聖天子以堯舜之德, 日月之明, 覆臨天下, 豈以其聖女結婚於萬萬里滄波外耶? 雖牧子柴童, 決知此事終不成也. 況劉督府, 天子庭耿介之士, 乃文乃武, 明知成敗之數, 運籌高明, 曉達不義之理. 豈不先知其事之成不成如何也?

얼마 있다가 부장 희팔이 가토 키요마사의 처소에서 나와서 심 유격의 강화조약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사될 수 있을지, 세세히 답하여 보여주십시오.” 그 조약은 하나, 천자와 결혼한다. 하나, 조선을 갈라 일본에게 귀속시킨다.

---

13) 본묘사(本妙寺): 구마모도시[熊本市]에 있는 일련종(日蓮宗)의 절이다. 1585년에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오오사카에 창건한 아버지의 보리사[菩提寺]를 이봉함에 따라 1600년에 이전하여 지은 것이다.

하나, 예전처럼 교린(交隣)한다. 하나, 왕자 한 명을 일본으로 호송하여 영원히 살게 한다. 하나, 조선의 대관 대신을 일본에 들여보내 인질로 삼는다.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상의한 끝에 답신을 작성하고, 이 조약에 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 천자와 결혼하는 건. 옛날 한나라 황제가 황실의 여인을 선우(單于)[14]에게 보내 화친한 일이 있는데,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나라 황제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성스러운 천자가 요순(堯舜)의 덕과 일월의 광명으로 천하에 군림하고 있었을 터인데, 어찌 성스러운 여인을 만리창파 바깥으로 시집보내야 했단 말입니까? 비록 목동이나 나무꾼이라도 이 일이 끝내 성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하물며 유 독부(劉督府)는 천자의 조정에서 일하는 강직한 선비로서, 문무를 겸하여 성패의 이치를 밝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명한 책략으로 불의가 무엇인지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이 일이 성사될지 성사되지 못할지를 미리 알지 못하겠습니까?

一, 割朝鮮屬日本事. 則四海之內, 莫非王土, 雖片地寸土, 皆爲聖天子掌握中物, 與奪在於聖心中自斷如何耳. 沈遊擊一人, 豈能使聖天子與奪哉? 大抵日本萬萬慮外, 動無名之師, 擅踏天子之域, 塗炭生靈, 至於此極. 天子不得已, 亦動應兵, 防禦三年, 猶自不已, 豈有割與之理哉? 萬萬無此事. 以此知遊擊.行長之策決不成也. 一, 如前交隣和合事. 則忘君父之讐, 結爲兄弟之交, 益不知其可也. 天地間寧有是理? 我等歸而告督府, 則在督府處置如何耳. 一, 王子送日本永住事. 則萬萬尤不可. 日本無故動衆, 踐殺我生民, 塗炭我宗社, 陷沒我倫紀, 傾蕩我室廬.

하나, 조선을 갈라 일본에게 귀속시키는 건. 사해의 안 그 어디고 왕의 땅 아닌 곳이 없으며, 한 뼘의 땅과 한 마디의 영토라 해도 모두 성스러운 천자 손 안의 물건이므로 주건 빼앗건 모두 성심이 어찌 결단 내리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심 유격 한 사람이 어찌

14) 선우(單于): 흉노족의 왕을 칭하는 말이다.

천자로 하여금 주거나 빼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천만 뜻밖에도 이름도 없는 군사를 동원하여 천자의 땅을 맘대로 짓밟고 생령들을 도탄에 빠지게 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천자께서도 부득이하게 응전할 병사들을 동원하여 3년이나 방어하시고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으니, 땅을 갈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방책이 성사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예전처럼 교린하며 화해하는 건. 이는 군부의 원수를 잊고 형제의 사귐을 맺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더욱 불가합니다. 천지간에 이런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들이 돌아가 독부에 고하면 독부에서 어찌 처치하실 지에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하나, 왕자를 일본에 호송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건. 이는 절대로 특히나 불가한 사안입니다. 일본이 까닭도 없이 백성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생민들을 짓밟아 죽이고, 우리 종사를 도탄에 빠지게 했으며, 우리의 윤리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온통 뒤흔들어 쓸어버렸습니다.

爲臣爲子之心, 則雖輸我民百萬, 奪彼命一二, 以酬無窮之讐, 難洗生靈之冤. 以此英雄之淚, 雖飯食間不乾, 而奚暇送王子於鯨海之外, 永住於異國也哉? 雖如我僧一松雲, 亦萬死甘心, 而行長.遊擊送王子之議, 則萬死不從矣. 況我聖天子以天下之主, 億兆之父, 庸與沈公等有如此劣劣事耶? 萬無此理. 以此知沈.行事之不成也. 劉督府以中原大臣, 本以禮樂中生成人物. 曾知此義皎如日月, 何待今日然後知也? 一, 朝鮮大官大臣入質于日本事. 則萬萬尤不可. 前日全盛時, 待以交隣, 而未聞此事. 今則忘其冤送大臣, 結爲兄弟, 吾未知其可也.

신하와 자식 된 마음인즉 우리 백성 백만 명을 저들에게 들여보내 한두 명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무궁한 원수를 갚는다 해도 생령들의 원한을 씻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웅의 눈물은 밥 먹는 사이에도 마를 겨를이 없는데, 어찌 왕자를 바다 밖으로 보내 이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송운(松雲)과 같은 중

이야 그 목숨이 만 번 죽어도 달갑지만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 유격의 왕자를 보내겠다는 논의인즉 만 번 죽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성스러운 천자께서 천하의 주인이시며 억조창생의 아버지이시니, 어찌 심 공(沈公) 등과 더불어 이토록 졸렬한 일을 벌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이로써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이 성사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 독부는 중원의 대신으로 본디 예악(禮樂) 가운데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작부터 이러한 뜻을 일월과 같이 훤히 알고 있었을 터, 어찌 오늘에서야 알았겠습니까? 하나, 조선의 대관과 대신을 일본에 인질로 보내는 건. 이 또한 결단코 특히나 불가한 사안입니다. 지난 날 나라가 온전하고 번성하여 교린으로서 대해 주었을 때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통함을 잊고서 대신을 보내 형제의 의를 맺는다니,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然而此等事, 皆在於劉督府啓稟聖天子, 然後處之如何矣. 如右五件事, 皆不合大義. 決知行長.沈公之事不成也, 非惟我等所知如此也, 劉督府亦知此義夙矣. 當此時, 大上官與劉督府論議和諧事, 則此必成事之秋也. 幸斯善處之裁度之." 一喜八以淸正之意書示曰: "沈公.行長之議不成, 則日本之兵, 更爲渡海, 直向大明之國也. 當此時, 朝鮮之民, 一時餓死無餘矣, 當如之何也?" 答曰: "我朝鮮受命於天子, 而死於禮義之國也. 當初日本萬萬慮外, 動無名之師, 我國不及應兵, 以至於踐殺驅擄也. 今則聖天子運中國糧餉, 連續接濟, 發南兵五十萬, 與我國憤義之士, 健擬掃氛. 而況甘心百死而不從沈·行之策也耶."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유 독부가 성스런 천자께 품고한 연후에 처결이 날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일은 모두 대의에 부합하지 않으니,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 공의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비단 우리들만 그러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 독부 역시 예전부터 이러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상관(大上官: 加藤淸正)께서 유 독부와 화해에 관한 일을 논의하신다면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잘 처리하시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희팔이 가토 키요마사의 뜻을 글로 적어 보여주었다. “심 공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논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일본의 병사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 곧장 대명국으로 향할 것이다. 이때에 조선의 백성들은 삽시간에 남김없이 굶어죽을 터인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천자에게 명을 받아 예의를 위해 죽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당초 일본이 천만 뜻밖에 이름도 없는 군사들을 동원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미처 대응할 병사가 없어 짓밟히고 죽임 당하고 쫓기고 사로잡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스런 천자께서 중국의 식량을 운송하여 끊임없이 구제해주고 있으며, 남쪽에 있던 병사 50만을 파견하여 우리의 의분에 가득한 선비들과 더불어 굳세게 나쁜 기운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꺼이 백 번을 죽더라도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책략을 따르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是日送酒四桶曰: “欲與親酌慰接, 而事涉煩弊, 未果耳.” 明十五日, 淸正使喜八來問曰: “我在永安時, 王子君大人黃護軍每稱曰, 江原金剛山有貴僧云, 而今大師必其人也. 委來見我幸甚.” 因以狀紙一卷, 扇子十二柄送來曰: “願受書迹.” 卽以曰“正其誼, 不謀其利”, 曰“明有日月, 幽有鬼神”, 曰“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等語書給. 則自此而後, 群倭聞奇, 持扇受書者, 不知其數. 日午引入于淸正處, 則淸正令別設金屛引坐. 我與李謙受隨問隨答, 皆以沈遊擊.平行長講和成不成等事也.

이날 술 네 통을 보내오며 “친히 더불어 술을 마시며 만나 위로하고 싶지만, 번거로운 폐단이 따르는지라 그리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15일, 청정이 희팔 편에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영안(永安)[15]에 있을 때, 왕자군과 대인 황 호군(黃護軍)께서 매번 강원도 금강산에 귀한 승려가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대사께서

15) 영안(永安): 교토(京都)의 옛 이름이다.

분명 그 사람인 듯하오.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니 큰 행운이오." 그리고는 종이 한 두루미와 부채 12자루를 보내오며, "글씨 얻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그 의를 바르게 할 뿐,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16] "밝은 곳에 일월이 있고, 어두운 곳엔 귀신이 있다." "만약 나의 것이 아니라면 털끝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다." 등의 글귀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 후 여러 왜인들 사이에 기이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부채를 가지고 와 글씨를 받아간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정오에 가토 키요마사의 처소에 들어가니, 가토 키요마사는 황금 병풍 친 자리를 따로 마련하여 데리고 가 앉혔습니다. 저와 이겸수는 가토 키요마사와 질문 대답을 주고받았는데, 모두가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강화가 성사될 것인가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而時又使喜八書給一片紙, 蓋以昨日所答沈.行等講和事反覆書示, 乃以要探我等之意也. 其言曰: "一來書披見之, 何無曆然之議于使? 雖有尋覓口上亦難辨. 然奉沈遊擊箇條以目案使然使答處之事. 一至大明固結婚事. 漢帝令單于結婚, 至于今爲口實之議不得意. 日本皇帝忝人武天皇後胤帝位和漢焉疲疲. 一割朝鮮四介道, 日本可所知事, 非分之由有之. 是又八介道悉可歸掌握事, 有誰妨乎? 一進貢辭退, 是則非法之儀也. 中絶之政可焉, 前代事何有非分乎? 一朝鮮王子一人在日本, 難澁澁事理不明也. 其故先於干戈之場擒, 雖及生害, 無爲奈者也.

때때로 희팔 편에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였는데, 어제 대답한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강화에 관한 일을 반복해서 적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의중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편지가 와서 열어 보았는데, 사신의 논의가 어찌 분명치 않은가? 입에서 나온 말에서 그 뜻을 찾아보아도 분별하기 어려웠다. 심 유격이 제시한 조목을 사신에게 보여 사신이 대답한 것에 관해

16) 그 의를……않는다: 『한서(漢書)』「동중서전(董仲舒傳)」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야기해 보겠다. 하나, 대명과 결혼하는 건. 한나라 황제가 선우와 결혼시킨 일이 아직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른다고 했으나, 이는 부득이하다. 일본 황제는 무천황(武天皇)[17]의 후예로서, 제위에 올랐으니 한나라와는 다르다. 하나, 조선의 네 개 도(道)를 갈라가지는 건. 이는 일본이 관리할 수 있는 일이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가지고자 함이 아니다. 다시 여덟 개 도를 모두 가지고 와 장악한다한들 누가 방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 진공을 물리는 건. 이는 불법한 행동이다. 중간에 그만 둘 수는 있지만 전대부터 있었던 일이 어찌하여 분수에 맞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에 두는 건. 이 일은 난삽하고 사리가 불분명하다. 그러니 먼저 전쟁터에서 사로잡는다면, 비록 자살을 한다 하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一朝鮮耆老各入質在日本, 是又不肯事理屈也. 王子在日本, 則隨君臣也, 何可辭讓乎? 一遊擊議不成, 則日本兵渡海侵大明事, 十日在何處乎? 然則可塞涓涓遠慮專可乎? 一書中無判形之尤, 是則不勘乎? 和諧議定似莫稜乎? 及決斷量抑於斷形乎哉? 遠慮在斯者乎?”云. 此醜奴輩不解文脈, 其所示書辭, 無頭無尾, 醜澁無理, 語脈不通, 使人不得通曉. 然而价于通事而問之, 仍觀語勢, 則皆以前所答五件事, 逆詰而畏之耳, 別無他意也. 我等答曰: “此等事, 已盡前書, 更無他言. 歸告督府而後通示矣, 亦採之.” 淸正又書示曰: “督府緣何移陣于全羅道耶?” 答曰: “天兵數十萬, 多住于全羅沿海各官, 故督府欲爲調兵, 而南原在道路之中, 玆移營陣, 兼領全羅.慶尙二道兵耳.”

하나, 조선의 늙은 대신을 각각 일본에 인질로 두는 건. 이 또한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니다. 왕자가 일본에 있다면 군신을 따라야 하는 법, 어찌 마다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 유격의 논의가 성사되지 않

17) 무천황(武天皇): 일본의 제1대 천황. 이름은 신일본반여언존(神日本磐余彦尊, かんやまといわれびこのみこと)이다. 일향(日向, ひゅうが)에서 뇌호내해(瀨戶內海, せとないかい)를 거쳐 대화(大和, やまと)로 들어가 기원전 660년에 즉위하였다.

는다면 일본 병사들은 바다를 건너 대명을 침략한다는 건. 열흘 동안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원대한 도모를 전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가? 하나, 편지에 확연이 드러나 보이는 내용이 없는 건. 이는 조사하지 않아서인가? 화해 논의가 아직 모호해서인가[18]? 형편을 판단해 결단을 보류하고 있어서인가? 원대한 사려가 있어서인가?" 이 추악한 왜노들이 문맥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보내온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도 뒤죽박죽 누추하고 난삽하고 이치라곤 없었으며, 문맥이 통하지 않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통역사를 통해 물어보고 또 어투를 관찰해 본즉, 모두가 일전에 답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역으로 힐문함으로써 두렵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을 뿐, 다른 뜻이라곤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관한 일은 이미 지난 번 편지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 독부에게 고한 후에 통보해 드리겠으니, 그때 결정하십시오." 가토 키요마사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독부는 무슨 까닭으로 진영을 전라도로 옮겼는가?" 답했습니다. "천병(天兵) 수십만이 대부분 전라도 연해 지역 각 관부에 살고 있어서 독부께서 병사를 이동한 것입니다. 마침 남원은 길 중간에 있으므로 진영을 그리로 옮겨 전라도와 경상도의 병사들을 한꺼번에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又書示曰: "督府時年幾歲?" 答曰: "時年三十三矣." 又書示曰: "平安、永安、忠淸、京畿四道, 則天將何人領兵耶?" 答曰: "宋經略. 經略.李提督曾已回兵, 而顧侍郎統率諸將兵三十餘萬, 已到平安道, 兼領四道兵耳." 又令通事傳言曰: "朝鮮之事無大小, 擧皆委諸大明, 而答不以實. 又王子君修答事, 亦推諸大明, 迄未送來, 何無信至斯耶?" 問曰: "大上官與王子君臨別, 有何約束, 又何定盟也?" 曰: "否也. 別無約束. 又無定盟. 但與之同住久矣. 臨分約與相好, 而至于今無一字相問. 人

18) 모호해서인가?: 원문의 '막릉(莫稜)'은 '모릉(模稜)'의 오류이다. 태도가 애매하거나 견해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왜군의 편지가 이처럼 표현이 분명치 않아서 사명대사는 아래에서 "문맥이 통하지 않아서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情固若是乎?”

또 글을 보내왔습니다. “독부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답했습니다. “올해로 서른셋입니다.” 또 글을 보내왔습니다. “평안도、영안도[19]、충청도、경기도에서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장(天將)은 누구인가?” 답했습니다. “송 경략이다. 송 경략과 이 제독은 일찍이 병사를 돌려 돌아갔고, 고 시랑(顧侍郎)[20]이 장병 30만 명을 통솔하고서 이미 평안도에 도착해 네 개 도의 병사까지 겸하여 통솔하고 있습니다.” 다시 통역사 편에 말을 전해왔습니다. “조선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두 대명에 위탁하는 형편인데 사실대로 답하지 않고 있으며, 또 왕자군이 답장 보내는 일 역시도 대명에 미루고 있다. 아직까지 답장을 보내오지 않고 있으니, 신의 없기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대상관께서는 왕자군과 이별할 적에 무슨 약속이라도 하셨습니까? 또 무슨 맹서라도 하셨습니까?” 말했습니다. “없다. 다른 약속도, 맹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지낸 지 오래인지라 헤어질 적에 서로 잘 지내자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한 글자 소식조차 없으니, 인정이란 것이 본디 이런 것이더냐?”

答曰: “何以云無信耶? 王子君入大明早晩還來, 送答書何難之有哉? 又我國則大明屬國, 事事委諸大明, 不亦宜乎?” 又書示曰: “督府心腹, 君等必詳知, 而堅諱不布, 爲君等有咎.” 答書示曰: “督府包含德容, 不露情抱. 我等何以知其心事? 而但每每我等言曰, ‘西生陣將淸正, 世守地方官後裔, 加以豪傑人也. 如何見麾於關白庸人之下, 苦住於異國, 至於此極?’ 常爲上官慨嘆而已.” 淸正微笑不答. 我等書示曰: “我國以關白爲日本國王, 而以上官爲臣, 今送此國云. 然耶?” 答書示曰: “我非關白之臣, 乃國王之臣. 關白, 亞人. 今以武藝住西國也.”

---

19) 영안도: 조선 시대 때 함경도를 이르던 말이다. 영길도(永吉道)를 고친 것이다.

20) 고 시랑(顧侍郎): 고양겸(顧養謙: 1537~1604)이다. 호는 충암(冲菴)이고 직례(直隷) 양주부(楊州府) 통주(通州) 사람이다. 1593년 11월에 송응창을 대신하여 경략이 되어 조선 정부에 일본과의 화의를 강요하였다.

제가 답했습니다. “어찌 신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왕자군께서 대명에 들어가셨으나 조만간 돌아오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답장 보내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대명의 속국이니, 사사건건 대명에 위임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글을 보내왔습니다. “독부의 심복이 누구인지 그대들은 필시 상세히 알 터이거늘, 한사코 꺼리며 발설하지 않으니, 그대들에게도 허물이 있노라.” 답변을 적어 보냈습니다. “독부께서는 덕성스런 모습을 간직하신 채 속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심사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들에게, ‘서생포(西生浦)에 진을 치고 있는 장수 가토 키요마사는 대대로 지방관을 지낸 집안의 후예로서 호걸스러운 인물이거늘, 어찌하여 관백과 같은 용렬한 자의 아래에 귀속되어 고생스럽게 이국에서 살면서 이처럼 지극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상관을 위해 늘 탄식하셨습니다.” 가토 키요마사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백을 일본국의 왕이라 여기고, 상관을 신하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로 파견된 것이라고들 하는데, 정말로 그러합니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관백의 신하가 아니라 국왕의 신하이다. 관백은 국왕 다음 권력자이다. 지금 무예로써 서국(西國)[21]에 머물 뿐이다.”

淸正問曰: “王子君執拘是我, 放送亦我, 而一未送信音, 大無信也.” 答曰: “王子放送之功, 在於上官事. 則督府獨知, 而大明及朝鮮, 皆不知上官之功也. 何以然耶? 平行長與我國耀功曰, ‘王子君則我令淸正放送, 而非我則難放也.’云, 故我國不知上官之功, 而督府獨知上官之功也.” 淸正微笑曰: “王子君在我手. 行長又何言? 行長只令沈遊擊諧往耳.” 我等又曰: “上官欲知督府心腹, 而上官心腹曾不吐露. 願聽心中

21) 서국(西國):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은 차례로 사이고쿠(西國).큐슈(九州).칸도(關東)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마침내 태합(太閤)의 호칭까지 얻었다.

所爲, 歸告督府耳." 淸正笑曰: "我心腹與沈.行異也. 沈.行事若不成, 則君亦入來, 我亦送人, 與督府相通, 則一朝可決, 何有久乎?" 俄而淸正曰: "與君已爲親切, 無贈信之物, 我有紙卷扇柄聊表耳."

가토 키요마사가 물었습니다. "왕자군을 잡아 가둔 것도 나이고 보내준 것도 나인데, 한 마디 소식조차 보내오지 않으니 참으로 신의가 없다." 제가 답했습니다. "왕자를 돌려보낸 공이 상관에게 있다는 것은 오직 독부만이 알고 있을 뿐, 대명이나 조선에서는 그것이 상관의 공임을 알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며, '왕자군은 내가 가토 키요마사에게 명령해 돌려보내게 하였다. 내가 아니었으면 풀어주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떠벌렸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의 공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독부만이 상관의 공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토 키요마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자군이 내 손에 있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저 심 유격과 함께 가게 했을 뿐이다." 우리들이 또 말했습니다. "상관께서는 독부의 심복을 알고 싶어 하시면서 상관의 심복이 누구인지는 한 번도 털어놓으신 적 없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듣기를 원하나니, 그리하면 돌아가 독부께 고하겠습니다." 가토 키요마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심복은 심 유격이나 고니시 유키나가와 다르다.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이 만약 성사되지 않으면, 그대가 이리로 들어오라. 나도 사람을 내보내 독부와 소통하겠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일이 결판날 것이니, 오래 끌 일 없을 것이다." 잠시 후 청정이 말했습니다. "그대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신표로 줄 만한 물건이 없구나. 내게 종이 두루마리와 부채가 있어 일단 이것으로 신의를 표하노라."

因出白紙十卷, 扇子十柄與我曰: "遠在異國, 別無寶物, 勿以爲薄." 我等欲拒不受, 而方議和事, 彼不信我, 故強持而退. 是日疑我輩率射牌等, 令隱後路, 故潛出軍兵千餘數, 距陣三十里許山野, 皆以搜探而來.

蓋前日李謙受往還卽時, 射牌等隱於公須串北山, 斬倭四級而來故然耳. 明十六日朝飯, 喜八及倭僧一眞, 持酒與肴, 率鳥銃軍五十餘名, 護送于公須串前樹陰下, 設餞題詩, 共爲和答, 慇懃慰禮, 以期後會而送. 淸正亦送紙十餘張, 受書迹而歸. 臨別, 淸正送使曰: "沈.行約束事成不成等奇, 連續相通, 使不阻音, 極斯幸甚幸甚!"云. 答曰: "一如所示也."云. 惟政爲右道僧將, 久在宜寧賊中, 必有詗知其名者, 故變惟政爲松雲.

그러더니 백지 두루마리 10개와 부채 10자루를 꺼내 제게 주며 "멀리 이국에 있어서 별다른 보물이 없으니, 박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거절하며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바야흐로 화해를 논의하는 마당에 저들이 우리를 믿지 않을까 봐서 억지로 받아 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이 날 우리들이 사패(射牌)[22] 등을 데리고 왔을까 의심하여 퇴로를 감추라 명령하고, 몰래 병사 1천여 명을 진영에서 30여 리 떨어진 곳으로 내보내, 모두 탐색을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일전에 이겸수가 적진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 사패 등이 공수곶 북산에 숨어 있다가 왜군 네 명의 목을 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16일에 아침을 먹고 나니, 희팔 및 왜승 일진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조총군 50여 명을 인솔하여 찾아왔는데, 우리를 공수곶 앞 나무그늘 아래까지 호송한 다음, 전별연을 열고 시를 지어 서로 창화(唱和)하였습니다. 은근한 정을 표하며 예를 다해 위로한 뒤, 후일을 기약하며 우리를 전송했습니다. 가토 키요마사 또한 종이 10여 장을 보내와 저의 글씨를 받아갔습니다. 이별할 적에 가토 키요마사가 사신 편에 말했습니다. "심 유격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약속이 성사되는지 등에 관한 기별을 계속 서로 전함으로써 소식이 끊이지 않게 해준다면, 참으로 큰 행운이겠습니다!" 답하기를, "모두 보내주신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정은 우도의 승장(僧將)으로 의령의 적중에 오래 머물렀기에 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는 자가 있을 것이므로 유정을 송운(松雲)이라고 바꾸었다.

---

22) 사패(賜牌): 궁수(弓手)로 조직된 부대를 말한다.

# 15. 비변사(備邊司) 계본
## (備邊司 啓本)

備邊司郎廳, 以領相意啓曰: “練兵事, 日前已啓下. 但軍政之修, 有大綱領大節目, 大綱不擧, 節目雖備無益. 臣請得而推言之. 祖宗之制, 八道各官皆有鎭邑, 謂之兵馬節制使. 立法本意, 實非徒然, 欲其平時則鎭邑爲主鎭, 而檢飭其屬邑, 一應操兵訓練軍伍之事, 幷可治之, 有事則主鎭又各率其所屬之軍, 鱗次整齊. 以聽主將約束, 其勢如身之使臂, 臂之使指, 操縱伸縮, 惟將之爲.

비변사 낭청(郎廳)[1]에서 영상(領相)[2]의 뜻으로써 장계를 올립니다.
“병사 훈련에 관한 일은 일전에 이미 재가(裁可)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가다듬는 일에는 커다란 강령과 커다란 절목이 있어, 커다란 강령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목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합니다. 청컨대 신이 이 일을 미루어 말씀드려 보겠나이다. 조종의 제도에는 팔도의 각 관부 아래에 모두 진읍(鎭邑)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을 다스리는 자를] 일러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3]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을 만든 본래 뜻인즉 공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진읍을 주요 진(鎭)으로 삼아 속읍(屬邑)을 바로잡음으로써 조병(操兵)、훈련、군오(軍伍)의 일을 일괄 아울러 다

---

1) 낭청(郎廳):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濬川司)·오군영 등에서 실무를 담당한 종6품 관직이다. 본래 낭관(郎官)과 같은 뜻으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지칭했으나,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되어 12인의 낭청을 두면서부터 관직명의 하나로 쓰였다.
2) 영상(領相): 당시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을 가리킨다. 유성룡은 1592년 10월부터 1598년 10월까지 왜란의 대부분 기간에 영의정으로 재직하였다. 이 자료는 유성룡이 진관체제를 복구할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서 『선조실록』27년 3월 29일자에 요약하여 실려 있다.
3)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조선시대 각 읍(邑)의 수령이 겸임하던 정삼품의 무관직(武官職)이다.

스리게 하고, 유사시에는 주요 진이 각각 소속된 군사를 통솔해서 질서 있게 다스림으로써 주장(主將)의 단속을 따르게 하고자 해서이니, 그 형세인즉 마치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듯, 조종하고 굽혔다 펴는 것은 오직 장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且一鎭管之軍, 雖或奔潰, 而他鎭管之軍, 各以大兵, 次第堅守, 或扼之前, 或攝其後, 或撓其左右, 賊雖乘勝, 不敢容易銜突, 其勢然也. 姑以慶尙道論之, 則東萊鎭所屬十餘邑之軍, 勿論公私賤雜類, 盡發爲兵, 則其數將至於七八萬. 假使不幸而敗, 又有大丘鎭管之軍, 居中遮截, 而慶州晉州之軍, 爲左右翼, 可以禦賊. 不幸而大丘鎭之軍又不利, 尙州鎭管, 又以重兵堅守, 而忠淸道忠州鎭, 盡率屬邑, 把截鳥嶺爲其繼. 淸州鎭又率所屬之軍, 進守黃澗、永同、秋風之問, 以爲羽翼. 以及京畿等邑, 一皆嚴兵整待, 國家形勢如重門複墻, 雖透得一重, 又有一重, 何至於一旬之間, 橫行千里, 經造都城, 而若蹈無人之地乎? 夫以祖宗經遠之圖, 其詳如此. 而中世以後, 良法美意, 一切廢墜, 士大夫只以琱琢文筆. 粉飾虛談爲務, 其於經世之慮, 一不加意. 不獨此也. 又有輕慮淺謀之人, 自任己意. 盡毁祖宗之制, 而做出新規, 名之曰制勝方略. 其初見乙卯倭變, 爲此一時救急之策, 不知此纔可以應小小之賊, 非所以制禦大敵之術. 其後兩南監兵使, 人人各持所見, 而奮其管窺, 杜撰添加, 渾稱之曰制勝方略. 於是擧世宗之, 如孫、吳兵法. 一切通行. 國事之所以至此者, 雖他事之失甚多, 而大槪制勝方略誤之也.

또한 한 진관(鎭管)[4]의 군사가 비록 달아나 무너지더라도 다른 진관

4) 진관(鎭管): 조선전기에 시행된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의 지방 군사 통솔체제를 말한다. 조선 초기 1457년(세조 2) 중앙에 오위(五衛) 체제를 정비하면서 지방 군사조직으로 진관 체제를 정비하였다. 진관 체제는 세조 이전에 있었던 군익도(軍翼道) 체제를 개편하여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관할하는 주진 아래에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관할하는 몇 개의 거진을 두고, 그 밑에 절제도위(節制都尉)·만호(萬戶) 등이 관할하는 여러 진을 두어 유기적인 방어 체제를 이루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각 도에 여러 개의 진관 조직을 갖추어 도내의 군사들을 가까운 진관에 분속시킨 다음 유사시에 각 진관의 군사책임자, 즉 당

의 군사가 각각 대군을 거느리고 차례대로 굳게 지키면서 혹 그 앞을 막기도 하고, 혹 뒤를 치기도 하며, 혹 그 좌우를 어지럽히기도 하면, 적이 비록 승세를 타고 있더라도 감히 쉬이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형세가 그리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경상도를 놓고 논해 보자면, 동래진에 소속된 10여 개 읍의 군대의 경우, 공사(公私)에 속한 부류이건, 천잡(賤雜)에 속한 부류이건 따지지 말고 모두 동원하여 병사로 삼는다면 그 수가 7~8만에 이릅니다. 설혹 불행히 패했다 하더라도 대구 진관에 있는 군사가 중간에서 막고, 경주와 진주에 있는 군사가 좌우의 날개가 되어 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 대구의 군사가 또 불리해졌다 하더라도 상주의 진관이 많은 병사들로 굳게 지키고, 충청도 충주 진관이 속읍의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서 새재[鳥嶺]를 지키면서 뒤를 지원해 주며, 청주 진관이 예하 군사를 거느리고서 황간[5]、영동、추풍령 사이로 나아가 우익(羽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등의 고을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군사를 엄히 다스리면서 질서정연하게 응대한다면, 나라의 형세는 마치 문과 담장을 겹겹이 설치한 듯 될 터, 비록 한 겹이 뚫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 겹이 있으니, 어떻게 열흘 사이에 천 리를 횡행하여 도성에 곧바로 이르러, 아무도 없는 땅을 짓밟는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조종께서 먼 앞날까지 경영한 밑그림이 이처럼 상세합니다. 그런데 중세(中世) 이후에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 모두 폐지되고 땅에 떨어져서, 사대부는 그저 문장을 조탁하고 헛된 말 꾸미는 것에만 힘쓸 뿐, 경세(經世)에 대한 생각에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가볍고 지모 또한 얕은 자신의 생각을 자부하면서 조종의 제도를 다 허물고 새로운 규정을 만든 다음 이를 『제승방략(制勝方略)』[6]이라고 이름 했습니다. 『제승방략』은 을묘왜변(乙

---

해 지역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방어책임을 맡게 하는 자전자수(自戰自守)의 체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의 군사가 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인접 지역에서 대적견수(對敵堅守)케 하여 그 책임 구역을 방어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방어체제이다.

5) 황간: 충청북도 영동 지역의 옛 지명이다.

6) 『제승방략(制勝方略)』: 2권 1책으로 된 『제승방략』은 1588년 3월 당시 함

卯倭變)[7] 때에 처음 나왔는데, 다들 한 때의 위급함을 구제할 만한 계책이라 여기면서, 이것은 겨우 하찮은 적을 응대하는 데만 적합할 뿐, 대적을 방어할 만한 술책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영남과 호남의 감사와 병사(兵使)들이 저마다 소견을 고집하고 좁은 식견을 거침없이 펼치면서 멋대로 지어내거나 첨가한 뒤에, 이를 뭉뚱그려 '제승방략'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에 온 세상이 이를 종주로 받들며, 마치 손자(孫子)와 오자(吳子)의 병법(兵法)[8]인 양 여기면서 모든 곳에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물론 다른 면의 실수 또한 심히 많겠지만, 대개는 『제승방략』으로 인해 그르친 것입니다.

臣請言其古制勝方略大要. 以一道之軍, 預爲分屬於巡邊使、防禦使、助防將、兵水使, 纔聞賊報, 不察賊衆多寡, 賊情如何, 地勢險夷, 一例徵發, 皆聚境上. 故巡邊使所屬之軍, 則屯於一處, 以待巡邊使, 兵使雖欲用之而不得. 防禦所屬之軍, 則屯於一處, 以待防禦使, 水使雖欲用

---

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있었던 이일(李鎰)이 처음으로 찬집하고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1670년 10월에 함경북도병마평사 이선(李選)이 중간한 서책이다. 제승방략이란 1555년 일어난 을묘왜변을 전후로 해서 임진전쟁에 이르는 약 50년간 조선 전기 이래 시행되어 온 진관체제의 변형으로 나타난 독특한 방위체제를 가리킨다. 권1의 머리에서 권2의 중반에 걸쳐 열 진방어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6진 소속의 여러 진보를 두만강 하류, 즉 경흥의 서수라부터 시작하여 소개하고, 다음에 부령.종성.명천.길주 소속의 진보에 이르는 합계 44진보에 대해 차례로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각 진보의 형세, 위치, 성곽, 우물, 수호병, 무기, 추.요격처, 봉수 등이 기술되어 있다.

7) 을묘왜변(乙卯倭變): 명종(明宗) 10년(1555)에 왜구가 침입한 사건을 말한다. 삼포왜란(三浦倭亂) 이래로 일본에 대한 세견선(歲遣船)의 감소에 고난을 받아 온 왜구들은 이 해 5월 배 6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에 침입하여 사태가 매우 긴박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준경(李浚慶) 등을 방어사로 삼아 이를 토벌하여 그들을 격퇴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비변사를 상설 기관으로 삼았다.

8) 손자(孫子)와……병법(兵法): 손자는 『손자병법』의 저자로 알려진 손무(孫武)를 가리킨다. 지금 전해지는 본은 조조가 원본을 요약하고 해석을 붙인 『위무주손자(魏武註孫子)』 13편이다. 오자(吳子)는 오기(吳起)를 가리킨다. 그가 남긴 『오자병법』 역시 『손자』와 나란히 평가받는다.

之而不得. 其他助防將.兵水使所屬之軍, 無不如此. 故每一調發, 一道俱動, 無復恃力. 而慶尙道則自聞慶以南, 郡邑無一人矣. 旣而朝廷遣將於千里之外, 不能朝聞夕至, 而無將之軍, 處處屯聚, 無約束, 無紀律, 無號令, 紛紜暴露於原野之中. 一日二日, 大將不至, 以至於三四日之久, 而賊鋒已迫. 飢渴繼至. 則鳥驚獸駭. 相率而潰散, 土崩瓦解. 不可收拾, 然後所謂京將帥等, 單騎馳下. 已散之卒, 藏匿山谷, 其誰招集? 而賊之先驅, 已至於數十里內, 不敗何待? 方壬辰四月十七日, 邊報至京, 朝廷遣李鎰. 鎰到聞慶而聞慶已空, 到尙州而尙州已空. 散卒之來集者僅數百, 部伍未分之間, 賊已渡洛東, 距尙州十里地矣. 此事臣於賊變前, 區區之見, 偶及於此. 備邊司啓辭中屢及之, 而外臣有難之者, 事竟不行. 未知天意記憶與否, 而臣心則至今有遺恨焉. 夫懲前所以毖後, 鑑古所以圖今.

신이 청컨대 옛 제도인『제승방략』의 큰 요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개 도(道)의 군사에 관한 일을 미리 순변사(巡邊使)、방어사(防禦使)[9]、조방장(助防將)[10]、병사(兵使)、수사(水使)에게 나누어 맡기고, 적이 온다는 보고만 들리면 적의 수효가 많은지 적은지, 적의 실정이 어떠한지, 지세가 험한지 평탄한지도 살피지 않고 일괄 동원하여 그 경내에 소집시킵니다. 순변사에 소속된 군사는 한곳에 모여 순변사만을 기다리니, 병사가 비록 쓰고자 해도 쓸 수 없습니다. 방어사에 소속된 군사는 또 한곳에 모여 방어사만을 기다리니, 수사가 비록 부리고자 해도 부릴 수 없습니다. 기타 조방장과 병사 및 수사에 소속된 군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동원할 때마다 한 도의 인원이 모조리 움직이는지라 더는 뒤를 받쳐줄 여력이 없으며, 경상도의 경우 문경 이남으로는 군읍마다 사람 하나 남아 있지 않습

9) 방어사(防禦使): 각도에 배속되어 요지(要地)를 지키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2품의 벼슬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다음의 직위(職位)이다. 인조(仁祖) 때 경기도(1명)·전라도(1명)·강원도(1명)·함경도(1명)·평안도(2명)의 요충지에 두었는데 목사(牧使)나 부사(府使) 등이 겸임했다.

10) 조방장(助防將): 조선시대 때 제주 지역에서 주장(主將)을 도와 적의 침입을 방어한 종9품 관직이다.

니다. 조정에서는 천 리 밖으로 장수를 보냈으나 아침저녁으로 소식을 들을 수 없고, 장수 없는 군사들만 곳곳에 모인 채, 단속도 기율도 호령도 없이 벌판 한가운데서 어지러이 비바람을 맞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장수는 오지 않고, 이렇게 사나흘쯤 지나노라면 적의 칼날이 이미 코앞에 닥쳐옵니다. 이내 굶주림과 목마름이 이어지면, 새나 짐승이 놀라듯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무너지고 맙니다.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흩어지는 것처럼 수습할 길이 없게 된 연후에야, 이른바 서울의 장수라는 자들이 단기(單騎)로 달려옵니다. 이미 흩어진 군사는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데 그 누가 불러 모으겠으며, 적의 선발대가 이미 수십 리 안에 이르렀는데 어찌 패하지 않겠습니까? 임진년 4월 17일에 변방의 보고가 서울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이일(李鎰)[11]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일이 문경에 이르러보니 문경은 이미 비어 있었고, 상주에 이르러보니 상주도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흩어진 군사를 모은 것이 겨우 수백 명인데, 대오를 미처 나누기도 전에 적은 이미 낙동강을 건너 상주 10리 밖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신은 변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비루한 소견이나마 우연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변사의 계사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이를 힐난하는 지방관이 있어 끝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사오나, 신은 지금까지도 한이 남아 있습니다. 대개 지난 일을 징계하는 것은 훗날을 경계하기 위함이고, 옛일을 거울로 삼는 것은 지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11) 이일(李鎰: 1538~1601): 자는 중경(重卿).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경상도순변사로 상주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여 충주로 탈주했다. 충주에서 도순변사 신립의 휘하에 들어가 다시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여했으나, 다시 패하여 황해도·평안도로 피했다. 그 뒤 5월 17~18일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막하에서 임진강전투에 참여했다가 또 패했다. 7월 14일 왕세자 광해군의 분조(分朝)에서 시위하다가, 1593년 1월 6일 평안도병마절도사로 평양전투에 참가하여 평양을 탈환했다. 그 뒤 훈련도감이 설치되자 지중추부사·비변사당상·좌지사가 되어 군대를 훈련시켰으며, 우변포도대장이 되어 한성 치안유지에 힘썼다. 1594년 송유진(宋儒眞)의 난이 일어나자 순변사로서 난을 진압했다. 시호는 장양(壯襄)이다.

昔宋末元兵方熾, 而其時有汪立信者建議, 請以郡邑分爲四閫, 建帥其間, 而合力防守. 其後元伯顔聞其策嘆曰:'此策若用, 吾豈至此?'至於文天祥. 又建白此策於臨安已危之後, 時則已晩無及. 立信分閫之計, 卽我朝鎭管之法, 臣猥以庸才, 當此板蕩之際, 念及時事, 未嘗不泣血霑襟. 目見艱危之勢, 日甚一日, 已趨於不可有爲之地, 雖有善策, 固無所用. 然諉諸病甚而不爲下藥乎? 近日聖意赫然奮發, 復讐一念, 上通於天, 而敎訓軍士, 又其最所急務. 前者雖以事目, 略爲磨鍊啓下, 而臣更思之, 事無統緖, 則區區補綴, 終是無益. 惟當先責鎭管守令, 使董率其屬之邑, 檢飭練兵火砲器械等事. 如所屬之邑, 不能訓鍊, 所造器械, 不能精利, 則許令主鎭報監兵使治罪, 觀其屬邑能否, 有效多少, 竝其主鎭守令賞罰. 而朝廷時遣使臣, 歷閱試才, 又隨其能否, 而幷責監兵使, 期以時月之間, 各盡心力, 皆成訓鍊之兵. 萬一因此而天心悔禍, 人謀與能, 生靈庶或可保, 而國家亦不至於危亡矣. 今慶尙之鎭皆殘破, 只有安東稍完, 故已令於安東練兵. 忠淸道則忠州爲鎭, 居兩嶺之會, 上流之重, 其訓鍊之事, 最爲緊急. 非徒邑力不及, 守令亦不得, 屢遞屢改, 尙無措置之勢. 其他公州.淸州, 皆當隨力爲之. 而全羅道物, 又不比忠淸道, 處處皆可練兵, 特患人不爲耳. 昔范仲淹爲陝西, 與元昊對敵, 選精卒晝夜親自訓鍊, 得三千人. 今日之勢, 與仲淹之時又如何? 被兵三年, 尙無一人有意於練兵者, 其亦惑之甚者也. 臣意令各道稍修鎭管之法, 凡有闕差遣之時, 別擇其能堪其任者授之, 責其操練之事. 一道之內, 主鎭旣爲之, 則屬邑不敢不爲矣. 事貴提綱, 綱一擧而萬目自隨. 故臣於此一事, 敢備陳之. 如聖意允可, 則請下臣此說于各道監司, 一體施行. 其於禦敵之方, 必有利益, 敢啓."
答曰:"至哉言乎. 當依此施行."

옛날 송나라 말 원나라 병사의 기세가 등등했을 때, 왕입신(汪立信)[12]이란 사람이 건의하기를, 군읍을 4군영으로 나눈 다음 그 사이

12) 왕입신(汪立信: 1201~1275): 자(字)는 성보(誠甫)이다. 원나라 군사가 건강(建康: 지금의 南京)으로 진격해오자 재상 가사도(賈似道)는 그에게 병사를 모집하여 장강 유역의 여러 군읍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왕립

에 장수를 세워 힘을 합쳐 방어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원나라 백안(伯顔)[13]이 그의 계책을 듣고는 '이 계책을 만일 썼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문천상(文天祥)[14]의 경우도 이러한 계책을 임안(臨安)이 이미 위태로워진 뒤에 건의하였기에 이미 늦어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립신이 군영을 나누고자 했던 계책은 곧 우리나라의 진관법(鎭管法)과 같습니다. 신은 외람되이 용렬한 재주로써 이 어수선한 때를 당하여 생각이 시사에 미치면, 일찍이 피눈물을 흘리며 옷깃을 적시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목전의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이 날로 심해져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제 아무리 좋은 책략이 있다 하여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병세가 심하다는 이유로 포기한 채 치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성상께서 뜻을 떨치고 일어나시어 복수의 일념이 하늘에 닿아 있으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전에 항목을 대략 마련해 올려 하명을 받았으나, 신이 다시 생각해 보건대 일에 두서가 없으면 자질구레한 보완책으로는 끝내 보탬이 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직 주요 진의 수령에게 먼

---

신은 그 날로 건강으로 향했으나, 군사들은 이미 붕괴되고 가사도가 이끄는 군사도 패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그는 "내 오늘에서야 송나라 땅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며 목을 졸라 자결하였다. 『송사(宋史)』에 그의 전(傳)이 있다.

13) 백안(伯顔: 1236~1295). 몽고 팔린부(八鄰部) 사람으로 원나라 때 대장이다. 징기스칸을 도와 전쟁에서 공을 세워 팔린부 좌천호(左千户) 및 단사관(斷事官)에 봉해졌다. 후에 원 세조의 총애를 입어 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에 배수되고 후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승진되었다. 지원(至元) 11년(1274)에 남송을 공격해 멸망시키고, 제왕(諸王)들의 반란을 여러 차례 진압했다.

14) 문천상(文天祥: 1236~1283). 남송의 정치가로, 자는 이선(履善), 호는 문산(文山)이며 길주(吉州) 여릉(廬陵) 사람이다. 1259년 남송이 몽고군의 침입을 받으면서 수도를 옮기려하자 이를 반대, 결국 면직되고 말았다. 그러다 1275년에 의용군을 조직하여 원에 대항했다. 남송이 멸망하자 도종(度宗)의 장자 익왕(益王)을 받들고 잔병을 모아 싸우다가 원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원의 회유를 거부하고, 대도(大都)로 이송되어 약 3년간 갇혀 있는 동안 「정기가(正氣歌)」를 짓고 끝내 사형 당했다. 『송사(宋史)』에 전(傳)이 있다.

저 책임을 지워 예속된 고을을 감독, 통솔하게 하고, 연병.화포.무기 등에 관한 사항도 단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소속된 고을을 훈련시킬 수 없다거나, 제조한 무기가 정교하고 날카롭지 못하다면, 주요 진에서 감사와 병사에게 보고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허락하고, 예속된 고을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공효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 주요 진의 수령에게까지 함께 상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조정에서도 때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일이 검열하고 재주를 시험하며, 또 그 능력 여부에 따라 감사와 병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몇 개월 사이에 각각 마음과 힘을 다하여 훈련된 병사가 되도록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하늘이 재앙 내린 것을 참회하여 사람의 도모가 행해질 수 있다면, 백성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요, 나라 또한 위태로워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상도의 여러 진들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안동만은 대략 완전하기에, 안동에 명하여 군사를 훈련시키게 하였습니다. 충청도의 경우 충주가 진관인데, 조령과 죽령이 합쳐지는 상류 요지에 위치해 있어 훈련의 일이 가장 긴급합니다. 그러나 고을의 힘이 미치지 못할뿐더러, 수령될 사람도 얻지 못하여 거듭 교체를 반복하고 있는 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밖에 공주와 청주는 마땅히 힘 되는 대로 돕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도의 물력은 충청도에 비길 바가 아니어서 곳곳마다 군사를 훈련시킬 수 있으나, 다만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옛날 범중엄(范仲淹)[15]이 섬서(陝西)의 경략 안무부사(陝西經略按撫副使)가 되어서 서하(西夏)[16]의 원호(元昊)와 대적할 적에, 정예병을 뽑아 밤낮으로 친히 훈련시킨 결과 3천 명을 얻었습니

15) 범중엄(范仲淹: 989~1052): 북송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 문학가로 자는 희문(希文)이다. 세상에서는 그의 시호를 따 범문정공(范文正公)이라고 부른다. 북송 보원(寶元) 원년(1038)에 서하(西夏)의 원호가 칭제하여 국호를 대하국(大夏國)이라 정하였다. 이때에 범중엄은 섬서경략안무부사(陝西經略按撫副使)가 되어 서하 수비 일을 맡게 되었다.

16) 서하(西夏): 11세기에 건립되어 13세기 초까지 번영을 누린 티베트계 탕구트족의 왕국. 중국 북서부의 감숙성(甘肅省)과 섬서성(陝西省)에 위치했던 나라이다.

다. 오늘날의 형세가 범중엄의 때와 비교하여 또한 어떠합니까? 전란의 화를 입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한 사람도 군사 훈련에 뜻을 두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미혹함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각 도에 명하여 진관의 제도를 조금씩 정비하도록 하시고, 자리가 비어 사람을 파견해야 할 때에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가려 제수하심으로써 조련의 일을 책임지우소서. 한 도 안에서 주요 진이 그렇게 하면 속읍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강령인지라, 강령이 한 번 펼쳐지면 만 가지 절목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신이 이 한 가지 일을 감히 갖추어 진술하였사오니, 만일 성상께서 윤허하신다면 청컨대 신의 이 말을 각 도 감사에게 하달하여 일시에 시행토록 해 주옵소서. 이는 적을 막는 방도에 있어서도 분명 이익 되는 바가 있을 것이기에 감히 아뢰었나이다."

답이 내려왔다. "지극한 말이로다. 이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하라."

## 16. 충용장(忠勇將) 김덕령의 장계
## (忠勇將金德齡狀啓)

臣以四月初一日, 領所率軍, 自山陰過宜寧, 移陣于晉州東面大谷里. 大谷在咸安.固城兩間, 倭賊西犯之要衝. 臣所以結陣于此者, 欲爲久住之策, 一以遮截, 一以出戰計也. 臣起事已久, 勢多非便, 遷延時月, 尙無寸效. 仰念國恩, 萬死難逃爲白如乎. 第段天將主和禁約, 我國諸將勿令剿擊, 以此尤有拘礙, 事未如意, 悶慮無地爲白齊. 唯以當初撫軍司事目內, 各官案付軍士願入忠勇軍者, 本官以元額減除亦爲白有等, 追于事目內, 同志壯士乙良, 勿論已出身未出身, 無遺知委帶率亦爲白有臥等用良. 臣將此事目內辭緣, 募聚遠近精勇, 充定部伍爲白有如乎. 日者各陣諸將, 依有旨跟尋所屬之軍爲白臥乎在亦, 變生三年, 凡曰男丁者, 靡少靡壯, 皆有屬處, 頓無一人閑遊爲白在等. 今日起事, 必得閑丁而後爲軍, 則萬無模樣之理爲白在果. 伏覩軍情爲白乎矣, 皆曰棄其舊將, 募入此軍. 今若一一刷還, 則決難保存是如, 爭相危懼, 太半逃散. 目今留陣之軍, 亦將無幾爲白置. 臣之妄料, 必于刷還各陣爲白良置, 必不順歸, 反爲彼此兩失是如爲白沙餘良, 一切刷還爲白在如中. 臣是無軍之將, 更無措手之地. 不過爲一將之偏裨, 委身先登突擊之任爲白乎喩在果, 方此踰嶺之後, 軍聲纔振. 結陣未日, 旋卽散還, 使臨機大事, 竟作兒戲. 臣之進退, 極爲狼狽, 日夜惶恐, 伏俟罪戮爲白去乎. 同所率軍人乙, 各陣以刷還爲白乎喩, 已爲募屬之軍乙, 因帶防戍爲白乎喩. 朝廷以處置爲白只爲, 詮次以善達.
萬曆二十二年五月十一日.

신은 4월 초하루에 통솔하고 있던 군사를 이끌고 산음(山陰)[1]에서 의

1) 산음(山陰): 경상남도 산청 지역의 옛 이름이다.

령(宜寧)을 지나 진주(晉州) 동쪽 대곡리(大谷里)로 진영을 옮겼습니다. 대곡리는 함안과 고성 사이에 위치해 있어 왜적이 서쪽을 침범하고자 할 때의 요충지입니다. 신이 이곳에 진을 친 것은 오래 머물고자 하는 책략에서였으니, 한편으로는 왜적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아가 싸우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이 의병을 일으킨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시간만 지체하면서 한 치의 공로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우러러 나라의 은혜를 생각함에 만 번 죽어도 [그 죄로부터] 달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때 명나라 장수가 화친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여러 장수들에게 왜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구애되는 바가 더욱 많아지고, 일이 여의치 않아 근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당초 무군사(撫軍司)[2] 사목(事目)[3] 내 각 관청 문서에 기록된 군사들 중, 충용군(忠勇軍)에 넣기를 원하는 군사의 수를 본관에서는 원래보다 줄이고, 이어 사목에 있는 동지(同志)와 장사(壯士)들의 경우 출사(出仕) 여부를 막론하고 남김없이 데려갈 것임을 알렸습니다. 신은 이 사목에 적힌 내용에 따라 원근의 정예병을 모집하여 대오로 충원하고자 했습니다. 일전에 각 진영의 장수들이 교지에 따라 소속시킬 군사들을 수소문했으되, 변란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이른바 남정(男丁)이란 자들은 청년이건, 장년이건

---

2) 무군사(撫軍司): 임진전쟁이 일어난 이듬 해 분비변사(分備邊司)로 설치되었던 기관이다. 같은 12월 공주에서 무군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무군사는 명군(明軍)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명군이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일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반 조처를 왕세자를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조선 조정이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며 이를 미루어오다가 명나라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 결국 무군사를 설치했다. 처음 분비변사로 설치되었을 때는 왕세자를 중심으로 군사와 그에 관련된 재정 등을 관장하는 선에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군사는 군사는 물론 일선에서 행해지는 제반 행정을 모두 먼저 조처하고 뒤에 왕에게 보고하는 분조(分朝)로서 기능하였다. 1593년 12월 당시 좌의정 도체찰사 윤두수(尹斗壽), 좌찬성 정탁(鄭琢), 분호조판서 한준(韓準), 분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 좌윤 김우옹(金宇顒) 등이 무군사로 활약하면서, 무군사에서 처리하는 제반 업무는 날마다 기록해 무군사일기(撫軍司日記)로서 왕에게 보고되었다. 무군사의 여러 임무 가운데 모병과 군사 훈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3) 사목(事目): 조선시대 관청의 규칙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규칙을 일컫는 말이다.

모두 소속된 곳이 있어 한가롭게 떠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군사를 일으키려 하면서 반드시 한정(閑丁)[4]을 얻은 연후에 군대를 조직한다면 결코 모양새를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군대의 상황을 살펴보건대, 모두들 기존에 따르던 장군을 버리고 충용군에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저들을 일일이 소환한다면 저들을 유지하기도 매우 힘들뿐더러, 너도나도 두려워 태반은 달아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진영에 남아 있은 군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각 진영에서 군사를 소환한다 해도 틀림없이 순순히 귀순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리어 이로 인해 피차간에 모두 손해들 볼뿐더러, 모두 소환한다 하더라도 신은 군대도 없는 장수인지라 어찌 해 볼 여지도 없습니다. 신은 그저 한 장수의 비장(裨將)으로서 선봉에 서서 돌격대의 임무를 맡았을 뿐인데, 이 고개를 넘은 직후 비로소 군에서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을 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내 해산시켜 돌려보냄으로써 관건이 되는 대사에 임해 결국 어린아이 장난만 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는지라, 밤낮으로 황공함에 떨며 그저 엎드려 죽음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제가 인솔하고 있는 군사들을 각 진영으로 돌려보내도 좋을지, 이미 모집하여 소속이 생긴 군사들을 데리고 가 변경을 지켜도 좋을지, 조정에서 조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례대로 적어 전달합니다.

만력 22년(1594) 5월 11일

4) 한정(閑丁): 국역(國役)에 나가지 않는 장정을 말한다.

## 憫飢[1] 古風

## 굶주리는 이들을 가여워하다 고풍

| | |
|---|---|
| 왜노가 감히 난을 일으키니 | 倭奴敢稱亂, |
| 조선이 재앙을 입었네 | 稔此朝鮮殃. |
| 백성들은 분탕질에 괴로워하고 | 閭閻苦焚蕩, |
| 들판은 황폐한 지 오래라네 | 田野久蕪荒. |
| 억만 사람들을 차마 내몰아 | 忍驅億萬人, |
| 뜻밖의 칼날과 창을 맞게 하였네 | 橫罹鋒鏑傷. |
| 구덩이엔 시체 쌓이고 | 積屍溝壑內, |
| 갈림길 옆엔 머리 걸렸네 | 懸首路岐傍. |
| 남은 백성들 놀란 새처럼 흩어지고 | 遺黎驚鳥散, |
| 굶주림에 지게미조차 구하기 어렵네 | 饑餒艱糟糠. |
| 다급히 먹이 찾는 아이는 울며 | 嗷嗷待哺急, |
| 군사 행렬을 분주히 따라가지만 | 奔走隨兵行. |
| 군량도 겨우 자급할 판에 | 軍儲僅自給, |
| 남은 양식을 어디서 구하리 | 何得有餘糧. |
| 어지러이 뒤섞인 노인네와 아이들이 | 紛紛多老稚, |
| 군영[2] 옆에서 이리저리 나뒹굴고 | 顚仆柳營傍. |
| 아침저녁으로 수십 명이 | 日夕數十人, |
| 머리를 나란히 한 채 모두 죽어가네 | 駢首皆淪亡. |
| 순찰할 적 한 번씩 들어오는 보고에 | 徼巡時一報, |
|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네 | 涕泪欲霑裳. |
| 빨리 사람 백정을 불러 | 亟呼椎埋夫 |

1) 민기(憫饑): 정탁(鄭琢)이 지은 시로, 『약포집(藥圃集)』 속집(續集) 권1에 실려 있다.
2) 군영: 원문은 '유영(柳營)'이다. 한대(漢代) 주아부(周亞夫)가 산시(陝西)성의 세류(細柳) 땅에 군대를 주둔시킨 데서 연유한 말이다.

| | |
|---|---|
| 여우나 토끼가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하네[3] | 毋令狐兎傷. |
| 애달프도다! 저 숨넘어가는 사람들이 | 哀玆殘喘者, |
| 백방으로 술 한 병을 마련했네 | 百計備壺漿. |
| 전마(戰馬)에게 칡이나 먹이고, | 戰馬飼葛田, |
| 콩깍지조차 한 솥 가득 담지 못하지만 | 豆料惜釜量. |
| 다시금 쌀을 마련하게 해 | 更令兼稻米, |
| 죽 쑤어 살리느라 경황이 없네 | 作粥活恓惶. |
| 그러나 곧 죽을 목숨 잠시 살려주었을 뿐 | 少緩須臾死, |
| 사사로운 은혜가 어찌 늘 있으리 | 私惠詎能常. |
| 차마 듣고 보지 못하겠기에 | 不忍於見聞, |
| 그저 내 배속이나마 비우네 | 聊以罄吾腸. |
| 옛 말에 기근 구제에는 별 방책이 없다고 하더니 | 古稱救荒無奇策, |
| 아아! 궁핍한 세상의 민초들이여 | 嗟爾亂世窮民草, |
| 저 하늘에 운명을 맡겨보는 수밖에 | 應各待命於彼蒼. |

3) 빨리……하네: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하여 왜적을 물리치자는 말이다. 추매(椎埋)는 사람을 쇠뭉치로 때려죽여서 묻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명나라 군사를 말한다.

# 18. 팔거(八莒)[1]기사
## (八莒記事)

| | |
|---|---|
| 천황께서 북극성 높이[2] 임해 계시니 | 天皇御宸極, |
| 만방에서 모두 찾아와 조알하네 | 萬寓悉來王. |
| 달 지는 나라에선 옥패 보내 조문하고 | 玉吊月臨國, |
| 해 뜨는 나라에선 사다리로 배에 올라 찾아왔네[3] | 梯航日出邦, |
| 기자(箕子)의 봉국[4]이 요동 왼편에 접해 있어 | 箕封接遼左, |
| 책명을 내리시어 동방의 번국으로 삼으니 | 冊命藩東方. |
| 중화를 흠모하여 정삭(正朔)[5]을 받들고 | 慕華遵正朔, |
| 각각의 관직마다 왕의 예의를 지켰네 | 各職守王章. |
| 이백 년 동안 태평성세 누리며 | 昻平二百禩, |
| 충성을 다함에 세상에서 우러러보았네 | 忠藎世相望. |
| 시서(詩書)에 고을이 젖어들고 | 詩書漸里閈, |
| 인의(仁義)는 금탕(金湯)[6]처럼 견고하였거늘 | 仁義固金湯. |
|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 저 변발한 왜노들이 | 何期髡首奴, |

1) 팔거(八莒):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지명으로, 지금의 칠곡에 해당한다. 명나라 조정은 사천 총병으로 있던 유정(劉綎)에게 복건.서촉.남만 등지에서 모집한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가게 했는데,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 성주의 팔거였다.
2) 신극(宸極): 북극성을 뜻하는 말인데, 천자의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3) 사다리로……찾아왔네: 사닥다리를 놓고 산에 오르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곳을 찾아감을 이르는 말이다.
4) 기자(箕子)의 봉국: 은(殷)나라가 망하자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기자의 봉국이란 바로 우리나라를 말한다.
5) 정삭(正朔): 옛날 제왕이 나라를 세운 뒤 새로 반포하는 역법(曆法)을 말한다.
6) 금탕(金湯):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줄임말로 철로 만든 성과 끓는 물로 만든 해자를 가리킨다. 견고하여 쳐부술 수 없음을 상징한다.

| | |
|---|---|
| 교활하게 홀연 강역을 쳐들어올 줄을 | 狡焉忽啓疆. |
| 돛을 펼치고 여러 섬을 헤집고 와서는 | 揚帆歷島嶼, |
| 모든 언덕마다 깃발을 빽빽이 꽂았네 | 樹幟彌千岡. |
| 삼경(三京)[7]에선 맥수지탄(麥秀之嘆)[8] 터져 나오고 | 三京麥秀地, |
| 오묘(五廟)[9]에는 기장만 무성히 자랐네[10] | 五廟黍離場. |
| 게다가 여러 능침까지 파헤치니 | 更發諸陵寢, |
| 옷조차 거꾸로 입은 채 경황이 없었네 | 不啻倒衣裳. |
| 어가가 놀라 파천함에 | 乘輿驚播越, |
| 신하와 백성들 허겁지겁 달아났네 | 臣庶走彷徨. |
| 편지 한 통 궁궐 문에 이르자 | 飛書致魏闕, |
| 황망 중에 병부에서 명령을 내리시어 | 司馬令張皇. |
| 영웅호걸에게 호부(虎符)[11]를 하사하고 | 虎符付雄傑, |
| 훌륭한 인재에게 용병의 도략(韜略)[12]을 맡겼네 | 豹略任才良. |
| 나는 서촉도에서 이곳으로 와 | 我來蜀西道, |
| 병사를 이끌고 낙동강을 건넜네 | 師渡洛東江. |

---

7) 삼경(三京): 개성(開城), 평양(平壤), 한성(漢城)이 당시의 삼경이었다.
8) 맥수지탄(麥秀之嘆):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9) 오묘(五廟): 『예기(禮記)』「왕제편(王制篇)」에 의하면 천자는 칠묘(七廟)에, 제후는 오묘에 제사지낸다고 한다. 조선은 제후의 예법을 따라 오묘를 모셨다.
10) 기장만……자랐네: '서리(黍離)'는 『시경(詩經)』「왕풍(王風)」의 편명으로, 나라가 망하니 옛 대궐 터에는 기장만 무성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이다.
11) 호부(虎符):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 호랑이 모형으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호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호부는 병력동원을 왕이 총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건국 직후에 호부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의 호부는 한 쪽 면에는 발병이라고 쓰고 다른 쪽 면에는 '□도관찰사', '□도수군절제사'와 같이 받은 사람의 직함을 적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를 쪼개 오른쪽 것은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 것은 중앙에 보관했다. 발병할 때는 왕이 좌부를 내려 보내 우부와 맞추어 일치하면 병사를 동원했다.
12) 도략(韜略): 옛날의 병서인 『육도(六韜)』와 『삼략(三略)』을 병칭하는 말이었는데, 여기서 파생하여 계책 혹은 모략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일본군의 머리를 모조리 베어 擬殲日本首,
동해 바다를 메우고자 하였으나 盡塡東海洋.
직권을 가진 자가 달리 있어서 事權有歸宿,
뜻한 바를 펼칠 수 없었네 弗克任恢張.
서신을 보내 여전히 우리를 능멸하다가 因墨依陵曲,
마침내 검 날을 건드리고 말았는데 終有拂劍鋩.
왜노들 재앙을 면하고자 뉘우치는 체하더니 倭奴詭悔禍,
통공(通貢)을 애걸하며 명당(明堂)[13]을 찾아왔네 乞貢覲明堂.
표문(表文)을 바치며 신첩(臣妾)이라 칭하고 奉表稱臣妾,
예의를 갖추어 광주리 가득 예물을 가져왔네 修儀載篚筐.
조정의 계략은 마음 바쳐 귀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廟謨矜納款,
황제의 도량은 거칠고 더러운 것을 모두 감싸주는 것 帝度擴包荒.
병사들에게는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고 命衆旋中土,
험준한 바깥에는 병사를 머물게 해 방어하였네 留兵峻外防.
아아! 나는 본디 장수의 핏줄 嗟予本將種,
머리 틀어 묶고 전쟁터에서 살았으니 結髮事戎行.
변방에는 봉화가 환히 타오르고 烽火明靑塞,
병사들의 깃발이 벽당(碧幢)[14]을 에워쌌네 旌旄擁碧幢.
일찍이 육조(六詔)[15]를 크게 이겼다는 첩보를 거두고 曾收六詔捷,
포로들을 바치어 선왕께 고했네 俘獻告先王.
적을 멸하고자 하는 영웅심이 불타오르는데 滅賊雄心熾,
교활한 왜구들의 항복을 어찌 용납할까 寧容黠寇降.
천자의 마음을 돌리려 장차 소장을 올리고 回天將疏入,
해를 돌려놓고 기다렸다가 창을 휘두르리라 轉日待戈揚.
큰 고래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會見長鯨戮,
천년 동안 바다 빛이 푸르러지리 千年海色蒼.

---

13) 명당(明堂): 고대 중국에서 왕이 정령을 펴던 집을 명당이라 부른다.
14) 벽당(碧幢): 고급 관원의 배가 수레 위에 꽂은 푸른 기름칠을 한 깃발을 말한다.
15) 육조(六詔): 중국 서남부 지역(운남성 일대)에 있던 서융(西戎)의 나라를 말한다.

欽差 鎭守朝鮮備倭總兵 右軍都督府 都督 豫章 省吾 劉綎 書.
흠차 진수조선비왜총병 우군도독부 도독 예장(豫章)[16] 사람 성오(省吾)[17] 유정이 쓰다
萬曆二十二年二月吉朝
만력 22년 2월 길조에

16) 예장(豫章): 중국의 지명으로, 쟝시성(江西省)에 있다.
17) 성오(省吾): 성오는 유정의 자(字)이다.

# 19. 사직상소
## (辭職書)

臣寇亂之餘, 叨蒙恩暇, 使之歸省松楸. 繼有聖旨又下本道, 使之題給祭需, 榮生朽骨, 恩及泉壤, 聖恩如天, 報交無從, 不覺感淚自零爲白在果. 臣自辭闕下, 諸疾交發, 路次經過, 調治無緣, 仍成劇症. 乃至上下, 痞塞不通, 淹延道途, 幾不得達, 起程第十九日, 始抵豐泉郡地考妣墳所在之處. 滯行至踰一旬之久, 仍往安東府地宗家祠堂, 祭告累世恩贈. 冒涉風寒, 前症彌留, 又十日後, 始登途還指醴泉. 中路墜馬, 左賁骨及肩甲重傷, 牽制酸痛, 至不能屈伸. 自念臣以老病. 冒涉往來之際, 由限已過叱分不喩, 重患傷症. 期月之間, 調治無期是沙餘良. 又値時方嚴沍, 力疾登途, 上歸不得, 罪咎山積, 措躬無地, 惶憫罔極爲白在果. 臣本職及兼帶奉常寺都提調, 幷以遞差爲白良結望良白臥乎, 詮次善啓白敎事.
萬曆二十七年十一月十六日.

신은 왜란을 치른 끝에 외람되이 성은을 입어 말미를 얻음으로써 돌아가 성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또 본 도(道)에 성지를 내리시어 제수를 보내주도록 하셨으니, 영광이 썩은 백골에 이르고 은혜가 저승까지 미치어 성은이 하늘과도 같건만, 보답할 길이 없어 저도 모르게 눈물만 흘립니다. 신이 대궐을 떠난 이래로 여러 가지 병세가 번갈아 나타나더니, 길 가는 차에 몸조리할 길조차 없어서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위아래가 막혀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길에서 체류하느라 거의 이르지 못할 뻔 했다가, 길 떠난 지 19일 만에 비로소 풍천군(豐泉郡) 부모님 묘소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행차를 미룬 지 열흘이 넘어서야 안동 종가에 있는 사당을 찾아가서, 누대에 걸친 은혜로운 추증(追贈)을 고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추위를 무릅썼더니 이전의 증세가 다시 발작하여 다시 열

흘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천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낙마하여 왼쪽 갈비뼈와 어깨에 중상을 입었는데, 끌어당기듯이 저리고 아파서, 굽히고 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생각건대, 신은 늙고 병든 몸을 무릅쓰고 왕래하는 사이에 휴가의 기한이 이미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거듭된 병환으로 한 달 동안 몸조리하느라 [후일을] 기약할 수도 없으며, 또 때는 혹한의 계절을 만나,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길에 오른다 하여도 상경할 수도 없으니, 쌓인 죄가 산더미 같아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오며,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의 본직과 겸하고 있는 봉상시(奉常寺) 도제조(都提調)[1]를 아울러 체직하여 주십사, 선계(善啓)[2]를 올립니다.

만력 27년 11월 16일.

---

1) 봉상시(奉常寺) 도제조(都提調): 봉상시는 1392년(태조 1) 고려시대의 제도를 따라 설치하여 국가의 제사와 시호 등의 일을 맡아 보게 했던 기관이다. 관원으로 판사 2명, 경 2명, 소경 2명, 승 1명, 박사 2명, 협률랑 2명, 대축 2명, 녹사 2명을 두었다. 1409년(태종 9) 이름을 전사시로 고쳤다가 1421년(세종 3) 본래대로 바꾸었고, 판사 이하의 전관원은 문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을 실시하면서, 관원으로 도제조 1명, 제조 1명, 정 1명, 부정 1명, 첨정 2명, 판관 2명, 주부 2명, 직장 1명, 봉사 1명, 부봉사 1명, 참봉 1명을 두었다.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려 있다. 정은 당상관, 첨정에서 주부까지는 구임관이었다. 1895년(고종 32) 봉상사로 고쳤다가 1907년(융희 1)에 폐지되었다.

2) 선계(善啓): 임금에게 서면으로 아뢰는 일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선신(善申)이라고도 한다.

# 20. 포옹가보(圃翁家譜)[1] 약서 초고본 1
## (圃翁家譜略敍 草稿 一)

皇明紀元嘉靖五年歲次丙戌冬, 某從母鄉慶尙道醴泉郡治北距十餘里, 坊名金堂谷三九洞家, 是年十月初八日甲寅時也. 年至初九喪母親. 十五年丙申春, 隨父親往安東府治之北佳丘村, 實父鄉也, 仍居焉. 二十四年乙巳春, 隨父親居于金堂谷. 二十五年丙午四月十一日哭父親.(父親世系德行, 詳載西川墓碣.)

황명(皇明) 가정(嘉靖) 5년 세차 병술년(1526) 겨울, 나는 어머니의 고향인 경상도 예천군(醴泉郡) 치소로부터 10여 리 떨어진 곳, 금당곡(金堂谷) 삼구동(三九洞)이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10월 초8일 갑인시(甲寅時)에 태어났다. 막 아홉 살 되던 해에 모친상을 당했다. 15년 병신년(1536) 봄에 부친을 따라 안동부 치소 북쪽에 있는 가구촌(佳丘村)으로 갔는데, 그곳은 부친의 고향인지라 그곳에 거주하였다. 24년(1545) 을사년 봄, 부친을 따라 금당곡[2]으로 가 살았다. 25년 병오년(1546) 4월 11일에 부친께서 돌아 돌아가셨다.(부친의 세계(世系)와 덕행은 「서천묘갈(西川墓碣)」[3]에 자세히 실려 있다).

乃居廬于外家族葬之山坊名堤洞. 某自少零丁孤苦. 從仲父受四書三經, 略通大旨.(仲父諱某字某, 博通經史, 官至縣監, 享年六十.) 二十七年戊申秋, 娶婦于巨濟潘氏之門. 三十一年壬子春, 中成均生員, 戊午冬

---

1) 포옹가보(圃翁家譜): 이것은 정탁(鄭琢)이 스스로 작성한 전기이다.
2) 금당곡: 지금 금당실 마을이라고 불리는 예천에 속한 지명이다.
3) 「서천묘갈(西川墓碣)」: 서천(西川)은 정곤수(鄭崑壽)의 봉호(封號)이다. 정곤수와 정탁은 같은 청주(淸州) 정씨이다. 정곤수 묘갈명은 전해지지 않고, 현재 전하는 것은 그 아우 정구(鄭逑)가 지은 행장(行狀)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청주 정씨의 세계(世系)가 실려 있다.

登第. 卽我明宗朝也, 分校書館, 初授成川敎授, 又授晉州敎授. 三十四年乙丑秋, 司諫院正言, 隆慶元年丁卯春, 弘文館副修撰. 二年戊辰, 則是我今上卽位九年也. 自後三四年間, 累遷除拜三司.騎省. 隆慶六年壬申, 萬曆元年癸酉兩年間, 吏曹正佐郞, 議政府舍人. 萬曆二年甲戌秋, 由副應敎, 陞受同副承旨, 卽我今上卽位七年也.

그래서 외가 쪽 선산이 있는 제동(堤洞)이라는 이름의 마을에 여막을 지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외로이 홀로 자랐다. 중부(仲父: 둘째아버지)로부터 사서삼경을 배워 요지에 대략 통달했다.(중부는 휘가 아무개이고, 자가 아무개이다. 경사(經史)에 두루 통달했고 관직은 현감에 이르렀으며 향년 60세이다) 27년 무신년(1548) 가을에 거제 반씨(潘氏) 집안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31년 임자년(1552) 봄에 성균관 생원시에 합격했고, 무오년 겨울에 과거에 급제했다. 우리 명종(明宗) 조에 분교서관(分校書館)이 되었으며, 처음에 성천교수(成川敎授)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진주교수(晉州敎授)에 제수되었다. 34년 을축년(1555) 가을에는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융경(隆慶) 원년 정묘년(1567) 봄에는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 되었다. 융경 2년 무진년(1568)은 금상께서 즉위한 지 9년째 되는 해였다. 그 뒤로 3~4년간 삼사(三司)[4]와 기성(騎省)[5]에 두루 제수되었다. 융경 6년 임신년(1572)과 만력 원년 계유년(1573), 두 해 동안 각각 이조 정좌랑(吏曹正佐郞)과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을 지냈다. 만력 2년 갑술년(1574) 가을에 부응교(副應敎)를 거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했는데, 때는 금상께서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乙亥都承旨, 丙子秋, 因意外浮謗辭遞. 五年丁丑冬, 由禮曹參議, 出爲江原監司. 七年己卯春, 入爲都承旨. 八年庚辰春, 嘉善, 九年辛巳, 吏曹參判, 十年壬午, 監修欽敬. (中缺) 十八年庚寅二月初一日越江, 仍

4) 삼사(三司): 조선시대 때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합쳐 부르던 말이다.
5) 기성(騎省): 조선시대 때 육조(六曹)의 하나로, 군사와 우역(郵驛)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行過八站, 入香花村之路. 聞韃虜聲息, 避亂于狼子山. 賴寬典參將陳嘉寵, 從甜水砧, 率兵來救得免. 將入山海關擇仲染大頭瘟. 入關寓館于人家, 留十餘日不差. 與勉叔議先發行, 入皇都留玉河館, 待擇仲行, 始通鴻臚寺, 竣事回程, 實是年四月晦時也. 旋至遼東, 始聞擇仲以臺議鐫官. 至平山府中路, 又聞勉叔及琢亦被論云.

을해년(1575)에는 도승지(都承旨)가 되었고, 병자년(1576) 가을에는 뜻밖의 비방을 받아 사직하고 물러났다. 만력 5년 정축년(1577) 겨울에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거쳐 외직으로 나가 강원 감사(江原監司)가 되었다. 7년 기묘년(1579) 봄에 다시 도성으로 돌아와 도승지가 되었다. 8년 경진년(1580) 봄에 가선대부(嘉善大夫)[6], 9년 신사년(1581)에는 이조 참판이 되었으며, 10년 임오년(1582)에는 흠경각(欽敬閣)[7] 수리를 감독했다. [ㅡ중간 부분이 결락되어 있음ㅡ] 18년 경인년(1590) 2월 초하루에 압록강을 건너고, 이어서 여덟 개의 역참을 지나서 향화촌(香花村) 길로 들어섰다. [만주족] 달로(韃虜)의 소식을 듣고 낭자산(狼子山)에서 난리를 피했다. 다행히 관전참장(寬典參將) 진가총(陳嘉寵)이 첨수침(甜水砧)에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구하러 와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산해관(山海關)으로 들어갈 무렵 택중(擇仲) 권극지(權克智)[8]가 대두온(大頭瘟)[9]에 걸렸다. 산해관으로 들어가 민가에서 열흘 남짓 머물렀는데도 차도가 없었다. 면숙(勉叔) 한효순(韓孝純)[10]과 의논한 뒤, 먼저 출발해 명나라 도성으로 들어가 옥하관(玉

6)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시대 종2품의 하계(下階) 문관의 품계이다.
7) 흠경각(欽敬閣): 1438년에 경복궁 안의 강녕전 옆에 지은 전각이다.
8) 권극지(權克智): 자는 택중이다.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비변사 유사당상으로 위급한 국가정세의 수습에 몰두하다 병으로 죽었다. 특히 표.책에 뛰어나 문신들이 치른 정시에서 장원을 했다. 1717년(숙종 43) 충숙의 시호를 받았다. (다음백과)
9) 대두온(大頭瘟): 두통과 열이 심하고 얼굴과 귀의 앞뒤가 부어오르며, 때로는 목구멍 속이 붓고 벌겋게 되는 병을 말한다.
10) 한효순(韓孝純): 자는 면숙(勉叔), 호는 월탄(月灘)이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8월 영해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으며, 경상좌도관찰사.순찰사가 되어 동해안 지역을 방어했다. 1594년 병조 참판을 거쳐 1596년 경상도.전라

河館)에 머물면서 택중이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홍려시(鴻臚寺)[11]에 연통을 넣어 일을 끝내고 귀국길에 올랐다. 때는 그해 4월 그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동에 도착했는데, 그제야 택중이 대간(臺諫)[12]에 의해 삭탈관직[13]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산부(平山府)의 중간 쯤 이르렀을 때, 면숙과 나도 역시 탄핵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14]

蓋崔餘慶是處士, 永慶之弟. 餘慶筮仕, 實在十年前. 琢在吏曹參判, 勉叔爲郎官時事也. 然而琢與勉叔初實不知, 而不喜者, 托此而擠之也.

---

도.충청도 체찰부사(體察副使)가 되었고, 그해 한산도 무과의 시관으로서 이순신(李舜臣)이 천거하는 무장들을 발탁했다. 1610년 광해군 2년에 이조 판서, 1616년 우의정과 좌의정에 올랐다. 1623년 인조반정 후 폐모론에 가담한 죄로 관직이 추탈되었으나 1908년에 신원되었다. 저서로는『신기비결(神器秘訣)』,『진설(陣設)』등이 있다.

11) 홍려시(鴻臚寺): 명대 홍려시는 조회(朝會), 빈객(賓客), 길흉(吉凶)의 의례를 관장하였다. 국가의 큰 전례(典禮), 교묘(郊廟), 제사(祭祀), 조회, 연향(宴饗), 경연(經筵), 책봉(冊封), 진력(進歷), 진춘(進春), 전제(傳制), 주첩(奏捷) 등의 의례가 있으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외방 아전의 조근(朝覲), 여러 번방의 입공(入貢), 백관.사신의 복명(覆命), 사은(謝恩) , 사퇴하는 자가 있으면 홍려시에서 주문(奏文)으로 아뢰어 처리하였다. 또 황실 관련 각종 의례를 관장하고, 외방과 외국사신의 왕래에 관련하여 황제의 인견 및 의례참여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대중국 외교활동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 조선에서는 빈객을 담당하는 홍려시를 조선의 예빈시(禮賓寺)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대명 외교관청으로 중시하였다. 김경록,「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한국학보』117, 2004, 김경록,「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한국사연구』134, 2006

12) 대간(臺諫): 원문은 '대의(臺議)'로, 대간의 의논을 말한다. 대간은 조선시대의 사헌부, 사간원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조선시대에 대관은 사헌부(司憲府), 간관은 사간원(司諫院)에 소속되었다. 대간(臺諫)은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군주와 백관(百官)의 과실을 간쟁, 탄핵하며, 관리의 인사에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는 등의 정치적 소임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대간은 곧 탄핵을 대신 받기도 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13) 삭탈관직: 원문은 '전관(鐫官)'이다.

14) 나도……듣게되었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로 고사(高士) 최영경(崔永慶)이 무고를 당해 죽자, 정탁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정탁이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 최영경의 동생 최여경(崔餘慶)에게 벼슬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탄핵한 일을 말한다.

以此不得入城, 栖泊于西氷庫李光川家. 是冬敍命下, 知中樞府事禮曹判書. 十九年辛卯七月, 崇政右贊成除受, 未幾左贊成除受. 二十年壬辰夏, 倭奴入寇, 京師戒嚴. 上避亂西幸, 時琢以內醫院提調仕進內藥房, 仍扈駕, 實是年四月二十九日也. 是日風雨, 且上行出於不意, 朝臣多落後. 是夕上宿東坡館, 其翌朝, 琢自臨津追及. 上行至開城府仍留三日. 五月初七日, 大駕行至平壤府.

최여경(崔餘慶)[15]은 처사(處士)[16]로서 최영경(崔永慶)의 동생이다. 최여경이 처음 벼슬길에 나선 것은[17] 실제 10년 전이다. 그때 나는 이조 참판으로 있었고 한효순은 낭관(郎官)으로 있었다. 나와 한효순은 [최여경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이 일을 빌미로 우리를 몰아낸 것이다. 이 때문에 도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 서빙고(西氷庫)에 있는 이광천(李光川)의 집에 머물렀다. 그해 겨울 [왕의] 서용(敍用)[18]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19]와 예조판서가 되었다. 19년 신묘년(1591) 7월에 숭정대부(崇政大夫) [20]의정부 우찬성에 제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좌찬성에 제수되었다. 20년 임진년(1592) 여름 왜노가 쳐들어오자 도성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금상이 난을 피해 서쪽으로 몽진 갔을 때, 나는 내의원 제조(提調)로서 내약방(內藥房)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21] 금상을 호송하게 되

15) 최여경(崔餘慶): 자는 적원(積元)이다. 1575년에 한양에서 형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과 함께 선대의 토지가 있는 진주로 와서 한집에 같이 살면서 섬기기를 부모같이 하였다. 감역(監役)이 되었다가 신녕 현감(新寧縣監)으로 전임되었는데, 최영경이 기축옥사에 연루되자 그 아우라 하여 1590년에 그 또한 죽임을 당했다.『진양지(晋陽誌)』

16) 처사(處士):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초야(草野)에 묻혀 사는 선비를 말한다.

17) 처음……것은: 원문은 '서사(筮仕)'이다. 옛날 중국에서 최초 임관할 때 그 길흉을 점쳤다고 하여 첫 벼슬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다.

18) 서용(敍用): 죄가 있어 벼슬을 박탈했던 사람을 다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중추부(中樞府)에 둔 정2품 관직인 지사(知事)이다.

20) 숭정대부(崇政大夫): 조선시대 종1품 하계(下階) 문신의 품계명이다.

었는데, 때는 20년 4월 29일이었다. 그날은 비바람이 친데다 금상의 출행 또한 뜻밖의 일이었기에 신하들 대부분이 뒤처지고 말았다. 그날 저녁 주상께서는 동파관(東坡館)[22]에 머무셨고, 그 이튿날 아침나는 임진(臨津)에서부터 뒤를 좇아갔다. 주상 일행은 개성부에 이르러 사흘간 유숙했다. 5월 초이레에 어가가 평양부에 도착했다.

未幾賊追至, 六月十一日上又避賊, 將向寧邊府. 時琢詣政院, 啓請上留本府守城, 其辭以爲:
"國運不幸, 海寇憑陵, 大駕西行, 苟保一隅, 臣不勝痛哭. 然而駐蹕本府, 固守城池, 以圖恢復, 此實得計. 而朝議不一, 或以爲賊鋒已逼, 不得不避, 自上亦以爲然. 雖有大臣之言, 不見聽納, 將以今日定爲啓行, 王食不下咽. 京都不守, 則已矣無及, 惟幸此府, 城郭粗完, 人民衆庶, 府庫糧餉, 猶可支持. 而浿江一水, 所謂長江天塹. 人民勉留聖蹕, 咸憤敵愾之心. 城中男女老弱, 皆出守城. 人心如此, 此實大吉之兆. 況今李鎰引兵已至, 唐兵又將不久來援, 以此破垂亡之賊, 而中興之功, 可立而待, 捨此之他, 大事去矣.

얼마 지나지 않아 왜노가 추격해오자, 6월 11일에 주상께서는 다시금 왜적을 피해 [평안도] 영변부(寧邊府)로 가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승정원으로 가서 주상께서 본부에 머물면서 수성(守城)하실 것을 주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운이 불행하여 해적이 침범함에 어가가 서쪽으로 행차하여 구차히 한쪽 구석을 지키고 있으니, 신은 통곡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어가가 본부에서 머물며 성을 굳게 지키시면서 회복을 도모하신다면, 이는 실로 좋은 계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의견이 통일

21) 나는……때문에: 조선시대 때 내의원은 내국(內局).내약방(內藥房).약원(藥院) 등으로 불리었다. 세조 이후로 새로이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를 1인씩 두었는데,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하였다.
22) 동파관(東坡館): 경기도 판문점(板門店) 부근의 임진강변에 위치한 객관(客館). 선조가 임진전쟁 당시 북진하는 왜적을 피해 평양으로 가던 도중 이곳에서 묵었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자가 적의 예봉이 코앞에 있으니 피난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주상께서도 그렇다고 여기셨습니다. 대신들의 간언이 있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늘을 출발일로 정하시니, 신은 차마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곳 평양부가 부족하지만 온전하고, 군민들도 많으며, 부내 창고에 있는 군량미도 버틸 만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동강[23]은 이른바 장강과 같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군민들은 힘써 주상의 어가를 만류하며 모두 적개심에 노여워하고 있으며, 성 안의 남녀노소 모두가 나와서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와 같다는 것은 실로 대길의 조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일(李鎰)이 군사를 이끌고 이미 도착하였고, 명나라 군사도 머지않아 지원병을 보내 올 터이니, 이때 망해가는 왜군을 격파한다면 중흥의 공을 즉시 기약할 수 있을 것이나,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대사는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不特此也. 大駕一動, 則本府軍民, 一時潰散, 城陷必矣, 兇賊追鋒, 恐或莫遏. 而中路不測之變, 難保其必無, 豈不寒心? 其所以請上移蹕者, 恐或不思之甚也. 伏惟聖裁, 必須停行. 臣患暑霍累日, 今始來啓, 惶恐不已.” 時上意已決, 不得蒙允. 十三日上至寧邊府, 其翌日卽發向義州了路. 琢以世子貳師, 承命陪東宮行, 直向江界府了路. 蓋以賊勢充斥, 遂爲分朝, 冀其觀便, 以圖恢復也. 時領相崔興源, 判書李憲國, 參判沈忠謙, 參判尹自新, 承旨柳希霖等從之. 至熙川地, 右相兪泓, 右贊成崔滉, 中路來從, 更與謀議馳啓大朝, 向春川了路, 兪泓主議也.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가가 한 번 움직이시면 평양부의 군민들은 일시에 무너져 흩어지고, 성도 틀림없이 함락되고 말 것이므로 추격해 오는 적의 흉봉을 막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중간에 예측할

23) 대동강: 원문은 ‘패강(浿江)’이다. 대동강은 평안남도 북동부 낭림산맥의 서쪽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남포특별시 부근에서 황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시대에 따라 열수(洌水), 패수(浿水) 등으로도 불리었다.

수 없는 변고가 반드시 없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상께 어가를 옮기라고 주청한 자들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성명하신 판단으로 반드시 행차를 멈추셔야 합니다. 신은 며칠 동안 더위에 토사곽란을 치르느라 지금에서야 계(啓)를 올리게 되어 황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당시에 주상의 뜻이 정해진 터라 윤허를 얻지 못했다. 13일에 주상은 영변부에 도착했고, 이튿날 바로 의주를 향해 길을 잡았다. 나는 세자의 이사(貳師)[24]로서 주상의 명을 받들어 동궁(東宮: 세자)을 모시고 곧장 [평안북도] 강계부(江界府)로 향했다. 아마도 적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결국 분조(分朝)[25]를 하고, 국사를 편하게 돌봄으로써 국권 회복을 도모하기를 바라서였을 것이다. 이때 영의정 최흥원(崔興源),[26] 판서 이헌국(李憲國),[27] 참판 심충겸(沈忠謙),[28] 참

---

24) 이사(貳師):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종일품(從一品) 문관 벼슬로, 세자에게 경서를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았다.

25) 분조(分朝): 임진전쟁으로 한양, 개성, 평양이 함락되고 함경도까지 적이 침략하여 나라가 위급하게 되자 선조는 장차 요동(遼東)으로 망명할 목적으로 의주 방면으로 갈 때, 평안도 박천에서 왕세자인 광해군으로 하여금 종묘사직을 받들고 본국에 머물도록 했다. 이때 조정을 갈라 의주의 행재소(行在所)를 '원조정(元朝廷)' 혹은 '대조(大朝)'라 하고, 세자가 있는 곳을 '분조'라 하였다. 즉 분조는 선조가 요동으로 망명할 것에 대비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라는 왕명에서 나온 소조정(小朝廷)을 말한다.

26) 최흥원(崔興源: 1529~1603): 자는 복초(復初), 호는 송천(松泉)이다.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도순찰사로 군정 책임을 맡았고 이어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유성룡(柳成龍)의 뒤를 이어 영의정에 올랐다. 지병으로 영의정을 사직한 뒤 영돈녕부사로 전임되었고 영평부원군에 봉해졌다. 죽은 뒤 호성공신 2등에 등록되고, 청백리로 뽑혔다. 시호는 충정이다.(다음백과)

27) 이헌국(李憲國: 1525~1602): 자는 흠재(欽哉), 호는 유곡. 정종의 아들인 진남군(鎭南君) 종생(終生)의 현손이다.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대사헌으로 선조를 호종하고, 영변에서 길을 나누어 세자 광해군을 호종해 강계까지 갔다. 이듬해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좌참찬으로 있으면서 김시헌(金時獻) 등과 복수군(復讐軍)을 조직했다. 1598년 명나라 경력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을

판 윤자신(尹自新),[29] 승지 유희림(柳希霖)[30] 등이 동궁을 따랐다. [평안북도] 희천(熙川) 땅에 이르렀을 때 우상 유홍(兪泓),[31] 우찬성 최황(崔滉)[32]이 중도에 합류해 수종하다가, 다시 의논해 대조(大朝: 선조)에게 장계를 올리고 춘천(春川)으로 길을 잡았는데, 이것은 유홍

---

치려 한다고 무고한 사건이 일어나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이 이이첨(李爾瞻)의 탄핵으로 삭탈관직되자 이를 끝까지 반대했다. 죽은 후 1604년 호성공신 3등에 책록되고,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익이다.(다음백과)

28) 심충겸(沈忠謙: 1545~1594): 자는 공직(公直), 호는 사양당(四養堂)이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병조참판 겸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가 되어 선조를 호종했고, 세자 호위의 명을 받아 왜적 방비에 힘썼다. 1593년에 호조와 병조의 참판으로 군량미 조달에 공헌했으며, 이듬해 병조판서에 특진되었다. 글씨에도 능했다. 1604년에 좌찬성.대제학에 추증되고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 청림군(靑林君)으로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저서로 『사양당집』이 있다.

29) 윤자신(尹自新: 1529~1601): 자는 경수(敬修)이다. 임진전쟁 때 선조의 피난 행차를 호종했고, 종묘서제조로서 종묘의 신주를 임시로 송도에 묻어 그 공로로 자헌대부가 되었다. 1593년 호조참판으로서 군수 등의 업무를 주관했으며, 지돈녕부사.지의금부사 등을 거쳤다. 1596년 심유격의 자문에 대해 의논할 때 중국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는 것에 반대했다. 같은 해 추관으로 이몽학의 난을 처리한 후 한성부판윤.공조판서.지중추부사.산릉도감제조.호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죽은 뒤인 1604년에 호성공신 2등으로 용원부원군에 추봉되었다.(다음백과)

30) 유희림(柳希霖: 1520~1601): 자는 경열(景說)이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첨지중추부사로서 왕을 호종하여 좌승지로 발탁되었다. 이듬해 동지중추부사, 그 다음해에 예조참판이 되었고, 이 때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상소하여 세자 광해군으로 하여금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하도록 청하였다. 1597년 동지돈녕부사가 되었고, 사망한 뒤인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책록되어 문양군(文陽君)에 봉하여졌다.

31) 유홍(兪泓: 1524~1594): 자는 지숙(止叔), 호는 송당(松塘)이다. 선조를 호종하여 평양으로 피난 갔고, 평양에서 세자인 광해군을 따라 종묘사직의 신위를 모시고 함경도 쪽으로 갔다. 이어 도체찰사를 겸임하여 방어태세를 갖추면서, 격문을 각도에 보내어 의병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일본군이 서울에서 후퇴하자, 먼저 서울에 들어와서 불탄 도성을 정리했다. 그러나 앞서 자신의 가족만 먼저 피난시켰다는 탄핵을 받고 한때 삭직(削職)되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다음백과)

32) 최황(崔滉: 1529~1603): 자는 언명(彦明), 호는 월담(月潭)이다. 선조를 평양까지 호종했고, 이어 왕비와 세자빈을 희천에 피난시켰다. 1593년 서울로 환도할 때 검찰사로 왕을 수행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다음백과)

이 낸 의견이었다.

峽路危嶺, 難苦萬狀, 行至伊川縣, 實是年七月初九日也. 猝聞東方賊勢彌滿, 道不通路, 仍留本縣, 幾至二旬, 聞賊兵逼至. 是月二十八日, 陪東宮夜發, 踰璧峴向成川府了路. 八月初四日始至成川府, 仍留幾至三朔. 誤聞北路賊, 從火遊峴來逼本府, 陪東宮急發, 向安州了路, 是年十月二十五日也. 時雪深一尺, 又大風, 一行甚苦. 同月二十七日到安州留四日, 將指寧邊府了路. 時有主張入江華府, 聚兵控制兩湖之議故, 改請發向江華了路. 十一月十六日, 始至龍崗縣過數日. 子允穆自安東鄉家發行, 穿過賊藪來見仍留. 時江津氷合, 舟楫不通, 遂停江華之行.

좁은 길과 가파른 고개에서 갖은 고생을 다한 끝에 [경기도] 이천현(伊川縣)에 도착했다. 때는 임진년 7월 초아흐레였다. 동쪽 지역 적의 기세가 충만해져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창졸지간에 듣고, 이천현에서 거의 20여 일을 그대로 머물렀다. 적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달 28일 밤에 동궁을 모시고 출발하여 벽현(璧峴)을 넘어 [평안도] 성천부(成川府)로 길을 잡았다. 8월 초나흘에 비로소 성천부에 도착해 그대로 거의 세 달을 머물렀다. 북쪽 길의 왜군들이 화유현(火遊峴)에서부터 성천부 가까이 왔다는 오보를 듣고, 동궁을 모시고 급히 출발해 [평안남도] 안주(安州)를 향해 길을 잡았는데, 때는 임진년 10월 25일이었다. 이때 눈이 한 자나 내리고 큰 바람이 불어 일행이 심히 고생했다. 같은 달 27일에 안주에 도착해 나흘간 머무르고 장차 영변부를 향해 길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강화부로 들어가 군사들을 모아 호남과 호서를 통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강화부를 향해 길을 잡을 것을 다시 주청했다. 11월 16일 용강현(龍崗縣)에 도착해 며칠을 보냈다. 아들 정윤목(鄭允穆)[33]이 안동 고향 집에서 출

33) 정윤목(鄭允穆): 자는 목여(穆如), 호는 청풍자(淸風子).노곡(蘆谷).죽창거사(竹窻居士)이다. 정탁의 아들로, 정구(鄭逑).유성룡(柳成龍)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589년에는 사은사로 가는 사행단을 따라 중국에 다녀왔다. 벼슬에 뜻이 없어 두 차례 재랑(齋郎)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다가 1616년에 소촌도찰방(召村道察訪)에 취임하였으며, 1618년 통훈대부(通訓大

발하여 왜군의 소굴을 뚫고 이곳으로 나를 보러와 그대로 머물렀다. 이때 강 나루터가 얼어붙어 배가 다닐 수 없게 되어서 강화행을 멈췄다.

而本縣山城甚窄, 背險苦寒不利守城, 琢上箚論請移駐, 其辭以爲:
"頃日徽駕自安州, 不入鐵瓮而來此者, 蓋以直向江都, 撫綏畿甸, 控制兩湖之計也. 今則寒沍, 江津不通, 旣失此計, 而留蹕于此, 甚非計之得也. 臣愚以爲, 山城凝嚴寒苦, 士馬凍斃, 形勢逼窄, 不合用武. 賊若逼城, 則旣不得守, 又無可避, 勢實狼狽. 是兵家所忌天獄之形, 必敗之地, 決不可留. 本縣客舍, 則藏風向陽, 而賊陣甚近, 夜襲可慮. 臣之愚計, 莫若亟往永柔, 留駐大軍之後, 觀勢進退之爲得也. 或以謂山城天險可守, 此誠不思之甚也, 臣竊憫焉. 伏願下問大臣, 及時移駐, 千萬幸甚."

그러나 용강현의 산성이 너무 좁고, 험지를 등지고 있으며, 몹시도 추워 성을 지키기에 불리한 터라, 나는 차자를 올려 다른 곳으로 옮겨 머물 것을 주청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자에 저하(邸下)[34]께서 안주에서 철옹성(즉 영변부)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곳으로 오신 것은 아마도 곧장 강화도로 가서 기전(畿甸)[35]을 안정시키고, 호남과 호서를 통제할 계획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위에 모든 것이 얼어붙어 강 나루터를 건널 수 없게 되었기에, 계획이 무산된 채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이는 결코 좋은 책략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이곳 산성은 너무 추워서 군사와 말이 얼어 죽을 판이고, 지형이 매우 좁아 무력을 쓰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군이 성을 압박해 온다면 성을 지킬 수도

---

夫)에 가자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실정에 불만을 품고 사직한 뒤 낙향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저서로는 『청풍자문집』이 있다.

34) 저하(邸下): 원문은 '휘가(徽駕)'이다. '휘가'는 왕세자의 수레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동궁인 광해군을 가리킨다.

35) 기전(畿甸):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에 가까운 행정 구역을 포괄하는 지역을 말한다.

없고 피할 수도 없으므로, 실로 진퇴양난에 처할 것입니다. 이곳은 병가에서 꺼리는 천옥(天獄)의 형세이자 필패(必敗)의 땅이니,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용강현의 객사는 바람이 잠잠하고 볕이 잘 들지만 적진과 너무 가까워 야간 습격이 염려되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급히 [평안도] 영유현(永柔縣)으로 가시어 대군의 뒤에 주둔하면서 형세를 살피다가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어떤 이는 산성이 천연의 요새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야말로 깊지 못한 생각이라 참으로 걱정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신들에게 하문하시어 제 때에 옮겨 주둔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過數日後又啓曰.
移蹕便否, 臣已略陳梗概. 今臨危迫, 不辭煩瀆, 敢盡愚見. 其策有三. 徽駕向海西入江都, 號令中外, 收復京城, 掃蕩大敵, 以迎大駕, 策之上也. 而江津不通, 旣失上策, 亟往永柔, 留駐大軍之後, 以觀天兵之勢, 順則由大路奉迎大駕, 仍向成川或遂安海州等地. 若不順則退保寧邊, 策之中也, 而如不速行. 奉嬪宮徙永柔, 徽駕姑移駐本縣客舍, 愼斥候揀士馬. 聞變急避, 策之下也. 強滯山城, 人馬凍斃, 士卒怨苦. 脫有警急, 避守俱失, 坐待自敗, 誠爲無策. 事理甚明, 愚智皆知. 旣失上策, 復失中下策, 無所避難, 識者寒心.

며칠 뒤에 다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주둔지를 옮기는 것이 과연 좋은 방편인지 아닌지에 대해 신이 이미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태가 급박하고 위험하여 무례를 마다않고 감히 저의 어리석은 의견을 모두 바칩니다. 계책으로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하께서 해서(海西: 황해도)로 가서 강화도로 들어간 다음 중외(中外)를 호령하시면서 도성을 수복하시고, 왜군을 소탕함으로써 어가를 맞이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강나루터를 다닐 수 없어 상책을 행할 수 없으면 급히 영유현으로 가셔서 대군 뒤에 주둔하시면서, 천병(天兵)의 형세를 살피어 형세가 순조롭거든 큰 길로 가서 어가를 받들어 맞이한 다음 거듭 성천부로

향하거나, 아니면 수안(遂安)이나 해주 등지로 가십시오. 만약 일이 돌아가는 형세가 순조롭지 못하다면 물러나 영변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책입니다. 만약 속히 시행할 수 없다면 빈궁을 영유현으로 받들어 보내시고, 저하께서는 잠시 용강현 객사로 옮겨와 머무시면서, 삼가 [왜군의 상황을] 신중히 살피고 군사와 말을 선발해 놓은 다음 변고가 들리면 급히 피하시는 것, 이것이 하책입니다. 억지로 산성에 체류하시는 동안 사람들과 말은 얼어 죽고, 장병들은 원망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만약 이때 뜻밖의 급변이 생기면 피난할 수도 성을 지킬 수도 없어서, 앉아서 패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로 속수무책임에 분명한지라, 똑똑한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모두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상책을 놓쳤는데, 다시 또 중책과 하책마저 놓쳐 피난할 곳조차 없어지면 식자들이 한심해 할 것입니다.

夫寧邊, 古稱鐵瓮, 天險形勢. 城中寬闊, 人馬足以周旋, 將士足以用武. 且雪擁氷嶺, 北賊無虞. 譬諸此城, 胥壤不侔, 而猶欲強坐危地, 淹延時日, 已盈一朔. 恐賊欲生心, 無所不至, 不勝煎憫. 計者事之本, 聽者存亡之機. 計失聽過, 大事去矣. 伏願夬決無留. 但竊伏念徽體愆和, 不可輕動, 惟望十分審裁, 千萬幸甚.” 時議者不一. 大概蒙允. 是月二十四日, 東宮引見諸宰, 始決移去寧邊之策. 其翌日東宮發向寧邊了路, 二十九日始至寧邊府, 仍留過歲. 癸巳正月初三日, 受命東宮, 詣安州李提督如松軍前, 允穆從之. 是萬曆二十一年也.

무릇 영변부는 예로부터 철옹성으로 불리던 천혜의 요새입니다. 성안은 넓고 훤해, 사람과 말이 운신하기에 충분하고 장병들은 무예를 펼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눈과 얼음이 고개를 에워싸고 있어 북쪽의 적들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성과 비교해 볼 때 천양지차이거늘, 여전히 위험한 땅에 억지로 주저앉아 있으면서 시일을 끈 지가 이미 한 달이나 되어 갑니다. 혹여 왜군들이 욕심을 품고 하지 않는 짓이 없을까 봐, 초조한 마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계책이라는 것은 일의 근본이고, 경청하는 것은 존망이 걸린 관건입니다. 계책을

놓치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사는 물 건너가고 맙니다. 엎드려 원컨대 머무르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다만 지금 저하께서 몸이 편찮아 가벼이 움직일 수 없으니, 십분 신중히 판단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나이다.” 당시 논자들의 의견이 같지 않았으나 대략 윤허를 얻었다. 이달 24일에 동궁은 재상들을 불러들여서 비로소 영변부로 옮겨가는 책략을 결정지었다. 동궁께서는 이튿날 출발해 영변부를 향해 길을 잡고, 29일에 비로소 영변부에 도착해 그대로 해를 넘겼다. 계사년(1593) 정월 초사흘에 나는 동궁의 명을 받고 안주에 있는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의 군영으로 갔는데, 이때 아들 정윤목도 따라갔다. 때는 만력 21년(1593)이었다.

其翌日復命, 仍啓提督軍前『聞見錄』. 初七日李提督大兵, 直擣平壤城, 剿賊殆盡, 復平壤城. 餘賊夜遁. 初八日夜, 捷書始至. 十八日告廟社主. 二十日陪東宮, 迎謁大駕于定州, 允穆從之. 二十六日出使龍川郡良策館, 以迎慰宋經略應昌行也. 允穆從之. 二十八日始至良策館. 至四月初六日, 經略始至, 竣事辭歸. 經略贈以紅綃一段, 以示禮云. 至博川行在所復命. 長婦隨其慈侍避亂, 來寓郡人家, 是亡兒允著室也. 又喪嚴父於賊兵, 無所於歸, 慘不忍見. 是日從大駕行, 至安州住宿. 十一日從大駕至永柔. 時東宮患咽喉證, 已踰一旬. 十三日始聞賊發宣.靖兩陵, 是夜朝廷上下擧哀變服. 十五日慶尙右道兵使金沔訃音始聞.

그 이튿날 복명하고 다시 제독의 군영에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36]을 올렸다. 초이레에 이 제독은 대병을 이끌고 곧장 평양성을 공격하여 왜군을 거의 섬멸하고 평양성을 수복했다. 남은 적들은 야반도주했다. 초여드레날 밤에 비로소 승전보가 들려왔다. 18일에 사당에 가서 그동안의 경과를 조상들에게 고했다. 20일에 동궁을 모시고 정주

36)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원문은 ‘문견록(聞見錄)’이다. 정탁이 쓴 책으로, 1592(선조 25)년 임진전쟁으로 임금이 평안북도 의주로 난을 피해 갔을 때, 함께 따라갔던 그곳에서 보고 느낀 생활상을 기록했다. ‘용만’은 바로 평안북도 의주시의 옛 별호이다. 이 책에는 중국 명나라에 관한 일과 당시 주고받았던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定州)에서 어가를 맞이해 알현했는데, 이때 아들 정윤목도 따라갔다. 26일에 용천군(龍川郡) 양책관(良策館)으로 사신 나가 경략사(經略使) 송응창(宋應昌) 일행을 맞이해 위로하였다. 이때 아들 정윤목도 따라갔다. 28일에 비로소 양책관에 도착했다. 4월 초엿새가 되어서야 경략사가 겨우 도착해 일을 마치고 인사하고 돌아왔다. 경략사가 붉은 생사 한 단을 주면서 예를 표했다. 박천(博川)[37] 행재소로 가서 복명했다. 맏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 피난 와서 박천군의 인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죽은 아들 정윤저(鄭允著)의 처이다. 며느리가 다시 왜군에게 아버지를 잃고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기에,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이날 어가를 호송하여 안주에 도착해서 유숙했다. 11일 어가를 따라 영유현에 도착했다. 이때 동궁께서 인후염을 앓으신 지 이미 열흘이 넘었다. 13일에 왜군이 선릉(宣陵)과 정릉(靖陵) 두 능을 도굴했다[38]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날 밤으로 온 조정의 사람들이 애도하며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15일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면(金沔)[39]의 부음이 전해왔다.

十八日上見劉摠兵脡於肅川府, 琢從之. 二十日從大駕逾永柔. 五月初二日出使往嘉山宋經略應昌軍前, 越二日復命. 時以朝廷行賞不均, 怨咨盈路. 琢草箚辭以爲:

“伏聞嶺南賊勢, 近益鴟張. 東南沿海州縣, 幾半陷沒, 晉州城濠亦至失

---

37) 박천(博川): 평안북도 남부에 있는 군으로, 양잠과 견직물 생산지로 유명하다. 명승지로 심원사와 박주성 등이 있고, 면적은 288.42㎢이다.

38) 왜군이……도굴했다: 이 사건은 왜군이 한양의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도굴한 것을 말한다. 선릉은 성종의 능이고 정릉은 중종의 능이다. 이 일은 사실 1592년에 벌어진 일인데, 1593년에야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조정에 알려졌다.

39) 김면(金沔): 자는 지해(志海), 호는 송암(松庵)으로,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5월에 조종도(趙宗道) 등과 거창.고령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고, 지례(知禮)에서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과 함께 공격해오는 적의 선봉을 역습하여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공으로 합천군수가 되고, 또 무계(茂溪)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11월에 의병대장의 호를 받았다.

守. 夫晉州, 實湖南保障也, 晉州失守, 則湖南莫保. 湖南莫保, 則兇鋒所指, 無所不至. 未知前頭之事, 終又如何, 臣不覺心膽俱裂. 然而朝宗朝二百年宗社大業, 豈可置諸無可奈何之地, 而莫爲之計乎? 當今可論者非一, 而臣姑揭其大段若干條, 拈出計開于下.

18일에 주상께서 [평안남도] 숙천부(肅川府)에서 총병(摠兵) 유정(劉綎)[40]을 접견하셨는데, 내가 수행했다. 20일에 어가를 따라 영유현을 넘어갔다. 5월 초이틀에 주상의 명을 받들어 가산(嘉山)에 있는 경략사 송응창의 군영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틀 뒤에 복명했다. 당시 조정의 논공행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길에 넘쳐났다.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자를 올렸다.
“엎드려 듣건대, 영남의 왜군의 위세가 근자에 더욱 등등해졌다 하옵니다. 동남 연안의 주현 가운데 거의 반이 함락되었고, 진주성 역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무릇 진주는 실로 호남의 울타리인지라, 진주를 지키지 못하면 호남도 지킬 수 없습니다. 호남을 지키지 못하면 흉악한 칼날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결국 또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을 것이므로 신은 절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조종(朝宗)께서 이어오신 200년 종묘사직의 대업을 어찌 속수무책의 지경에 내버려 둔 채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아니겠지만, 신은 잠시 약간의 조목을 들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시해 보겠습니다.

一曰, 申明軍功募粟之法. 當今最急者, 全在討賊一事. 虜復生心, 勢將難禦, 此賊未討, 則一國臣民, 勢難俱生. 而兵無敢死之卒, 糧有難繼之患, 勸武聚糧之道, 只在賞職一條. 而自軍興以來, 朝廷頓不擧行, 而初不爲畫一之法. 或有斬級多而賞典不及, 雖及而有異同之別. 或有納粟準數而施報不及, 雖及而陞降不均. 事涉罔民, 而民不見信, 致有怨咨盈路. 執此不變, 則兵無先登之勇, 糧絶自募之路, 名爲擧行, 而實無一

40) 유정(劉綎): 유정의 ‘정’자가 ‘脡’으로 되어 있는데, ‘綎’의 오기이다.

利. 以此而欲望中興大業之功, 不亦難乎? 請命有司, 詳定事目設立畫一之法, 分明成冊. 論功行賞際, 一從無違, 則其補軍需濟大功, 豈淺尠哉?

첫째, 군공(軍功)에 대한 법과 군량미 모으는 방법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오로지 왜군을 토벌하는 한 가지 일뿐입니다. 왜노가 다시 마음을 먹는다면 사태는 장차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왜적을 토벌하지 못한다면 일국의 신민들은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목숨 걸고 싸우려는 병졸이 없고, 군량미를 이어 대기가 어려운 근심만이 있으니, 무예를 권장하고 군량미를 모으는 방법은 오직 상직(賞職)[41] 한 조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왜란이 일어난 이후로 조정에서 이를 갑자기 거행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법도라곤 없어서, 혹은 적의 수급은 많이 베었음에도 상전(賞典)[42]이 없거나 상전이 있었다 해도 차이가 있었고, 혹은 기준에 맞추어 군량미를 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보상이 있었다 해도 승진시키거나 강등시키는 것이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백성을 기만하는 것에 해당되는지라, 백성들은 나라의 신의를 보지 못해 원망만 길에 넘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수한 채 바꾸지 않는다면 선봉에 나서서 싸우려는 용사는 없을 것이고, 군량미도 저절로 모을 방법이 끊어질 것이므로, 명분상 실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의 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흥의 대업을 이룩하는 공을 바란다면 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관리에게 명해 항목을 상세하게 정하고 획일화된 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분명하게 문건으로 만드십시오. 논공행상을 거행함에 시종 여기에 어긋남이 없이 따르신다면, 군수물자를 보충하고 큰 공을 세움에 [그 역할이] 어찌 적겠습니까?

---

41) 상직(賞職): 여기서 상(賞)은 군공(軍功)에 대한 것을 말하고, 직(職)은 모속(募粟)에 대한 상을 의미한다. 이하의 문장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42) 상전(賞典):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을 주는 규정을 말한다.

二曰, 乞請唐兵, 全心剿討. 本國兵力, 漫無紀律, 望風先潰. 自經兵亂尤甚單弱, 了無抗賊之勢. 三都之復全, 是天兵之力, 當此事勢岌岌, 非賴天兵, 則決難滅賊. 伏望經略提督兩大人前, 須急俱由稟帖或移咨, 極其誠懇, 庶見回心諸將, 合勢前進, 蕩掃兇鋒.
三曰, 急下哀痛之敎. 自古感動民情, 須用君上一旨之下. 當此國勢危疑之日, 豈可視爲循常, 不爲之變動乎? 請命能文之臣, 倣陸宣公故事, 代製聖旨. 極盡措語, 發馬下送, 敦諭諸道監兵使, 使之遍示各邑軍民各陣將士, 庶幾感發忠義之心, 各自勉勵, 臨死不避.

둘째, 명나라 군사에게 전심을 다해 왜군을 토벌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본국의 병력은 기강과 규율이 없어서, 멀찍이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먼저 무너집니다. 병란을 거치면서 더욱 약해져 왜군을 대항할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삼도(三都)[43]를 수복한 것은 모두 명나라 병사의 힘이오니,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여 명나라 병사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왜군을 섬멸하기 결단코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경략사와 제독 두 사람 앞으로 급히 사유를 갖추어 서찰을 보내거나 이자(移咨)하여 간곡한 성심을 다 펼쳐 보인다면, 여러 장수들의 마음을 돌리고 한데 힘을 합쳐 전진함으로써 흉악한 칼날을 소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급히 애통의 교지를 내리십시오. 자고로 민심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임금의 교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나라가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가히 평상시처럼 여기며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문장에 뛰어난 신하에게 명해, 그 옛날 육선공(陸宣公)[44]이

43) 삼도(三都): 조선시대 때 삼도는 각각 도성인 한양과 개성(開城), 평양(平壤)이다.
44) 육선공(陸宣公): 당나라 덕종(德宗) 때의 한림학사(翰林學士) 육지(陸贄: 754~805)를 말한다. 선공은 그의 시호(諡號)이고, 자는 경여(敬輿)이다. 덕종에게 올린 주의(奏議)를 모아 엮은『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가 유명한데, 주자(朱子)는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라고 했다. 육지가 언급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재물은 백성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상하면 그 근본이 상하게 되며, 그 근본이 상하게 되면 가지와 줄기가 시들어서 뿌리가 넘어지고 나무가 뽑힙니다(民者邦之

했던 것처럼 대신 성지를 작성하게 하소서. 극진하게 글을 지은 다음, 파발을 띄워 성지를 밑으로 내려 보내 각 도의 감사(監使)와 병사(兵使)[45]를 격려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성지를 각 읍의 군민과 각 진영의 장군 및 군사들에게 두루 내보이게 하신다면, 그들의 충의지심(忠義之心)을 움직여 각자 스스로를 고무해 죽음도 피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四曰, 亟畢山陵之役. 三陵梓宮, 一樣發掘, 實萬古所未有之變, 臣子之情, 罔極罔極. 以靖陵玉體, 必須經審之故, 遲延未葬, 今至數朔之久, 臣等不勝隱憂. 賊勢滔天, 勢將陸沈, 卷土重來, 難保其必無. 上年德嬪之事, 至今慘痛. 數朔營域之功, 襲用九十稱之服, 益啓兇賊之心. 天心若能悔禍, 則必無此事. 臣之言亦爲過慮, 而曠月不葬, 終非卽遠有進之義. 請命監董大臣, 亟畢葬役. 且須量宜善措, 庶幾無貽大悔於異時. 不勝切幸之至. 取進止.”

넷째, 산릉(山陵)의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릉(二陵)[46]의 재궁(梓宮)[47]이 동시에 파헤쳐진 것은[48] 실로 만고에 없던 변고로, 신하된 자로서 망극하고 또 망극하옵니다. 정릉(靖陵)[49]의 옥체를,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안장하지 않은 채 시일을 끌면서

---

本, 財者民之心, 其心傷則其本傷, 其本傷則枝幹凋瘁而根株蹶拔矣)”라는 말은 널리 인용되고 있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보인다.

45) 병사(兵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줄인 말로, 조선 시대에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고 경비를 담당하던 종이품 무관직을 말한다.

46) 이릉(二陵): 원문은 ‘삼(三)’으로 되어 있으나, 『藥圃集』권2 「條陳事宜箚」에 따르면 ‘二’로 되어 있다. 이에 고쳐 번역한다.

47) 재궁(梓宮): 예전에 왕, 왕대비, 왕비, 왕세자 등의 시체를 넣는 관을 이르던 말로, 개오동나무로 만든 데서 나온 이름이다.

48) 삼릉(三陵)의……것은: 임진전쟁 때 왜군이 성종(成宗)과 중종(中宗)의 능을 파헤치고 왕의 시신을 꺼내어 불태운 흔적이 있었는데, 중종의 능 속에는 의심쩍은 시체 하나가 들어 있어서 그 진위(眞僞)를 알 수 없으므로 의논이 분분하다가 그 시체를 별도로 후장(厚葬)하고, 능 옆의 불태운 흔적이 있는 재를 거두어 능 안에 환봉(還奉)한 일을 말한다.

49) 정릉(靖陵): 중종(中宗)의 능을 말한다.

벌써 몇 달이나 지난 지라, 신 등은 근심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왜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해 나라가 장차 망할 지경이지만, 권토중래(捲土重來)의 기회가 꼭 없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덕빈(德嬪)의 일[50]은 지금까지도 슬프고 애통합니다. 몇 달 동안 능을 만드느라 공을 들이고, [왕실의] 전통에 따라 90칭(稱)의 상복 제도를 따르고자 한다면,[51] 흉포한 왜군의 마음을 더욱 선동할 뿐일 터이니, 만일 하늘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자 한다면 필시 이런 일을 벌이게 하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말 또한 지나친 우려입니다만, 몇 달을 허비해 가면서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은 점차 멀리 간다는[52] 말

---

50) 덕빈(德嬪)의 일: 순회 세자빈(順懷世子嬪) 윤씨(尹氏)의 죽음을 말한다. 윤씨는 참판 윤옥(尹玉)의 딸로서 10세에 간택되어 덕빈(德嬪)에 책봉되었는데, 이듬해에 세자가 죽었으나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유명(遺命)으로 궁궐에서 나가지 못했다. 세자의 상사를 당한 뒤로부터 종신토록 언제나 상중에 있는 것처럼 하였으며, 친척들의 궁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자의 영혼을 기원하는 뜻에서 불공(佛供)을 자주 드렸으나 선조가 가엾게 여겨 금지시키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었다. 시호를 공회(恭懷)라 하고 장차 세자원(世子園)에 부장(附葬)하려고 공사를 크게 일으켰는데, 갑자기 왜변(倭變)을 만나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선조가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에 빈소(殯所)를 모시고 있던 관리 몇 사람이 후원(後苑)에 임시로 매장하려 하였으나 재실(梓室: 관)이 무거워 옮길 수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 궁전에 불이 나는 바람에 관리들도 모두 흩어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궁인(宮人)들이 그를 추모하고 비통해하면서 말하기를 '빈이 살았을 적에 불교를 숭상하였는데, 우연히 화장(火葬)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생전의 뜻에 부합된다.'고 했다.

51) 왕실……한다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옛 제도에 습의(襲衣)를 천자는 12칭(稱) 이요, 상공(上公)은 9칭이요, 제후(諸侯)는 7칭이요, 대부는 5칭이요, 사(士)는 3칭이며, 소렴의(小斂衣)에 있어서는 천자로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19칭이며, 대렴의 있어서는, 천자는 1백 20칭이요, 상공은 90칭이요, 제후와 백작(伯爵).자작(子爵).남작(男爵)은 70칭이요, 대부는 50칭이요, 사는 30칭이었는데, 본국에서는 공정대왕 초상에는 습의는 7칭이었으며, 소렴의는 15칭이었으며, 대렴의는 38칭이었고,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초상에는 습의은 7칭이요, 소렴의가 19칭이요, 대렴의는 90칭이었으며, 태종의 초상에는 습의가 7칭이요, 소렴의가 19칭이요, 대렴의가 40칭이었나이다."고 한다.

52) 점차……간다는: 『예기(禮記)』「단궁(檀弓)」에 나오는 말이다. "객위에 빈소를 설치하고, 뜰에서 조례를 지내고, 묘에서 장사지내는 것은 점점 멀리 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상사는 나아감은 있어도 물러남은 없다(殯於

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청컨대 공사를 감독하는 대신에게 명해 능역을 빨리 끝내도록 하옵소서. 형편을 헤아려 잘 조치해야만 훗날 회환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재결을 기다리겠습니다.”

適於此時, 有發此議, 已爲啓下故, 仍停入啓. 時有同行諸宰中, 以議論不同, 頗有不愜之意, 琢以異同辨, 書示沈公直, 大槪以爲:

“大凡天下之義理無窮, 故人之所見亦各不同. 苟義理所在, 則是亦義理, 而各所見之不同, 容有何病焉? 唐虞之世, 都兪吁咈, 各陳昌言, 未聞有異同之或避. 闕里門生, 同學聖人, 而各言其志, 未聞有異同之或諱. 宋朝群賢, 同是尙德, 而當國議事, 不嫌爲言論之各異. 河南程夫子兄弟, 同是一家之學, 而講明討論, 著說傳後, 顯有異同之可指. 紫陽朱先生, 專崇兩程之學, 而箋釋經籍, 立言垂範. 有或不能盡從其說. 至如『大學』古注錯簡, 因程子所定, 更考諸經文, 或因或改, 不嫌爲異同之不一, 何者? 義理無窮, 人見不同, 義理所在, 則各盡所見, 不爲苟同, 此是古昔聖賢人已無間, 至公無我之道也. 夫如是故, 學力以進, 治體益張, 此實古之道也.

마침 이때에 이와 같은 의견이 있어 이미 장계를 올렸기에 장계 올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당시 동행하던 재상들 중에 의견이 달라 내게 불쾌감을 표한 자가 있기에 나는 같고 다른 것에 대한 변론을 써서 심공직(沈公直)[53]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대강은 다음과 같았다.

“무릇 천하의 의리(義理)는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것이

---

客位, 祖於廷, 葬於墓, 所以卽遠也, 故喪事, 有進耳無退).”

53) 심공직(沈公直): 심충겸(沈忠謙, 1545~1594)을 말한다. 심충겸은 자는 공직(公直)이고 호는 사양당(四養堂)이다. 서인의 영수인 심의겸(沈義謙)의 아우이며 인순왕후(仁順王后, 명종의 비)의 동생이다. 1564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2년에 친시 문과(親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1604년에 좌찬성과 대제학에 추증되고,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청림군(靑林君)으로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저서에는 『사양당집』이 있다.

또한 각각 다르다. 진실로 의리가 있는 곳이라면, 이 또한 의리이니 각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무슨 흠 될 것이 있겠는가? 요순시대에는 찬성하고 반대하면서[54] 각자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말했는데, 자신과 같고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혹여 피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궐리(闕里)[55]의 문하생들도 성인에게서 함께 배우면서 각자 자신의 뜻을 말했지, 자신과 같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혹여 꺼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송나라의 많은 현자들은 똑같이 덕을 숭상했지만, 국사를 의론할 때는 각자 말이 다른 것을 꺼리지 않았다. 하남(河南)의 정호(程顥).정이(程頤)[56] 형제는 같은 학파였지만, 강론하고 토론하고 저술하여 후세에 남긴 것을 보면 지목할 만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다. 자양(紫陽) 주희(朱熹)[57]는 오로지 정호.정이 형제의 학문을 숭상했지만, 경전에 주석을 달고 풀이하고 입언하여 모범을 드리운 것을 보면, 간혹 정 부자의 견해를 모두 따를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大學)』 고주(古注) 착간(錯簡)[58]의 경우, 정자(程子)가 정리한 것을 따르기도 했지만, 다른 경전을 고찰하여 따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등 정자와 일치하지 않은 것도 꺼

---

54) 찬성하고 반대하면서: 원문은 '도유우불(都兪吁咈)'이다. 도(都)와 유(兪)는 찬성의 의미를, 우(吁)와 불(咈)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후대에 성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가 뜻이 맞아 정사(政事)를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55) 궐리(闕里): 공자가 태어난 곳, 즉 공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56) 정호(程顥)、정이(程頤): 정주이학(程朱理學)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정호와 정이 형제를 말한다. 이정 부자(二程夫子) 혹은 이정 선생(二程先生)으로도 불린다.

57) 주희(朱熹: 1130~1200): 자는 원회(元晦), 중회(仲晦)이고, 호는 회암(晦庵)、회옹(晦翁)、고정선생(考亭先生)、운곡노인(雲谷老人)이며 별호는 자양(紫阳)이다. 남송의 대표적인 이학자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철학가이다.

58) 『대학(大學)』……착간(錯簡):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의 책은 대나무 조각에 글을 쓰고, 이 단편들을 끈으로 엮어 둘둘 말아 보관하는 두루마리 형태의 죽간(竹簡)이었다. 따라서 끈이 끊어져 단편들이 흩어지면 이를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흔히 일어났다. 이를 착간(錯簡)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단편들이 잘못 섞였다는 뜻이다. 『대학』은 원래 『예기』에 속해 있던 것을 추린 것으로, 빠진 부분도 많고 이리저리 뒤섞인 곳도 많아 '착간대학(錯簡大學)'이라고도 불린다.

리지 않았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의리는 끝이 없고 사람이 보는 바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리가 있는 곳이라면 각자 자신의 소견을 모두 펼치면서 구차하게 같아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옛날 성현들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지공무사(至公無私)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무릇 이와 같았기에 배움이 진보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요체가 더욱 넓어질 수 있었으니, 이것이 진실로 옛날의 도인 것이다.

世降俗末, 斯道不傳. 臨事言論之際, 豎立者益寡, 苟其己之所好者, 則顯有附會. 非但不能與之匡異, 反爲阿依曲循, 塤篪相和, 雄唱雌隨. 甚至皂白和光, 薰蕕混臭, 遂致黨甲而排乙, 袒右而改左. 士習日非, 治道不明, 職此之由. 君子病焉. 皇明萬曆紀元歲次壬辰, 國運中否, 海寇構亂, 京師戒嚴, 大駕西幸. 遂命東宮權攝, 托以誅討恢復之任. 上自首台, 下至庶官, 分陪東宮, 冒涉關峽, 遂爲分司. 從官承命者, 雖在亂離投竄之中, 苟有所見, 則各盡其說, 不敢有隱, 其於異同, 何有焉?”

세상이 말세가 되면서부터 이러한 도가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어떤 일에 직면해 논의할 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자는 더욱 적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라면 드러내놓고 들러붙었다. 이에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바로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아첨하고 따르면서 훈(塤)과 지(篪)로 창화하고[59] 부창부수(夫唱婦隨)했다. 심지어 검은 색과 흰 색이 어우러지고 향초와 독초의 냄새가 뒤섞이더니, 마침내 갑과 무리지어 을을 비방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60] 왼쪽을 고치려 하였다. 선비들의 풍습이 날로 비속해지고, 치도(治道)가 밝아지지

59) 훈(塤)과……창화하고: 원문은 ‘훈지상화(塤篪相和)’이다. 훈은 질나발로, 흙을 구워 만든 옛날의 관악기이고, 지(篪)는 고대의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과 『예기(禮記)』「악기(樂記)」에 따르면 “훈(塤)과 지(篪)는 소리가 서로 잘 어우러진다.”고 한다.

60) 오른쪽……채: 원문은 ‘단우(袒右)’이다. 옛날 중국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다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으로 국인이나 중인의 경우는 왼쪽 어깨를, 죄인이나 하층민이 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못한 것도 모두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자들이 병통으로 여기는 바이다. 명나라 만력(萬曆) 기원 임진년(1592)에 국운이 쇠하여 왜군이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성에는 계엄이 선포되고 어가는 서쪽으로 몽진하였다. 마침내 동궁께 잠시 섭정을 명하시면서 왜군을 토벌하고 도성을 수복하는 임무를 맡겼다. 위로는 영의정부터 아래로는 말단 관리까지 분조하여 동궁을 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협곡을 건너가 마침내 분사(分司)를 이루었다. 수종관으로서 임금의 명을 받든 자라면, 비록 난을 피해 도망 다니는 와중에 있더라도 의견이 있으면, 각자 그 말을 다하며 감히 숨기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니, 의견의 같고 다름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時沈公直以賓客從之, 余以貳師與焉, 一時同行, 相善者頗多. 而余於公直, 有夙契, 義分最厚, 私與素好敬信之情, 則固無表裏之有間. 至於謀事參論之際, 或多異同, 終未免可否相質. 至於公坐中, 角立爭端, 極口辨詰, 彌日而罷, 公直不慍而余亦無疑. 越明年癸巳春, 東宮始會大駕於定州, 分司復合爲一. 一日有客來問於余曰: '公與公直, 論事不協, 以至不爲相容云. 人言果信, 則深恐兩間疑阻日積, 交道不終也.' 余應之曰: '烏有是哉! 君子周而不比, 此實古道. 生乎今世, 勉行古道, 公直有焉, 烏有是哉? 勉行古道, 日進高明, 能行古道, 此交道之所以不替. 子何過慮之甚耶?' 疑者乃解. 遂書其言, 寄示公直, 因作異日閑中禦眠之資云."

당시 심공직은 빈객으로서 세자를 따랐고, 저는 이사(貳師)로서 참여하게 되어 일시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서로 잘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나와 공직은 오랜 인연이 있고, 의리 또한 두터우며, 사적으로 좋아하고 믿는 마음이 있었던지라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을 도모하거나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 간혹 의견차가 많아 가부를 놓고 따지게 되는 경우를 끝내 면할 수 없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각을 세우며 싸우거나 극구 따져 물으며 하루가 지나야 그만두더라도, 공직은 화내지 않았거니와 나 역시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듬해 계사년(1593) 봄에 동궁께서 비로소 정주에서 어가와 만나니, 이에 분사가 다시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 하루는 한 객이 찾아와서 내게 물었다.

'공과 공직은 일을 논의함에 뜻이 합치되지 않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두 분 사이의 의심이 날로 쌓여 끝내 교분을 유지하지 못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군자는 두루 사귀면서 무리 짓지 않는다[61]고 했으니, 이것은 진실로 옛날의 도입니다. 금생에 태어나 옛 도를 힘써 행하는 자가 바로 심공직이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힘써 옛 도를 행해서 날로 고명해져 능히 옛 도를 실행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토록 걱정하십니까?'

의심하던 자가 이내 의심을 풀었다. 그래서 이 말을 글로 적어 공직에게 부쳐 다른 날 한가할 때 잠을 쫓는 소일거리로 삼게 한다."

六月十九日, 上自永柔發行海州了路. 時朝議勸上亟還京都, 以鎭撫人心. 是日上宿于石山坊民家. 二十日至江西縣, 時雨水不止, 道路濘惡. 上以行路之苦, 不復啓行, 仍留本縣. 八月初一日, 琢兼判義禁府事除授. 是時李肜獄事起. 琢啓以爲:

"李肜之事甚有機關, 處置之道, 固宜十分愼重, 不可容易議爲. 議者多以拿致嚴鞫請之, 臣亦不以爲不然. 但反覆致思, 猶以爲未也. 臣取見肜之所呈文字, 則措語大槪於提督, 兩所觸犯, 迫脅恐喝之意, 無所不至. 而對面數語, 則於提督別無所毁, 特以捏做無根, 大駭人聽. 於本國事, 大有機關故, 厥罪極重. 凡有重罪者, 例於王獄拿推, 議者之言, 實皆有據.

6월 19일, 주상께서 영유현에서 출발하여 해주(海州)로 길을 잡았

61) 군자는……않는다: 『논어』「위정(爲政)」에 나오는 말이다.

다. 당시 조정의 공론인즉 주상께서 급히 환도하여 민심을 위무하길 권하는 것이었다. 그날 주상은 석산방(石山坊) 민가에서 유숙했다. 20일에 강서현(江西縣)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치지 않아 도로가 진흙탕이었다. 주상께서는 길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어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대로 강서현에 머물렀다. 8월 초하루에 나는 겸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를 제수 받았다. 그 때 이융(李肜)의 옥사[62]가 일어나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

"이융의 사건은 매우 중요하오니, 처리하는 방법도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하므로 가벼이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자들은 체포해와 엄히 추국할 것을 청하였고, 신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였사오나 반복해서 생각해보니 온당치 않은 듯했습니다. 신이 이융이 올린 글을 가져와 살펴본즉, 제독에 관련된 내용 중에 두 가지 저촉된 사항이 있었고, 글의 도처에 공갈과 협박의 뜻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대면해서 몇 마디 한 것을 보면, 제독에 대해서 특별히 훼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무고한 말을 만들어 내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국의 일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바가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그 죄가 매우 큽니다. 중죄를 저지른 자는 의금부로 잡아들여 추국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논자들의 말에도 실로 근거한 바가 있습니다.

然而今者處置李肜之事, 殊異常例, 不如直就其所在處罪之. 蓋其所在處者, 卽是提督軍前也. 其罪名, 且須只就其肜呈文, 妄冒之罪, 拈出爲目. 且用律文所載'大不敬條', 進提督軍前, 嚴加顯戮, 聲罪處斬. 使留都大臣, 告于提督. 若曰: '老爺以天朝大將, 奉帝勅討賊, 降臨下邦. 尊嚴無比, 恩德罔極, 豈意下邦幺麽衊蝨子, 敢爾唐突至此耶? 寡君聞

62) 이융(李肜)의 옥사: 이 사건은 1593년에 지어진 윤두수(尹斗壽)의 「이융 등을 처치할 것을 청하는 차자(請處置李肜等箚子)」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왜군과 내통하였다고 주장한 이융을 엄중히 처벌하고, 그 사실을 이여송에게 잘 설명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첫머리에 "당시에 융이 난언(亂言)으로 천장(天將)을 무소(誣訴)하였다."고 적고 있다.

之, 不勝驚惶, 特遣陪臣某, 請罪提督老爺前處斬. 嚴重之語曰: 不穀不能禁戢下人, 於老爺尊前, 致有此變, 惶戰不已. 不穀不能躬治, 謹遣臣某, 敢治罪人于軍前, 以謝老爺執事云.' 則辭直義正, 其所施爲, 實爲得體. 而主客相與之道, 亦無不合宜, 尊敬天朝之意, 顯然竝行乎其中.

그러나 지금 이융을 처리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과는 아주 다르므로, 그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가 있는 곳이라 함은 바로 제독의 군문 앞입니다. 그의 죄명 또한 모름지기 이융이 올린 문장에 한해서 함부로 윗사람을 모함한 죄를 끄집어내어 죄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법조문에 실려 있는 '대불경(大不敬)'[63]의 조목을 적용해 제독의 군문 앞으로 나아가 엄하게 현륙(顯戮)[64]을 가하고 죄상을 성토한 다음 참수하십시오. 그런 다음 유도대신(留都大臣)[65]을 보내 제독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노야(老爺)께서는 천조(天朝)의 대장군으로 황제의 칙령을 받들어 왜군을 토벌하기 위해 하방(下邦)에 오셨습니다. 존엄하기 그지없고 베푸신 은덕은 망극하온데, 하방의 하찮고 보잘것없는 벼룩 같은 놈이 감히 노야께 이렇게 당돌한 짓을 할지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임금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특별히 배신(陪臣) 아무개를 보내 제독 노야 면전에서 참수하게 하였습니다. 또 엄중히 이르시기를, 과인[66]이 아래 사람을 제대로 단속하지

63) 대불경(大不敬): 『대명률(大明律)』의 십악(十惡) 가운데 하나. 십악이란 특전을 베풀 수 없는 열 가지의 큰 죄로 대불경을 비롯하여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대불경은 주로 임금과 직결되는 죄로 여기에는 종묘·능의 제사에 쓰는 물건 또는 임금의 수레·옷 등을 훔치거나 어인(御印)을 훔치고 위조하는 죄, 임금에게 올리는 약을 잘못 조제하는 일, 임금이 타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죄 등이 있다.

64) 현륙(顯戮): 옛날에 죄인을 죽여 그 시체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을 말한다.

65) 유도대신(留都大臣): 옛날에 임금의 거동 때에 서울에 머물러 정무(政務)를 보는 대신을 말한다.

66) 과인: 원문은 '불곡(不穀)'이다. '불곡'의 본뜻은 열매가 맺히는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수재 등으로 인해 쌀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르는

못하여 노야의 존전(尊前)에 이러한 변고가 생기게 되었으니 황공함을 그칠 수 없다. 과인이 직접 처리할 수가 없어서 삼가 신 아무개를 보내 군문 앞에서 죄인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노야께 사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말이 곧고 이치 또한 곧아질 것이며,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모양을 갖추게 되어 주객이 함께 참여하는 도에도 합당하지 않은 바가 없게 될 터이니, 천조를 존경하는 뜻은 그 가운데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提督亦必以本朝能尊敬天祖, 靡所不至, 以爲蚩氓一時狂瞽妄冒之言, 不足深較. 設或藏怒, 必能自解. 肜之對面無理之言, 亦恐釋然不能爲惑. 如此處置, 則臨變處之之道, 恐或不失其宜. 而必欲拿致鞫問於行朝所在, 則肜之誤事辱國之罪, 有同亂逆, 而原其實, 則不過無知妄作. 雖致行朝, 恐別無可究情跡, 而抑恐行朝治罪與否, 提督豈能遠察, 必信無僞耶? 然則拿致王獄, 非徒無益於治罪, 而恐或因此, 反惹提督意外不信之端. 難保其必無, 此事極可寒心. 臣竊念今此獄事, 苟或處置少有失宜, 則所關非輕. 臣以此敢終始啓稟, 亦不敢自恃必能當理與否, 伏惟聖裁."

그러면 제독도 틀림없이 본조가 천조를 존경함이 미치지 않는 바가 없다고 여길 것이고, 어리석은 백성이 일시에 떠벌인 무지몽매한 망언 따위는 깊이 따질 바가 못 된다고 여길 것이어서, 혹여 노여움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이융이 면전에서 떠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에 대해서도 어쩌면 의심이 풀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신다면 변란 중에 일을 처리하는 도리 역시 그 마땅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어이 행재소에서 그를 잡아와 국문하고자 한다면, 이융이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모독한 죄는 반역죄와 같아질 것이나, 그

---

말이었으나, 후에는 덕행이 없어 후사가 끊기거나 고대 왕들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사용했다.

실상을 미루어 본즉 무지한 자의 망령된 행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행재소로 데려온다 하더라도 특별히 추궁할 만한 정황도 찾지 못할뿐더러, 행재소에서의 치죄(治罪) 여부를 제독이 어떻게 멀리서 살펴서 결코 속임이 없었으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의금부로 잡아들여 국문하는 것은 비단 치죄에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독이 우리 측을 믿지 못할 빌미만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 이는 실로 두려운 일이옵니다. 신이 외람되이 생각하건대, 이번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신이 감히 자초지종을 아뢴 것이지만, 신 또한 감히 이치에 합당한 지의 여부는 자신할 길이 없사오니 엎드려 성상의 재결을 바라나이다."

時本府行移已發, 不及見施. 同月十一日大駕行海州, 東宮陪中殿, 十五日發行. 時琢出使義州, 天朝大小將官餞慰事也, 二十日始至義州.

당시 본부에서 이미 이자(移咨)하였기에 이 글을 올리지 못했다. 같은 달(8월) 11일에 어가가 해주로 떠나고, 동궁은 중전을 모시고 15일에 출발하였다. 이때 나는 명을 받들고 의주로 출발해 천조의 대소 관리와 장군을 전별하고 2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의주에 도착했다.

# 圃翁家譜略敍 草稿 二

## 포옹가보(圃翁家譜) 약서 초고본 2

二十七日, 見楊摠兵元於其所館, 九月初三日, 見任摠兵、高遊擊、査摠兵、祖摠兵請宴, 皆免宴. 爲王中軍設宴于其所館, 王通判、徐遊擊竝參. 初四日詣李都督汝松於其所館問安. 初六日楊元等三大將, 一時越江, 琢與鄭昌衍、李德馨會餞于義順館. 初九日爲王通判設宴于其所館. 初十日爲宋經略請宴, 經略免宴, 使其家丁, 爲琢設宴于別所, 蓋示以禮也. 十三日宋經略李提督相次越江, 請宴皆許之. 十四日陪王子臨海君, 爲天使徐一貫, 設宴于義順館. 十八日爲張都事設宴于龍灣館. 十九日爲高遊擊設宴, 二十日爲方遊擊時輝設宴, 皆於其所館. 二十一日爲徐遊擊一貫請宴, 只受卓面. 十月初三日, 與相公胡煥會話于二衙別館. 初四日爲沈遊擊惟敬請宴, 只受酒餐.

27일 총병 양원(楊元)[1]의 관저에서 양원을 만나고, 9월 초4일에 임 총병(任摠兵: 任自强)[2], 고 유격(高遊擊)[3], 사 총병(査摠兵: 査大受)[4],

---

1) 양원(楊元): 명나라 무장. 임진전쟁 때 부총병(副摠兵)으로 참전했다. 총병 이여송의 부하로서 평양성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1593년 벽제관 전투에서도 이여송을 구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정유재란이 시작되자 요동기병 3천명을 이끌고 조선에 다시 응원군으로 참전했다. 총병 마귀(麻貴)의 휘하에 들어가 남원성에 부임해 성의 방비 강화에 힘썼다. 그러나 남원성 전투에서 패한 뒤 그 책임을 지고 참형에 처해졌다.

2) 임자강(任自强): 자는 체원(體元)이고 호는 관산(冠山)으로 대동(大同) 양화위(陽和衛) 사람이다. 1592년에 흠차협수선부동로통령영병부총병관 도지휘사(欽差恊守宣府東路統領營兵副摠兵官都指揮使)로 선부(宣府)의 병력 1천을 이끌고 12월에 압록강을 건너왔다가 계사년 8월에 돌아갔다.

3) 고 유격(高遊擊): 당시 제독 이여송 휘하 유격으로는 고책(高策).고승(高昇).고철(高徹) 세 사람이 있는데, 이 가운데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4) 사 총병(査摠兵): 명나라 때 요동 부총병을 지낸 사대수(査大受)를 말한다. 철령위(鐵嶺衛) 사람으로 영원백(寧遠伯)의 가정(家丁)이다. 1592년에 흠차통령남북조병원임부총병(欽差統領南北調兵原任副摠兵)으로 마병과 보병

조 총병(祖摠兵: 祖承訓)을 만나 연회를 청했으나, 모두 사양했다. 왕중군(王中軍: 王廷恩)을 위해 그가 머물던 관저에서 연회를 베풀자, 왕 통판(王通判: 王君榮)과 서 유격(徐遊擊)[5]이 나란히 참석했다. 초4일에 제독 이여송의 관저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다. 초6일에 양원 등 세 명의 대장이 일시에 강을 건넜기에, 나와 정창연(鄭昌衍)[6]、이덕형(李德馨)[7]이 [의주] 의순관(義順館)[8]에 모여 전별연을 열었다. 초9일에 왕 통판을 위해 그의 관저에서 연회를 열었다. 초열흘에 송 경락을 위해 연회 열 것을 청했으나, 송 경락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에] 자신의 가복[9]을 보내 다른 곳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

3천을 이끌고 9월에 나와 행궁(行宮)을 호위하면서 의주(義州)에 오래 머물렀다. 그 뒤 제독 이여송이 나오자 그의 표하에 예속되었는데, 벽제 전투에서 선봉으로 미륵원(彌勒院) 앞 들판에서 왜적 1백여 급을 베었다. 계사년에 제독을 따라 돌아갔다.

5) 서 유격(徐遊擊): 1593년 4월 경략 송응창이 사용재(謝用梓)와 서일관(徐一貫)에게 명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참장(參將).유격(遊擊)의 관명을 임시로 주어 왜노를 따라 바로 왜국에 가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서유격은 서일관으로 보인다.

6) 정창연(鄭昌衍: 1552~1636):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경진(景眞), 호는 수죽(水竹). 1579년(선조 1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독서당(讀書堂)에 들어갔고, 이조좌랑을 거쳐 동부승지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614년(광해군 6) 우의정이 되고 이어 좌의정이 되어 기사(耆社)에 들고 궤장(几杖)을 받았다.

7) 이덕형(李德馨: 1561~1613):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포옹산인(抱雍散人)이다. 1592년 임진전쟁 때 북상중인 왜장 고니시가 충주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단기(單騎)로 적진으로 향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정주까지 왕을 호종했고, 청원사(請援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파병을 성취시켰다. 돌아와 대사헌이 되어 명군을 맞이했으며, 이어 한성판윤으로 명장 이여송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어 전란 중 줄곧 같이 행동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어사 양호(楊鎬)를 설복해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명군과 울산까지 동행, 그들을 위무(慰撫)하였다. 이어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과 함께 순천에 이르러 통제사 이순신(李舜臣)과 함께 적장 고니시의 군사를 대파하였다. 1601년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로 경상·전라·충청·강원 4도체찰사를 겸해, 전란 뒤의 민심 수습과 군대 정비에 노력하였다.

8) 의순관(義順館): 의주성(義州城)에서 남쪽으로 2리 떨어진 압록강(鴨綠江) 가에 있는 역관(驛館)을 말한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여 접대하기 위한 장소로 쓰였다.

아마도 예를 표하기 위해서인 듯했다. 13일에 송 경략과 이 제독이 차례대로 강을 건너게 되어 연회를 청하자 모두 허락했다. 14일에 왕자 임해군(臨海君)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 서일관(徐一貫)을 위해 의순관에서 연회를 베풀었다.[10] 18일에 장 도사(張都事)를 위해 용만관(龍灣館)[11]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19일에 고 유격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20일에 유격 방시휘(方時輝)[12]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모두 그들이 머물던 관저에서 행했다. 21일에 유격 서일관을 위해 연회를 청했으나 준비한 음식만 받았다. 10월 초3일에 상공(相公) 호환(胡煥)과 판관 집무처[13]의 별관(別館)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초4일에 유격 심유경을 위해 연회를 청했으나, 술상만 받았다.

時天使司憲不意出來, 琢自義州權稱遠接使, 隨天使行向京都. 至平山

---

9) 가복: 원문은 '가정(家丁)'으로, 원래 집에서 부리던 남자 일꾼 또는 종을 뜻한다. 임진전쟁 당시 명나라 장수들은 자신들의 가정들까지 데리고 와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는데, 심지어 가정 50명을 데리고 온 장수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은 그 가정들까지 먹이고 입혀야 했다.

10) 서일관……베풀었다: 1593년에 심유경이 일본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고니시 유키나가와 접촉해서 강화 협상을 진행하는데, 양 측이 서로 조건을 내걸면서도 그 조건을 들어주는 척 해서 위장 강화 사절로 사용재(謝用梓)와 서일관이 함께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나고야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 두 사람은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명목상으로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자 조선에 임해군, 순화군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래서 의주에서 이들을 위해 연회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 서일관은 1597년에는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해서 북경에 머물러 감사가 되었다고 한다. 강화 협상에서 공문을 위조한 것이 발각되면서 사용재와 함께 유배되었다.

11) 용만관(龍灣館): 의주(義州)에 있던 중국 사신의 접대관소(接待館所)를 말한다.

12) 방시휘(方時輝): 산서(山西) 울주위(蔚州衛) 사람이다. 1592년 12월에 흠차통령계진유격장군(欽差統領薊鎭游擊將軍)으로 마병 1천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여백(李如栢)의 표하(票下)에 소속되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공을 세웠다. 오래도록 상주(尙州)에 주둔하다가 1593년 10월에 돌아갔다.

13) 판관 집무처: 원문은 '이아(二衙)'이다. 이아는 각 고을의 유향소(留鄕所)를 말한다. 고을의 수령을 보좌하는 자문 기관으로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감찰하며, 민의를 대변했다.

府, 遇李恒福遞代後, 琢從間路, 新溪縣了路指向. 行至兎山, 祗受有旨, '東宮南下, 卿其從行'之命. 琢入城復命, 且啓『龍灣聞見錄』一冊, 仍卽下直肅拜. 其翌明發行, 追及東宮之行於兩湖之間, 是癸巳年閏十一月日也. 仍留過歲于全州府. 自此以後, 全、公、洪三城, 皆所留駐處也. 時左相尹斗壽, 戶曹判書韓準, 知中樞府事李山甫, 兵曹判書李恒福, 大司成金宇顒皆從之. 稟旨東宮, 敎鍊武士, 不廢寒暑. 在洪之日, 時多飢民, 無慮七八百人, 流入境內, 與諸宰稟旨, 設場賑飢, 未及麥秋, 多所全活. 此甲午年春夏數朔間也.

그때 마침 명나라 사신 사헌(司憲)이 뜻밖에 와서 나는 의주에서부터 임시 원접사(遠接使)[14]가 되어 사신을 따라 도성으로 향했다. 평산부(平山府)에 도착해서 이항복(李恒福)[15]을 만나 임무를 넘겨준 뒤에, 나는 샛길로 신계현(新溪縣)을 향해 나아갔다. 토산(兎山)[16]에 도착했을 때 '동궁이 남하하는 중이니, 경은 그 뒤를 따르라.'는 임금의 유지를 공경히 받들었다. 나는 도성에 들어가 복명하고 『용만문견록』

14) 원접사(遠接使): 조선시대 의주까지 파견되어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임시 관직이다.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원접사를 의주에, 선위사(宣慰使)를 도중의 5곳에 보내 맞이하고 전송하며 연회를 베풀어 위로했다. 원접사에는 정1품 의정을 제외한 2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원접사에 임명되는 사람은 학식과 시문이 뛰어나야 하고 풍채도 좋아야 가능했다.

15) 이항복(李恒福: 1556~1618): 자는 자상(子常), 호는 필운(弼雲)·백사(白沙)·동강(東岡)이다. 임진전쟁 때 왕비를 개성까지 무사히 호위하고, 또 왕자를 평양으로,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선조가 의주에 머무르면서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자, 명나라에서는 조선이 왜병을 끌어들여 명나라를 침공하려 한다며 병부상서 석성(石星)이 황응양(黃應暘)을 조사차 보냈다. 이에 그가 일본이 보내온 문서를 내보여 의혹이 풀려 마침내 구원병이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만주 주둔군 조승훈(祖承訓).사유(史儒)의 3,000 병력이 왔으나 패전하자 다시 중국에 사신을 보내 대병력으로 구원해줄 것을 청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이여송의 대병력이 들어와 평양을 탈환하고, 이어 서울을 탈환, 환도하였다. 다음 해 선조가 세자를 남쪽에 보내 분조(分朝)를 설치해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무를 맡아보게 했을 때 대사마(大司馬)로서 세자를 받들어 보필하였다.

16) 토산(兎山): 황해도금천 지역의 옛 지명이다.

한 권을 진상한 뒤 그대로 하직 숙배(肅拜)[17]를 올렸다. 이튿날 아침 출발하여 호남과 호서 사이에서 동궁의 행차를 따라잡았는데, 때는 계사년(癸巳年: 1593) 윤 11월이었다. 전주부(全州府)에서 그대로 해를 넘겼다. 그날 이후로 전주、공주、홍주(洪州)의 세 성에 모두 주둔하며 머물렀다. 이때 좌의정 윤두수(尹斗壽),[18] 호조판서 한준(韓準),[19]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산보(李山甫),[20] 호조판사 이항복, 대사성 김우옹(金宇顒)[21] 등이 모두 따랐다. 동궁의 뜻을 받들어 군

---

17) 숙배(肅拜): 과거 합격자 방문이 내붙는 날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왕에게 절을 하거나, 혹은 관직에 제수되는 날 임지로 출발함에 앞서 왕에게 절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즉 숙배는 왕조시대에 신민이 국왕에 대하여 표하는 일종의 충성과 복종의 서약의식이라 할 수 있다.

18) 윤두수(尹斗壽: 1533~1601): 자는 자앙(子仰), 호는 오음(梧陰). 임진전쟁 당시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고 우리의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해 이조판서 이원익(李元翼),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등과 함께 평양성을 지켰다. 이듬해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를 겸했으며, 1595년 판중추부사가 되었고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난국을 수습하였다. 이듬해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에 올랐으나, 대간의 계속되는 탄핵으로 사직하고 남파(南坡)에 물러났다. 1605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다.

19) 한준(韓準: 1541~1601): 자는 공칙(公則), 호는 남강(南崗). 임진전쟁 때 호조판서로 순화군(順和君)을 호종, 강원도로 피난하였고, 이듬해 한성부판윤에 전임되었으며, 진하 겸 주문사(進賀兼奏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와 이조판서가 되고, 1595년 사은 겸주청사(謝恩兼奏請使)로 또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시호는 정익(靖翼)이다.

20) 이산보(李山甫: 1539~1594): 자는 중거(仲擧), 호는 명곡(鳴谷). 임진전쟁 때 선조를 호종했고, 대사간.이조참판.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명나라 군대가 요양(遼陽)에 머물면서 진군하지 않자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을 설득해 명군을 조선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어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북도와 삼남 지방의 도검찰사(都檢察使)로 나가, 지난날의 선정에 감복한 도민들의 적극 협조로 무사히 해결하였다. 1594년 대기근이 들자 동궁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구휼에 힘쓰다가 병을 얻어 죽었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한흥부원군(韓興府院君)에 추봉되었다.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21) 김우옹(金宇顒: 1540~1603): 자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東岡).직봉포의(直峰布衣). 1592년 임진전쟁으로 사면되어 의주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승문원제조로 기용되고, 이어서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찬획(贊劃) 원황(袁黃)의 접반사(接伴使)가 되고, 이어서 동지중추부사로

사를 훈련시키면서 추위와 더위에도 그치지 않았다. 홍주에 있을 당시 굶주린 백성들이 많았는데, 무려 700~800여 명이 경내로 흘러들어왔기에 재상들과 함께 동궁의 뜻을 받들어 장소를 마련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했다. 그리하여 추수철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 때는 갑오년(1594) 봄에서 여름 몇 달 사이였다.

八月二十日, 東宮承大朝命, 自公州始發, 還向京師. 琢與他宰, 一時從行. 是月二十五日, 東宮入京城, 始奉問膳于上殿. 琢始仕于備邊司. 時琢自南還京, 始得周覽彌日, 百萬長安, 鞠爲茂草, 驚痛不已, 久而乃定. 仍與自家移都便否, 私相問答爲說, 記出小箚, 將以啓稟, 其辭以爲:

"伏以臣近入都城奉審, 則宗社丘墟, 三闕埋沒, 百萬長安, 鞠爲茂草, 臣中心如壇, 不堪出聲而哭. 仍竊伏念, 自古國家不能常安, 而地氣旺衰之說, 亦且暗合於其間, 非但人事爲然也. 豈今之漢陽, 亦恐地氣已衰, 而不可復都耶? 說者曰: '地氣之說, 初非高遠難曉, 只以驗跡人事可見. 今觀都城內, 人煙斷絶, 氣像愁慘, 甚似古戰場. 如此則地氣亦豈復旺耶? 古語有之, 經戰衆塚之地, 忌安營下陣, 蓋以人鬼不可同處故也. 安營且不可, 況爲帝王宅都耶! 漢陽不可仍都者, 此其大段也.'

8월 20일, 동궁께서 대조(大朝: 선조)의 명을 받들어 공주에서 출발하여 도성으로 향했다. 나와 다른 재상들도 일시에 수종했다. 이달 25일, 동궁께서 도성으로 들어와 비로소 상전에게 안부를 물으셨다. 나는 이때 처음 비변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나는 남쪽에서 도성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 종일 도성을 살필 수 있게 되었는데, 100만이나 사는 도성이 무성한 풀숲이[22] 된 것을 보고는 애통해 마지않다가 며

---

명나라의 경략 송응창을 위한 문위사(問慰使)가 되었으며, 왕의 편지를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에게 전하였다. 그 해 상호군을 거쳐 동지의금부사가 되어 왕을 호종하고 서울로 환도하였으며, 한성부좌윤·혜민서 제조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22) 무성한 풀숲이: 원문은 '국위무초(鞠爲茂草)'로 되어 있으나, '국위무초(鞫爲茂草)'가 맞다. 이 말은 『시경(詩經)』「소아(小雅)、소변(小弁)」에 나오

칠이 지나서야 진정되었다. 이에 도성의 천도가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 나 스스로 자문자답하여 글을 짓고, 작은 차자(箚子)에 기록하여 이를 품고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이 근자에 도성에 들어와 주상의 명을 받들어 살펴본즉, 종묘와 사직은 폐허가 되었고 삼궐(三闕)[23]은 모두 매몰되었으며, 100만이 사는 도성이 풀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신은 가슴이 꽉 막히어[24]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외람되이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예로부터 국가가 늘 평안할 수만은 없으며, 지기(地氣)가 성했다가 쇠한다는 말 또한 나라의 안녕·불안과 암암리에 부합되는 바가 있으니, 비단 사람 일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 지금의 한양이 땅의 지기가 이미 쇠해져서 더 이상 도성이 될 수는 없다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논자가 말했다.

‘지기설이란 결코 높고 심원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일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 알 수 있지요. 지금 도성 안을 살펴보면 밥 짓는 연기가 사라지고 근심과 참담한 기운이 뒤덮고 있어서, 흡사 옛날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데 땅의 기운인들 어찌 다시 왕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옛 말에 전란을 치러 무덤이 가득한 땅에 진을 치고 주둔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사람과 귀신이 한 곳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을 치고 주둔하는 것도 또한 불가한데, 하물며 제왕이 머무는 궁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양이 도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或者以爲: ‘宗舊都, 今不可輕棄.’ 說者曰: ‘帝王宅都何常? 或因事而

---

는데, 다음과 같다. “평평한 한 길에는, 무성한 풀이 가득하네.(踧踧周道, 鞫爲茂草)”

23) 삼궐: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을 말한다.

24) 속이……답답했으나: 원문은 ‘중심여열(中心如壎)’로 『시경(詩經)』「왕풍(王風)、서리(黍離)」에 나오는 말이다. “걸음걸이 맥없고, 마음 속은 막히는 듯하네(行邁靡靡, 中心如壎).”

遷, 或以天下大事而遷. 炎帝初都于陳, 後徙曲沃, 此則其由不可考. 而商湯初都于亳, 厥後河亶甲遷桐, 祖乙居耿, 盤庚復遷于亳, 此則以水災而遷者也. 漢祖初都于長安, 光武中興移都于洛陽. 大明太祖定鼎金陵, 太宗移都于順天府, 至今不復南還. 此則以天下之大勢而遷者也, 地氣旺衰之說, 亦竝行于其間. 豈可以祖宗舊都, 而不可遷徙耶?' 或者以爲:'然則然矣, 今之地氣, 旺在何地耶?' 說者曰:'地氣之說, 實涉茫昧, 不可考出, 然而此不可以他道求之, 當觀人心所同. 今者漢陽則已矣. 如畿甸之松都, 關西之浿都, 湖右之新都, 槪皆帝王宅都之地. 所謂新都者, 實在鷄龍山下, 我太祖占此地, 嘗欲建都, 築城基址, 至今猶存. 蓋對松京舊都, 而至今猶稱新都. 豈當時漢陽地氣方旺, 未遑都此, 而留待二百年之後, 以基我神孫億萬年無疆之赫業耶? 以此等數處, 先試人謀, 國人皆曰可云, 則人心大同, 此固上吉之地, 而地氣之旺, 亦因此可占.'

혹자가 말했다.

'조종께서 정한 옛 도읍지를 지금 함부로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논자가 말했다.

'제왕 정한 도읍이라고 변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사소한 일로 옮길 수도 있고, 혹은 천하의 대사 때문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염제(炎帝)[25]는 진(陳) 땅에 처음 도읍을 세웠다가 후에 곡요현(曲沃縣)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고증할 길 없습니다. 또 상(商)나라 탕(湯)[26]

25) 염제(炎帝): 중국 태고의 전설적인 제왕. 원래 남방에 위치해서 여름을 지배하는 관념적인 신격이었다고 생각된다. 오행사상에서 '화(火)'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점에서 삼황(三皇)의 일인인 신농(神農)과 결부되어서 염제 신농씨라고 불리며, 복희(伏羲)와 황제(黃帝) 사이에 들어가는 제왕으로서 역사화되었다. 성은 강(姜). 어머니 여등(女登)은 신룡(神龍)에 감화받아서 그를 낳고, 인신으로서 소의 머리를 하였다고 한다. 성덕이 있어서 제위에 오르자 진(陳)으로 수도를 정하고, 농기구를 발명해서 곡물을 심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시장 제도를 창시하는 등 민생의 안정에 노력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진(陳)에서 살다가 곡부(曲阜, 지금의 산둥성 취푸현 쪽)로 옮겼다는 설이 있다.

임금은 처음에 박(亳) 땅에 도읍을 세웠지만, 그의 후손 하단갑(河亶甲)[27]은 동(桐) 땅으로 도읍을 옮겼고, 조을(祖乙)[28]은 경(耿)에 거했으며, 반경(盤庚)[29]에 와서 다시 박(亳)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이것은

---

26) 탕(湯): 전설상의 중국 상고(上古)시대에 상나라를 세워 태평성대를 이끈 현명한 군주로서 유가(儒家)에서 성인(聖人)으로 받들어지는 인물이다. 제곡(帝嚳)의 아들 설(契)의 14세(世) 자손으로서 성(姓)은 자(子),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이다. 하(夏)나라 말엽 상족(商族)의 우두머리로서 어진 정치로 백성의 지지를 얻어 폭군 걸(桀)을 내쫓고 상나라를 건립하고 박(亳) 땅에 도읍을 정했다.

27) 하단갑(河亶甲): 중국 상나라의 제12대 왕으로, 성은 자(子)이며, 이름은 기록에 따라 하단갑(河亶甲)이나 전갑(戔甲)으로 전해진다. 하단갑이라는 이름은 태어난 날의 천간(天干)이 갑일(甲日)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중국 상(商)나라의 제9대 왕인 태무(太戊)의 아들이자, 제10대 왕인 중정(中丁)과 제11대 왕인 외임(外壬)의 동생이다. 하단갑은 형 외임이 죽은 뒤에 왕위에 올랐다. 하단갑은 왕위에 오른 뒤에 도읍을 오[隞, 지금의 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鄭州市)]에서 상[相, 지금의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陽市) 네이황현(內黃縣)]으로 천도했다. 이는 제10대 중정 때에 박(亳)에서 오(隞)로 도읍을 옮긴 뒤 2대 만에 다시 천도를 한 것인데, 당시 상나라가 지배층의 내분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기(史記)』「은본기(殷本紀)」에는 상나라가 제10대 중정 이후 적자 계승이 폐지되고 왕실의 자제들이 왕위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이 9대에 걸쳐 계속되면서 제후들이 조회하러 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단갑이 죽은 뒤에는 아들인 조을(祖乙)이 왕위를 이었다.

28) 조을(祖乙): 중국 상나라의 제13대 왕으로, 성은 자(子)이며, 이름은 기록에 따라 조을(祖乙)이나 차을(且乙)로 전해진다. 조을이라는 이름은 태어난 날의 천간(天干)이 을일(乙日)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죽서기년(竹書紀年)』에는 중종(中宗)이라는 묘호(廟號)로도 부르고 있다. 『사기』「은본기(殷本紀)」에는 중국 상(商)나라의 제12대 왕인 하단갑(河亶甲)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갑골문에는 제10대 왕인 중정(中丁)의 아들로 되어 있다. 조을은 하단갑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왕위에 오른 뒤에 도읍을 상(相)에서 경(邢)으로 옮겼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는 '경(邢)'을 '경(耿)'으로 읽고 쓰기도 한다며, 지금의 산시성(山西省) 허진시(河津市) 지역을 가리킨다고 기록되어 있다. 상나라는 제10대 중정 때에 박(亳)에서 오(隞/囂)로 도읍을 옮겼고, 제12대 하단갑 때에 다시 상(相)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조을 때에 다시 도읍을 옮겨 4대에 걸쳐 3번이나 천도를 했는데, 이는 당시 상나라가 지배층의 내분으로 매우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29) 반경(盤庚): 중국 상나라의 제19대 왕으로, 성은 자(子)이며, 반경이라는 이름은 태어난 날의 천간(天干)이 경일(庚日)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수재 때문에 옮긴 경우입니다. 한나라는 고조는 장안에 처음 도읍을 세웠으나, 광무제 때 나라가 중흥하면서 낙양(洛陽)으로 천도했습니다. 명나라는 태조가 금릉(金陵: 지금의 남경)에 도읍을 세웠으나, 태종 때 와서 순천부(順天府: 지금의 북경)로 도읍을 옮긴 뒤 지금까지도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대세에 따라서 옮긴 경우인데, 지기에는 왕성할 때도 쇠할 때도 있다는 학설 또한 그 사이에서 작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조종께서 세운 옛 도읍이라 해서 천도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가 말했다.

'그건 그렇소만, 지금의 지기로 봐서 지기가 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논자가 말했다.

'지기설이란 실제 막연해서 고찰할 길이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길이 없고, 마땅히 민심이 모이는 바를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한양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컨대 기전(畿甸: 경기도)의 송도(松都: 지금의 개성), 관서(關西: 평안도)의 패도(浿都: 지금의 평양), 호우(湖右: 충청도)의 신도(新都)[30]가 대략 제왕의 도읍지에 해당합니다. 신

---

중국 상(商)나라의 제16대 왕인 조정(祖丁)의 아들이자 제18대 왕인 양갑(陽甲)의 동생이며, 제20대와 제21대 왕인 소신(小辛)과 소을(小乙)의 형이다. 반경은 형인 양갑이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반경은 탕왕(湯王) 때의 도읍인 박(亳)으로 다시 천도를 하고, 혼란스러운 정치를 바로잡으려 했다. 상나라는 제10대 왕인 중정(中丁) 때에 오(隞)로 천도한 뒤에 제12대 왕인 하단갑(河亶甲)과 제13대 왕인 조을(祖乙) 때에 상(相)과 경(耿)으로 잇달아 도읍을 옮겼다. 그러다 반경 때에 다시 황허 남쪽의 박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려 한 것이다. 『사기』「은본기」'에는 이미 다섯 차례나 천도를 했기 때문에 상나라 백성들은 걱정과 원망을 하며 천도에 반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반경이 제후와 대신들에게 탕왕의 정치를 본받아야 한다고 설득해 천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허난성(河南省) 안양(安陽) 지역으로 도읍을 옮긴 반경은 도읍인 박(亳)을 다시 정돈하고 그곳을 '은(殷)'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오늘날 상나라 시대의 유적지인 은허(殷墟)가 발견된 곳으로 상나라를 '은나라'로도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30) 신도(新都): 신도안은 계룡산(鷄龍山) 남쪽 지역의 지명으로 신도 '내(內)'를 한글로 '안'이라 쓴 것이며, 한자로 안(安)을 쓰기도 한다. 신도는 『정

도는 계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태조께서 이 땅을 점찍고는 일찍이 도읍을 세우려고 성을 쌓고 터를 닦았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개성[31]을 구도(舊都)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여전히 신도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혹 당시 한양의 지기가 왕성해서 미처 이곳에 도읍을 세우지 못하다가, 200년 지난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무궁무진한 위업의 터전으로 삼게 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백성들이 모두 가하다고 한다면, 곧 민심이 크게 모이는 곳이니, 이야말로 최고로 길한 땅입니다. 지기의 왕성함은 이로써 점쳐볼 수 있지요.'

或者以爲:'地氣之說, 著於何書, 而國人有曉解者耶?'說者曰:'其說果耳. 時人未聞有解之者, 然而中朝則有金陵王氣之說, 我國則有鷄嶺靑松之說, 此類非一, 皆可考也.'或者以爲:'干戈蕩敗之餘, 定都功役, 不可遽興, 舊都尙不可, 況新都耶?'說者以爲:'漢陽殘破尤甚. 除城郭宮闕閭閻, 蕩無餘存, 功役之興, 何分於新舊耶? 役民興功, 此果非時, 決不可爲也. 然而宗社及王宮正殿, 雖用民力, 不可廢者也. 而須待賊平, 一以茅茨土階爲心, 便宜從事, 不煩民力, 則亦可爲也. 古之帝王中興者有之, 不蔽風雨, 露坐原野, 寧有是道耶? 或用價布, 貿材貿力, 兼活飢民, 則此固便宜之一段也.'

혹자가 말했다.

'지기설이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나라 사람 가운데 이를 이

---

감록(鄭鑑錄)』에 나오는 정씨왕국(鄭氏王國)의 신 도읍지로 유명하다. 신도안 중심부에 있었던 대궐 터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무학대사(無學大師)와 정도전(鄭道傳)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공사했다는 주춧돌과 제방의 흔적이 1983년 이 지역 재개발사업 이전까지도 남아 있었다. 또한 이곳은 풍수지리(風水地理)로도 빼어난 길지(吉地)일 뿐 아니라 정감록 신앙과 새 왕국 건설의 기지라는 믿음으로 많은 신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다.

31) 개성: 원문은 '송경(松京)'으로, 조선시대 이후로 송악산(松嶽山) 밑에 있던 서울, 즉 개성을 뜻한다.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논자가 말했다.

'지기설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중국에는 금릉(金陵)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계령(鷄嶺)과 청송(靑松)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런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며 모두 고증할 수 있습니다.'

혹자가 말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뒤에 도성 정비하는 공사를 급히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구도도 도리어 불가한데 하물며 신도 공사라니요?'

논자가 말했다.

'피폐된 정도가 한양이 가장 심합니다. 성곽, 궁궐, 여염의 인가를 제외하고는 남김없이 씻긴들 무너졌는데, 공사를 일으키는 일에 어찌 신구의 구분이 있단 말입니까? 백성들을 부려 공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진실로 때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종묘사직과 왕궁, 정전이라면 모름지기 인력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름지기 적이 평정될 때까지 오로지 소박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32] 상황에 맞게 일을 벌여 인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해볼 만한 일입니다. 옛날에 나라를 중흥시킨 제왕 이 몇몇 있었지만, 비바람 맞으며 들판에서 노숙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가포(價布)[33]를 풀어 목재와 인력을 사들여 주린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이야말로 진실로 지금 상황에 맞는 방편일 것입니다.'

---

32) 오로지……마음으로: 원문은 '모자토계(茅茨土階)'로, 『사기(史記)』「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나오는 말이다. 모자불전(茅茨不剪)은 띠로 지붕을 이고 끝을 가지런히 베지 않은 것이고, 토계삼등(土階三等)은 흙으로 쌓은 계단이 세 계단이라는 뜻으로, 요순(堯舜)의 검소했던 생활을 표현한 말이다.

33) 가포(價布): 조선 시대, 부역에 나가지 않는 부역 대신 군포(軍布)에 기준하여 바치는 베를 이르던 말이다.

或者以爲:‘松都浿都，皆在西北一隅之偏，新都則西北亦遠，有違帝王宅中圖治之意也.’說者曰:‘此固然矣. 然而意者，王氣之地，例爲帝王宅都，何有於東西南北遠近中道耶? 漢之東西都，皇明之南北京，亦可見矣.’或者以爲:‘然則遷都之後，漢陽舊都，何以處之耶?’說者曰:‘此是祖宗二百年相傳宅都之地，宗廟社稷遺基在焉，事體極重，豈無處置之道耶? 命一大臣，留以守之，綏定人心，一依古昔留守留後之制，則可矣.’

혹자가 말했다.

‘개성과 평양은 모두 서북쪽 한쪽 구석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신도가 서북에서도 멀리 있다면, 제왕이 나라의 중앙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뜻에 어긋날 것입니다.’

논자가 말했다.

‘진실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 왕기가 서려 있는 땅이라면 모두 제왕의 도읍이 될 수 있으니, 동서남북이니, 원근이니, 가운데이니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나라 때의 장안과 낙양, 명나라 때의 남경과 북경에서도 이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혹자가 말했다.

‘천도 이후에 구도인 한양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논자가 말했다.

‘이곳은 조선 왕조 200년 동안 도읍으로 전해 내려온 땅이자, 종묘사직의 기초가 있는 곳으로,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곳인데, 설마하니 처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대신 한 명을 이곳에 남겨 다스리게 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이전의 유수(留守)나 유후(留後)[34] 제도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

34) 유수(留守)나 유후(留後): 고려와 조선시대 때에 수도 이외의 옛 도읍지나 국왕의 행궁이 있던 곳 및 군사적인 요지에 두었던 유수부의 관직을 말한다.

臣今合兩說而觀之, 則說者之言, 似不爲無見. 然而此事所關重大, 豈可以一夫之見, 遽爲取施耶? 伏望以此下問大臣竝及卿士大夫, 以至庶民. 詢謀僉同然後, 又斷自聖衷, 不勝幸甚. 惶恐敢啓. 取進止.

신이 지금 양측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본즉 논자의 말이 허무맹랑한 의견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로 중대한 사안이니, 어찌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급히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대신들과 경사대부 및 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문해 보시길 엎드려 바라옵니다. 물어보고 의논해 보시어 모두가 찬성한 연후에 다시 성총(聖聰)으로 판단해 주신다면 크나큰 다행이겠나이다. 이에 황송함을 무릅쓰고 감히 계를 올렸습니다. 삼가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

右箚記出, 後更思之, 門寇未退遽說移都, 似乎非時. 且移都事體重大, 未可輕易論之故, 未果入啓. 厥後社稷舊壇及位版奉審後啓曰:

"臣陪行東宮復命後, 始得奉審社稷遺墟, 則舊壇猶存, 而間架垣墻, 兵火之餘, 殘破殆盡. 臣中心如壎, 不敢出聲而哭. 卽聞該曹, 因右贊成崔滉書啓, 修營事已爲公事啓下云. 仍取該曹公事見之, 則實在二月日, 而至今未見修役. 恐是經亂之後, 物力蕩盡, 該曹雖欲擧行而未及也. 臣仍彌日周迴奉審, 則有頃處甚多, 若於一時竝擧, 則力役恐有所難辦. 且祖廟未修, 先擧社壇間架, 一一修營, 則或疑其非時. 臣意以爲, 姑令先就其中最急不得已先擧處外, 惟俟賊平亂定, 祖廟修完之日, 同時竝擧, 以復祖宗之舊, 則恐合時宜.

이상의 차자를 작성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니, 문 앞의 오랑캐가 물러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천도를 언급하는 것이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또한 천도라는 일 자체가 중대하고, 함부로 논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장계를 올리지 않았다. 그 뒤로 주상의 명을 받들어 종묘사직의 예전 제단과 위패[35]를 살펴본 뒤에 계를 올렸다.

35) 위패: 원문은 '위판(位版)'으로, 단(壇), 묘(廟), 원(院)에 모셔두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말한다.

“신이 동궁을 배행하여 복명한 뒤에 비로소 주상의 명을 받들어 사직의 유지를 살펴보니, 예전의 제단은 그래도 남아 있었지만, 그 뼈대와 담장은 전화의 여파로 파괴되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에 신은 가슴이 꽉 막혀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곧장 해당 관서에 알렸더니, 우찬성 최황(崔滉)이 올린 서계(書啓) 덕분에 보수 공사가 이미 공문화되어 재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관아의 공문을 가져와서 보았더니, 2월에 그런 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공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병란을 겪은 뒤라 물자가 다 떨어져 해당 관서에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신이 하루 종일 돌며 살펴보았는데, 훼손된 곳이 많아 일시에 일을 진행하려면 아마도 일꾼을 구하기 어려울 듯 했습니다. 또한 종묘가 채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단의 뼈대를 먼저 일일이 수리하는 것은 때가 아닌 듯했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가장 시급하여 부득이하게 먼저 공사를 해야 할 곳 외에는 왜란이 평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종묘가 수리되는 날, 동시에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종의 옛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듯하옵니다.

臣奉審有頃處, 謹一一開錄緩急分等, 注脚其下, 付標其上, 入啓取稟. 且長興君家位版奉安之處, 臣同日竝爲奉審, 則設壇之處, 果爲未安, 正如崔滉啓辭, 冀令該曹多定軍夫, 神室及間架, 爲先修葺. 及天未寒, 刻期畢役. 仍卽擇日, 奉安位版, 什物竝令移置. 但位版奉安, 則守護最關. 而本署典僕, 兵亂之後, 一無存者, 新舍守僕, 只有四口, 似難以此守護. 別定守護軍人事, 奉承傳于該曹何如? 臣職忝兼帶本署提調, 年前出使龍灣, 久未復命. 京師已復, 車駕初旋, 本署提調不可退在, 故謹具由狀啓請遞, 而厥後路上, 奉承聖旨. 臣入城翌日, 卽發南下, 陪東宮行, 今始入京. 惶恐敢啓云. 是九月初十日也.

신이 주상의 명을 받들어 훼손된 곳을 조사하고, 삼가 일일이 보수가 시급한 곳과 천천히 해도 될 곳을 나누어 기록해 그 아래에 설명을 달고, 그 위에 표지를 붙인 뒤[36] 계를 올리고 품고했습니다. 또한 신

이 왕실의 위패를 모셔둔 장흥군(長興君)[37]의 집을 살펴보았더니, 제단을 세웠던 곳이 최황의 계문에서 말한 대로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에, 해당 관서에서 군부(軍夫)를 많이 배정하여 신실(神室)과 뼈대를 우선 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날이 추워지기 전에 기한을 정해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이어서 곧장 택일하여 위패를 봉안하고 집기 등도 모두 옮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위패 봉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보호입니다. 그러나 사직서의 담당 노복[38] 중 병란 후에 생존한 자가 한 명도 없고, 새로운 관사를 지키는 노복도 네 명밖에 없어서 이들로는 위패를 잘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패 지키는 군사를 따로 배정하여, 명을 받들어 해당 관서에 전담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외람되이 사직서 제조의 직을 겸하고 있는데, 작년에 용만(龍灣)으로 사신 나가 오랫동안 복명하지 못했습니다. 도성이 수복되고 어가가 막 돌아온 뒤였지만, 사직서 제조란 오래 비워둬서는 안 되는 자리기에, 삼가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려 체직(遞職)을 청했는데, 그 뒤에 도중에 성지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성으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곧장 남쪽으로 출발해 동궁을 배행했다가, 이제야 도성에 들어오게 되었기에 황송함을 무릅쓰고 감히 장계를 올리옵니다.”
때는 9월 초10일이었다.

同日奉審單子竝入啓以爲:
“社稷二壇, 大槪完全, 而近南丙地石築, 四尺量退落, 擇日修補次. 神室一間棟柱, 上蓋猶存, 而三面全壁, 一面箭門全無, 爲先修補. 正配四位版擇日奉安. 次內壇四門全無, 外壝六門全無, 內灰墻樑, 一面完而

36) 표지를 …… 뒤: 원문은 ‘부표(付標)’로, 문서 가운데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에 표지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37) 장흥군(長興君): 제9대 왕인 성종(成宗)의 13남인 영산군(寧山君) 이전(李恮)의 아들인 장흥군(長興君) 이상(李祥)을 말하는 듯하다.
38) 담당 노복: 원문은 ‘전복(典僕)’을 말한다. 조선 시대 각사(各司)와 시(寺), 성균관(成均館) 등에 딸려 음식을 만들거나 수직(守直) 혹은 건물을 짓는 등의 잡역을 맡아 하던 노복을 말한다.

三面全無. 外壝墻一處三間量頹毁, 蓋瓦則僅存十分之五. 神廚前後退三間棟柱上蓋猶存, 而一面門戶三箭窓全無, 及時修理. 次神井土石塡塞, 急須擇日修淨. 次宰牲廳前後廳三間全無, 如未及修造, 則臨時設帳幕. 次碓家三間全無, 及時造成. 次樂器庫前後退三間棟柱上蓋猶存, 而內壁門戶全無, 及時修補, 祭服、遮日、祭器等庫, 姑爲代用. 次獻官齊宿廳二間全無, 享官廳前後退三間, 諸執事廳前後退二十間, 祭服庫三間, 遮日庫.祭器庫三間以上五處, 無一間餘在. 祭服庫、遮日庫、祭器庫則修補, 樂器庫權用, 享官廳.諸執事廳則以本署旁近空家, 修葺用之似當. 典祀廳垣墻五十尺量一處, 或十尺量一處, 或五尺量二處破壞. 守僕房二間全無, 大門前後退三間全無, 外垣墻退落甚多. 臣奉審處, 大槪如此. 其中最先修補而不可闕處, 謹一一付標注脚. 第惟邦家再造, 宗社修舊, 事體極重, 請以臣之啓辭及奉審單子, 竝下示大臣及該曹, 使之改奉審, 參詳增損, 定奪施行事.”
蒙允.

같은 날, 명을 받들어 살펴본 단자(單子)도 함께 계에 넣어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은 대체적으로 완전해졌으나, 남쪽 가까운 병지(丙地)의 석축(石築: 돌담)이 4척 정도 떨어져 나갔으니 택일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신실(神室) 한 칸의 기둥과 지붕이 남아 있고, 삼면의 벽은 온전하나 한쪽 면의 살문[39]이 전혀 없으니,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정배(正配)[40] 네 명의 위패는 택일하여 봉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단(內壇) 네 개의 문은 전무하고, 외유(外壝) 여섯 개의 문도 전무하며, 안쪽 회칠한 담장의 들보는 한 면은 완전하나 삼면이 전혀 없습니다. 외유의 담장 한 곳은 3칸 정도가 무너져 있고,

39) 살문: 원문은 ‘전문(箭門)’으로, 살을 가로세로로 넣어서 짠 문을 말한다.
40) 정배(正配):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맞이한 아내를 말한다. 봉증(封贈)제도에 따르면, 국왕의 정배(正配)는 비(妃)라 칭하고, 세자의 정배는 빈(嬪)이라 칭하며, 왕자들의 정배는 옹주(翁主)라 하고 국왕의 딸은 궁주(宮主)라 칭한다.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 『국역 고려사』, 경인문화사, 2011년.

기와는 겨우 10분의 5만 남아 있습니다. 신주(神廚)[41] 전후퇴(前後退)[42] 3칸은 기둥과 지붕은 남아 있으나, 한 면의 문과 세 개의 살창[43]이 전혀 없으므로 제때에 수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정(神井)은 돌과 흙으로 막혀져 있으니, 급히 택일하여 깨끗하게 고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생청(宰牲廳)[44]의 건물과 앞뒤 건물 3칸이 전무하니, 만일 미처 수리하여 세우지 못하면 임시로라도 장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앗간 3칸은 전무하니 제때에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악기고(樂器庫) 전후퇴 3칸의 기둥과 지붕은 남아 있으나 내벽과 문이 전혀 없으니, 제때에 보수하고 제복(祭服)、차일(遮日)、제기 등의 창고로서 잠시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헌관(獻官)[45]의 제숙청(齊宿廳) 2칸은 전혀 없고, 향관청(享官廳)[46] 전후퇴 3칸, 제집사청(諸執事廳) 전후퇴 20칸, 제복고(祭服庫) 3칸, 차일고(遮日庫), 제기고(祭器庫) 3칸, 이상 다섯 곳은 한 칸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복고, 차일고, 제기고는 수리 보수하되, 악기고를 잠시 사용하고, 향관청과 제집사청은 본 관청의 옆에 있는 빈 집을 수리 보수하여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청(典祀廳)[47] 담장 50자 가량 한 곳, 10자

---

41) 신주(神廚): 국가에서 종묘나 능(陵), 또는 악(嶽).해(海).독(瀆).산천(山川)의 단묘(壇廟)에서 제사를 올릴 때, 신(神)에게 바칠 음식을 조리하는 곳을 말한다.『한국고전용어사전』

42) 전후퇴(前後退): 집채의 앞뒤로 다른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을 말한다.

43) 살창: 원문은 '전창(箭窓)'으로, 창이나 문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울거미 속에 얇은 살대로 짜 만든 창호를 지칭한다. 김왕직,『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년

44) 재생정(宰牲亭): 사직단에는 따로 쌓은 담장 속에 사직단에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여러 건물들인 제기고(祭器庫).재생정(宰牲亭).악기고(樂器庫).차장고(遮帳庫) 등이 건립되어 있다.

45) 헌관(獻官):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임명되는 제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을 대표해 잔을 드리는 사람으로,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으로 나눠지며,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 격인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행하는 제사에 왕이 친제(親祭)하는 경우에는 왕이 초헌관이 된다.『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46) 향관청(享官廳): 문묘(文廟) 향사(享祀) 때 헌관(獻官) 및 제집사(諸執事)들이 거처하며 심신을 청재(淸齋)하는 장소를 말한다.『태학지(太學志)』

가량 한 곳, 5자 가량 두 곳이 무너졌습니다. 수복방(守僕房)[48] 2칸이 전혀 없고 대문(大門) 전후퇴 3칸이 전혀 없으며, 바깥 담장은 무너져 내린 곳이 많습니다.

신이 주상의 명을 받들어 살펴본 것은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수리·보수하고 빠뜨려서는 안 될 곳은 삼가 일일이 표지를 붙이고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나라가 재조(再造)[49]되어 낡고 오래된 종묘사직을 보수하는 일 자체가 아주 중요하오니, 청컨대 신이 올린 계사(啓辭)와 명을 받들어 살펴본 뒤 작성한 단자를 대신들과 해당 관청에 아울러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살펴보게 해서 상세히 참작해서 규모를 확정하시어 시행하시기를 청합니다."

윤허를 받았다.

後二日又啓曰:

"臣嘗職忝兼帶社稷署提調. 當賊勢滔天, 大駕西幸, 行至寧邊府, 東宮承命上殿, 廟社主陪行, 臣亦從之. 路向迤北, 東移西轉, 往及關東海西數路之間, 仍至逾年, 東宮後會上殿侍膳, 廟社主奉安于大駕駐所. 臣實終始陪行, 不敢一日落後. 後至江西, 大駕自江西移蹕海州, 東宮從之, 臣則承命出使龍灣, 餞慰大小唐官, 久未復命. 聞上從廟社主, 自海州還京都. 臣意以爲, 此時社稷署提調, 不可退在朝廷, 已必改差, 而厥後聞之, 不改仍存, 臣乃始具由馳啓請遞, 而亦未見回下之命.

臣在龍灣, 竣事將還, 會因司天使不意出來, 權稱遠接使, 隨歸

47) 전사청(典祀廳):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종묘나 문묘, 기타 전각이 있는 곳에는 제례 때 전사관(典祀官)이 집무하면서 제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하는 장소이다.

48) 수복방(守僕房): 종묘, 왕릉 등을 관리하거나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내던 곳을 말한다.

49) 재조(再造): 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의 도움으로 조선을 지켰다는 당대인들의 인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신흠(申欽)의 후손 신경(申炅)이 명나라 군대의 활동을 적은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는 이러한 용례를 대표한다.

京師未至, 而中路奉承聖旨, 命臣陪東宮行南下. 臣卽倍道入京後, 命仍卽下直. 其翌日卽發行南下, 亦未聞有遞改之命, 往從東宮之行. 仍至換歲, 前後朝報中, 亦未有見出. 臣今陪東宮行入京, 本曹郎僚見臣, 而亦未及此事, 蓋亦實所不知而不言. 臣意以爲, 猶存不改, 不勝驚惶. 卽與郎僚, 謹詣社稷舊壇, 奉審彌日, 竝審其位版奉安之所. 凡係有頓處, 謹具由開錄, 啓稟蒙允矣. 臣昨曉憑人, 偶聞兼帶已遞云, 卽取該曹置簿相考, 果是已於前冬, 該曹因臣馳啓, 臣亦兼帶判義禁府事, 同時遞差矣.

意者其時似當卽有回下之命, 而恐是中路阻梗不達, 臣至今無由得聞. 臣仍竊伏念, 國家設官, 各有分職. 臣本署提調已爲遞改, 則厥後之事, 非所當更預, 而臣實不知, 致有顚錯至此. 臣卽將詣闕, 具由待罪, 而日暮未果. 不意伏聞昨政, 吏曹以臣擬望本署提調, 至於受點云. 臣實不辭妄冒之罪, 而嚴譴不加, 恩除反加, 臣不勝感懼, 措躬無地, 惶恐敢啓." 上答曰: "勿爲惶恐."

時萬曆二十二年甲午季秋也.

이틀 뒤에 다시 계를 올렸다.

"신이 일찍이 외람되게도 사직서 제조직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왜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 주상께서 서쪽으로 몽진하여 영변부에 이르셨고, 동궁께서는 주상의 명으로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떠나게 되었는데, 신 또한 동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을 향해 가다가 동으로 서로, 관동(關東)과 해서(海西)의 이곳저곳을 오가며 해를 넘기고서야 동궁께서 주상을 만나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주상 계시는 곳에 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은 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궁을 모시고 다니면서 감히 단 하루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강서에 이르렀을 때, 주상께서 강서에서 해주로 떠나시고, 동궁께서도 따라가셨는데, 신은 주상의 명을 받들어 용만으로 가서 명나라 대소 신료들을 전별하고 위로하느라 오랫동안 복명하지 못했습니다.

주상께서 종묘사직의 신주를 모시고 해주에서 도성으로 돌아오셨

다는 소식을 듣고, 신은 사직서 제조가 조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므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기에, 신이 비로소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려 체직을 청했으나 주상의 하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용만에서 일을 마치고 도성으로 돌아올 즈음에 때마침 사천사(司天使)가 뜻밖에 이 나라로 오는 바람에, 신은 임시 원접사가 되어 그를 모시고 도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성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동궁을 모시고 남하하라는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신은 그 길로 걸음을 재촉하여 도성으로 들어온 뒤에 복명하고 바로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튿날 즉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체직한다는 명을 받들지 못한 채 동궁의 행차를 따라갔습니다. 다시 해가 바뀌었으나, 앞뒤로 발행된 조보(朝報)[50]에서도 그러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은 지금 동궁을 모시고 도성으로 돌아왔으나, 사직서의 낭관들이 신을 보고도 역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신은 아직도 사직서 제조로 있으며, 관직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고 속으로 놀라움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이에 곧장 낭관들과 함께 삼가 예전의 종묘사직에 가서 하루 종일 살펴보고, 또 위패를 봉안할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무릇 훼손된 곳은 삼가 사유를 갖추어 기록하고 품고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신은 어제 새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겸임직이 이미 체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곧장 해당 관청의 장부를 가져와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미 지난겨울에 해당 관청에서 신의 처지를 생각해 이미 계를 올렸고, 신이 겸임하고 있던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직도 동시에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그때 바로 주상의 하명이 있었으나, 아마도 중간에 길이 막혀 전달되지 못해 신이 지금까지 들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50) 조보(朝報):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이어 신이 사사로이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나라에서 관직을 둠에 각자 맡은 바 직무가 있습니다. 신은 사직서 제조에서 이미 교체되었으니, 그 뒤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신이 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신이 곧장 대궐에 나아가 사유를 갖추어 올리고 죄를 청하려고 했으나, 날이 저물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조정 논의에서 이조(吏曹)에서 신을 사직서 제조로 추천해[51] 낙점(落點)[52]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신은 조정을 기망한 죄를 무릅썼거늘, 벌조차 받지 않고 도리어 관직에 제수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감격스러움과 두려운 마음을 이길 길이 없어 몸 둘 바를 모르겠기에, 황공해하며 감히 아뢰었나이다."

주상께서 답하시었다. "황공해 할 것 없다."

때는 만력 22년(1594) 갑오년 늦가을이었다.

時上以十條取士之目, 降于諸宰, 使之各擧所知, 琢入啓單子內.

"有才智識慮通曉兵法可堪將帥之任者, 則曰郭再佑, 有統禦才, 曰金德齡, 曰權仁龍. 有戡難才, 曰朴名賢, 有摧陷才, 曰朴仁龍, 曰李忠吉, 曰趙鵬, 曰具滉, 曰金遵悌, 曰金去病, 曰李天文, 曰殷命霖, 曰宋義龍, 曰申從壽, 皆有戰守才. 有學術識時務, 慈祥廉謹, 可以治民, 才堪守令者, 則曰洪慶臣, 曰李光胤. 有學術, 曰成浹, 識時務, 曰鄭基南, 精簡有才略, 曰韓伯溫. 有學行, 曰韓守謙, 性溫良, 曰安崇儉, 孝悌忠信, 曰吳長, 向學不怠, 曰曺明勖, 志學, 曰黃應淸, 曰金玄遇, 向善業學, 至老不怠. 有膽略善於言辭能奉使外國及出入賊中哨探動靜者, 則曰僧惟政. 居家孝悌爲一鄕矜式, 慷慨徇國可堪入官者, 則曰李璣玉, 曰梁克選, 曰琴應壎, 文章特異善於辭命者, 則曰洪春壽, 能文博言, 曰

---

51) 추천해: 원문은 '의망(擬望)'으로, 관원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52) 낙점(落點): 원문은 '수점(受點)'으로, 2품 이상의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후보자를 세 명씩 추천하여 올리면, 임금이 그 가운데에서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친필로 점을 찍어 내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丁景蘭, 辭藻精鍊, 曰李光胤, 文詞鍊磨, 曰洪慶臣, 文詞淸古. 有勇力善射, 或善用刀槍, 或能負重疾走, 或有膽氣不怕先登者, 則曰卞弘達, 能知稼穡之務, 勸民耕種, 辨燥濕之宜, 開墾荒廢作屯田者, 則曰李泳造, 曰成浹, 曰安夢說. 善於理財或煮海爲鹽, 或卽山鑄鐵, 能以此易彼, 變遷貿易, 商物販賣興利之用者, 則曰南瑞, 通算法善於會計, 調度軍食, 不失錙銖者, 則曰朴而直, 曰鄭象獻, 曰朴至仁. 有巧性能制造槍刀, 或曉解煮取焰焇, 能造鳥銃大小砲及守城器械者, 則曰南瑞."

이때 주상께서 선비를 등용하는 10개 조목을 재상들에게 내리시며, 각자 알고 있는 인재를 추천하라고 하시기에 나는 계(啓)를 올리고 단자도 함께 바쳤다.

"재주와 식견이 있고 병법에 통달해 장수의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곽재우(郭再佑)[53]가 있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으로는 김덕령(金德齡)과 권인룡(權仁龍)[54]이 있습니다. 난을 평정해 나가는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는 박명현(朴名賢)[55]이 있고, 적을 격파해서 함락

53) 곽재우(郭再佑: 1552~1617):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 경상남도 의령 출신. 1585년(선조 18) 34세의 나이로 별시(別試)의 정시(庭試) 2등으로 뽑혔다. 그러나 지은 글이 왕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발표한 지 수일만에 전방(全榜)을 파해 무효가 되었다. 그 뒤, 과거에 나갈 뜻을 포기하고 남강(南江)과 낙동강의 합류 지점인 기강(岐江: 거름강) 위 돈지(遯池)에 강사(江舍)를 짓고 평생을 은거할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 곳에 머문 지 3년 만인 1592년 4월 14일에 임진전쟁이 일어났고 관군이 대패하자, 같은 달 22일에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대신해 싸웠다. 그 공으로 같은 해 7월에 유곡찰방(幽谷察訪)에, 곧 이어 형조정랑에 제수되었다. 10월에는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승진해 조방장(助防將)을 겸했다. 이듬해 12월 성주목사에 임명되어 삼가(三嘉)의 악견산성(岳堅山城) 등 성지(城池) 수축에 열중하다가 1595년 진주목사로 전근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현풍가태(嘉泰)로 돌아왔다. 1597년 명나라와 일본간에 진행되던 강화 회담이 결렬되고 일본의 재침이 뚜렷해지자, 조정의 부름을 받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 경상좌도방어사로 현풍의 석문산성(石門山城)을 신축했다. 그러나 그 역(役)을 마치기도 전에 왜군이 침입해 8월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옮겨 성을 수비했다.

54) 권인룡(權仁龍):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별장(別將) 등을 역임했다.

55) 박명현(朴名賢): 조선 선조 때 이몽학의 난 때 홍주성을 지킨 무신이다.

시키는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는 박인룡(朴仁龍), 이충길(李忠吉), 조붕(趙鵬), 구황(具滉), 김준제(金遵悌), 김거병(金去病), 이천문(李天文), 은명림(殷命霖), 송의룡(宋義龍), 신종수(申從壽)가 있는데, 모두 싸워 지키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을 갖추고 있어 시무를 잘 알며, 자상하고 청렴하며 매사에 조심성이 있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으며, 재주가 한 고을의 수령을 맡을 만한 사람으로는 홍경신(洪慶臣)[56]과 이광윤(李光胤)[57]이 있습니다. 학술이 있는 사람으로는 성협(成浹)[58]이, 시무를 잘 아는 사람으로는 정기남(鄭基南)이, 선택이 탁월하고 지략이 있는 이로는 한백온(韓伯溫)이 있습니다. 학문과 덕행을 모두 갖춘 이로는 한수겸(韓守謙)이 있고, 성품이 온순하고 무던한 사람으로는 안숭검(安崇儉)이 있습니다. 효제와 충신으로는 오장(吳長)[59]이 있고, 식지 않는 향학열을 가지고 있는 이로는 조명욱(曺

56) 홍경신(洪慶臣: 1557~1623):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덕공(德公), 호는 녹문(鹿門). 1589년(선조 22) 사마양시에 합격하고, 내수사별제로 재직중 1594년(선조 2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수찬.세자시강원 겸 사서.전적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이 때 평안도의 수령을 다수 교체하였는데, 신임 수령으로서 병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는 자가 있자 그는 추수기의 절박한 사정을 들어 이들을 치죄할 것을 상소하였다. 1596년 정언이 된 뒤 1598년 응교가 되었다. 이 때 명나라 장수 진린(陳璘)의 접반사(接伴使)들이 접대를 이유로 열읍(列邑)으로부터 말과 각종 물품을 거두어들여 경의가도(京義街道) 연변에 어수선한 폐단이 심함을 들어 이들의 치죄를 상소하였다. 1609년(광해군 1) 호조참의가 되었고, 1621년 좌승지.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57) 이광윤(李光胤: 1564~?) 자는 극휴(克休). 호는 양서(讓西). 1585년에 진사가 되고 1594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부제학(副提學)을 지냈다. 초서(草書)로써 이름을 떨쳤다.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 이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58) 성협(成浹: 1556~1620): 성람(成覽). 성협은 그의 초명이다. 자는 사열(士悅), 호는 청죽(聽竹). 일찍부터 성리학에 뜻을 두어 형 성호(成浩)와 함께 남언경(南彦經)에게 수업하여 학문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이이(李珥).성혼(成渾)을 사사하였다.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성리학연구에 몰두하였고 의학에도 밝아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구언령(求言令)이 있을 때마다 수천 언으로 진소(陳疏)하였으며, 임진전쟁 후에는 처가인 상주에 거처하면서 조익(趙翊).정경세(鄭經世).이준(李埈) 등과 교유하였다. 벼슬은 효릉참봉(孝陵參奉)에 임명된 이래 공조좌랑.무주현감을 역임한 바 있다.

明勖)[60]이 있고, 학문에 뜻을 둔 이로는 황응청(黃應淸)[61]과 김현우(金玄遇)가 있는데, 늙도록 태만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담력과 지략을 갖추고 있으면서 언변에도 뛰어나 외국에 사신으로 가거나 적진에 출입하면서 그들의 동태를 정탐할 만한 이로는 승려 유정(惟政)

---

59) 오장(吳長: ?~1616).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익승(翼承), 호는 사호(思湖). 1592년(선조 25) 임진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우옹(金宇顒)의 천거로 장현광(張顯光)과 함께 발탁되었으나, 길이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1595년 진안현감이 되었다가 1610년(광해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관직은 정언(正言)을 거쳐, 경성판관을 지냈으며, 1613년영창대군(永昌大君)의 옥사와 폐모론을 둘러싸고 대북세력과 각축을 벌이다가 삭직당한 뒤 고향인 영남으로 퇴거하였다. 1614년영창대군의 처형을 공격하던 정온(鄭蘊)이 제주로 유배당하자, 영남의 유생들을 이끌고 반대상소를 하였다. 이로 인해 정인홍(鄭仁弘)의 미움을 사, 토산(兎山)으로 유배당하였으며 그곳에서 죽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문집으로 『사호집』을 남겼다. 인조반정 후 승지를 추증받았고, 산청의 서호사(西湖祠)에 제향되었다.

60) 조명욱(曺明勖: 1572~1637):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여우(汝偶), 호는 율촌(栗村). 1591년(선조 24) 사마시에 합격하고, 1605년 별제(別提)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검열.정언으로부터 벼슬을 시작하여 1606년 설서를 거쳐 사서.예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 등의 탄핵을 받아 경상도도사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정인홍 등의 탄핵으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갔다. 1610년(광해군 2) 경기도사가 되고, 그 뒤 수년간 수찬.교리.지평.장령.헌납 등 언관(言官)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1613년 수찬이 되어 정조(鄭造).윤인(尹訒) 등의 폐모론 주장을 극간하여 중지시키고 남양부사. 영천군수 등을 지냈다. 인조반정 이후 여러 외직을 역임하다가 1636년(인조 14) 이천부사가 되었을 때 병자호란을 당해서 왕을 남한산성으로 호종하다가 과로로 죽었다. 뒤에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61) 황응청(黃應淸):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청지(淸之), 호는 대해(大海). 1552년(명종 7)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독서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였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도를 닦으며 즐겼고, 학문을 깊고 세밀하게 연구하였다. 장원서별좌(掌苑署別座)로 있을 때 나라에서 학문과 인품을 훌륭히 여겨 높은 벼슬을 주려고 찾아갔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전쟁을 겪은 후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점점 퇴폐되어 가자 대궐에 가서 네 가지 시폐(時弊)를 상소하니, 선조(宣祖)가 달갑게 받아들이고 진보현감(眞寶縣監)을 제수하였다. 얼마 후에 벼슬을 버리고 귀가하여 명계(明溪)에 대해당(大海堂)을 세우고 조목(趙穆), 박성(朴惺), 이산해(李山海) 등과 교류하며 후진을 가르쳤다.

이 있습니다. 평소에 효제를 다하여 한 고을의 모범이 되며, 강개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관리를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이기옥(李璣玉)[62]、양극선(梁克選)、금응훈(琴應壎)[63]이 있고, 문장이 특별해 사령(辭令)에 뛰어난 사람으로는 홍춘수(洪春壽)[64]가 있고, 문장도 잘 짓고 다른 나라 말에 능통한 사람으로는 정경란(丁景蘭)이 있고, 문사가 정련한 이로는 이광윤(李光胤)이, 문사가 숙련된 이로는 홍경신(洪慶臣)이 있는데 문사가 청아하고 고상합니다. 용력이 있고 활을 잘 쏘면서 때로는 칼과 창을 잘 다루거나 혹은 무거운 것을 지고도 잘 달리거나 혹은 담력이 있으면서도 선봉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로는 변홍달(卞弘達)이 있고, 농사일을 잘 알아 백성들에게 밭 갈고 씨 부리는 일을 권면할 수 있고, 땅이 마른지 촉촉한지 그 적절함을 잘 분별해 내 황무지를 개간해 둔전(屯田)을 만들 수 있

62) 이기옥(李璣玉: 1566~1604):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의보(儀甫), 호는 두암(竇巖). 경상도 청도 출신. 자질이 총명하여 1584년(선조 17) 향시에서 장원하였다. 1589년 변사(邊涘)의 무고로 정여립(鄭汝立)의 옥사에 연루되어 이듬해 함경도 경성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생활을 하는 도중 관북의 시속.풍물.행사.신앙 등을 조사하여 『관북록(關北錄)』을 저술하였다.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특사되었고, 1596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정유재란 때에는 「친정소(親征疏)」를 올려 왕이 직접 전지에 나가 왜적의 불의를 토벌할 것을 청하였고, 화의가 진행될 때에는 중국 정강(靖康)의 고사를 들어 강화를 반대하였다. 1599년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으로 옮겼다가 얼마 뒤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왔다.

63) 금응훈(琴應壎: 1540~1616):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훈지(壎之), 호는 면진재(勉進齋). 1570년(선조 3) 사마시에 합격, 1594년 학행에 의하여 영의정 유성룡 등의 천거를 받아 종묘서부봉사(宗廟署副奉事)에 제수되었다. 그 뒤 영춘현감과 양천현감 등을 역임하고 1601년 의흥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유성룡과 조목의 요청에 따라 사직하고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간행실무자로 참여하였다. 외관시에는 선정으로 명망이 높았고, 퇴관해서는 후진교육에 전력해 큰 성과가 있었다.

64) 홍춘수(洪春壽):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하였다. 1564년(명종 19) 갑자(甲子) 식년시 을과(乙科) 3위로 급제하여 충순위에 임명되었다. 얼마 후 벼슬을 멀리하고 지금의 포천시 선단동에 은거하며 후세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으며, 왕방산 기슭인 선단리에서 산다고 하여 자신의 호를 '왕방산인'이라고 지었다.

는 이로는 이영조(李泳造), 성협(成浹), 안몽열(安夢說)이 있습니다. 이재에 밝아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거나 혹은 산에서 구리를 주조해 이것으로 저것을 바꾸고 변통하여 무역하고, 물건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면에 있는 쓸모 있는 자로는 남서(南瑞)가 있고, 셈에 밝아 회계를 잘해서 군량미를 조달하는데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자로는 박이직(朴而直)、정상헌(鄭象獻)、박지인(朴至仁)이 있습니다. 솜씨가 좋아 창과 칼을 잘 만들며 때로는 [군수물자인 화약의 원료] 염초(焰焇)를 구워 만드는 것을 잘 알아서 조총, 크고 작은 대포 및 성을 지키는 무기들을 제조할 수 있는 이로는 남서가 있습니다."

仍啓曰:
"臣謹就其十條中, 收拾見聞, 開列如右. 而人之才料, 或優於厥條內所稱, 且或有所不逮者, 各人名下, 皆有注脚, 以記其實. 此外或有不可以一藝名者, 准條輒錄, 亦不避其疊記之煩. 如郭再佑等, 皆有守禦之才, 已有顯稱. 而至於金德齡, 則有大將才, 今方試用於戰陣, 而沈在下僚, 恐或用未盡才, 未得展盡抱負. 權仁龍則方在行伍中, 亦恐無有以識之者, 故各人名下, 槪擧爲人大段而表章之. 但竊伏念, 知人則哲, 聖人亦以爲難. 自以孤陋聞見, 於人才器局, 率易題品, 所不敢也. 而旣承下問, 跡涉有隱, 玆敢不避妄冒之罪, 煩瀆至此, 惶戰不已.

이어서 계를 올렸다.
"신이 삼가 10조목에 근거해 보고 들은 것을 잘 정리해서 이상과 같이 나열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재능은 그 조목 안에서 말한 것보다 나은 경우도 있고, 간혹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각 사람의 이름 아래에 주석을 달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간혹 한 가지 재주로 명명할 수 없는 경우에 조목에 의거해 그때마다 이름을 기록하여, 중첩되는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곽재우 등의 경우는 적을 방어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 김덕령의 경우는 대장군의 재주를 지니고 있어 지금 바야흐로 적진에서 그 재능을 떨치고 있으나, 하급

관리라는 신분에 막혀서 혹여나 그 재능을 다 쓰지 못해서 그 포부를 다 펼칠 수 없을까 걱정이옵니다. 권인룡의 경우는 지금 막 대열에 들어온 자라,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염려되어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 밑에 그 사람의 중요사항을 기록해 드러내 보였습니다. 다만 사사로이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지혜롭다.'[65]라고 했으니, 이는 성인도 어렵게 여기던 바였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인재의 기량에 대해 가벼이 품평하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문을 받고 숨기는 바가 있을까 저어되어 감히 기망죄를 무릅쓰고 성총을 어지럽혔기에 황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且時有與賊許和之說, 有或主之者, 琢草箚擬將入啓, 其辭以爲.
伏以朝議近有與賊許和之說, 蓋亦出於不得已之計也. 以臣之見, 則倭奴譎詐, 不可爲信, 不必多辭, 只以事勢言之. 則賊若捲甲退兵, 出在境上而云爾, 則猶之可也. 擁衆壓境, 若威脅然曰: '爾能與我和歟?'云, 則是實怯盟, 非可以爲和者也. 彼雖能以禮讓爲辭, 賊情難信, 況以怯盟, 終能有成乎? 我若一聽其和, 則將來之患, 有不可勝言? 倭奴所憚者舟師也, 而以和之故, 舟師不復措手. 陸兵致討, 雖或有可乘之勢, 以和之故, 亦不得有爲. 一聽其和, 將士之手, 一切신출자絆, 我勢日益孤危, 賊勢日益憑陵. 萬一虜復生心, 加我以非禮之禮, 不遜之語, 至或有必遣親王子爲質, 割地方許和等說, 恐喝威脅, 無所不至, 則不知朝廷將何以應之耶. 則一聽其和, 無益於爲和而反益爲患, 決不可信者也. 然而彼以講好爲辭, 而我若一切以大義絶之, 則亦非所以善謀國者也. 其在平時且不可, 況今我勢孤弱, 何可輕挑其怒, 以促其禍哉? 不如姑爲權辭以答之, 若曰.

---

65) 사람을……지혜롭다: 원문은 '지인즉철(知人則哲)'이다. 『서경(書經)』「고요모(皐陶謨)」에 보면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이니, 능히 벼슬을 줄 수 있다(知人則哲, 能官人)"가 있는데,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음을 말한다.

또한 그 때 왜군과의 강화설이 나돌았고, 간혹 이를 주장하는 자도 있었기에 나는 차자(箚子)를 써서 장차 계문을 올리려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자에 조정에서 왜군과의 강화설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것은 아마도 부득이한 중에 나온 계책일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왜군은 간교하고 거짓이 많은지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저런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의 형세만 놓고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 왜군이 무기를 내던지고 군대를 퇴각시킨 다음 국경 밖으로 나가 있으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을 이끌고 국경까지 밀어닥쳐서 위협하듯이 ‘우리와 화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이는 겁을 줘 맹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니, 화친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능히 예의 있게 말을 해도 왜군의 속내를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겁을 줘 맹약을 맺고자 한다면 어찌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한 번의 화친을 들어준다면, 장차 닥쳐올 화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왜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수군인데, 그들과 한 화친 때문에 수군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육군이 토벌하여 혹여 승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과 한 화친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번 화친을 들어주면 장군과 병사들의 손이 꽁꽁 묶여버리니, 우리 측의 전세가 날로 고립되어 위태로워지고 왜적의 전세는 날로 치솟을 것입니다. 만일 왜군이 다시 욕심을 내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과 불손한 말투로 필히 왕자를 보내 인질로 삼거나 땅을 할양해야 화친을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며 갖은 공갈과 협박을 다 한다면, 조정에서 장차 어떻게 응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번 그들의 화친을 들어주면 저들과 화해하는 데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 화가 될 터이니,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들이 화해를 청해 오는데 우리가 단칼에 대의로써 거절한다면, 이 역시 나라를 위한 좋은 계책은 아닐 것입니다. 평상시라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지금처럼 힘이 없고 고립된 상황에서 어찌 가벼이 그들의 분노를 부추겨 화를 재촉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일단 다음과 같이 에둘러 대답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和者兩國之所以爲利者. 今此之和, 亦固敝邦之願. 而敝邦凡白施爲, 一聽皇朝, 不敢輕自擅斷. 皇朝未及許封貢之前, 敝邦惟待皇朝之命. 命至則和可議矣. 早晩惟皇朝之命是竢而成, 此則在勢當然, 幸勿怪訝. 且今議和, 不可不以情相告, 庶無未盡之意. 夫和者兩國之所以爲好者也. 兩國爲和禮讓爲先, 而信義幷寓於其間. 擁衆臨境, 未有掇兵之擧, 如是而求和, 是甚底道理耶? 今日之事, 莫若捲甲退兵, 各守其境, 方可講信修好. 一以禮讓爲事, 往復兩間, 一使臣足以定之矣. 若以此猶以爲未盡, 則各去其衆, 只以單騎會諸兩國境上, 對面赤心, 一言而定之, 亦不須歃血爲信. 彼此之際, 兩無積疑, 一與爲好, 彼此俱安之地, 鬼神亦佑, 此實兩國永世無疆之利, 豈不幸甚云爾?’

則倭奴實有願和之心, 則亦必樂聞其說, 不然則其實無和意可知, 而亦不至於見欺. 設或有講和之意, 而萬一見成, 倭奴情狀, 難保其必信. 在我詰戎之事, 不可以此而少緩, 專意於撥亂興衰, 期以歲月生聚敎訓, 使國勢重之, 則外侮不足爲患, 戎虜不足致討. 而國內安如磐石, 邊圉自爾無虞矣.

‘화친은 양국이 이롭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화친은 진실로 우리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시행은 황조(皇朝)의 명을 따라야 하므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황조에서 아직 봉공(封貢)을 윤허하기 전이라 우리는 오직 황조의 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이 내려오면 화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황조의 명이 오기를 기다려 화친을 할 것이니, 이것은 형세로 보아 당연한 일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또한 지금 화친을 논의함에 사실을 모두 고해야만 미진한 감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화친은 양국 모두가 좋자고 하는 것입니다. 양국의 화친은 예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신의 또한 곁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을 이끌고 국경까지 와서 철병하지 않은 채로 화친을 요구한다면,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의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를 내던지고 군대를 퇴각시켜 각자 경계

를 지키는 것이니, 그래야만 바야흐로 신의를 말하고 화친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서로 왕래한다면, 한 명의 사신으로도 화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미진하다 여길 때에는, 각국이 군대를 물리고 오직 사신 한 명만 보내 양국의 국경에서 만나 진심으로 대면하게 한다면,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므로, 삽혈(歃血)로 신의를 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피차간에 쌓인 의심도 없어지고 일도 잘 마무리할 수도 있으며, 피차 모두 평안해져 귀신들도 보우할 것이니, 실로 양국 모두에게 대대토록 무궁한 이로움이 될 터이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노들에게 화친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친할 뜻이 없음을 가히 알 수 있어서 속임수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화(講和)의 뜻이 있어 만에 하나 성사된다 하더라도 왜군의 속내를 반드시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 적을 토벌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되며, 난을 평정하고 쇠한 나라를 일으키는 데 오로지 뜻을 두고, 세월 속에서 백성의 수를 늘리고 가르침으로써 국세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군의 침략은 근심할 바도 못 될 것이고, 왜군은 토벌할 가치조차 없을 것이며, 나라 안은 반석처럼 안정되고 국경의 근심도 자연 사라질 것입니다.

臣且竊以今日事勢言之. 則數年兵革, 加以天兵支待, 飢饉癘疫, 一時竝作, 國內虛耗, 兵粟俱竭. 賊勢之鴟張跋扈, 有甚於方張之日, 雖使至神當之, 恐無善策. 人心危懼, 莫保朝夕, 至於荷擔而待, 國勢之危急, 固無可爲者矣. 然而臣竊仰觀俯察, 參諸人事, 撥亂興衰, 顯有兆驗, 議星色靑, 此其一也. 有大國之援, 此其二也. 民思討賊, 此其三也. 年穀有熟, 此其四也. 舟師得李舜臣等爲大將, 此其五也. 陸軍之帥, 又有金應瑞、高彦伯、洪季男等, 各守戰陣, 陳力取勝, 屢有大功, 此其六也. 至如金德齡, 有大將才, 而朝廷佳奬, 特賜以忠勇將號令, 方屯駐嶺南

右道, 雖未及大伸抱負, 而時方有待. 權仁龍才兼萬夫之雄, 使之致力於討賊, 則足當一面. 時在湖南體察使軍中, 隱於行伍, 人無有識之者. 臣之意選用兩人, 超授大將之任, 使之統禦陸軍, 與李舜臣、元均輩, 作爲巨陣, 相時度宜, 作爲兩翼, 水陸竝進, 則倭奴不足平也.

신이 삼가 오늘의 사태를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몇 년 동안 천병의 도움이 있었고,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해 나란 안은 텅 비고 군량미는 바닥이 났습니다. 부엉이가 날개를 펼친 듯 발호하는 적의 기세가 한창 때보다 더해, 신께서 그들과 대적한다 해도 좋은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민심도 두려움 속에 아침저녁을 보장할 수 없어서 짐을 싸놓고 기다리는 형편이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실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신이 외람되이 하늘을 우러러 살피고 땅의 형세를 굽어보고 인사를 참작해 보건대, 왜란을 평정하고 쇠한 나라를 일으킬 조짐이 확실히 보이는데, 별의 빛깔이 푸른 것이 그 첫 번째요, 대국의 원조가 그 두 번째요, 백성이 왜군을 토벌하고자 함이 그 세 번째요, 곡식이 여물어감이 그 네 번째요, 수군이 이순신 등을 대장군으로 삼은 것이 그 다섯 번째요, 육군 장수 김응서(金應瑞)、고언백(高彦伯)、홍계남(洪季男) 등이 각자 진영을 지키면서 힘을 다해 싸운 끝에 승리를 쟁취하여 누차 큰 공을 세운 것이 그 여섯 번째입니다. 김덕령 같은 이는 대장군의 재능을 지니고 있기에 조정에서 큰 상을 내려 특별히 충용장(忠勇將)이라는 군호를 하사받아 지금 영남우도(嶺南右道)에 주둔하고 있는데, 아직 포부를 크게 펼치지는 못했지만 바야흐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인룡은 혼자 만 명을 대적할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 왜군 토벌에 그 힘을 쏟게 한다면 족히 한 지방의 중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호남체찰사(湖南體察使) 군중의 대오 속에 숨어 있는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이 두 사람을 선발해 대장군의 직책에 초수(超授)[66]하고, 육군을 통솔하여 이순

66) 초수(超授): 정해진 규정을 크게 뛰어넘어 임명하거나 관직을 올려 주는 것을 말한다.

신(李舜臣)、원균(元均) 등과 함께 큰 진을 짠 다음 기회를 살폈다가 양익진을 쳐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진격하게 한다면, 저 왜노들은 평정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臣嘗聞德齡之言曰: '兵貴務精不務多. 募兵數萬, 抄精數千餘, 皆許募軍糧, 則可備數千兵數朔之糧, 則不煩官粟, 而亦足討賊矣. 且日與賊對壘, 彼衆我寡, 衆寡不敵, 則取勝之道, 全在於出奇. 或埋伏要害, 或據險邀擊, 或乘其半渡, 急擊勿失, 至如夜戰火攻之類, 皆可用也. 且觀賊勢, 或固守城濠, 淸野以待, 愼勿交鋒, 以數日, 則因糧之賊, 勢將遁去, 亦可乘勢, 便成大捷云.'

신은 일전에 김덕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법에서는 '정예에 힘을 쓰지 숫자가 많은 것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수천 명의 정예병을 추려내고 나머지로 하여금 군량미를 모으게 한다면, 수천 명 군사의 몇 달치 군량미를 마련할 수 있어서 관속(官粟)을 축내지 않고서도 족히 왜군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왜군과 대치하면 저들은 군사가 많고 우리는 적어 중과부적이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습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혹 요충지에 매복하거나, 혹 험지에 있으면서 불러들여 싸우거나, 혹 왜군이 반쯤 건넜을 때 놓치지 않고 급습해도 좋습니다. 밤에 불을 놓아 공격하는 전략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적의 기세를 살펴 성을 굳게 지키면서 들판을 밀어버린 채 대비하되 며칠이고 절대 접전을 피한다면, 적들은 군량미가 없어 도망갈 터이니, 이 기회를 이용하면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又聞權仁龍之言, 則大槪亦如是, 餘策亦多, 難以一一竝冒. 二人可急召, 問計採用, 則不爲無補於摧陷廓淸之擧. 但仁龍時在體察使軍中, 招之甚便, 如德齡則方在南邊, 與賊對壘, 似不可離陣遠來, 不如下書問策, 使自開錄一一, 馳狀啓達, 勿使韜晦, 則幸甚幸甚. 臣竊且念, 討

暴撥亂, 不無奇計. 如得其人, 行其奇計, 則亦不待天兵之復來, 自國中猶可剿討. 不此之顧, 而遽欲許和, 輕撤其討賊之師, 則大事去矣, 臣實痛憫, 不知所裁. 不辭妄冒之罪, 籲辨至此. 伏望以臣之言, 亟下備邊司, 使之十分商議, 及時更張處置, 宗社幸甚, 國家幸甚, 臣民幸甚. 謹昧死以聞. 取進止."

또 권인룡의 말을 들어보아도 대체적인 계책이 이와 같고, 남은 계책도 아직 많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급히 불러들여 계책을 물은 뒤 채용한다면 적의 기세를 꺾고 척결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권인룡은 체찰사의 군중에 있어서 불러들이기 쉬우나, 김덕령은 지금 남쪽에서 한창 적과 대치중이라 적진을 떠날 수 없으니, 공문을 내려 계책을 하문하시어 그에게 일일이 기록해 장계를 올리게 함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빛을 발할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큰 다행이겠나이다. 신이 외람되이 생각하건대 왜적을 토벌하고 난을 평정할 기이한 계책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얻어 기이한 계책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천병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나라 안에서 왜적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급히 화친을 허락하여 왜군을 섬멸할 수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면, 대사가 이내 물 건너가게 될까 신은 심히 우려되오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기망죄를 무릅쓰고 판별해 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논해 보았습니다. 엎드려 비옵나니, 신이 말씀드린 내용을 급히 비변사(備邊司)에 전달하시어 충분히 논의하게 한 뒤, 제 때에 바로잡아 펼치시고 일을 처리하게 하신다면, 종묘사직에도 천만다행한 일이요, 국가에도 천만다행한 일이요, 신하와 백성에게도 천만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삼가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었습니다.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

右箚將啓之際, 會聞和議還寢故, 不果入.
時左相尹斗壽被論遞免, 金應南卜相, 是年十一月初六日也. 是年十一月十二日, 上始御經筵, 進講周易乾卦, 琢亦以經筵官入侍後, 晌乃罷.

十二月十二日，社稷位版，自長興君家，還安于舊壇，琢以提調進參．二十二日允穆司圃署別座除授， 病未出仕． 乙未正月初六日朝講入侍， 初十日晝講入侍．講畢，仍啓己丑冤獄，論及蘇齋、鄭彦信等，竝及鵝溪．十一日鵝溪職牒還授， 出於特命也． 十六日書筵， 進講『論語』「朝聞道」章， 右相金應南入侍， 琢以貳師竝參． 二十二日經筵朝講入侍， 西厓以領事入侍，進講坤卦．是年二月初一日政，琢右相除授，因病不出，十五日始出肅拜．仍辭避，乃至五啓，初啓以爲．

이상의 차자를 장차 올리려 할 때 마침 화친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결국 올리지 않았다.

그때 좌상 윤두수가 탄핵되어 물러나고, 김응남(金應南)[67]이 재상에 천거되었는데[68], 이 해 11월 초6일이었다. 11월 12일에 주상께서 경연에 입시하시어 『주역(周易)』의 「건괘(乾卦)」를 강론하셨는데, 나 역시 경연관으로 입시해서 정오가 되어서야 끝났다. 12월 12일에 사직단의 위패를 장흥군(長興君)의 집에서 예전 사직단으로 가져와 안장했는데, 나는 제조로서 나아가 참여했다. 22일 아들 정윤목이 사포서(司圃署)[69] 별좌(別座)에 제수되었으나, 아파서 출사하지 못했다. 을미년(1595) 정월 초6일에 조강(朝講)[70]에 입시했고, 초10일에는 주

67) 김응남(金應南: 1546~1598):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斗巖)이다. 1591년 성절사로 명나라를 다녀와서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이듬해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병조판서 겸 부체찰사가 되어 평안도로 피난하는 선조를 따라갔다. 1594년 우의정, 다음해 좌의정이 되어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전쟁 뒤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안무사로서 영남에 내려갔다가, 풍기에서 병이 위독해져 귀경 후 사직했다.

68) 재상에 천거되었는데: 원문은 '복상(卜相)'이다. 조선시대 의정(議政)의 선발 방식으로 매복(枚卜)이라고도 한다. 집정관(執政官)을 점쳐서 선발하는 방식에서 유래하였다. 복상은 주로 시임(時任) 의정이 작성한 복상단자에 국왕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복상단자에 기록된 인물 이외의 후보자를 추가하여 낙점하는 가복(加卜)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의정의 선발은 복상 방식이 아닌 중비(中批)로 제수되는 경우도 있었다.

69) 사포서(司圃署): 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원포(園圃)와 채소 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세조실록』

70) 조강(朝講): 조선시대에 왕이나 세자가 신하들과 모여 함께 공부하던 경연이나 서연 가운데 아침에 시행하였던 정규 강의를 말한다. 지두환, 「조

강(晝講)[71]에 입시했다. 강론을 마치고 이어서 기축원옥(己丑冤獄)[72]에 대해 아뢴 뒤,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73]과 정언신(鄭彦信)[74] 등에 대해 논의하고, 더불어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75]에 대해 언급했다. 11일에 아계 이산해의 직첩을 환수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16일 서연(書筵)[76]에서 『논어』「이인편(里仁篇)」에 나오는 '조문도(朝

---

선시대 경연관 연구」, 『한국학논총』31, 2009년

71) 주강(晝講): 조선시대에 왕 또는 세자가 신하들과 모여 함께 공부하던 경연이나 서연 가운데 낮에 시행하였던 정규 강의를 말한다. 지두환, 「조선시대 경연관 연구」, 『한국학논총』31, 2009년

72) 기축원옥(己丑冤獄): 1589년(선조 22년) 10월에 정여립(鄭汝立)이 역모를 꾀하였다 하여, 3년여에 걸쳐 그와 관련된 1천여 명의 동인계(東人系) 인사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73) 노수신(盧守愼: 1515~1590):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穌齋)、이재(伊齋)、암실(暗室)、여봉노인(茹峰老人)이다. 1573년(선조 6) 우의정, 1578년 좌의정을 거쳐 1585년에는 영의정에 이르렀다. 1588년 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으나, 이듬해 10월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과거에 정여립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74) 정언신(鄭彦信: 1527~1591): 자는 입부(立夫), 호는 나암(懶庵)이다. 1589년 우의정이 되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후 그 잔당에 대한 옥사를 다스리고는 위관(委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서인 정철(鄭澈)의 사주를 받은 대간으로부터 정여립의 구촌친(九寸親)이므로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탄핵을 받아, 위관을 사퇴하고 이어서 우의정도 사퇴했으며, 정철이 위관을 대신하였다. 그 뒤 역가문서(逆家文書) 가운데에 그가 들어 있다는 것을 구실로 정철 등으로부터 계속 정여립의 일파로 모함을 받아 남해에 유배되었다가 투옥되었다. 사사(賜死)의 하교가 있었으나 감형되어 갑산에 유배되었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 1599년에 복관되었다. 문경의 소양사(瀟陽祠)에 제향되었다.

75)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종남수옹(終南睡翁)이다. 1578년 대사간이 되어 서인 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윤현(尹晛) 등을 탄핵해 파직시켰다. 다음 해 대사헌으로 승진하고 1580년 병조참판에 이어 형조판서로 승진하였다. 이듬 해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오르고, 다시 이조、예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면서 대제학、판의금부사、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를 겸하였다. 1588년 우의정에 올랐고, 이 무렵 동인이 남인、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76) 서연(書筵): 조선시대 왕세자를 위한 교육 제도로, 차기 국왕이 될 왕세자에게 경사(經史)를 강론해 유교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게 마련한 교육

聞道)'장을 진강(進講)[77]했는데, 이때 우상 김응남이 입시했고 나도 이사(貳師)[78]로서 참여했다. 22일 경연 조강 때 입시했고,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은 영사(領事)로서 입시해 「곤괘(坤卦)」를 진강했다. 이해 2월 초하루 정사(政事)[79]에서 나는 우상에 제수되었으나 아파서 나가지 못했고, 15일이 되어서야 사은숙배(謝恩肅拜)[80]했다. 이어서 관직을 사양하며 다섯 차례 계문을 올렸는데, 첫 번째 계문은 다음과 같다.

"臣以極庸至劣, 猥廁淸朝, 致位貳公, 苟度歲月, 誤恩下逮, 爰立重選, 遽委駑賤. 臣聞命危慄, 易日靡定, 陳情自劾, 在所當急. 而惟竢公論之日發, 趑趄未敢之際, 重感風寒, 仍成劇證, 不修人事, 至廢出入. 以此謝恩一節, 亦未及時, 今始來啓, 惶恐待罪."

"신은 지극히 용렬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청명한 조정의 반열에 끼어 이공(貳公)[81]에 올라 구차하게 세월만 보냈음에도 과분한 은총으로 거듭 발탁되어 둔하고 천한 제가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은 명을 받들고 두려움에 떨며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으니, 서둘러 사정을 아뢰고 스스로를 탄핵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나 공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머뭇거리던 중, 거듭 감기에 걸려 증세가 더욱 심해지는 바람에 인사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출

---

장소를 말한다.

77) 진강(進講): 임금 앞에 나아가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것을 말한다.

78) 이사(貳師):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종일품(從一品) 문관으로 정원은 1원이다. 왕세자에게 경전(經典)·사서(史書)를 강의하고 도의를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았다. 정식 칭호는 세자이사(世子貳師)로 의정부(議政府)의 좌.우찬성(左右贊成)이 겸임하였다.

79) 정사(政事): 벼슬아치의 임면(任免)·출척(黜陟)에 관(關)한 일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특히 도목정사(都目政事)라고 하였다.

80) 사은숙배(謝恩肅拜): 관료로 처음 임명된 자가 궁중에서 임금에게 국궁사배(鞠躬四拜)하여 왕은(王恩)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1) 이공(貳公): 정승의 다음 가는 자리를 말한다. 의정부(議政府)의 종일품(從一品)인 찬성(贊成)과 정이품(正二品)인 참찬(參贊)을 가리킨다.

입까지 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사은숙배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겨우 계문을 올리게 되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하고 있겠나이다.”

再啓.
“仰瀆惶恐, 相臣之職, 所繫甚重. 其在平時, 所當難愼, 況今聖志方切撥亂. 公輔重選. 謬及匪人, 旣缺輿望, 重駭視聽, 非夢卜求賢之意也. 當今國運中否, 兵連四載, 危亂極矣. 臣忝在一品重臣之後, 曾無陳力些少之勞, 且無建白設施之事, 悠悠經過, 苟全性命, 政似塊然一土梗. 其本無才識, 擧此可知, 委任責效萬一, 寧有是理耶? 臣之於君, 固當自量其才, 不可少有非據之冒, 上之使下, 尤宜隨器任用, 不可少有謬委之擧. 夫然後上無虛授, 下無虛受, 衆論攸協, 庶事克濟. 否則終未免負乘覆餗之凶, 而亦非所以委任必當之道也. 古之帝王, 用人各稱其才, 猶匠之用木, 大小長短. 無越其器故, 能擧其職而鮮有敗事. 臣不必遠引, 姑以我朝先代之事言之. 成祖之於兪好仁, 常置經幄, 以備顧問, 君臣際會, 可謂千載一時. 而爵命則終不過堂下三品之階, 蓋以好仁之器, 必如是而後方得無咎. 從古傳說, 今猶可想. 竊伏惟念, 臣之前冒贊成之職, 亦已踰分, 尋常危懼. 而得保今日者, 蓋以本職別無擔當句管之事故, 幸而無咎. 今此台鼎之位, 摠揆庶僚, 百責所萃, 決非凡庸所可承當. 且無大臣之德, 而忝大臣之名, 虧損國體, 妨害治道. 及其僨事, 悔亦無及, 臣實憫焉. 伏望聖慈, 量才度德, 勿以已授而仍存, 夬決無留, 使得安分保全終始之恩. 則非但微臣之幸, 抑亦庶臣之幸也. 仰冒宸嚴, 煩瀆至此, 不勝惶恐之至.”

두 번째 계문은 다음과 같다.
“성총을 어지럽혀 황송하기 그지없으나, 재상[82]의 직책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평상시라 해도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정해야 하니, 하물며 난리를 바로 잡으려는 성상의 뜻이 간절한 지금이라면 더욱

82) 재상: 원문은 ‘상신(相臣)’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더 그러하겠지요. 공보(公輔)[83]의 발탁은 신중해야 합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잘못 발탁하면 백성들의 바람에 어긋나고 눈과 귀를 거듭 놀라게 하니, 이는 꿈과 점으로[84] 현자를 구하던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운이 쇠하여, 병란이 4년 째 이어지고 있어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신은 외람되이 1품의 중신 자리에 오른 이래, 조금의 공도 세우지 못했고, 또한 조정에서 시행할 만한 일을 건의하지도 못한 채 유유히 지내면서 구차하게 목숨만 보존해 왔사오니, 흙으로 빚은 인형이나 진배 없습니다. 재주와 학식이 전혀 없음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 직책을 맡는다 하여 만분의 일이나마 성은에 보답할 방도인들 있겠나이까? 신하는 임금에 있어서 진실로 자신의 재주를 헤아려 조금이라는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더욱 기량에 맞게 임용해야지, 조금이라도 잘못 기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이렇게 된 연후라야 윗사람은 헛되이 관직을 주는 일을 면할 수 있고, 아랫사람은 헛되이 관직 받는 일을 면할 수 있어서, 중론이 화합되고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승(負乘)[85]과 복속(覆餗)[86]의 흉함을 면하지 못하리니, 이 또한 일을 맡기는 마땅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고대의 제왕들은 마치 목수가 나무의 크기와 장단에 맞춰 나무를 사용하듯 그 재주에 맞게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재주를 넘어서지 않게 등용했기에, 그 직무를 잘 수행해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신은 굳이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이 잠시 선대의 일로써 말해보겠습니다. 성조(成祖)께서는 늘 유호인(兪好仁)[87]을 늘 경연관으

---

83) 공보(公輔): 삼공과 사보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84) 꿈과 점으로: 원문은 '몽복(夢卜)'으로, 현상(賢相)을 얻음을 뜻한다. 몽복(夢卜)은 꿈과 점(占)을 합쳐 이르는 말로, 옛날 은(殷) 나라 고종(高宗)이 꿈 덕분에 부열(傅說)을 얻었고, 주(周) 나라 문왕(文王)이 점 덕분에 여상(呂尙)을 얻은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85) 부승(負乘): 『주역』「해괘(解卦)」에 "짐을 등에 지고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인다(負且乘, 致寇至)"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능력이 못 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재앙을 자초하는 일의 비유로 자주 쓰인다.

86) 복속(覆餗): 힘에 부쳐 일을 망치는 것을 말한다.

87) 유호인(兪好仁: 1445~1494). 자는 극기(克己), 호는 임계(林溪).뇌계(濡

로 두시면서 고문을 맡겼는데, 이와 같은 군신 간의 만남은 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위는 당하관(堂下官) 3품에 불과했으니, 아마도 유호인 정도의 기량이라면, 이와 같아야 비로소 허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지만 지금에 와서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엎드려 생각해 보건대, 신이 이전에 외람되이 찬성 직을 맡은 것도 이미 과분해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찬성의 직책이란 것이 본디 감당하고 관리해야 할 일이 별달리 없는지라 허물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정(台鼎)[88]의 자리는 백관을 총괄하고 온갖 질책이 모이는 자리로, 결코 평범하고 용속한 자가 맡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대신으로서의 덕망은 없으면서 대신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국체를 훼손하고 치도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일을 그르치고 나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 신은 실로 우려가 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재주와 덕을 헤아리시어 이미 제수했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지체 없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성상의 변함없는 은혜를 느끼면서 안분지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는 미천한 신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위엄을 더럽히고 성총을 어지럽혀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三啓以爲.
"屢瀆惶恐. 臣今犬馬之齒, 已滿七十, 政古人致仕之年. 自經亂離之後, 筋力稍全, 聰明頓喪, 眼暈偏重, 視物不明. 面生之人, 則咫尺之間, 有或難辨. 至如簿書文案, 卒然到前, 了未解覽, 其不似矇瞍無幾. 不此之顧而晏然冒居, 揆察百僚之位, 則臨事顚倒, 做錯必多, 身負國家, 罪積丘山, 臣實憫迫. 伏惟聖慈, 俯諒老懇, 必命鐫改."

세 번째 계문은 다음과 같다.

---

溪)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문장에 뛰어났다.
88) 대정(台鼎):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세 정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누차 성총을 어지럽혀 황공하옵니다. 지금 신의 나이 이미 일흔이 꽉 찼으니, 바로 옛 사람들이 벼슬에서 물러나던 나이입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 근력은 다소 온전하나, 총기가 갑자기 떨어지고 눈 어지럼증이 유독 심해져 사물을 보아도 분명치가 않고, 낯선 사람이 지척에 있어도 간혹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의 장부나 공문서를 갑자기 앞에 갖다 놓아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니, 소경이나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백관을 규찰하는 자리를 함부로 차지한다면, 일을 함에 선후가 전도되고 과실을 저지르는 경우가 분명 많을 것입니다. 몸으론 나라를 저버리고 죄는 산처럼 쌓이게 될 터이니, 신은 실로 초조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노신의 성심을 굽어 헤아리시어 반드시 관직 교체를 명해 주시옵소서.”

四啓以爲.
“屢啓煩瀆, 不勝惶恐之至. 海寇未退, 國讐未復, 此政臣子臥薪枕戈之日. 筋力所及, 庶欲自盡而後已, 豈敢以退托辭避爲事乎? 第念才器有小大, 職任有輕重, 台鼎之位, 決非凡庸所可竊據. 苟不自量, 而昧冒承當, 則徒辱名器, 有妨賢路, 阽身病國, 有不可勝言. 今者才德俱優, 時望所在者, 不乏其人, 聖明臨下, 亦已洞然. 伏望亟收成命, 以授其人.”
答曰:“勿辭, 盡心匡濟.”

五啓以爲.
臣所兼帶社稷署、內醫院、歸厚署提調, 不可仍存, 請竝命遞差, 惶恐敢啓.
答依啓.

네 번째 계문은 다음과 같다.
“누차 계문을 올려 성총을 어지럽히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왜구가 아직 물러나지 않았고, 나라의 원수도 다 갚지 못한 상황이니, 신하로서 땔나무에 눕고 창을 베고 자야 할 때일 것입니다. 따라

서 [신하된 자라면] 힘닿는 한 일하고, 힘이 다한 연후에야 그만두길 바라야지, 어찌 감히 핑계를 대며 사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량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맡은 바 직무에는 경중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대정의 자리란 결코 평범하고 용속한 사람이 함부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차지한다면, 이는 헛되이 나라의 동량(棟梁)을 욕보이고 인재의 앞길을 방해하는 꼴이라, 결국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여 그 폐단을 이루다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재주와 덕이 모두 뛰어나고 명망을 지닌 자가 또한 적지 않은데, 성상께서도 굽어 살피시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하명을 거두시고 적합한 인물에게 제수하소서."
주상께서 하답하시었다. "사양하지 말고 성심을 다해 이 난국을 구하라."

다섯 번째 계문은 다음과 같다.
"신은 사직서(社稷署)·내의원(內醫院)·귀후서(歸厚署)[89] 제조를 겸하고 있사온데, 그대로 재직할 수 없어 체직을 청하오며 황송함을 무릅쓰고 감히 계를 올립니다."
계문대로 하라는 하명이 내려왔다.

十九日罪人巾熏初覆入侍, 二十日經筵朝講入侍, 進講『易』「蒙卦」. 臨罷, 啓請伸雪己丑冤獄, 答曰: "當竢領相出仕, 面議爲之." 三十日三公引見, 蓋以高彦伯圖削賊事也. 罷後三省交坐, 蓋以蘇繼賢奴垂里金殺主事也.

19일에 죄인 건훈(巾熏)[90]의 초복(初覆)[91]때 입시했고, 20일 경연 조

89) 귀후서(歸厚署): 조선시대 관곽(棺槨) 판매와 예장(禮葬: 예식을 갖추어서 치르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를 말한다.
90) 건훈(巾熏): 건경(巾京)을 말한다. 선조 27년(1594) 6월 10일 정사에 「전라병사 이시언(李時彦)이 강진의 안중복(安重復).이경신(李景信) 등의 역모

강에 입시해 『주역』「몽괘(蒙卦)」를 진강했다. 경연이 끝나고 난 뒤에 계문을 올려 기축원옥의 누명을 씻어 줄 것을 청하자, 주상께서 "마땅히 영상이 출사하기를 기다렸다가 얼굴을 대하고 이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30일에 삼공을 불러들여 고언백(高彦伯)이 왜군을 토벌한 일을 논의하셨다. 이 일이 끝난 뒤 삼성(三省)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92] 소계현(蘇繼賢)의 노복 수리금(垂里金)이 주인을 살해한 일에 대해 논의했다.

三月初四日, 陳遊擊雲鴻發還, 上進別南別館, 琢以宗宰行酒. 初八日兩司合啓, 黃廷彧父子獄事, 上命禁府議啓事判下. 琢以委官回啓, 請議他大臣處置事允下. 十一日黃廷彧父子獄事, 依諸大臣議停刑, 還發配所, 圍籬安置. 諫院以黃廷彧父子停刑事, 請罷禁府諸堂上. 四月初二日, 三公率百官會闕庭, 啓請還收成命, 時有東宮攝政之命也. 時西厓相公以疾告暇有日, 是日力疾出參庭啓, 是日五啓, 初三日三啓, 初四日再啓蒙允而罷. 是夕三省交坐, 黃廷彧元情入啓, 黃赫三次後加刑啓請, 以夜深停罷. 初五日三省交坐, 黃赫加刑事允下, 下敎曰: "黃廷彧帶礪勳臣, 墓木已拱, 刑訊而死, 無乃過乎?"

---

사건을 치계하다」라는 항목이 있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삼가 전라병사 이시언의 장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모를 고발한 사노(私奴) 건경(巾京)과 그의 아내 납춘(納春), 또 이른바 창수인(倡首人)으로 강진(康津)에 사는 안중복.이경신.유승업(柳承業) 및 광주에 사는 신한봉(辛漢鳳), 택일인(擇日人)인 서천에 사는 심대원(沈大原), 회문 전시인(回文 傳示人)으로 강진에 사는 고몽례(高夢禮).안제문(安濟文)과 노비 몽상(夢祥)을 먼저 국문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의금부의 낭청을 보내 잡아오게 하고, 이른바 안중복의 집 사당 앞에 묻어놓은 명록기(名錄記)도 가져오게 하소서." 이를 보아 여기 나오는 건훈은 건경 임에 분명하다.

91) 초복(初覆): 조선시대에 살인 사건에 관련된 죄인을 처음 심문하던 일을 말한다. 조선시대 사형수를 심리할 때 삼복제(三覆制)를 사용했다. 삼복제는 초심.재심.삼심으로 반복해 심리를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1차 복심을 초복(初覆), 2차 복심을 재복(再覆), 3차 복심을 삼복(三覆)이라 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92) 삼성(三省)이……둘러앉아: 원문은 '삼성교좌(三省交坐)'로, 세 관청이 임금의 특지를 받고 죄인을 교대로 추국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은 사헌부, 한성부, 형조를 말한다.

3월 초4일에 유격 진운홍(陳雲鴻)이 돌아가자 주상께서 남별관(南別館)에 행차하시어 그를 전송함에 나는 종재(宗宰)[93]로서 전별연에 참석했다. 초여드레에 양사(兩司)[94]에서 황정욱(黃廷彧)[95] 부자의 옥사에 대해 합계(合啓)[96]하자, 주상께서 의금부에서 논의하여 아뢰라고 명하셨다. 나는 책임자로서 회계(回啓)[97]하여 다른 대신들과 함께 논의하여 사안을 처리할 것을 청하여 윤허 받았다. 11일 황정욱 부자의 옥사는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고, 그들을 유배지로 돌려보내 위리안치(圍籬安置)하였다.[98] 사간원에서 황정욱 부자의 형 집행 정지를 이유로 의금부 당상관들의 파직을 청했다. 4월 초2일에 삼공은 백관을 거느리고 궁궐에 모여 계문을 올리면서 하명을

---

93) 종재(宗宰): 왕의 친족이나 외척 및 재신(宰臣)을 통칭하는 말이다.

94) 양사(兩司): 조선시대에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통칭해서 이르던 말이다.

95) 황정욱(黃廷彧: 1532~1607): 자는 경문, 호는 지천(芝川)이다. 임진전쟁 때 호소사가 되어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배종하여 강원도에 가서 의병을 소집하는 격문을 돌렸다. 왜군의 진격으로 회령에 들어갔다가 임해군(臨海君).순화군과 함께 안변(安邊)의 토굴에 감금되었다. 이때 적장 가토 키요마사로부터 선조에게 보낼 항복 권유문을 쓰라고 강요받고 거부했으나, 그의 손자와 두 왕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아들 혁(赫)이 대신 썼다. 그는 항복 권유문이 거짓임을 밝히는 또 하나의 글을 썼는데, 이를 입수한 체찰사가 항복 권유문만을 보내고 사실을 밝힌 글은 전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듬해 부산에서 석방되어 돌아온 뒤 항복 권유문이 문제가 되어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동인의 탄핵을 받아 길주에 유배되었다가 1597년 풀려났다. 시호는 문정이다.

96) 합계(合啓): 조선시대에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서로 연명하여 논죄(論罪)에 관해 임금에게 글을 올리거나 그 글을 말한다.

97)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는 일을 말한다.

98) 위리안치(圍籬安置): 유배형의 일종으로 유배지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죄인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킨 형벌을 말한다. 죄인의 문 밖 출입을 금지하고 동시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중죄인의 형벌이다. 위리안치 죄인은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의금부 도사가 유배지까지 압송하였고 유배지에 가시울타리를 치는 과정까지 직접 점검했다. 바깥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유배인에게는 사형에 버금가는 무거운 형벌이었다.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92, 2000년

거두어 달라고 청을 올렸는데, 당시 동궁에게 섭정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서애 유성룡 상공은 병으로 휴가를 청한 지 여러 날이었으나 이날 병을 무릅쓰고 조정에 나와 계문을 올렸는데, 이날 다섯 번 계문을 올렸고, 초3일에 세 번 계문을 올렸으며, 초4일에 두 번 계문을 올리고 나서야 윤허를 받았기에 그만 두었다. 그날 밤 삼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황정욱의 원정(原情)[99]에 계문을 올리고, 세 차례 논의 끝에 황혁(黃赫)에게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계문을 청하기로 하고 야밤에 파했다. 초5일에 삼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는데, 황혁의 형 집행 건에 대한 윤허가 내려왔으며, 다음과 같은 하교가 내려왔다.

“황정욱은 대려훈신(帶礪勳臣)[100]으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101], 형신(刑訊)[102]으로 죽이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回啓曰:

“廷彧罪重, 雖死無惜, 而聖念及此, 其所以顧恤刑獄, 保全勳舊之意切矣. 而臺諫不參而出, 不得議啓. 敢稟.”

十一日大臣引對, 蓋以尹根壽從沈遊擊南下事也. 是夕與左相金應南, 慶林君金命允等, 見沈遊擊于其所館, 夜深乃罷也. 十三日以兩黃獄事, 議大臣入啓蒙允. 十四日兩司又啓請禁府堂上色郎廳罷職. 二十六日出使碧蹄館, 吏判書李恒福從之, 蓋以天使別迎慰也. 二十七日設行迎慰宴, 是日復命. 二十八日兩天使入京. 二十九日上見兩使于南別館, 設宴而罷, 琢亦隨參. 五月十二日, 上見兩使于南別館, 亦行茶禮而罷, 琢

---

99) 원정(原情): 죄인이나 백성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 올리는 글을 말한다.

100) 대려훈신(帶礪勳臣): 나라에서 자손대대로 변하지 않고 영구히 대접하기로 한 훈신을 말한다.

101) 죽을……되었는데: 원문은 ‘묘목이공(墓木已拱)’으로, 『좌전(左傳)』「희공(僖公)」 32년에 나오는 말이다. “그대가 일찍이 중수(中壽)의 나이에 죽었다면 그대의 무덤 앞에 심은 나무 둘레가 한 아름은 되었을 것이오(中壽, 爾墓之木拱矣).”

102) 형신(刑訊): 옛날에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죄를 심문하던 형벌을 말한다.

亦隨參. 是月十三日, 兩司論啓累日, 仍論及於琢爲委官時, 輕論兩黃獄事云. 琢請免, 乃至再度不允, 又上箚蒙允.

이에 다음과 같이 회계(回啓)했다.
“황정욱은 그 죄가 막중하니, 죽는다 하여도 안타까울 것 없지만,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황정욱을 불쌍히 여기시고 훈구대신을 살리려는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들이 참여하지 않고 나가버려도, 의계(議啓)할 수 없나이다. 감히 계문을 올립니다.”
11일 주상께서 대신들을 불러들여 대면하셨으니, 대개 윤근수가 심유격을 따라 남하한 일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좌상 김응남,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103] 등과 함께 심 유격의 관저에서 그를 만나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파했다. 13일에 두 황씨의 옥사 때문에 대신들과 논의하여 계문을 올리고 윤허를 받았다. 14일,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다시 계를 올려 의금부 당상과 색낭청(色郎廳)[104]의 파직을 청했다. 26일,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위로하기 위해 벽제관(碧蹄館)으로 사신 나갔는데, 이조 판서 이항복이 따라갔다. 27일,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고 그날 복명했다. 28일, 명나라 사신 두 명이 도성으로 들어왔다. 29일, 주상께서 남별관에서 명나라 사신 두 명을 만나 연회를 베풀었는데, 나도 함께 참석했다. 5월 12

---

103) 김명원(金命元: 1534~1602): 원문에는 ‘김명윤(金明允)’이라 되어있으나, 김명원의 오기이다. 자는 응순(應順), 호는 주은(酒隱).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수습하는 데 공을 세워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경림군(慶林君)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순검사에 이어 팔도도원수가 되어 한강 및 임진강을 방어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적을 막지 못하고 적의 침공만을 지연시켰다. 평양이 함락된 뒤 순안에 주둔해 행재소(行在所) 경비에 힘썼다. 이듬해 명나라 원병이 오자 명나라 장수들의 자문에 응했고, 그 뒤 호조·예조·공조의 판서를 지냈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병조판서로 유도대장(留都大將)을 겸임했고, 좌찬성·이조판서·우의정을 거쳐 1601년 부원군에 봉해지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유학에 조예가 깊었고, 병서와 궁마(弓馬)에도 능하였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104) 색낭청(色郎廳): 일정한 일을 나누어 맡은 관청을 말한다.

일, 주상께서 남별관에서 명나라 사신 두 명을 만나고 또한 다례를 베푼 뒤에 파했는데, 나도 함께 참석했다. 이달 13일,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연일 논의하여 계문을 올리면서, 내가 책임자로 있을 때 두 황씨의 옥사를 경솔하게 판결했다고 의논했다. 나는 면직을 청했는데, 거듭 면직을 청했지만 윤허를 얻지 못하다가 차자를 올려 윤허를 얻었다.

初度以爲: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鄭琢, 仰瀆惶恐. 臣素患多病, 自經亂離, 尤甚憔悴, 筋力頓喪, 精神昏瞶, 至於日間, 酬應之際, 顚錯亦多. 誠不自意誤恩下逮, 爰立重選, 遽委駑賤, 以蚊負山, 勢甚狼狽, 辭退不得, 冒昧就職, 臨事多錯, 罪積丘陵, 身負國家, 措躬無地, 只自隕越. 本月十五日爲始, 卒患感冒, 潮熱往來, 煩憫間作, 仍成劇證, 神魂錯亂, 不察人事. 竊念百揆之職, 初非庶司之比, 身病如此, 勢難一日仍冒. 斯速命遞云.”
不允批答.

첫 번째 차자는 다음과 같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정탁 우러러 성총을 어지럽혀 황공하옵니다. 신은 본디 다병한 편인데, 병란을 겪은 이후로 더욱 초췌해지고 근력이 갑자기 떨어져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근자에는 다른 사람과 응대하는 와중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뜻밖에도 과분한 은총으로 중요 직책에 임명되어 둔하고 천한 제가 중임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모기가 산을 짊어진 격이라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퇴가 뜻대로 되지 않아 함부로 재상직을 맡다 보니, 일을 처리함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에 죄가 구릉처럼 쌓이고 몸은 나라를 저버렸으니, 몸 둘 곳이 없어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달 15일부터 결국 감기에 걸려 신열이 오르내리고 간간히 답답증이 일더니, 증세가 극심해져서 정신을 놓아버리는 통에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정승의 자리란 본래 일반 관사와 비교할 수 없으며, 또한 병증이 이와 같아서 하루라도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속히 체직을 하명해 주소서.”
불허한다는 비답이 왔다.

注書辛成己來傳.
王若曰:
“未戡家多難, 萬機冀贊於篤樂, 期勖予成烈, 一朝寧決其去留? 仰成方勤. 引疾何遽? 惟卿志存好古, 學推溫經, 愷悌慈詳, 出天性之懿, 文詞儒雅, 伏一時之賢. 千里執羈靮, 忠勤獨著, 經年任調護, 艱險備嘗. 種種之蒼髮雖衰, 耿耿之丹心益苦. 屬天禍之未悔, 尤相臣之其難. 贊揚寔賴老成, 擢任質曾在於予. 夙夜當務熙績, 告疾非所望於卿. 宗社帶羞, 政上下沫血之日, 鯨鯢未戮, 豈臣子乞骸之秋? 卿若退休, 若爲經理?
毁家裨國, 益殫子文之忠, 借筋進奇, 庶決張公之勝, 以洒我懸膽之恥, 以紓我經氛之憂. 於戲! 國步斯頻, 家髦豈逸? 朝夕獻善敗, 益輸啓沃之忱, 終始竭忠貞, 願恢匡濟之策. 所辭宜不允. 故玆敎示. 想宜知悉.

주서(注書)[105] 신성기(辛成己)가 와서 전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다사다난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모든 일을 성심껏 도와주기를 바랐고 나를 도와 공업을 이루기를 기약했는데, 하루아침에 어찌 거취를 결정하는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바야흐로 애쓰고 있는 마당에 병을 핑계로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생각건대 경은 옛 것을 좋아하는 데 뜻을 두고 학문에 있어서는 경전 익히는 것을 미루어 나아갔다. 화락하고 자상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름다운 데서 나왔고, 문사의 유아(儒雅)함은 한 시대의 현자들을 복종시켰다. 천리 길에 말고삐를 잡아 충성과 근면함이 유독 드러났고, 여러 해 동안 세자를 보호하며 험난한 일을 두루 겪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로 비록 노쇠하였으나 빛나는 일편단심 더욱 더 간절하였다. 하

105) 주서(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에 두었던 정7품직. 정원은 2명이었다.

늘이 재앙을 내린 것을 아직 후회하지 않으니, 더욱 더 상신(相臣)을 잘 가려 뽑아야 한다. 일을 성사시키려면, 실로 노성한 이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내가 그대를 발탁해 임용하였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치적을 넓히는 데 힘써야 하거늘, 병을 핑계로 떠나가는 것은 그대에게 바라던 바가 아니다. 종묘사직이 수모를 당하여 조정의 상하가 피눈물을 흘리고, 왜적들도 아직 무찌르지 못하였는데, 지금이 어찌 신하가 은퇴를 청할[106] 때인가? 경이 만약 물러나 쉰다면 무슨 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가산을 털어 나라를 도왔던 자문(子文)[107]의 충심을 다하고, [유방의] 젓가락을 빌려 뛰어난 계책을 올렸던 장공(張公)[108]의 승리를 결심하라. 그리하여 쓸개를 매다는[109]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고, 재앙을 바라보는 나의 근심을 풀어 주기 바란다.

오호라!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때에 나라의 인재가 어찌 떠나려 하는가! 아침저녁으로 실패를 잘 수습할 계책을 올리어 더욱 성심을 다하고[110], 시종 충정을 다하여 구제할 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사직은 윤허할 수 없다. 이렇게 교시하는 바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

106) 사퇴를 청할: 원문은 ‘걸해(乞骸)’로, 늙은 재상이나 신하가 나이 등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임금에게 청원하는 일을 말한다.

107) 자문(子文): 자문은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 투곡오도(鬪穀於菟)의 자(字)이다. 성왕(成王) 때 영윤(令尹)이 되어, 자기 집을 헐어 그 가재(家財)로 초나라의 어려운 재정을 구하고, 첫 새벽에 조정에 들고 밤늦게 귀가하며,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하지 않아 그 집에는 끼니거리가 없었다.

108) 장공(張公): 장량(張良)이 식사중인 유방 한 고조의 젓가락을 빌려 일일이 따져가며 책략을 올린 일을 말한다. 『사기(史記)』「유후세가(留侯世家)」에 자세히 보인다.

109) 쓸개를 매다는: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회계에서 크게 패하여 회계산으로 쫓겨 올라가 있을 적에, 항상 오왕 부차에게 복수할 각오로 몸을 괴롭게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늘 쓸개를 맛보았던 데서 온 말이다.

110) 성심을 다하고: 원문의 ‘계옥(啟沃)’은 선도(善道)를 개진하여 임금을 인도하고 보좌한다는 뜻이다. 『상서』「열명(說命)」에 은나라 고종이 부열(傅說)에게 “그대의 마음을 열어 나의 마음을 적셔라(啓乃心, 沃朕心).”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再度引辭以爲:
“再瀆惶恐. 伏承聖批, 敦諭丁寧, 臣不勝兢悚感泣之至. 臣竊念目今戎虜未退, 國讐未復, 此政臣子枕戈沬血思效萬一之秋. 臣雖至愚無狀, 敢不思所以策勵駑鈍, 死而後已! 第念臣年已滿七十, 筋刀衰耗, 經亂之後, 昏瞶益甚, 謬叨非據, 爲日且薄, 而隨手做錯, 誤事亦多. 加以疾病侵尋, 日漸危苦, 差復無期. 台鼎之位, 初非養病之地. 而當此多事之際, 曠日廢仕, 徒積冒昧之罪, 臣尤用惶恐憫迫之至. 伏願聖慈, 俯諒危懇, 亟命遞免.” 不允批答.

두 번째 차자는 다음과 같다.
“거듭 성총을 어지럽혀 황공하옵니다. 엎드려 주상의 비답을 받들고 간곡한 돈유(敦諭)[111]에 신 지극한 황송함과 감읍의 심경 이길 길이 없었나이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지금 왜구가 아직 물러나지 않았고, 나라의 원수도 다 갚지 못한 상태이니, 신하된 자로서 창을 베고 피눈물을 삼키며 온힘을 다해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길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나, 어찌 감히 우둔한 자신을 채찍질해 죽은 이후에야 그만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의 나이 이미 일흔이 넘어 근력이 쇠하였고, 병란을 겪은 뒤라 눈과 귀가 더욱 어두워진 탓에, 외람되이 자리를 잘못 차지하고 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는 일마다 착오를 범해 일을 그르친 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병이 침범해 날로 위중해지고 고통스러워서 회복될 기약이 없습니다. 대정의 자리가 병을 치료하는 곳일 수 없습니다. 다사다난한 때를 당하여 일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다면 그저 무모한 죄만 쌓아갈 뿐이라, 신 더욱 황공하옵고 애가 탈 정도로 걱정되옵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간절한 심정을 굽어 헤아리시어 속히 체직을 명해주소서.”
불허한다는 비답이 왔다.

---

111) 돈유(敦諭): 임금이 신하나 선비들에게 교지를 내려 맡은 일이나 학문에 힘쓸 것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注書辛成己來傳.
王若曰: “嘉猷黼黻乎治道, 方切期於贊翼. 元老柱石乎邦家, 奚可輕其去就? 一之不可, 再斯何爲, 惟卿敦大閎深, 中和溫粹. 學通天人之妙, 務爲韜晦, 才抱經綸之能, 每加謙遜. 卿自有德, 人實不知. 屬玆天於艱難, 遂致國事之潰裂, 自從于亂, 實多乎勞. 國有老成人, 衆望咸爲之重, 視猶左右手, 予心賴以則寧. 況戎事尙未定焉, 豈大臣有是請耳! 自爲計得, 顧於義何? 風寒暑濕之來侵, 愆恙因人難免. 震撼擊撞之相戛, 鎭定匪卿誰宜? 此時勢殊異乎曩時, 昨日疾愈於今日. 於戲! 鄧禹佐漢, 實贊中興之豐功, 裴度相唐, 潛消老賊之兇計. 勉效廟堂之奇策, 快雪宗社之深羞. 限暇則寬, 庶幾安心而有裕, 無令來告. 豈容缺望而苟從? 所辭宜不允. 故玆敎示, 想已知悉.”

주서 신성기가 와서 전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계책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일조했기에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원로는 나라의 기둥이거늘 어찌 그 거취를 가벼이 할 수 있겠는가? 한 번도 불가한데 두 번이 웬 말인가? 생각건대 경은 사람됨이 크고 깊이가 있으며, 온화하고 순수하다. 학문으로는 천인(天人) 간의 오묘함에 통달했으나 감추려고 애썼고, 천하를 다스릴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매번 겸손했다. 또한 경은 본래 덕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천하가 어지럽고 국사가 무너진 이때에, 난리 통에 따라다니며 실로 노고가 많았다. 나라에 노성한 사람이 있으면 중망이 그에게로 모여 마치 자신의 손발처럼 여기니, 과인의 마음도 이에 힘입어 안정되었도다. 하물며 전쟁이 아직 평정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대신이 이런 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위한 계책이라면 나쁠 것 없지만, 의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가? 바람과 추위, 더위와 습기가 침투해 오면 사람에 따라 병을 면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천지가 진동하고 서로 공격하는 이때에, 경이 아니면 누가 이를 진정시키겠는가? 지금의 상황은 지난 시절과 현격하게 다르고 어제의 병은 오늘 나을 수 있다.

오호라! 등우(鄧禹)[112]는 한나라를 보좌하여 실제 나라를 중흥시키는 데 큰 힘을 보탰고, 배도(裴度)[113]는 당나라를 위해 도적의 흉계를 소멸시켰다. 조정에 기묘한 계책을 내는 데 힘써 종묘사직의 수치를 후련히 씻도록 하라. 휴가는 넉넉히 줄 터이니 마음 편히 먹고 여유를 가지되, 찾아와서 고하지 안 해도 좋다. 어찌 경을 결망(缺望)[114]시키면서 그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사직은 당연히 윤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又上箚請免, 其辭以爲:
“議政府右議政臣鄭琢, 伏以臣資稟凡庸, 身且老病, 自分無復陳力於就列之地. 況且台鼎之任, 揆察庶僚, 百責所萃, 實非凡庸老病所可冒據. 自從竢罪本職, 昏瞶益甚, 臨事茫然, 隨手做錯, 果致公議之發. 小臣無狀, 固罪嘖之不暇, 而聖慈如天, 反加優容, 待以大臣之禮, 乃至再降敦諭, 臣不勝感激之至. 臣敢不思所以策勵駑鈍, 仰報萬一! 第念賤疾支離, 差歇無期. 百揆之職, 初非養病之地, 不可一日冒據. 如使不恤公論, 力疾就職, 則顯是終始無恥之人. 方殿下撥亂之日, 如此土梗, 將焉用之哉? 國家事體, 微臣情願, 俱有所妨, 決不可仍冒相臣之任. 伏望聖明, 亟命遞改, 庶得公私兩全. 累瀆宸嚴, 無任激切屛營之至. 取進止.”
答曰: “如是累辭, 勉從之.”

다시 차자를 올려 면직을 청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 우의정 신 정탁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타고난 품성이 평범

112) 등우(鄧禹): 후한 광무제(光武帝)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개국 공신이다. 광무제가 즉위하자 삼공(三公)의 하나인 대사도(大司徒)에 임명되고 고밀후(高密侯)에 봉해졌다.
113) 배도(裴度: 765~839): 당나라 헌종(獻宗).목종(穆宗) 때의 명신(名臣)이다. 당시에는 번진(藩鎭)을 할거하고 있던 절도사들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웠는데, 배도는 제장들을 통솔하여 회서(淮西)의 난을 평정하고 진국공(晉國公)에 봉해지고 재상을 역임했다. 태부(太傅)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14) 결망(缺望): 관리 임명 후보에 탈락되는 것을 말한다.

하고 변변치 못하며 몸 또한 늙고 병들어 더 이상 힘을 펼쳐 조정의 반열에 오를 수 없사옵니다. 하물며 대정의 자리는 백관을 총괄하고 온갖 질책이 모이는 곳으로, 평범하고 늙고 병든 자가 함부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상 직에 있은 뒤로 눈과 귀가 더욱 어두워진 탓에, 일에 닥쳐서도 망연자실하였고, 하는 일마다 착오를 범해 결국 공론을 유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변변치 못한 신을 죄 주고 꾸짖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하늘같은 성상의 자비로우심으로 도리어 관용을 베푸시어 대신의 예로서 대해 주시고, 두 차례나 격려의 유지를 하사하시었으니, 신은 지극한 감격을 누를 길이 없사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우둔한 자신을 채찍질해 만분의 일이나마 성은에 보답할 길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천한 몸 병을 질질 끌며 나을 기약이 없습니다. 백관을 총괄하는 자리가 병을 치료하는 곳일 수는 없으니, 하루라도 함부로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공론을 개의치 않고 병을 무릅쓰고 출사한다면, 끝내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야흐로 전하께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이때에 흙으로 빚은 인형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장차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나라의 체통과 미천한 신의 바람에 모두 방해가 될 뿐이어서 결코 함부로 재상의 소임을 맡을 수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급히 체직을 하명하시어 공사(公私) 모두들 보전하시옵소서. 누차 위엄을 더럽히고 성총을 어지럽혀, 간절하고 황공한 마음 이길 길이 없사옵니다.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처럼 누차 사양하니 어쩔 수 없이 따르겠노라.” 하고 비답이 내려왔다.

是萬曆二十三年乙未五月日也. 同月二十五日政, 行知中樞府事除授. 時琢苦寒痞症, 久未出謝, 至七月十四日肅拜. 仍待罪, 啓曰:
“仰瀆惶恐. 臣頃蒙謬恩, 冒從相臣之後, 臨事做錯, 罪戾日積, 公議所不容. 而聖度包荒, 反加優容, 及旣遞免, 猶除授官爵, 以全始終之恩. 蟻螻微臣, 仰戴聖恩, 如天地父母, 敢不糜粉, 思補涓埃? 而臣本迂疏, 又乏才識, 不適時用. 年衰以來, 身又多病, 亂離之後, 轉覺深重, 加以

心悉且劇. 自入夏節以來, 重感暑濕, 霍亂泄瀉諸般新證, 相繼疊發, 乃至廢事. 本職則雖別無句當之事, 當朝家夙夜憂遑之日, 又且殿最臨時, 帶職廢事, 實所未安. 玆不辭煩瀆, 嘗俱由請遞, 已呈政院. 政院以近例一司兩員, 不得一時竝辭, 不爲入啓.
厥後聞之. 臣所呈單, 尙留置政院云, 下情無由及時上達. 臣疾彌留, 亦未得及時出仕, 今又方患間日之瘧已經三度. 方痛之時, 熱勢極壯, 至不省人事. 仍竊伏念, 凡官除授, 謝恩一節, 自有程式而曠日稽滯, 不成貌樣, 臣實惶憫. 直竢公論之自發, 亦甚未安, 措躬無地. 今乘病間之行, 敢來待罪. 冒瀆宸嚴, 尤不勝隕越之至."
答曰: "勿待罪. 調病出仕."

때는 만력(萬曆) 23년 을미년 5월 아무 날이었다. 같은 달 25일 조정 논의에서 행[115]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이때 나는 학질에 걸려 고생하느라 오랫동안 나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못하다가 7월 14일에 나아가 사은숙배하였다. 이에 죄를 청하면서 계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총을 어지럽혀 황공하옵니다. 신이 지난번에 과분한 은혜를 입어 함부로 재상의 자리에 오른 뒤로, 일에 임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죄가 날로 쌓여서 공의가 용납하지 못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상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도리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 체직이 되자마자 오히려 관직을 제수하여 시종 은전을 베푸셨습니다. 개미와 땅강아지 같은 미천한 신이 입은 성은이 마치 천지의 부모와 같으니, 어찌 분골쇄신하여 티끌만큼이라도 나라에 보답하고자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우활하고 엉성한 데다 재주와 식견도 없어서 때맞추어 쓸 만한 인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 뒤로 몸에 병 또한 많아졌는데, 난리 이후로 병이 더 심해지고 게다가 마음의

115) 행(行): 고려·조선 시대에,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벼슬아치를 구별하여 붙이던 칭호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행(行)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守)를 붙였다. 정탁은 당시 정1품이었는데, 지중추부사는 정2품 관직이므로 '행'을 붙인 것이다.

병도 심해졌습니다. 여름철이 된 이후로는 더위와 습기에 상한 나머지 토사곽란과 갖가지 새로운 증세가 거듭 이어져 일을 전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직이 비록 별로 담당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조정이 밤낮으로 걱정하는 때이고, 또한 인사고과가 임박한 만큼 자리를 꿰차고 출사하지 않는 것은 실로 편치 않은 일입니다. 이에 무례를 무릅쓰고 사유를 갖추어 체직을 청하고 이미 정원(政院)[116]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원에서 근자의 예를 들어 한 관서에서 두 명이 동시에 나란히 사직할 수 없다 하여 계문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들어보니 신이 올린 단자가 아직도 정원에 있다 하니, 아랫사람의 사정을 제 때에 웃전에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병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제 때에 출사할 수도 없고, 지금은 또 며칠 간격으로 발작하는 학질을 세 차례나 앓았습니다. 한창 아플 때는 열이 매우 높아서 사람까지 못 알아볼 지경입니다. 엎드려 생각해 보건대 무릇 관직에 제수되어 사은숙배하는 데는 본디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허송세월 지체하느라 모양새가 말이 아니니 신은 진실로 황공하옵니다. 다만 공론이 절로 일어나기를 기다렸으나, 이 역시 심히 마음이 편치 않아 몸 둘 곳을 모르겠나이다. 지금 약간 차도가 있기에 감히 와서 대죄하옵니다. 위엄을 더럽히고 성총을 어지럽혀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죄하지 말라. 병을 조리한 뒤 출사하라."는 비답이 내려왔다.

時南邊事勢危急, 告退非時, 勉留從事. 然而身病支離, 暇日常多. 越明年丙申春疏放, 恩旨特下, 諸大臣收議, 臣琢議以爲:

"咸崇德付賊, 射殺本國人命, 罪名極重, 而他無可據. 只以箭上刻名之故歸罪, 事涉疑獄. 梁應運、宋檥、權見烈、朴仁賢等罪名亦重, 而已受累次發明. 且皆業武之人, 特命減死, 使之立功自效, 則似合爲囚求生之意. 李丞男罪名, 特出於閔宗祿現告, 而別無現贓之物. 且宗祿既以誣告自服, 則此是已完之獄, 不當仍爲刑訊. 尹瀹罪名, 實犯贓汚,

116) 정원(政院):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를 말한다.

而其穀置之於嫌怨人家, 似不近情. 右囚人等罪犯情狀, 大槪如此.

당시 남쪽의 상황이 몹시 위급해져 사직을 청할 때가 아니었기에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일을 맡아 보았다. 그러나 병을 질질 끌면서 쉬는 날이 많았다. 이듬해 병신년(1596) 봄에 죄수들을 풀어준다는 주상의 특명이 있어 대신들의 여론을 수합[117]했는데,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다.

"함숭덕(咸崇德)[118]이 왜적에게 붙어 본국 사람들을 쏴 죽인 것은, 그 죄명은 막중하나 달리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화살에 새겨진 이름만 가지고 그에게 죄를 돌린다면 이는 의심쩍은 옥사에 해당합니다. 양응운(梁應運)·송의(宋檥)[119]·권극렬(權克烈)[120]·박인현(朴仁賢) 등의 죄명 역시 무거우나 이미 형벌을 받았고, 누차 죄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 모두 무인이니, 특명을 내려 사형을 감해 주시고 공을 세워 스스로 충성을 맹세하게 한다면, 죄수를 위해 살길을 모색해 주는 뜻에도 합치될 것입니다. 이승남(李丞男)의 죄명은 특별히 민종록(閔宗祿)의 고변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드러난 장물이 없습니다. 또한 민종록이 무고했다고 이미 자복하여 이미 끝난 옥사이오니, 그대로 형신해서는 안 됩니다. 윤흡(尹瀚)의 죄명은 실로 뇌물 횡령죄[121]에 해당하지만, 그 곡식을 원수의 집에 가져다 놓은

117) 수합: 원문은 '수의(收議)'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나 어떤 문제에 관해 임금이 대신과 유신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합(收合)하는 것을 말한다.

118) 함숭덕(咸崇德): 『조선왕조실록』「선조 27년」 조에 "수문장(守門將) 함숭덕(咸崇德)은 적들이 춘천(春川)에 주둔하던 날 본 고장 사람으로서 적에게 투항하여 적과 한마음이 되었고, 관군과 접전하던 날에는 아군에게 난사(亂射)하여 퇴각하게 하였습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119) 송의(宋檥: 1559~?): 자는 정숙(正叔)이다. 『만력11년 계미 9월 초3일 별시방목(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에 병과(丙科) 400위로 급제했다는 기록이 있다.

120) 권극렬(權克烈: 1564~?): 원문에는 '권견렬(權見烈)'로 나와 있으나 '극렬'의 오기이다. 『신묘 별시문[무]과방목(辛卯別試文[武]科榜目)』에 병과 205위로 급제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121) 횡령죄: 원문은 '장오(贓汚)'로,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범장(犯

것이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이상 죄수들의 범죄 상황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新經大亂, 人心愁苦, 犯罪且多, 此政朝家專尙寬政之時. 犯罪之人, 雖不無自致之失, 而亦不無誤陷之事, 一切加刑, 則恐或有枉死, 獄中之冤, 自上寧失不經, 特示欽恤之仁, 一樣疏放, 則實是鎭撫人心之一大段也. 七人之外, 如有情法稍涉可議者, 惟冀裁自聖衷. 分其輕重, 竝示好生之德, 不勝幸甚.

지금 막 대란을 겪은 뒤라 인심이 불안하고 범죄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조정에서 너그러운 정치를 펼칠 때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본인이 자처한 잘못도 없지 않지만, 모함에 빠진 경우도 없지 않으니,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하다 보면 혹시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을까 저어되옵니다.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게 하느니, 주상께서 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더라도[122] 특별히 죄수를 신중히 심의하고 긍휼히 여기는 인정을 보여주심으로써 일괄 석방하신다면, 실로 인심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 일곱 명 이외에 인정으로나 법적으로나 약간의 이론의 여지가 있는 자에게, 성총으로써 판단하시어 죄의 경중을 나누고 아울러 호생지덕(好生之德)[123]을 보여주신다면 크나큰 다행이겠나이다.

---

贓)한 자는 녹안(錄案)하여 이조(吏曹)·병조(兵曹)·대간(臺諫)에 이첩(移牒)하고, 자손에게 정부(政府)·육조(六曹)·대간·수령(守令)을 제수(除授)하지 않는다."고 한다.

122) 주상께서……듣더라도: 원문은 '영실불경(寧失不經)'으로, 『서경』「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이다. 순 임금 때 법관인 고요(皐陶)가 순 임금의 생명을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찬양하면서 "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이 의심스러울 때는 중한 쪽으로 상을 주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하려고 했다(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23) 호생지덕(好生之德): 『서경』「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서 훌륭한 정치가 시작됨을 비유한 말이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을 지키는 태도를 굽히시니, 생명

且金德齡獄事, 臣不能無惑焉. 殺人者死, 此實古今常行不易之定法. 而爲將帥者, 受命臨陣, 設有誤殺之罪, 而必視殺人之律, 則此豈古者命將推轂專制閫外之意乎? 如德齡則已矣, 假有人焉, 授以元帥之任, 寄以三軍之命, 一出國門, 誅賊於千里之外, 則其委任責成之意, 顧不重耶? 受命專征, 別無喪師辱國之罪, 而特以管下誤殺之故, 遽令離陣, 拿致王獄, 則與賊對壘之日, 事變無窮, 此實致危之道. 非但此也, 凡爲主鎭之將, 如以管下之故, 朝廷輒加殺人之律, 則其勢將至於主將不能措手於戰陣之間, 其何以能正肅其衆而使赴功耶? 德齡之獄, 不幸似之. 此臣之所以, 不能無惑者也. 如德齡雖非元帥之比, 亦是朝廷命遣之將也. 濫殺人命, 德齡誠不能無罪矣. 然而違主將一時之令者斬, 亦軍中古今通行之法也. 主鎭之將, 若以軍律而殺其管下, 則朝廷恐不必深罪以損主將之權. 當國家多亂, 一才可惜. 古者刑餘黥卒, 名汚群盜者, 苟有一才, 則皆得致用, 未有大過, 則不苟加罪. 況德齡身負重名, 當初以仗義討滅自任, 朝廷褒奬, 至賜以忠勇之號. 德齡爲首, 一番南下, 雖無平賊之功, 虎豹在山之勢, 未必不在於忠勇陣中, 兇賊亦必聞知有德齡之名. 一朝因其管下之訴, 遽致王獄, 明示顯戮, 則兇賊聞之, 恐必增氣. 亦何以援起南方將士之心耶? 然則一將之死, 無裨於萬人之警, 而徒長萬人之惑. 所關非輕, 豈不重可慮哉?

또한 김덕령의 옥사에 대해서 신도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통행되는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장수된 자가 명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 반드시 살인죄의 법률을 적용한다면 이것이 어찌 고대의 왕들이 장수에 명해 수레바퀴를 밀어주고[124], 도성 밖 지역을 전적으로 다스리게 한 뜻이겠습니까? 김덕령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

을 소중히 여기는 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관리들을 거스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於民心, 玆用不犯於有司)."

124) 수레바퀴를 밀어주고: 원문은 '추곡(推轂)'이다. 『사기』「형연세가(荊燕世家)」에 의하면 장수가 출정할 때 왕이 친히 꿇어앉아 수레바퀴를 밀며 군중(軍中)의 전권(全權)을 맡기는 의식(儀式)이 있었다고 한다.

가령 누군가를 원수(元帥)에 임명하고 삼군의 통수권을 맡긴 다음 국문을 나가 천리 밖에서 왜적을 죽이게 했다면, 임무를 맡겨 성공을 독책하려는 뜻이 또한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받아 오로지 정벌에만 관여하면서 특별히 군사를 잃거나 나라를 욕보인 죄도 없는데, 그저 휘하의 군사를 잘못 죽인 것 때문에 급히 명을 내려 군진을 떠나 의금부로 잡아들인다면, 적과 대치하고 있은 지금의 형세에 끝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니, 이는 실로 위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대개 진영을 담당하는 장군들에게 휘하의 군사들 일로 조정에서 번번이 살인죄의 법령을 적용한다면, 장차 장군들이 적진에 나아가 손을 쓸 수 없게 될 터이니, 어떻게 군사들을 바로 잡아 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김덕령의 옥사가 불행히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의혹이 없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김덕령이 비록 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의 명에 따라 파견된 장수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였으니 김덕령이 진실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장군의 일시의 명을 어긴 군사를 참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군중에서 통용되던 법입니다. 진영을 지휘하는 장군이 군율에 따라 그 휘하를 죽였다고 해서 조정에서 굳이 죄를 깊이 따져 물어 장군의 권위를 훼손시킬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를 당하여 한 명의 인재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군졸이나 도둑질하여 이름이 더렵혀진 사람까지도 진실로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모두 등용했고, 큰 잘못이 아니라면 진실로 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김덕령은 명망을 지니고 있고, 애초에 의병으로서 왜적 토벌에 나섰기에 조정에서 이를 표창하여 충용위(忠勇衛)라는 작호까지 하사했습니다. 김덕령이 우두머리가 되어 한 차례 남하한 뒤로 비록 아직 적을 평정한 공을 세우지 못했지만, 호랑이가 산에 있는 듯한 기세가 충용의 진영에 없다고 할 수 없고, 흉적들도 김덕령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을 터인데, 하루아침에 휘하의 고소로 인해 갑자기 그를 의금부로 불러들여 죽여 효시하신다면, 흉적들이 이를 듣고 틀림없이 사기가 오를까 걱정이옵니다. 또한 남방에 있는 장군과 군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진작시키려 하십니까? 그런즉 장군

한 명의 죽음은 수많은 군사들을 경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군사들의 의혹만 조장할 뿐입니다.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어찌 거듭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自亂生之後, 身陷賊汚, 忘恩負國者何限? 如德齡者, 雖無才功, 別無負國之罪, 而竟陷刑戮, 則國人或恐終不解也. 且德齡之受命無功, 蓋亦有說. 唐將時方主和, 一禁我軍之討賊, 德齡雖有勇智, 抑何爲哉? 亦不可以此深罪德齡也. 臣之妄見以爲. 朝廷初因公論之發, 旣命拿致則德齡, 亦知公論之可畏, 而自分必死. 自上特命寬宥, 以責後功. 則朝家御將用才之道, 咸得其宜, 而德齡亦當知感國恩, 以死自效. 古之帝王御世戡難, 亦或多用是道, 今猶可考. 伏惟上裁."

왜란이 발생한 이후로 왜적의 소굴에 들어가 은혜를 잊고 나라를 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덕령과 같은 자는 비록 공로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배신한 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형벌을 가하신다면 백성들이 혹여 이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김덕령이 명을 받고도 공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한창 화친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왜적 토벌을 줄곧 금하고 있었으니, 김덕령이 제아무리 용맹과 지혜를 지녔다고 한들 어찌해 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으로 김덕령에게 죄를 깊이 따져서는 안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정에서 공론이 일어 김덕령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김덕령 역시 공론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꼼짝 없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상께서 특명을 내려 관용을 베푸시고 훗날 공을 세우라고 독려하신다면, 조정에서 장수를 부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가 타당함을 얻을 것이고, 김덕령 또한 나라의 은혜에 감격해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할 것입니다. 고대의 제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난을 평정할 때도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니, 지금 참고할 만합니다. 성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時言者亦非一二, 囚人多原. 而金德齡特命放釋, 使之宣力自效. 時萬曆二十四年丙申春二月日也. 時上將有拜陵擧動, 適有天變, 琢具箚草本以爲:

"大內近側, 震暴有災, 人畜竝斃, 事甚驚慘, 天所以示譴者至矣. 自上擧動之未必, 愚智皆知. 豈可以天戒, 置諸杳茫之域, 而莫之致省耶? 凡人主一動, 貴在愼重. 至如日時休咎, 事涉微末, 而猶且委諸太史推占, 不吉則不行. 況當國事虞憂之際, 天之警告如此, 無異提耳而面命. 其所以仁愛之者亦至矣. 當此之時, 仰答玄佑, 惟在用靜一款, 而冒涉郊野, 早暮擧動, 初非遇災用靜之道. 魯有郊祀已卜, 而鼷鼠示災, 乃不郊, 唐帝自奉天而歸, 郊廟將省, 滌牲撰吉, 甫及吉日以其非時還停. 此外雜出子史傳記如此類者, 固非一二.

당시에 이에 대해 의론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기에 죄수들 대부분이 풀려났다. 김덕령은 특명으로 석방하고, 힘써 나라에 보답하게 했다. 때는 만력 24년 병신년(1596) 봄 2월이었다. 당시 주상이 장차 능행(陵幸)을 가려할 때 마침 천재지변이 일어났기에 나는 차자의 초고를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궐 안 가까이에 벼락이 내리쳐 사람과 가축이 나란히 죽어나가는 놀랍고 참담한 일이 있었사온데, 하늘이 견책의 뜻을 드러냄이 지극하옵니다. 주상의 능행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찌 하늘의 경계를 아득한 곳에 던져둔 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군주의 한 번 거동은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날짜와 시간의 길흉처럼 사안이 미미한 것조차도 태사(太史)[125]에게 맡겨 점을 쳐보고, 불길하면 행차하지 않는데, 하물며 국사가 근심스런 이때에 이와 같은 하늘의 경고는 귀에 대고 말하고 면전에 대놓고 말하는[126]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늘

125) 태사(太史): 옛날 중국에서 기록(記錄)을 맡아보던 관리를 말한다.
126) 귀에……말하는: 원문은 '제이면명(提耳面命)'이다. 『시경』「억(抑)」의 "면전에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귀에 대고 말해주노라(匪面命之, 言提其耳)."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 주상을 아끼고 사랑하심이 이토록 지극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크나큰 하늘의 도움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조용히 있는 것이니, 함부로 교외에 나가 아침저녁으로 움직이신다면 결코 재앙을 만나 조용히 처신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노(魯)나라는 교제(郊祭)[127] 날짜를 미리 점쳐놓고도 생쥐가 재앙의 조짐을 드러내자[128] 교제를 지내지 않았고, 당나라 덕종(德宗)은 봉천(奉天)에서 돌아와[129] 장차 교제와 묘제(廟祭)[130]를 지내려고 희생을 씻고 길일을 잡았으나, 막상 길일이 되자 제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한 그만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부(子部)와 사부(史部),[131] 전기(傳記)에 이와 같은 사례가 허다하게 보이는지라,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惟我先朝, 亦或有遇災而還寢之時, 其所以遇災修省, 非時不擧之義至矣. 今者內廐別養, 相繼而斃, 監臨官以御乘闕進爲憂云. 此雖染疫所致, 亦甚可驚. 近日各陵受香, 臨時陪持人及載持馬三疋, 一時震死, 譴告非常. 至於如此, 歷謁園陵, 此固非時.
且竊伏惟, 兵興五載, 亂靡有定, 生靈靡孑, 財已殫矣, 力且竭矣. 凡所力役, 一切停廢, 猶恐救之不贍. 今此擧動, 雖務從簡約, 而道路之修, 橋梁之治, 亦豈無民力一分之傷耶. 然則此非但不能克謹天戒. 而亦非

127) 교제(郊祭):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128) 생쥐가……드러내자: 원문은 '혜서시재(鼷鼠示災)'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성공(成公)」 7년에 다음 문장이 있다. "봄 정월에 생쥐가 교제에 바칠 소의 뿔을 갉아 먹자, 점을 쳐 소를 바꾸었다. 생쥐가 또 그 소의 뿔을 또 갉아먹기에 그 소를 놓아 보냈다.(春王正月, 鼷鼠食郊牛角, 改卜牛, 鼷鼠又食其角, 乃免牛)."
129) 당나라……돌아와: 당나라 덕종 4년(783)에 경원(涇原) 군사의 반란이 일어나 덕종이 봉천(奉天)으로 파천하였다. 태위 주자(朱泚)가 반군의 추대를 받아 장안(長安)에 들어와서 황제를 칭하고 대진(大秦)이라 국호를 정한 다음,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봉천을 포위하였으나, 이성(李晟)에게 패하였다. 『구당서(舊唐書)』「주자열전(朱泚列傳)」에 나온다.
130) 묘제(廟祭):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131) 자부(子部)와 사부(史部): 옛날 중국에서는 전적들을 분류할 때 경(經).사(史).자(子).집(集) 4부 분류 체계를 사용했다. 자부에는 주로 일가(一家)를 이룬 학자의 학술이나 철학과 관련된 서적을, 사부에는 역사 관력 서적을 수록했다.

所以非時不擧之義也. 自上以嚴奉孝思之誠, 雖不暇他顧, 君上一動, 必須十全乃可. 臣之妄見如此. 惶恐敢啓. 取進止.

우리 선대 왕조에서도 간혹 재앙을 만나 중도에서 그만둔 때가 있었으니, 이는 재앙을 만나면 마음을 다스리고 반성하며, 제때가 아니면 거행하지 않고자 했던 뜻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구(內廐)[132]에서 따로 기르던 가축들이 잇달아 죽어나가고 있어 감림관(監臨官)이 주상께서 타는 말을 진상하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전염병 탓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근자에 각 왕릉에서 향을 받을 때 임시 배지인(陪持人)[133]과 용품을 싣고 가던 말 세 필이 일시에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그 경고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능행을 나간다는 것은 진실로 때가 아닌 듯하옵니다.

또한 엎드려 생각해 보건대 전란이 일어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평정되지 않고 있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으며, 가산은 탕진되고 인력 또한 고갈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노역을 멈추어도 되레 넉넉하게 구제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이번 능행을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 하더라도 도로를 닦거나 교량을 놓는 일에 있어 백성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늘의 경계를 삼가 지킬 수 없을뿐더러, 때가 아니면 거행하지 않는다는 뜻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상께서 효를 지엄하게 받들고자 하는 정성으로 비록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의 한 번 거동은 반드시 만전을 기해야만 합니다. 신의 부질없는 생각이 이와 같기에, 황송함을 무릅쓰고 감히 계를 올립니다.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

---

132) 내구(內廐): 조선시대, 궁궐의 마구간과 임금이 타는 말이나 수레 따위를 관리하던 관청

133) 배지인(陪持人): 지방의 관아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狀啓)나 진상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말한다.

時左相金應南已先啓蒙允, 故此箚不爲入啓. 時以其人事, 議諸大臣, 琢議以爲:

“法久弊生, 古今通患. 因時制宜, 固不無通變之道. 然而不究其起弊之源, 而徒以裁減爲事, 則生民弊瘼, 終不得祛矣. 姑揭其人一事而言之, 厥初創立本意, 今不可追考, 而旣立之後, 因爲闕內諸處日用常供, 不可廢闕, 遂成生靈百年弊瘼. 朝廷深加憂念, 在前蠲減, 固非一再, 而生民怨苦, 至今尤甚. 御史目擊弊瘼, 啓請裁減, 固所宜當. 況今兵火蕩敗之餘, 孑遺生靈, 萬存一二, 絲命保全, 拯溺救焚之政, 固不可晷刻淹滯. 而其人責辦之事, 依舊猶存, 則幾盡生靈, 至盡乃已, 又豈不深可惕慮? 然而非此, 則朝家日用應供, 責辦無路, 此是大段. 誠非細慮, 苟不思責辦之路, 而一以蠲減爲事, 則朝家常供, 廢絶不繼, 有司仍舊之請, 勢所不已. 欲祛民瘼, 而廢缺恒供, 本無是道.

당시 좌상 김응남이 먼저 계를 올려 윤허를 받았기에 이 차자는 올리지 못했다. 당시에 기인(其人)[134] 안건에 관해 대신들에게 논의하게 하였는데, 나의 의론은 다음과 같다.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나니, 이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병통입니다. 시의에 따라 알맞게 처리하면 진실로 변통의 방법이 없지 않으나, 폐단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따져보지 않고 그저 줄이는 것만을 능사로 여긴다면 백성들은 고질적인 폐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시 기인 한 안건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면, 처음 [이 제도를] 세운 취지를 지금에 와서 알 수는 없으나, 제도가 생겨난 후에 궐내의 각 처에 제공할 일용품 때문에 없앨 수 없다 하여 결국 100년 동안 생령들에게 큰 폐해를 입혔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심히 우려하여 이전보다 줄여준 적도 실로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백성들의 원망

134) 기인(其人): 신라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유래하여,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顧問)에 응하게 하곤 하였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에 역사되다가 태종(太宗) 9년(1409) 이후에는 주로 소목(燒木)을 바치는 역(役)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과 고생은 지금에 와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어사(御史)가 폐단을 목격하고 계문을 올려 줄일 것을 청한 것은 진실로 마땅한 처사입니다. 하물며 전란이 휩쓸고 간 지금 만에 한두 명 살아남은 백성들은 실낱 같은 목숨을 보전하고 있으니,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진 위태로운 사람을 구하는 정치가 진실로 잠시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인을 책판(責辦)[135]하는 일은 예전처럼 아직도 남아 있어 거의 죽어 가는 생령들이 다 죽고 나서야 그치게 될 것이니, 어찌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아니면 조정의 일용품을 책판할 길이 없게 되니,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책판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경감만을 능사로 여긴다면, 조정의 상공이 폐해지거나 끊어져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니, 유사(有司)들이 예전처럼 두기를 청하는 것도 형편상 부득이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여 상공(常供)을 없애는 법은 없습니다.

其人一事, 臣千思萬思, 未得其良策. 無已則有一說焉, 盍反其本乎? 先王之世, 已行此法, 區劃處置, 必非偶然. 責辦有制, 禁制有式, 行之順便, 必不如後來之難行. 想惟當初未必不爲良法, 而厥流因循, 轉輾積弊, 遂不可救, 仍至於此. 當今之計, 朝廷之上, 莫若躬行節儉. 深體當初制法本意, 兼究積弊之源, 一向以復古爲心, 身先導率, 至如各處常供之物, 不得已者外, 僅足取用, 務從撙節, 一毫不加. 凡爲代納稱名人者, 中間侵責一切非理之事, 別立科條, 嚴加禁制, 俾勿復爲生心. 如此之法, 堅如金石, 行此之令, 信如四時, 期於必施, 毋行姑息, 則庶合反古之意, 而生民之弊瘼, 因此而或救矣. 不爾則雖切於俯恤民隱, 累下蠲減之敎, 而生民弊瘼, 恐終不革也. 惶恐敢啓. 伏惟聖裁.”
啓下該曹.

기인에 관하여 신이 천 번 만 번 생각해 보았으나, 좋은 계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득이 한 말씀 올리자면, 차라리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떨는지요? 선대에도 이런 법을 이미 시행한 바 있어

135) 책판(責辦): 책임 지워 마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 구획하고 배치하였으니,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책판에도 나름 법도가 있고, 금제(禁制)도 나름 법식이 있으니, 편의에 따라 시행한다면 반드시 뒷날 시행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당초에 좋은 법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답습하다 보니 갈수록 폐단이 쌓여 결국 구제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조정에서 직접 절약과 검소를 행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 법을 만든 본래의 뜻을 깊이 체득하는 동시에 폐단이 쌓인 원인을 따져보신 뒤, 오로지 옛 제도를 회복하는 것에만 뜻을 두고 몸소 솔선수범하시어, 각처에 공급하는 물건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저 필요한 만큼 취하고 힘써 절약하며 조금도 더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대납한다고 속이는 자들의 경우 중간에서 트집을 잡고 일체의 모든 비리를 저지르는데, 따로 법조항을 마련해 엄금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 법을 견지함에 금석(金石)처럼 견고하게 하고, 이 명령을 시행함에 사시(四時)처럼 믿음직스럽게 하여 반드시 시행할 것을 기약하고 임시방편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옛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뜻에도 부합할 것이고 백성들의 폐단도 이 덕분에 어쩌면 구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들의 고통을 구휼함을 절실히 하여 경감하라는 교지를 여러 차례 내려도 생민들의 폐단은 아마 끝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황공스럽게 감히 아룁니다. 삼가 성상의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
해당 관서에 교지가 내려왔다.

時李夢鶴獄事起, 辭連金德齡鞫問, 事多不實. 琢在推鞫廳草啓以爲.
金德齡之獄, 臣終不能無惑焉. 德齡別無情跡之可據, 特以其騰諸賊口, 以此而疑其謀逆, 必殺乃已, 則何以解國人之疑乎? 德齡之名, 非但國人知之, 夷夏皆知. 賊魁之當初謀聚徒黨, 誘賫愚氓, 先自張皇聲勢, 挾詐而言曰: ‘吾今擧事, 必無不濟. 其陣其將軍, 且又其地其力士亦至.’ 一口唱之, 百口和之, 此其兇謀之最深者也. 賊中之事, 不可謂必無此謀, 至如洪季男, 時在守城而稍有名字故, 亦不免云云, 然而終不及德

齡. 德齡名最重故, 見賣於賊口尤甚, 似不得以此指謂必參逆謀也. 凡賊招內, 湖南往來相通云, 按之多不驗. 五道軍馬竝來之言, 等是賊中之語, 無非誇張之說, 決不可以此據而爲信, 昔扶蘇、項燕, 其死已久, 陳勝之徒, 猶假其名, 德齡之爲逆魁所藉, 何足怪哉? 凡賊張皇之說, 槪不出此, 非所難知.

때마침 「이몽학(李夢鶴)[136] 옥사기(獄事起)」의 내용 중에 김덕령의 추국에 관한 일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나는 추국청에서 계문의 초고를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령의 옥사에 대해서 신은 끝내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김덕령에게 실로 근거할 만한 정황이 특별히 없는데, 다만 적들의 입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가 역모를 꾀했다고 의심하여 기어코 죽이고 만다면, 어떻게 나라 사람들의 의혹을 풀 수 있겠습니까? 김덕령의 이름은 나라 사람들도 알 뿐만 아니라 오랑캐와 중국에서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적의 괴수가 당초에 도당들을 모아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허장성세(虛張聲勢)하면서, '우리의 오늘 거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무개 진영의 아무개 장군도 올 것이며, 아무개 지역의 아무개 역사도 이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주창하자 백 명이 화답하니, 이것이 바로 저 흉악한 무리들이 부리는 심각한 계략인 것입니다. 적진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도모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홍계남(洪季男)의 경우,

136) 이몽학(李夢鶴: ? ~1596): 왕실의 서얼 출신이다. 아버지에게 쫓겨나 충청도.전라도 지방을 전전하다가 1592년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계속되는 전쟁과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함을 보고 모속관(募粟官) 한현(韓絢)과 함께 반란을 모의했다. 충청도 홍산 무량사에서 의병을 규합한다는 명목으로 장정을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동갑계회(同甲契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반란을 준비했다. 한현이 아버지의 상을 당해 홍주로 가게 되자 스스로 선봉장이 되어 1596년 7월 홍산현을 습격해서 함락시켰다. 이어 정산.청양.대흥을 계속 함락시킨 뒤 홍주성을 공격했으나 관군에게 패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음을 당했다.

당시 성을 지키면서 약간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하지 못했다 운운하는데, [그의 명성이라야] 김덕령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김덕령은 명성이 가장 높아 적들의 입에 심하게 오르내렸으니, 이것으로 김덕령을 지목해 틀림없이 역모에 가담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릇 적을 안으로 불러들여 호남으로 왕래하면서 내통했다고 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대부분 증거가 없었습니다. 5도의 군마가 함께 왔다는 말도 적들의 말과 같으며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으니, 결코 이를 근거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부소(扶蘇)[137]와 항연(項燕)[138]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진승(陳勝)의 무리들이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빌렸으니,[139] 도적의 괴수가 김덕령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무릇 도적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대개 여기서 벗어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德齡南下之後, 會失時宜, 雖無寸功之可紀, 而別無喪師辱國之罪. 及其湖賊唱亂之初, 聞其元帥傳令, 卽日調兵, 其翌日發行, 亦別無徘徊觀望之跡. 只以騰諸賊口之故, 不究其情跡, 而遽令徑斃嚴鞫之下, 則罪名不白, 國人疑終不解. 而南藩授閫寄者, 相與爲懼, 咸懷反側不自安之心, 則恐非國家之福也. 臣之過慮, 終始在此. 且當國事多難, 尙

137) 부소(扶蘇: ? ~기원전 210): 『사기』「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따르며, 부소는 진시황의 장자로 성품이 인자했다고 한다. 진시황의 노여움을 사 흉노를 막기 위해 장성(長城)에 주둔하던 몽염(蒙恬)의 대군을 감독하기 위해 북방의 상군(上郡)으로 보내졌다. 시황제 사후 이사(李斯)와 조고(趙高)가 보낸 거짓 조칙(詔勅)을 보고 자살하고 말았다.

138) 항연(項燕: ? ~기원전 223): 『한서(漢書)』「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 따르면, 항연은 전국시대 말 초(楚)나라의 장군으로 항량(項梁)의 아버지이며, 항우(項羽)의 조부이다. 진나라 장수 왕전(王剪)에게 초군(楚軍)이 대패하자 창평군(昌平君)을 초왕으로 세우고 진에 대항하다가 왕전.몽무(夢武)에게 패하여 자살했다.

139) 진승(陳勝)의……빌렸으니: 『사기』「진섭세가(陳涉世家)」에 따르면, 진이세(秦二世) 때 진승이 오광(吳廣)과 함께 반기를 들고일어나면서, 이미 죽은 진의 공자 부소와 초(楚)나라의 장수 항연이 살아 있다가 나타난 것처럼 꾸며 백성들의 호응을 불러 모았다.

未戡定, 海寇情形, 亦且難測, 無故而殺一名將, 深恐徒致敵人之笑侮, 而無裨於撥亂之政也.

김덕령이 남하한 뒤로 때마침 적절한 때를 놓쳐 비록 기록할 만한 작은 공도 세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군사를 잃어버리거나 나라를 욕보인 죄도 없습니다. 호남의 적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원수의 전령을 듣고는 그날로 병사를 동원해서 그 이튿날 출발했으니, 특별히 머뭇대거나 관망한 형적도 없습니다. 단지 도적들의 입에 올랐다는 이유로 그 정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급히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죽이거나 엄히 국문을 한다면, 죄명이 명백하지 않아 나라 사람들의 의심을 끝내 풀 길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남쪽 변방에서 장군의 임무[140]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하고 전전반측하며 불안해한다면, 아마도 나라의 복이 되지는 않을 듯 해 두렵습니다. 신의 지나친 염려는 시종일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고 해구들의 정황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유도 없이 한 명의 명장을 죽인다면, 왜적의 비웃음만 사고 난리를 평정하는 정책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할까 매우 두렵습니다.

苟或以爲未可輕釋, 則亦有說焉. 德齡實有逆謀, 則其情跡萬無終揜之理, 不如姑且仍囚. 遲延時日, 必待情跡彰著然後, 聲其罪而致誅, 則用法不苟, 罪人無辭而就死, 國人之疑, 亦且大解, 南藩壯士之宣力者, 庶皆自安而終無反側之心, 豈不幸甚? 伏惟上裁.

만약 가벼이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여기신다면 다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덕령이 정말 역모를 꾀했다면 그 정황을 끝까지 엄폐할

140) 장군의 임무: 원문은 '곤기(閫寄)'이다. 이 말은 임금이 도성 밖으로 출병하는 장수를 떠나보낼 때 수레바퀴를 밀어주며 "성곽의 문지방 안은 과인이 처리할 테니, 그 바깥은 장군이 알아서 처리하라(閫以內者, 寡人制之, 閫以外者, 將軍制之)"(『사기(史記)』「풍당열전(馮唐列傳)」)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곤기는 문지방 밖의 임무, 군사를 이끌고 경외로 싸우러 나가는 장군의 직임을 이르던 말이다.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니, 우선 가두어 두는 것만 못합니다. 시간을 늦추어 반드시 그 정황이 드러나기를 기다린 연후에 그 죄를 성토하고 죽인다면 법을 적용함에 구차하지 않고, 죄인도 말없이 죽음에 나갈 것이며, 나라 사람들의 의심도 또한 크게 풀릴 것이고, 남쪽 변방에서 힘쓰는 장수들도 스스로 편안해져 끝내 전전반측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천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성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時群議不諧, 未果入啓, 是丙申七月日也. 終死杖下. 時論冤之. 時南方邊報甚急, 琢上箚請自行南下, 綏定人心.
"伏以倭寇再動, 邊報甚急. 若捲地長驅, 兩湖莫保, 仍致京師戒嚴, 則智不及策, 臣竊爲宗社痛哭. 臣且聞西湖人心崩壞, 有難鎭服云. 若不及時撫定, 則朝廷命令, 恐或不通, 極可寒心. 臣非無老, 氣息尙全, 伏請許臣銜命南下, 奉宣德音, 撫定西湖人心. 仍抄若干壯士, 以遏賊鋒, 不勝幸甚. 李元翼雖已南下, 方莅嶺外, 道里遼遠, 恐難周遍, 臣與之協心分力, 死生以之, 庶補涓埃. 此臣之至願. 伏冀聖明, 俯諒危悰, 亟從臣謀, 無任懇切之至. 取進止."
萬曆二十五年正月日也.
答曰: "省箚爲國之誠至矣. 當與備邊司議處."
仍下備邊司回啓曰:
"琢上箚欲身往兩湖, 鎭定人心, 惓惓之誠至矣. 但李元翼旣受體察四道之任, 一時下去, 事體重難. 伏惟上裁."

당시 중론이 맞지 않아 결국 계문을 올리지 못했다. 때는 병신년 7월이었다. 김덕령은 결국 곤장을 맞고 죽었다. 당시 여론은 이를 원망했다. 당시 남쪽 변방에서 들어오는 보고가 위급했기에 나 정탁은 차자를 올려 스스로 남쪽으로 내려가 민심을 안정시키기를 청했다.

"엎드려 아뢰건대, 왜적이 다시 기승을 부려 변방의 보고가 위급합니다. 만약 왜적이 땅을 휩쓸고 승승장구하여 호남과 호서를 지키지 못해 도성에 계엄이 내려진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계책을 내놓을 시

간이 없을 터이니, 신이 삼가 종묘사직을 위해 통곡하옵니다. 신이 또한 듣건대 호남과 호서의 민심이 모두 무너져 진정시키기 어려운 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때에 민심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조정의 명령이 통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옵니다. 신이 비록 늙었으나 아직 기력이 온전하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의 명을 받들어 남하하여 폐하의 덕음을 선양하고, 호남과 호서의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이어서 몇 명의 장사를 뽑아서 적의 예봉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크나큰 다행이겠나이다. 이원익(李元翼)[141] 이 이미 남하하여 영외(嶺外) 지역을 맡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두루 살피기 어려우니, 신이 그와 힘을 합하고 업무를 나누어 생사를 함께 한다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신의 지극한 바람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위급한 상황을 헤아리시어 속히 신의 계책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

때는 만력 25년(1597) 정월이었다.

비답이 내려왔다.

"차자를 살펴보니 나라를 위한 정성이 지극하도다. 비변사와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이어 비변사에 하달하니, 비변사에서 계문을 올려 대답했다.

"정탁이 차자를 올려 몸소 호남과 호서로 가서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정성이 매우 갸륵합니다. 그러나 이원익이 이미 사도(四道) 체찰(體察)[142]의 임무를 제수 받았으므로 정탁이 같이 내려가게

---

141) 이원익(李元翼: 1547~1634):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이조판서로서 평안도순찰사의 직무를 띠고 먼저 평안도로 향했고, 선조도 평양으로 파천했으나 평양마저 위태로워지자 영변으로 옮겼다. 평양이 함락되자 정주로 가서 군졸을 모집하고,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어 왜병 토벌에 전공을 세웠다. 1593년 정월 이여송(李如松)과 합세해 평양을 탈환한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가자되었고, 선조가 환도한 뒤에도 평양에 남아서 군병을 관리하였다. 1595년 우의정 겸 4도체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주로 영남체찰사영에서 일하였다.

142) 체찰(體察): 변란이 있을 때 왕을 대신해 그 지역의 군무를 살피는 일을 말한다.

되면 일의 요체가 다시 어려워질 듯합니다. 성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再度上箚:

“伏以賊勢已急, 臣不暇緩聲, 更煩天聽. 臣所以請行者, 亦不以泛見. 臣近聞嶺湖人心, 一樣潰散, 兩湖尤甚. 外寇已動, 邦本且搖, 朝廷命令, 恐或自此而不通. 若不及時撫定, 則勢至土崩, 已無可爲. 我祖宗二百年相傳赫業, 豈可付諸無可奈何之域, 而束手以待耶? 苟有一計, 亦或可試. 謹以鄙見, 請申前說.

거듭 차자를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왜적의 정세가 매우 긴박하여 신이 천천히 말씀드릴 겨를이 없기에 다시금 성총을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신이 남쪽으로 가길 청한 것도 얕은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이 근자에 듣자하니 영남과 호남의 민심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호남과 호서가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왜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라의 기강 또한 흔들려 조정의 명령이 혹여 이로 인해 통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만약 제때에 위로하여 안심시키지 못한다면, 형세가 무너져 어찌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 왕조 2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빛나는 업적을 어찌 속수무책인 지경으로 내버려 둔 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로 하나의 계책이라도 있다면 또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삼가 보잘것없는 견해로서 이전에 한 말을 거듭 청합니다.

臨危制變, 此是古今通道. 請命草製之臣, 一依陸宣公故事, 極盡措辭, 製出王言, 以付臣行, 齎捧以往, 宣布朝廷德音, 慰諭諸鎭將士. 兼慰州府軍民父兄, 使之遍告其子弟, 感發其心, 聳動其氣. 旁招才俊有義氣有計慮者, 以誠相動, 使各召集武士, 曉諭大義, 兼申禍福. 而臣則先據山城可守之地, 從便分部, 以振兵勢, 亦可以把截賊路, 庶辦中興千一之助. 臣前日冒陳之意, 大槪在此. 辭不達意, 誠未有孚. 聖明不以爲

罪, 反下優容之敎, 臣誠惶感之至. 朝廷之不爲勉從者, 非但有妨一 一行缺 - 戰陣矢石之間. 朝廷之慮, 亦已至矣, 臣亦豈不爲自量耶? 然而國勢危急如此, 而臣之氣息尙全, 不辭煩瀆, 又敢陳達.

위기가 닥치면 변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이치입니다. 청컨대 조칙을 작성하는 신하에게 명해 그 옛날 육선공(陸宣公)이 했던 것처럼 극진하게 글을 지어서 대신하여 성지를 펼치게 한 다음, 신이 가는 길에 가져가서 조정의 덕음을 선포하고 여러 진영의 장군과 병사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아울러 고을의 군민과 부형을 위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제들에게 두루 알려서 그 마음을 감발시키고 사기를 북돋게 하소서. 또 한편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의기가 있으며 계책이 있는 자들을 두루 불러 모아서 성심으로 서로를 움직이게 하소서. 각자 무사들을 불러 모아 대의(大義)를 깨우치도록 하고, 겸하여서 화복으로 신칙하소서. 신이 먼저 지킬 수 있는 산성을 점거하고 형편에 따라 부대를 나누어 군사의 위세를 진작시키면 적의 경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니, 나라의 중흥에 아주 작은 도움이나마 될 것입니다. 신이 지난날 죄를 무릅쓰고 진언한 뜻도 대개 여기에 있었으나 말이 생각을 다 전달하지 못하고 정성이 믿음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명께서 죄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너그럽게 용납하는 교지를 내리셨으니, 신은 진실로 더없이 황감할 뿐입니다. 조정이 억지로 따르지 않는 것은 화살과 돌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一한 줄 빠짐一]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조정의 염려가 이처럼 지극한데, 신이 어찌 스스로를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고 위험한 반면 신의 기력은 아직 온전하기에, 무례함을 무릅쓰고 감히 제 생각을 아뢰나이다.

萬曆二十五年二月日也.

臣近見李元翼·權慄等馳報, 皆以民心潰散爲憂. 此固無他, 吹虀之民, 聞賊自潰, 勢所必至. 一潰之後, 投竄谿谷, 顧影徘徊, 無所依歸. 招集

慰撫, 若失此機, 雖有智者, 不能善後. 別遣慰撫, 實似宜當. 臣雖駑鈍, 冒忝大臣之後, 爲國丹衷, 不讓于人. 而慰撫重事, 須用大臣. 一時通變, 不拘常式, 恐無不可. 且臣犬馬之齒, 已踰七旬, 臨賊鼓勇, 決不能堪, 而奉宣德音, 聚士作氣, 死生以之. 是臣素所蓄積. 伏請聖明, 俯諒微懇, 許臣南下, 庶補萬一. 臣無任區區切迫之至. 取進止."

만력 25년

신이 근자에 이원익(李元翼)과 권율(權慄) 등이 급하게 올린 장계를 보니, 모두 민심이 무너진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다른 것이 아니라 놀라서 나물도 불어 먹는[143] 백성이 왜적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무너진 것으로, 당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뒤로 백성들은 계곡으로 달아나 숨고 그림자를 돌아보며 이리저리 배회하며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 위로함에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여도 나중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로 위무사를 파견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신이 비록 아둔하기는 하지만, 외람되이 대신의 직을 맡은 이후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은 아주 중대사이므로 반드시 대신을 써야 합니다. 잠시의 변통이라면 일상적인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신은 이미 일흔을 넘겨 왜적을 맞이해 용기를 북돋우는 일은 결코 감당할 수 없으나, 덕음을 받들어 선포하여 군사를 모아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라면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이 평소 생각해 오던 바입니다. 삼가 청하건대, 주상께서 미천한 바람을 굽어 헤아리시어 신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신의 절절한 심정을 이길 길이 없사옵니다.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

---

143) 나물도……먹는: 원문은 '취제(吹虀)'이다. '징갱취제(懲羹吹虀)'의 줄인 말로, 굴원(屈原)의 『초사(楚辭)』 구장(九章)」「석송(惜誦)」의 "뜨거운 국에 데면 냉채까지 불어 먹는 법이니, 어찌하여 곧은 절개가 변하지 않겠는가(懲於羹者, 而吹虀兮, 何不變此志也)"에서 나온 말이다. 한 번의 실패에 겁을 먹은 사람은 그 뒤로는 지나친 경계를 하게 됨을 의미한다.

만력 25년 2월이었다.

答傳曰: “今又上箚, 其志可尙. 但右相方管四道, 他大臣豈宜與於其間言于? 備邊司議處.”

備邊司回啓曰: “鄭某目見賊勢之危迫, 至再上箚, 欲躬往南方, 宣布德音, 撫定人心, 其憂時爲國之誠至矣. 但都體察使方管四道之事, 大臣又爲下去, 則事多未便. 此意曾已敢達矣.”

아어 비답이 내려왔다.

“금일 다시 올린 차자를 보니 그 정성이 지극하도다. 그러나 우상이 바야흐로 네 개의 도를 관장하고 있으니, 다른 대신이 어찌 그 사이에 개입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에서 논의하도록 하라.”

비변사에서 계문을 올려 대답했다.

“정 아무개가 왜적의 정세가 아주 긴박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는 다시 차자를 올려, 몸소 남쪽으로 가서 덕음을 널리 알리고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하는데, 시국을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러나 사도(四道) 체찰사(體察使)가 네 개 도의 일을 관장하고 있는 이때에, 대신이 또 내려간다면 불편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뜻은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時甯國弼齎持咨文一通, 來自皇京, 以咨文內事, 收議諸大臣, 琢議以爲:

“臣伏見甯國弼齎來咨文, 大槪爲我國經理鍊兵屯田築城等事, 其所以爲下邦計至矣. 欲於三京中寘巡撫, 八道設司道, 審如是也, 則將禦賊患, 有不可矣. 我國壤土, 只有八路, 而天朝差遣, 旣置巡撫於三京中, 又分設司道於八路, 則我朝無復有爲於國中. 勢所必然, 愚智皆知, 此則決難承奉. 但我國孤危, 不能自振, 專恃大國之援, 皇朝終始爲下邦規劃處置, 靡所不至. 而今又聖旨所及, 又出於尋常萬萬, 如或一向違忤, 則於義果爲未穩, 而日後難處之患, 又有所不可勝言者.

이때 영국필(甯國弼)이 자문(咨文) 한 통을 가지고 북경에서 왔는데,

자문 건으로 대신들의 여론을 수합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올렸다.

“신 삼가 영국필이 가져온 자문을 보았더니, 우리나라의 경영, 군사 훈련, 둔전, 축성 등에 관한 일이기에 하방(下邦)을 위한 지극한 계책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삼경(三京)에 순무(巡撫)를 두고 조선 팔도에 사도(司道)를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살펴보건대 장차 왜적의 우환을 막는 데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는 팔도만 있는데, 천조에서 파견하여 삼경에 순무를 두고 또 팔도에 사도를 나누어 설치한다면, 우리 조정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똑똑한 자이건 어리석은 자이건 모두가 알 수 있는 바이니, 결단코 받들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고립되고 위태로워 스스로 떨쳐 일어날 수 없는지라, 오로지 대국의 원조만을 믿고 있으며, 황조에서도 시종일관 하방을 위해 갖은 일을 기획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성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평상시보다 훨씬 깊은 뜻에서 나온 것이라, 혹시라도 거스르거나 어긴다면 의리상 온당하지 않을 것이고, 장차 난처해질 우환 또한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奏文之中措辭, 大槪務從懇惻, 極陳皇上之德如天罔極, 而繼之以小邦經亂以來, 人民死亡殆盡, 村落空虛, 物力蕩竭, 一應危迫之狀, 天朝兵馬及時當發之由. 其餘凡係條列, 便宜更究, 覆奏之意, 一依備邊司議啓之辭, 令承文院參考俱由, 期動天心, 及時發遣何如? 臣之固陋, 別無他見. 伏惟上裁. 臣病伏私室, 不得躬詣會議. 不勝惶悶殞越之至.

상주문 안의 글을 보니, 대체로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황제의 덕이 하늘처럼 끝이 없음을 극진하게 서술하였으며, 이어서 우리나라가 난을 겪은 뒤로 백성들이 거의 다 죽어 촌락이 텅 비고 물자와 인력이 고갈되는 등, 모든 것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과 천조의 병마를 제때에 출발시켜야 하는 사유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관계되는 조례들은 상황을 보아 다시 궁구하고, 비변사에

서 의논하여 올린 계사에 의거해서 승문원(承文院)[144]에서 참고하여 그 사유를 갖춘 다음, 복주(覆奏)함으로써 천심을 움직이길 기대하면서 때에 맞춰 보내심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고루하여 다른 견해라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성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신은 병으로 인해 집에 엎드려 있느라, 몸소 회의에 나아갈 수 없기에 황송하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144) 승문원(承文院):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성균관, 교서관과 함께 3관이라고 불렸다.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아울러 이문(吏文)의 교육도 담당하였다.

# 丁酉春統制使李舜臣獄事起

## 정유년 봄, 통제사 이순신 옥사기[1)]

「備忘記」傳曰: "李舜臣欺罔朝廷, 無君之罪也, 縱賊不討, 負國之罪也. 至於奪人之功, 陷人於罪, 無非縱恣無忌憚之罪也. 有此許多罪狀, 在法罔赦, 當按律誅之. 人臣而欺罔者, 必誅不赦, 今將窮刑得情乎, 何以處之, 問于大臣獻議."

「비망기」로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순신(李舜臣)이 조정을 기망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다.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남을 모함까지 한 것은 방자하고 거리낌이라곤 없는 죄에 해당한다. 이렇듯 허다한 죄상은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이니, 법률을 상고하여 죽여야 마땅하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용서치 말고 죽여야 하는 법,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하여 실정을 캐어내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신들에게 의견을 바치도록[2)] 하문하라."

琢議以爲:
李舜臣獄事, 體面極重, 固難輕議, 而處置一款, 亦甚關重, 當其倭奴之

---

1) 이순신 옥사기: 이순신옥사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원균의 모함과 왜군의 모략으로 인해 이순신이 옥에 갇힌 사건을 말한다. 이순신을 모함하는 원균(元均)의 상소가 올라가자 선조는 당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상소 내용만을 믿고 비망기를 내려 이순신에게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아 나라를 배반한 죄, 남의 공을 가로채고 모함한 죄 등을 적용하여 투옥시켜 심문하게 했다. 이윽고 이순신은 파직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죽음 직전에 이르는 1차 형신을 받았다.
2) 의견을 바치도록: 원문은 '헌의(獻議)'로, 임금의 정사(政事)에 관한 물음에 대해 의견(意見)을 올리는 일을 말한다.

再動入寇也, 不能及時遮截, 其間情勢, 容或有可論, 朝廷命令之及時傳通與否, 海上風勢之順逆, 皆不可知也. 其元情招辭, 自當一一見出, 至於心術隱微之間, 發於施爲之際, 固不無可疑之端. 其與元均處置之事, 此其一也. 其他做錯之事, 恐亦非一二. 而自古將臣, 全德者蓋寡. 且古者當國家多事之時, 苟有一才, 則雖至於刑餘黥卒, 屠狗賤士, 皆在收用之類, 縱有不逮之事, 猶當曲護而安全之, 以盡其用, 其意有在.

나 정탁은 이렇게 의논했다.
이순신의 옥사는 사안이 매우 중대한지라 가벼이 논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분 역시 관계되는 바가 큽니다. 왜노들이 다시 일어나 쳐들어올 적에 제때 차단하지 못했으나, 그 간의 정세인즉 혹 논해 볼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터이니, 조정의 명령이 제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도, 바다 위 바람이 순풍이었는지 역풍이었는지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정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야 공술서에 일일이 드러나겠지만, 좀체 알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과 실행에 나타난 행동 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이는 원균을 처리한 일과 매한가지입니다. 그 밖에 잘못 처리한 일들도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자고로 장수들 중에 완벽한 덕을 갖춘 이는 드뭅니다. 또한 나라가 다사다난할 때는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형벌을 받은 죄수이건, 개를 잡아 파는 천한 자이건 모두 거두어 썼으며, 설령 뜻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곡진히 보호하고 안전히 지켜줌으로써 그의 공과 능력을 다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가 생각이 있어서였던 것입니다.

今如舜臣者, 亦未易多得. 舜臣久將舟師, 備諳邊情, 嘗挫劇賊, 頗有威聲. 倭奴之最怕舟師者, 未必不在於此. 而敵人之欲圖舜臣者, 固未嘗一日忘于心, 而不費數兩黃金, 而一朝坐見我國遽加顯戮, 恐爲敵人之幸也. 舜臣以罪已致王獄, 律名甚嚴. 若以此而終不得免死, 則敵人聞之, 必置酒相慶. 深恐南邊許多將士, 一樣解體, 此甚可慮. 一舜臣之死, 固不足惜, 其於國事, 不無大段機關.

지금 저 이순신 같은 자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오래도록 수군을 거느렸으므로 변방의 정세에 밝을뿐더러, 일찍이 극악한 적을 섬멸하여 위세와 성망이 제법 높습니다. 왜노가 수군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꾀하는 적군이라면 단 하루도 이 생각을 잊은 날이 없을 터인데, 지금 황금 몇 냥 들이지 않고서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서 그를 드러내놓고 죽이는 것을 앉아 구경하게 된다면, 적에게 있어 큰 다행일까 두렵습니다. 이순신은 이미 죄를 지어 의금부에 송치되었고, 율명(律名)은 지엄합니다. 만약 이로써 끝내 죽음을 면치 못한다면, 이 말을 들은 적들은 분명 술상을 차려놓고 서로 축하할 것입니다. 남쪽 변방의 수많은 장수와 사졸들이 한꺼번에 와해될까 깊이 두려우니, 이 점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순신 한 사람이 죽는 것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나라의 일로 보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臣謹按『周官』八議, 有議功議能之刑, 而大明律, 亦載此條. 人臣有犯十惡者, 或以此而宥之, 此古今之通義也. 舜臣段以能辦大功, 朝廷至賜以統制使之號. 其功其能, 似或可議. 今舜臣繫獄, 旣示以律名之甚嚴. 副以其有功有能, 特命減死, 使之立功自效, 則朝家處置之道, 似不失宜. 臣有妄見, 敢此煩瀆, 惶恐不已. 伏惟上裁.”

신이 삼가 살피건대, 『주관(周官)』[3]의 팔의(八議)[4]에 의공(議功)과 의능(議能)에 관한 형벌이 있으며, 『대명률(大明律)』[5]에도 이 조목을 기

3) 주관(周官): 삼례(三禮)의 하나인 주례(周禮)의 별칭이다.
4) 팔의(八議): 평의(評議)에 의해 형벌을 감면하는 여덟 가지 조건을 말한다. 즉 의친(議親: 왕실과 친척인 사람), 의고(議故: 왕실과 고구(故舊) 관계로 여러 해 특별한 은덕을 입은 사람), 의공(議功: 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 의현(議賢: 훌륭한 덕행이 있는 현인군자), 의능(議能: 재능이 뛰어나서 왕업을 보좌하고 인륜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의근(議勤: 문관이나 무관으로서 부지런히 봉직하거나 사신으로 나가 노력하여 봉공(奉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의귀(議貴:관작이 1품인 사람, 문.무관 3품 이상인 사람, 산관(散官) 2품 이상인 사람), 의빈(議賓:전대 군왕(君王)의 자손으로서 선대의 제사를 맡아 국빈(國賓)이 된 사람)을 말한다.

재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악을 범한 자라도 이에 의거해 용서해 주기도 하였으니, 이는 고금에 통용되는 의리인 것입니다. 이순신은 능력으로써 큰 공을 세워 조정에서는 통제사의 호칭을 그에게 하사했습니다. 그의 공과 그의 능력이라면 평의에 붙여볼 만 한듯합니다. 지금 이순신을 옥에 가두었으니, 이로써 율명의 지엄함은 이미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제 그의 공과 능력으로써 특별히 사형을 감면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바쳐 공을 세우게 해주신다면, 조정의 일 처리하는 방도에 있어 온당함을 잃지 않을 듯합니다. 신의 부질없는 소견으로 감히 성총을 어지럽혀 황공하기 그지없나이다. 삼가 바라건대 주상께서 재가하여 주시옵소서.

又將上箚論, 草本已俱, 其辭以爲:

伏以李舜臣, 身犯大罪, 律名甚嚴, 而聖明不卽加誅, 元招之後, 復許窮推, 非但按獄體段爲然, 抑豈非聖上體仁一念, 期於究得其實, 冀有以或示可生之道歟? 我聖上好生之德, 亦及於有罪必死之地, 臣不勝感激之至. 第念臣嘗承乏命官, 推鞫獄囚, 固非一再, 凡罪人一次經訊, 或多傷斃, 其間雖或有可論之情, 而徑自殞命, 已無所及, 臣嘗竊悶焉. 今舜臣旣經一次刑訊, 若又加刑, 則嚴鞫之下, 難保其必生, 恐或傷聖上好生之本意也. 當壬辰倭艘蔽海, 賊勢滔天之日, 守土之臣, 棄城者多, 專閫之將, 全師者少, 朝廷命令, 幾乎不及於四方. 舜臣倡率舟師, 乃與元均, 頓挫兇鋒, 國內人心, 稍有生意. 倡義老增氣, 附賊者回心, 厥功鉅萬. 朝廷嘉甚, 至加崇秩, 賜以統制使之號, 非不宜也. 當進兵討賊之初, 突進先登之勇, 不及元均.

또 논의하기 위해 차자의 초고를 올리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대명률(大明律)』: 조선시대 현행법과 보통법으로서 적용된 명나라의 형률서. 1367년 주원장이 공포한 '율령직해'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기도 했다.

삼가 생각건대, 이순신은 대죄를 지었고, 죄명 또한 엄격하온데도 성상께서 즉시 주벌을 가하지 않으시고 원정(元情)의 초사(招辭)가 나온 뒤에 다시 끝까지 추문할 것을 허락하셨으니, 이는 옥사를 다스리는 큰 요체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상께서 인(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념에 그 진상을 끝까지 밝혀서라도 혹여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내보이고자 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성상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이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처지에 놓은 자에게까지 미치었으니, 신은 지극한 감격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신이 일찍이 마땅한 인재가 없어 관직에 임명된 이래 죄수들을 추국해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대개 죄인들은 한 차례 심문을 겪고 나면 대부분 몸을 크게 상하는 터라, 그간 혹시라도 재론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내 목숨이 끊어져 어지해볼 도리가 없었기에 신은 늘 이 일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금 이순신은 이미 한 차례 형신을 치렀는데, 만일 다시 형신을 가한다면 엄중한 추국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 이렇게 되면 성상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 본래 뜻을 손상시키게 될까 두렵습니다. 임진년에 왜선이 바다를 뒤덮고 적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날, 국토를 지키던 신하들 중에는 성을 버린 자가 많았고, 지방을 통솔하던 장수들 중 군사를 온전히 보존한 자가 적었으며, 조정의 명령은 거의 사방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순신이 앞장서서 수군을 인솔하고 이내 원균과 더불어 적의 흉봉(凶鋒)을 꺾으니, 나라 안의 민심에 차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의병을 일으킨 자들은 기운이 더해졌고, 적에게 빌붙은 자들은 마음을 돌렸으니, 그 공이 참으로 거대합니다. 조정에서 이를 매우 가상히 여기어, 높은 작위를 더해주고 통제사의 호칭까지 하사하신 것은 실로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진격하여 적을 토벌할 적에 돌진하여 선봉으로 적진에 쳐들어가는 용기는 원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人或至議, 是固然矣. 但元均所領船隻, 適於其時, 謬承朝廷指揮, 多數燒沈, 不有舜臣之全師, 則無以做出兵勢, 克辦奇功矣. 舜臣爲大將, 見

可而進, 不失時機, 能擧舟師, 大振聲勢, 則臨難不避之勇, 元均固有之, 而畢境摧陷之功, 舜臣亦不多讓於元均矣. 但於其時元均不無如許大功, 而朝廷恩典及於舜臣, 於元均則還以太損, 中外至今稱屈, 此則最可惜也. 元均於舟師之事, 才有備長, 天性忠實, 當事不避, 善於衝突. 兩將協心戮力, 則賊不難討. 臣每於榻前, 啓達此事, 朝廷以兩將不相能故, 不復用元均, 而獨留舜臣, 以專舟師之事. 舜臣諳練備禦, 手下才用, 咸樂爲用, 未嘗喪師, 威聲如舊, 倭奴之最怕舟師者, 未或不在於此. 其有功於鎭壓邊陲, 大段如此.

사람들 중에 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균이 이끌던 병선(兵船)이 마침 그 때에 조정을 대신해 지휘를 맡아 하고 있었는데, 불에 타거나 침몰한 것이 다수였던지라, 이순신이 군사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했다면 전세를 진작시켜 기이한 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대장이 되어 진격할 만한 상황이면 나아갔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군을 움직여 성세를 크게 진작시켰으니, 어려움에 임해 피하지 않는 용기인즉 원균도 지녔겠지만, 끝까지 적을 함락시킨 공로라면 이순신이 원균에게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원균에게 큰 공이 없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조정의 은전이 이순신에게만 미치고, 원균에게는 큰 손해를 입힌 죄를 물었기에 나라 안팎에서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원균은 수군의 업무를 수행함에 빼어난 재주를 갖추고 있으며 천성이 충성스러워 일에 당면하여 피할 줄을 모르며 뚫고 돌진하는 데에 능합니다. 두 장수가 합심하여 힘을 바친다면, 적군을 토벌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이 매번 전하 앞에서 이러한 사안을 아뢰었으나, 조정에서는 두 장수가 화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균을 다시 등용하지 아니하고 이순신만을 남긴 채 수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수비와 방어하는 방법을 훤히 알고 있고, 수하의 재주 있는 자들이 모두 기꺼이 그를 위해 일하고자 하였기에 한 번도 군사를 잃은 적이 없으며, 위엄과 성세가 예전과 다름없으니, 왜노들이 수군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변방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대략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或者以爲, 舜臣一度建功之後, 更無可紀之勞, 以此少之, 臣則竊以爲不然. 四五年內, 天將主和, 皇朝東封之事又起, 我國大小將士, 不許措手於其間, 舜臣之不復宣力者, 非其罪也. 近日倭奴之再擧入寇也, 舜臣之不及周旋者, 其間情勢, 亦或有可論. 蓋凡當今邊將之一番動作, 必待朝廷之成命, 無復有將軍專閫之事. 倭奴未過海之前, 朝廷秘密下敎, 登時傳致與否, 未可知也. 海上風勢之順逆, 舵運之便否, 亦未可知也. 而舟師分番不得已之事, 昭載於都體察使自劾狀啓中. 則舟師之臨急不得致力者, 事勢亦然, 似不可以此全歸於舜臣也.

혹자는 말하기를 이순신이 한 차례 공을 세운 이후로 이렇다 할 공로를 다시금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로써 이순신을 얕잡아보곤 하는데,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4~5년 이래로 명나라 장수들은 화친을 주장해 오고, 명나라 조정에서는 왜를 신하국으로 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서, 우리나라 대소 장수들은 그 사이에 손을 쓸 수조차 없었으니, 이순신이 더 이상 힘을 떨치지 못한 것은 그의 죄가 아닙니다. 근자에 왜노들이 다시금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이 제 때 응대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사정에 관해서는 혹 재론해 볼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지금 변방을 지키는 장수들이 한 번 움직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하므로 장군이 마음대로 전담할 수 없습니다. 왜노들이 미처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조정에서 비밀리에 명을 하달하였으나, 제 때에 전해졌는지 여부는 알 길 없습니다. 바다의 바람이 순풍이었는지 역풍이었는지, 항해하기에 편했는지 불편했는지 역시 알 길이 없습니다. 수군들이 부득이하게 번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인즉 도체찰사가 스스로를 탄핵한 장계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즉 수군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힘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이니, 모든 잘못을 이순신에게만 돌릴 수는 없을 듯하옵니다.

往日馳啓之中, 其所陳之辭, 涉於虛妄, 極可怪駭. 而此說如或得於下輩之誇張, 則恐亦容有中間不察之理. 不然, 舜臣亦非病風之人, 敢爲如是, 臣竊未解. 若夫亂初軍功馳啓之中, 不爲一一從實, 貪人之功, 以爲己功, 委涉誣罔, 以此而問罪, 則舜臣罪亦何辭焉? 然而除非全德之人, 則於物我相形之際, 能無欲上人之心者蓋寡. 因循苟且之間, 鮮不做錯, 特上之人, 察其所犯之大小, 而有所輕重之耳. 夫將臣者, 軍民之司命, 國家安危之所繫, 其重如此. 故古之帝王, 委任閫寄, 別示恩信, 非有大訶, 則曲護而安全之, 以盡其用, 厥意有在.

지난 날 급히 올린 장계 속에 진술된 말 중에 허망한 것들이 있어 매우 해괴하지만, 만약 이 말이 아랫사람들의 과장에서 나온 것이라면 중간에 이를 살피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순신이 미치광이도 아닌데 감히 이 같은 말을 하였다니, 신은 삼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난리가 일어난 초기에 군공을 아뢴 장계에서 하나하나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서, 남의 공을 탐하여 자신의 공으로 삼았다면, 이는 무고하고 기망한 짓이니, 이로써 죄를 묻는다면 이순신 또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와 남이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히 남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자는 대개 적습니다. 구차히 옛 방식이나 따르며 행동하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자가 드무니, 그저 위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범한 죄의 크고 작음을 살피어 경중을 두어 처리하면 그뿐입니다. 대저 장수란 군사와 백성의 목숨을 주관하는 자요 나라의 안위가 걸려 있는 바라, 그 중요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왕들이 군권을 위임할 적에는 달리 은혜와 신의를 내보였으며, 큰 허물이 아니라면 곡진히 보고하고 안전히 지킴으로써 그 임무를 다하게 하였으니,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大抵人才, 國家之利器, 雖至於譯官算士之類, 苟有才藝, 則皆當愛惜, 況如將臣之有才者, 最關於敵愾禦侮之用, 其可一任用法, 而不爲之饒

貸也? 舜臣實有將才, 才兼水陸, 無或不可. 如此之人, 未易多得, 邊民之所屬望, 敵人之所嚴憚. 若以律名之甚嚴, 而不假容貸, 不問功罪之相准, 不念功能之有無, 不爲徐究其情勢, 而終致大譴之地, 則有功者無以自勸, 有能者無以自勵. 雖至挾憾如元均者, 恐亦不能自安, 中外人心, 一樣解體. 此實憂虞之象, 而徒爲敵人之幸. 一舜臣之死, 固不足惜, 於國事所關非輕, 豈不重可爲之慮乎?

대저 인재란 나라의 이기(利器)이니, 역관이나 셈 하는 자와 같은 부류일지라도 만약 재주와 기예가 있다면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법, 하물며 재능 있는 장수는 적을 막아내는 쓰임에 있어 가장 관계되는 바가 크거늘, 한번 법을 적용함에 있어 너그러이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은 실로 장수의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수륙(水陸)을 겸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은 얻기 어려우며, 변방 백성이 가장 우러르고 있는 바요, 적이 가장 무서워하며 꺼리는 바입니다. 만약 죄명이 엄중하다고 하여 용서치 않으면서 죄와 공이 상쇄되는지도 따지지 않고, 공로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염두에 두지 않고, 또 그간 사정이 어떠했는지 천천히 다 규명해보지도 않은 채 끝내 큰 벌에 처하신다면, 공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권면하지 않을 것이고, 능력 있는 자들은 스스로 면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균처럼 원한을 품고 있는 자라 하여도 아마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며, 나라 안팎의 민심은 한꺼번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실로 근심스러운 형상이라 한갓 적에게만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순신 한 사람의 죽음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나랏일에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어찌 거듭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古者不替將臣而終收大功, 如券程之於孟明者, 固非一二. 臣不暇遠引, 只以聖朝近日之事啓之. 朴名賢亦一時之猛將也, 嘗觸邦憲, 朝廷特原其罪. 未幾有湖右之變, 變過己丑, 而名賢一擧戡定, 功在宗坊, 其棄瑕責效之意至矣. 今舜臣罪陷大辟, 幾犯十惡, 律名甚嚴. 誠如聖敎. 舜臣

亦知公論之甚嚴, 常刑之可畏, 無望自全. 乞以恩命, 特減訊次, 使之立功自效. 則其感戴聖恩, 如天地父母, 殞首圖報之志, 必不居名賢之下. 而我聖朝中興圖閣之勳臣, 安知不起於今日之胥靡哉? 然則聖朝御將用才之道, 議功議能之典, 許人改過自新之路, 一擧而俱得, 其有補於聖朝撥亂之政, 豈淺淺哉? 臣謹因禁府收議, 嘗陳固陋, 非但不合群議, 辭亦不能達義. 而愚臣一得, 冀或聖擇, 玆敢不辭煩瀆, 更伸前說, 以備芻蕘, 恭俟聖諭. 如或臣之瞽言, 少裨國事之千一, 則臣固萬死猶幸. 臣苦患感冒, 已經二旬, 尙此彌留, 未得躬詣闕下, 謹具箚以進. 輕冒宸嚴, 彌增殞越之至. 取進止.

옛날에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맹명(孟明)에게 했던 것처럼[6] 장수를 교체하지 않아 마침내 큰 공을 거둔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신은 먼 옛날 일을 인용하지 않고 다만 성조에서 근자에 일어났던 일로써 아뢰어보겠습니다. 박명현(朴名賢)[7]은 또한 한 시대의 맹장이온데, 나랏법에 저촉되는 일을 저질렀으나 조정에서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호우(湖右: 충청도)에서 변란이 일어났는데, 그 변란이 기축년(1589)보다 더 심했음에도 박명현은 일거에 난을 평정하여 종묘에 공을 세웠으니, 작은 허물을 덮어주어 공효를 바치게 한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순신은 대벽죄(大辟罪)를 짓고 십악(十惡)[8]을 거의 다 범하였으니, 성교(聖敎)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

6) 진(秦)나라……것처럼: 맹명은 진나라 현신(賢臣) 백리해(百里奚)의 아들 백리시(百里視)의 자(字)이다. 『사기(史記)』「진세가(秦世家)」에 "목공이 패전했던 맹명을 다시 후대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진(晉)을 공격하게 하니, 맹명은 황하를 건너 진나라의 배를 불태우고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7) 박명현(朴名賢: ?~1608): 임진전쟁 중 이몽학(李夢學)이 충청도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켜 여러 고을을 함락하고 홍성으로 진격하자, 그 근처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다가 병력을 거느리고 홍주성으로 들어가 목사 홍가신(洪可臣)과 협력하고 성 밖의 군사들과 내외협공 태세를 취하였다. 이몽학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자 무장 임득의(林得義)와 함께 청양까지 추격하여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듬해 정유재란 때 토포사.충청도방어사.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을 지내면서 호서.호남 일대에서 전공을 세웠다.

8) 십악(十惡):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열 가지 죄악을 말한다.

명이 엄중합니다. 이순신 또한 공론이 지엄하고 형법이 두려운 것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보전할 희망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은혜로운 명을 비옵나니, 특별히 형신을 감면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공을 세워 충성을 바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천지부모를 모시듯 성은을 받들 것이며, 목숨을 바쳐 보답하고자 하는 뜻이 박명현보다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조의 중흥을 일구어 관각(館閣)에 초상이 걸릴 훈신(勳臣)이 오늘 이 죄수가 아닐지 또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성조에서 장수를 부리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는 도리며, 공로와 능력을 의논하는 은전이며, 사람에게 개과천선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며, 일거에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성조에서 난을 평정하는 정책에 보탬 되는 바가 어찌 적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삼가 의금부에서 수렴한 의론에 의거하여 고루한 의견을 펼쳐보았으나, 여러 의논에 합치되지 않았을 뿐더러 적은 내용 역시 뜻을 다 전달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한 가지 생각이 혹 성상의 채택을 입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처럼 감히 성총을 어지럽힘도 마다하지 않고서 이상의 말을 펼침으로써 비천한 의견을 바치고, 삼가 유지를 기다립니다. 만약 신의 어리석은 말이 국사에 천 분의 일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신은 만 번 죽어도 다행일 것입니다. 신이 감기로 고생한 지 벌써 스무 날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낫지가 않아 직접 궐로 찾아가지 못하고서 삼가 차자를 갖추어 올립니다. 성상을 감히 범하였기에 황공함만 더해갑니다.
재결을 기다리겠나이다.

前收議已爲入啓, 此箚未及投進, 減死之命已降, 故止之. 是年三月日也.
是年夏, 琢- 二行缺 ㅡ“經砭灸, 調理乖方, 仍成劇證, 元氣虛耗, 殆將莫保. 朝夕受灸, 由限已過, 而證勢彌留, 出仕無期, 切冀具由上達. 而近例一司二員, 不許竝置. 竊思上箚自劾, 而煩瀆未敢, 日久無以自處. 當此朝家多事, 大小臣僚夙夜宣力之際, 淹然時日, 退伏私室, 惶憫不已. 樞府雖無職務句當, 而今臨殿最磨勘, 身病如此, 勢難及時出仕,

職銜猶帶, 尤極未安. 臣本職及奉常寺兼帶都提調, 竝命遞差, 無任祈懇之至, 謹俱箚昧死以啓. 取進止."
答曰: "勿辭調理."
是四月初七日也.

전번에 의론을 수합한 것은 이미 장계로 올리고, 이 차자를 미처 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사형을 감면한다는 어명이 내려왔기에 그만두었다. 이 해 3월 아무 날이다.
이 해 여름에 나는 [ㅡ두 줄이 결락되어 있음ㅡ] "침과 뜸을 맞았는데, 몸조리를 잘못하여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원기가 크게 손상되는 바람에 목숨을 보존할 길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뜸을 뜨면서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증세가 여전한 탓에 출사할 기약이 없었기에, 이러한 사유를 갖추어 주상께 아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근자의 통례를 보면 하나의 사(司)에 두 명의 인원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에 차자를 올려 스스로를 탄핵하고자 생각하였으나, 성총을 어지럽히는 일이라 감히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조정에 일이 많아 대소 신료들이 밤낮으로 힘쓰고 있는 이때에, 시일만 끌어가며 물러나 집안에 엎드려 있노라니 황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추부(樞府)[9]에 비록 맡은 바 직무는 없지만 지금 관리의 성적을 심사하고 있는[10] 이때에 이렇듯 병들어 있어 상황상 상제 때 출사하기 어려울 듯한데, 여전히 직함을 지니고 있자니 더욱 지극히 맘이 편치 않았습니다. 신의 본래 직책 및 봉상시(奉常寺) 겸 도제조(都提調) 직에 대하여 일괄 해직을 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않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이 차자를 갖추어 올립니다. 재결을 기다리겠나이다."
답이 내려왔다.

---

9) 추부(樞府): 조선시대 때 중추원(中樞院)을 고친 이름이다.
10) 관리의……있는: 원문의 '전최(殿最)'는 고려와 조선 시대 때 지방에서 근무하는 문무 관리의 근무 상태를 조사하여 성적을 매기던 것을 말하고, 마감(磨勘) 역시 관리의 근무 성적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양하지 말고 몸 조리 잘 하시오.”
이 해 4월 초이레였다.

時有令王世子攝政之敎. 琢病未詣闕, 俱箚以進, 以爲:

伏以臣恭審日昨聖敎, 不勝憂憫切迫之至. 當此盛炎蒸濕, 擧動連日, 聖躬愆和, 臣固已仰慮矣. 奉戴聖躬, 就閑保養, 豈非臣子之至情歟? 第以今日事勢之最急者而啓之. 近察邊報, 或出於黠虜之誇張其說, 未可一一遽信, 而要之伊賊情形, 實屬叵測, 擧國人心, 朝夕莫保. 幸賴天朝大兵, 已臨國中, 太山壓卵, 勢或可冀.
我國舟師, 近且粗完云. 我國兵力雖甚孤弱, 若協天朝大兵, 水陸俱進, 克辦夾擊之勢, 持之數朔之間, 則虜已據巢不出, 樵汲外絶, 糧粟內竭, 其勢必至於自蹙自盡. 此乃在我所當勉勵. 及時自強之秋, 而自上不此之顧, 遽下倦勤之敎, 此大小臣僚之所共憂悶而不已者也. 若此敎傳播, 則非但國中人心搖動, 無復所繫, 至於三路將士, 一樣解體, 誠非細慮. 且天將時方駐幕于此, 未知聖情之所在, 徒因所聞, 致其驚疑, 因此而或惹意外之端, 寧保其必無乎? 伏乞聖體雖則愆和, 如不至大段, 則宜爲宗社生民大計, 力疾視事. 不廢軍國庶務, 兼進藥物, 調攝玉體, 冀令萬全. 勿下此敎於再, 則可以大鎭人心, 勘定寇亂, 立見宗社億萬年無疆之休, 豈不幸甚? 臣病勢沈痼, 玆未得躬詣闕下, 與諸大臣同辭以啓. 惟增惶閔殞越之至. 取進止.”

이때 왕세자에게 섭정을 명령하는 전교가 있었다. 나는 와병중이라 궐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차자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신이 어제 내려온 성교(聖敎)를 삼가 살펴보고서 근심과 절박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찌는 듯한 혹염에 연일 움직이시느라 옥체가 편치 않으실 것 같아, 신은 진작부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옥체를 우러러 모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보양토록 해드리는 것이, 어찌

신하된 자의 지극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사태가 있기에 이렇게 아뢰옵니다. 근자에 변방에서 올라온 보고를 살펴보니, 교활한 적들의 과장된 말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지라 일일이 다 믿을 수는 없겠으나, 요컨대 저 적들의 정황인즉 실로 예측하기 어렵고 온 나라 안 민심은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천조의 대군이 이미 나라에 당도해 있어서 이제 태산으로 계란 누르기라,[11] 승세 잡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군은 근자에 대략 완벽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병력이 비록 고립되어 있고 약하지만, 천조의 대군이 협력하여 수륙으로 나란히 진격한다면 협공의 세를 이룰 수 있고, 수십 일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적들은 소굴에 박힌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할 터이니, 밖으로부터 땔나무와 물이 끊겨 진영 안의 곡식이 바닥나면 자연히 스스로 쪼그라들어 섬멸되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바입니다. 이렇듯 자강(自强)에 힘써야 할 관건적 시기에 위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서 갑자기 권근(倦勤)[12]을 하교하시니, 이에 대소 신료들 모두 근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교지가 널리 퍼진다면 나라 안의 민심이 동요하여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을뿐더러, 삼로(三路)의 장군과 병사들이 일시에 해체될 터이니, 실로 자잘한 염려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명나라 장수가 바야흐로 이곳에 주둔해 있는데, 만약 성상의 뜻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서 한갓 소문만 듣고 놀라 의심을 갖는다면, 이로 인해 혹 의외의 사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비옵나니, 비록 성체가 미령하시더라도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 아니라면, 종사와 생민을 위한 대계를 도모하시어 힘껏 일을 돌보시옵소서. 군사와 나라의 여러 가지 업무를 폐하지 마시옵고, 아울러 약을 드시면서 옥체를 조섭(調攝)함으로써 만전을 기하시옵소서. 이러한 교지

---

11) 태산으로……누르기라: 태산압란(泰山壓卵)이란 세가 매우 강하여 대적할 상대가 없거나 일이 매우 용이함을 비유한 말이다.

12) 권근(倦勤): 정무에 지쳐 피로함을 뜻하는 말로, 주로 왕위를 선양(禪讓)할 때 그 이유로 사용되는 상투적 용어이다.

를 다시금 내리지 않으신다면, 민심을 크게 안정시키고 왜구의 난도 평정할 수 있어서 종사의 억만년 무궁한 복을 즉시 볼 수 있으실 터이니, 이 어찌 크나 큰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신은 병세가 심각하여 직접 궐로 들어갈 수 없기에 대신들과 이 장계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더욱이 황공하기 그지없나이다. 재결을 기다리겠습니다.

時內禪之敎繼下. 琢又上箚以爲.

臣叨承聖敎, 嘗進瞽說, 辭未達義, 方懷惶悚, 今奉聖敎又下, 覆審聖情所在, - 中缺 -亦無留都之事.

時又下內禪之敎. 琢進箚以爲:

伏以臣叨奉初下聖敎, 嘗陳瞽說, 辭未達意, 方懷惶悚, 今承聖敎又下, 覆審聖情所在, 有可驚憫. 事係切急. 不辭煩瀆, 敢以時之不可者, 爲聖明啓之. 凡天下之事, 事無大小, 貴在動之以時. 苟不以時, 則鮮不以悔吝. 小者尙然, 況於大事乎? 故聖人作『易』必以時爲大. 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內, 無往而無時字之義. 夫『易』者, 神明之書, 而示人必以時者, 豈不曰動不以時, 則悔吝隨作, 有攸往而不利者乎? 大『易』之所戒, 可謂嚴切著明矣.

이때 내선(內禪)[13]의 교지가 이어져 내려왔다. 나는 차자를 올려 이렇게 아뢰었다.

신이 외람되어 성교(聖敎)를 받들고 일찍이 어리석은 생각을 바친 바 있으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황송한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지금 다시금 내려온 성교를 받들고 성상의 뜻을 반복해서 살펴보니 [ㅡ중간이 결락되어 있음ㅡ] 유도(留都)의 일 또한 없습니다.[14]

---

13) 내선(內禪): 임금이 살아 있는 동안에 왕위를 아들, 형제 등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던 일을 말한다.

이때 내선의 교지가 다시금 내려왔다. 나는 차자를 올려 이렇게 아뢰었다.

신이 외람되이 처음 내려온 성교를 받들고 일찍이 어리석은 생각을 펼쳐 보인 바 있으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황송한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지금 다시금 내려온 성교를 받들고 성상의 뜻을 반복해서 살펴보니 놀랍고 근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시급한 사안인지라 성총을 어지럽히는 것도 마다 않고 제때 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으로써 성상께 아뢰옵니다. 대저 천하의 일이란 대소를 막론하고 제때에 움직여야만 합니다. 제때 행하지 못하다면 근심걱정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작은 일도 이러하니, 하물며 큰일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인께서 『역(易)』을 만들 때, 반드시 제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64괘 384 효(爻)[15] 안에 그 어디에건 '시(時)' 자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역』이란 신명한 책이니, 반드시 '제때'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은 곧 옳지 않은 때에 행동하면 반드시 근심과 화를 수반하게 되며, 행함에 불리한 일이 생길 것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역』이 드리운 경계는 가히 엄중하고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臣伏覩今日之勢, 人心搖蕩, 未有所定, 內外孑遺, 皆候聖上之動靜, 以爲安危. 此正鎭壓人心, 轉危爲安之時. 而一朝無端有此擧措, 甚非所以綏定人心之道也. 六載妖氛, 尙未掃蕩, 列聖廟主, 尙未還安, 此果倦

14) 이 차자는 『약포집』권2, 「청침내선지명차(請寢內禪之命箚)」인데, 뒷부분이 결락되었으며, 맨 끝에 있는 '역무유도지사(亦無留都之事)'는 이 차자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약포집』「연보」에 의하면 이때 명나라의 양경리가 남하하자 임금이 뒤를 따르고 여러 재상이 호종하기로 하고, 정탁을 유도대신(留都大臣)으로 임명하였는데, 형군문(邢軍門)이 입경하여 대가의 행차가 멈추어서 유도의 명이 취소된 일이 있었다. 이 구절은 이것을 말하는 것 같다.

15) 64괘 384 효(爻): 한 괘에는 각각 6개의 효가 들어 있다. 따라서 64괘에 6을 곱하면 384개의 효가 있는 셈이다.

勤之時乎? 天兵大至, 所當協力而討賊, 軍國庶務, 所當垂聽而許稟, 此果就閑之時乎? 萬一聖上不察時之不可, 遽有決然之擧, 則反致決然之憂, 迫在朝夕. 及其憂之旣迫, 將何以處之哉? 念至於此, 不覺短氣. 至如冊命未完, 徑自處置, 遽欲脫屣, 求之道理, 恐非十全. 『易』之所戒, 正在於此, 所宜猛省而不可忽焉者也. 臣謹將聖敎一款, 揆之於事, 參之於勢, 斷之以時, 則其不可者, 章章明甚. 仰惟聖上, 以大有爲之才, 丁大不幸之會, 撥亂而反之正, 此其時矣. 伏乞聖明, 勉體大易時字之義, 觀象玩辭, 一番動靜, 必以其時, 大鎭人心, 克淸寇亂. 揚勵中興之幸績, 以綿宗社無疆之曆, 千萬幸甚. 臣病勢彌留, 精神瞢瞀, 文不成章, 懷何能達. 然而蕘言雖拙, 聖擇不遺, 苟裨涓埃, 死亦猶生. 累瀆宸嚴. 惟增戰慄隕越之至. 取進止.

신이 오늘날의 정세를 엎드려 보건대, 민심이 동요하여 안정되지 못하였고, 겨우 살아남은 안팎의 백성들은 모두 성상의 움직임에 따라 편안해지기도 하고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심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안정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뜬금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시다니, 이는 결코 민심을 안정시키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천지사방에 요사스런 분위기가 아직 소탕되지 않았고, 열성조의 신위가 아직 돌아와 안치되지 않았는데, 지금이 과연 권근(倦勤)을 운운할 때입니까? 수많은 천병이 이르렀으니 마땅히 협력하여 적을 토벌해야 하며, 군사와 나랏일에 관한 갖은 업무에도 마땅히 귀 기울여 승인을 해주셔야 하니, 지금이 과연 한가한 곳으로 나아갈 때입니까? 만일 성상께서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살피지 못하시고 갑자기 확고히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신다면, 도리어 확고한 우환만 초래하여 조만간 닥쳐올 것입니다. 그 우환이 이미 닥쳐왔다면, 어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런 데 생각이 미치면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힙니다. 책명(冊命)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는데, 곧장 처리하시면서 급히 신발을 벗고자 하신다면, 도리를 따져볼 때 완전하지 않을까 저어되옵니다. 『역』에서 경계한 것도 바로 이것이니, 엄하게 살피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은 삼가 성교의 조관

(條款)에 나아가 일로써 헤아려보고 형세로써 참조해보고 시기로써 판단해보니, 그 불가함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커다란 정사의 재능을 크게 지니고서 매우 불행한 시대를 만났으나, 난을 평정해 정도(正道)로 돌려놓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엎드려 비옵나니, 『역』에 나오는 '시(時)' 자의 뜻을 힘써 깨달으시고, 상(象)을 살피고 내용[辭]을 음미하신 후 한 번의 움직임이라도 반드시 제때에 하심으로써 민심을 크게 안정시키시고 왜란을 평정하소서. 중흥의 업적을 떨치시어 종사의 무궁한 역사를 이어나가신다면, 크나큰 다행일 것입니다. 신은 병세가 여전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문장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였으니, 제 속내를 어찌 능히 전달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꼴 베는 자의 말이 아무리 졸렬해도 성상께서는 버리지 않고 채택하시니, 티끌만큼이라도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신은 죽어도 사는 것이나 진배없을 것입니다. 누차 성총을 어지럽혀 황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재결을 기다리겠습니다.

又以決策討賊事, 俱箚草本, 以爲:

伏以臣聞左相金應南榻前啓辭, 大槪興兵及時之計, 似不得緩行, 苟失此機, 則更無良策. 古法曰:'戰以猶豫爲凶.'又曰:'事莫大於必果, 功莫盛於勇決.' 又曰:'先之一刻則太過, 後之一刻則失時.' 蓋皆言機會之不可失也. 今賊據險自固, 遲回不去, 須乘天兵合勢之機, 決策用兵. 水焉舟師, 以塞其往來之路, 陸焉馬步, 以截其出入之途, 使旣來者不得去, 新添者無以繼. 且塞且截, 持以旬朔之久, 則伊必樵汲外絶, 糧粟內竭, 不無自蹙之勢. 伊勢旣蹙, 我乘積困之機, 開其一面, 誘以自遁之路, 埋伏精銳, 以成揜擊之勢, 可令全巢就覆, 片帆不返矣. 今天兵旣集, 我伐可張, 而如或撫機不發, 延以時月, 則誠恐黠詐之虜, 得以爲計. 添兵運糧, 或屯耕聚粟, 往來自恣, 其勢益張, 否則佯爲撤兵, 退屯近島之處, 候天兵去駐, 以爲進退, 我軍力竭, 無以抵敵. 到此地頭, 雖欲十分費智用力, 而恐無下手之處. 臣念及此, 不覺五內敗裂.

또 계책을 결정하여 적을 토벌하는 일에 관하여 차자 초본을 작성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신이 삼가 들으니, 좌상 김응남이 전하께 '제때 병사를 일으키는 계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듯하니, 이 기회를 놓치면 더는 좋은 계책이 없다.'고 아뢰었다고 합니다. 옛 법[16]에서 이르기를, '전쟁에서 망설이면 흉하다.'라고 하였고, 또 '일은 반드시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공은 용감하게 결단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일각(一刻)이라도 먼저 하면 너무 지나치고, 일각이라도 뒤에 하면 때를 놓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됨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왜적은 험준한 곳을 점거하여 스스로를 굳게 지키면서 머뭇거리며 나가지 않으니, 모름지기 명나라 병사와 합세한 기회를 틈 타 계책을 결정하여 병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수군이 그들이 오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육지에서는 말과 보병이 그들이 출입하는 길목을 끊어버림으로써, 이미 온 자들은 돌아갈 수 없게 하고 새롭게 보태는 병사들은 계속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막고 끊으며 열 달 동안만 버티면 왜적들은 반드시 땔감과 물이 외부에서 차단되고 양식이 안에서 고갈되어, 저절로 움츠러드는 형세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왜적의 기세가 움츠러든 뒤에 우리는 적들의 누적된 피곤을 틈 타 한쪽 방면을 터준 다음 스스로 달아나는 길로 유인하고, 정예병을 매복시켜 갑자기 습격하는 형세를 조성한다면, 적의 소굴 전체를 뒤엎어서 [패전한 왜적들이] 작은 조각배로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나라 병사가 이미 모여 있으니, 우리는 공격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무기만 만지작거리며 꺼내 휘두르지 않고 시간만 끈다면, 진실로 교활하고 속임수 많은 왜적들이 [그 틈에] 계책을 세우기라도 할까봐 두렵습니다. 병사를 보태고 군량을 운반해 오며,

---

16) 옛 법: 송(宋)나라 증공량(曾公亮)이 찬한 『무경총요(武經總要)』를 가리킨다. 병법에 관한 내용은 『무경총요』 전집(前集) 권3 「서전(敍戰)」에 수록되어 있다.

간혹 둔전(屯田)을 경작하여 양식까지 모아둔 다음 제멋대로 오가며 세력을 더 확장하던가, 아니면 철수하는 척하면서 물러나 섬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다가, 명나라 군대가 가는지 머무르는지 지켜봐서 나아갈지 물러날지를 결정한다면, 우리 군대는 힘이 다하여 적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다면, 제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힘을 쓰더라도 손쓸 곳조차 없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저도 모르게 오장육부가 찢어지려 합니다.

大抵難得者時. 深鑑古法之所戒, 務出萬全之妙算. 趁此機會, 殲滅兇寇, 此其時矣. 若夫舟師形止, 山川險易, 道路迂直, 城郭修廢等項, 自有邊臣所履歷備悉無遺, 朝廷似難遙度. 凡係行軍便宜與否, 糧粟多少等情, 須竝密詢于本道主兵等官, 令都體使, 另加商量處置. 務要十全, 庶無未盡之意. 一邊幷稟此意于楊摠兵諸位, 似合機宜. 當此危迫存亡之秋, 臣有妄見, 不得不達, 惶恐敢啓. 取進止.

右箚已具, 而更思之, 不合時會, 故不爲投進. 秋王世子陪中宮, 從廟社主, 向海西. 琢隨之至新溪縣. 召命及至. 王世子還京. 琢從行. 是九月日也.

대저 얻기 어려운 것이 때입니다. 옛 법에서 경계한 바를 깊이 거울 삼으시어 만전을 기할 묘책에 힘쓰십시오. 이 기회를 탄다면 흉악한 왜적들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니, 지금이 바로 그 때이옵니다. 수군이 움직이는지 멈춰 있는지, 산천이 험준한지 평탄한지, 도로가 곧은지 굽었는지, 성곽이 수리되어 있는지 황폐해 있는지 등의 항목 같은 것은 변방의 신하들이 몸소 돌아다니면서 빠짐없이 알고 있을 터이나, 조정에서는 먼 곳의 형편까지 헤아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무릇 행군의 편의 여부와 식량의 많고 적음 등과 관계된 사항은 반드시 본도(本道)에서 병사를 주관하는 관리에게 은밀히 물으시고, 도체사로 하여금 따로 상의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십분 만전에 힘쓰도록 한다면, 아마도 미진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양 총병(楊摠兵) 등에

게 이런 뜻을 가지고 품의하는 것이 시의에 적절할 듯하옵니다. 이처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급한 때를 만나, 신이 가진 부질없는 견해나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황공스럽게도 감히 아룁니다. 재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차자를 지어 놓고 다시금 생각해 보니 시의에 맞지 않는 듯 해 올리지 않았다. 가을에 왕세자께서 중궁과 함께 종묘의 신위를 배행하여 해서(海西)로 향했다. 나는 [황해도] 신계현까지 수행했는데, 곧 소환 명령이 도착해 왕세자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셨고, 나도 수종했다. 9월 아무 날이었다.

是年冬, 楊經理領諸將南下. 時主上當跋後, 諸宰皆扈從, 命琢爲留都大臣. 琢當行條件爲事目錄後, 仍俱箚啓稟以爲:

伏以臣謬膺聖旨, 以臣留都, 臣聞命驚惶, 不知所裁. 臣本無才智, 年紀衰耗, 身且多病, 神不守舍, 臨事茫然. 如此重任, 決難承當. 宜卽具由自劾, 以讓于人, 而當此朝家多難之日, 跡涉避事, 且有留都大臣加差之命, 冀或合力濟事, 故不敢冒陳. 然旣受命留都, 凡有稟裁之事, 亦不容不達. 蓋以近日大勢, 不比常時, 意外之變, 或出於尋常思慮之外, 有不可測, 亦不無別樣商量之事. 若不預爲稟裁講究以待, 則恐有臨事顚倒錯誤之失. 臣雖不暇自顧, 乃於國事所關甚重, 玆敢不避妄冒, 謹拈出條件, 一一開錄于左啓稟. 請令該曹, 竝問他大臣講定, 啓下施行.

이 해 겨울에 양 경리(楊經理)[17]가 제장들을 이끌고 남하했다. 그때

17) 양 경리(楊經理): 1597년 정유재란 때 도찰원우첨도어사 겸 경리조선군무(都察院右僉都御史兼經理朝鮮軍務)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 나라 장수 양호(楊鎬)를 가리킨다. 양호는 제독(提督) 마귀(麻貴)와 함께 왜군을 격퇴했으나, 울산 전투에서 고전 끝에 일시 경주로 철수한 뒤 참소를 당해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조선 정부는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양호의 공적을 밝히고 그의 유임을 건의하면서 그에 대한 참소에 대해 해명하는 상소를 명 나라에 보냈으며, 그의 귀환을 애석해 하여 거사비(去思碑)를 세우

주상께서 뒤 이어 출발하신 후 여러 재상들이 모두 호종하면서 나를 유도대신(留都大臣)[18]에 임명했다. 나는 시행해야 할 조목들을 목록으로 작성한 후 차자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이 분에 넘치게 성지(聖旨)를 입어 유도대신으로 삼으시었는데, 이 명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은 본래 재주와 지혜가 없는데다가 나이까지 많아 몸에 병이 많으며, 정신이 온전치 못해 일에 임하면 아득해지니, 이처럼 중대한 임무는 결단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사유를 갖추어 스스로를 탄핵하고 남에게 양보해야 마땅하나, 이처럼 조정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그리 하면) 피하는 듯 보일뿐더러, 또 유도대신으로 가차(加差)[19]한다는 명을 내리심은 힘을 합하여 일을 구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지라 감히 진언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왕에 유도대신의 명을 받았으니, 아뢰어 재결 받을 일이 있으면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의 형세는 평상시에 견줄 수가 없어서, 뜻밖의 변고가 간혹 일반적인 사려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터지기도 하는 등 헤아릴 수가 없으니, 따로 상의해야 할 일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미리 품고하여 재결을 구하고 강구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일이 닥쳤을 때 전도되는 착오가 생기는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도 없사오나 이는 국가에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감히 망령되고 무모함을 피하지 않고 삼가 조목들을 들어 아래와 같이 낱낱이 적어 품고하겠습니다. 이를 해당 관청에 요청함과 동시에 다른 대신에게도 물어 논의하신 후에 결정하시어 시행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且伏惟念, 京都根本之地, 宗社所在, 體而極重. 各曹皆有所屬衙門, 各自檢察, 不廢職務, 其所關如此, 不可一日曠官. 大駕南下後, 諸曹堂上

---

고 선무사(宣武祠)에 배향(配享)하였다.

18) 유도대신(留都大臣): 임금이 서울을 떠나 거둥할 때, 서울에 머물러 정무를 맡아 보는 대신을 말한다.

19) 가차(加差): 벼슬아치를 정원 외에 더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郎廳, 除扈從外, 竝設仍存, 不爲遷動除拜, 以待大駕之還, 不勝幸甚. 然且各司職務, 雖是常行之事, 因循廢弛, 在今尤甚, 若不別樣申勅, 則一二大臣之力, 亦難使之振起勸勉. 各司應行大段條件, 竝錄以啓. 請捧傳旨, 使臣等得有所據, 少試微勞, 庶免大譴, 亦不勝幸甚. 領敦寧李山海亦受留都之命, 而時方在告, 故不得不仰冒宸嚴. 臣無任隕越之至. 取進止.

또한 삼가 생각하건대, 도성은 나라의 근본 되는 땅이자 종묘사직이 있는 곳이어서, 체통이 매우 중요하거니와 각 관청마다 거느리고 있는 아문이 있어서 각자 검찰(檢察)하여 직무를 폐해서는 안 되니, 그 관계됨이 이와 같아서 하루라도 관직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어가가 남하한 뒤에도 여러 관청의 당상관과 낭청 중 호종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대로 남겨두시어 관직을 이동하거나 제수하지 말고, 어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게 해주신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사(司)의 직무가 비록 평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이럭저럭 폐치되고 해이해진 현상이 오늘날 유독 심하니, 만약 따로 신칙(申飭)하지 않는다면 한두 대신의 힘으로는 기강을 진작시키고 권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 사(司)가 응당 시행해야 할 큰 조목들만 아울러 적어 아룁니다. 청하옵건대 전지(傳旨)를 받들어 신들로 하여금 근거할 바가 있게 하여, 하찮은 수고나마 조금이라도 시험하여 큰 견책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매우 큰 다행이겠습니다. 영돈녕(領敦寧) 이산해(李山海)도 유도대신의 명을 받았으나, 때마침 휴가 중이라 주상께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재결을 기다리겠습니다.

今十月日.
計開
大駕南下後, 唐官繼來不絶, 王世子相見與否, 時未定奪. 或以爲, 王世子以儲位, 不敢承當賓主之禮, 以此爲辭云, 或以爲, 大駕出外, 王世子留都, 唐官必欲相見, 而以此拒之不見, 終似未安云. 何以爲之乎? 如

不得已相見, 則大小將官遊擊以上, 皆許相見乎? 且用何官服乎? 或以爲, 王世子自有應行之服, 或以爲, 經理相見時, 已用紗帽, 今則改之, 無說可解云. 何以爲之乎?

이 해 10월 아무 날.

계개(計開)[20]

어가가 남하한 이후 명나라 관리들이 끊임없이 왔는데, 왕세자와의 상견 여부를 놓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왕세자가 아직 저위(儲位)에 있는 관계로 감히 빈주의 예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로써 구실 삼고 있고, 혹자는 어가가 밖으로 나가 있고 왕세자가 도성에 머물고 있는 마당에 명나라 관리가 상견을 청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거절하고 만나지 않는다면 끝내 온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하게 상견해야 한다면, 대소 장관 및 유격(遊擊) 이상과의 접견을 모두 허락해야 하는지요? 또 어떤 관복을 입어야 하는지요? 혹자는 왕세자께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혹자는 경리와 접견할 적에 이미 사모관대를 착용했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면 해명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一. 唐官於王世子, 恐別無公事通文之事. 然而意外之事, 有不可料, 如或有不得已應答之事, 則用何職銜? 用何印信乎? 或以爲, 當措辭以答之曰: '小邦儲邸, 軍國等事, 本無權攝之例. 如不得已, 則必須告稟上殿施行, 但今大駕南下, 往復之際, 必延時日, 以此惶恐云.' 則亦不無辭, 何以爲之乎?

一. 唐官接待等事, 自有都監次知, 但與上殿親臨時, 曲折不同, 應行節次, 令禮曹預爲參酌講定, 啓下施行何如?

一. 王世子賓客及諸僚屬, 大駕回蹕間, 勿爲遷動除拜事.

---

20) 계개(計開): 조선시대 해유이관(解由移關) 문서에 부기된 여러 사실을 열거하는 목차, 또는 상고(詳考)하여 목록을 펼친다는 뜻이다.

一. 王世子代爲上殿, 每朔朔望望闕禮時, 留都大小庶官, 一切聚會行禮事.
一. 曉解漢語譯官二員, 王世子近側, 晝夜不離事.
一. 王世子近側, 各所入直將士, 各別檢察, 不離本所事.

하나. 명나라 관리가 왕세자에게 별다른 공무로 통문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일은 미리 예상할 수 없으니, 만일 부득이하게 응답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직함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어떤 인신(印信)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혹자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작은 나라의 동궁은 군사와 나라에 관한 일 등을 임시로 섭정한 예가 본디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상전께 고한 뒤에 시행해야 하겠지만, 지금 어가가 남하하여 오고가는 동안 시일이 걸릴 터이니, 황송합니다.'라고 답한다면 또한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 명나라 관리를 접견하는 일은 본디 도감 몫이나 주상 전하께서 친히 임하실 때와 그 사정이 다르므로, 응당 거행해야 할 절차에 관해서는 예조에 명하여 참작·강구하여 결정하도록 한 후 재가를 받아 시행함이 어떠한지요?
하나. 왕세자의 빈객 및 여러 관속들은 어가가 돌아오는 동안 관직을 옮기거나 다른 관직에 배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 왕세자가 주상 전하를 대행하는 동안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망궐례(望闕禮)[21]를 올릴 때, 도성에 남아 있는 대소 관료들 모두 한데 모여 예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 중국어에 능통한 역관 두 명이 왕세자를 가까이서 뫼시며 주야로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 왕세자 근처의 각 소(所)에 입직하는 장사들은 각별히 검찰하고 본소(本所)를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21) 망궐례(望闕禮):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원이 궐패에 절을 하던 의식을 말한다.

一. 諸城門開閉等事, 別別檢察事.
一. 宗廟神御所社稷壇, 留都大臣與該曹堂上時時奉審事.
一. 留都一員, 與該曹堂上時時巡城事.
一. 留都砲殺手及馬步官兵等, 兵曹都監等依例勤仕, 不廢操鍊. 留都大臣一員相遞, 時時點閱檢察事.
一. 大駕南下後, 都城空曠, 盜賊可慮, 捕盜大將仍留各別禁捕事.
一. 凡大段公事, 行在所啓稟外, 其餘小小公事, 一一告稟王世子處.
此外未盡條件, 竝下問于各該曹, 議啓施行何如?
啓下備邊司議處. 時刑軍門行入京城仍留, 以爲國王勿爲南下云. 故主上停行, 大臣等留都之命亦罷. 是丁酉年十一月二十八日也.

하나. 여러 성문의 개폐(開閉)에 관한 일은 각별히 검찰해야 합니다.
하나. 종묘와 신어소(神御所), 그리고 사직단은 유도대신이 해당 관청의 당상관과 함께 때때로 우러러 살펴야 합니다.
하나. 유도대신 한 명과 해당 관청의 당상관이 때때로 성을 순찰해야 합니다.
하나. 도성에 남아 있는 포수(砲手)와 살수(殺手) 및 마병(馬兵)과 보병 등의 관병을 병조 도감 등이 관례대로 부지런히 출근하여서 조련을 폐하지 말며, 유도대신 한 명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때마다 검열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 어가가 남하한 후 도성이 비면 도적들이 염려스러우니 포도대장은 그대로 남아 각별히 금지하고 체포해야 합니다.
하나. 무릇 큰 공사(公事)는 행재소에 계품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자잘한 공사는 일일이 왕세자에게 아뢰어 처분해야 합니다.
이 밖에 미진한 항목들은 아울러 해당 관청에 물어 의논하고 아뢴 뒤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변사에게 재가를 내려 의론하도록 하였다. 이때 형 군문(刑軍門)[22]

---

22) 형 군문(刑軍門): 형 군문은 형개(邢玠: 154~1612)를 가리킨다. 자(字)는 진백(搢伯) 혹은 곤전(昆田)이다. 정유재란(1597) 때 명나라는 더욱 큰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양호(楊鎬)를 경략조선군무(經略朝鮮軍務)로, 형

이 도성에 들어와 국왕이 남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주상께서 행차를 멈추시었고, 대신들에게 유도(留都)에 머물라는 명령 또한 거두었다. 이는 정유년 11월 28일이었다.

萬曆二十七年己亥夏四月二十五日, 王世子以內殿問安事, 自京師發向遂安郡, 琢陪行. 閏四月初一日到本郡. 至本月十一日, 王世子承命自本郡發還, 琢仍陪行. 同月十六日從王世子入京, 遂仕于備邊司. 時以高麗大將軍鄭顗立祠事, 該曹請收議大臣. 琢議以爲:

伏以兵興八載, 秀吉之首未梟, 餘孽猶存, 神人之憤未攄, 我朝廷上下, 猶在薪膽之中. 討賊復讐之師, 會須一擧褒崇節義操鍊武藝等事, 在今尤急, 固不可一息而忘. 頃在乙未年間, 上因該曹入啓事目, 特降聖旨, 若曰: "顯顯都護府, 則必須創立屋宇, 以前代有功將帥, 奉安位版, 使之有所矜式, 常令武士, 講武書習武藝." 此實聖上爲祖宗列聖, 專心於討賊復讐之大義, 激勵將士忠義之氣也. 而厥後連因國內多亂, 外方州府郡縣, 未遑及他. 至今五年之久, 寂然無以此事來聞者. 成川府使鄭逑, 遵奉聖旨, 於其本府境上, 相地之宜. 創立武學, 仍請祀奉其前代忠烈顯著者, 高麗大將軍鄭顗, 以慈州副使崔春命作配, 使之有所矜式.

만력 27년(1599) 기해년 여름 4월 25일에 왕세자가 내전(內殿)[23]께 문안을 올리기 위해 도성을 출발해 (황해도) 수안군으로 향했는데, 나도 배행하였다. 윤4월 초하룻날 수안군에 도착했다. 이달 11일에 왕세자께서 어명을 받들어 수안군으로부터 돌아올 적에 내가 다시 배행하여 같은 달 16일에 왕세자를 좇아 도성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마침내 비변사에서 직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고려의 대장군

---

개를 경략어왜(經略御倭)로, 마귀(麻貴)를 총병관(摠兵官)으로, 진린(陳璘)、두송(杜松)、유정(劉綎)、등자룡(鄧子龍)을 대장으로 삼았다.

23) 내전(內殿): 선조의 왕비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1555~1600)를 말한다. 본관은 반남(潘南) 번성부원군(潘城府院君) 박응순(朴應順)의 딸이다. 1569년(선조 2) 왕비에 책봉되어 가례(嘉禮)를 행하였고, 1590년 장성왕후(章聖王后)의 존호를 받았다.

정의(鄭顗)[24]의 사당을 세우는 일로 해당 관청에서 대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하였다. 나의 생각은 이러하였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란이 일어난 지 8년이 되었으나 수길(秀吉)의 머리를 아직 효시하지 못하였고,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에 귀신과 사람모두 울분을 풀지 못하고 있고, 우리 조정의 상하 군신들은 아직도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습니다. 왜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은 군사들은 일거에 그 절의를 표창하여 숭상해야 하며, 무예를 조련하는 등의 일은 오늘에 있어 더욱 시급히 하여, 진실로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을미년(1595, 선조 28)에 주상께서 해당 관청에서 아뢴 사목(事目)으로 인하여 특별 성지를 내리시어 말씀하기를, "도호부(都護府)를 밝히 드려내려면 반드시 사우(祠宇)를 세워 전대(前代)에 공을 세운 장수들의 위판(位版)을 봉안하여 우러러 본받을 곳이 있게 하고, 늘 무사들로 하여금 무술서를 강학하고 무예를 익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성상께서 조종의 열성조를 위하여 왜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대의요 장사(壯士)들의 충의로운 기개를 격려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나라 안에 연이은 변란이 많아서 지방의 주부(州府)와 군현(郡縣)이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 일을 아뢰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천 부사(成川府使) 정구(鄭逑)[25]가 성지를 받들어 본 고을의 경내에 위치가 적당한 곳을

---

24) 정의(鄭顗: ? ~ 1233): 고려 후기의 무신. 1217년(고종 4) 거란군이 서경에 침입하자 이 틈을 타 서경인 최광수(崔光秀) 등이 스스로 고구려부흥병마사금오위섭상장군(高句麗復興兵馬使金吾衛攝上將軍)이라고 칭하며 난을 일으켰다. 이에 분대녹사(分臺錄事)로 일당 8명을 격살시키고 성을 회복하였다. 그 공으로 섭중랑장(攝中郎將)이 되어 내시에 소속되었으며 의관과 안마(鞍馬)를 하사받았다. 이후 여러 번 승진하여 장군.시랑을 거쳐 대장군이 되었다. 1233년 필현보(畢賢甫)、홍복원(洪福源) 등이 서경에서 모반하자 선유(宣諭)의 임무를 띠고 서경에 갔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살해되었다.

25) 정구(鄭逑: 1543 ~ 1620):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 6대조 정총(鄭摠)과 그 아우인 정탁(鄭擢)이 개국공신에 책봉되는

살펴 무학(武學)을 세우더니, 이어 전대에 충렬로 이름이 난 고려 대장군 정의를 봉사(奉祀)하고, 자주 부사(慈州副使) 최춘명(崔春命)을 배향함으로써 우러러 본받을 곳이 있게 하였습니다.

臣竊伏謹按成川爲府, 實關西之一巨都護, 合置祠宇. 鄭顗.崔春命, 槪皆確有所守, 死生莫渝. 其精忠偉烈, 昭載簡策, 鄭逑之牒文所稱, 明有其據, 實合矜式. 且夫中朝事例, 凡忠臣義士有功續顯著一時者, 未必如孔孟師範萬世之下, 國家一體建廟, 然後方可視勸. 或於其所嘗居之鄕, 或於其所嘗作官之地, 建廟立祠, 以奬後人. 此類亦多, 只揭其一二言之. 則如蜀漢成都有丞相祠堂, 此則因其所居之鄕而立之者也, 李唐睢陽有張中丞廟, 此則因其所作官之地而建之者也. 且凡建立祠廟, 先定其正位, 得其同德之人, 嘗所近居者作配, 以備崇奉之儀. 如無可者, 則亦不必備. 苟或有之, 則備儀崇奉, 實非不好. 其來舊也.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평안도] 성천부(成川府)는 실로 관서 지역의 커다란 도호부로서 사우(祠宇)[26]를 두기에 합당하며, 정의와 최춘명은 대개 둘 다 확고한 소신이 있어서 삶과 죽음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빼어난 충의와 위대한 공적은 사서에 소상히 실려 있으니, 정구가 첩문(牒文)에서 말한 바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라 실로 우러러 본받기에 합당합니다. 또한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공자나 맹자처럼 만세의 사범(師範)이 될 만 한 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충신 의사들 중 한때 혁혁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모두 사당을 지어주어 백성들에게 모범을 내보이고 권면하였습니다.

---

등 본래 공신가문으로 대체로 한양에서 살았으나 부친이 성주이씨와 혼인하면서 성주에 정착하였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통천군수(通川郡守)로 재직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다. 1593년 선조의 형인 하릉군(河陵君)의 시체를 찾아 장사를 지낸 공으로 당상관으로 승진한 뒤 우부승지、장례원판결사、강원도관찰사、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전체적으로 중앙 관직보다는 지방의 수령으로 더 많이 활약하였다.

26) 사우(祠宇): 선조(先祖) 혹은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연 수차에 걸쳐 제향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혹은 그가 살던 고을에, 혹은 그가 벼슬한 곳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들어 후인들을 장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으나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촉한(蜀漢)의 성도(成都)에는 승상(丞相: 諸葛亮)의 사당[27]이 있으니, 이는 승상이 살던 고을에 그대로 사당을 세운 경우이고, 당나라의 수양(睢陽)에는 장중승(張中丞)[28]의 묘우가 있으니 이는 그가 벼슬했던 곳에 그대로 묘우를 세운 경우입니다. 대저 사묘(祀廟)를 지을 때는 먼저 정위(正位)를 정하고 동등한 덕을 지닌 사람 중 가까이에 살던 자를 찾아서 배향함으로써 우러러 높이는 의식을 갖춥니다. 만약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배향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만약 찾았다면 의식을 갖추어 우러러 높이는 것이 실로 나쁠 것 없습니다. 그 유래는 오래되었습니다.

只以我國近例言之, 順興之竹溪院廟, 開城之嵩陽院廟是也, 奬導忠義, 文武一體. 今成川府, 實鄭顗所居之鄉, 慈州是崔春命作官之地, 而卽今所謂慈山也. 本府是本州直隷. 而州實府之所屬, 境土相連切近, 有同一鄉. 今本府牒報之辭, 本道啓請之語, 固爲十分商量, 實非偶然. 一依其公事. 以鄭顗祠奉於本府, 而以崔春命爲之配享, 實合事宜. 自朝廷若又特賜扁額, 以視奬導之意, 聳動人心, 使之地方有所尊尙, 有時奉以香火, 薦之蘋藻, 登降拜跪. 武士時聚, 軍民亦集, 講以武經, 練以武藝, 忠義激勵, 感通斯速. 朝廷有心, 四方感勸, 瞻聆所及, 自然作興. 非但成川一府爲然也, 苟能以此奬勸, 則一才之出, 未可謂必無所自, 兵勢之振, 未可謂必無所從, 他日朝家討賊復讐之擧, 未應不有萬

27) 승상(丞相)의 사당: 중국 사천성(四川省) 금관성(錦官城)에 세워진 제갈량(諸葛亮)의 사당을 가리킨다.

28) 장중승(張中丞): 장순(張巡)을 말한다. 안녹산의 난 때 수양성(睢陽城)을 수비하였는데, 구원병이 이르지 않고 군량까지 바닥나자 자기의 애첩을 죽여 군사들에게 먹이고 참새와 쥐를 잡아먹고 갑옷을 불에 구워 먹을 정도로 고군분투하였다. 끝내 성이 함락되었으나 굴복하지 않고 적을 꾸짖다가 살해당했다. 『신당서(新唐書)』 권192에 그의 전(傳)이 있으며, 중당의 문인 한유(韓愈)가 지은 「장중승전후서(張中丞傳後敍)」도 천하의 명문으로 세상에 전한다.

分之助也.

우리나라의 최근의 사례로 말해보건대, 순흥(順興)의 죽계서원(竹溪書院)[29]과 개성(開城)의 숭양서원(崇陽書院)[30]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충의를 장려하여 이끄는 것은 문신이나 무신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성천부는 정의가 살던 고을이고 자주(慈州)는 최춘명이 벼슬하던 곳으로, 이른바 지금의 자산(慈山)입니다. 성천부는 자주를 직접 관할하고 있으니, 자주(지금의 평안남도 순천시)는 기실 성천부에 예속되어 있는 셈이며, 경계가 서로 이어지고 매우 가까워서 한 고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부에서 첩문으로 보고한 말과 본도에서 장계로 청해온 말은 본디 깊이 논의 중에 있던 내용이니,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공사(公事)에 의거하여 본부에 정의의 사당을 세워 봉사하고 최춘명을 배향한다면, 실로 마땅함에 처사가 될 것입니다. 또 조정에서 만약 특별히 편액을 내리시어 장려하는 뜻을 보여서 인심을 감동시키고 지방으로 하여금 존숭할 대상이 있게 한다면, 때때로 향불을 피우고 제수를 올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꿇어앉아 절을 할 것입니다. 무사들도 제때 모이고 군민들도 모일 터이니, 이때 무경(武經)을 강학하고 무예를 단련하면 충의가 고무되고 신속히 감회될 것입니다. 조정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방에서 감복하여 서로 권면할 것이고, 이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모두 저절로 떨치고 일어나게 될

29) 죽계서원(竹溪書院):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말한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다. 1541년(중종 36)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周世鵬)이 이듬해에 이곳 출신의 유학자 안향(安珦)을 추향하기 위해 사묘(祠廟)를 설립하였다가, 1543년 유생 교육을 겸비하게 되었다. 1544년에는 안축(安軸)과 안보(安輔)를 추가 배향하였다. 풍기 군수로 부임한 이황(李滉)의 요청으로 1550년에 '소수서원'이라 사액되고 국가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30) 숭양서원(崇陽書院): 1573년(선조 6) 개성 유수 남응운(南應雲)이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고 서경덕(徐敬德)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개성 선죽교 위쪽 정몽주의 집터에 서원을 세우고 문충당(文忠堂)이라 하였다. 1575년(선조 8) '숭양(崇陽)'이라는 사액이 내려와 국가가 공인한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1668년(현종 9) 김상헌(金尙憲)、김육(金堉)、조익(趙翼)、우현보(禹玄寶) 등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것입니다. 성천부 한 고을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것으로써 장려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의 인재를 배출할 길이 반드시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고, 군사들의 기세를 진작시킬 방도도 반드시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며, 훗날 조정에서 왜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일에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大抵廟宇之設, 不過數間, 享祀之奉, 惟在春秋兩等, 蘋藻之供, 一出於鄉人之供. 朝廷之上, 只是裁斷一款, 別無經費所及. 而其所以扶持倫紀, 係關國家, 如此其大. 古者顯忠遂良之政, 先發於政紀造命之初, 弔死恤孤之令, 每勵於誅暴定亂之後, 其意有在. 況今正當志雪國恥, 將恢邦運之日, 其可等視凡常, 卽不爲之急務耶? 頃年已降聖敎, 丁寧炳如日星, 至今如昨, 前下事目已成之處, 便從見今爲先設施, 其所未及之處, 隨所見成次第擧行, 未或不可. 而必曰須待州府郡縣一體擧行, 然後方可爲之云, 則淹延稽滯, 了無可施之日, 殊非當初聖敎本意也.

대저 묘우를 짓는 일은 그저 몇 칸에 불과하고 향사를 모시는 것 또한 오직 봄과 가을 두 차례만 있을 뿐이며, 제수(祭需)는 한결같이 고을 사람들이 바칩니다. 조정에서는 결정만 내릴 뿐, 달리 들어갈 경비는 있지 않으나 윤리와 기강을 부지하고 국가에 관계됨은 이처럼 큽니다. 옛날에 충성하면 드러내고 어질면 이루어 준[31] 정책을, 기강(紀綱)을 바로잡고 명령을 내리던 초기에 앞서 펼치고, 죽은 이를 위로하고 고아를 구휼하는 명령을 폭군을 죽이고 난리를 평정한 뒤에 힘써 내린 것도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나라의 치욕을 씻고 장차 국운을 회복하려는 때이니, 어찌 범상한 일로 간주하며 급히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해(1595)에 이미 성교를 내려 분부하신 말씀이 해와 별처럼 밝아 아직까지도 어

31) 충성하면……준: 『상서(尙書)』「중훼지고(仲虺之誥)」의 "어진 이를 돕고 덕 있는 자를 돌보시며, 충성된 자를 드러내시고 훌륭한 자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한 자는 아우르시고 어리석은 자는 치시며, 어지러운 자는 잡고 망할 짓 하는 자에게 욕을 주십시오(佑賢輔德, 顯忠遂良, 兼弱攻昧, 取亂侮亡)."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제 일만 같으니, 사목(事目)이 이미 이루어진 곳은 그대로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곳은 차례대로 거행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주부군현(州府郡縣)에서 일제히 거행하기를 기다린 뒤라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시일만 끌면서 지체하고 말아 시행할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당초 내리신 성교의 본래 뜻이 아닐 것입니다.

臣且竊伏惟念, 當今可憂者, 非但東寇也. 西北邊將來之警亦甚可慮. 成川實西北方一大鎭管, 褒崇節義操鍊武藝等事, 尤不可不於此等處而先爲之所也. 臣有過慮, 固非一日. 今日該曹收議之請, 敢陳愚見, 支離煩瀆, 冒昧至此, 無任隕越之至.
時諸大臣議, 槪皆歸一.
上命依議施行.

신이 또 삼가 생각건대, 지금 근심해야 할 것은 왜구뿐만이 아닙니다. 서북 변방에서 장차 울려 올 경보 또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성천은 진실로 서북 지방의 커다란 진관(鎭管)이므로, 절의를 표창하여 존숭하고 무예를 조련하는 일 등은 더욱이 이런 곳에서 먼저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이를 크게 염려해온 것이 진실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해당 관청에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기에 감히 어리석은 견해를 다 진술하였는데, 산만하고 어지럽게 죽음을 무릅쓰고서 이렇게까지 아뢰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대신들의 의론은 대략 하나로 귀결되었다.
주상께서도 의론한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명하셨다.

時以朝堂榜示人員等事議啓, 琢議以爲:

伏以往在丁酉秋, 海寇再逞, 京師戒嚴, 都下人心洶洶, 一家之人, 亦不

得相保, 至於顚仆道路, 乃至士子筮仕于朝者, 亦不免散落. 蓋懲於亂初, 播遷之時, 未及自拔者, 或多陷賊之故也. 其實狀所在, 不過如此, 若槪指爲先自擇栖, 而不顧君父之急, 則恐非其情也. 況當抄啓榜示之日, 事屬忙遽, 聞見失實, 或有枉被者, 輿論至今冤之.

당시 조당(朝堂)에서 인원을 방시(榜示)한 일[32]에 대해 논한 다음 장계를 올렸는데, 나의 의론은 이러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지난 정유년(1597, 선조 30) 가을에 왜구가 다시 침입하여 도성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도성 인심이 흉흉하여 한 집안 사람조차 또한 서로 지켜주지 못한 채 길거리에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선비로서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흩어져 떠도는 꼴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임진년(1592) 초기 파천(播遷)할 때에 미처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 왜적의 손아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이 이와 같은데도 만약 먼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군부(君父)의 위급함을 돌아보지 않았다며 한꺼번에 몰아 손가락질한다면 이는 아마도 정리(情理)에 맞지 않는 처사일 것이옵니다. 게다가 초계(抄啓)[33]를 방시(牓示)하던 날 다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 중에 보고 들은 것이 사실과 달라 간혹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도 있었기에, 여론이 지금까지도 이를 억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今者國有大慶, 屢行肆赦, 此輩獨未蒙恩. 朝廷本意, 亦未必不以此輩爲應議之類, 而尙不及此者, 蓋以疏放之例, 名在政曹者, 政曹抄啓, 名在刑司者, 刑司抄啓而榜示, 事非係常行之典, 初無主司啓稟之擧, 故屢經曠蕩, 迄未霑被. 若坐此而終身廢錮, 則恐或有玷於滌瑕之盛意. 臣之愚見以爲, 曖昧被抄者, 固不容議矣, 至於可問之罪, 事情如此, 恐

32) 방시(榜示)한 일: 방시(榜示)는 방문을 써 붙여 고시함을 이른다. 선조 33년(1600) 2월 7일에 비변사에서 정유왜란 때 먼저 달아난 벼슬아치의 이름을 올렸는데(제목은 「備邊司榜示朝堂人員書啓」이다),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듯하다.
33) 초계(抄啓): 명단을 적어 임금께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當在應議之中. 普施渙汗, 一樣蕩滌, 則非徒一夫絶泣於向隅, 抑亦王政無大於宥過矣. 臣以此事, 嘗欲陳達, 煩瀆未果. 今因該曹收議, 妄進愚見, 惶恐敢啓事.

지금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여러 차례 사면을 시행하였는데, 이들만은 유독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본래 뜻 또한 꼭 이들을 재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 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석방의 전례에 따르면, 이름이 정조(政曹)[34]에 올라 있는 자는 정조에서 초계하고, 이름이 형조에 올라 있는 자는 형조에서 초계하는 데다, 방시하는 일은 상시 행하는 은전에 관계되지 않아 애초에 주관하여 계품(啓稟)하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사면의 은전을 거치면서도 아직까지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때문에 종신토록 금고된 몸이 된다면, 과오를 깨끗이 씻어 주는 성대하신 뜻에 누를 끼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애매하게 초계에 오른 자들은 진실로 재론을 용납해서는 아니 되지만, [자초지종을] 따져볼 만한 죄라면 사정이 이와 같은 만큼 재론의 대상에 넣어야 할 듯합니다. 큰 은혜를 드넓게 베푸시어 한 번에 깨끗이 씻어내신다면, 한 사내도 구석을 향해 우는 일이 없어질 뿐더러, 또한 왕정(王政) 또한 (실수라면) 큰 잘못이더라도 용서한다[35]는 말씀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이 일을 일찍이 진달하고자 하였으나 성총을 어지럽힐까봐 미처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해당 관청에서 의론을 수렴하기에 어리석은 견해를 함부로 올렸나이다. 황공스럽게 감히 아룁니다.

傳曰: "此事姑停."
時大臣議大槪歸一, 上特命依議施行. 時朝報之禁不止. 琢箚論其事以

34) 정조(政曹): 이조와 병조를 지칭하는 말이다.
35) 왕정……용서한다: 이 구절은 『상서』「고요모(皐陶謨)」의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큰 것이라도 용서하고,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작은 것이라도 형벌한다(宥過無大, 刑故無小)"를 인용한 것이다.

爲:

伏以上年間朝報之禁始嚴, 大小衙門一切禁斷. 然而朝廷得失, 大臣不聞, 則無以奉宣獻計, 臺諫不知, 則無以論事進規. 至於六部庶司, 皆有官守, 無不待其朝政而有所施爲. 如君上擧動諸具, 亦莫不因其耳目所及而能不廢事. 凡有朝政, 若一切禁制, 使之不知, 則不幾於塗蔽時人之耳目? 凡百施爲, 一切廢絶, 以此而圖濟國事, 寧有是道耶? 故其時臺諫啓辭, 大臣同議, 一品衙門, 以至六部三司, 皆許仍舊, 而庶司之禁, 猶存不改, 識者恨之.

후에 "이 일은 잠시 멈추어라."라는 어명이 전해졌다.
당시 대신들의 의론은 대개 한 곳으로 귀결되었는데, 주상께서 논의대로 시행하라는 특명을 내리셨다. 당시 조보(朝報)의 금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나는 차자를 지어 이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작년에 조보의 금지령이 엄격해져서 대소 아문에서 일체의 (조보 발행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득실을 대신들이 듣지 못한다면 선지(宣旨)를 받들어 계책을 올릴 수가 없고, 대간들이 알지 못한다면 일을 논하여 규정을 진언할 수 없습니다. 6부의 여러 관사의 경우 모두 맡은 바 직무가 있는데, 모두 조정의 정책을 기다려 시행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군주가 거동할 때의 모든 도구 역시 이목이 미치는 바이기 때문에 폐하지 못하는 것인데, 만약 모든 조정 정사를 일절 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다면, 거의 사람들의 이목을 다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책을 일체 폐지하고서 국사를 도모하려 한다니, 이런 도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당시 대간들의 계사(啓辭)를 대신들이 함께 의론하여 1품 아문(衙門)에서 육부(六部)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전대로 할 것을 허락하였으나, 서사(庶司)의 금제(禁制)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터라 식자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大凡謀國事者，有所當密，出於不得已者，如與敵對壘．軍機重事，及係關上國有所當諱者， 則亦不得不密． 至如大段表表不必諱者， 若施恩封拜，上冊進表，召命出使，享祀賓客，刑賞修擧等事．此類非一，俱係表表不可密者， 雖大書特書， 使國人盡知之， 未或不可． 安有各司亦列庶官，而容有使之不知耶？ 至如朝政過擧，亦所當不秘．因此有或進戒者，則亦或不無及時可正之道乎？ 孟子曰:‘君子之過也，如日月之蝕，過也人皆見之，及其改也，人皆仰之.’宋太祖坐正殿，洞開重門曰:‘此正如我心，少有私曲，人皆見之.’其爲不秘，蓋可見矣.

무릇 국사를 도모하는 자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은 부득이함에서 나온 것이니, 이를테면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군기(軍機)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 및 상국(上國)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마땅히 숨겨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말을 감추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크게 드러나 있어 꼭 숨기지 않아도 될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은혜를 베풀어 책봉하고 임명하는 것, 책문을 올리고 표문을 진상하는 것, 소명(召命)과 출사(出使), 향사(享祀)와 빈객(賓客), 형상(刑賞)의 정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크게 드러나 있어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라, 비록 대서(大書)하고 특서(特書)하여 나라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 또한 벼슬아치의 반열에 속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조정의 과오 같은 것도 비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 경계의 뜻을 진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제때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들의 과오는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잘못을 저지르면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보지만, 잘못을 고치고 나면 백성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본다.’[36]라고 하였으며, 송나라 태조는 정전(正殿)에 앉아 중문(重門)을 활짝 열면서, ‘이는 바로 내 마음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삿되고 왜곡됨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다.’[37]라고 하였

36) 군자들의……우러러본다:『맹자』「공손추하(公孫丑下)」에 나오는 말이다.
37) 이는……것이다:『송사(宋史)』권3,「태조(太祖)」조에 나오는 말이다.

으니, 비밀로 하지 않았음을 대개 볼 수 있습니다.

大明高皇帝, 訕謗朝廷者勿問. 中朝通報, 本無所諱, 逐日刊印, 至如事係禁中宮倞之變. 亦不諱之. 故外國亦有遣使進慰, 中朝之無此等禁制亦明矣. 祖宗列聖, 未聞有此禁制, 此非但義理當然, 勢亦不得不爾者也. 禁制之非理, 愚智皆知, 安有聖明之朝, 有此疵政而莫之正乎? 我朝秘密之令, 起於亂前, 尤嚴於亂後. 凡係邊報等事, 一切秘之, 人心益搖, 此果是何等爻象耶?

명나라 태조 고황제(高皇帝)도 조정을 비방하는 자의 성명을 묻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조보를 허용하여 본래부터 숨기는 바 없이 날마다 간행하였으며, 금중(禁中)의 궁지기나 노복의 변고에 관계되는 일까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였으니, 중국에 이러한 금제가 없었음이 또한 명백합니다. 조종(祖宗) 열성조(列聖祖) 때에 이러한 금제(禁制)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의리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상황 또한 그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나 현명한 사람이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성명한 조정에서 이렇듯 하자가 있는 정책이 있는데도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우리 조정에서 비밀로 하라는 명령은 난리 이전에 제기되었고 난리 뒤에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변경에서 들어오는 보고 등은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비밀에 붙여 인심이 더욱 흔들리고 말았으니, 이것이 과연 어떤 괘상이란 말입니까?

今者庶司朝報之禁, 猶仍不革, 至如有都提調衙門, 亦皆有禁, 其勢將至於名在大臣之後者, 亦不聞朝政之得失, 其與聾瞶一般, 亦甚未安, 徒傷國體, 而無益於事. 此果是何等義理耶? 政院居喉舌之地, 一應朝政出入, 無不管攝, 如有萬中一二有可密之事, 雖不得不密, 因此一二可密之事而盡諱, 其許多不當密之事, 而至有禁制耶? 臣有妄見, 不得不達, 輕冒宸嚴. 不勝隕越. 取進止.

右箚草本已具, 而會聞禁制當止, 故不爲入啓.

지금 각 사(司)의 조보에 대한 금령이 아직도 혁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며, 도제조(都提調) 아문까지도 모두 금하고 있으니, 이러한 추세라면 장차 명색이 대신의 지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조정의 득실을 듣지 못하여 귀머거리와 마찬가지가 될 터이니, 이는 심히 온당치 못할뿐더러 국체만 손상시키고 일에는 보탬 되는 바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리입니까? 승정원은 조정의 입노릇을 하는 곳으로 조정의 출입에 관한 모든 것을 관할하지 않음이 없거늘, 만에 한두 가지 비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 한두 가지 비밀로 할 만한 일로 인해 모든 것을 감추면서, 마땅히 비밀로 하지 말아야 할 허다한 일까지도 모두 금제를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신에게 부질없는 견해가 있어 진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경솔하게 성상의 지엄함을 범하였나이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의 차자가 이미 다 갖추어졌는데, 마침 금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와 계를 올리지 않았다.

萬曆己亥秋九月二十五日, 以歸省父母墳, 受由南歸. 啓辭以爲:

伏以臣世居安東地, 而考妣則皆葬醴泉境內. 頃在庚寅年間, 臣銜命回白上聞後, 依例受由, 未及發行, 適因其時臺論啓請, 在廷臣僚勿許受由下鄉. 自壬辰以後, 兵亂連年, 請暇非時. 其間雖有再次追榮三世之命, 事勢如此, 不敢告歸. 今則海寇退去, 而天兵尙留, 國事猶艱, 殊非臣子乞暇之日. 第臣犬馬之齒, 今已七十有四, 日迫西山. 若於此時, 不爲歸省, 則未死之前, 恐終無期.

만력 기해년(1599) 가을 9월 25일에 부모님의 묘를 돌보기 위해 말미를 얻어 남으로 돌아갔다. 그때 올린 장계는 이러하다.

신은 대대로 안동 땅에 살았으나 부모님은 모두 예천 경내에 묻었습니다. 지난 경인년(1590)에 신이 왕명을 받들고 중국에서 돌아온 후에 관례대로 말미를 얻었으나, 미처 출발하기 전에 대간에서 논의하여 조정 신료가 말미를 얻어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주청을 올렸습니다. 임진년 이후로는 병란이 여러 해 계속되어 휴가를 청할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두 차례 3대가 추증(追贈)되는 영예가 있었으나, 상황이 이와 같아 감히 귀향을 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왜구들이 물러갔으나 명나라 군사가 아직 머물러 있고 나랏일이 아직도 어려운 처지라 신하가 휴가를 청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신의 나이 지금 일흔넷, 서산에 지는 해와 같사옵니다. 만약 지금 고향에 돌아가 성묘하지 못한다면, 죽기 전에 끝내 기약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臣獨有一兄, 已死於亂離之際, 其一子孤危, 尙在經亂播遷之中, 考妣之墳, 守護無人. 埋沒於荒草間, 近且雨水崩頹, 混爲平地. 臣聞來不覺痛結心腸, 每至中夜, 夢魂飛越, 覺猶嗚咽. 當此國事艱虞之時, 以一家私故, 開口未安, 而情勢切迫, 玆敢冒昧煩瀆. 伏乞聖慈, 俯諒微懇, 使之及時歸省先塋, 死得瞑目. 無任激切之至.

事入啓蒙允, 卽日發行. 是年十月上旬一日, 始到醴泉鄉家, 仍留省墓, 焚黃致告于家廟, 因病不得限內起程.

신에게는 오직 형님 한 분밖에 없었으나 난리 통에 죽었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도 아직까지 피난 중에 있어서 부모님의 분묘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우거진 풀 속에 파묻혀 계신데, 근자에는 또 비로 봉분이 무너져 평지가 되었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애통함이 심장에 맺혀, 밤마다 혼비백산하고 깨어나면 오열합니다. 이처럼 나랏일이 어렵고 근심스러운 때에 하찮은 사사로운 이유로 입을 열자니 마음이 편치 않으나, 사정이 절박하여 성총을 어지럽혀드림을 청하였으니, 엎드려 빌건대 성상의 자애로우심으로 저의 간곡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적당한 때에 선영을 성묘하게 해 주신다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나이다. 끓어오르는 절실한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사옵니다.

장계를 올려 윤허 받았기에 그날로 길을 떠났다. 이 해 10월 1일에 비로소 예천 고을에 있는 집에 도착하여 머물러 성묘한 다음 가묘에 분황(焚黃)하고[38] 고하였다. 그러나 병이 나서 기한 내에 길에 오르지 못하였다.

十一月十六日在安東家, 謹具由封狀, 其辭以爲:

伏以臣寇亂之餘, 叨受恩暇, 使之歸省先塋, 繼有聖旨, 又使本道, 題給祭需. 榮生朽骨, 恩及泉壤, 聖恩如天, 報效無地, 不覺感淚自零. 而臣自離闕下, 諸證交發, 經過路上, 調治無從, 仍成劇症, 乃至上下痞塞不通. 淹延道途, 幾不得達, 起程第十九日, 始抵醴泉郡地, 考妣墳所在之處. 滯行至踰一旬之久, 力疾仍往安東地宗家, 告祭累代恩贈. 冒涉風寒, 前證復作, 又十日後, 始還醴泉家. 路上墜馬, 左脅骨竝肩井, 牽掣酸痛, 至不能屈伸. 自念臣以老病, 冒涉往來之際, 由限已過, 重患傷症, 期月之間, 調治無期, 又値時方嚴沍, 忍耐登途, 上歸不得, 惶憫罔極. 臣本職兼帶奉常寺都提調竝遞事.

詮啓云云.

11월 16일 안동의 집에서 그간 사유를 갖추어 봉해 올렸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신이 왜란이 끝난 뒤에 외람되이 휴가의 은혜를 입어 고향에 내려와

38) 분황(焚黃)하고: 죽은 사람에게 관직이 추증되었을 때, 그 죽은 이의 자손이 조정에서 수여하는 사령장과 황색 종이에 쓴 부본을 받아 선조의 무덤 앞에서 이를 고하고 부본을 태우는 일을 말한다.

선영에 성묘하였는데, 이어 성지를 내리시어 또 본도(本道)로 하여금 제수를 내려 주게 하셨습니다. 백골에 영예가 꽃피고 구천에까지 은혜가 미치어 성은이 하늘과 같으나 보답할 길이 없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떨어집니다. 신이 대궐을 떠난 뒤로 여러 가지 증세가 번갈아 일어났는데, 길 가는 도중에 조리할 길이 없다 보니, 증세가 악화되어 위아래가 막혀 서로 통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에서 지체하느라 거의 이르지 못할 뻔 했다가 길 떠난 지 19일 만에 비로소 예천군 부모님 묘소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행차를 지체한 지 열흘이 넘어서야 병든 몸을 이끌고 안동 종가에 가서 몇 대에 걸친 은혜로운 추증(追贈)을 제사로 고하였습니다. 바람과 추위를 무릅썼더니 이전의 증세가 다시 발작하여 다시 열흘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중 낙마하여 상처를 입어 왼쪽 갈비뼈와 어깨[39]가 잡아당기듯이 시리고 아파서, 폈다 굽혔다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이 늙고 병든 몸을 무릅쓰고 왕래하는 사이에 휴가의 기한을 이미 넘겼고, 중병으로 인해 한 달 내에 조리할 수 있으리라 기약하기도 어려운 데다, 바야흐로 혹한의 계절을 만나서 억지로 참고 길에 올라 상경할 수도 없사오니, 황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신의 본직과 겸직인 봉상시 도제조직을 아울러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아뢰었다.

同月三十日, 右承旨宋成貼書狀內: "觀卿狀啓, 具悉卿意. 日氣溫和後, 卿其調理上來事." 有旨. 十二月初九日在醴泉家祗受. 祗受書狀, 卽時上送, 同月十五日又封狀啓陳:

臣伏奉本月初九日右承旨宋成貼書狀內聖旨中, 日氣溫和後調理上來之敎. 琢竊伏念, 方今國家多事, 朝廷上下, 猶在薪膽之中, 此非人臣丐暇

39) 왼쪽……어깨: 원문의 '견정(肩井)'은 어깨 위쪽의 오목한 곳인데, 결분(缺盆)의 위쪽, 대골(大骨)의 앞쪽에 있다 하여 견정이라 하였다.

滯鄉之時. 而臣自違闕下, 疾病交侵. 至有上下痞隔不通之症. 行抵鄉家, 又有慮外之眚, 乃於路上, 墜馬重傷, 左傍全不運用. 本月十二日以後, 右傍肩井, 以至手脫氣脈相連處不能運動, 盜汗不止, 入夜常流. 少犯風寒, 外感輒重. 年衰多病, 本不爲怪, 而諸般病症, 一時叢萃, 身滯鄉家, 尙帶職銜, 實荷聖眷. 恩寵罔極, 而臣之罪咎益深, 措躬無地. 至如奉常寺段, 祭享所掌衙門, 體面極重, 不可一日無都提調, 而臣病勢如此, 不得起身上歸. 今者秋冬等本寺殿最磨鍊時, 亦未得參. 惶恐不已. 臣本職兼帶奉常寺都提調, 竝命遞差, 俾得降心調理, 庶延晷刻之命事.

詮次善啓. 傳曰: "只遞奉常寺都提調."

같은 달 30일에 우승지 송(宋) 아무개가 성첩(成貼)[40]한 서장(書狀) 안에 "경이 올린 장계를 보고 경의 뜻을 모두 알았으니, 날이 따뜻해진 후에 몸조리하여 올라오도록 하라."라는 성지가 있어 12월 초아흐레에 예천의 집에서 공경히 받들었다. 서장을 공경히 받든 후 그 즉시 장계를 올려 보내고, 같은 달 15일에 다시 장계를 봉해 올리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은 이 달 초9일에 삼가 우승지 송(宋) 아무개가 성첩한 서장 내의 성지를 받들었사온데, 그 안에 날씨가 따뜻해진 뒤에 조리하여 올라오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바야흐로 나라에 일이 많아 조정의 상하 신료들이 아직도 와신상담하는 중에 있으니, 신하로서 휴가를 핑계로 고향에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이 대궐을 떠나고부터 갖은 질병이 번갈아 침범하더니, 위 아래가 막혀 통하지 않는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하고 나서는 또 다시 뜻밖의 재앙을 만나 길에서 낙마하는 중상을 입어 왼쪽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 12일 이후부터는 우측 견정에서 손목과 기맥이 서로 연결된 곳까지 움직일 수 없었으며, 도한증

40) 성첩(成帖): 문서에 관인을 찍는 것을 말한다.

(盜汗症)[41]이 그치지 않아서 밤이 되면 늘 땀이 흐르고, 한기가 조금만 들어도 감기가 위중해지곤 합니다. 노쇠하여 다병한 것이야 본디 이상할 것 없으나, 여러 가지 증세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서 직함만 지니고 있으니, 진실로 성스러운 돌아봐주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은총이야 한량없으나 신의 허물은 더욱 깊어지기만 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봉상시 건의 경우, 제향을 관장하는 관아인지라, 체면이 매우 중대하여 하루도 도제조가 없어서는 안 되거늘, 신의 병세가 이와 같아 몸을 일으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 봉상시 전최(殿最)[42] 마감에도 참석하지 못하여,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의 본직과 겸직한 봉상시 도제조직을 아울러 교체해 주심으로써 마음 놓고 조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러한 내용을 차례대로 아뢰었다. 이에 "봉상시 도제조직만 교체한다."라는 전교가 내려왔다.

萬曆庚子春二月二十日政, 除受左議政. 是月二十三日, 同副承旨南成貼書狀內: "今以卿爲議政府左議政. 卿其斯速上來事." 有旨. 三月初三日, 琢在醴泉家祗受. 祗受書狀, 卽封上送, 又封書狀, 其辭以爲: "伏以臣於上年九月日, 叨受恩暇, 及身未死, 歸省考妣丘隴, 兼致奠酹, 榮及泉壤, 聖恩如天, 無以報效. 竊伏惟念, 凡官之仕於朝者, 受暇有式, 不可違越. 而臣纔出國門, 身病支離, 及至鄕家. 墜馬重傷. 時日遲延. 勢將狼狽, 不得已冒昧陳達, 乃至再度. 而自上有旨, 使臣調理上來. 繼命許遞奉常寺都提調, 聖恩罔極, 感懼彌深. 竊擬竚竢稍瘉, 及時前進, 而傷病彌留, 日以益甚. 入春以來, 重患時令, 證似氣瘧. 逐日搜發, 日漸危苦, 昏不省事. 臣以老衰之年, 病勢如此, 自念死亡無日, 上

41) 도한증(盜汗症): 잠자는 동안에 식은땀이 나고 잠이 깨면 땀이 멎는 증세를 말한다.
42) 전최(殿最): 근무 고과(考課) 점수, 혹은 그 제도와 기준이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근무상태를 조사하여 성적을 매겼는데, 이것을 전최라고 불렀다. 여기서 최상을 맞으면 최(最)가 되고, 꼴찌가 되면 전(殿)이 되었다.

歸無期. 而判中樞官銜猶存, 帶職滯鄕, 罪咎益重. 又將具由冒昧陳乞, 而未及封狀, 千萬意外, 卜相之命, 遽及臣身, 臣聞命蹜踖, 措躬無地. 臣之愚陋, 聖鑑所照, 臣之老衰, 聖明所知. 凡干閑局職事, 決不可承當, 況此相臣名器, 豈敢冒稱?

만력 경자년(1600) 봄 2월 20일에 좌의정에 제수되었다. 이 달 23일에 동부승지 남(南) 아무개가 성첩한 서장 안에 "지금 경을 의정부 좌의정에 임명한다. 경은 속히 올라오라."라는 성지가 있었다. 3월 초사흘에 나는 예천의 집에서 공경히 받들었다. 공경히 서장을 받들 후에 그 즉시 장계를 봉해 올리고 다시 서장을 봉해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신은 지난해 9월 모일에 외람되이 은혜로운 휴가를 받아 죽기 전에 부모님의 묘소에 성묘하고 아울러 술잔을 올려서 영화가 저승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성은이 하늘같지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건대, 조정에서 벼슬하는 모든 관리들이 휴가를 받을 때는 법식이 있어서, 이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이 궐문을 막 나서자마자 신병이 지루하게 이어졌고, 고향집에 이르러서는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바람에 시일을 지연하고 말았습니다. 장차 낭패한 상황에 처할 듯해 부득이 무모함을 무릅쓰고 아뢰기를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이에 성상께서 교지를 내리시어 신더러 몸조리하여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상시 도제조직의 교체를 허락하는 명을 내려 주시니, 성은이 망극하여 감격과 두려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에 속으로 조금 낫기를 기다렸다가 제때에 나아가겠노라 생각하였으나, 상처와 병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봄이 온 뒤로 계절 감기를 무섭게 앓았는데, 증세가 마치 학질 같았습니다. 날마다 출발할 기회를 찾았으나 날로 더 고통스러워지고, 정신이 혼미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신은 노쇠한 나이에 병세가 이와 같으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죽을 날은 멀지 않았고 상경할 기약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판중추부사의 직함이 여전히 남

아 있어, 직함을 지닌 채 고향에 머물러 있으니, 죄가 더욱 막중합니다. 또 장차 연유를 갖추어 무모함을 무릅쓰고 사직을 애걸하고자 하였으나, 장계를 봉하기도 전에 천만 뜻밖에 정승에 제수한다는 어명이 갑자기 들려와, 신은 명을 듣고 종종걸음 치며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신의 어리석고 고루함은 성상께서 밝히 굽어보신 바이고, 신의 노쇠함 역시 성상께서 밝히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무릇 한가한 부서의 일도 결코 감당할 수 없거늘, 하물며 이 재상의 중직을 신이 어찌 함부로 칭할 수 있겠습니까?

方今國讐未復, 賊情叵測, 大亂未戡, 天兵尙留, 財殫民窮, 中外焦竭. 此是何等時, 而相臣之卜, 謬及無狀? 況臣犬馬之齒, 七十有五, 筋力頓愆, 痼疾且劇, 一日之間, 生死難知. 召命及門, 無計登途, 謝恩一款, 亦未及期. 叨冒恩除, 寧過一刻. 如臣庸陋, 雖不暇顧, 奈公議何? 奈國事何? 伏惟聖明俯諒危懇, 亟寢成命, 改卜他相. 公私幸甚, 國家幸甚. 輕冒宸嚴, 無任兢惶激切之至.

詮次善啓云云.

지금은 나라의 원수도 아직 갚지 못하였고, 왜적의 정세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큰 난리가 평정되지 않아서 천병이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재물은 바닥나고 백성들은 곤궁하여 안팎으로 고갈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 재상직의 임명을 저처럼 보잘것없는 자에게 함부로 제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신의 나이는 일흔다섯이라, 근력이 쇠잔하고 고질병도 심하여 하루 사이에 살지 죽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환 명령이 문 앞에 이르렀지만, 길에 오를 계책도 없고 사은의 인사도 기한 내에 할 수 없습니다. 외람되이 은혜로운 제수를 입고서 어찌 일각인들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용렬하고 비루한 신이야 비록 돌아볼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공의는 어찌 하시렵니까? 국사는 어찌 하시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성명(聖明)께서 간절한 심정을 굽어 살피시고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시어 다른 재상으로 바꾸어 제수해 주

신다면, 공사(公私) 모두에 있어 크나 큰 다행이요 국가에 있어서도 크나 큰 다행일 것입니다. 경솔하게 지엄하신 성상을 범하였기에, 지극히 황공함과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차례대로 아뢰었다.

同庚子年三月十八日, 右承旨柳成貼書狀內: "觀卿狀啓, 具悉卿意. 目今國家多事, 艱虞日新, 安危之責, 專在大臣. 而卿今以疾辭職, 予甚缺然. 卿其勿辭, 安心調理, 速爲上來, 以副予倚毗之望事." 有旨. 本月二十七日, 琢在醴泉家祗受, 祗受書狀卽封, 同時又封狀上送陳乞遞免, 以爲:

같은 경자년 3월 18일에 우승지 유(柳) 아무개가 성첩한 서장 안에 "경이 올린 장계를 보고 경의 뜻을 다 알았다. 목전에 나라에 일이 많아 날로 새로운 근심이 생겨나고 있으니, 안위의 책임은 오로지 대신들에게 있다. 그런데 경이 질병으로 사직한다면 심히 결여된 듯 느껴지니, 경은 사양하지 말고 마음 놓고 조리한 뒤 속히 올라와, 내가 의지하고 믿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라는 성지가 있었다. 이 달 27일에 나는 예천의 집에서 공경히 받들었다. 공경히 서장을 받든 뒤 즉시 장계를 봉해 올림과 동시에 다시금 장계를 봉해 위로 올리며 면직을 다음과 같이 애걸하였다.

伏以臣以身病實狀, 已嘗具由狀啓, 及承新除恩命, 又冒陳乞. 伏奉本月二十八日右承旨柳成貼有旨, 內不許臣辭免, 使臣安心調理上來. 臣奉戴德音, 不勝惶戰感激之至. 臣庶可起身, 稍有生道, 則縱未敢承當相職之名, 上命至嚴, 思必扶曳就途, 詣闕謝恩. 此實臣子至情, 豈暇回皇顧眄甘於退伏?

삼가 아룁니다. 신은 신병에 관한 실상을 이미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렸음에도 새로이 제수하는 은명을 받아 부득이 무모함을 무릅쓰고

사직을 진언합니다. 이번 달 18일 우승지 유(柳) 아무개가 성첩한 서장을 받들어 보니 성지가 들어있었는데, 신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신에게 안심하고 조리한 뒤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윤음을 받들고 지극한 황공함과 감격의 마음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신은 몸을 일으켜 조금이라도 살 방도가 있다면, 비록 감히 재상직의 이름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주상의 명이 지엄한 만큼 기필코 몸을 부축하여 이끌고 길에 올라 대궐로 찾아간 다음, 사은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지극한 심정이오니, 머뭇거리며 뒤돌아보고 물러나 쉬는 것을 달가워할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自念病勢如此, 殆恐朝夕莫保. 老衰之年. 氣血俱虛, 疾病之侵, 固無足怪. 而南下以後, 重傷道路, 及旣下鄕, 又傷落馬, 支離轉輾, 換歲漸重. 重患感冒, 症似氣瘧, 潮熱眩眊, 逐日常然. 自二月以後, 左傍肱脅, 全然不收, 無復更爲人世之物. 上年聖命再下, 亦難起身就途, 事涉違慢, 臣罪極大, 況今國事多艱, 朝廷上下方在薪膽之中, 此實臣子死生以之暫不離側之時. 而臣不幸病勢危苦, 雖有非常恩命, 謝恩一節, 亦至稽滯, 大失臣子之禮, 措身無地, 惶憫罔極.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건대, 병세가 이와 같으니 조석을 보장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노쇠한 나이에 기가 온통 허해졌으니, 질병이 침입한 것도 실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온 뒤 도중에 중상을 입었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또 낙마로 다쳐서 지루하게 전전하며, 해가 바뀌도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게다가 감기를 앓아서 증세가 학질과 비슷하며 조열(潮熱)[43]과 어지러움이 날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2월 이후부터는 왼쪽 팔과 옆구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난해 어명이 다시 내려왔을 적에도 몸을 일으켜 길에 오르기 어려웠던 탓에 명을 어기고 소홀히 하는 죄를 저질러 그 죄가 막대하거늘, 더구나 지금은 나랏일에 어려움이 많아 조정의 상하 신료들이 와신상담 중에 있으

43) 조열(潮熱): 일정한 시간에만 열이 오르는 증상을 조열이라 한다.

니, 실로 신하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잠시나마 곁을 떠날 수 없는 때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은 불행히도 병세가 위중하고 고통스러워서 범상치 않은 은명이 내려왔음에도 사은의 절차를 지체하였으니, 신하로서의 예법을 크게 잃어 몸 둘 바를 모르겠으며, 황공하기 그지없나이다.

且復重念大臣之職, 百責所萃, 當此撥亂之際, 所係益重, 豈合輕卑庸品, 使人失望? 臣之無狀, 臣實自知. 亂生以後, 尙未戡定, 于今九載, 而顧無建白一策. 今且年迫八十, 身病如此, 雖欲冒昧, 其勢亦難. 況此多事之際, 豈可百揆曠職? 亦甚未安. 伏乞聖慈, 俯察愚衷, 愛惜名器, 亟回成渙, 以愜公論, 不勝幸甚. 仰瀆天威, 乃至再三, 無任震慄隕越之至. 謹昧死以聞事.

詮次善啓云云.

또 거듭 생각건대, 대신의 자리는 온갖 책임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지금처럼 난리를 평정해야 하는 때를 당해서는 그 관계되는 바가 더욱 중대하니, 어찌 용렬한 자에게 가벼이 제수하여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의 변변치 못함은 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란 발생 이후 아직도 진압시키지 못한 채 지금 9년이나 되었건만, 돌아보면 건의한 계책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든에 가까워 오는데다 신병이 이와 같으니, 비록 무모하게 나가고자 하여도 상황상으로 그 또한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일이 많은 때에 어찌 정승이 관직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마음 편치 않은 일입니다. 삼가 청컨대, 성상의 자애로움으로 저의 어리석은 충정을 굽어 살피시고, 관작을 아끼시어 이미 내리신 조령(詔令)을 속히 거두심으로써 공론을 흡족케 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나이다. 우러러 천위(天威)를 어지럽힌 것이 두 번 세 번에 이르렀기에, 지극히 두렵고도 황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었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차례대로 아뢰었다.

同年四月初五日, 同副承旨閔成貼書狀內: "觀卿狀啓. 以病辭職, 玆遞本職, 卿其知悉事." 有旨. 是月十一日琢在高坪家祗受卽封, 祗受書狀上送, 同月十五日陳情乞骸上疏以爲:

伏以臣濫蒙謬恩, 官冒相職, 病伏鄉窩, 不得赴召, 罪極違慢. 伏竢嚴譴, 聖度包荒, 旣許乞免, 旋授樞府, 終始聖恩, 與天同大. 臣揆分踰涯, 思切報效, 而疾病沈綿, 與死爲隣, 前後恩命, 俱闕趨謝, 帶職滯鄉, 罪咎山積, 惶憫罔極. 仰惟聖慈, 父母天地, 伏乞命遞臣職, 且賜骸骨, 使之死葬先臣墳側, 不勝祈懇切迫之至. 且念臣衰病已劇, 朝晝之間, 生死難知, 深恐自此未得更趨輦轂之下, 仰望天日之光. 臣無任瞻天戀闕涕泣悲感之至, 謹昧死以聞.
時萬曆二十八年四月十五日也.

같은 해 4월 초닷새에 동부승지 민(閔) 아무개가 성첩한 서장 안에 "경의 장계를 보았다. 병으로 인해 사직을 청하기에 본직을 교체하니, 경은 잘 알도록 하라."는 성지가 들어 있었다. 이달 11일에 나는 고평의 집에서 공경히 받들고 곧 장계를 봉해 올렸고, 서장을 공경히 받든 후 같은 달 15일에 늙은 몸이 사직할 수 있도록 윤허해달라는 상소를 위에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삼가 아룁니다. 신은 외람되이 과분한 은혜를 입어 감히 저승의 직책을 받았으나, 병으로 고향 집에 누운 채 부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은명을 어기고 무시한 죄가 지극합니다. 엎드려 준엄한 견책을 기다렸으나 성상의 드넓은 도량으로 사직을 허락해 주시고는 바로 중추부에 제수하시니, 시종일관 성은이 하늘과 같이 큽니다. 신의 분수를 헤아려 볼 때 실로 도에 넘치는지라, 성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이 질질 끌며 거의 죽음과 이웃할 지경이 된 터라, 앞뒤로 내려 주신 은명에 대하여 모두 나아가 사은하

지 못하고, 관직을 지닌 채 고향에 머물러 있으니, 허물이 산처럼 쌓여 황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성상의 인자하심은 천지 부모와 같으시니, 삼가 바라건대 신의 관직을 교체해 주시고 사직을 허락해 주시어 죽어 선친 곁에 묻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생각건대 신의 쇠함과 병세가 이미 위중하여 아침 낮 사이에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제부터 다시는 전하 앞에 나아가 태양의 빛을 우러르지 못할까 심히 두렵사옵니다. 신은 하늘을 우러르고 대궐을 그리워하며 흐느껴 우는 슬픈 감회를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때는 만력 28년(1600) 4월 15일이었다.

四月二十三日同副承旨閔成貼書狀內: “觀卿上疏, 以病辭職, 卿其勿辭事.” 有旨.
四月初五日, 琢在醴泉家祗受, 又封書狀上送. 時庚子歲七月六日, 琢在醴泉郡高坪家, 是夕始聞中殿以去六月二十七日戊戌陞遐, 此邸吏所報訃音, 是實其翌日. 夙詣本郡公大廳, 與郡守盧景任, 前監司丁胤祐等設位會哭. 越七日癸丑, 與郡守監司等復會設位成服而罷. 琢時以身病, 不得上京, 俱由封狀以聞, 其辭以爲:

4월 23일에 동부승지 민 아무개가 성첩한 서장 안에 “경의 상소를 보았다. 병으로 인해 사직하겠다 하였으나 경은 사직하지 말라.”는 성지가 들어 있었다.
4월 초닷새에 나는 예천의 집에서 이를 공경히 받들고 다시 서장을 봉해 위에 올렸다. 때는 경자년(1600) 7월 6일, 나는 예천군 고평(高坪)에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야 비로소 중전께서 지난 6월 27일 무술일에 승하하셨다는 소식이 들러왔다. 저리(邸吏)[44]가 알

44) 저리(邸吏): 고을과 감영(監營), 병영(兵營), 서울 관아의 사무 연락을 위하여 감영, 병영, 중앙관아가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아전을 가리킨다. 감영은 영저리(營邸吏), 병영은 병영저리(兵營邸吏), 서울은 경저리(京邸吏)

려온 부음은 그 다음날에야 도착했다. 새벽에 본군의 공무 대청을 찾아가 군수 노경임(盧景任)[45]과 전 감사 정윤우(丁胤祐)[46] 등과 함께 신위를 모시고 모여 곡하였다. 7일 뒤 계축일에 군수 및 감사 등과 모여 다시 신위를 모시고 상복을 입은 뒤에[47] 파하였다. 나는 당시 병이 나 도성에 올라갈 수가 없었기에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봉해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伏以臣疾病沈綿, 久滯南鄉, 不意國家凶變, 中殿奄忽昇遐. 臣遙聞諱音, 北望驚摧, 而衰病已劇, 不卽奔哭, 臣子道缺, 罪當萬死. 臣於上年告暇南來, 墜馬重傷, 仍患氣瘧, 經年沈痼, 日漸羸鑠, 元氣柴敗, 形存神亡. 年垂八十, 身叢百疾, 日加月增, 坐臥須人, 賤息奄奄, 與死爲隣. 雖欲作勢, 力乏登程. 旣不得與於庶僚庭哭之後, 又不參於擧朝奉慰之列, 大違臣子至情, 獲罪彝倫, 無以自容於覆載之間, 席蒿冒昧, 伏竢嚴誅.
詮次善啓云云.
萬曆二十八年七月二十七日也.

신이 질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오랫동안 고향에 머물러 있던 중 뜻하지 않은 나라의 흉변(凶變)으로 중전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습니

---

라 한다.

45) 노경임(盧景任: 1569~1620): 자는 홍중(弘仲), 호는 경암(敬菴)이며 장현광(張顯光)과 유성룡(柳成龍)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598년에 사간원 헌납, 종부시전적(宗簿寺典籍)에 제수되었지만 부임하지 않다가 그 뒤 지영해부사(知寧海府事), 성주목사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스승 장현광의 심부름으로 정인홍(鄭仁弘)을 만나보고 돌아와 대단히 간사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일이 뒷날 정인홍에게 알려져서 무고한 탄핵을 받고 성주목사에서 파직되었다.

46) 정윤우(丁胤祐: 1539~1605): 자는 천석(天錫), 호는 초암(草菴)이다. 선조 3년(1570) 경오 식년시(式年試)에 문과(文科) 병과(丙科) 6위로 급제했고, 성균관 대사성, 사간원 대사간, 도승지, 병조참의, 강원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47) 상복을 입은 뒤에: 원문은 '성복(成服)'으로, 초상(初喪)이 난 뒤에 상제(喪制)와 복인들이 처음으로 상복(喪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다. 신이 멀리서 부음을 듣고 북쪽을 바라보며 놀라 상심하였으나, 병이 이미 위독하여 즉시 달려가 곡하지 못하였으니, 신하의 도리를 어긴 죄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신이 지난해 휴가를 고하고 남으로 내려왔으나, 낙마로 인해 중상을 입고 이어 학질을 앓더니, 해를 넘기며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원기가 손상되어, 몸뚱이만 있을 뿐 혼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온갖 병이 모여들어 날로 더하고 달로 늘어나, 앉고 누울 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천한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으나, 죽음과 이웃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록 기운을 내보고자 하여도 힘이 없어 길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뭇 관료들이 조정에서 곡하는 뒷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또 온 조정이 받들어 위로하는 반열에도 끼지 못하였으니, 신하의 지극한 정을 크게 어기고 인륜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천지지간에 살아 있음을 용납 받을 수 없기에 무모하게 거적을 깔고서 엎드려 준엄한 벌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례대로 아뢰었다.
때는 만력 28년 7월 27일이었다.

同年八月初五日, 左副承旨鄭成貼書狀內: “觀卿狀啓. 以病未奔哭待罪, 卿實老病, 其勿待罪事.” 有旨. 同月十五日, 琢在醴泉家, 祗受感泣云云.
時內殿玄宮已卜, 發引日迫. 琢是年九月初八日, 自家起程, 力疾扶曳, 行至豐基郡地昌樂驛里, 病未得達, 仍寓喜坊僧舍, 具由馳狀以啓. 無望前進, 卽具由封狀以爲:

같은 해 8월 초닷새에 좌부승지 정(鄭) 아무개가 성첩한 서장 안에 “경의 장계를 보았다. 병으로 인해 달려와 곡하지 못했다며 대죄를 청하였으나, 경은 실로 노쇠하고 병들었으니, 대죄하지 말라.”라는 성지가 있었다. 같은 달 15일에 나는 예천의 집에서 이를 공경히 받들고 감읍하였다.

그때 내전(內殿)의 현궁(玄宮)[48] 터가 이미 정해지고 발인일이 임박해 왔다. 나는 9월 초8일에 집에서부터 길에 올랐는데, 병든 몸을 부축 받으며 애써 질질 끌고 풍기군에 있는 창락역(昌樂驛) 마을에 이르렀을 때, 병 때문에 도착할 수 없어 이내 희방(喜坊) 승방에 묵으면서 사유를 갖추어 급히 장계를 올려 아뢰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즉시 봉장(封狀)을 갖추어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伏以臣病伏南鄉, 累承召命, 皆不得赴, 罪極違慢. 至聞大行內殿諱音, 亦不得奔哭於國門之外, 臣嘗具由封狀, 自劾待罪. 而天誅不加, 聖旨優容, 臣聞命感泣, 彌日不止. 繼聞內殿玄宮已卜, 發引日迫, 臣一息尙存, 不忍退在, 本月初八日, 自家起程, 力疾扶曳, 頻次休憩, 行不窮日. 起程第四日, 始至豐基郡界昌樂驛里. 氣瘧經年, 勞熱大作, 諸般危症. 一時暴發. 四體委地, 氣息垂絶, 仍寓僧舍, 累日調理, 而病勢危篤, 無望前進. 伏以臣子至情, 今値國母大喪, 竟不得奔走悲號於殯仗魂殿之側, 天殛神誅, 覆載難容. 且念臣犬馬之齒, 七十有五. 抑恐大限將盡, 未得更望天日之光. 今臨草奏, 無任瞻天戀闕悲痛隕越之至.

詮次善啓云云.
萬曆二十八年九月十五日也.

신이 영남 고을에 몸져누운 채 거듭 부름을 받고도 모두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은명을 어기고 소홀히 한 죄가 지극합니다. 또 대행(大行)[49] 내전의 부음을 듣고도 성문 밖으로 달려가 곡하지 못하였기에, 신이 일찍이 사유를 갖추어 봉장을 올리고 스스로를 탄핵하며 대죄를 청하였으나, 천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성지로 너그러이 용서하시므

48) 현궁(玄宮): 내전은 승하한 의인왕후(懿仁王后)를 가리킨다. 현궁은 예전에 임금이나 왕비의 관을 묻을 터를 이르던 말이다.
49) 대행(大行): 예전에 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 시호를 올리기 전에 부르던 칭호이다.

로, 신은 어명을 듣고 감읍하기를 온종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내전의 현궁이 이미 정해지고 발인 날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고는 신에게 한 가닥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차마 물러나 있을 수 없어서, 이달 8일에 집에서 길에 올라서 병든 몸을 부축 받으며 애써 질질 끌고 나아갔으나, 빈번히 쉬느라 종일토록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비로소 풍기군의 경계인 창락역(昌樂驛) 마을에 도착하였으나, 해를 넘긴 학질에 피로가 겹쳐서, 열이 크게 나고 여러 위험한 증세가 일시에 터졌습니다. 사지가 축 늘어져 숨이 거의 끊길 지경이라 승방에 들어가 여러 날을 조리하였으나, 병세가 위독하여 앞으로 나아갈 가망이 없었습니다. 신하의 지극한 심정에 지금 국모의 상을 만났건만, 혼전(魂殿)[50] 곁으로 달려가 슬피 통곡도 하지 못하였으니, 하늘과 신이 형벌을 내린다면 천지 사이에서 살아있음을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신의 나이 일흔다섯으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다시는 태양의 빛을 우러러 뵙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상소문을 작성하면서, 하늘을 우러르고 대궐을 그리워하며 비통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눌 길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례대로 아뢰었다.
때는 만력 28년 9월 15일이었다.

時以術家之言, 大行玄宮改卜, 乃至再三. 葬期已過, 而猶未定奪云. 琢上箚論之以爲:

伏以臣竊聞新陵改卜, 葬期且迄. 臣固知朝廷此擧, 實出於不得已者也. 而襄奉大禮, 漸至稽緩, 誠非細慮, 亦非古者'卽遠有進'之義也. 臣謹按五禮儀, 此是祖宗定制, 喪制極備. 初終而殮, 殮而殯, 五月而葬. 葬而虞, 以至練祥, 其間日時久近疏密, 靡不周詳. 今此內聖喪制經行節次, 一遵禮文, 而獨此葬期, 有違五月之制. 恐是先王之世, 亦有進退, 或不

50) 혼전(魂殿): 임금이나 왕비의 국상 중 장사를 마치고 종묘(宗廟)에 입향할 때까지 신위를 모시는 곳. 혼궁(魂宮)이라고도 한다.

能盡同之時. 朝廷之上, 必能參酌商量, 恐非過擧. 而臣竊仰惟, 襄奉日期, 屢次改卜, 坐失時期, 而天且隆寒, 地脈凍洛, 日在北陸, 晝晷極短, 大役難完, 大禮益延. 五月之期, 已無所及, 而七月之內, 恐或亦有不逮. 臣之過慮, 政在於此.

이때 술가(術家)[51]의 말로 인해 대행의 현궁 터를 다시 잡게 되었는데, 두 번 세 번 거듭 하느라 장례 기한을 이미 놓치고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차자를 올려 다음과 같이 논했다.

신이 외람되이 듣건대, 새로운 능 터를 다시 잡느라 장례 기일을 또 지나쳤다 합니다. 조정의 이번 조치가 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음을 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모시는 대례가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것은 진실로 작은 염려가 아니며, 또한 '점점 멀리 가며, 물러남이란 없다.'[52]는 옛날의 뜻도 아닐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국조오례의(國祖五禮儀)』[53]는 조종께서 정하신 제도로서, 상제에 관한 내용이 지극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막 임종하면 염을 하고, 염한 뒤에 빈소를 마련하여 5개월 안에 장사 지내며, 장사 지낸 뒤에 우제(虞祭)[54]를 지내고 소상(小喪)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두

---

51) 술가(術家): 음양, 복서, 점술에 정통한 사람을 말한다.

52) 점점……없다: 『예기(禮記)』「단궁(檀弓)」에 나오는 말이다. "객위에 빈소를 설치하고, 뜰에서 조례를 지내고, 묘에서 장사지내는 것은 점점 멀리 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상사는 나아감은 있어도 물러남은 없다(殯於客位, 祖於廷, 葬於墓, 所以卽遠也, 故喪事, 有進耳無退)."

53) 『국조오례의(國祖五禮儀)』: 8권 6책의 목판본이다. 오례는 국가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세종 때 『세종실록오례의』가 편찬되었으며, 세조 때 이를 보강하기 위해 『오례의주』를 편찬하게 했다. 세조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다가 성종 때인 1474년에 완성했다.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권1、2는 길례이다. 권1은 국가의 제사규정, 권2는 주현을 단위로 지방관이 시행하는 항목이 담겼다. 권3.4는 가례로 왕실관계 의례이다. 권4에는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혼례, 과거관련 의례 등을 담았다. 권5는 빈례로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이고, 권6은 군례로 군사훈련 관련 내용이다. 권7、8은 흉례이며 국장과 왕실의 상제에 관한 내용이다. 규장각、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54) 우제(虞祭): 부모(父母)의 장례(葬禮)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내는 제사로,

어야 할 시간의 길고 짧음과 뜸함과 잦음에 관해 소상히 밝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중궁전 상제 절차도 하나같이 예법을 따랐으나, 유독 이 장례 기일만은 5개월 안에 지내야 한다는 제도를 어겼습니다. 아마 선왕 대에도 장례를 앞당기거나 뒤로 물리는 일이 있어, [예법에 정해 놓은] 시일과 다 똑같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에서 잘 참작하고 상의한다면 아마도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우러러 생각건대, 장례 모시는 날짜를 여러 차례 고쳐 잡다가는 앉은 채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며, 날씨 또한 추워 땅도 얼어붙은 데다 태양이 북쪽에 위치해 있어 낮도 매우 짧은 터라, 큰 공사를 치르기 어렵고 대례는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5개월의 기한은 이미 마치기 어렵고 7개월 안에도 어쩌면 거행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사옵니다. 신이 지나치게 염려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風水之說, 臣未暇考, 未知昉於何代出於何人之手, 而大槪不出於陰陽五行生克制化之外, 不可謂全無所據. 祖宗朝至設觀象監, 竝置三學, 其意有在, 其來且古, 今不可偏廢. 然而此終是術家考數, 浩渺難明, 不可偏信, 必有朝廷有以制之, 豈可有以使之自爲歟? 國家有事, 必先遵奉祖宗定制, 參用術家之說, 而切勿使之有所專焉. 十分審定於初, 俱由啓稟, 一定之後, 不許更改, 則閑說不得而行, 事有頭緖, 及時而完, 大禮終成而無缺. 先王之世, 術家之用, 不過如是. 故雖或不無隨時通變之時, 而能合時宜, 不違義理, 終不失先王當初定制本意. 歷世仍行, 終始無弊者, 職此之由. 不然則渠家多不聞義理所在, 不識先王定制本意, 惟執自家偏見曲智. 不思原始大本頭腦, 互相指點, 甲是乙非, 左牽右掣, 有若爭長, 究竟無期, 至使國家大禮, 未免爲道傍作舍之類, 極可寒心.

풍수설에 대해서는 신이 미처 고찰해보지 못하여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음양오행이 상생상극(相生相剋)[55]하여 변화하는 설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의 총칭(總稱)이다.

근거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종조에서 관상감(觀象監)을 설치하고 나란히 삼학(三學)[56]을 둔 것은 다 뜻한 바가 있어서이고, 그 유래 또한 오래이므로 지금에 와서 모두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술가들의 술수인지라 아득히 알기 어려워서 이것만 믿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조정에서 저들을 제재해야지, 어찌 저들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에 일이 있으면 먼저 조종께서 정해 놓은 제도를 따르고 술가들의 말을 참조해야지, 절대로 저들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신중히 헤아려 정한 뒤에 그 사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고, 한 번 정한 뒤에 다시 고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쓸데없는 말들이 그치고 일에 두서가 생겨 제때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니, 이에 대례는 완전무결하게 잘 마무리 될 것입니다. 선왕 대에 술가를 쓴 것 역시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 간혹 때에 따라 변통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시의에 부합하고 의리를 위배하지 않았기에 끝내 선왕께서 당초에 정하신 제도의 본뜻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대토록 이어 시행해 왔어도 끝까지 폐해가 없었던 것은 단지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 술가들은 대부분 무엇이 의리인지도 묻지 않고, 선왕께서 정한 제도의 본의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편견만 고집할 것입니다. 원래의 큰 근본과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서,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갑이 옳으니 을이 그르니 할 것입니다. 마치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듯 한도 끝도 없이 왼쪽으로 끌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하다가, 끝내는 나라의 대례(大禮)로 하여금 길가에 집을 짓는 꼴을 면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

55) 상생상극(相生相剋): 전국시대 추연(鄒衍)이 제창한 오행설(五行說)은 뒤에 음양오행설로 발전하여 상성(相成),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세 순서에 기초하게 되었다. 상성은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순서이며, 상생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순서이며, 상극은 목토수화금(木土水火金)의 순서이다.

56) 삼학(三學): 관상감(觀象監)의 천문학, 지리학, 음양명과학(陰陽命課學)을 말한다.

夫山川瀜結渾元, 則有國用合當之地, 累經奉審, 初無未盡之意. 若曰: '此有些咎, 彼且未純, 概皆不用.' 則此全不知造化之理. 天地運化, 初無一向十全之理. 四序晝夜, 歷歷可指. 必曰: '十全然後方可入用.'云爾, 則天地且不成, 造化寧有是理哉? 夫山陵是梓宮萬世奉安之地, 體面極重. 臣子之所當盡心者, 實在於比. 苟有人言, 則不能無動, 不敢一向據理爲辭, 情勢之所必至. 此亦終是十分愼重之義. 然亦坐此遷延, 使國家大禮, 終有所未盡者焉, 則亦甚未安.

대저 산천에 혼후한 원기가 스며들어 응축되어 있다고 하니, 국장에 적합한 곳이 있다면 여러 차례 받들어 살핌에 전혀 미진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술가들이 만약 '이 곳은 약간의 흠이 있고 저 곳은 순수하지 못하여 모두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조화의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지 운행의 조화라는 것이 한결같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계절과 주야(晝夜)만 보아도 일일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완벽해진 뒤에야 비로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지 또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터, 이런 이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대저 산릉(山陵)이란 재궁(梓宮)[57]을 만세토록 봉안하는 곳으로, 체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하 된 자가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면 동요됨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지라, 감히 오로지 이치에만 근거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으로 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할뿐더러, 또한 끝까지 십분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일을 지체하여 국가 대례에 끝내 미진함을 남긴다면 또한 심히 편치 못할 것입니다.

伏請今後, 國有大禮, 必須自朝廷有以主之, 尊奉祖宗定制, 參考已行之例. 至如山陵奉審等事, 一依前式, 參酌時宜, 通變合義. 竝採本監精通本業有心鑑俱眼者之言, 十分審定於初. 俱由入啓稟定後. 除伏泉絶地判然不可用者外, 不許渠家諸輩輒肆己見, 妄有所動, 以誤大禮, 則

57) 재궁(梓宮): 왕의 관을 재궁이라 한다.

國家幸甚. 臣仍竊伏念, 苟有所懷, 則不敢隱諱, 此實臣子之至情. 而臣年近大秩, 病且危篤, 當此擧國哀疾之日, 不得躬進闕門之外, 千里憑傳. 語或失實, 輕陳孤陋, 跡涉謬妄. 煩瀆宸嚴, 冒昧至此, 無任惶悚隕越之至. 取進止.
萬曆二十八年十一月日.

삼가 청하건대, 오늘 이후로 나라에 대례가 있으면 반드시 조정에서 이를 주관하여 조종께서 정하신 제도를 따르되, 이미 시행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산릉을 받들어 살피는 일 등은 일괄 예전의 법식을 따르되 시의를 참작하고 변통하여 의리에 합치되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관상감에서 본업에 정통하며 마음이 밝고 안목을 갖춘 자의 말을 채택한 다음, 처음에 신중히 결정하고 나중에 사유를 갖추어 아뢰도록 하십시오. 지하에 물이 흐르거나 지맥이 끊기어 확연히 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들이 제멋대로 자기 견해를 제시하며 경거망동함으로써 대례를 그르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나라에 있어 크나큰 다행이겠나이다. 신이 엎드려 생각건대 진실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서 감히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실로 신하의 지극한 마음입니다. 신은 나이도 많고[58] 병 또한 위독하여 이처럼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는 날에 직접 궐문 밖에 찾아가지 못하고, 천리 밖 소문에 의거하다 보니 간혹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함부로 고루한 견해를 진술하다 보니 그릇되고 망령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성총을 어지럽히는 무례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기에, 황송하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때는 만력 28년 11월 아무 날이었다.

此箚草封送. 至高西川, 以爲ㅡ 一行缺 ㅡ厥後, 以身病不得上歸, 又封

58) 나이도 많고: 질(秩)은 고대에 나이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51세부터 60세까지는 육질(六秩), 61세부터 70세까지는 칠질(七秩)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주로 마지막 해, 즉 60세를 육질, 70세를 칠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기서 '대질'은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용어인 셈이다.

箚自劾待罪, 其辭以爲: “伏以殯殿在內, 尙未發引, 大小奔走, 擧國靡遑, 以臣子罔極之情, 固不可一日退在于外. 而臣滯伏嶺鄉, 身病危篤, 不得起身就冒於內庭之哭. 及聞發引前定日期, 且嘗力疾起程, 中路病劇, 亦未得達. 繼聞因山改卜, 發引且退, 佇看病勢稍間, 及時上歸, 叨從宰樞之後, 會哭於國門之外. 此實臣之計料, 而臣罪戾猶深, 所患氣瘧, 入冬轉劇, 常夜而痛, 形柴骨立, 元氣大敗, 四體莫收. 臣之症勢, 比前益甚, 奉算日勢, 亦無逮及.

이 차자의 초본을 봉하여 올리고, 고서천(高西川)에 이르러 생각하기를, [ㅡ한 줄이 결락되어 있음ㅡ] 그 후 신병으로 인해 상경하지 못하고 다시금 차자를 봉해 올리며 스스로를 탄핵하고 대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빈전(殯殿)[59]이 아직 안에 있으며 발인하지 않았기에 대소 신료들이 분주하고 온 나라가 경황이 없으니, 신하의 망극한 심정으로 실로 하루도 밖에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영남 고을에 엎드려 체류하며 신병이 위독한 탓에 몸을 일으켜 내정(內庭)의 곡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발인 전에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이 병을 무릅쓰고 길에 올랐으나, 중도에 병이 위독해져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인산(因山)[60]을 다시 정하느라 발인이 또 미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세가 조금 낫기를 기다려 제 때에 올라가서 외람되이 재상들의 뒤를 따라 국문 밖에 모여 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실로 신의 요량이었으나, 신은 죄가 커서 앓아오던 학질이 겨울 들어 더욱 심해지는 바람에, 밤이면 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에는 뼈만 앙상하고 원기가 크게 손상되어 사지를 가눌 수 없습니다. 신의 증세는 이전보다 더 심해져, 날을 헤아려 보아도 제

59) 빈전(殯殿): 예전에, 상여가 나갈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을 모시던 곳을 말한다.
60) 인산(因山): 조선 시대 태상왕과 그 비, 왕과 왕비, 왕세자와 그 빈, 왕세손과 그 빈의 장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때 도달할 길이 없을 듯 했습니다.

竊伏惟念, 臣亦忝在宰樞之末, 旣不得奔哭於初喪之日, 又不得會哭, 於發引之時, 大乖臣子至情, 事涉無狀, 萬死有罪. 重念臣以至愚極陋, 遭逢聖明, 謬蒙寵眷, 已至四十餘年. 今且位至崇班, 老將死矣, 受國厚恩, 不啻如父母天地. 而亂生九載, 顧無獻一方略, 梟一賊首. 今臨內聖大喪, 終始在外, 臣之罪戾, 至此極矣. 伏望特賜嚴誅, 以警人臣負國無狀之罪. 臣謹席蒿以待.

詮次善啓云云.
萬曆二十八年十二月初六日.

삼가 생각건대, 신 또한 외람되이 재상의 말석에 있으면서 초상이 있던 날에도 달려가 곡하지 못하고, 발인할 때에도 모여 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하의 지극한 심정에서 크게 어기고 무례를 범하였으니, 만 번 죽어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생각건대, 지극히 어리석고 고루한 신이 성명하신 임금을 만나 외람되이 총애를 입은 지 이미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높은 지위에 올라 늙어 죽게 되었으니, 나라로부터 받은 두터운 은혜는 천지 부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일어난 지 9년이 되도록 계책 하나 올리지 못하고, 적의 목 하나 베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내성(內聖)[61]의 상이 났는데도 시종일관 도성 밖에 있으니, 신의 죄는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준엄한 벌을 내리시어 신하가 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무례한 죄에 대해 경계를 드리우소서. 신은 삼가 거적을 깔고 처벌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례대로 아뢰었다.
때는 만력 28년 12월 초6일이었다.

---

61) 내성(內聖): 승하한 의인왕후(懿仁王后)를 가리키는 말이다.

萬曆二十八年十二月十九日, 同副承旨尹成貼書狀內: "知卿患病, 不得會哭於發引之時, 以此待罪. 因病不得上來, 事勢使然, 卿其勿待罪事:" 有旨. 萬曆二十九年正月初三日, 琢在醴泉家祗受.
萬曆庚子十二月十二日傳曰:
"鄭琢以大臣退老於外方, 歲時遣人存問, 食物題給事."
監司處下諭. 同年同月二十八日, 監司關來到醴泉. 本郡郡守以米三石, 太二石來遺. 二十九日郡守委來存問. 厥後寧海興海淸河盈德等官, 以其本官所產魚物各種, 相次輸給.

만력 28년 12월 19일에 동부승지 윤(尹) 아무개가 성첩한 서장 안에 "경이 병환으로 인해 발인 때에 모여 통곡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대죄하고자 하는 뜻은 잘 알았다. 병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것은 사정상 그리한 것이니, 경은 대죄하지 말라."는 성지가 있었다. 만력 29년 정월 초사흘에 나는 예천의 집에서 공경히 이를 받았다.
만력 경자년 12월 12일에 다음과 같은 전교가 내려왔다.
"정탁은 대신으로서 노쇠하여 밖에 물러나 거하고 있으니, 세시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고 음식물을 제공하라."
감사처에 하유(下諭)하였다. 같은 해 같은 달 28일에 감사가 관문(關文)[62]을 가지고 예천에 당도했다. 본군의 군수가 쌀 석 섬과 콩 두 섬을 보내왔다. 29일에 군수가 직접 와서 안부를 물었다. 그 후 영해와 흥해 , 청하와 영덕 등지의 관리들이 관할 지역 내에서 나는 각종 어물을 차례대로 보내주었다.

琢謹封箋陳謝以聞, 其辭以爲: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鄭琢, 恭遇萬曆二十八年十二月十二

62) 관문(關文):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를 말하며,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동격 이하의 관아 사이, 즉 동등한 관부 상호간과 상급관아에서 그 하급관아에 보내는 문서양식이다.

日, 自上特降聖旨, 使之遣人存問, 食物題給于臣. 本道監司金信元, 以同月除夜前一日, 遣郡守李春英, 存問臣家, 諭臣以聖旨內辭, 以本官所儲大米三石, 黃豆二石, 輸給于臣, 海甸便近所輸大口魚幷三十尾, 靑魚四十束, 文魚四尾. 繼之, 臣在醴泉家. 准數祗受. 臣方在老病垂死之中, 聖恩如天, 無以報效, 感泪徒零. 謹奉箋陳謝者, 臣琢誠惶誠恐, 稽首稽首上言.

나는 삼가 전문(箋文)을 봉해 올려 감사의 뜻을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신 정탁(鄭琢)은 삼가 만력 28년 12월 21일에 주상께서 특별히 성지를 내리시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게 하고, 신에게 음식물을 내리게 해 주시는 성은을 입었습니다.
아울러 본도 감사 김신원(金信元)[63]이 같은 달 그믐 전날에 군수 이춘영(李春英)을 신의 집으로 보내어, 신의 안부를 묻고 신에게 성지(聖旨)의 내용을 전달하며, 본 고을 관아에 저장된 쌀 석 섬과 황두 두 섬을 신에게 보내왔고,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 운송된 대구 말린 것 30마리, 청어 40꿰미, 문어 4마리가 이어서 전달되어, 신이 예천의 집에서 수효대로 공경히 받았습니다. 신은 늙고 병들어 죽을 지경에 있기에, 하늘같은 성은을 보답할 길이 없어 한갓 감격의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삼가 전문을 받들어 감사의 뜻을 올리자니, 신은 진실로 황공하고 황공하여 머리 조아려 글을 올립니다.

---

63) 김신원(金信元: 1553~1614): 후에 김이원(金履元)으로 개명했다. 자는 수백(守伯), 호는 소암(素菴)이다. 1593년 의주목사로 나간 해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으나, 의주만은 명나라 곡식을 들여온 까닭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수 있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형조참판에서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선임자 유희서(柳熙緖)가 명나라 군사에게 모욕을 받고 사임한 까닭에 모두 걱정하였으나 명나라 병사들을 잘 다루어 도내 행정을 바로잡았다.

伏以微臣病滯南鄉, 自遂桑榆之煖. 聖主綸降北闕, 重沾雨露之新, 寵榮罔涯, 報效無地. 顧惟歲時存問之異典, 實係朝家優老之殊恩. 然必待年德之俱尊, 豈但爲犬馬之有齒, 是何癃廢, 敢爾承當? 伏念臣曾無承問弼建之才, 寧有濟艱傾否之德. 八年當亂, 未試千慮之愚, 一息猶存, 徒切萬死之志. 縱復驅馳於輿軫, 豈有裨補於涓埃? 適逸匪時, 合被罔赦之譴, 垂恩不世, 反承踰分之榮, 旣叨方伯之奉宣, 又勤邑宰之臨問. 甫田所收, 應分正供之用, 海甸庶品, 出自封進之餘. 玆蓋伏遇正綸立極盛德洪烈主上殿下, 體仁如天, 推惠及物. 謂臣雖無一善之可紀, 念臣嘗冒百揆之後班, 遂以罕古之龍光, 謬及無狀之庸陋, 瞻天罔極, 揆分何堪? 臣敢不砥礪丹忱, 激昂素節? 生未塡海, 不替祖宗之一心, 死雖首丘, 敢忘壽富之三祝? 臣無任望天仰聖激切幷營之至. 謹奉箋陳謝以聞.

萬曆二十九年正月二十五日.

미천한 신이 병으로 남쪽 고을에 머무르며 노년의 온기를 누리고 있는데, 성스런 주상께서 대궐에서 윤음을 내리시어 거듭 우로(雨露)의 새로운 은택에 젖게 하시니, 그지없는 광영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세시마다 안부를 묻는 영전은 실로 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이와 덕을 모두 갖춘 높은 사람에게만 내려야지, 어찌 다만 천한 자에게 나이만 많다 하여 내릴 수 있겠으며, 이처럼 늙고 병든 사람이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신에게는 하문을 제대로 받들거나 임금의 잘못이 있을 때 보필하는[64] 재주도 없는데, 어찌 어려움을 구제하는 덕이 있겠습니까? 8년간의 전란을 당해서도 많은 생각 끝의 어리석은 소견 하나도 내지 못한 채 한낱 한 가닥 숨이 붙어 있으니, 그저 만 번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만 간절해질 뿐입니다. 비록 다시

64) 임금의……보필하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시신(侍臣)의 지위를 말한다. 『상서』「익직(益稷)」에 "내가 잘못하거든 그대가 바로잡아 나를 도우라(予違汝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줄인 것이다.

수레를 분주히 따라다닌들, 어찌 티끌만큼의 보탬이나 되겠습니까? 때가 아닌 때에 빠져 나왔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견책을 당해 마땅하거늘, 세상에 없는 은혜가 내리어 도리어 분에 넘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외람되이 방백(方伯)께서 선포해주신 어명을 받들고 나서 다시 수고롭게도 읍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ㅡ한 구절이 빠져있음ㅡ] 큰 밭에서 거둔 곡물은 응당 정공(正供)의 용도에서 나누었을 것이고, 바닷가의 해산물은 진상하고 난 나머지에서 나왔을 것이니, 이는 대개가 삼가 정륜입극성덕홍렬(正倫立極盛德弘烈)[65] 주상 전하께서 인(仁)을 본받음이 하늘과 같아서 은혜가 사물에 미친 것입니다. 신은 비록 한 가지 선(善)도 기억할 만한 것이 없으나, 신이 일찍이 정승의 반열에 오른 것을 염두에 두시어 좀처럼 보기 드문 영광이 외람되이 보잘것없는 노둔한 사람에게 미치었으니, 하늘을 우러름에 망극하옵고 분수를 헤아리건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일편단심으로 힘쓰고 고무하여 평소의 지조를 격앙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바다를 다 메우지 못하여도[66] 조종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은 쇠하지 않을 것이며, 죽어서 비록 고향에 돌아가도 감히 부(富)와 수(壽)의 삼축(三祝)[67]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하늘을 우러르고 성상을 앙모하며,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길 길이 없나이다. 삼가 전문을 받들어 아뢰옵니다.

---

65) 정륜입극성덕홍렬(正倫立極盛德弘烈): 선조(宣祖)의 존호이다.

66) 살아서……못하여도: 약우전해(弱羽塡海) 혹은 정위전해(精衛塡海) 고사를 인용하였다. 염제(炎帝)의 딸이 동해로 미역을 감으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는데, 그녀의 영혼이 정위(精衛)라는 작은 새로 환생하였다. 정위는 자기 생명을 빼앗은 동해에 보복하고자 매일 작은 돌과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동해의 파도에 떨어뜨려 이것을 다 메우려고 했다. 이것이 정위전해 고사인데, 일반적으로는 무모한 일을 꾀하여 헛일로 끝나는 비유로 삼고 있으나, 또 다른 견해로 일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이 세운 뜻밖에 굳건히 매진하다가 죽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한다.

67) 삼축(三祝): 요 임금이 화(華) 지역을 시찰할 때, 그곳을 지키던 사람이 장수(長壽)와 부(富), 그리고 다남(多男)으로 요 임금을 기원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만력 29년 정월 25일.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鄭琢謹上箋.

附

本道監司金信元, 以上年除夜前一日, 遣郡守李春英, 存問臣家, 諭臣以恩旨, 仍輸給本官所儲大米三石, 黃豆二石, 繼之以海甸便近所輸大口魚幷三十尾, 靑魚四十束, 文魚四尾, 臣在醴泉家, 一一祇受. 仍竊仰惟歲時存問一節, 係是朝家優老盛典. 必須齒德俱全, 方可承當, 而亦及於無狀之臣. 臣今方在老病垂死之中, 聖恩如天, 報效無地, 只自兢惶感泣云云.

萬曆二十九年正月二十日, 已奉謝箋, 此箚不用.

대광보국숭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신 정탁이 삼가 전문을 올리나이다.

부록

본도의 감사 김신원이 작년 섣달 그믐 하루 전날에 군수 이춘영을 신의 집으로 보내 신의 안부를 묻고, 은혜로운 성지의 내용을 전달하며, 본 고을 관아에 저장된 쌀 석 섬과 황두 두 섬을 신에게 보내왔고, 이어서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 운송된 대구 말린 것 세른 마리, 청어 마흔 꿰미, 문어 네 마리가 이어서 전달되어, 신이 예천의 집에서 일일이 공경히 받았습니다. 외람되이 생각건대, 세시마다 안부를 묻는 영전은 실로 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이와 덕을 모두 갖춘 높은 사람에게만 내려야 하거늘,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신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지금 신은 늙고 병들어 죽음에 가까워져가고 있사온지라, 하늘같은 은혜 갚을 길이 없사와 그저 전전긍긍하며 황공하여 감읍할 따름입니다.

만력 29년 정월 20일에 이미 감사를 표하는 전문을 올렸기에, 이 차자는 올리지 않았다.

# 萬卷樓選 四

# 만권루선 4

歲時紀事.

元旦値甲, 米賤人疫. 値乙, 米麥貴, 人多疫. 値丙, 四十日旱, 値丁, 綠綿六十日貴. 値戊, 粟麥魚鹽貴, 又旱. 値己, 米貴蠶凶, 多風雨. 値庚, 金鐵貴, 禾熟人病. 値辛, 麻貴麥貴, 禾大收. 値壬, 米麥賤, 絹布大豆貴. 値癸, 禾災人疫多役.

세시기사

정월 1월 1일이 갑일에 해당하면 쌀값이 떨어지고 역병이 돈다. 을일에 해당하면 쌀과 보리 값이 비싸지고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린다. 병일에 해당하면 40일 동안 가물고, 정일에 해당하면 녹색명주가 60일 동안 비싸진다. 무일에 해당하면 조와 보리, 생선과 소금 값이 비싸지고 날이 가문다. 기일에 해당하면 쌀값이 비싸지고 누에농사를 망치며 자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경일에 해당하면 쇠붙이 값이 오르고, 벼는 익어도 사람들은 병든다. 신일에 해당하면 마와 보리 값이 오르고 벼를 많이 거두어들인다. 임일에 해당하면 쌀과 보리 값이 떨어지고, 피륙과 대두 값이 오른다. 계일에 해당하면 벼농사를 망치고 사람들은 역병에 걸리며 부역이 많아진다.

每月朔日預占天時氣色

凡占氣者, 似雲不雲, 似霧不霧曰氣, 乃爲雲氣之餘煙, 觀天之氣者如許, 相人之氣色, 卽知吉凶. 止此數端, 後人滋蔓多而言之非也. 氣如高樓大殿龍鳳之狀, 主明郡治世, 天下寧謐. 氣如華蓋旌旗圍列, 宰相明

臣之氣也. 氣如熊如虎如獅如豹, 乃將軍之氣也, 主國大捷而大克. 白氣一道攔天, 主孝, 黃道一氣攔天, 七日內洪恩大赦, 君臣慶會. 靑氣一道揀天, 月內少順, 靑鱗甲聚而不散, 年內主盜賊. 靑氣圓大個個排列, 來日午時暴雨. 紫氣瑣琴, 年內人民飢餓, 旱拔生. 赤氣紅而有焰, 三日內主火. 赤氣片片亂生, 午風酉火, 必然凶也.

매월 음력 초하루에 날씨를 점치다.

무릇 기(氣)를 점친다는 것은 구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을 기라고 하니, 기는 운기가 남긴 연기인 셈이며, 하늘의 기가 어떤 가를 보는 것은 사람의 기색을 보면 길흉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지 이 몇 가지 단서뿐인데, 후세 사람들이 이를 불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운기가 높은 누대나 커다란 전각, 용이나 봉황의 형상이면 마을이 잘 다스려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져 천하가 평안해진다. 운기가 깃발과 일산(日傘)이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면 재상과 뛰어난 신하가 나올 조짐이다. 운기가 곰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표범 같으면 이는 장군의 기로, 나라가 대승을 올리고 크게 이긴다. 백기(白氣) 한 줄기가 하늘을 가로 지르면 효자가 나오고, 황기(黃氣) 한 줄기가 하늘을 가리면 7일 이내에 홍복이 내려져 대사면이 이루어지고 군신이 축하연을 연다. 청기(靑氣) 한 줄기가 하늘을 막으면 한 달 안에 일이 조금씩 순조로워지고, 푸른 물고기와 조개가 모여 흩어지지 않으면 연내에 도적이 움직인다. 둥글고 큰 청기(靑氣)가 하나씩 나열되어 있으면 이튿날 오시에 폭우가 내린다. 자기(紫氣)가 부서지면 연내에 사람이 굶주리고 큰 가뭄이 든다. 적기(赤氣)가 붉으면서도 화염을 띄고 있으면 사흘 안에 불이 난다. 적기가 한 조각씩 어지러이 흩어져 있으면 오시(午時)에 바람이 불고 유시(酉時)에 불이 날 것이니 영락없는 흉조이다.

預占八節雲氣

元旦日，四方有黃雲氣，五穀大熟．有青氣雜黃，主蝗，赤色主旱，黑氣大水．
春分日，東方青雲麥熟．無雲萬物不實人疫．其日淸明，萬物不成．
立夏日，巳時東南方有青氣年豐，如青氣不現，歲多災．
夏至日，午時南方有赤氣，宜百谷，無雲氣日月不光，百谷不成，人災．
立秋日，申時西北方有雲氣，宜粟，如無萬物不成．地震牛羊死，在來年正月見．
秋分日，日入西方，有白雲如羊，宜稻年豐．不至多霜，人多疾，在來年二月見．
立冬日，西北方有白雲，宜麻．如不至大寒，傷物人疫，在來年四月．
冬至日，北方有青雲，來歲吉，無雲凶．赤氣旱，黑氣水，白雲起疾，黃雲兵火．

여덟 절기의 운기(雲氣)를 점치다.

원단(元旦) 때 사방에 황운기(黃雲氣)가 있으면 농사가 잘 된다. 청기(青氣) 속에 황기가 섞여 있으면 메뚜기 떼가 일고, 적색이면 가뭄이 들고, 흑기(黑氣)가 있으면 큰물이 진다.
춘분에 동쪽 방향에 청운이 보이면 보리가 익는다.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열리지 않고 사람들은 역병을 앓는다. 춘분일에 날씨가 맑고 좋으면 만물이 안 된다.
입하 때 사시(巳時)에 동남쪽 방향으로 청기(青氣)가 보이면 풍년이 들고, 청기가 안 나타나면 그 해에 재해가 많다.
하지 때 오시(午時)에 남쪽 방향에 적기(赤氣)가 보이면 모든 농사에 풍년이 들고, 구름이 없는데도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백곡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난다.
입추에 신시(申時)에 서북쪽 방향에 운기가 있으면 조 농사가 잘 되고, 운기가 없으면 만물이 안 된다. 지진으로 소와 양이 죽는데, 이

듬해 정월에 볼 수 있다.
추분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구름이 양 모양이면 벼농사가 잘되어 풍년이 든다. 추분 때까지 큰 서리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리는데 이듬해 2월에 볼 수 있다.
입동에 서북쪽 방향에 백운(白雲)이 끼면 삼베농사가 잘 된다. 입동 때까지 큰 추위가 없으면 만물이 다치고 역병이 도는데, 그 때가 이듬 해 4월이다.
동지 때 북쪽 방향에 청운(靑雲)이 보이면 이듬해 길하고 구름이 없으면 흉하다. 적기가 보이면 가뭄이 들고, 흑기가 보이면 물이 지고, 백운이 보이면 질병이 돌고 황운이 보이면 전쟁이 난다.

預占雲霞彩色

俗諺云, 朝霞暮霞, 無水烹茶. 暮霞若有火焰形而朝紅者, 主晴, 必主旱之兆. 朝霞雨後乍有定無疑, 或是晴天. 隔夜雖無, 今朝忽有, 要看顏色斷之. 朝紅主晴, 谷有褐色主雨. 詩云: "朝霞晴作雨". 霞如鋪錦, 國中命相. 霞運靑而不明, 主年內水. 霞如桴樣, 其方凶. 霞大而不明, 其地人民災. 霞如長虹, 人民安康. 短而無彩, 三日內主火. 霞如牛臥, 來日辰時必主大風. 霞如日滿, 來日午時大雨. 霞如蛇形, 民主飢饉. 霞如猛虎, 月內有盜賊. 霞忽然不現, 而賊自消. 霞明彩邊有黑氣, 愼防時下賊盜. 霞五色明彩, 月內主天恩詔赦. 霞五彩不明, 小人有犯. 五色不全者, 月內其地生貴女. 霞方寸斷絶光艶者, 年內其地亦生貴女. 霞連接不斷如匹錦, 年內其地生貴子. 霞五彩明如虎豹, 年內出大武臣. 霞明光四方不開, 年內出忠臣孝子. 霞五彩明圓如輪車, 年內出明臣賢子. 霞早晩明彩, 延聚而延散者, 安享昇平之兆.

노을빛을 점치다

속담에 아침에 노을이 지고 저녁에도 노을이 지면 차 한 잔 달일 물도 못 얻는다는 말이 있다. 저녁노을이 화염의 모양에 아침 햇무리의

모습을 띠면 날씨가 맑고 틀림없이 가뭄이 들 징조이다. 아침노을이 비온 뒤에 잠깐 가라앉으면 의심할 바 없이 날이 갠다. 밤 동안 없다가 아침에 갑자기 노을이 지면 노을의 색깔을 보아 판단해야 한다. 아침 햇무리의 색이면 날씨가 맑고, 계곡에 갈색 노을이 지면 비가 온다. "아침놀 맑으면 비가 내리네."[1]라는 시구가 있다. 노을이 펼쳐놓은 비단 같으면 나라에서 새로운 재상이 임명된다. 노을에 푸른 기가 돌면서 밝지 않으면 연내에 물이 진다. 노을이 북채 모양이면 북채가 가리키는 지역에 흉년이 든다. 노을이 크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다. 노을이 무지개 모양이면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다. 노을이 짧고 색깔이 없으면 3일 내에 불이 난다. 노을이 누워 있는 소 모양이면 다음날 진시(辰時)에 틀림없이 큰 바람이 분다. 노을이 둥근 해 모양이면 다음날 오시에 큰 비가 내린다. 노을이 뱀 모양이면 백성들이 굶주린다. 노을이 사나운 호랑이 모양이면 한 달 내에 도적이 일어난다. 노을이 갑자기 안 보이면 도적이 저절로 사라진다. 노을이 밝고 운채 주위로 흑기(黑氣)가 있으면 지금 활개 치는 도적을 신중히 막아야 한다. 노을이 오색찬란하게 빛나면 한 달 안에 천자의 은혜로 대사면이 이루어진다. 노을의 다채로운 색깔이 뚜렷하지 않으면 소인이 범죄를 저지른다. 오색이 완전하지 않는 경우 한 달 안에 그 땅에서 귀한 여자가 태어난다. 네모난 노을이 사방으로 짧게 끊긴 채 광염을 내뿜으면 연내에 그 땅에서도 귀한 여자가 태어난다. 노을이 비단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면 연내에 그 땅에서 귀한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노을이 호표처럼 환하게 빛나면 연내에 훌륭한 무신이 태어난다. 노을의 밝은 광채가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연내에 충신이나 효자가 태어난다. 오색찬란한 노을이 수레바퀴처럼 둥글면 연내에 훌륭한 신하나 현명한 자식이 태어난다. 노을이 아침저녁으로 밝게 빛나면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면 태평성세를 누릴 징조이다.

---

1) 아침놀……내리네: 당나라 이가우(李嘉祐)의 「한여름에 강음 관사에서 배명부에게 부치다(仲夏江陰官舍寄裴明府)」에 나오는 시구이다.

四季占風

諺云: 行得春風必有夏雨春雨, 夏北風必雨, 冬天南風, 三日雪.

사계의 바람을 점치다

속담에 "봄바람이 불면 반드시 여름비, 봄비가 내린다."[2]는 말이 있다. 여름에 북풍이 불면 반드시 비가 내리고, 겨울에 남풍이 불면 사흘 동안 눈이 내린다.

『素問』「候氣」

按『素問』曰: "常以冬至日, 太乙立於叶蟄之宮, 其至也天必應之以風雨. 其日南來者, 爲虛風邪傷人者也. 其夜至者, 民皆臥而不犯也. 故其歲民少病. 晝至者萬民感而解墮, 皆中於虛風故民多病. 以其虛邪入容於肯, 而發於外故有疾焉.

立春之日, 風從西方來, 萬民皆中於虛風. 此兩邪相搏, 雜氣結代者也. 故諸逢其風而遇其雨者, 命曰歲露. 而因歲之和而少風, 夏至日, 風東來, 八月人多病. 南來名順風, 大熟. 西來秋大雨, 北來山水出.

立秋日, 風東來, 人疫, 草木更榮, 南來秋旱凶, 西來有雨, 北來冬雪大吉.

秋分日, 風東來萬物不實谷貴, 南來凶, 西來人民安, 歲豐稔, 北來冬酷寒.

立冬日, 風東來冬凶, 南來次年五月大疫, 西來凶, 北來冬雪寒, 死走獸.

冬至日, 風東來人疫, 南來谷熟, 西來民少病而少死. 歲多賊風邪氣寒溫, 則民多病而多死也.

---

2) 봄바람이……내린다.: 원문은 '하득춘풍(何得春風)'이지만, 중국 무석(無錫) 지방에서 전해오는 속담은 "행득춘풍유하우(行得春風有夏雨)"이다. 따라서 고쳐 번역한다.

소문(素問)』 후기(候氣)[3]

살펴보건대 『소문』에 다음 말이 있다.

“동짓날이면 태을성(太乙星)은 늘 협칩궁(叶蟄宮)에 서는데, 이때가 되면 하늘은 반드시 비와 바람으로 응답한다. 동지 때[4]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허풍(虛風)으로, 허풍의 사기가 사람을 상하게 한다. 허풍이 밤에 불면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그 해는 백성이 병을 적게 앓는다. 그러나 낮에 바람이[즉 허풍이] 불면 백성들이 그 바람에 사지가 축 처져 모두 허풍에 들려 백성들이 병을 많이 앓게 된다. 허풍의 사기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살에 스며들었다 겉으로 터지는 까닭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입춘 때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 만백성은 모두 허풍에 들린다. 이것은 허풍의 사기와 입춘 때의 사기가 [몸에서] 서로 싸우게 되어 기가 뒤섞여 허풍의 사기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바람이 불고 비까지 불어 닥치는 것을 일러 세로(歲露)[5]를 만났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해가 따뜻하면 아픈 사람이 적고, 하지 때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8월에 사람들이 병을 많이 앓는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순풍(順風)이라 하는데 대풍이 든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산에 물이 진다.
입추 때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역병이 돌고 초목이 무성해지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가을에 가물고 흉년이 지며, 서쪽에서 바

---

3) 후기(候氣): 『소문(素問)』의 「이합진사론(離合眞邪論)」에서 나오는 말로 절기의 변화를 점치는 것을 말한다.
4) 동지 때: 원문은 ‘기일동월(其日同月)’이라 되어 있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월(同月)’ 두 글자가 잘못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어 이 두 글자를 뺀다.
5) 세로(歲露): 원래는 ‘기기로(起氣露)’라 되어 있으나, 『황제내경(黃帝內經)』「영추(靈樞)」의 「구궁팔풍(九宮八風)」에 따라 고쳐 번역한다.

람이 불어오면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에 눈이 내리고 매우 길하다.
추분 때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만물이 잘 안되어 곡식 값이 비싸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흉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풍년이 들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에 몹시 춥다.
입동 때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겨울에 흉년이 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듬해 5월에 큰 역병이 돌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흉하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에 눈이 내리고 추우며, 짐승이 죽어나간다.
동지 때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사람이 역병에 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곡식이 잘 여물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백성들이 병을 적게 앓고 적게 죽는다. 그 해에 적풍(賊風)[6]이 불고 사기(風邪)가 많으며, 추위와 더위가 조화롭지 못하면 백성들이 병을 많이 앓고 많이 죽는다.

八節風候

元旦日, 風東來, 夏穀賤, 南來, 夏穀賤主旱. 西來, 春夏米貴, 豆熟, 北來, 水災.
春分日, 風東麥賤年豐. 南來, 五月先水後旱. 西來麥貴, 北來米貴一倍.
立夏日, 風東來雷電多, 南來年豐賤安. 西來蝗虫人不安, 北來泉湧地動.

여덟 절기의 기후

원단에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여름에 곡식 값이 떨어지고, 남쪽에서

6) 적풍(賊風): 사계절의 비정상적인 기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허(虛)한 틈을 타고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람이 불면 여름에 곡식 값이 떨어지고 가뭄이 든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봄여름에 곡식 값이 비싸지고 대두가 익으며,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수재가 난다.
춘분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보리 값이 떨어지고 풍년이 든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5월에 먼저 물난리가 나고 후에 가뭄이 든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보리 값이 비싸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쌀값이 배로 비싸진다.
입하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우레가 많이 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해 풍년이 들어 쌀값이 싸고 안정된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누리 떼로 인해 사람들이 편치 않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샘이 터지고 지진이 난다.

天時瑣占

占日
日若生暈者主有雨. 日抱耳, 不晴, 南耳晴, 北耳雨, [日生雙耳], 斷風絶雨. 鳥雲接日, 次日有雨.

천시를 점치다

해 점
해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 해가 귀를 안고 있으면 날씨가 화창하지 않고, 남쪽에 귀가 생기면 날이 개며, 북쪽에 귀가 생기면 비가 내린다. [해에 쌍 귀가 생겨나면][7] 바람도 끊기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 새 모양의 구름이 해와 맞닿아 있으면 이튿날 비가 내린다.

占月
月生暈主風, 更看何方缺, 風從缺方來. 月如仰瓦, 不求自下.

---

7) 해에……생겨나면: 원문은 "일생쌍이(日生雙耳)"로, 원말 명초 누원례(婁元禮)의 『전가오행(田家五行)』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했다.

달 점

달무리가 지면 바람이 불고, 다시 봤을 때 어느 한 쪽이 이지러져 있으면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온다. 달이 암키와[8]처럼 생기면 빌지 않아도 절로 비가 내린다.[9]

占星

星光烱爍不定, 次日主風. 夏夜星密, 主大熱, 明星照爛地, 次日雨不住.

별 점

별빛이 불안정하게 깜빡거리면 이튿날 바람이 분다. 여름밤에 별이 빽빽하게 떠 있으면 아주 덥고, 별빛이 땅에 찬란하게 비치면 이튿날 계속 비가 내린다.

論風. 日麗風和, 明月愈多. 風夜半起者必狂. 日內息者不和. 又曰, 東風急備蓑笠. 冬天南風三日主霜, 秋天西風主雨. 夏南風主晴, 夏天不風, 不雨熟多. 凡風單日起單日止, 雙日起雙日止.

바람을 논함. 햇살이 밝으면 바람이 온화하고, 달이 밝으면 바람이 더욱 많다. 바람이 한밤중에 일어나면 반드시 광풍이 분다. 하루 안에 멎는 바람은 온화하지 않다. 또 말하기를, 동풍이 급하게 불면 도롱이와 삿갓을 준비해야 한다. 겨울에 남풍이 사흘 동안 불면 서리가 내리고, 가을에 서풍이 불면 비가 내린다. 여름에 남풍이 불면 날씨가 화창하고, 여름에 바람이 안 불면 비가 안 내리고 무지하게 덥다. 무릇 홀수 날에 바람이 불면 홀수 날에 바람이 그치고, 짝수 날에 바

---

8) 암키와: 원문은 '앙와(仰瓦)'이다. 지붕 바닥면에 깔리는 곡률이 완만하고, 사방 한 자 정도 크기의 기와를 말한다.

9) 달이……않는다: 사조제(謝肇淛)의 『오잡조(五雜俎)』「천부(天部)」(2)에 다음 구절이 나온다. "달이 암키와처럼 생기면 빌지 않아도 절로 비가 내리고, 달이 활처럼 생기면 비가 적고 바람이 많이 분다(月如仰瓦, 不求自下, 月如彎弓, 少雨多風)."

람이 불면 짝수 날에 바람이 그친다.

論雨.
雨打五更, 日中必晴. 雨停午下, 無數雨, 主晩來日晴. 凡驟雨易晴, 快雨快晴. 雨伴雪無休歇. 春寒主雨, 夏寒主晴.

비를 논함.
오경(五更: 오전3시~5시)에 비가 내리면 대낮에 틀림없이 날씨가 화창하다. 오후에 비가 그치고 더 이상 비가 찔끔거리지 않으면 해질 무렵 날이 갠다. 무릇 갑자기 내리는 비 즉 소나기는 쉽게 날이 개고, 시원하게 내리는 비는 날이 얼른 갠다. 비가 눈과 함께 오면 계속 내린다. 봄에 추우면 비가 내리고 여름에 추우면 구름 한 점 없이 날이 맑다.

論雲.
雲行東, 車馬通, 雲行西, 馬濺泥, 雲行南, 水漲潭, 雲行北, 好行客. 雲如砲車形, 主大風起.

구름을 논함.
구름이 동쪽으로 흘러가면 수레와 말[10] 다니기 좋고, 구름이 서쪽으로 흘러가면 말이 진흙탕을 다녀야 한다. 구름이 남쪽으로 흘러가면 못에 물이 불어나고, 구름이 북쪽으로 흘러가면 객이 길 가기에 좋다. 구름이 포차(砲車) 모양이면 큰 바람이 인다.

論露
正月初一日有露, 主人有疾, 桑葉賤. 騰水上溢爲露, 地氣上天曰露. 凡露三日, 主有東風北風九日. 春天霧, 露不收卽日雨. 春露雨淋淋, 夏露

10) 수레와 말: 원래는 '거두(車頭)'로 되어 있으나 문맥이 통하지 않아 원말 명초 누원례(婁元禮)의 『전가오행(田家五行)』에 근거하여 '거마'로 고쳐 번역했다.

曬行人.

이슬을 논함

정월 초하루에 이슬이 맺히면 사람이 병을 앓고 뽕잎 값이 싸진다. 물이 위로 솟구쳐 넘쳐서 이슬이 되기도 하고, 지기(地氣)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이슬이라 하기도 한다. 사흘 동안 이슬이 맺히면 동풍과 북풍이 9일 동안 분다. 봄 안개에 이슬이 내려 걷히지 않으면 그날로 비가 내린다. 봄에 이슬이 맺히면 비가 뚝뚝 떨어지고, 여름에 이슬이 맺히면 햇볕이 나 행인을 비춘다.

論雷

正月初一日雷, 主一方不寧. 初發聲微和者一年吉, 小泉主旱. 猛烈凶, 有泉百蟲小. 未雨先雷航去步歸, 無雨. 雷卯前鳴主有雨. 凡雷聲響烈者, 雨雖大易過, 雷中有雷, 主百雨陰雨.

천둥을 논함

정월 초하루에 천둥이 치면 한 지역이 편지 않다. 천둥의 첫 울림이 나지막하고 온화하면 한 해 동안 길하지만 작은 샘은 마른다. 천둥이 극렬하면 흉하고, 샘에 온갖 벌레들이 생긴다. 비가 내리기 전에 천둥이 치면 배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고[11] 비는 오지 않는다. 천둥이 묘시(卯時: 오전 5시~7시) 전에 치면 비가 온다. 천둥소리가 맹렬할 경우, 비록 큰 비가 내리지만 쉽게 지나가고, 천둥 속에 또 천둥이 치면 소나기가 내리거나 음산한 비가 내린다.

論電

正月初一日有電, 主人有殃. 夏秋之間, 夜晴而見遠電, 俗云熱閃. 在南主晴, 在北主雨. 又云"南閃千里, 北閃眼前", 大暑前後有電, 早禾薄

11) 드물고: 원문에는 '항거보귀(航去步歸)'라고 되어 있으나, www.ugyo.net 에서 제공하는 고도서목록본에는 '항거소회(航去少回)'로 되어 있다. 후자가 문맥에 더 맞는 듯하여 후자로 번역하였다.

收.

번개를 논함

정월 초하루에 번개가 치면 사람에게 재앙이 생긴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밤 날씨가 맑은데도 저 멀리 번갯불이 보이는 것을 속세에서는 '열섬(熱閃)'이라고 한다. 번개가 남쪽에서 치면 날씨가 맑고 북쪽에서 치면 비가 내린다. 또 속설에 '남쪽에서 번쩍이는 번개는 천 리[12] 밖에 있고, 북쪽에서 치는 번개는 눈앞에 있다'고 했는데, 대서(大暑) 전후로 번개가 치면 이른 벼의 수확량이 적다.

論霜

初下只一朝, 謂之孤霜, 主來年歉. 遭二三朝以上主熟. 上有槍芒者吉, 微平者凶, 主來年旱. 春霜主雨. 俗云"春霜不遠三日雨", 三朝主雨, 九日晴.

서리를 논함

첫서리가 하루아침만 내리는 것을 일러 '고상(孤霜)'이라 하는데, 이듬해 흉년이 든다. 이삼일 이상 서리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 위가 뾰족한 서리는 길하고 위가 평평한 서리는 흉하며 이듬해 가뭄이 든다. 봄에 서리가 내리면 비가 내린다. 또 속설에 "봄에 서리가 내리면 멀지 않아 사흘 안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사흘째 되는 아침에 비가 오고 9일 동안 날씨가 맑다.

論雪

正月初一日雪主夏旱. 凡雪日間不積者謂之怕羞. 積雪霽而不消者謂之等伴, 主再下主來年多水.

눈을 논함

---

12) 천리: 원래는 '천년(千年)'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맥이 통하지 않아 누원례(婁元禮)의 『전가오행(田家五行)』에 근거해 고쳐 번역했다.

정월 초하루에 눈이 내리면 여름에 가뭄이 든다. 대개 낮 동안 눈이 내리면서 쌓이지 않는 것을 일러 파수(怕羞)라고 한다. 눈이 쌓여 날이 개어도 녹지 않는 것을 일러 등반(等伴)이라고 하는데, 다시 눈이 내리고 이듬해 물이 많이 질 징조이다.

論氷

氷後水漲主來年多水. 氷後水退主來年旱. 氷堅難化主來年有泉.

얼음을 논함

얼음이 언 후에 물이 불어나면 이듬해 물이 많이 진다. 얼음이 언 후에 물이 물러나면 이듬해 가뭄이 든다. 얼음이 단단해 녹기 어려우면 이듬해 샘이 생겨난다.

論地

地面濕潤[甚者, 水珠出如流汗], 主暴雨. 若有西北風可解散, [無雨]. 石磉水流, 四野薰蒸亦主雨.

땅을 논함

지면이 축축해져 [물방울이 땀처럼 맺혀 흘러나오면] 폭우가 쏟아진다.[13] 그러나 만약 서북풍이 불어오면 습기를 다 날려 보낼 수 있어 [비가 내리지 않는다.][14] 물독에 물기가 흐르면 폭우가 쏟아지고, 사방의 들녘에 수증기가 가득차도 역시 비가 내린다.[15]

---

13) 지면이……쏟아진다: 원문은 '지면습윤심자수주출여유한주폭우(地面濕潤甚者, 水珠出如流汗, 主暴雨)'이다. 원래는 '지면습윤여한자주폭우(地面濕潤如汗者主暴雨)'라 되어 있는데, 의미가 잘 통하지 않아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에 실려 있는 명(明)나라 서광계(徐光啓)의 『농정전서(農政全書)』에 근거해 번역했다.

14) 비가……않는다: 원문은 '무우(無雨)'이다. 이 부분은 원래 빠져 있는데, 서광계의 『농정전서』에 근거하여 보충했다.

15) 비가 내린다: 원문은 '주우(主雨)'이다. 서광계의 『농정전서』에는 이 부분이 없다.

斷四時甲子

春甲子雨乘舡入市, 夏甲子雨地赤千里, 秋甲子雨禾頭生耳, 冬甲子雨雪飛千里.

사계절의 갑자일로 점치다

봄 갑자일에 비가 내리면 배를 타고 저자까지 들어오고, 여름 갑자일에 비가 내리면 천리에 흉년이 들어 땅이 붉어지고, 가을 갑자일에 비가 내리면 벼에서 싹이 나고, 겨울 갑자일에 비가 내리면 천리에 눈발이 날린다.

斷立春日辰

先天與後天, 但看立春日, 何須問神仙? 甲乙是豐年, 丙丁多主旱, 戊己損傷田, 庚辛人馬動, 壬癸水連天.

입춘의 일진으로 점치다

선천설이건 후천설이건 입춘일만 보면 될 뿐 신선에게 물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입춘 일진에 갑이나 을이 들면 풍년이 들고, 병이나 정이 들면 큰 가뭄이 들고, 무나 기가 들면 밭작물이 손상되고[16], 경이나 신이 들면 사람과 말이 바삐 움직이고[17] 임이나 계가 들면 큰물이 진다.

斷虹霓

俗云: 黌東出日頭, 西出雨, 南見刀兵, 北太平. 元宵虹見東主秋米貴, 西主谷貴. 谷雨有虹九月米魚鹽貴. 四月虹主米貴.

---

16) 밭작물이 손상되고: 원문은 '손상전(損傷田)'이다. 원래는 '손전원(損田園)'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이 통하지 않아 『해저안경서(海底眼經書)』에 근거하여 고쳐 번역한다.

17) 사람과……움직이고: 원문은 '인마동(人馬動)'이다. 『해저안경서』에는 '인부정(人不淨)'으로 되어 있다.

무지개로 점치다

속설에 “학당의 동쪽에서 무지개가 뜨면 해가 나오고, 서쪽에서 무지개가 뜨면 비가 내리고, 남쪽에서 무지개가 뜨면 전쟁이 나고 북쪽에서 무지개가 뜨면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말이 있다. 정월 대보름에 무지개가 동쪽에서 보이면 가을에 쌀값이 비싸고, 서쪽에서 뜨면 곡식 값이 비싸다. 곡우에 무지개가 뜨면 9월에 쌀, 물고기, 소금이 비싸다. 4월에 무지개가 뜨면 쌀값이 비싸다.

定無風卽雨訣

正月初十日午時三刻, 主惡風, 無風卽雨.
二月初九, 十三, 十四, 十七日酉時後三刻, 主惡風, 無風卽雨.
三月初三, 十七, 二十七午時後大風, 無風卽雨.
四月初七, 十九辰時有風, 無風卽雨.
六月十六, 十九卯辰二時有風.
七月初九, 十五, 二十七有風, 無風卽雨.
八月初二, 初八, 十七, 十九有風.
十月十五, 十七, 十八, 二十七無風卽雨.
十一月初三, 初九, 十九, 二十一, 二十八有風, 無風卽雨.
十二月初三, 初五, 初六, 初八, 二十, 二十六晦日, 天地神主上天界, 辰時惡風至, 無風卽雨.

정무풍즉우결(定無風卽雨訣)

정월 초10일 정오 12시 45분에 악풍이 불다 그치면 바로 비가 내린다.
2월 초 9일, 13일, 14, 17일 오후 5시 45분에 악풍이 불다 그치면 바로 비가 내린다.
3월 초3일, 17일, 27일 오시 뒤에 큰 바람이 불다 바람이 그치면 바로 비가 내린다.

4월 초7일, 19일 진시(辰時: 오전7시~9시)에 바람이 불다 그치면 바로 비가 내린다.
6월 16일, 19일, 묘시(卯時: 오전 5시~7시)와 진시(7시~9시) 두 시진동안 바람이 분다.
7월 초9일, 15일, 27일에 바람이 불다가 그치면 바로 비가 내린다.
8월 초2일, 초8일, 17일, 19일에 바람이 분다.
10월 15일, 17일, 18일, 27일 바람이 그치면 바로 비가 내린다.
11월 초3일, 초9일, 19일, 21일, 28일에 바람이 불다가 그치면 바로 비가 내린다.
12월 초3일, 초5일, 초6일, 초8일, 20일, 26일, 그믐날[18]에 천지신(天地神)이 상계(上界)를 다스릴 때 진시에 세찬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그치면 바로 비가 온다.

雲箋類
奉書先後.
一具禮, 再拜頓首之類. 二呼稱, 麗君老大人座前之類. 三間闊, 久近違別. 四瞻仰, 思慕瞻望. 五卽日, 玆者之類. 六時令, 春暄餘寒之類. 七伏惟, 恭惟敬惟. 八頌德, 稱頌道德政事. 九神相, 神明扶衛. 十起居, 動履淸嘉. 十一欣喜, 無任欣榮. 十二自敍, 敍己之事. 十三少稟, 仰瀆淸听. 十四人事, 干托之類. 十五臨書, 臨梓不勝瞻仰. 十六保重, 珍重之類. 十七祈亮, 統祈照亮. 十八結尾, 不宣不盡.
一具禮. 二稱呼. 見上層.

18) 그믐날: 원문은 '회일(晦日)'이다. 원래는 '회일' 두 글자 앞에 '육(六)'자가 더 있었으나, 문맥이 통하지 않아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에 근거해 고쳐 번역한다. 『거가필용사류전집』은 모두 10권(「內府藏本」)으로 되어 있으며 작자는 미상이다. 역대 명현들의 격언과 가르침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십간(十干)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황우직(黃虞稷)의 『천경당서목(千頃堂書目)』에 따르면, 간혹 원대(元代) 웅종립(熊宗立)의 저서라고도 하나 확실치는 않다.

서신[19]류

편지를 올릴 때의 순서
1, 구례(具禮, 예의 갖추기): “재배”, “돈수” 등
2, 호칭(상대 칭호): “여군 좌전”, “노대인 좌전” 등
3, 간활(間闊, 그간 적조했다는 표현): 오래 못 본 경우, 최근 못 본 경우
4, 첨앙(瞻仰, 상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 사모의 정과 우르르는 마음
5, 즉일(卽日, 요즘에 해당하는 표현): “지금” 등
6, 시령(時令, 계절 인사 표현): “따뜻한 봄(春暄)” “꽃샘추위(餘寒)” 등
7, 복유(伏惟, 안부 묻기):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삼가 생각건대”, “공경히 생각건대” 등
8, 송덕(頌德, 상대의 덕을 가송): 도덕 및 정사에 대한 칭송
9, 신상(神相, 신의 도우심을 기원): “신명께서 보우하사” 등
10, 기거(起居, 안부 묻기): “귀체 만강하옵시고” 등
11, 흔희(欣喜, 기쁨과 감사의 표현): “기쁨과 광영을 이길 길 없나이다.” 등
12, 자서(自敍): 자신의 근황 적기
13, 소품(少稟): “우러러 번거로움을 끼쳤나이다” 등
14, 인사(人事): 간청, 부탁
15, 임서(臨書): “서찰을 쓰면서 우르르는 마음 이길 길이 없나이다.” 등
16, 보중(保重, 당부하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등
17, 기량(祈亮, 기원하기): “서찰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등
18, 결미(結尾): “할 말은 많으나 다 쓰지 못합니다.” “이만 그치겠나이다.” 등

---

19) 서신: 원문은 ‘운전(雲箋)’으로, 다른 사람의 편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다른 말로 운한(雲翰), 귀함(貴函)이라고도 한다.

一具禮, 二稱呼, 見上層

三間闊類

近別. 奉違未久, 暮春握別, 便迫歲殘, 奉違德敎, 罔記其時, 揖別半標, 忽經數月, 不聆淸誨, 倏經旬, 零霜握別, 倏已殘春, 別違寒暑, 仰想德音, 自違顔範, 倏已旬詩, 自別儀容, 屢更弦望, 拜違一日, 如隔三秋, 芝眉一別, 蓂莢重添, 不接淸說, 忽覺晦朔.

久別. 久違德敎, 久別丰姿, 不瞻風采, 歲曆幾新, 奉遠儀刑, 循環歲月, 河梁分手, 寒暑幾更, 門墻久別, 歲月屢移, 不揖光風, 屢瞻華月.

尊長. 違侍尊顔, 倏踰朔望, 久違敎範, 時切懷企.

官宦. 不奉鈞顔, 屢更歲月, 一睽台範, 幾易葛裘, 阻光台光, 動越寒暑.

先生. 阻拜函丈, 倏爾踰時, 不規顔範, 屢經晦朔.

婦女. 不瞻懿範, 動踰寒暑, 自別閨儀, 屢更蓂莢.

僧. 不瞻法相, 又復許久, 不聽空言, 忽復月餘.

道. 不聆玄論, 荏苒逾年.

1. 구례와 2. 호칭은 윗부분에 보인다.

3. 간활(間闊)

- 최근 만나지 못한 경우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늦봄에 헤어졌는데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덕음을 듣지 못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하고 헤어진 지 금세인데, 홀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청아하신 가르침을 듣지 못한 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리 내릴 때 손 부여잡고 헤어졌는데, 어느새 늦봄입니다.”

“헤어진 지 1년, 덕음이 그립습니다.”

“모습을 뵈온 지 열흘[20]이 지났습니다.”

---

20) 열흘: 원문은 ‘순시(旬詩)’이다. ‘시(詩)’는 ‘시(時)’의 오기로 보인다.

“당신과 헤어진 후로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만 뵙지 못해도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당신[21]과 헤어진 후로 하루하루[22] 날만 더해 갑니다.”

“청아하신 말씀 접하지 못한 채 어느덧 한 달[23]이 지났습니다.”

-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경우의 표현

“덕음을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습을 뵙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풍채를 뵙지 못한 채 몇 해가 바뀌었습니다.”

“모습[24]을 뵌 뒤로 세월만 흘렀습니다.”

“하량[25]에서 이별한 지 추위 더위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오래전 이별하고 세월이 거듭 흘렀습니다.”

“빛나는 풍모를 뵙지 못한 채 거듭 밝은 달만 바라봅니다.”

- 존장자에 대한 표현

“존안을 뵌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큰 가르침을 받은 지 오래되어 그리움의 정이 간절해집니다.”

- 벼슬아치에 대한 표현

“위대한 얼굴 우러르지 못한 채 세월만 누차 바뀌었습니다.”

“한번 존안을 뵙고 해[26]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

21) 당신: 원문은 ‘지미(芝眉)’이다. 상대방의 얼굴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22) 하루하루: 원문은 ‘명협(蓂莢)’으로, 달력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풀 또는 나무로, 시간을 의미한다. 태평성대에 궁궐의 섬돌에서 피었다고 한다. 『제왕세기(帝王世紀)』에 따르면, 잎이 15개인 명협은 하루에 한 잎씩 15일이면 다 피고, 16일부터는 하루에 한 잎씩 떨어졌다고 한다.

23) 한 달: 원문은 ‘회삭(晦朔)’으로, 그믐과 초하루를 가리키나 음력 한 달을 가리키기도 한다.

24) 모습: 원문은 ‘의형(儀刑)’이나, ‘의형(儀形)’의 오기로 보인다.

25) 하량: 원문은 ‘하량(河梁)’이다. 아쉬운 이별의 장소를 의미한다. 한(漢)나라 소무(蘇武)가 흉노에 억류되어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벗 이릉(李陵)과 이별할 때, 이릉이 소무에게 주었던 시[「與蘇武」]에 나오는 구절이다. “손을 마주잡고 하량에 오르나니, 그대는 저물녘 어디로 가는가(携手上河梁, 遊子暮何之)?”

26) 해: 원문은 ‘갈구(葛裘)’로, 여름에 입는 갈옷과 겨울에 입는 갖옷을 가리킨 데서 1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존안을 못 뵙고 그저 해만 바뀌어갑니다."

- 선생에 대한 표현

"함장어른을 배알하지 못한 지도 어느 새 오래되었습니다."

"안범(顔範)을 뵙지 못한 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 부녀에 대한 표현

"의젓한 자태를 뵙지 못한 채 어느새 해가 바뀌었습니다."

"규의(閨儀)와 헤어진 이래 하루하루 날만 바뀌어갑니다."

- 스님에 대한 표현

"법상을 우러르지 못한 지 또 얼마나 되었는지요."

"설법을 듣지 못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넘었습니다."

- 도사에 대한 표현

"현묘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뉘엿뉘엿 한 해가 넘어가는군요."

四瞻仰

晨夕瞻仰, 無任瞻仰, 曷勝仰慕, 懷仰愈深, 春樹暮雲, 惟切瞻仰, 無由會面, 第切傾心, 寸衷懷德, 旦夕不忘, 馳想之心, 日加切矣, 趨拜無由, 翹瞻益切.

官員. 斗明山峻, 惟切瞻依, 無由趨侍, 仰德惟深, 載企載瞻, 有如飢渴.

尊長. 山高斗明, 惟極尊仰, 傾心企慕, 何日少忘.

先生. 斗山之瞻, 徒抱寸懷, 景慕之心, 切如飢渴.

客旅. 白雲悠悠, 常在心目. 塞雁江魚, 徒增感嘆.

婦女. 德音在耳, 旦夕不忘. 每談懿德, 惟用馳懷.

僧道. 慕德之心, 徒增慷慨. 煙霞縹緲, 徒切瞻依.

4. 첨앙

"밤낮으로 그립습니다."

"앙모하는 마음을 감당할 길 없습니다."

"앙모의 정을 어찌 이길까요."

“품은 그리움 깊어만 갑니다.”
“봄날의 나무와 저녁 무렵의 구름.[27]”
“우러러 앙망하는 마음만 더욱 간절해집니다.”
“만나 뵐 길 없어 마음만 더욱 간절해질 뿐입니다.”
“가슴 속에 군자를 품은 채 아침저녁 잊지 못합니다.”
“치닫는 그리움의 정 날로 간절해집니다.”
“달려가 찾아뵐 길 없어 발돋움하며 우러르는 마음만 간절합니다.”

- 관원에 대한 표현
  “북두성처럼 밝고 산처럼 우뚝해, 우러러 의지하는 마음 더욱 간절해집니다.”
  “달려가 모실 길 없으니 덕을 우르르는 마음만 더욱 깊어집니다.”
  “발돋움하고 목을 뺀 채, 배고픈 듯 목마른 듯 그립습니다.”
- 존장자에 대한 표현
  “산처럼 높고 북두성처럼 환해, 존경과 우러름이 극에 달합니다.”
  “그립고 앙모하는 마음, 어느 날인들 잠시 잊을까요.”
- 선생에 대한 표현
  “북두성과 산을 우러르듯, 마음에 그리움만 품고 있습니다.”
  “경모하는 마음, 배가 고픈 듯 목이 마른 듯합니다.”
- 타지에 있는 친구나 지인에 대한 표현
  “유유히 흘러가는 저 흰 구름처럼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변방의 기러기, 강가의 물고기보며 그저 탄식만 늘어갑니다.”
- 부녀에 대한 표현
  “덕음이 귓가에 맴돌아 밤낮으로 잊히지 않습니다.”
  “의젓한 덕을 이야기할 때면 그리움만 치닫습니다.”
- 승려와 도인에 대한 표현

---

27) 봄날의 나무와 저녁 무렵의 구름: 원문은 ‘춘수모운(春樹暮雲)’으로, 두보(杜甫)의 「봄날 이백을 생각하며(春日憶李白)」에 나오는 구절이다. 친구를 생각하는 정이 간절함을 표현할 때 종종 인용되는 구절이다.

“덕을 흠모하는 마음에 슬픔만 더해 갑니다.”
“아스라한 연기 노을을 보니 우러러 따르는 마음 간절해집니다.”

五卽日
卽日, 卽辰, 卽旦, 卽刻, 卽玆, 在辰, 鷄辰, 維時, 辰下, 時下, 玆者, 玆日, 比日.

5. 즉일

즉일(卽日), 즉진(卽辰), 즉단(卽旦), 즉각(卽刻), 즉자(卽玆), 재진(在辰), 계진(鷄辰), 유시(維時), 진하(辰下), 시하(時下), 자자(玆者), 차일(玆日) 비일(比日).

六 時令
春. 春暄, 梅邊殘臘, 岸柳搖金, 餘寒, 草際迎春, 宮柳綻綿.
正月. 春和, 鳳曆春回, 三陽泰長, 新春, 鴻鈞氣轉, 四序更端.
元日. 麟筆紀元, 三元啓旦, 圭疇畫奉, 萬象熙春.
立春. 鈞回一氣, 綵枝鞭春, 律應三陽, 靑旛表節.
上元. 鰲山掛月, 火樹燒春, 娥柳鸕風, 銀花照夜.
閏月. 歲肇三微, 月添一閏.
二月. 向和, 鶯花富貴, 薰風布暖
仲春. 燕柳精神, 花雨弄晴.
花朝. 會逢撲蝶, 仲春告朔, 時競賞花, 淑景方中.
春社. 日臨五戊, 嫁從歲卜, 月屆仲春, 酒趁春嘗.
春分. 三春甫半, 鷹去燕來, 百刻平分, 鶯吟蝶舞.
閏月. 仲春紀閏, 慰箚, 野鳥啼春, 積雨留寒, 岸花泣曉.
三月. 季春, 桃花飛紅, 棠花綉野, 春老, 榆花改煙, 花容正麗.
淸明. 梨花落院, 榆花方新, 榆花改煙, 花容正麗.
寒食. 杏酩浮香, 藏煙令節, 藍盃泛飮, 禁火佳辰.
上巳. 蘭亭修禊, 雩氣和照, 水曲流觴, 花氣淸氛.

閏月．維暮之春，慰箚，蝶帳花殘，歸奇於閏，鶯啼春老．
夏．復熱，青梅薦酒，枇杷初薦，酷暑，綠樹成帷，楊柳新條．
四月．初夏，五風麥熟，槐風荐夏，首夏，十雨肥梅，麥浪翻秋．
立夏．六龍行夏，首夏清和，萬象遊春，朱明令節．
八日．雪山送春，龍華啓夏，雲堂結夏，猊座慶生．
閏月．月臨中宮，慰箚，梅黃愁雨，日積餘分，麥熟悲風．
五月．月屆猋賓，雲峯峒秀，星占大火，火傘張炎．
端午．金包角黍，蘭湯荐浴，王切香蒲，蒲酒浮觴．
夏至．月正南郊，暑氣蒸人，日纏東井，炎天侵體．
閏月．維下之中，慰箚，池荷泣露，正時以閏，院竹悲風．
六月．盛夏，日居鶉火，月旅林鍾，酷熱，秋入蟬聲，天開火傘．
伏日．三庚用事，沈李浮瓜，乘雨荐涼，携琴載酒．
閏月．夏衡書季，慰箚，蟬聲號日，月琯歸餘，燕語悲風．
秋．餘暑，雲收夏色，天氣差涼，秋涼，月動秋聲，餘暑未艾．
七月．新涼，玉律明秋，碧天似水，餘熱，金風蕩暑，秋月如霜．
七夕．牛渚聯星，青鷹傳信，鵲橋橫漢，烏鵲塡橋．
立秋．炎苦解印，庭飛梧葉，素昊行權，秋到人間．
中元．七月既望，解夏令辰，三秋未深，新秋半月．
閏月．一閏歸餘，慰箚，蛩韻悲秋，雙星重會，蟬聲啼暮．
八月．高秋，碧天萬里，露株滴冷，秋涼，明月三秋，月鑑浮寒．
中秋．人間秋半，明光當空，天上月圓，寒光映席．
秋社．九農成業，黍稷祈祀，五戊屆辰，螐肥宴秋．
閏月．時屬中秋，慰箚，燕別雕梁，月添一閏，蟬號古木．
九月．菊月催霜，荷衣雕翠，蘆風煎雪，蓉錦張紅．
九日．萸房日淡，佳菊呈黃，菊洞風清，香萸試紫．
閏月．月餘一閏，蛩音吟苦，日雨重陽，鷹陣橫悲．
冬．銅瓦霜新，橘綠橙黃，玉壺氷滿，螐肥蟹嫩．
十月．小春，梅傳春意，菊香晚節
新冬．菊傲霜枝，梅漏小春．
立冬．元英啓候，霜凌梅蕋，青女司寒，雪冷風林．

閏月. 三冬啓席, 慰箚, 風木聲分, 一閏歸餘, 雪山頭白.
十一月. 陽春, 日行北陸, 天寒欲雪.
仲冬. 春到南枝, 春意在梅.
冬至. 葭灰纔動, 玉砌香堦, 綉線初添, 雪鋪鴛瓦.
閏月. 節臨亞歲, 慰箚, 霜凋風冷, 月紀餘分, 月淡梅寒.
十二月. 窮冬, 椒觴殘臘, 雪融草際, 殘臘, 梅信傳春, 春到梅邊.
除冬. 椒花殘臘, 晝閣迎春, 爆竹催春, 錦筵守歲.
閏月. 寒逼周年, 年催景換, 閏以成歲, 風慘雲愁.

6. 시령

- 봄의 표현
  "따뜻한 봄", "매화가지 옆엔 남은 섣달", "언덕 버들개지 눈터지고", "남은 추위", "풀숲에 봄이 오고", "궁궐 버들개지에 싹이 돋고" 등
- 정월의 표현
  "화창한 봄", "봄이 되니 [천시를 아는] 봉황이 돌아오네", "삼양태창(三陽泰長)"[28], "신춘(新春)", "홍균기전(鴻鈞氣轉)"[29], "사시가 다시 시작되니" 등
- 정월초하루를 나타내는 표현
  "인필기원(麟筆紀元)", "삼원계단(三元啓旦)",[30] "규주화봉(圭疇畫奉)", "만물에 봄 햇살이 비추다" 등
- 입춘을 나타내는 표현
  "균회일기(鈞回一氣)", "채지편춘(綵枝鞭春)",[31] "율응삼양(律應三陽)",[32] "청번표절(靑旛表節)"[33] 등

---

28) 삼양태창(三陽泰長): 정월을 맞아 만물이 형통하다는 뜻이다.
29) 홍균기전(鴻鈞氣轉): 대자연의 기운이 돈다는 뜻이다.
30) 삼원계단(三元啓旦): 정월 초하루 아침이 밝았다는 뜻이다.
31) 채지편춘(綵枝鞭春): 비단 채찍으로 토우를 치며 봄을 알린다는 뜻이다.
32) 율응삼양(律應三陽): 정월달에 접어들어 입춘 절기를 맞이하면 해가 길어져서 대지는 녹기 시작하고 만물이 소생한다. 이때를 삼양지기(三陽之氣)라고 한다.

- 정월 대보름을 나타내는 표현
  "오산괘월(鰲山掛月)"[34], "휘황찬란한 등불 봄을 태우듯", "어여쁜 버들개지 새매 바람", "휘황찬란한 등불 밤을 비추네"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세조삼미(歲肇三微)", "윤달 하나가 덤으로 왔다" 등
- 이월을 나타내는 표현
  "향화(向和)", "앵화부귀(鶯花富貴)", "훈풍은 따뜻하고" 등
- 중춘(仲春)[35]을 나타내는 표현
  "연류정신(燕柳精神", "봄비가 밝은 날을 희롱한다" 등
- 화조(花朝)[36]를 나타내는 표현
  "나비가 날아든다", "중춘이 보름을 알린다", "앞 다투어 꽃을 감상한다", "봄이 한창이다" 등
- 춘사(春社)[37]를 나타내는 표현
  "다섯 번째 무일이 되었다", "가종세복(嫁從歲卜", "중춘이 되었다", "봄날 구경하며 술을 마신다" 등
- 춘분(春分)을 나타내는 표현
  "음력 3월도 이제 반이 지나갔다", "기러기가 떠나고 제비가 돌아온다", "밤낮이 똑같아졌다", "앵무새 지저귀고 나비 춤춘다." 등
- 윤월(閏月)을 나타내는 표현
  "중춘기윤(仲春紀閏)", "위차(慰箚)", "들녘 새가 봄을 운다", "장맛비에 한기가 남는다", "언덕의 꽃이 새벽에 운다" 등
- 삼월을 나타내는 표현

---

33) 청번표절(靑旛表節): 옛날 봄 시령에 푸른 깃발을 걸어놓고서 소를 몰았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34) 꽃등(花燈): 원문은 '오산(鰲山)'으로,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꽃등(花燈)을 산 같이 쌓아 놓은 모양이 큰 자라 모양과 같은 데서 유래했다.
35) 중춘(仲春): 봄이 한창인 때로 음력 2월을 나타낸다.
36) 화조(花朝): 음력 2월 보름을 말한다.
37) 춘사(春社): 봄에 맞는 사일(社日: 제사 지내는 날)에 지내는 제사를 춘사(春社)라고 하는데, 입춘 다음 다섯 번 째 무일(戊日) 되는 날을 말한다.

"계춘(季春)", "복숭아 꽃 붉게 날린다", "들녘에 해당화 피고", "춘로(春老)", "느릅나무 꽃 안개처럼 피고", "꽃이 한창이다" 등

- 청명을 나타내는 표현

"배꽃은 정원에 떨어지고", "느릅나무 꽃이 한창이다", "느릅나무 꽃 안개처럼 피고", "꽃이 한창이다" 등

- 한식을 나타내는 표현

"살구 향기에 취해", "안개 낀 좋은 계절", "푸른 잔에 술이 가득", "불을 금하는 좋은 날" 등

- 상사일(上巳日)을 나타내는 표현

"난정에서 수계할 때", "우기(雩氣)가 온화하게 비추다", "유상곡수", "향기로운 꽃 맑은 하늘"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때는 늦은 봄", "위차(慰箚)", "나비가 찾아드니 꽃이 지네", "귀기어윤(歸奇於閏[38])", "앵무새 지저귀는 늦봄" 등

- 여름을 나타내는 표현

"다시 더워졌다", "청매실에 술 마시다", "비파를 처음 따서 올리다", "혹서(酷暑)", "푸른 나무가 장막을 이루다", 수양버들에 어린 가지 돋아나다" 등

- 사월을 나타내는 표현

"초하(初夏)", "다섯 번 바람이 부니 보리가 익는다", "홰나무에 바람이 부니 스님들이 안거에 드네", "수하(首夏)", "열 번 비 내리니 매실이 여문다", "보리밭에 가을이 일렁인다" 등

- 입하(立夏)을 나타내는 표현

"육룡이 여름을 몰고 왔다", "수하청화(首夏淸和)", "삼라만상이 봄나들이 왔다", "주명영절(朱明令節)"[39] 등

- 팔일(八日)을 나타내는 표현

---

38) 귀기어윤(歸奇於閏): 『주역』「계사상(繫辭上)」에 "돌아가 (하늘 덩어리에서) 남은 시초를 (왼손의 장지와 약지 사이에 끼워) 윤달을 상징하고(歸奇於扐以象閏)"이라는 말이 나온다.

39) 주명영절(朱明令節): 태양이 빛나는 좋은 계절이라는 뜻이다.

"설산이 봄을 전송한다." "입하에 용화회(龍華會)[40]가 열린다", "운당(雲堂)[41]에서 첫 하안거를 행한다"[42]), "예좌경생(猊座慶生)[43]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달이 중궁자리에 있다", "위차(慰箚)", "매실 익자 비 내릴까 근심이다", "일적여분(日積餘分)", "보리 익으니 슬픈 바람 분다" 등

- 오월을 나타내는 표현

"달은 유빈(蕤賓)[44]에 있고", "구름 낀 봉우리 수려하다", "달이 심수(心宿)[45] 자리에 들었다", "태양이 작열한다" 등

- 단오를 나타내는 표현

"각서[46]를 싼다", "난초 삶은 물로 목욕한다", "옥으로 부들을 자른다", "술잔에 창포주 띄운다" 등

- 하지를 나타내는 표현월

"달이 남교(南郊)에 있다", "더위가 찌는 듯하다", "태양이 동정수(東井宿)에 있다", "더운 날씨가 몸을 침범하고"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유하지중(維下之中)", "위차(慰箚)", "이슬에 젖은 연꽃", "윤달을 두어 시간을 바로잡았다", "뜰 안 대나무에 이는 처량한 바람" 등

---

40) 용화회(龍華會): [불교] 미래의 세계에 용화수 밑에서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설법을 하기 위하여 갖는 법회를 말한다.

41) 운당(雲堂): 운수승(雲水僧)들이 모이는 당(堂)이라는 뜻으로, 스님이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며 거처하는 집을 이르는 말이다.

42) 첫 하안거를 행하네: 승려가 여름 장마 때 외출하지 않고 한 방에 모여 수도하는 하안거의 첫날을 가리킨다.

43) 예좌경생(猊座慶生): 석가탄신일을 가리킨다.

44) 유빈(蕤賓): 동양음악에서 십이율의 일곱째 음, 육률의 하나로 방위는 오(午), 절후는 음력 5월에 해당한다.

45) 심수(心宿): 여름밤이 깊어갈 무렵, 떠오르는 28수의 다섯 번째 별자리이다. 심수는 붉은 빛으로 동방을 수호하는 청룡의 심장을 표현한다.

46) 각서(角黍): 오늘날의 종쯔(粽子)를 말하며, 밀가루로 둥근 떡을 만들어 고기와 나물을 소로 넣어 만든 단오절 음식을 말한다.

- 유월을 나타내는 표현
  "성하(盛夏)", "해가 순화(鶉火)[47]자리에 들었다", "혹열(酷熱)", "가을 매미소리", "하늘에는 작렬하는 태양" 등
- 복날을 나타내는 표현
  "삼경용사(三庚用事: 삼복날)", "오얏 담그고 오이 띄우고", "비 내리니 시원하다", "술과 거문고 들고"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하형서계(夏衡書季)", "위차(慰箚)", "매미가 해를 부르네", "월관귀여(月琯歸餘)", "제비 소리에 처연한 바람이 분다" 등
- 가을을 나타내는 표현
  "여서(餘暑)", "구름이 여름빛을 거두어들였다", "날씨가 조금 서늘하다", "추량(秋涼)"[48], "달이 움직이니 가을이 다가온다", "남은 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등
- 칠월을 나타내는 표현
  "신량(新涼)", "옥률명추(玉律明秋)", "물같이 밝은 푸른 하늘", "여열(餘熱)", "가을바람[49]이 더위를 몰아낸다", "서리 같은 가을 달" 등
- 칠석을 나타내는 표현
  "우저(牛渚)[50]에 별들이 이어 섰다" "푸른 매가 소식을 전한다", "오작교가 은하수에 걸쳐 있고", "까마귀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등
- 입추를 나타내는 표현

---

47) 순화(鶉火): 순은 별자리로 음력 5월 남쪽 밤하늘에 나타난 데서 5월을 부르는 이칭이 되었다.
48) 추량(秋涼): 서늘한 바람으로, 음력 8월을 가리킨다.
49) 가을바람: 원문은 '금풍(金風)'으로, 추풍(秋風)의 다른 이름이다. 고대에는 오행(五行)과 사계절을 서로 짝지어 계절의 변화를 해석했다. 봄은 목(木), 여름은 화(火), 늦여름은 토(土), 가을은 금(金), 겨울은 물(水)과 서로 짝을 맞추었다. 이 때문에 가을바람을 금풍(金風)이라고 했다. 심백준 지음, 『삼국지사전』, 현암사, 2010년
50) 우저(牛渚): 견우(牽牛)를 우저라고 표현하고 직녀(織女)를 봉기(鳳機)라고 표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더위가 인끈을 풀었다", "뜰에 오동잎 날리고", "소호씨[51]가 권세를 부린다", "인간 세상에 가을이 왔다" 등

- 중원(中元)[52]을 나타내는 표현
  "칠월기망(七月旣望)", "해하(解夏)[53]하는 좋은 시절", "가을이 채 깊어지지 않았고", "초가을 반달"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일윤귀여(一閏歸餘)", "위차(慰箚)", "귀뚜라미 우는 슬픈 가을", "견우성과 직녀성이 다시 만났다", "해질 무렵 매미 울어대고" 등
- 팔월을 나타내는 표현
  "고추(高秋)", "만 리에 펼쳐진 푸른 하늘", "맑은 이슬방울[54] 듣는다", "추량(秋涼)"[55], "명월삼추(明月三秋", "추위 속에 떠있는 밝은 달" 등
- 중추(中秋)를 나타내는 표현
  "인간추반(人間秋半: 가을 중턱)", "밝은 달 하늘에 걸려 있다", "천상에 달은 둥글고", "차가운 달빛 빛나고" 등
- 추사(秋社)[56]를 나타내는 표현
  "구곡(九穀)[57]으로 덕업을 이루고", "기장밥 지어 제사올린다", "오무계진(五戊屆辰)", "동새는 살찌고 가을 잔치 열렸다" 등

---

51) 소호씨: 소호씨(少昊氏). 가을을 주재하는 신이다.
52) 중원(中元): 음력 7월 15일로 백종(百種), 또는 망혼일(亡魂日),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고도 한다. '백종'은 이 무렵에 과실과 소채(蔬菜)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백가지 곡식의 씨앗[種子]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다.
53) 해하(解夏): 승려들이 7월 16일 이후에 안거 제도를 푸는 것을 말한다.
54) 이슬방울: 원문은 '노주(露株)'라 되어 있으나, 내용상 '노주(露珠)'의 오기로 보이기에 고쳐 번역한다.
55) 추량(秋涼): 음력 8월의 다른 이름이다.
56) 추사(秋社): 가을에 지내는 제사를 추사(秋社)라고 하는데, 입추 후 다섯 번째 무일(戊日)에 지낸다. 이 날은 모두 일을 멈추고 남녀가 모여 신령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과 술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즐긴다.
57) 구곡(九穀): 원문은 '구농(九農)'으로, 『주례(周禮)』에 따르면 기장·벼·콩 등의 아홉 가지 곡식을 말한다.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때는 중추라", "위차(慰箚)", "제비는 들보 떠나가고", "윤달 하나가 보태졌네", "고목에서 울어대는 매미" 등
- 구월을 나타내는 표현
  "국화[58]가 서리를 재촉한다", "연꽃이 시들었다", "갈대에 이는 찬바람이 눈을 재촉한다", "붉은 비단이 펼쳐졌다" 등
- 구일(九日)[59]을 나타내는 표현
  "산수유가 날로 고와진다", "어여쁜 국화가 노랗게 물들었다", "국화 핀 골짜기에 맑은 바람 불고", "향기로운 산수유가 익어간다"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월여일윤(月餘一閏)", "귀뚜라미 소리 쓸쓸하고", "중양절에 비 내리고", "날아가는 기러기떼 보며 슬퍼한다" 등
- 겨울을 나타내는 표현
  "구리기와에 막 서리 내리고", "푸른 귤이 노랗게 익었다", "옥으로 만든 병에 얼음이 가득하다", "동새는 살찌고 게살은 연해졌다" 등
- 시월을 나타내는 표현
  "소춘(小春)"[60], "매화가 봄소식을 전해주네", "늦게 핀 국화 향기" 등
- 초겨울을 나타내는 표현
  "오상고절 국화 가지에 서리 내리고", "매화 싹트는 소춘" 등
- 입동을 나타내는 표현
  "원영계후(元英啓候)", "서리가 매화를 능멸한다", "청녀(靑女)[61]가 추위를 주관한다", "눈은 차고 숲에 바람이 인다"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

58) 국화: 원문은 '국월(菊月)'로, 국화가 피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구월을 가리킨다.
59) 구일(九日): 음력 9월 9일을 말한다.
60) 소춘(小春): 음력 시월의 이칭이다.
61) 청녀(靑女): 서리를 다스린다는 귀신을 말한다.

"삼동계석(三冬啓席: 겨울로 접어들었네)", "위찰(慰箚)", "나무에 이는 바람 소리 뚜렷하네", "일윤귀여(一閏歸餘)", "새하얀 설산 꼭대기" 등

- 십일월을 나타내는 표현

  "양춘(陽春)", "해가 북쪽[62]으로 가고", "날이 추워져 눈이 오려 하네" 등

- 중동(仲冬)을 나타내는 표현

  "남쪽가지에 봄이 왔다", "봄기운이 매화에 감돈다" 등

- 동지를 나타내는 표현

  "갈대 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63]), "아름다운 섬돌", "자수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원와(鴛瓦)[64]에 눈 내린다"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절림아세(節臨亞歲: 때는 동지[65]라네)", "위차(慰箚)", "찬 서리에 바람 차가운데", "월기여분(月紀餘分)", "흐린 달빛 찬 매화" 등

- 십이월을 나타내는 표현

  "궁동(窮冬)", "초주(椒酒)[66]에 남은 섣달", "풀 사이로 녹은 눈", "잔랍(殘臘)", "매화가 봄 소식 전해오고", "매화에 봄이 왔

---

62) 북쪽: 원문은 '북륙(北陸)'이다. 『후한서(後漢書)』「율력지(律曆志)」(하)에 보면, "해가 북쪽으로 가면 겨울, 서쪽으로 가면 봄, 남쪽으로 가면 여름, 동쪽으로 가면 봄이라 한다(日行北陸謂之冬, 西陸謂之春, 南陸謂之夏, 東陸謂之秋)"가 있다.

63) 갈대재가 움직이기 시작하네: 『후한서』「율력지」(상)에 따르면, 책력이 없던 시절에 절후(節候)를 측정하던 방법이다. 가회(葭灰)는 갈대 줄기 속의 얇은 막을 태운 재를 말한다. 고대에 기후와 절기를 관찰할 때 가회를 12율관(律管) 안에 채우고 비단 천을 발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방에 놓아두고 절기를 점쳤는데, 동지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황종(黃鍾) 율관 안의 가회가 날아서 움직인다고 한다.

64) 원와(鴛瓦): 짝을 이룬 기와로 암키와와 수키와를 이른다. 원앙새처럼 수키와인 원와(鴛瓦)와 암기와인 앙와(鴦瓦)를 말한다.

65) 동지: 원문은 '아세(亞歲)'로, 버금가는 설 동지를 말한다.

66) 초주(椒酒):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산초의 열매나 꽃으로 담가 빚은 술을 초주라고 하는데, 정월 초하루에 축하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다.

다” 등

- 제동(除冬)을 나타내는 표현

“산초나무 꽃[67]에 남은 섣달”, “아름다운 누각에 봄이 왔네”, “폭죽[68] 터뜨리며 봄을 재촉하네”, “비단 방석에 앉아 밤을 지새네”[69] 등

- 윤달을 나타내는 표현

“추위가 한 해를 재촉한다”, “일 년이 경치 바뀌기를 재촉한다”, “윤달이 있어 한 해를 완성한다”, “바람은 슬프고 구름은 근심한다” 등

七伏惟

尊長, 伏惟, 恭惟, 仰惟, 欽惟.
卑幼, 緬惟, 諒惟, 想惟, 計惟.

7. 복유(伏惟)[70]

존장자의 경우: “엎드려 생각건대(伏惟)”, “공손하게 생각건대(恭惟)”, “우러러 생각건대(仰惟)”, “삼가 생각건대(欽惟)” 등등.
손아래 사람의 경우: “회상컨대(緬惟)”, “헤아려 보건대(諒惟)”, “생각

---

67) 산초나무 꽃: 원문은 ‘초화(椒花)’로, 신년(新年)을 축하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68) 폭죽: 원문은 ‘폭죽(爆竹)’으로, 섣달 그믐날 밤에 잡귀를 쫓기 위하여 청죽(靑竹)을 불에 태워 큰 폭음을 내는 풍속으로, 대불놓기라고도 한다. 그믐날 해가 지면 대문 안이나 밖에 불을 피워놓고, 마디가 있는 대나무 토막을 불에 넣으면 대나무가 폭발하여 큰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탄다. 이렇게 하면 묵은해에 집 안에 있던 잡귀들이 놀라서 달아나고, 신성하고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다.
69) 밤을 지새네: 원문은 ‘수세(守歲)’로, 그믐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풍습을 말한다.
70) 복유(伏惟):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진다.

건대(想惟)”, “가늠해 보건대(計惟)” 등

八頌德

京官. 黼黻皇猷而佐主. 開張治道以宜門. 德協天人. 功贊造化.
省官. 分治朝廷於不替. 精神國脈以揚休. 坐鎭藩邦. 德懷民子.
府官. 遠播千里之仁風. 疏通一郡之民瘼. 德崇化貢. 閭野懽騰.
縣官. 民物莫安于閭里. 盜賊不入其境界. 德化民敷. 民惠吏畏.
敎官. 道德蘊胸中之錦. 文章燦筆下之華. 化雨廣施. 文風丕振.
摠兵. 威聲遠暨于華夷. 功績高崇于社稷. 鎭節諸軍. 神明贊化.
遷官. 寵承文陛之進登. 信獲天人之協相. 德政所孚. 榮膺美調.
仕宦. 恭贊王章. 黼黻皇猷. 事業夔龍. 文章孔孟.
士人. 德業日新. 自強不息. 秀鍾山岳. 志凌煙雲.
師儒. 力軌前修. 提綱後學. 夷猶藝苑. 涵泳聖涯.
吏典. 怡神案牘. 希跡蕭曹. 案牘風淸. 文房日麗.
尊長. 神祉亨嘉. 神明叶贊. 天介壽齡. 人惟耆德.
父母. 椿臺風景益增新. 萱榭長靑爭春色. 庭 闈諄誨. 喜氣弘妙.
隱者. 逍遙人世. 卓冠群儒. 養浩林泉. 德望日 起.
朋友. 煙霞寄傲. 詩酒陶情. 遨遊湖海. 舒嘯林 泉. 咀嚼煙霞. 吟風弄月.
居喪. 讀禮之餘. 孝思罔極. 端居讀禮. 追慕方 深.
客旅. 有道有財. 筭無遺策.
醫士. 功補杏林. 天人翊助.
婦女. 壅容中閫. 淑德令儀.
僧人. 歸心象敎. 調理玄談.
道士. 不竭丹房. 荐更歲籥.

8. 송덕(頌德)

경관(京官)에 대한 표현: “조정을 보필하고 주상을 보좌하다.” “치

도를 펼치어 가문을 빛내다.” “덕이 천인과 조화를 이루다.” “공이 조화에 참여하다.” 등

성관(省官)에 대한 표현: “나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도와 나누어 다스리다.” “국맥을 떨치어 아름다움을 드날리다.” “진(鎭)에 거하며 나라의 울타리 노릇을 하다.” “덕으로 백성을 품다.” 등

부관(府官)에 대한 표현: “멀리 천 리에 어진 풍교를 퍼뜨리다.” “한 고을 백성의 고충과 소통하다.” “높은 덕으로 교화를 베풀다.” “고을과 들판에 기쁨이 넘쳐난다.” 등

현관(縣官)에 대한 표현: “백성과 만물이 고을에서 편히 지낸다.”[71] “경내에 도적이 들어오지 못한다.” “덕의 교화를 백성들에게 펼치다.” “백성들은 은혜롭게 여기고 서리들은 경외한다.” 등

교관(敎官)에 대한 표현: “비단 같은 흉중에 도덕을 품고 있다.” “붓 아래에는 화려한 문장이 찬란하다.” “비와 같은 은혜를 널리 베풀다.” “문풍을 크게 떨치다.” 등

총병(摠兵)에 대한 표현: “위엄과 성망이 중화와 이적에게까지 멀리 미친다.” “공적이 사직에 드높다.” “제군을 절도 있게 진수한다.” “신명께서 교화를 돕는다.” 등

천관(遷官)[72]에 대한 표현: “성은을 입어 문계에서 높은 곳에 오르다.” “천인의 도우심을 얻다.” “덕정이 미쁨을 얻어 영화롭게 승진하심을 입다.” 등

사환(仕宦)에 대한 표현: “공경히 왕의 법도를 돕다.” “조정을 보필하다.” “기(夔)나 용(龍)[73]과 같은 사업을 이루다.” “공자나 맹자와 같은 문장을 이루다.” 등

사인(士人)에 대한 표현: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다.” “자강불식하다.” “산악처럼 빼어난 기운을 타고 나다.” “구름을 찌를 듯한 뜻을 지니다.” 등

---

71) 편히 지낸다: 원문은 ‘민물막안(民物莫安)’이지만, ‘민물부안(民物阜安)’의 오기로 보이기에 고쳐 해석했다.

72) 천관(遷官): 승진해 가는 관리를 말한다.

73) 기(夔)나 용(龍): 순 임금 때의 어진 신하 이름이다.

사유(師儒)에 대한 표현: “전대의 빼어난 전범을 힘써 따르고, 후학을 이끌어주다.” “예원(藝苑)에서 유유자적하며 성인의 물가에서 헤엄치다.” 등

이전(吏典)[74]에 대한 표현: “문서를 보며 기뻐하다.” “소하(蕭何)나 조참(曹參)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 “문서에 청아한 풍취가 느껴진다.” “글방이 날로 환히 빛나다.” 등

존장자에 대한 표현: “신의 도움으로 형통하고 길하다.” “친명께서 도우신다.” “하늘이 장수를 내리시다.” “사람들이 기로(耆老)의 덕을 기린다.” 등

부모에 대한 표현: “춘대(椿臺)[75]의 풍경이 날로 새로워지다.” “훤사(萱榭)[76]의 푸르름이 춘색을 다툰다.” “정위(庭闈)의 간곡한 깨우침”, “기쁜 기운이 널리 퍼진다.” 등

은자에 대한 표현: “인간세상을 소요하다.” “뭇 유자들 중 으뜸이다.” “수풀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다.” “덕망이 날로 일어난다.” 등

벗에 대한 표현: “안개와 노을 속에 오만함을 기탁하다.” “시와 술로 성정을 도야하다.” “호수와 바다를 실컷 유람하다.” “수풀 속에서 휘파람을 불다.” “안개와 노을을 씹어 음미하다.” “음풍농월” 등

거상(居喪)하는 자에 대한 표현: “독례(讀禮)[77]하고 난 뒤에” “효심이 끝도 없다.” “단정히 거하며 독례하다.” “추모의 정이 깊다.” 등

객려(客旅)에 대한 표현: “뜻도 있고 재물도 있다.” “술책의 계산은 틀림이 없다.” 등

의사에 대한 표현: “공으로 행림(杏林)[78]을 보완하다.” “천인이 돕는다.” 등

---

74) 이전(吏典): 이속(吏屬) 즉 아전들을 말한다.

75) 춘대(椿臺): 참죽나무[椿]는 장수하는 나무이므로 고령자 혹은 부모를 상징한다.

76) 훤사(萱榭): 원추리[萱] 역시 부모님 혹은 부모님의 거주지를 상징한다.

77) 독례(讀禮): 옛날에는 집에서 거상하면서 상제(喪祭)에 관한 예법서를 읽었기에 거상을 독례라고도 칭했다.

78) 행림(杏林): 공자가 행단(杏壇)에서 강학했다 하여 행림은 곧 유림(儒林)을 가리킨다.

부녀에 대한 표현: “정숙히 내실에 거하다.” “맑은 덕, 고운 의표” 등

승려에 대한 표현: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다.” “현담을 연구하다.” 등

도사에 대한 표현: “단방(丹房)[79]이 다하지 않다.” “해마다 더욱 새로워진다.” 등

九神相

官員. 位隆望重. 帝眷神扶. 天人交相. 朝野攸禧. 神人共相.
尊長. 年高德邵. 天祐人瞻. 天人孚佑.
商旅. 神衛行軒. 動止神扶. 天錫純嘏.
居喪. 讀禮居憂, 靡神不佑. 神相仁孝.
僧人. 龍衛梵天, 虎護佛地. 龍天淸肅. 牛地賁天.
道士. 天風吹靈. 道日垂照. 紫虛翊衛.

9. 신상(神相)

관원에 대한 표현: “지위가 높고 명망이 무겁다.” “천인이 서로 돕는다.” “조야에서 복을 준다.” “신과 사람이 함께 돕는다.” 등

존장자에 대한 표현: “춘추 높으시고 덕이 아름답다.” “하늘이 보우하고 사람이 우러른다.” “천인이 기꺼이 돕는다.” 등

상려(商旅)[80]에 대한 표현: “다니는 수레를 신께서 지켜주신다.” “가건 멈추건 신이 붙들어주신다.” “하늘이 큰 복을 하사하신다.” 등

거상하는 자에 대한 표현: “상중에 신께서 보우하신다.” “신께서 어진 효자를 돕는다.” 등

승려에 대한 표현: “용이 범천(梵天)[81]을 지키고, 호랑이가 불지를

79) 단방(丹房): 도사가 단약을 다리는 집 혹은 신선이 사는 집을 말한다.
80) 상려(商旅):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말한다.

보호한다.” “청아하고 엄숙한 용천(龍天)[82)]”, “우지분천(牛地賁天)” 등

도사(道士)에 대한 표현: “천풍이 신령을 불어준다.” “도의 해가 빛을 드리운다.” “자허[83)]가 도와 지켜준다.”

十起居

官員. 台候動止百福.
尊長. 尊候動止百福.
平交. 文候動止多福, 動履淸嘉, 福履淸適, 德履淸勝.
婦人. 懿候動止多福, 懿候起居多福.
居喪. 孝履如宜, 孝履淸安.
僧人. 法候動止多福.
道士. 道候興居多福, 神候動止淸勝.

10. 기거(起居)

관원에 대한 표현: “대감의 기체후가 백복하시길 바랍니다.” 등

존장자에 대한 표현: “존후(尊候)[84)]의 기체후가 백복하시길 바랍니다.” 등

동년배[85)]에 대한 표현: “문후께서는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

81)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다.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 인도의 힌두교에서 비슈누, 시바와 함께 3대 신 중의 하나로 존중받았던 신이다. 제석천과 같이 초창기 불교에서부터 수용되어 석가모니의 전기(傳記)에도 자주 등장하며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감화되어 불법을 지키는 호법수호신(護法守護神)이 되었다.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돌베개, 2009년

82) 용천(龍天): 천룡팔부(天龍八部)를 가리킨다. 모두가 호법신이다.

83) 자허(紫虛): 도가에서 말하는 여자 선인(仙人)이다.

84) 존후(尊候): 주로 편지글에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85) 동년배: 원문은 ‘평교(平交)’로, 상하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교제 혹은 동

체 만강하시길”, “귀체 건강하시길”, “귀체 편안하시길” 등

부인(婦人)에 대한 표현: 의후의 기체후가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후의 기체후가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등

거상하는 자에 대한 표현: “상중에 귀체 건강하시기를”[86], “상중에 귀체를 편안하게 가지시길” 등

승려에 대한 표현: “법후의 귀체가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등

도사에 대한 표현: “도후의 귀체가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후의 기체후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등

十一欣喜

無任欣慰, 不勝欣忭, 不勝欣慕, 大慰鄙懷, 欣慰如之, 不勝欣躍, 欣羨欣羨, 喜慰喜慰, 歆羨歆賀.

11. 흔희

“기쁨을 이길 길이 없사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 “기쁨과 흠모의 마음 이길 길이 없사옵니다”, “비루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기쁘고 위안이 됩니다”,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등

十二自敍

第生家事碌碌, 不如意者十常八九, 豈足爲知厚者道也!

顧生井蛙眼界, 高臥轅門, 僅得偷安于日月而已, 奚足爲古人念哉!

若生則長途久困, 浪蕩天涯, 奚足爲知己者道哉!

愚輩辱蒙德敎, 襪線短才, 豈勞高明者齒錄!

---

년배끼리의 교제를 말한다.

86) 효리(孝履): 상중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말로, 상중의 행동거지를 말한다.

12. 자서

“그저 소생 집안 일이 바빠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열에 여덟아홉이니, 어찌 후덕한 도를 아는 자라 일컬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소생은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견해로 군영에서 베개를 높이고 편히 누워 그저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어찌 고인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소생 같은 자는 멀리서 오랫동안 곤궁하게 지내고 하늘가에서 방탕하게 지낼 뿐인데, 어찌 지기(知己)라 일컬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제가 외람되이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나 보잘 것 없는 재주로[87] 어찌 고명하신 분을 수고롭게 해 등용될 수 있겠습니까!”

十三少稟

官員. 敢冒鈇鉞, 上瀆嚴聽! 僭有瑣事, 上干尊聽.
尊長. 僭有稟懇. 冒瀆崇嚴. 仰恃謙光, 輒有稟懇.
通用. 仰恃蘭契, 少有稟瀆. 竝恃尊愛, 特有稟瀆. 仰瀆淸聽. 竝恃久契, 敬有少白.

13. 소품

관원에 대한 표현: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웃전에 번거로움을 끼쳤습니다.” “참람되이 보잘 것 없는 일로 웃전의 귀를 범하였습니다.”

존장자에 대한 표현: “참람되이 간곡히 아뢰었나이다.” “감히 지엄하고 높으신 분을 어지럽혔나이다.” “겸손하신 덕을 우러러 믿고서 간곡히 아뢰었나이다.” 등

통용되는 표현: “우러러 친구 사이의 우정[88]을 믿고 잠시 폐를 끼

87) 보잘 것 없는 재주로: 원문은 ‘말선(襪線)’이다. 버선의 끈은 그 끈이 길지 아니하므로, 전하여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재능을 말한다.
88) 친구 사이의 우정: 원문은 ‘난계(蘭契)’로, 금란지교(金蘭之交)와 같다. 마

쳤네.”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만 믿고 폐를 끼쳤네.” “맑으신 귀를 우러러 어지럽혔나이다.” “오랜 사이인 것만 믿고 삼가 적어보았습니다.” 등

十四人事

玆者某云云.
向者某云云.
前者某事云云.

14. 인사

“지금 아무개 운운.” “일전에 아무개가 운운.” “전에 아무 일 운운” 등

十五臨書

臨書悚悚之至. 臨書無任瞻企. 臨書依依神馳左右. 臨書不勝瞻仰.

15. 임서

“서찰을 쓰면서 지극히 황공하옵니다.” “서찰을 쓰면서 뵙고 싶은 마음 이길 길 없사옵니다.” “서찰을 쓰면서 그대를 찾아뵙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서찰을 쓰면서 그리움과 사모의 마음 이길 길이 없사옵니다.” 등

---

음이 통하는 사람끼리의 친밀한 사귐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 다음 구절이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즉 쇠같이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귐처럼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이르는 말이다.

十六保重

官員. 伏惟爲國爲民自重. 惟冀若時珍變, 以膺大用
通用. 伏惟順時珍攝. 萬望自愛爲祝. 伏惟順時自珍. 無任惓惓
喪服. 惟節愛順變, 以盡大事. 惟抑情從禮, 以盡 繼述之善.

16. 보중

관원에 대한 표현: “엎드려 바라건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소서.” “바라건대 지금 변화를 소중히 대하심으로써 큰 쓰임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등

통용되는 표현: “엎드려 바라건대 때에 순응하고 섭생을 소중히 하십시오.” “부디 자중자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때에 순응하시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이길 길이 없나이다.” 등

거상 중인 자에 대한 표현: “슬픔을 잘 다잡고 변고에 순응하시어 대사를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잡고 예법에 따라 조상의 뜻과 사업을 잘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등

十七祈亮

伏惟亮照. 統祈照亮. 總惟情炤. 萬惟淸鑑. 伏乞台照.

17. 기량

“엎드려 바라건대 서찰을 잘 살펴보아 주십시오.” “모두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사정을 밝히 살펴주십시오.” “부디 통찰하여 주십시오.” “크게 살펴주시길 엎드려 바라옵니다.” 등

十八結尾

不宣. 不備. 不悉. 不旣. 不盡. 不贅. 不具. 不一. 草草不盡. 聊此布悃.

18. 결미

“이만 줄이겠나이다(不宣)”, “다 적지 못했습니다.(不備, 不悉, 不旣, 不盡, 不贅, 不具, 不一)”“부랴부랴 쓰느라 다 적지 못했습니다(草草不盡)”,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聊此布悃)” 등 .

一具禮

具禮先具自己之名, 乃拜上也. 拜上發詞, 自稱某上某端肅書拜.

1. 예의 갖추기

예의를 갖출 때는 먼저 자기의 이름을 쓰고 인사를 한다. “인사 올립니다”를 시작으로 해서 자칭한 후 “아무개가 예의를 갖춰 인사 올립니다.”라고 하면 된다.

존장자가 쓸 때
열백(劣伯)/열부(劣父)/열조(劣祖)/열숙(劣叔)/열형(劣兄)
아무개가 글로 고한다/부친다/ 글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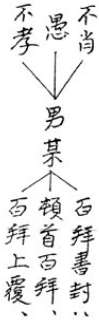


아들이 쓸 때
불효자/소생/불초자
아들 아무개가 거듭 절을 하며 서신을 보냅니다/머리 조아리고 절합니다/백배 절하고 아룁니다.

존장자가 아랫사람에게 보낼 때
열형/열백/우숙/우백/노부/노조부
아무개가 글/편지/서신을 보낸다/부친다/준다/부친다/전한다/전달한다

종족 통용
종말(宗末)[89]/족말(族末)[90]/종방(宗枋)/족제(族弟)/족질(族姪)
아무개가 재배하며 편지를 올립니다/머리 조아리고 재배합니다/절하며 아룁니다

89) 종말(宗末): 친척이지만 같은 파가 아닌 경우 본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90) 족말(族末): 나이 많고 항렬이 낮은 사람이 항렬이 높은 젊은 족친에게 자기를 낮추어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아랫사람이 쓸 때
우질(愚姪)/부재질(不才姪)/열질(劣姪)/우재(愚弟)/부재제(不才弟)/열제(劣弟)
아무개가 재배하며 편지를 올립니다/머리 조아리며 재배올립니다/재배하며 바칩니다

아랫사람이 존장자에게 올리는 경우
불초손(不肖孫)/불초자(不肖子)/우질(愚姪)/부재제(不才弟)/부재손(不才孫)
아무개가 안부 편지 올리며 인사드립니다/백배하며 서신을 바칩니다/머리를 조아리며 백배를 올립니다/재배하며 서신을 올립니다/안부편지 올립니다

부인이 쓸 때
박명/아(阿)/기추(箕箒)[91]첩/노/부/첩
아무개 씨 부인이 편지를 아룁니다(회신용)/절 올리며 편지를 보냅니다/편지를 보냅니다(보내는 편지용)

91) 기추(箕箒): 쓰레받기와 빗자루라는 뜻으로 신하 혹은 부인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한다.

권속가의 서신

욕인척(辱姻戚)/권생(眷生)[92]/인생(姻生)[93]/척말(戚末)[94]/ 인말(姻末)[95]/첨권(忝眷)[96]/첨말(忝末)

아무개가 재배하며 편지를 아룁니다/단정하고 정숙하게 편지를 씁니다/단정하고 바르게 편지 올리며 인사드립니다/깨끗하게 목욕재계한 후 엎드려 인사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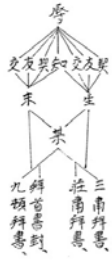

평교끼리 쓸 때

욕계생(辱契生)/욕우생(辱友生)/욕교생(辱交生)/욕지생(辱知生)/욕계말(辱契末)/ 욕우말(辱友末)/욕교말(辱交末)

아무개가 세 번 숙배하고 편지를 올립니다/엄숙하게 절하며 편지 올립니다/절 올리며 편지를 부칩니다/아홉 번 절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친구 간의 서신

애하생(愛下生)/시교생(侍教生)/만시교생(晩侍教生)

아무개가 머리 조아리며 재배합니다/삼가 글로 아룁니다/단정하고 장엄하게 서신으로 인사 올립니다

향생(鄕生) 아무개가 머리 조아려 받들어 올립니다

교하제생(教下弟生)/권애제생(眷愛弟生)/치하제생(治下弟生) 아무개가 세 번 숙배하고 편지를 올립니다/머리 조아리며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일을 기록하여 아룁니다

---

92) 권생(眷生): 인척 간에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명칭이다.

93) 인생(姻生): 인척 간에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명칭을 말한다.

94) 척말(戚末): 성(姓)이 다른 친척 사이에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명칭이다.

95) 인말(姻末): 이모나 이모부, 고모부가 이질(姨姪)이나 처질(妻姪)에게 자기를 겸칭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96) 첨권(忝眷): 고모의 시부모에 대해 자신을 이르는 명칭이나, 혼사에서 양가의 가장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위나 생질이 쓸 때
열우서(劣愚婿)/욕관생(辱館甥)/열우생(劣愚甥)
아무개가 머리 조아려 절하며 서신 올립니다/머리 조아려 백배 인사하고 편지 올립니다/머리 조아려 편지를 올립니다

장인이 쓸 때
열척(劣戚)/열구(劣鼻)
아무개 서(壻)/생(甥)

학생이 쓸 때
교하생(敎下生)/문하생(門下生)
아무개가 머리 조아려 백배 인사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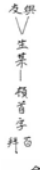


스승이 쓸 때
여생(與生)/우생(友生)
아무개가  머리 조아려 편지 올리며 백배 인사올립니다

스님이 쓸 때
빈승(貧僧)/ 빈석(貧釋)
아무개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황송하여/ 예를 갖추어/스님께 아룁니다/편지를 올립니다/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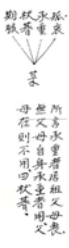

상주가 쓸 때

고애(孤哀)[97]/승중(承重)/장기(杖朞)[98]/기보(期服)

아무개

여기서 말한 승중(承重)은 조부모상을 당했을 때 부모가 계시지 않아 자신이 대신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승중이라 하지 않고 장기(杖朞)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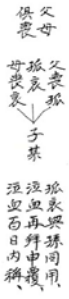

상복 입은 자가 쓸 때

부모 모두 상을 당했을 때

부상고자(父喪孤子)/손애자(孫哀子)/모상애자(母喪哀子)

아무개가 상주 및 손자가 함께 씁니다/피눈물을 흘리며 재배하고 알립니다/피눈물을 흘리며 백일 내에 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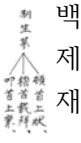

백일외용

제생(制生) 아무개 머리 조아리며 편지 올립니다/머리 조아려 재배합니다/머리 조아리며 위에 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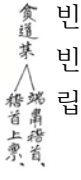

빈도가 쓸 때

빈도(貧道) 아무개가 단정하고 정숙하게 인사 올리며 편지를 올립니다/머리 조아리며 위에 고합니다.

一呼稱

一奉家眷不稱姓名, 同宗者不書姓.

祖父. 祖父老大人 座前.

---

97) 고애(孤哀): 부모를 모두 여읜 상주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명칭이다.

98) 장기(杖朞): 상주가 상장을 짚고 생베로 지은 상복을 일 년 동안 입는 거상을 말한다.

祖母. 祖母老孺人 懿德.
稱他人曰. 令祖令祖母.

1. 호칭
가족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같은 집안일 경우 성을 적지 않는다.

조부: “조부 좌전(祖父 座前)”, “노대인 좌전(老大人 座前)”
조모: “조모(祖母) ”, “노유인(老孺人)”, “의덕(懿德)”
다른 사람에 대한 호칭: “영조(令祖)”, “영조모(令祖母)”

自答之曰. 家祖家祖母.
父曰: 嚴君老大人 座前.
母曰: 母親老孺人 膝下.
稱他人曰. 令尊令堂.

자기 집안의 경우: “가조(家祖)”, “가조모(家祖母)”
부친: “엄군 좌전(嚴君 座前)”, “노대인 좌전(老大人 座前)” 등
모친: “모친 슬하(母親 膝下)”, “노유인 슬하(老孺人 膝下)”
다른 사람의 경우: “영존(令尊)”, “영당(令堂)” 등

自稱之曰. 家父家母.
伯叔: 伯叔父大人 侍前.
姆嬸: 伯母叔嬸孺人 尊前.
伯叔公: 伯叔祖老大人 台座.
伯叔婆: 伯叔婆老孺人 台座
稱他人曰. 令伯翁令叔翁.

자기 집의 경우: “가부(家父)”, “가모(家母)” 등
백부 숙부: “백부 시전(伯父 侍前)”, “대인 시전(大人 侍前)”, “숙부

시전(叔父 侍前)”, “대인 시전(大人 侍前)”
백모 숙모: “백모 존전(伯母 尊前)”, “유인 존전(孺人 尊前)”, “숙심 존전(叔嬸 尊前)”, “유인 존전(孺人 尊前)”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백조 대좌(伯祖 台座)”, “노대인 대좌(老大人 台座)”, “숙조 대좌(叔祖 台座)”, “노대인 대좌(老大人 台座)”
큰 할머니, 작은 할머니: “백파 대좌(伯婆 台座)”, “노유인 대좌(老孺人 台座)”, “숙파 대좌(叔婆 台座)”, “노유인 대좌(老孺人 台座)”
다른 사람의 경우: “영백옹(令伯翁)”, “영숙옹(令叔翁)”
自稱之曰. 家伯祖 家叔祖.
兄曰長兄大人 侍右.
嫂曰家嫂夫人 粧次.
稱他人曰. 令兄令嫂.

자기 집의 경우: “가백조(家伯祖)”, “가숙조(家叔祖)”
형: “장형 시우(長兄 侍右)”, “대인 시주(大人 侍右)”
형수: “가수 장차(家嫂 粧次)”, “부인 장차(夫人 粧次)”
다른 사람의 경우: “영형(令兄)”, “영수(令嫂)”

自稱之曰. 家兄家嫂.
弟曰賢弟 開緘.
弟婦. 賢弟婦.
稱外人曰令弟令弟婦.

자기 집의 경우: “가형(家兄)”, “가수(家嫂)”
동생의 경우: “현제 계함(賢弟 開緘)”
제수씨의 경우: “현제부(賢弟婦)”
다른 사람의 경우: “영제(令弟)”, “영제부(令弟婦)”

自答之曰, 舍弟舍弟婦.
姪曰, 賢姪開緘. 姪婦賢姪婦.

子曰, 子某. 孫曰某孫男. 婦兒媳. 孫婦孫媳.
稱外人曰令郞令媳.

자기 집의 경우: “사제(舍弟)”, “사제부(舍弟婦)”
조카의 경우: “현질 계함(賢姪 開緘)”, 질부의 경우: “현질부(賢姪婦)”
아들의 경우: “자모(子某)”, 손자의 경우: “모손남(某孫男)”, 며느리의 경우: “아식(婦兒媳)”, 손자의 부인의 경우: “손식(孫媳)”
다른 사람의 경우: “영랑(令郞)”, “영식(令媳)”

自答之曰小兒小媳
稱外人曰令姪令姪婦.

자기 집의 경우: “소아(小兒)”, “소식(小媳)”
다른 사람의 경우: “영질(令姪)”, “영질부(令姪婦)”

自答之曰舍姪舍姪婦
稱外人曰令孫令孫媳.

자기 집의 경우: “사질(舍姪)”, “사질부(舍姪婦)”
다른 사람의 경우: “영손(孫令)”, “영손식(令孫媳)”

自答之曰小孫小孫媳.
夫曰夫君良人足下.
妻曰賢妻芳卿足下.

자기 집의 경우: “소손(小孫)”, “소손식(小孫媳)”
남편의 경우: “부군 족하(夫君 足下)”, “양인 족하(良人足下)”
아내의 경우: “현처 족하(賢妻 足下)”, “방경 족하(芳卿 足下)”

妻稱外人曰令正. 答曰房下.
妾稱外人曰令可. 答曰小妾.
稱人女曰令愛. 答曰小女

다른 사람의 아내는 “영정(令正)”, 자기 아내는 “집사람[房下]”라 한다.
다른 사람의 첩은 “영가(令可)”, 자기 첩은 “소첩(小妾)”이라 한다.
다른 사람의 딸은 “영애(令愛)”, 자기 딸은 “소녀(小女)”라 한다.
稱人僕曰盛僕. 答曰小价.
다른 사람의 하인은 “성복(盛僕)”, 자기 하인은 “소가(小价)”라 한다.

親戚類
外公. 外祖某姓老大人 侍前.
外婆. 外祖母老孺人 侍前.
母舅. 母舅某姓老大人 侍前.
母妗. 妗母老夫人 侍前.
妻父. 泰山岳父老大人 門下.
妻母. 岳母老夫人 粧次.
妻兄. 尊舅某號先生 門下.
妻姪. 某儒茂才賢姪 文几.
女婿. 大德配某先生, 賢婿.

친척

외할아버지: “외조 아무개 시전(外祖某姓 侍前)”, “노대인 시전(老大人 侍前)”
외할머니: “외조모 시전(外祖母 侍前)”, “노유인 시전(老孺人 侍前)”
외삼촌: “모구 아무개 시전(母舅某姓 侍前)”, “노대인 시전(老大人 侍前)”
외숙모: “금모 시전(妗母 侍前)”, “노부인 시전(老夫人 侍前)”

장인: “태산 문하(泰山 門下)”, “악부 문하(岳父 門下)”, “노대인 문하(老大人 門下)”
장모: “악모 장차(岳母 粧次)”, “노대인 장차(老夫人 粧次)”
처형: “존구 아무개 문하(尊舅 某號 門下)”, “선생 문하(先生 門下)”
처질(妻姪): “모유 무재 문궤(某儒茂才 文几)”, “현질 문궤(賢姪 文几)”
사위: “대적배모선생(大德配某先生)”, “현서(賢婿)”

稱人婿曰令婿. 答曰小婿. 稱人甥曰宅相. 答 曰外甥.

다른 사람의 사위는 “영서(令婿)”, 대답할 때 자기 사위는 “소서(小婿)”이다.
다른 사람의 외손은 “택상(宅相)”, 대답할 때 자기 외손은 “외생(外甥)”이다.

姊夫. 尊姊夫某號某先生 侍右.
妹夫. 賢妹夫某號 執事.
姑夫. 尊姑夫某號某先生 侍右.
姨夫. 某號尊襟先生 文几.
表兄. 尊表兄某號某先生 文右.
親家. 尊姻家某號大人 門下.
親母. 尊親家母老夫人 粧前.

자형(姊夫): “존자부 모호 모 선생 시우(尊姊夫某號某先生 侍右)”
매부: “현매부 모호 집사(賢妹夫某號 執事)”
고모부: “존고부 모호 모 선생 시우(尊姑夫某號某先生 侍右)”
이모부: “모호 존 금형 선생 문궤(某號尊襟先生 文几)”
외사촌형: “존표형 모호 모 선생 문우(尊表兄某號某先生 文右)”
친가(親家): “존인가 모호 문하(尊姻家某號 門下)”, “대인 문하(大人 門下)”

친모(親母): “존친가모 장전(尊親家母 粧前)”, “노부인 장전(老夫人 粧前)”

師父類

先生. 大宗師某號某夫子. 函丈.
門生. 賢契某字. 英畏.
鄉宦. 大柱石某號某先生. 台座前.
擧人. 大春元某號生生. 台下.
監生. 大監元某號老先生 文几.
生員. 大秋元某號某先生 文几.
儒士. 大養元某號某生生 文几.
省吏. 大佐理某號某先生 案前.
府吏. 大府振某號某相公 案前.
都吏. 大督振某號某相公 案前.
縣吏. 大邑振某號某相公 案前.
書手. 大掌文某號某先生 文案.
詩人. 大詩伯某號某先生 文席.
星士. 大洞微某號某先生 司臺.
相士. 大風鑑某號兄 足下.
禪師. 大禪師某先生 蓮座下.
道官. 天師使某先生 法座下.
道士. 大眞人某先生 雷擅.
隱士. 待微某先生 文几.
命婦. 郡居老夫人 粧次.
父喪. 大孝某人苫次. 百日內苫次次百日外苫次.
母喪. 至孝某人苫次. 百日內苫次百日外服次.

스승

선생: “대종사 모호 모부자(大宗師某號某夫子)”, “함장(函丈)”
문하생: “현계 모자(賢契某字)”, “영외(英畏)”
향환(鄕宦): “대주석 모호 모선생 전(大柱石某號某先生 前)”, “대좌전(台座前)”
거인(擧人): “대춘원 모호 선생(大春元某號生生)”, “대하(台下)”
감생(監生): “대감원 모호 노선생 문궤(大監元某號老先生 文几)”
생원(生員): “대추원 모호 모선생 문궤(大秋元某號某先生 文几)”
유생(儒生): “대양원 모호 모선생 문궤(大養元某號某生生 文几)”
성리(省吏): “대좌리 모호 모선생 안전(大佐理某號某先生 案前)”
부리(府吏): “대부진 모호 모상공 안전(大府振某號某相公 案前)”
도리(都吏): “대독진 모호 모상공 안전(大督振某號某相公 案前)”
현리(縣吏): “대읍진 모호 모상공 안전(大邑振某號某相公 案前)”
서수(書手): “대장문 모호 모선생 안전(大掌文某號某先生 文案)”
시인(詩人): “대시백 모호 모선생 문석(大詩伯某號某先生 文席)”
점성술사(星士): “대통미 모호 모선생 사대(大洞微某號某先生 司臺)”
관상가(相士): “대풍감 모호 형 족하(大風鑑 某號 兄 足下)”
선사(禪師): “대선사 모선생 연좌하(大禪師某先生 蓮座下)”
도관(道官): “천사사 모선생 법좌하(天師使某先生 法座下)”
도사(道士): “대진인 모선생 뇌천(大眞人某先生 雷擅)”
은사(隱士): “대미 모선생 문궤(待微某先生 文几)”
명부(命婦): “군거노부인 장차(郡居老夫人 粧次)”
부친상: “대표모인 점차(大孝某人苫次)”, “백일내점차차백일외점차(百日內苫次次百日外苫次)”
모친상: “지효모인점차(至孝某人苫次)”, “백일내점차백일외복차(百日內苫次百日外服次)”

婦人
夫人. 恭人. 宜人. 令人. 貞人. 孺人 粧次.

부인에 대한 호칭

“부인 장차(夫人 粧次)”, “공인 장차(恭人 粧次)”, “의인 장차(宜人 粧次)”, “영인 장차(令人 粧次)”, “정인 장차(貞人 粧次)”, “유인 장차(孺人 粧次)”

壬寅五月初三日錄
冠帶, 烏帽, 犀帶, 角帶, 垈團領, 苧加文二 原註. ⊙乎音. 苧文蓋二 原註. 苧秋里中赤三 原註. 苧道袍. 布道袍二 原註. 능이中赤莫三 原註. 누이바다二 原註. 布裳四 原註. 赤衫二 原註. 孺中赤莫. 孺裳. 靴. 具精. 綿紬中赤莫, 布中赤莫. 寢具. 衾二 原註. 枕. 褥. 士旅皮褥. 狗皮浮席. 羊赤莫
行具. 匙箸. 行器甲. 燒酒一器. 淸蜜一器. 白沙缸. 藥材行笥.

임인년 오월 초사흘 기록
관대, 오모, 서대, 각대, 솔단령, 저가문 둘(원주: ⊙호음). 저문개 둘(원주), 저추리 중치막[99] 셋(원주), 모시 도포, 베 도포 둘(원주), 능이 중치막 셋(원주), 누이바다 둘(원주), 베 치마 넷(원주), 적삼 둘(원주), 아이용 중치막, 아이용 치마, 신(靴), 혜(鞋), 구정(具精). 면주 중치막, 베 중치막.
침구: 이불 둘(원주), 베게, 요, 사저피 요,[100] 구피 부석, 양치막.
행구: 수저, 행기갑, 소주 하나, 청밀 하나, 백사항, 약재상자

書札
서찰

---

99) 중치막: 중적막(中赤莫) 혹은 중치막(中致莫)으로 표기한다. 도포와 유사한 상의이다.
100) 사저피 요: 원문에는 ‘사려피욕(士旅皮褥)’으로 되어 있으나『선조실록』 선조35년 기록에는 ‘사저피욕(士猪皮褥)으로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려’를 ‘사저’로 바꾸어 해석한다. 돼지 가죽으로 만든 요를 뜻한다.

(前缺)一年在郡, 猶以不得日承提誨爲歉. 一朝遠離台範, 耿耿實切. 小生不才罷去, 固其分也, 於杜門省嘗夫復何言? 山河悠遠, 再拜無日, 惟冀台候壽富日增. 伏惟台鑑, 謹上白是.
辛丑仲冬初吉. 李春英.

[ㅡ앞부분이 결락되어 있음ㅡ] 한 해 동안 고을에 있느라 날마다 모시고 가르침을 받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곁을 멀리 떠나고 보니, 애타는 마음 실로 간절합니다. 재주 없는 소생이 파직당한 것은 실로 분수에 맞는 일이니, 두문불출한 채 반성하며 지낸다한들 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득히 산과 강으로 막혀 있어 다시 뵈올 날 없으니, 오직 어르신의 수명이 더욱 길어지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크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글을 올리나이다.
신축년 11월 1일, 이춘영.[101]

尙州儒生韓璡, 癸卯臘月初八日來呈別紙曰: "伏以生等八代祖禮儀判書韓哲冲墓, 在陜川之心妙, 生等居數百里之外, 曾未得展謁, 今年正月, 始得往省焉. 見有二新塚, 挾葬于判書之原, 乃郡人文景進之所爲也. 上則占斷龍尾, 下則揉壞階砌, 俱不容尺焉. 是猶門庭之內, 蹂躪之我先祖明矣, 庶得少洩今生等不勝皇皇之懇. 且今我等若個子孫有之, 前皆是報復之日耶. 況我先祖仕於麗末, 文章德業, 彪炳簡策. 以國家褒

101) 이춘영(李春英: 1563~1606). 자는 실지(實之), 호는 체소재(體素齋).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검열이 제수되었으나 정철(鄭澈)이 파직당할 때 연루되어 삼수(三水)로 귀양 갔다. 1592년에 풀려나 다시 검열과 호조좌랑을 거쳐 임진전쟁이 치열해지자 소모관(召募官)으로 충청.전라도를 순행하였고, 이어 초계제술문관(抄啓製述文官)이 되어 중국에 구원을 청하는 주문(奏文)을 초하였다. 1601년 예천군수를 마지막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또 임진전쟁 때 타버린 선대의 실록을 보수할 때 공조정랑 겸 춘추관기사관으로 참여하였다. 시문에 능하였으며, 『해동사부(海東辭賦)』에 그의 작품이 실려 전한다. 좌찬성이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저서로는 『체소집(體素集)』 3권이 있다.

忠勸功之義而言之, 則雖未得表厥封域, 禁其樵牧, 豈可容奸人細輩, 蔑法侮賢, 恣其竊葬於咫尺也? 此而不禁, 則末世愚下之俗, 惑於風水之說, 羨慕他人好山吉地, 而不得生意於偷葬者, 將見搶臂而起, 胥傚爲奸. 士大夫百年塋墳, 一朝無完地矣, 豈非上之人痛念於此, 而絶其根抵於將前乎? 伏乞相公, 論以盜賊, 按法定罪, 移文同郡, 刻日掘拔 - 以下缺. -

상주의 유생 한진(韓璡)[102]이 계묘년 섣달 초8일에 별지를 보내와 이렇게 아뢰었다. "생(生) 등의 8대조이신 예의판서(禮儀判書)[103] 한철충(韓哲冲)[104]의 묘는 합천 심묘면(心妙面)에 있사온데, 생 등은 수백 리 밖에 사는 관계로 찾아뵙지 못하다가 올 정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무덤 두 개가 판서의 묏자리 양옆에 보였는데, 바로 고을 사람 문경진(文景進)의 소행이었습니다. 위로는 용의 꼬리를 끊어놓고, 아래로는 계단을 짓밟아 망가뜨려 놓아서, 단 한 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가문 내에서 우리 조상을 유린한 것이 분명하니, 지금 생 등의 이길 길 없는 간곡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펼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몇몇 자손들이 있사오니, 앞으로 이 일을 되갚아줄 것이옵니다. 하물며 우리 조상은 고려 말에 벼슬을 하시어, 그 문장과 덕업이 사서에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충(忠)을 포상하고 공(功)을 권면하는 뜻에 나아가 말해볼 때, 비록 봉역을 표시하거나 나무하고 목축하는 일을 금하지는 않았다지만, 어찌 간사한 무리들이 법을 멸시하고 현자를 모욕하며 제멋대로 지척에 묏자리를 몰래 파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금하지 않는다면 말세의 어리석은 민간인들이 풍수설에 현혹되어 남의 좋은 산 길한 터를 탐하게 될 것이고, 땅을 훔쳐 묻으려는 뜻이 없던 자들도 장차 일시에 일어나 너도나도 간악한 짓을

102) 한진(韓璡): 차천로(車天輅)가 지은 「공산회서(公山會序)」에 "진사 한진(韓璡), 자 중형(仲瑩), 병진생, 청주인, 상주 거주"라는 내용이 보인다.
103) 예의판서(禮儀判書): 고려 시대 때 예의사의 으뜸 벼슬.
104) 한철충(韓哲冲): 경상도 상주 지역의 고려말 절의인(節義人)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고려말 전번판서로 상주에 낙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 할 것입니다. 사대부가 백년의 선영 중에 하루아침에 온전한 땅이 남아나지 않게 된다면,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를 가슴 아파하면서 미리 그 싹을 잘라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으려 상공께 비오니, 도적으로 논죄하시어 법에 따라 죗값을 정하시고, 같은 고을에 이문을 보내서 그 즉시 파내도록 해주시옵소서. [ㅡ아래 부분이 결락되어 있음 ㅡ]

敬呈老先生座下
毫端黃道起天庭, 後出吾猶識典刑. 曾賜衛宮靈壽杖, 却爲南極老人星.
商都歸客狐裘敝, 洛下征鴻海路冥. 東閣再規何日是? 不堪衰淚一沾纓.
辛丑孟冬李春英頓首.

삼가 노선생 좌하에게 바칩니다.

붓 끝의 황도가 천정(天庭)에서 일어나니,
내 비록 후에 났어도 전형을 알아보네.
일찍이 위궁(衛宮)의 영수장(靈壽杖)[105]을 하사받더니,
도리어 남극노인성[106]이 되었네.
상도(商都)에서 돌아오는 객 여우가죽옷 헤지고,
낙하(洛下)로 돌아가는 기러기 바닷길이 어둡네.
동각에서 다시 뵈올 날 언제인가?
쇠잔한 눈물이 갓 끈에 떨어지네.

---

105) 영수장(靈壽杖): 영수목(靈壽木)으로 만든 지팡이로 궤장을 하사할 때 원로를 예우하는 최고의 선물로 꼽힌다.
106)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우리 전통 천문학의 28수 가운데 각(角)과 항(亢)에 속해 있다. 남극노인성은 28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 수성(壽星)이라고도 한다. 남극노인성은 오래된 별인만큼 수염이 긴 대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흔히 묘사되며, 인간의 행복과 장수를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쟁이나 치안이 불안하면 보이지 않다가 천하가 태평을 누릴 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극노인성이 보이면 행복과 장수를 기원해 왔다.

신축년 10월, 이춘영이 머리 조아리다

桃村八詠. 臨淵, 裵令公號也.
桃源本在武陵中, 千古風煙秘不通. 說與人間神境界, 生憎當日捕魚翁.
右村名.

「도촌팔영」 임연은 배영공[107]의 호이다.
도원은 본디 무릉에 있어
천고 동안 바람과 안개 통하지 않았네
인간과 신의 경계 다르다고 말한
그 시절 고기잡이 어부 너무도 미워라

위는 「마을 이름」이다.

有水無山唯智樂, 有山無水亦仁偏. 主人占勝兼山水, 動靜何憂落一邊.
右亭名.

물만 있고 산이 없으면 지자(智者)만이 좋아하고,
산만 있고 물이 없어도 인자(仁者)만이 좋아하네.
주인께서는 물과 산 겸한 승지를 차지하였으니,
동정(動靜) 간에 한 쪽에 치우칠 근심일랑 없겠네.

위는 「정자 이름」이다.

臺下群魚自在游, 揚鱗縱鬣不知休. 仍思至理盈天地, 倂與鳶飛上下流.
右臨淵觀魚.

대 아래의 물고기들 자유자재로 헤엄치며,

---

107) 배 영공: 배삼익(裵三益: 1534~1588). 자는 여우(汝友) 호는 임연재로 안동에 살았다.

비늘과 갈기 맘껏 흔들며 쉴 줄을 모르네.
이에 천지 가득한 지리(至理)를 생각하며,
날아가는 솔개와 함께[108] 위아래를 떠다니네

위는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보다」이다.

石逕苔斑花木深, 煙中隱隱暮鍾音. 芒鞋竹杖獨歸去, 採藥仙翁何處尋?
右玄如訪眞.

이끼자국 낀 돌길엔 화목이 그윽이 깊은데,
안개 속에 은은히 저녁 종소리 들려오네.
집신에 죽장 짚고 홀로 돌아갔으니,
약초 캐는 선옹(仙翁)을 어디에서 찾으리?

위는 「현여로 진인을 찾아가다」이다.

誰把紅桃麥岸裁? 枝枝輝暎碧波開. 東風且莫輕吹擻, 怕有漁郎覓路來.
右春.

누가 붉은 도화를 보리 언덕에 심었을까?
가지마다 눈부신 꽃이 푸른 물결 속에 피어났네.
동풍아 선뜻 불어와 꽃잎 떨어뜨리지 마라,
어부가 길 찾아올까 두려우니 말이다.

위는 「봄」이다.

落盡群花春又歸, 南原綠草政芳菲. 天敎躑躅生新色, 白白紅紅暎翠微.
右夏.

---

108) 솔개와 함께: "솔개는 날아 하늘에 닿고, 물고기는 연못에 뛰노는구나(鳶飛戾天, 魚躍于淵)."라 하는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온갖 꽃들 다 지고 봄 또한 저물어가니,
남쪽 언덕 푸른 풀이 흐드러지게 자랐구나.
하늘이 철쭉꽃에 새로운 빛을 선사하니,
희고도 붉은 꽃잎이 녹음 속에 비추이네.

위는 「여름」이다.

陣陣西風入夜窓, 叫霜新寫下澄江. 一輪山月明如晝, 黃菊叢邊擬酒缸.
右秋.

살랑살랑 서풍이 밤의 창가로 들어오니,
첫 서리가 내려 맑은 강을 씻어 내렸네.
둥근 산 달은 대낮처럼 밝고,
노란 국화 떨기는 술항아리인 듯하구나.

위는 「가을」이다.

天地嚴凝雪片零, 四山環匝玉爲屛. 寒江釣罷歸來好, 月下柴扉夜不扃.
右冬.

얼어붙은 천지엔 눈송이가 흩날리고,
사방 산엔 옥으로 병풍이 둘렸네.
차가운 강에서 낚시 마치고 흐뭇하게 돌아와 보니,
달 아래 사립문은 밤에도 열려 있네.

위는 「겨울」이다.

琴易堂, 裴龍吉號.
堂號爲琴易, 知君得趣閑. 峨洋生指下, 開闔在心間. 松瀑臨風和, 梅梢滴露攀. 經營繼先志, 不獨愛溪山.

금역당은 배용길[109]의 호이다.

당의 이름이 금역인 걸 보니,
그대의 고아한 취향을 알겠네.
산도 바다도 손가락 끝에서 생겨나고,
열리고 닫히고 모두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네.
소나무 옆 폭포로 따스한 바람 불어오고,
매화 가지엔 이슬이 매달렸네.
조상의 뜻 이으려 애쓸 줄도 아나니,
계곡과 산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네.

金富倫.
琴憬彦覺. 中今上朝己丑司馬.
㦸彦愼. 中己丑司馬, 登辛丑文科.
愷彦康. 中辛卯司馬, 登辛丑文科.
恪彦恭. 早有重名, 不幸年纔十八而卒.
季光郁. 文甫
三韓壁上功臣琴容式[110]之後. 高麗學士琴儀, 乃直派祖也. 自五代祖琴淑以下, 世居禮安之浮羅村.

---

109) 배용길(裵龍吉: 1556~1609): 자는 명서(明瑞), 호는 금역당(琴易堂) 또는 장육당(藏六堂).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켜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부장으로 활약하였다. 1594년 세마(洗馬)의 직을 받고 이어 시직(侍直), 부솔(副率)을 지내고, 1597년 정유재란 때는 화의에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다.

110) 금용식(琴容式): 고려 전기의 문신. 봉화금씨(奉化琴氏)의 시조. 태사(太師) 등을 역임했으며,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올랐다.

김부륜[111]

금경 언각.[112] 금상 기축년 사마시에 합격함.

금업 언신. 기축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신축년 문과에 등과함.

금개 언강. 신묘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신축년 문과에 등과함.

금각 언공. 일찍이 명망이 높았으나 불행히도 18세에 사망함.

금계 광욱 문보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113] 금용식의 후손. 고려학사 금의가 직계파 조상. 5대조 금숙부터 대대로 예안의 부라촌에 거주함.

교정청[114] 사안축의 운을 삼가 차운함[115]

謹次校正廳賜宴軸韻

聖牖蒙昏方便切, 讐書訂諺要參詳. 窺斑詎有涓埃效? 濫吹還依日月光.

---

111) 김부륜(金富倫: 1531~1598). 자는 돈서(惇敍). 호는 설월당(雪月堂).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가산을 털어 향병(鄕兵)을 도왔고, 봉화현감이 도망가자 가현감(假縣監)이 되어 선무에 힘썼다. 김성일(金誠一).이발(李潑)과 도의를 강마하였으며,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뒤 향리에 설월당이라는 정자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였다.

112) 금경(琴憬): 자는 언각(彦覺), 호는 월담(月潭)이다. 아버지는 성재(惺齋) 금난수(蘭秀), 동생이 만수재(晩修齋) 금업(琴 懺, 망월헌(望月軒) 금개(琴愷)이다.

113)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왕건(王建)은 개국에 공이 큰 배현경(裴玄慶) 등 4인을 1등 공신으로 삼고, 3등 공신에 2천여 명을 책록하여 상을 주었다. 940년(태조 23) 신흥사(神興寺)에 공신당을 설치하고 1등 및 2등 개국공신의 화상을 동서 벽에 그려 해마다 복을 비는 대회를 열었다.

114) 교정청: 조선시대 서적 편찬할 때 교정, 보완을 위해 설치한 임시 기구를 이르던 말이다.

115) 교정청……차운함: 이 시는 『성극당선생문집(省克堂先生文集)』에 들어 있다. 성극당은 김홍미(金弘微: 1557~1605)의 호이다. 자는 창원(昌遠)이다. 1589년 이조 좌랑으로 있을 때 남인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 그 뒤 복관되어 1592년 임진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경상좌도 도사가 되고, 이어 교리 겸 시강원 문학을 거쳐 이듬해 경연관、응교、사간、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597년 승정원 동부승지로 있을 때,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을 탄핵하여 파면하게 하고 원균을 통제사로 삼게 하는 데 가담하였다.

衆樂聞來疑帝所, 流霞傾盡認天香. 傍人欲識儒風盛, 看取一堂勝宴張.

성인도 몽매한 자도 편히 쓰게 하기 위해,
속어 바로잡고 교정하느라 상세히 참고하네.
작은 부분만 본다면 어찌 티끌만큼의 효과나 있을까?
무능한 자 잘난 체 하려 해도 해와 달의 빛에 의지해야 하네.
음악소리 들려오니 황제 계신 곳에 와있는 듯하고,
신선의 유하주 다 들이키니 천향이 무언지 알겠네.
옆에 사람들이여 성대한 유풍을 알고자 한다면,
당 가득 펼쳐진 잔치자리만 보면 될 것이오.

初到袈裟寺
一朶紅葵似解迎, 應憐病客向陽情. 小軒孤坐黃昏後. 腸斷子規三兩聲.
辛丑歲甲午旬壬寅日.

처음으로 가사사(袈裟寺)에 가다.

한 송이 붉은 접시꽃이 마중을 나온 듯,
병든 객의 볕 향하는 마음을 가련히 여기는가.
작은 집에 홀로 앉아 황혼을 넘기고 나니,
애끊는 자규(소쩍새)의 울음소리 두세 번 들여오네.

白 黎 幻 朱 靑 玄.
戌 申 午 酉 亥 丑.
乾宮. — — —應 — — --世垢.
父 兄 官 兄 孫 父.

육효점 보기[116]

| 육수(六獸) | 백호 | 구진(句陳) | 등사(騰蛇)[117] | 주작 | 청룡 | 현무 |
|---|---|---|---|---|---|---|
| 납갑(納甲) | 술 | 신 | 우 | 유 | 해 | 축 |
| 음효, 양효 | — | — | — | — | — | -- |
| | 乾卦(☰) | | | 巽卦(☴) | | |
| | ☰/☴ = 천풍구(天風姤) | | | | | |
| 세효, 응효 | | | 응(應) | | | 세(世) |
| 육친(六親) | 부 | 형 | 관 | 형 | 손 | 부 |

一爻遭月日誕吉, 遭王忠君.
양효가 월일과 만나면 탄생에 길하고, 왕과 만나면 임금께 충성한다.

丹陽守帖答書則記下
단양수령의 첩문에 답하는 글 일부

南面山直奴永叔, 鄭某宅板子浮取時, 黃腸木禁表之地外勿禁爲乎矣. 汝等徒本面居民, 一日赴役向事. 癸三月○日. 官署, 此亦中, 板子浮取時來.

---

116) 육효점: 이것은 예전에 육효(六爻)로 점을 치던 방식이다. 우선 본괘(本卦)와 지괘(之卦)를 뽑는데, 여기서 나온 괘는 천풍구(天風姤)로, 외괘(外卦)는 건괘(乾卦), 내괘(內卦)는 손괘(巽卦)이다. 그 다음으로 납갑(納甲)을 하는데, 건괘가 외괘일 때 납갑하는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오(午), 신(申), 술(戌)이 되며, 손괘가 내괘일 때 납갑하는 순서는 역시 아래에서 위로 축(丑), 해(亥), 유(酉)이다. 그 다음으로는 세효(世爻)와 응효(應爻)를 붙이고, 각각의 효에 육친을 붙인다. 천풍구의 경우, 외괘는 상효에 세(世)가 붙고, 세 효로부터 3효 위에 있는 효가 응(應)이 된다. 세 효는 점치는 자인 주체를, 응 효는 점치는 대상을 각각 상징한다. 육친의 경우, 나를 생(生)하는 것은 부모가 되고, 내가 생하는 것은 자손이 되며, 내가 극(剋)하는 것은 처재(妻財)가 되고, 나를 극하는 것은 관귀(官鬼)가 된다. 나와 같은 자는 형제이다.

117) 구진(句陳), 등사(騰蛇): 육수(六獸)에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외에 중앙(土)을 상징하는 구진과 등사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려(黎)와 환(幻)으로 표기한 것이 구진과 등사를 상징하는 듯하나, 정확한 이치는 좀 더 찾아보아야 알 듯하다.

남면의 묘직노[118] 영숙(永叔)이 정 아무개 댁의 판자를 떼어갔을 때, 황장목(黃腸木) 금표지[119] 바깥 땅은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너희들은 본 면의 주민들로서 1일에 부역에 임하도록 해라. 계○년, 3월 ○일. 관서도 이곳에 있으니 판자를 떼어갈 때 오라.

衛將
徐鈞. 朴名賢. 金遵階. 具滉. 趙鵬. 朴仁龍.

위장
서봉, 박명현, 김준계, 구황, 조붕, 박인룡

別武士
玄德顒. 白翰男. 李泰康. 李聖任. 朴仁鶴. 李祿. 金去病. 李麟貴. 鄭義邦. 余渭龍. 李忠吉. 李彦亮. 韓琦. 李大和. 李世環. 李老信. 宋錕. 殷命霖. 安哲男. 蘇季男. 盧逸男. 印弘珍. 徐貴仁. 任大年. 李應寅.

별무사
현덕옹, 백한남, 이태강, 이성임, 박인학, 이록, 김거병, 이인귀, 정의방, 여위룡, 이충길, 이언량, 한기, 이대화, 이세환, 이노신, 손곤, 은명림, 안철남, 소계남, 오일남, 인홍진, 서귀인, 임대년, 이응인

禁軍
慶宗智. 朴成浩. 李義明. 李億⊙. 金汝忱. 鄭德琦. 李德壽. 韓效良.

---

118) 묘직노(墓直奴): 주인집의 조상 묘소를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소분(掃墳)하고, 화재나 벌채(伐採)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맡은 사내종을 말한다.

119) 황장목(黃腸木) 금표지: 원문에는 '황랍(黃臘)'이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으로 볼 때 황장(黃腸) 즉 황장목이 맞는 듯해 고쳐 번역했다. 황장목은 송진이 안으로 스며들어 심재(心材)가 노란 소나무로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관리했다. 그 증거인 황장금표(黃腸禁表) 표석이 지금도 황장목이 많기로 유명한 황장산 북쪽 산자락 명전리에 남아 있다.

李克□. 李秀陽. 李今世. 梁海. 楊希迪. 鄭乃從. 安信. 宋鵬. 尹特男. 印大邦. 印得邦. 孫繼男. □慶明. 尹渭. 李克芬. 洪鵬壽. 李德春. □忠信. 崔汝海. 洪汀. 李景蕃. □□□. □賢⊙. 朴⊙. 崔世寧. 高□□. □□□. 李性馨. 李賢傑. 尹三樂. 姜應舜. 朴□. 崔大龍. 金德福. 全彦玉. 金仁瑞. 印□□. 朴濈. 金大受. 崔弘立. 金永俊. 鄭景□. 趙桸成. 韓琦. 金士龍. 李海慶. 李□□. 南俊. 李興祿. 李景臣除下 원주. 李振雲.

금군

경종지, 박성호, 이의명, 이억⊙, 김여침, 정덕기, 이덕수, 한효량, 이극□, 이수양, 이금세, 양해, 양희적, 정내종, 안신, 송붕, 윤특남, 인대방, 인득방, 손계남, □경명, 윤위, 이극분, 홍붕수, 이덕춘, □충신, 최여해, 홍정, 이경번, □□□, □현⊙, 박⊙, 최세녕, 고□□, □□□, 이성형, 이현걸, 윤삼락, 강응순, 박□, 최대룡, 김덕복, 전언옥, 김인서, 인□□, 박즙, 김대수, 최홍립, 김영준, 정경□, 조희성, 한기, 김사룡, 이해경, 이□□, 남준, 이흥록, 이경신 제하(원주), 이진운

大將軍官

南應善. 李景河. 閔沅. 金□. 鄭泳. 朴應秀. 李⊙生. 李⊙.

대장군관

남응선, 이경하, 민원, 김□, 정영, 박응수, 이⊙생, 이⊙.

封章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鄭琢, 頓首頓首謹上言于正倫立極盛德洪烈主上殿下. 伏以臣往者己亥年間, 寇亂甫定, 於其秋乞暇南歸, 老病困仍, 不獲復命, 以至於今五年矣. 聖量□垢, 旣不加罪, 反降溫諭. 恩賜不絶, □料今年, 歲餐亦及臣妻, 聖恩如天, 報效無地. 伏念臣犬馬之齒, 于今七十有八, 旣耄□人事自絶, 無望造朝, 仰瞻天日之光,

□戀泣. 況近年朝家多事, 連有大禮, 而□一隨行, 帶職滯鄕. 聖恩彌隆, 臣罪□甚, 臣實惶怖, 無所容措. 嘗以此意, 具□免, 固非一再, 而辭不達意, 未蒙允許. □□陳乞亦涉煩瀆, 憫默經過, 以到今日. 反覆思惟, 不知所出. 仍竊伏惟, 凡古之致仕者□非一端, 而以老病者多, 蓋本古例七十致仕之義. 雖然行之必待上命, 故或命以本職致仕者, 或命以別銜致仕者, 而以致仕二字, 若用官銜然也. 故於封章末端, 書某階某官致仕臣某云, 則其義可見矣. 近者故相臣沈守慶身居近郊, 以老致仕請諸朝不許, 豈非終始優老臣之盛意也? 然今臣之事, 有異於此, 遠在嶺表, 歲躔五□, 而猶帶樞府鉅銜. 樞府雖曰閑局無管之事, 然歲時朝賀朝參, 國不可□. 況本府實職官銜, 只有此數大官□仕於朝者, 亦非一二. 而臣獨帶不仕□, 此豈合朝廷事體? 如臣進退, 固無輕重, 但未蒙自上許退之命, 而臣耄疾, 日□退狼狽. 伏乞聖慈, 俯諒微懇, 許致仕庶安愚分, 以全朝廷事體, 不勝幸甚. 輕瀆宸嚴, 無任隕越之至. 謹昧死以聞.

봉장(封章)[120]

대광보국숭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신 정탁, 머리 조아리며 정륜입극성덕홍렬(正倫立極盛德洪烈)[121] 주상전하께 말씀 아뢰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지난 기해년(1599)에 왜란이 겨우 평정되었기에, 신은 그해 가을에 휴가를 얻어 남쪽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연이은 노환에 복명하지 못한 지 이제 5년이나 되었습니다. 성상의 도량으로 널리 포용하시며 죄조차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온유한 글을 내려주셨습니다. 은사도 끊이지 않아 물품과 식량까지 지급해 주셨으며, 올해는 세찬(歲餐)이 신의 처에게까지 미치었으니 성은이 하늘같사오나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올해로 일흔여덟이나 되어 이미 인사가 저절로 끊어졌기에 조정에 나아가 우러러 성상을 뵈올 가망조차 없어 그저 그리워하며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게다가 근래 조

120) 봉장(封章): 예전에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일이나 그 글을 이르던 말이다.
121) 정륜입극성덕홍렬(正倫立極盛德洪烈): 선조의 존호이다.

정에 일이 많고 연이어 대례가 있었으나, 신은 단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채 직함만 지니고 고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은이 더욱 융성하니, 죄가 너무 깊어 신은 진실로 황송하여 몸 둘 곳을 모르겠나이다. 일찍이 이런 뜻으로 사유를 갖추어 면직을 청한 것이 실로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말로 속뜻을 다 전달하지 못한 탓에 윤허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직을 진언하는 것 또한 번거롭게 어지럽혀 드리는 일인지라, 답답히 침묵하며 지내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무릇 옛날에 은퇴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사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중에서도 늙고 병들었다는 것이 가장 많았으니, 대개 옛날 선례의 일흔에 은퇴한다는 뜻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상의 명을 기다려야 하기에, 혹 본직(本職)에서 은퇴하도록 명한 경우도 있고, 혹 별함(別銜)으로 은퇴하도록 명한 경우도 있었으니, '은퇴[致仕]' 두 글자가 마치 관함(官銜)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봉장(封章)의 말미에 '아무개 품계 아무개 관직으로 있다가 은퇴한 신 아무개'라고 썼으니, 그 뜻을 가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자에 재상이었던 고(故) 심수경(沈守慶)이 근교에 살면서 늙었다는 이유로 조정에 은퇴를 청하였지만 윤허 받지 못하였는데, 이 어찌 시종 노신(老臣)을 우대하고자 한 성대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신의 사정은 이와 달라서, 멀리 영남에 있으면서 다섯 해가 바뀌도록 아직도 중추부사라는 막중한 직함을 여전히 지닌 채로 있습니다. 중추부가 비록 한직이라 달리 주관하는 일은 없다지만, 세시마다 시행하는 조하(朝賀)와 조참(朝參)은 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본부(本府)에서 실제 관직을 지닌 관함은 오직 이 몇 개의 대관(大官)뿐이며, 조정에 출사하고 있는 자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이 출사도 하지 않으면서 직함만 지니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조정의 사체(事體)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신이 나아가건 물러나건 대단한 일이 아니겠으나, 다만 주상으로부터 물러나라는 명을 받지 못하였고, 신은 늙어 병이 날로 깊어가는 탓에 진퇴가 난감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

상께서는 미천한 신의 간청을 헤아려 신의 은퇴를 허락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분수에 편안히 지내게 해주심으로써 조정의 사체를 온전히 하신다면 이길 길 없는 다행이겠나이다. 함부로 존엄한 위의를 범하였기에, 참월의 죄 감당할 길 없사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萬曆三十一年四月二十四日,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鄭琢,
(前缺) 幸還舍, 義興遇雨. 山路僧□但苦下人, 切所抱歉. 大相公近想萬福康泰. 惠下□昔以不敢當. 再拜而辭, 及抵□人復出所惠珍物, 不覺驚□雖欲完上, 亦聞有不恭之却, □對拜領矣. 先生玉昆, 情切同胞, 每每顧盻. 且□淸風直至苦病厄之中, 又有錦裘足巾之贈, 其隆友信義. 何□喜. 以資國家大用. 生負囊歸故□之榮長水. 蘊不世之才, 暫陶田-以下缺 -

만력 31년 4월 24일, 대광보국 숭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신 정탁 [ㅡ앞부분이 결락되어 있음ㅡ] 다행히 관사로 돌아오다가 의흥에서 비를 만났습니다. 신 길에서 승려가 □□ 애써 몸을 낮춰 대해주어 몹시도 미안했습니다. 대상공께서도 근자에 만복이 깃들고 강녕하시리라 생각되옵니다. 예전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당할 길 없습니다. 재배하고 하직하여 □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은혜로 보내주신 물건을 다시 꺼내기에 나도 몰래 깜짝 놀라 □□ 비록 위에 온전히 돌려보내고자 하였으나, 거절하는 것이 공손치 못하다는 말을 듣고, □□ 마주하여 절하고 받들었습니다. 선생의 형님께서는 마치 형제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며 매번 돌보아주십니다. 또한 □청풍에서 곤액을 당하고 병들어 있던 중에 다시금 비단과 갖옷과 버선을 보내주셨으니, 높으신 벗의 신의가 어찌 □□ 기쁜지요. 이로써 나라의 큰 쓰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生)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고향 □의 장수로 돌아갔습니다. 불세출의 재주를 품은 채 잠시 전원에서 [ㅡ이하 결락ㅡ]

번역

● 이민숙 : 한국외국어대 중국언어문화학부 특임강의교수

● 이주해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해제

● 김경록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편집 및 윤문

● 김경록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감수

● 김용흠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壬辰記錄**

**軍事文獻集** 26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인 쇄** 국군인쇄창 M19111407

병영생활고충, 군범죄 · 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 · 공중 · 일반 · 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f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民族戰亂史 刊行目錄

1 義兵抗爭史 (1984년)
2 獨立軍抗爭史 (1985년)
3 丙子胡亂史 (1986년)
4 壬辰倭亂史 (1987년)
5 對蒙抗爭史 (1989년)
6 丙寅·辛未洋擾史 (1989년)
7 麗遼戰爭史 (1990년)
8 高句麗對隋·唐戰爭史 (1991년)
9 倭寇討伐史 (1993년)
10 國土開拓史 (1999년)
11 羅唐戰爭史 (1999년)
12 삼국통일의 군사전략 (2002년)
13 한민족 역대파병사 (2002년)
14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2002년)
15 역대병요·동국전란사 (2003년)

비매품/무료
93390
9 791155 980606
ISBN 979-11-5598-060-6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서울市 龍山區 梨泰院路 29(龍山洞1街 8番地)